차별관련 법령자료집

200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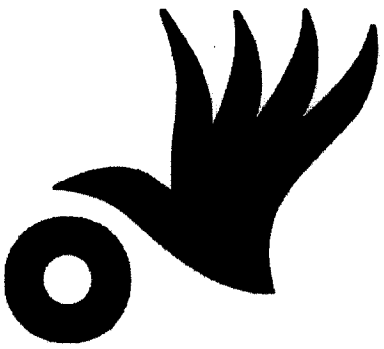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차 별 조 사 국

차별관련 법령

차별관련 법령	담당기관	비고
1.헌법		
2.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	
3.근로기준법	노동부	
4.고용정책기본법	노동부	
5.남녀고용평등법	노동부	성별
6.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여성부	
7.여성발전기본법	여성부	
8.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법무부	
9.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장애
10.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보건복지부	
11.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노동부	
12.특수교육진흥법	교육인적자원부	
13.교육공무원법	교육인적자원부	기간제 교사
14.사립학교법	교육인적자원부	
15.출입국관리법	법무부	외국인 노동자
16.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부	

목 차

Ⅰ. 헌법 1

Ⅱ. 국가인권위원회법 111

Ⅲ. 근로기준법 145

Ⅳ. 고용정책기본법 219

Ⅴ. 남녀고용평등법 245

Ⅵ.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281

Ⅶ. 여성발전기본법 301

Ⅷ.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315

Ⅸ. 장애인복지법 349

Ⅹ.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479

Ⅺ.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517

Ⅻ. 특수교육진흥법 577

ⅩⅢ. 교육공무원법 609

ⅩⅣ. 사립학교법 635

ⅩⅤ. 출입국관리법 685

Ⅹ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59

Ⅰ. 헌 법

第1編 憲 法

第1章 憲法典

●大韓民國憲法〔1948·7·17〕

改正 1952·7·7
1954·11·29
1960·6·15
1960·11·29
1962·12·26〈全文改正〉
1969·10·21
1972·12·27〈全文改正〉
1980·10·27〈全文改正〉
1987·10·29〈全文改正〉

前 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民主理念을 계승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입각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타파하며,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발휘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 7月 12日에 制定되고 8次에 걸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會의 議決을 거쳐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1987年 10月 29日

第1章 總 綱

第1條 ①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②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第2條 ①大韓民國의 國民이 되는 요건은 法律로 정한다.

②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在外國民을 보호할 義務를 진다.

第3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第4條 大韓民國은 統一을 指向하며,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입각한 平和的 統一政策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第5條 ①大韓民國은 國際平和의 유지에 노력하고 侵略的 戰爭을 否認한다.

②國軍은 國家의 安全保障과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수행함을 使命으로 하며, 그 政治的 中立性은 준수된다.

第6條 ①憲法에 의하여 체결·公布된 條約과 一般的으로 승인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

②外國人은 國際法과 條約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地位가 보장된다.

第7條 ①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이며, 國民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②公務員의 身分과 政治的 中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第8條 ①政黨의 設立은 自由이며, 複數政黨制는 보장된다.

②政黨은 그 目的·組織과 活動이 民主的이어야 하며, 國民의 政治的 意思形成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組織을 가져야 한다.

③政黨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政黨運營에 필요한 資金을 補助할 수 있다.

④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는 憲法裁判所에 그 解散을 提訴할 수 있고, 政黨은 憲法裁判所의 審判에 의하여 解散된다.

第9條 國家는 傳統文化의 계승·발전과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하여야 한다.

第2章 國民의 權利와 義務

第10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義務를 진다.

第11條 ①모든 國民은 法 앞에 平等하다. 누구든지 性別·宗教 또는 社會的 身分에 의하여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할 수 없다.

③勳章등의 榮典은 이를 받은 者에게만 效力이 있고, 어떠한 特權도 이에 따르

(추 2)

지 아니한다.

第12條 ①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逮捕·拘束·押收·搜索 또는 審問을 받지 아니하며, 法律과 適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處罰·保安處分 또는 强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上 자기에게 不利한 陳述을 强要당하지 아니한다.

③逮捕·拘束·押收 또는 搜索을 할 때에는 適法한 節次에 따라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인 경우와 長期 3年이상의 刑에 해당하는 罪를 범하고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事後에 令狀을 請求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즉시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다만, 刑事被告人이 스스로 辯護人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가 辯護人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의 이유와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가 있음을 告知받지 아니하고는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하지 아니한다.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者의 家族등 法律이 정하는 者에게는 그 이유와 日時·場所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適否의 審査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

⑦被告人의 自白이 拷問·暴行·脅迫·拘束의 부당한 長期化 또는 欺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自意로 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正式裁判에 있어서 被告人의 自白이 그에게 不利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有罪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處罰할 수 없다.

第13條 ①모든 國民은 行爲時의 法律에 의하여 犯罪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訴追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犯罪에 대하여 거듭 處罰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遡及立法에 의하여 參政權의 제한을 받거나 財産權을 剝奪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國民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親族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第14條 모든 國民은 居住·移轉의 自由를 가진다.

第15條 모든 國民은 職業選擇의 自由를 가진다.

第16條 모든 國民은 住居의 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住居에 대한 押收나 搜索을 할 때에는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第17條 모든 國民은 私生活의 祕密과 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第18條 모든 國民은 通信의 祕密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第19條 모든 國民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第20條 ①모든 國民은 宗敎의 自由를 가진다.

②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宗敎와 政治는 分離된다.

第21條 ①모든 國民은 言論·出版의 自由와 集會·結社의 自由를 가진다.

②言論·出版에 대한 許可나 檢閱과 集會·結社에 대한 許可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通信·放送의 施設基準과 新聞의 機能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④言論·出版은 他人의 名譽나 權利 또는 公衆道德이나 社會倫理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言論·出版이 他人의 名譽나 權利를 침해한 때에는 被害者는 이에 대한 被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2條 ①모든 國民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②著作者·發明家·科學技術者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보호한다.

第23條 ①모든 國民의 財產權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限界는 法律로 정한다.

②財產權의 행사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公共必要에 의한 財產權의 收用·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補償은 法律로써 하되, 정당한 補償을 支給하여야 한다.

第24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選擧權을 가진다.

第25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擔任權을 가진다.

第26條 ①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機關에 文書로 請願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請願에 대하여 審査할 義務를 진다.

第27條 ①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軍人 또는 軍務員이 아닌 國民은 大韓民國의 領域 안에서는 중대한 軍事上 機

密·哨兵·哨所·有毒飮食物供給·捕虜·軍用物에 관한 罪중 法律이 정한 경우와 非常戒嚴이 宣布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軍事法院의 裁判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國民은 신속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刑事被告人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④刑事被告人은 有罪의 判決이 확정될 때까지는 無罪로 推定된다.

⑤刑事被害者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事件의 裁判節次에서 陳述할 수 있다.

第28條 刑事被疑者 또는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法律이 정하는 不起訴處分을 받거나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에 정당한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9條 ①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損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정당한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公務員 자신의 責任은 免除되지 아니한다.

②軍人·軍務員·警察公務員 기타 法律이 정하는 者가 戰鬪·訓練등 職務執行과 관련하여 받은 損害에 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報償외에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賠償은 請求할 수 없다.

第30條 他人의 犯罪行爲로 인하여 生命·身體에 대한 被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로부터 救助를 받을 수 있다.

第31條 ①모든 國民은 能力에 따라 균등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모든 國民은 그 보호하는 子女에게 적어도 初等敎育과 法律이 정하는 敎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

③義務敎育은 無償으로 한다.

④敎育의 自主性·專門性·政治的 中立性 및 大學의 自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國家는 平生敎育을 振興하여야 한다.

⑥學校敎育 및 平生敎育을 포함한 敎育制度와 그 운영, 敎育財政 및 敎員의 地位에 관한 基本的인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32條 ①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社會的·經濟的 방법으로 勤勞者의 雇傭의 增進과 適正賃金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最低賃金制를 施行하여야 한다.

②모든 國民은 勤勞의 義務를 진다. 國家는 勤勞의 義務의 내용과 조건을 民主主義原則에 따라 法律로 정한다.

③勤勞條件의 基準은 人間의 尊嚴性을 보장하도록 法律로 정한다.

④女子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雇傭·賃金 및 勤勞條件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年少者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國家有功者·傷痍軍警 및 戰歿軍警의 遺家族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優先的으로 勤勞의 機會를 부여받는다.

第33條 ①勤勞者는 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自主的인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②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이 정하는 者에 한하여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③法律이 정하는 主要防衛産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34條 ①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社會保障·社會福祉의 增進에 노력할 義務를 진다.

③國家는 女子의 福祉와 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國家는 老人과 靑少年의 福祉向上을 위한 政策을 실시할 義務를 진다.

⑤身體障碍者 및 疾病·老齡 기타의 사유로 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⑥國家는 災害를 豫防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國民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35條 ①모든 國民은 건강하고 快適한 環境에서 生活할 權利를 가지며, 國家와 國民은 環境保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環境權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③國家는 住宅開發政策등을 통하여 모든 國民이 快適한 住居生活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36條 ①婚姻과 家族生活은 개인의 尊嚴과 兩性의 平等을 기초로 成立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國家는 이를 보장한다.

②國家는 母性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國民은 保健에 관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第37條 ①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輕視되지 아니한다.

②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第38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

第39條 ①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의 義務를 진다.

②누구든지 兵役義務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第3章 國 會

第40條 立法權은 國會에 속한다.

第41條 ①國會는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擧에 의하여 選出된 國會議員으로 구성한다.

②國會議員의 數는 法律로 정하되, 200人이상으로 한다.

③國會議員의 選擧區와 比例代表制 기타 選擧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42條 國會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第43條 國會議員은 法律이 정하는 職을 겸할 수 없다.

第44條 ①國會議員은 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會期중 國會의 同意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한다.

②國會議員이 會期전에 逮捕 또는 拘禁된 때에는 現行犯人이 아닌 한 國會의 요구가 있으면 會期중 釋放된다.

第45條 國會議員은 國會에서 職務上 행한 發言과 表決에 관하여 國會외에서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46條 ①國會議員은 淸廉의 義務가 있다.

②國會議員은 國家利益을 우선하여 良心에 따라 職務를 행한다.

③國會議員은 그 地位를 濫用하여 國家·公共團體 또는 企業體와의 契約이나 그 處分에 의하여 財産上의 權利·이익 또는 職位를 취득하거나 他人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第47條 ①國會의 定期會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回 集會되며, 國會의

臨時會는 大統領 또는 國會在籍議員 4分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集會된다.

②定期會의 會期는 100日을, 臨時會의 會期는 30日을 초과할 수 없다.

③大統領이 臨時會의 集會를 요구할 때에는 期間과 集會要求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第48條 國會는 議長 1人과 副議長 2人을 選出한다.

第49條 國會는 憲法 또는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在籍議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可否同數인 때에는 否決된 것으로 본다.

第50條 ①國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거나 議長이 國家의 安全保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公開하지 아니한 會議內容의 公表에 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51條 國會에 제출된 法律案 기타의 議案은 會期중에 議決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國會議員의 任期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2條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제출할 수 있다.

第53條 ①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은 政府에 移送되어 15日이내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②法律案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第1項의 期間내에 異議書를 붙여 國會로 還付하고, 그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國會의 閉會중에도 또한 같다.

③大統領은 法律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法律案을 修正하여 再議를 요구할 수 없다.

④再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國會는 再議에 붙이고, 在籍議員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으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확정된다.

⑤大統領이 第1項의 期間내에 公布나 再議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확정된다.

⑥大統領은 第4項과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法律을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第5項에 의하여 法律이 확정된 후 또는 第4項에 의한 確定法律이 政府에 移送된 후 5日이내에 大統領이 公布하지 아니할 때에는 國會議長이 이를 公布한다.

⑦法律은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公布한 날로부터 20日을 경과함으로써 效力을 발생한다.

第54條 ①國會는 國家의 豫算案을 審議·확정한다.

②政府는 會計年度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會計年度 開始 90日전까지 國會에 제출하고, 國會는 會計年度 開始 30日전까지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會計年度가 開始될 때까지 豫算案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政府는 國會에서 豫算案이 議決될 때까지 다음의 目的을 위한 經費는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執行할 수 있다.

1. 憲法이나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機關 또는 施設의 유지·운영
2. 法律上 支出義務의 이행
3. 이미 豫算으로 승인된 事業의 계속

第55條 ①한 會計年度를 넘어 계속하여 支出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政府는 年限을 정하여 繼續費로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豫備費는 總額으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豫備費의 支出은 次期國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56條 政府는 豫算에 變更을 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追加更正豫算案을 編成하여 國會에 제출할 수 있다.

第57條 國會는 政府의 同意없이 政府가 제출한 支出豫算 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새 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第58條 國債를 모집하거나 豫算외에 國家의 부담이 될 契約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政府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第59條 租稅의 種目과 稅率은 法律로 정한다.

第60條 ①國會는 相互援助 또는 安全保障에 관한 條約, 중요한 國際組織에 관한 條約, 友好通商航海條約, 主權의 制約에 관한 條約, 講和條約, 國家나 國民에게 중대한 財政的 부담을 지우는 條約 또는 立法事項에 관한 條約의 체결·批准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

②國會는 宣戰布告, 國軍의 外國에의 派遣 또는 外國軍隊의 大韓民國 領域 안에서의 駐留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

第61條 ①國會는 國政을 監査하거나 특정한 國政事案에 대하여 調査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書類의 提出 또는 證人의 출석과 證言이나 의견의 陳述을 요구할

(추 49)

수 있다.

②國政監査 및 調査에 관한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62條 ①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國會나 그 委員會에 출석하여 國政處理狀況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陳述하고 質問에 응답할 수 있다.

②國會나 그 委員會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出席要求를 받은 때에는 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第63條 ①國會는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解任建議는 國會在籍議員 3分의 1이상의 發議에 의하여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64條 ①國會는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議事와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②國會는 議員의 資格을 審査하며, 議員을 懲戒할 수 있다.

③議員을 除名하려면 國會在籍議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④第2項과 第3項의 處分에 대하여는 法院에 提訴할 수 없다.

第65條 ①大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憲法裁判所 裁判官·法官·中央選擧管理委員會 委員·監査院長·監査委員 기타 法律이 정한 公務員이 그 職務執行에 있어서 憲法이나 法律을 違背한 때에는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議決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彈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3分의 1이상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議決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에 대한 彈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發議와 國會在籍議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③彈劾訴追의 議決을 받은 者는 彈劾審判이 있을 때까지 그 權限行使가 정지된다.

④彈劾決定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지는 아니한다.

第4章 政 府

第1節 大統領

第66條 ①大統領은 國家의 元首이며, 外國에 대하여 國家를 代表한다.

②大統領은 國家의 獨立·領土의 保全·國家의 繼續性과 憲法을 守護할 責務를 진다.

③大統領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성실한 義務를 진다.

④行政權은 大統領을 首班으로 하는 政府에 속한다.

第67條 ①大統領은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擧에 의하여 選出한다.

②第1項의 選擧에 있어서 最高得票者가 2人이상인 때에는 國會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출석한 公開會議에서 多數票를 얻은 者를 當選者로 한다.

③大統領候補者가 1人일 때에는 그 得票數가 選擧權者 總數의 3分의 1이상이 아니면 大統領으로 當選될 수 없다.

④大統領으로 選擧될 수 있는 者는 國會議員의 被選擧權이 있고 選擧日 현재 40歲에 達하여야 한다.

⑤大統領의 選擧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68條 ①大統領의 任期가 만료되는 때에는 任期滿了 70日내지 40日전에 後任者를 選擧한다.

②大統領이 闕位된 때 또는 大統領 當選者가 死亡하거나 判決 기타의 사유로 그 資格을 喪失한 때에는 60日이내에 後任者를 選擧한다.

第69條 大統領은 就任에 즈음하여 다음의 宣誓를 한다.

"나는 憲法을 준수하고 國家를 保衛하며 祖國의 平和的 統一과 國民의 自由와 福利의 增進 및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하여 大統領으로서의 職責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國民 앞에 엄숙히 宣誓합니다."

第70條 大統領의 任期는 5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第71條 大統領이 闕位되거나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國務總理, 法律이 정한 國務委員의 順序로 그 權限을 代行한다.

第72條 大統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外交·國防·統一 기타 國家安危에 관한 重要政策을 國民投票에 붙일 수 있다.

第73條 大統領은 條約을 체결·批准하고, 外交使節을 信任·접수 또는 派遣하며, 宣戰布告와 講和를 한다.

第74條 ①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軍을 統帥한다.

②國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로 정한다.

第75條 大統領은 法律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委任받은 사항과 法律을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大統領令을 발할 수 있다.

第76條 ①大統領은 內憂·外患·天災·地變 또는 중대한 財政·經濟上의 危機에 있어서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公共의 安寧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財政·經濟上의 處分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발할 수 있다.

②大統領은 國家의 安危에 관계되는 중대한 交戰狀態에 있어서 國家를 保衛하기 위하여 긴급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발할 수 있다.

③大統領은 第1項과 第2項의 處分 또는 命令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國會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第3項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處分 또는 命令은 그때부터 效力을 喪失한다. 이 경우 그 命令에 의하여 改正 또는 廢止되었던 法律은 그 命令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效力을 회복한다.

⑤大統領은 第3項과 第4項의 사유를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第77條 ①大統領은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兵力으로써 軍事上의 필요에 응하거나 公共의 安寧秩序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戒嚴을 宣布할 수 있다.

②戒嚴은 非常戒嚴과 警備戒嚴으로 한다.

③非常戒嚴이 宣布된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令狀制度,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 政府나 法院의 權限에 관하여 특별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④戒嚴을 宣布한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國會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國會가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戒嚴의 解除를 요구한 때에는 大統領은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第78條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員을 任免한다.

第79條 ①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赦免·減刑 또는 復權을 命할 수 있다.

②一般赦免을 命하려면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赦免·減刑 및 復權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80條 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勳章 기타의 榮典을 수여한다.

第81條 大統領은 國會에 출석하여 發言하거나 書翰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第82條 大統領의 國法上 행위는 文書로써 하며, 이 文書에는 國務總理와 관계 國務委員이 副署한다. 軍事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第83條 大統領은 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 기타 法律이 정하는 公私의 職을 겸할 수 없다.

第84條 大統領은 內亂 또는 外患의 罪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職중 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第85條 前職大統領의 身分과 禮遇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第2節 行政府

第1款 國務總理와 國務委員

第86條 ①國務總理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補佐하며, 行政에 관하여 大統領의 命을 받아 行政各部를 統轄한다.

③軍人은 現役을 免한 후가 아니면 國務總理로 任命될 수 없다.

第87條 ①國務委員은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國務委員은 國政에 관하여 大統領을 補佐하며, 國務會議의 構成員으로서 國政을 審議한다.

③國務總理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④軍人은 現役을 免한 후가 아니면 國務委員으로 任命될 수 없다.

第2款 國務會議

第88條 ①國務會議는 政府의 權限에 속하는 중요한 政策을 審議한다.

②國務會議는 大統領·國務總理와 15人이상 30人이하의 國務委員으로 구성한다.

③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長이 되고, 國務總理는 副議長이 된다.

第89條 다음 사항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1. 國政의 基本計劃과 政府의 一般政策
2. 宣戰·講和 기타 중요한 對外政策
3. 憲法改正案·國民投票案·條約案·法律案및 大統領令案
4. 豫算案·決算·國有財産處分의 基本計劃·國家의 부담이 될 契約 기타 財政

에 관한 중요사항

5. 大統領의 緊急命令·緊急財政經濟處分 및 命令 또는 戒嚴과 그 解除
6. 軍事에 관한 중요사항
7. 國會의 臨時會 集會의 요구
8. 榮典授與
9. 赦免·減刑과 復權
10. 行政各部間의 權限의 劃定
11. 政府안의 權限의 委任 또는 配定에 관한 基本計劃
12. 國政處理狀況의 評價·分析
13. 行政各部의 중요한 政策의 수립과 調整
14. 政黨解散의 提訴
15. 政府에 제출 또는 회부된 政府의 政策에 관계되는 請願의 審査
16. 檢察總長·合同參謀議長·各軍參謀總長·國立大學校總長·大使 기타 法律이 정한 公務員과 國營企業體管理者의 任命
17. 기타 大統領·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제출한 사항

第90條 ①國政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元老로 구성되는 國家元老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國家元老諮問會議의 議長은 直前大統領이 된다. 다만, 直前大統領이 없을 때에는 大統領이 指名한다.

③國家元老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1條 ①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되는 對外政策·軍事政策과 國內政策의 수립에 관하여 國務會議의 審議에 앞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安全保障會議를 둔다.

②國家安全保障會議는 大統領이 主宰한다.

③國家安全保障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2條 ①平和統一政策의 수립에 관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3條 ①國民經濟의 발전을 위한 重要政策의 수립에 관하여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民經濟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國民經濟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3款 行政各部

第94條 行政各部의 長은 國務委員 중에서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95條 國務總理 또는 行政各部의 長은 所管事務에 관하여 法律이나 大統領令의 委任 또는 職權으로 總理令 또는 部令을 발할 수 있다.

第96條 行政各部의 設置·組織과 職務範圍는 法律로 정한다.

第4款 監査院

第97條 國家의 歲入·歲出의 決算, 國家 및 法律이 정한 團體의 會計檢査와 行政機關 및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監察을 하기 위하여 大統領 所屬下에 監査院을 둔다.

第98條 ①監査院은 院長을 포함한 5人이상 11人이하의 監査委員으로 구성한다.

②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며, 1次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

③監査委員은 院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며, 1次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

第99條 監査院은 歲入·歲出의 決算을 매년 檢査하여 大統領과 次年度國會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第100條 監査院의 組織·職務範圍·監査委員의 資格·監査對象公務員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5章 法 院

第101條 ①司法權은 法官으로 구성된 法院에 속한다.

②法院은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各級法院으로 組織된다.

③法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第102條 ①大法院에 部를 둘 수 있다.

②大法院에 大法官을 둔다. 다만,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大法官이 아닌 法官을 둘 수 있다.

③大法院과 各級法院의 組織은 法律로 정한다.

第103條 法官은 憲法과 法律에 의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한다.

第104條 ①大法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大法官은 大法院長의 提請으로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大法院長과 大法官이 아닌 法官은 大法官會議의 同意를 얻어 大法院長이 任命한다.

第105條 ①大法院長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②大法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③大法院長과 大法官이 아닌 法官의 任期는 10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④法官의 停年은 法律로 정한다.

第106條 ①法官은 彈劾 또는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하며, 懲戒處分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停職·減俸 기타 不利한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②法官이 중대한 心身上의 障害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退職하게 할 수 있다.

第107條 ①法律이 憲法에 위반되는 여부가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는 法院은 憲法裁判所에 提請하여 그 審判에 의하여 裁判한다.

②命令·規則 또는 處分이 憲法이나 法律에 위반되는 여부가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는 大法院은 이를 最終的으로 審査할 權限을 가진다.

③裁判의 前審節次로서 行政審判을 할 수 있다. 行政審判의 節次는 法律로 정하되, 司法節次가 準用되어야 한다.

第108條 大法院은 法律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訴訟에 관한 節次, 法院의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109條 裁判의 審理와 判決은 公開한다. 다만, 審理는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安寧秩序를 방해하거나 善良한 風俗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法院의 決定으로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110條 ①軍事裁判을 관할하기 위하여 特別法院으로서 軍事法院을 둘 수 있다.

②軍事法院의 上告審은 大法院에서 관할한다.

③軍事法院의 組織·權限 및 裁判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④非常戒嚴下의 軍事裁判은 軍人·軍務員의 犯罪나 軍事에 관한 間諜罪의 경우와 哨兵·哨所·有毒飮食物供給·捕虜에 관한 罪중 法律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單審으로 할 수 있다. 다만, 死刑을 宣告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6章 憲法裁判所

第111條 ①憲法裁判所는 다음 사항을 管掌한다.

1. 法院의 提請에 의한 法律의 違憲與否 審判
2. 彈劾의 審判
3. 政黨의 解散 審判
4. 國家機關 相互間,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間 및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의 權限爭議에 관한 審判
5. 法律이 정하는 憲法訴願에 관한 審判

②憲法裁判所는 法官의 資格을 가진 9人의 裁判官으로 구성하며, 裁判官은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第2項의 裁判官중 3人은 國會에서 選出하는 者를, 3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者를 任命한다.

④憲法裁判所의 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裁判官중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112條 ①憲法裁判所 裁判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②憲法裁判所 裁判官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③憲法裁判所 裁判官은 彈劾 또는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第113條 ①憲法裁判所에서 法律의 違憲決定, 彈劾의 決定, 政黨解散의 決定 또는 憲法訴願에 관한 認容決定을 할 때에는 裁判官 6人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②憲法裁判所는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審判에 관한 節次,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③憲法裁判所의 組織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7章 選擧管理

第114條 ①選擧와 國民投票의 공정한 管理 및 政黨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選擧管理委員會를 둔다.

②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大統領이 任命하는 3人, 國會에서 選出하는 3人과 大法

院長이 指名하는 3人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委員長은 委員중에서 互選한다.

③委員의 任期는 6年으로 한다.

④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⑤委員은 彈劾 또는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⑥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法令의 범위안에서 選擧管理·國民投票管理 또는 政黨事務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으며,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⑦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115條 ①各級 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人名簿의 작성등 選擧事務와 國民投票事務에 관하여 관계 行政機關에 필요한 指示를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指示를 받은 당해 行政機關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116條 ①選擧運動은 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 管理下에 法律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機會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選擧에 관한 經費는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第8章 地方自治

第117條 ①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利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고 財産을 관리하며, 法令의 범위안에서 自治에 관한 規定을 制定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의 종류는 法律로 정한다.

第118條 ①地方自治團體에 議會를 둔다.

②地方議會의 組織·權限·議員選擧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任方法 기타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章 經 濟

第119條 ①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개인과 企業의 經濟上의 自由와 創意를 존중함을 基本으로 한다.

②國家는 균형있는 國民經濟의 成長 및 安定과 적정한 所得의 分配를 유지하고, 市場의 支配와 經濟力의 濫用을 방지하며, 經濟主體間의 調和를 통한 經濟의 民

主化를 위하여 經濟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할 수 있다.

第120條 ①鑛物 기타 중요한 地下資源·水産資源·水力과 經濟上 이용할 수 있는 自然力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期間 그 採取·開發 또는 이용을 特許할 수 있다.

②國土와 資源은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그 균형있는 開發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計劃을 수립한다.

第121條 ①國家는 農地에 관하여 耕者有田의 원칙이 達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農地의 小作制度는 금지된다.

②農業生産性의 提高와 農地의 合理的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事情으로 발생하는 農地의 賃貸借와 委託經營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第122條 國家는 國民 모두의 生産 및 生活의 基盤이 되는 國土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開發과 보전을 위하여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義務를 課할 수 있다.

第123條 ①國家는 農業 및 漁業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農·漁村綜合開發과 그 지원등 필요한 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地域間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地域經濟를 육성할 義務를 진다.

③國家는 中小企業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國家는 農水産物의 需給均衡과 流通構造의 개선에 노력하여 價格安定을 도모함으로써 農·漁民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國家는 農·漁民과 中小企業의 自助組織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自律的 活動과 발전을 보장한다.

第124條 國家는 건전한 消費行爲를 啓導하고 生産品의 品質向上을 촉구하기 위한 消費者保護運動을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第125條 國家는 對外貿易을 육성하며, 이를 規制·調整할 수 있다.

第126條 國防上 또는 國民經濟上 緊切한 필요로 인하여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그 경영을 統制 또는 관리할 수 없다.

第127條 ①國家는 科學技術의 革新과 情報 및 人力의 開發을 통하여 國民經濟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國家標準制度를 확립한다.

③大統領은 第1項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諮問機構를 둘 수 있다.

第10章 憲法改正

第128條 ①憲法改正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 또는 大統領의 發議로 提案된다.

②大統領의 任期延長 또는 重任變更을 위한 憲法改正은 그 憲法改正 提案 당시의 大統領에 대하여는 效力이 없다.

第129條 提案된 憲法改正案은 大統領이 20日이상의 期間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130條 ①國會는 憲法改正案이 公告된 날로부터 60日이내에 議決하여야 하며, 國會의 議決은 在籍議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②憲法改正案은 國會가 議決한 후 30日이내에 國民投票에 붙여 國會議員選擧權者 過半數의 投票와 投票者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③憲法改正案이 第2項의 贊成을 얻은 때에는 憲法改正은 확정되며, 大統領은 즉시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

附 則

第1條 이 憲法은 1988年 2月 25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이 憲法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法律의 制定·改正과 이 憲法에 의한 大統領 및 國會議員의 選擧 기타 이 憲法施行에 관한 準備는 이 憲法施行전에 할 수 있다.

第2條 ①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大統領選擧는 이 憲法施行日 40日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大統領의 任期는 이 憲法施行日로부터 開始한다.

第3條 ①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國會議員選擧는 이 憲法公布日로부터 6月이내에 실시하며, 이 憲法에 의하여 選出된 최초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國會議員選擧후 이 憲法에 의한 國會의 최초의 集會日로부터 開始한다.

②이 憲法公布 당시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第1項에 의한 國會의 최초의 集會日 前日까지로 한다.

第4條 ①이 憲法施行 당시의 公務員과 政府가 任命한 企業體의 任員은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憲法에 의하여 選任方法이나 任命權者가 변경된 公務員과 大法院長 및 監査院長은 이 憲法에 의하여 後任者가 選任될 때까지 그 職務를 행하며, 이 경우 前任者인 公務員의 任期는 後任者가 選任되는 前日까지로 한다.

②이 憲法施行 당시의 大法院長과 大法院判事가 아닌 法官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③이 憲法중 公務員의 任期 또는 重任制限에 관한 規定은 이 憲法에 의하여 그 公務員이 최초로 選出 또는 任命된 때로부터 適用한다.

第5條 이 憲法施行 당시의 法令과 條約은 이 憲法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한 그 效力을 지속한다.

第6條 이 憲法施行 당시에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 設置될 機關의 權限에 속하는 職務를 행하고 있는 機關은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운 機關이 設置될 때까지 存續하며 그 職務를 행한다.

●大韓民國憲法(制憲憲法)

前 文

悠久한歷史와傳統에빛나는우리들大韓國民은己未三一運動으로大韓民國을建立하여世界에宣布한偉大한獨立精神을繼承하여이제民主獨立國家를 再建함에있어서 正義人道와同胞愛로써民族의團結을鞏固히하며모든社會的弊習을打破하고民主主義諸制度를樹立하여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모든領域에있어서各人의機會를均等히하고能力을最高度로發揮케하며各人의責任과義務를完遂케하여안으로는國民生活의均等한向上을期하고밖으로는恒久的인國際平和의 維持에努力하여우리들과우리들의子孫의安全과自由와幸福을永遠히確保할것을決議하고우리들의正當또自由로히選擧된代表로서構成된國會에서檀紀4281年7月12日 이憲法을制定한다.

檀紀4281年7月12日

大韓民國國會議長 李 承 晩

第1章 總 綱

第1條 大韓民國은民主共和國이다

第2條 大韓民國의主權은國民에게있고모든權力은國民으로부터나온다

第3條 大韓民國의國民되는要件은法律로써定한다

第4條 大韓民國의領土는韓半島와그附屬島嶼로한다

第5條 大韓民國은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모든領域에있어서各人의自由, 平等과創意를尊重하고保障하며公共福利의向上을爲하여이를保護하고調整하는義務를진다

第6條 大韓民國은모든侵略的인戰爭을否認한다

國軍은國土防衛의神聖한義務를遂行함을使命으로한다

第7條 批准公布된國際條約과一般的으로承認된國際法規는國內法과同一한效力을가진다

外國人의法的地位는國際法과國際條約의範圍內에서保障된다

第2章 國民의權利義務

第8條 모든國民은法律앞에平等이며性別, 信仰또는社會的身分에依하여 政治的, 經

濟的, 社會的生活의모든領域에있어서差別을받지아니한다

社會的特殊階級의制度는一切認定되지아니하며如何한形態로도이를創設하지못한다

勳章과其他榮典의授與는오로지그받은者의榮譽에限한것이며如何한特權도創設되지아니한다

第9條 모든國民은身體의自由를가진다 法律에依하지아니하고는逮捕, 拘禁, 搜索, 審問, 處罰과强制勞役을받지아니한다

逮捕, 拘禁, 搜索에는法官의令狀이있어야한다 但犯罪의現行犯人의逃避또는證據湮滅의念慮가있을때에는搜査機關은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事後에令狀의交付를請求할수있다

누구든지逮捕, 拘禁을받은때에는卽時辯護人의助力을받을權利와그當否의審査를法院에請求할權利가保障된다

第10條 모든國民은法律에依하지아니하고는居住와移轉의自由를制限받지아니하며住居의侵入또는搜索을받지아니한다

第11條 모든國民은法律에依하지아니하고는通信의祕密을侵害받지아니한다

第12條 모든國民은信仰과良心의自由를가진다

國敎는存在하지아니하며宗敎는政治로부터分離된다

第13條 모든國民은法律에依하지아니하고는言論, 出版, 集會, 結社의自由를制限받지아니한다

第14條 모든國民은學問과藝術의自由를가진다

著作者, 發明家와藝術家의權利는法律로써保護한다

第15條 財産權은保障된다 그內容과限界는法律로써定한다

財産權의行使는公共福利에適合하도록하여야한다

公共必要에依하여國民의財産權을收用, 使用또는制限함은法律이定하는바에依하여相當한補償을支給함으로써行한다

第16條 모든國民은均等하게敎育을받을權利가있다 적어도初等敎育은義務的이며無償으로한다

모든敎育機關은國家의監督을받으며敎育制度는法律로써定한다

第17條 모든國民은勤勞의權利와義務를가진다

勤勞條件의基準은法律로써定한다

女子와少年의勤勞는特別한保護를받는다

第18條 勤勞者의團結, 團體交涉과團體行動의自由는法律의範圍內에서保障된다

營利를目的으로하는私企業에있어서는勤勞者는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利益의分配에均霑할權利가있다

第19條 老齡, 疾病其他勤勞能力의喪失로因하여生活維持의能力이없는者는法律이定하는바에依하여國家의保護를받는다

第20條 婚姻은男女同權을基本으로하며婚姻의純潔과家族의健康은國家의特別한保護를받는다

第21條 모든國民은國家各機關에對하여文書로써請願을할權利가있다

請願에對하여國家는審査할義務를진다

第22條 모든國民은法律의定한法官에依하여法律에依한裁判을받을權利가있다

第23條 모든國民은行爲時의法律에依하여犯罪를構成하지아니하는行爲에對하여訴追를받지아니하며또同一한犯罪에對하여두번處罰되지아니한다

第24條 刑事被告人은相當한理由가없는限遲滯없이公開裁判을받을權利가있다

刑事被告人으로서拘禁되었던者가無罪判決을받은때에는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國家에對하여補償을請求할수있다

第25條 모든國民은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公務員을選擧할權利가있다

第26條 모든國民은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公務를擔任할權利가있다

第27條 公務員은主權을가진國民의受任者이며언제든지國民에對하여責任을진다 國民은不法行爲를한公務員의罷免을請願할權利가있다

公務員의職務上不法行爲로因하여損害를받은者는國家또는公共團體에對하여賠償을請求할수있다 但公務員自身의民事上이나刑事上의責任이免除되는것은아니다

第28條 國民의모든自由와權利는憲法에列擧되지아니한理由로써輕視되지는아니한다

國民의自由와權利를制限하는法律의制定은秩序維持와公共福利를爲하여必要한境遇에限한다

第29條 모든國民은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納稅의義務를진다

第30條 모든國民은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國土防衛의義務를진다

第3章 國 會

第31條 立法權은國會가行한다

第32條 國會는普通, 直接, 平等, 祕密選擧에依하여公選된議員으로써組織한다

國會議員의選擧에關한事項은法律로써定한다

第33條 國會議員의任期는 4 年으로한다

第34條 國會의定期會는每年 1 回12月20日에集會한다

當該日이公休日인때에는그翌日에集會한다

第35條 臨時緊急의必要가있을때에는大統領또는國會의在籍議員4分之1以上의要求에依하여議長은國會의臨時會의集會를公告한다

國會閉會中에大統領또는副統領의選擧를行할事由가發生한때에는國會는遲滯없이當然히集會한다

第36條 國會는議長 1 人副議長 2 人을選擧한다

第37條 國會는憲法또는國會法에特別한規定이없는限그在籍議員의過半數의出席과出席議員의過半數로써議決을行한다

議長은議決에있어서表決權을가지며可否同數인境遇에는決定權을가진다

第38條 國會의會議는公開한다 但國會의決議에依하여祕密會로할수있다

第39條 國會議員과政府는法律案을提出할수있다

第40條 國會에서議決된法律案은政府로移送되어15日以內에大統領이公布한다 但異議가있는때에는大統領은異議書를附하여國會로還付하고國會는再議에附한다

再議의結果國會의在籍議員3分之2以上의出席과出席議員3分之2以上의贊成으로前과同一한議決을한때에는그法律案은法律로써確定된다

法律案이政府로移送된後15日以內에公布또는還付되지아니하는때에도그法律案은法律로서確定된다

大統領은本條에依하여確定된法律을遲滯없이公布하여야한다

法律은特別한規定이없는限公布日로부터20日을經過함으로써效力을發生한다

第41條 國會는豫算案을審議決定한다

第42條 國會는國際組織에關한條約, 相互援助에關한條約, 講和條約, 通商條約, 國家또는國民에게財政的負擔을지우는條約, 立法事項에關한條約의批准과宣戰布告에對하여同意權을가진다

第43條 國會는國政을監査하기爲하여必要한書類를提出케하며證人의出席과證言또는意見의陳述을要求할수있다

第44條 國務總理, 國務委員과政府委員은國會에出席하여意見을陳述하고質問에應答할수있으며國會의要求가있을때에는出席答辯하여야한다

第45條 國會는議員의資格을審査하고議事에關한規則을制定하고議員의懲罰을決定할수있다

議員을除名함에는在籍議員3分之2以上의贊成이있어야한다

第46條 大統領, 副統領, 國務總理, 國務委員, 審計院長, 法官其他法律이定하는公務員의그職務遂行에關하여憲法또는法律에違背한때에는國會는彈劾의訴追를決議할수있다

國會의彈劾訴追의發議는議員50人以上의連署가있어야하며그決議는在籍議員3分之2以上의出席과出席議員3分之2以上의贊成이있어야한다

第47條 彈劾事件을審判하기爲하여法律로써彈劾裁判所를設置한다

彈劾裁判所는副統領이裁判長의職務를行하고大法官5人과國會議員5人이審判官이된다 但大統領과副統領을審判할때에는大法院長이裁判長의職務를行한다

彈劾判決은審判官3分之2以上의贊成이있어야한다

彈劾判決은公職으로부터罷免함에끄친다 但이에依하여民事上이나刑事上의責任이免除되는것은아니다

第48條 國會議員은地方議會의議員을兼할수없다

第49條 國會議員은現行犯을除한外에는會期中國會의同意없이逮捕또는拘禁되지아니하며會期前에逮捕또는拘禁되었을때에는國會의要求가있으면會期中釋放된다

第50條 國會議員은國會內에서發表한意見과表決에關하여外部에對하여責任을지지아니한다

第4章 政 府

第1節 大統領

第51條 大統領은行政權의首班이며外國에對하여國家를代表한다

第52條 大統領이事故로因하여職務를遂行할수없을때에는副統領이그權限을代行하고大統領, 副統領모두事故로因하여그職務를遂行할수없을때에는國務總理가그權限을代行한다

第53條 大統領과副統領은國會에서無記名投票로써各各選擧한다

前項의選擧는在籍議員3分之2以上의出席과出席議員3分之2以上의贊成投票로써當選을決定한다 但3分之2以上의得票者가없는때에는2次投票를行한다 2次投票에도 3分之2以上의得票者가없는때에는最高得票者 2人에對하여決選投票를行하여多數得票

者를當選者로한다

大統領과副統領은國務總理또는國會議員을兼하지못한다

第54條 大統領은就任에際하여國會에서左의宣誓를行한다

「나는國憲을遵守하며國民의福利를增進하며國家를保衛하여大統領의職務를誠實히遂行할것을國民에게嚴肅히宣誓한다」

第55條 大統領과副統領의任期는4年으로한다 但再選에依하여 1次重任할수있다

副統領은大統領在任中在任한다

第56條 大統領, 副統領의任期가滿了되는때에는늦어도그任期가滿了되기30日前에그後任者를選擧한다

大統領또는副統領이闕位된때에는卽時그後任者를選擧한다

第57條 內憂, 外患, 天災, 地變또는重大한財政, 經濟上의危機에際하여公共의安寧秩序를維持하기爲하여緊急한措置를할必要가있는때에는大統領은國會의集會를기다릴餘裕가없는境遇에限하여法律의效力을가진命令을發하거나또는財政上必要한處分을할수있다

前項의命令또는處分은遲滯없이國會에報告하여承認을얻어야한다

萬一國會의承認을얻지못한때에는그때부터效力을喪失하며大統領은遲滯없이此를公布하여야한다

第58條 大統領은法律에서一定한範圍를定하여委任을받은事項과法律을實施하기爲하여必要한事項에關하여命令을發할수있다

第59條 大統領은條約을締結하고批准하며宣戰布告와講和를行하고外交使節을信任接受한다

第60條 大統領은重要한國務에關하여國會에出席하여發言하거나또는書翰으로意見을表示한다

第61條 大統領은國軍을統帥한다

國軍의組織과編成은法律로써定한다

第62條 大統領은憲法과法律이定하는바에依하여公務員을任免한다

第63條 大統領은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赦免, 減刑과復權을命한다

一般赦免을命함에는國會의同意를얻어야한다

第64條 大統領은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戒嚴을宣布한다

第65條 大統領은勳章其他榮譽를授與한다

第66條 大統領의國務에關한行爲는文書로하여야하며모든文書에는國務總理와關係國務委員의副署가있어야한다 軍事에關한것도또한같다

第67條 大統領은內亂또는外患의罪를犯한때以外에는在職中刑事上의訴追를받지아니한다

第2節 國務院

第68條 國務院은大統領과國務總理其他의國務委員으로組織되는合議體로서大統領의權限에屬한重要國策을議決한다

第69條 國務總理는大統領이任命하고國會의承認을얻어야한다

國會議員總選擧後新國會가開會되었을때에는國務總理任命에對한承認을다시얻어야한다

國務委員은大統領이任命한다

國務委員의總數는國務總理를合하여 8人以上15人以內로한다

軍人은現役을免한後가아니면國務總理또는國務委員에任命될수없다

第70條 大統領은國務會議의議長이된다

國務總理는大統領을補佐하며國務會議의副議長이된다

第71條 國務會議의議決은過半數로써行한다

議長은議決에있어서表決權을가지며可否同數인境遇에는決定權을가진다

第72條 左의事項은國務會議의議決을經하여야한다

1. 國政의基本的計劃과政策
2. 條約案, 宣戰, 講和其他重要한對外政策에關한事項
3. 憲法改正案, 法律案, 大統領令案
4. 豫算案, 決算案, 財政上의緊急處分案, 豫備費支出에關한事項
5. 臨時國會의集會要求에關한事項
6. 戒嚴案, 解嚴案
7. 軍事에關한重要事項
8. 榮譽授與, 赦免, 減刑, 復權에關한事項
9. 行政各部間의連絡事項과權限의劃定
10. 政府에提出또는廻付된請願의審査
11. 大法官, 檢察總長, 審計院長, 國立大學總長, 大使, 公使, 國軍總司令官, 國軍參謀總長, 其他法律에依하여指定된公務員과重要國營企業의管理者의任免에關

한事項

12. 行政各部의重要한政策의樹立과運營에關한事項

13. 其他國務總理또는國務委員이提出하는事項

第3節 行政各部

第73條 行政各部長官은國務委員中에서大統領이任命한다

國務總理는大統領의命을承하여行政各部長官을統理監督하며行政各部에分擔되지아니한行政事務를擔任한다

第74條 國務總理또는行政各部長官은그擔任한職務에關하여職權또는特別한委任에依하여總理令또는部令을發할수있다

第75條 行政各部의組織과職務範圍는法律로써定한다

第5章 法 院

第76條 司法權은法官으로써組織된法院이行한다

最高法院인大法院과下級法院의組織은法律로써定한다

法官의資格은法律로써定한다

第77條 法官은憲法과法律에依하여獨立하여審判한다

第78條 大法院長인法官은大統領이任命하고國會의承認을얻어야한다

第79條 法官의任期는10年으로하되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連任할수있다

第80條 法官은彈劾, 刑罰또는懲戒處分에依하지아니하고는罷免, 停職또는減俸되지아니한다

第81條 大法院은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命令, 規則과處分이憲法과法律에違反되는與否를最終的으로審査할權限이있다.

法律이憲法에違反되는與否가裁判의前提가되는때에는法院은憲法委員會에提請하여그決定에依하여裁判한다

憲法委員會는副統領을委員長으로하고大法官5人과國會議員5人의委員으로構成한다

憲法委員會에서違憲決定을할때에는委員3分之2以上의贊成이있어야한다

憲法委員會의組織과節次는法律로써定한다

第82條 大法院은法院의內部規律과事務處理에關한規則을制定할수있다

第83條 裁判의對審과判決은公開한다 但安寧秩序를妨害하거나風俗을害할念慮가있는때에는法院의決定으로써公開를아니할수있다

第6章 經 濟

第84條 大韓民國의經濟秩序는모든國民에게生活의基本的需要를充足할수있게하는社會正義의實現과均衡있는國民經濟의發展을期함을基本으로삼는다 各人의經濟上自由는이限界內에서保障된다

第85條 鑛物其他重要한地下資源, 水產資源, 水力과經濟上利用할수있는自然力은國有로한다 公共必要에依하여一定한期間그開發또는利用을特許하거나또는特許를取消함은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行한다

第86條 農地는農民에게分配하며그分配의方法, 所有의限度, 所有權의內容과限界는法律로써定한다

第87條 重要한運輸, 通信, 金融, 保險, 電氣, 水利, 水道, 까스및公共性을가진企業은國營또는公營으로한다 公共必要에依하여私營을特許하거나또는그特許를取消함은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行한다

對外貿易은國家의統制下에둔다

第88條 國防上또는國民生活上緊切한必要에依하여私營企業을國有또는公有로移轉하거나또는그經營을統制, 管理함은法律이定하는바에依하여行한다

第89條 第85條乃至第88條에依하여特許를取消하거나權利를收用使用또는制限하는때에는第15條第3項의規定을準用한다

第7章 財 政

第90條 租稅의種目과稅率은法律로써定한다

第91條 政府는國家의總收入과總支出을會計年度마다豫算으로編成하여每年國會의定期會開會初에國會에提出하여그議決을얻어야한다

特別히繼續支出의必要가있을때에는年限을定하여繼續費로서國會의議決을얻어야한다

國會는政府의同意없이는政府가提出한支出決算各項의金額을增加하거나또는新費目을設置할수없다

第92條 國債를募集하거나豫算外의國家의負擔이될契約을함에는國會의議決을얻어야한다

第93條 豫測할수없는豫算外의支出또는豫算超過支出에充當하기爲한豫備費는미리國

(추 49)

會의議決을얻어야한다

豫備費의支出은次期國會의承認을얻어야한다

第94條 國會는會計年度가開始되기까지에豫算을議決하여야한다

不得已한事由로因하여豫算이議決되지못한때에는國會는一個月以內에假豫算을議決하고그期間內에豫算을議決하여야한다

第95條 國家의收入支出의決算은每年審計院에서檢査한다

政府는審計院의檢査報告와함께決算을次年度의國會에提出하여야한다

審計院의組織과權限은法律로써定한다

第8章 地方自治

第96條 地方自治團體는法令의範圍內에서그自治에關한行政事務와國家가委任한行政事務를處理하며財産을管理한다

地方自治團體는法令의範圍內에서自治에關한規程을制定할수있다

第97條 地方自治團體의組織과運營에關한事項은法律로써定한다

地方自治團體에는各各議會를둔다

地方議會의組織, 權限과議員의選擧는法律로써定한다

第9章 憲法改正

第98條 憲法改正의提案은大統領또는國會의在籍議員3分之1以上의贊成으로써한다

憲法改正의提議는大統領이이를公告하여야한다

前項의公告期間은30日以上으로한다

憲法改正의議決은國會에서在籍議員3分之2以上의贊成으로써한다

憲法改正이議決된때에는大統領은卽時公布한다

第10章 附 則

第99條 이憲法은이憲法을制定한國會의議長이公布한날로부터施行한다 但法律의制定이없이는實現될수없는規定은그法律이施行되는때부터施行된다

第100條 現行法令은이憲法에抵觸되지아니하는限效力을가진다

第101條 이憲法을制定한國會는檀紀4278年8月15日以前의惡質的인反民族行爲를處罰하는特別法을制定할수있다

第102條 이憲法을制定한國會는이憲法에依한國會로서의權限을行하며그議員의任期는國會開會日로부터 2 年으로한다

第103條 이憲法施行時에在職하고있는公務員은이憲法에依하여選擧또는任命된者가그職務를繼承할때까지繼續하여職務를行한다

大韓民國國會議長은大韓民國國會에서制定된大韓民國憲法을이에公布한다

檀紀4281年7月17日

大韓民國國會議長 李 承 晩

●憲法改正〔1952·7·7〕

憲法中다음과같이改正한다

第31條 立法權은國會가行한다

國會는民議院과參議院으로써構成한다

第32條 兩院은國民의普通, 平等, 直接, 祕密投票에依하여選擧된議員으로써組織한다

누구든지兩院의議員을兼할수없다

國會議員의定數와選擧에關한事項은法律로써定한다

第33條 民議院議員의任期는4年으로한다

參議院議員의任期는6年으로하고2年마다議員의3分之1을改選한다

第35條 臨時緊急의必要가있을때에는大統領, 民議院의在籍議員4分之1以上또는參議院의在籍議員2分之1以上의要求에依하여兩院의議長은國會의臨時會의集會를公告한다

第36條 民議院은議長 1人, 副議長 2人을選擧한다

參議院은副統領을議長으로하고副議長 2人을選擧한다

參議院議長은兩院合同會議의議長이된다

第37條 各院은憲法또는國會法에特別한規定이없는限그在籍議員의過半數의出席과出席議員의過半數로써議決을行한다

法律案其他議案에關하여兩院의議決이一致되지아니할때에는各院의在籍議員過半數가出席한兩院合同會議에서出席議員過半數로써議決한다

民議院議長은議決에있어서表決權을가진다

兩院의議長은議決에있어서可否同數인境遇에決定權을가진다

第38條 國會의會議는公開한다 但各院또는兩院合同會議의決議에依하여祕密會로할수있다

第39條 國會議員과政府는法律案을提出할수있다

法律案, 豫算案其他議案은먼저民議院에提出하여야한다 但國務總理와大法院長인法官의任命에關한議案은參議院에먼저提出할수있다

一院에서否決된議案은他院에移送할수없다

第40條 國會에서議決된法律案은政府로移送되어15日以內에大統領이公布한다

移送된法律案에對하여異議가있을때에는大統領은異議書를附하여兩院中의一院에還付하여國會의再議에附한다 國會에서各院이그在籍議員3分之2以上의出席과出席議員3分之2以上의贊成으로써前과같이可決한때에는그法律案은法律로서確定된다

法律案이政府로移送된後15日以內에國會에還付되지아니하는때에는그法律案은法律로서確定된다

大統領은前2項에依하여確定된法律을遲滯없이公布하여야한다

法律은特別한規定이없는때에는公布日로부터20日後에效力이發生한다

第45條 各院은議員의資格을審査하고議事에關한規則을制定하고議員의懲罰을決定할수있다

議員을除名함에는各院의在籍議員3分之2以上의贊成이있어야한다

第46條 大統領, 副統領, 國務總理, 國務委員, 審計院長, 法官其他法律이定하는公務員이그職務遂行에關하여憲法또는法律에違背한때에는國會는彈劾의訴追를決議할수있다

國會의彈劾訴追는民議院議員50人以上의發議가있어야하며그決議는兩院合同會議에서各院의在籍議員3分之2以上의出席과出席議員3分之2以上의贊成이있어야한다

第47條 彈劾事件을審判하기爲하여法律로써彈劾裁判所를設置한다

彈劾裁判所는副統領이裁判長의職務를行하고大法官5人과參議院議員5人이審判官이된다 但大統領과副統領을審判할때에는大法院長이裁判長의職務를行한다

彈劾判決은審判官3分之2以上의贊成이있어야한다

彈劾判決은公職으로부터罷免함에끄친다 但이에依하여民事上이나刑事上의責任이免除되는것은아니다

第49條 國會議員은現行犯을除한外에는會期中그院의同意없이逮捕또는拘禁되지아니하며會期前에逮捕또는拘禁되었을때에는그院의要求가있으면會期中釋放된다

第53條 大統領과副統領은國民의普通, 平等, 直接, 祕密投票에依하여各各選擧한다

國會閉會中에大統領과副統領을選擧할때에는그選擧報告를받기爲하여兩院의議長은國會의集會를公告하여야한다

大統領과副統領의選擧에關한開票報告는特別市와道의選擧委員會가立候補者의得票數를明記하여封緘한後參議院議長에게送付하여야한다

參議院議長은卽時各院의在籍議員過半數가出席한公開된兩院合同會議에서前項의得票數를計算하여當選된大統領과副統領을公表하여야한다

大統領과副統領의當選은最高得票數로써決定한다 最高得票者가2人以上인때에는前項의兩院合同會議에서多數決로써當選者를決定한다

大統領과副統領의選擧에關한事項은法律로써定한다

大統領과副統領은國務總理또는國會議員을兼할수없다

第54條 大統領은就任에際하여兩院合同會議에서左의宣誓를行한다

「나는國憲을遵守하며國民의福利를增進하며國家를保衛하여大統領의職務를誠實히遂行할것을國民에게嚴肅히宣誓한다」

第69條 國務總理는大統領이任命하고國會의承認을얻어야한다

民議院議員總選擧後新國會가開會되었을때에는國務總理任命에對한承認을다시얻어야한다

國務總理가闕位된때에는10日以內에前項의承認을要求하여야한다

國務委員은國務總理의提請에依하여大統領이任免한다

國務委員總數는8人以上15人以內로한다

軍人은現役을免한後가아니면國務總理또는國務委員에任命될수없다

第70條第3項으로다음과같이新設한다.

國務總理와國務委員은國會에對하여國務院의權限에屬하는一般國務에關하여는連帶責任을지고各者의行爲에關하여는個別責任을진다

第70條의2로다음과같이新設한다

民議院에서國務院不信任決議를하였거나民議院議員總選擧後最初에集會된民議院에서信任決議를얻지못한때에는國務院은總辭職을하여야한다

國務院의信任또는不信任決議는그發議로부터24時間以上이經過된後에在籍議員過半數의贊成으로行한다

民議院은國務院의組織完了또는總選擧卽後의信任決議로부터1年以內에는國務院不信任決議를할수없다 但在籍議員3分之2以上의贊成에依한國務院不信任決議는언제든지할수있다

總辭職한國務院은新國務院의組織이完了될때까지그職務를行한다

第73條 行政各部의長은國務委員이어야하며國務總理의提請에依하여大統領이任免한다

國務總理는大統領의命을承하여行政各部長官을統理監督하며行政各部에分擔되지아니한行政事務를擔任한다

(추 49)

第81條 大法院은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命令規則과處分이憲法과法律에違反되는與否를最終的으로審査할權限이있다

法律이憲法에違反되는與否가裁判의前提가되는때에는法院은憲法委員會에提請하여그決定에依하여裁判한다

憲法委員會는副統領을委員長으로하고大法官5人民議院議員3人과參議院議員2人의委員으로構成한다

憲法委員會에서違憲決定을할때에는委員3分之2以上의贊成이있어야한다

憲法委員會의組織과節次는法律로써定한다

第98條 憲法改正의提案은大統領, 民議院의在籍議員3分之2以上또는參議院의在籍議員3分之2以上의贊成으로써한다

憲法改正의提議는大統領이이를公告하여야한다

前項의公告期間은30日以上으로한다

憲法改正의議決은兩院에서各各그在籍議員3分之2以上의贊成으로써한다

憲法改正이議決된때에는大統領은卽時公布한다

附 則 〈檀紀4285年7月4日憲法改正〉

이憲法은公布한날로부터施行한다 但參議院에關한規定과參議院의存在를前提로한規定은參議院이構成된날로부터施行한다

本法施行後參議院이構成될때까지는兩院合同會議에서行할事項은民議院이行하고參議院議長이行할事項은民議院議長이行한다

參議院이構成될때까지는民議院의議決로써國會의議決로한다

이憲法施行時의國會議員은民議院議員으로하고그任期는國會議員의任期의殘期로써終了한다

이憲法이施行된後처음으로選擧된參議院議員은特別市와道마다그得票數의順次에따라第1部, 第2部, 第3部로나눈다

第1部의議員의任期는6年, 第2部의議員의任期는4年, 第3部의議員의任期는2年으로한다

票數가같은때에는年齡順에依한다

●憲法改正〔1954·11·29〕

憲法中다음과같이改正한다

第7條의2 大韓民國의主權의制約또는領土의變更을가져올國家安危에關한重大事項은國會의可決을거친後에國民投票에付하여民議院議員選擧權者3分之2以上의投票와有效投票3分之2以上의贊成을얻어야한다

前項의國民投票의發議는國會의可決이있은後一個月以內에民議院議員選擧權者50萬人以上의贊成으로써한다

國民投票에서贊成을얻지못할때에는第1項의國會의可決事項은遡及하여效力을喪失한다

國民投票의節次에關한事項은法律로써定한다

第33條第2項을다음과같이한다

「參議院議員의任期는6年으로하고3年마다議員의2分之1을改選한다」

第34條 國會의定期會는每年1回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集會한다

第37條第2項을다음과같이한다

「議案에關하여兩院의可否議決이相反할때또는議決內容이一致하지아니할때에는各院의在籍議員過半數가出席한兩院合同會議에서出席議員過半數로써議決한다但豫算案에關하여參議院이民議院과다른議決을하였을때에는民議院의再議에附하고그議決을國會의議決로한다」

第39條第2項과第3項을다음과같이한다

「豫算案은먼저民議院에提出하여야한다」

「法律案은民議院에서否決된때에는參議院또는兩院合同會議에移送할수없다」

第39條第4項으로다음의1項을加한다

「兩院中一院이他院에서移送된議案을받은날로부터國會休會中의期間을除外하고60日以內에議決하지아니할때에는移送한院은그議案이移送을받은院에서否決된것으로看做할수있다」

第40條第2項을다음과같이한다

「移送된法律案에對하여異議가있는때에는大統領은異議書를附하여國會에還付하고國會의再議에附한다 國會에서各院의在籍議員3分之2以上이出席한兩院合同會議에

서出席議員過半數의贊成으로써前과같이可決한때에는그法律案은法律로써確定한다」

第42條의2 參議員은大法官, 檢察總長, 審計院長, 大使, 公使其他法律에依하여指定된公務員의任命에對한認准權을가진다

國會의閉會또는休會中에前項의公務員이任命되었을때에는다음에集會된參議院에서그事後認准을얻어야한다

第44條中「國務總理,」를削除한다

第46條第1項中「國務總理,」를削除하고同條第2項을다음과같이한다

「國會의彈劾訴追는民議院議員30人以上의發議가있어야하며그決議는兩院에서各各그在籍議員過半數의贊成이있어야한다」

第52條中「國務總理가」를「法律이定하는順位에따라國務委員이」로한다

第53條第7項中「國務總理또는」을削除한다

第55條 大統領과副統領의任期는4年으로한다 但再選에依하여1次重任할수있다

大統領이闕位된때에는副統領이大統領이되고殘任期間中在任한다

副統領이闕位된때에는卽時그後任者를選擧하되殘任期間中在任한다

大統領, 副統領이모다闕位된때에는第52條에依한法律이規定한順位에따라國務委員이大統領의權限을代行하되闕位된날로부터3個月以內에大統領과副統領을選擧하여야한다

第56條第2項을削除한다

第66條中「國務總理와」를削除한다

第68條中「國務總理其他의」를削除한다

第69條 國務委員은大統領이任命한다

國務委員總數는8人以上15人以內로한다

軍人은現役을免한後가아니면國務委員에任命될수없다

第70條 大統領은國務會議를召集하고그議長이된다

大統領은必要하다고認定할때에는第52條에依한法律이規定한順位에따라國務委員으로하여금國務會議의議長의職務를代行하게할수있다

第70條의2 民議院에서國務委員에對하여不信任決議를하였을때에는當該國務委員은卽時辭職하여야한다

前項의不信任決議는그發議로부터24時間以上이經過된後에在籍議員過半數의贊成으

(추 49)

로한다

第72條第11號中「國軍總司令官, 國軍參謀總長」을「各軍參謀總長」으로하고第13號中「國務總理또는」을 削除한다

第73條第1項中「國務總理의提請에依하여」를削除하고, 同條第2項을削除한다

第74條中「國務總理또는」과「總理令또는」을削除한다

第83條의2 軍事裁判을管轄하기爲하여軍法會議를둘수있다 但法律이定하는裁判事項의上告審은大法院에서管轄한다

軍法會議의組織, 權限과審判官의資格은法律로써定한다

第85條 鑛物其他重要한地下資源, 水產資源, 水力과經濟上利用할수있는自然力은法律이定하는바에依하여一定한期間그採取, 開發또는利用을特許할수있다

第87條 對外貿易은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國家의統制下에둔다

第88條 國防上또는國民生活上緊切한必要로因하여法律로써特히規定한境遇를除外하고는私營企業을國有또는公有로移轉하거나그經營을統制또는管理할수없다

第89條 第86條의規定에依하여農地를收用하거나前條의規定에依하여私營企業을國有또는公有로移轉할때에는第15條第3項의規定을準用한다

第98條第1項을다음과같이한다

「憲法改正의提案은大統領, 民議院또는參議院의在籍議員3分之1以上또는民議院議員選擧權者50萬人以上의贊成으로써한다」

第98條第5項에다음의但書을加한다

「但第7條의2의境遇에國民投票로써憲法改正이否決되었을때에는그結果가判明된卽時遡及하여效力을喪失한뜻을公布한다」

第98條第6項으로다음1項을加한다

「第1條, 第2條와第7條의2의規定은改廢할수없다」

附 則 〈檀紀4287年11月27日憲法改正〉

이憲法은公布한날로부터施行한다

이憲法이施行된後처음으로選擧될參議院議員은各選擧區마다그得票數의順次에따라第1部, 第2部로均分하고第1部의議員의任期는6年, 第2部의議員의任期는3年으로한다 得票數가같은때에는年齡順에依한다

이憲法公布當時의大統領에對하여는第55條第1項但書의制限을適用하지아니한다

●憲法改正〔1960·6·15〕

大韓民國憲法中다음과같이改正한다

第10條, 第11條中「法律에依하지아니하고는」을削除한다

第13條를다음과같이改正한다

모든國民은言論, 出版의自由와集會, 結社의自由를制限받지아니한다

政黨은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國家의保護를받는다 但政黨의目的이나活動이憲法의民主的基本秩序에違背될때에는政府가大統領의承認을얻어訴追하고憲法裁判所가判決로써그政黨의解散을命한다

第25條中「모든國民은」을「모든國民은20歲에達하면」으로改正한다

第27條第2項을다음과같이新設하고第2項을第3項으로한다

公務員의政治的中立性과身分은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保障된다

第28條第2項을다음과같이改正한다

國民의모든自由와權利는秩序維持와公共福利를爲하여必要한境遇에限하여法律로써制限할수있다 但그制限은自由와權利의本質的인內容을毁損하여서는아니되며言論, 出版에對한許可나檢閱과集會, 結社에對한許可를規定할수없다

第32條第3項을다음과같이改正하고第4項을다음과같이新設한다

民議院議員의定數와選擧에關한事項은法律로써定한다

參議院議員은特別市와道를選擧區로하여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選擧하며그定數는民議院議員定數의4分之1을超過하지못한다

第33條第1項但書를다음과같이新設한다

但民議院이解散된때에는그任期는解散과同時에終了한다

第35條의2를다음과같이新設한다

民議院이解散된때에는解散된날로부터20日以後30日以內에民議院議員의總選擧를實施하여야한다

民議院이解散된때에는參議院은同時에閉會된다 但國務總理는緊急한必要가있을때에는參議院의集會를要求할수있다

第36條第2項을다음과같이改正한다

參議院은議長1人, 副議長1人을選擧한다

第37條第2項, 第3項과第4項을다음과같이改正한다

國會의議決을要하는議案에關하여兩院의議決이一致되지아니할때에는議案을民議院의再議에附하고各院에서議決된것中民議院에서在籍議員過半數의出席과出席議員3分之2以上의贊成으로다시議決된것을國會의議決로한다

豫算案에關하여參議院이民議院과다른議決을하였을때에는民議院의再議에附하고그새로운議決을國會의議決로한다

各院의議長은議決에있어서表決權을가지며可否同數인境遇에決定權을가진다

第38條中「또는兩院合同會議」를削除한다

第39條를다음과같이改正한다

國會議員과政府는法律案을提出할수있다

法律案과豫算案은먼저民議院에提出하여야한다

參議院이國會의議決을要하는議案을받은날로부터60日以內에議決하지아니할때에는이를否決한것으로看做한다 但豫算案에있어서는이期間을20日로한다

第40條를다음과같이改正한다

國會에서議決된法律은政府로移送되어10日以內에大統領이公布하여야한다

法律은特別한規定이없을때에는公布日로부터20日後에效力을發生한다

第42條의2를削除한다

第44條中「國務委員」을「國務總理, 國務委員」으로改正한다

第46條第1項中「大統領, 副統領, 國務委員, 審計院長, 法官」을「大統領, 憲法裁判所審判官, 法官, 中央選擧委員會委員, 審計院長」으로改正한다

第47條를다음과같이改正한다

彈劾訴追의決議를받은者는彈劾判決이있을때까지그權限行使가停止된다

彈劾判決은公職으로부터罷免함에그친다 但이에依하여民事上이나刑事上의責任이免除되는것은아니다

「第4章政府」를「第4章大統領」으로하고「第1節大統領」을削除한다

第51條를다음과같이改正한다

大統領은國家의元首이며國家를代表한다

第52條를다음과같이改正한다

大統領이闕位되거나事故로因하여職務를遂行할수없을때에는參議院議長, 民議院議長, 國務總理의順位로그權限을代行한다

第53條를다음과같이改正한다

大統領은兩院合同會議에서選擧하고在籍國會議員3分之2以上의投票를얻어當選된다

1次投票에서當選者가없을때에는2次投票를行하고2次投票에서도當選者가없을때에는在籍議員3分之2以上의出席과出席議員過半數의投票를얻은者를當選者로한다

大統領은政黨에加入할수없으며大統領職外에公職또는私職에就任하거나營業에從事할수없다

第55條를다음과같이改正한다

大統領의任期는5年으로하고再選에依하여1次에限하여重任할수있다

第56條를다음과같이改正한다

大統領이闕位된때에는卽時그後任者를選擧한다

大統領의任期가滿了되는때에는그任期가滿了되기前30日까지에그後任者를選擧한다

第57條를다음과같이改正한다

內憂, 外患, 天災, 地變또는重大한財政, 經濟上의危機에際하여公共의安寧秩序를維持하기爲하여緊急한措置를할必要가있을때에는大統領은國會의集會를기다릴餘裕가없는때에限하여國務會議의議決에依하여財政上必要한處分을할수있다

前項의處分을執行하기爲하여必要한때에는國務總理는法律의效力을가진命令을發할수있다

第58條를다음과같이改正한다

第57條의處分이나命令은遲滯없이國會에報告하여그承認을얻어야하며民議院이解散된때에는參議院의承認을얻어야한다

前項의承認을얻지못한때에는處分이나命令은그때로부터效力을喪失한다

第59條를다음과같이改正한다

大統領은國務會議의議決에依하여條約을批准하며宣戰布告와講和를行하고外交使節을信任接受한다

第60條中「重要한國務에關하여」를削除한다

第61條第1項을다음과같이改正한다

大統領은憲法과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國軍을統帥한다

第62條를다음과같이改正한다

大統領은憲法과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公務員의任免을確認한다

第63條를다음과같이改正한다

(추 49)

大統領은國務會議의議決에依하여赦免, 減刑과復權을命한다

一般赦免을命함에는國會의同意를얻어야한다

赦免, 減刑과復權에關하여必要한事項은法律로써定한다

第64條를다음과같이改正한다

大統領은國務會議의議決에依하여戒嚴을宣布한다

戒嚴의宣布가不當하다고認定될때에는大統領은國務會議의議決에不拘하고그宣布를拒否할수있다

戒嚴이宣布되었을때에는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國民의權利와行政機關이나法院의權限에關하여特別한措置를할수있다

第65條를다음과같이改正한다

大統領은國務會議의議決에依하여勳章其他榮譽를授與한다

第66條中「關係國務委員」을「國務總理와關係國務委員」으로改正한다

第67條다음에「第5章政府」를插入하고「第2節國務院」을「第1節國務院」으로한다

第68條를다음과같이改正한다

行政權은國務院에屬한다

國務院은國務總理와國務委員으로組織한다

國務院은民議院에對하여連帶責任을진다

第69條를다음과같이改正한다

國務總理는大統領이指名하여民議院의同意를얻어야한다 但大統領이民議院에서同意를얻지못한날로부터5日以內에다시指名하지아니하거나2次에걸쳐民議院이大統領의指名에同意를하지아니한때에는國務總理는民議院에서이를選擧한다

前項의同意나選擧에는民議院議員在籍過半數의投票를얻어야한다

大統領이國務總理를指名한때에는民議院은그指名을받은때로부터24時間以後48時間以內에同意에對한表決을하여야하며第1項但書에依하여國務總理를選擧할때에는그事由가發生한날로부터5日以內에選擧를하여야한다

大統領은民議院議員總選擧後처음으로民議院이集會한날로부터5日以內에國務總理를指名하여야한다

國務委員은國務總理가任免하여大統領이이를確認한다

國務總理와國務委員의過半數는國會議員이어야한다 但民議院이解散된때에는例外로한다

國務委員의數는8人以上15人以內로한다

軍人은現役을免한後가아니면國務委員에任命될수없다

第70條를다음과같이改正한다

國務總理는國務會議를召集하고議長이된다

國務總理는法律에서一定한範圍를定하여委任을받은事項과法律을實施하기爲하여必要한事項에關하여國務會議의議決을거쳐國務院令을發할수있다

國務總理는國務院을代表하여議案을國會에提出하고行政各部를指揮監督한다

國務總理가事故로因하여職務를遂行할수없을때에는法律의定하는順位에따라國務委員이그權限을代行한다

第70條의2를削除하고第71條를다음과같이改正한다

國務院은民議院에서國務院에對한不信任決議案을可決한때에는10日以內에民議院解散을決議하지않는限總辭職하여야한다

國務院은民議院이條約批准에對한同意를否決하거나新年度總豫算案을그法定期日內에議決하지아니한때에는이를國務院에對한不信任決議로看做할수있다

民議院의國務院에對한不信任決議는在籍議員過半數의贊成을얻어야한다

國務院에對한不信任決議案은發議된때로부터24時間以後72時間以內에表決하여야한다 이時間內에表決되지아니한때에는不信任決議案은提出되지아니한것으로看做한다

國務院은國務總理가闕位되거나民議院議員總選擧後처음으로民議院이集會한때에는總辭職하여야한다

第1項과前項의境遇에國務院은後任國務總理가選任될때까지繼續하여그職務를執行한다

第72條第3號中「大統領令案」을「國務院令案」으로改正하고第11號中「大法官」을削除하며第13號를第15號로하고同號中「國務委員」을「國務總理또는國務委員」으로하며第13號와第14號를다음과같이新設한다

13. 民議院解散과國務院總辭職에關한事項

14. 政黨解散에關한訴追

第72條다음의「第3節行政各部」를「第2節行政各部」로한다

第73條中「大統領이」를「國務總理가」로改正한다

第75條第2項을다음과같이新設한다

(추 49)

前項의法律에는警察의中立을保障하기에必要한機構에關하여規定을두어야한다

「제 5 章法院」을「第 7 章法院」으로하고第 6 章을다음과같이新設한다

第6章 中央選擧委員會

第75條의2 選擧의管理를公正하게하기爲하여中央選擧委員會를둔다 中央選擧委員會는大法官中에서互選한3人과政黨에서推薦한6人의委員으로組織하고委員長은大法官인委員中에서互選한다

中央選擧委員會의組織, 權限其他必要한事項은法律로써定한다

第78條를다음과같이改正한다

大法院長과大法官은法官의資格이있는者로써組織되는選擧人團이이를選擧하고大統領이確認한다

前項의選擧人團의定數, 組織과選擧에關하여必要한事項은法律로써定한다

第 1 項以外의法官은大法官會議의決議에따라大法院長이任命한다

第81條第 2 項, 第 3 項, 第 4 項, 第 5 項을削除한다

「第 6 章經濟」를「第 9 章經濟」로하고第 8 章을다음과같이新設한다

第8章 憲法裁判所

第83條의3 憲法裁判所는다음各號의事項을管掌한다

1. 法律의違憲與否審査
2. 憲法에關한最終的解釋
3. 國家機關間의權限爭議
4. 政黨의解散
5. 彈劾裁判
6. 大統領, 大法院長과大法官의選擧에關한訴訟

第83條의4 憲法裁判所의審判官은9人으로한다

審判官은大統領, 大法院, 參議院이各3人式選任한다

審判官의任期는6年으로하고2年마다3人式改任한다

審判官은政黨에加入하거나政治에關與할수없다

法律의違憲判決과彈劾判決은審判官6人以上의贊成이있어야한다

憲法裁判所의組織, 審判官의資格, 任命方法과審判의節次에關하여必要한事項은法

律로써定한다

「第7章財政」을「第10章財政」으로한다

第94條를다음과같이改正한다

國會는會計年度가開始되기까지에豫算을議決하여야한다

國會가前項의期間內에豫算을議決하지아니한때에는政府는國會에서豫算이議決될때까지다음各號의經費를前年度豫算에準하여歲入의範圍內에서支出할수있다

1. 公務員의俸給과事務處理에必要한基本的經費
2. 法律에依하여設置된機關과施設의維持費와法律上支出의義務있는經費
3. 前年度豫算에서承認된繼續事業費

前項의境遇에民議院議員總選擧가實施된때에는政府는다시豫算案을提出하여야하며國會는民議院이最初로集會한날로부터2月以內에豫算을審議決定하여야한다 이境遇에第39條第3項但書의期間은10日로한다

「第8章地方自治」를「第11章地方自治」로한다

第97條第2項을다음과같이新設하고第2項을第3項으로, 第3項을第4項으로한다

地方自治團體의長의選任方法은法律로써定하되적어도市, 邑, 面의長은그住民이直接이를選擧한다

「第9章憲法改正」을「第12章憲法改正」으로한다

「第10章附則」을「附則」으로한다

附 則 〈檀紀4293年6月15日憲法改正〉

이憲法은公布한날로부터施行한다

이憲法中參議院에關한規定은參議院이構成된날로부터施行한다

이憲法施行後參議院이構成될때까지는民議院의議決로써國會의議決로하며參議院의權限에屬하는事項은民議院에서이를代行한다

이憲法施行當時의民議院議員의任期는이憲法施行後처음으로實施되는民議院議員總選擧를實施하는前日까지로한다

이憲法施行後最初의民議院議員總選擧는이憲法施行日로부터45日以內에實施한다

이憲法施行後最初의參議院議員選擧는이憲法施行日로부터6月以內에實施한다

前項의規定에依하여選擧된參議院議員은各選擧區마다그得票數의順次에따라第1部와第2部로均分하고第1部의議員의任期는6年, 第2部의議員의任期는3年으로한다 得票數가같은때에는年齡順에依한다

이憲法施行後最初의大統領은이憲法施行後처음으로集會한民議院에서集會한날로부터5日以內에選擧하고選擧에關하여는第53條의規定을準用한다

前項의規定에依하여選擧된大統領은選擧된날로부터5日以內에國務總理를指名하여야한다

이憲法施行當時의首席國務委員과國務委員은이憲法에依한國務總理와國務委員으로看做하며前項의國務總理가選任될때까지이憲法에依한職務를執行한다

이憲法施行當時의公務員과國營企業體의管理者는이憲法에依하여任命된것으로看做한다

이憲法施行當時의大法院長과大法官의任期는이憲法에依하여大法院長과大法官이選任되는前日까지로한다

이憲法施行當時의大統領令은이憲法에依한國務院令으로看做한다

이憲法에依하여憲法裁判所와中央選擧委員會가構成될때까지는從前의規定에依한憲法委員會, 彈劾裁判所와中央選擧委員會가그職務를行한다

이憲法施行後처음으로選任되는憲法裁判所審判官은選任者의定하는바에따라第1部, 第2部와第3部로區分하고第1部審判官의任期는6年, 第2部審判官의任期는4年, 第3部審判官의任期는2年으로한다

●憲法改正〔1960·11·29〕

憲法中다음과같이改正한다

附則에다음의各項을新設한다

이憲法施行當時의國會는檀紀4293年3月15日에實施된大統領, 副統領選擧에關聯하여不正行爲를한者와그不正行爲에抗議하는國民에對하여殺傷其他의不正行爲를한者를處罰또는檀紀4293年4月26日以前에特定地位에있음을利用하여顯著한反民主行爲를한者의公民權을制限하기爲한特別法을制定할수있으며檀紀4293年4月26日以前에地位또는權力을利用하여不正한方法으로財産을蓄積한者에對한行政上또는刑事上의處理를하기爲하여特別法을制定할수있다

前項의刑事事件을處理하기爲하여特別裁判所와特別檢察部를둘수있다

前2項의規定에依한特別法은이를制定한後다시改正하지못한다

附 則 〈檀紀4293年11月29日公布〉

이憲法은公布한날로부터施行한다

●大韓民國憲法〔1962·12·26〕

前 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의 崇高한 獨立精神을 계승하고 4·19義擧와 5·16革命의 理念에 입각하여 새로운 民主共和國을 建設함에 있어서,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며 모든 社會的 弊習을 타파하고 民主主義 諸制度를 확립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여, 1948年 7月 12日에 制定된 憲法을 이제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1962年 12月 26日

第1章 總 綱

第1條 ①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②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第2條 大韓民國의 國民의 要件은 法律로 정한다.

第3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附屬島嶼로 한다.

第4條 大韓民國은 國際平和의 維持에 노력하고 侵略的戰爭을 否認한다.

第5條 ①이 憲法에 의하여 締結·公布된 條約과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

②外國人에 대하여는 國際法과 條約에 정한 바에 의하여 그 地位를 보장한다.

第6條 ①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이며, 國民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②公務員의 身分과 政治的 中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第7條 ①政黨의 設立은 自由이며, 複數政黨制는 보장된다.

②政黨은 그 組織과 活動이 民主的이어야 하며, 國民의 政治的 意思形成에 參與하는데 필요한 組織을 가져야 한다.

③政黨은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 基本秩

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는 大法院에 그 解散을 提訴할 수 있고, 政黨은 大法院의 判決에 의하여 解散된다.

第2章 國民의 權利와 義務

第8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國家는 國民의 基本的 人權을 最大限으로 보장할 義務를 진다.

第9條 ①모든 國民은 法 앞에 平等하다. 누구든지 性別·宗教 또는 社會的 身分에 의하여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illegible]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

②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할 수 없다.

③勳章등의 榮典은 이를 받은 者에게만 效力이 있고, 어떠한 特權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第10條 ①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逮捕·拘禁·搜索·押收·審問 또는 處罰을 받지 아니하며,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强制勞役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上 자기에게 不利한 陳述을 强要당하지 아니한다.

③逮捕·拘禁·搜索·押收에는 檢察官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發付한 令狀을 提示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인 경우와 長期 3年以上의 刑에 해당하는 罪를 犯하고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事後에 令狀을 請求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逮捕·拘禁을 받은 때에는 즉시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다만, 法律이 정하는 경우에 刑事被告人이 스스로 辯護人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國家가 辯護人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逮捕·拘禁을 받은 때에는 適否의 審査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 私人으로부터 身體의 自由의 不法한 侵害를 받은 때에도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救濟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

⑥被告人의 自白이 拷問·暴行·脅迫·拘束의 부당한 長期化 또는 欺罔 기타의 方法에 의하여 自意로 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被告人의 自白이

그에게 不利한 唯一한 證據인 때에는, 이를 有罪의 證據로 삼거나 이를 理由로 處罰할 수 없다.

第11條 ①모든 國民은 行爲時의 法律에 의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行爲로 訴追되지 아니하며, 同一한 犯罪에 대하여 거듭 處罰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遡及立法에 의하여 參政權의 制限 또는 財産權의 剝奪을 받지 아니한다.

第12條 모든 國民은 居住·移轉의 自由를 가진다.

第13條 모든 國民은 職業選擇의 自由를 가진다.

第14條 모든 國民은 住居의 侵入을 받지 아니한다. 住居에 대한 搜索이나 押收에는 法官의 令狀을 提示하여야 한다.

第15條 모든 國民은 通信의 祕密을 侵害받지 아니한다.

第16條 ①모든 國民은 宗敎의 自由를 가진다.

②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宗敎와 政治는 分離된다.

第17條 모든 國民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第18條 ①모든 國民은 言論·出版의 自由와 集會·結社의 自由를 가진다.

②言論·出版에 대한 許可나 檢閱과 集會·結社에 대한 許可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公衆道德과 社會倫理를 위하여는 映畫나 演藝에 대한 檢閱을 할 수 있다.

③新聞이나 通信의 發行施設基準은 法律로 정할 수 있다.

④屋外集會에 대하여는 그 時間과 場所에 관한 規制를 法律로 정할 수 있다.

⑤言論·出版은 他人의 名譽나 權利 또는 公衆道德이나 社會倫理를 侵害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9條 ①모든 國民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②著作者·發明家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보호한다.

第20條 ①모든 國民의 財産權은 보장된다. 그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 정한다.

②財産權의 行使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의 收用·使用 또는 制限은 法律로써 하되 정당한 補償을 支給하여야 한다.

第21條 모든 國民은 20歲가 되면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員選擧權을 가진다.

第22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擔任權을 가진다.

第23條 ①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機關에 文書로 請願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請願에 대하여 審査할 義務를 진다.

第24條 ①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律에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軍人 또는 軍屬이 아닌 國民은 大韓民國의 領域안에서는 軍事에 관한 間諜罪의 경우와, 哨兵·哨所·有害飮食物供給·捕虜에 관한 罪中 法律에 정한 경우, 및 非常戒嚴이 宣布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軍法會議의 裁判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國民은 신속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刑事被告人은 상당한 理由가 없는 限 지체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第25條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에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6條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損害를 받은 國民은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公務員 자신의 責任은 免除되지 아니한다.

第27條 ①모든 國民은 能力에 따라 균등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모든 國民은 그 보호하는 어린이에게 初等敎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

③義務敎育은 無償으로 한다.

④敎育의 自主性과 政治的 中立性은 보장되어야 한다.

⑤敎育制度와 그 運營에 관한 基本的인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28條 ①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社會的·經濟的 方法으로 勤勞者의 雇傭의 增進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모든 國民은 勤勞의 義務를 진다. 國家는 勤勞의 義務의 內容과 條件을 民主主義原則에따라 法律로 정한다.

③勤勞條件의 基準은 法律로 정한다.

④女子와 少年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第29條 ①勤勞者는 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自主的인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②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로 인정된 者를 제외하고는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질 수 없다.

第30條 ①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社會保障의 增進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第31條 모든 國民은 婚姻의 純潔과 保健에 관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第32條 ①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列擧되지 아니한 理由로 輕視되지 아니한다.

②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限하여 法律로써 制限할 수 있으며, 制限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內容을 侵害할 수 없다.

第33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

第34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의 義務를 진다.

第3章 統治機構

第1節 國 會

第35條 立法權은 國會에 속한다.

第36條 ①國會는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祕密選擧에 의하여 選出된 議員으로 構成한다.

②國會議員의 數는 150人以上 200人以下의 範圍안에서 法律로 정한다.

③國會議員 候補가 되려하는 者는 所屬政黨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國會議員의 選擧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37條 國會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第38條 國會議員은 任期中 黨籍을 離脫하거나 變更한 때 또는 所屬政黨이 解散된 때에는 그 資格이 喪失된다. 다만, 合黨 또는 除名으로 所屬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例外로 한다.

第39條 國會議員은 大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地方議會議員 기타 法律이 정하는 公私의 職을 겸할 수 없다.

第40條 國會議員은 그 地位를 濫用하여 國家·公共團體 또는 法律이 정하는 企業體와의 契約 또는 그 處分에 의하여 財産上의 權利나 利益 또는 職位를 取得하거나 他人을 위하여 그 取得을 알선할 수 없다.

第41條 ①國會議員은 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會期中 國會의 同意 없이 逮

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한다.

②國會議員이 會期前에 逮捕 또는 拘禁된 때에는 現行犯人이 아닌 限 國會의 要求가 있으면 會期中 釋放된다.

第42條 國會議員은 國會에서 職務上 행한 發言과 表決에 관하여 國會外에서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43條 ①國會의 定期會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年 1回 集會된다.

②緊急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 또는 國會在籍議員 4分의 1以上의 要求에 의하여 國會議長은 國會의 臨時會의 集會를 公告한다.

③定期會의 會期는 120日을, 臨時會의 會期는 30日을 초과할 수 없다.

第44條 國會는 議長 1人과 副議長 2人을 選擧한다.

第45條 國會는 憲法 또는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그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可否 同數인 때에는 否決된 것으로 본다.

第46條 國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47條 國會에 提出된 法律案 기타의 議案은 會期中에 議決되지 못한 理由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國會議員의 任期가 滿了된 때에는 例外로 한다.

第48條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提出할 수 있다.

第49條 ①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은 政府에 移送되어 15日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②法律案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前項의 期間안에 異議書를 붙여 國會로 還付하고 그 再議를 要求할 수 있다. 國會의 閉會中에도 또한 같다.

③大統領은 法律案의 一部에 대하여, 또는 法律案을 修正하여 再議를 要求할 수 없다.

④再議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國會는 再議에 붙이고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으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⑤大統領이 第1項의 期間안에 公布나 再議의 要求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⑥大統領은 第4項과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確定된 法律을 지체없이 公布하여

야 한다. 前項에 의하여 法律이 確定된 後 또는 第4項에 의한 確定法律이 政府에 移送된 後 5日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하지 아니할 때에는 國會議長이 이를 公布한다.

⑦法律은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公布한 날로부터 20日을 경과함으로써 效力을 발생한다.

第50條 ①國會는 國家의 豫算案을 審議·確定한다.

②政府는 會計年度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會計年度 開始 120日前까지 國會에 提出하고, 國會는 會計年度 開始 30日前까지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③前項의 期間안에 豫算案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政府는 國會에서 豫算案이 議決될때까지 다음 各號의 經費를 歲入의 範圍안에서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支出할 수 있다.

1. 公務員의 報酬와 事務處理에 필요한 基本經費
2. 憲法이나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機關 또는 施設의 維持費와 法律上 支出의 義務가 있는 經費
3. 이미 豫算上 承認된 繼續費

第51條 ①한 會計年度를 넘어 계속하여 支出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政府는 年限을 정하여 繼續費로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豫測할 수 없는 豫算外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충당하기 위한 豫備費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豫備費의 支出은 次期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52條 豫算成立後에 생긴 事由로 인하여 豫算에 變更을 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政府는 追加更正豫算案을 編成하여 國會에 提出할 수 있다.

第53條 國會는 政府의 同意없이 政府가 提出한 支出豫算 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새 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第54條 國債를 모집하거나 豫算外에 國家의 負擔이 될 契約을 締結하려 할 때에는, 政府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第55條 租稅의 種目과 稅率은 法律로 정한다.

第56條 ①國會는 相互援助 또는 安全保障에 관한 條約, 國際組織에 관한 條約, 通商條約, 漁業條約, 講和條約, 國家나 國民에게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條約, 外國軍隊의 地位에 관한 條約 또는 立法事項에 관한 條約의 締結·批准에 대한 同

意權을 가진다.

②宣戰布告, 國軍의 外國에의 派遣 또는 外國軍隊의 大韓民國領域안에서의 駐留에 대하여도 國會는 同意權을 가진다.

第57條 國會는 國政을 監査하며, 이에 필요한 書類의 提出, 證人의 出席과 證言이나 意見의 陳述을 要求할 수 있다. 다만, 裁判과 進行中인 犯罪搜査·訴追에 간섭할 수 없다.

第58條 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國會나 그 委員會에 출석하여 國政處理狀況을 보고하거나 意見을 陳述하고 質問에 응답할 수 있으며, 國會나 그 委員會 또는 國會議員 30人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出席·答辯하여야 한다.

第59條 ①國會는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②前項의 建議는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③第1項과 第2項에 의한 建議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60條 ①國會는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議事와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②國會는 議員의 資格을 審査하며 議員을 懲戒할 수 있다.

③議員을 除名하려면 在籍議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④第2項과 第3項의 處分에 대하여는 法院에 提訴할 수 없다.

第61條 ①大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法官·中央選擧管理委員會委員·監査委員 기타 法律에 정한 公務員이 그 職務執行에 있어서 憲法이나 法律을 違背한 때에는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議決할 수 있다.

②前項의 彈劾訴追는 國會議員 30人以上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議決은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③彈劾訴追의 議決을 받은 者는 彈劾決定이 있을 때까지 그 權限行使가 정지된다.

第62條 ①彈劾事件을 審判하기 위하여 彈劾審判委員會를 둔다.

②彈劾審判委員會는 大法院長을 委員長으로 하고 大法院判事 3人과 國會議員 5人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다만, 大法院長을 審判할 경우에는 國會議長이 委員長이 된다.

③彈劾決定에는 構成員 6人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④彈劾決定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지는 아니한다.

⑤彈劾審判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2節 政 府

第1款 大統領

第63條 ①行政權은 大統領을 首班으로 하는 政府에 속한다.

②大統領은 外國에 대하여 國家를 代表한다.

第64條 ①大統領은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祕密選擧에 의하여 選出한다. 다만, 大統領이 闕位된 경우에 殘任 期間이 2年未滿인 때에는 國會에서 選擧한다.

②大統領으로 選擧될 수 있는 者는 國會議員의 被選擧權이 있고 選擧日 現在 계속하여 5年以上 國內에 居住하고 40歲에 達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公務로 外國에 派遣된 期間은 國內 居住期間으로 본다.

③大統領候補가 되려하는 者는 所屬政黨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大統領選擧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65條 ①國民이 大統領을 選擧하는 경우에 最高得票者가 2人以上인 때에는 國會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출석한 公開會議에서 多數票를 얻은 者를 當選者로 한다.

②大統領 候補者가 1人일 때에는 그 得票數가 選擧權者 總數의 3分의 1以上이 아니면 大統領으로 當選될 수 없다.

第66條 ①國會가 大統領을 選擧하는 경우에는 在籍議員 3分의 2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을 얻은 者를 大統領 當選者로 한다.

②前項의 得票者가 없는 때에는 2次 投票를 하고, 2次 投票에도 前項의 得票者가 없는 때에는 最高得票者가 1人이면 最高得票者와 次點者에 대하여, 最高得票者가 2人以上이면 最高得票者에 대하여, 決選投票를 함으로써 多數得票者를 大統領 當選者로 한다.

第67條 ①大統領의 任期가 滿了되는 때에는 任期滿了 70日 乃至 40日前에 後任者를 選擧한다.

②大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즉시 後任者를 選擧한다. 大統領 當選者가 死亡하거나 判決 기타의 事由로 그 資格을 喪失한 때에도 또한 같다.

第68條 ①大統領은 就任에 즈음하여 다음의 宣誓를 한다.

"나는 國憲을 遵守하고 國家를 保衛하며 國民의 自由와 福利의 增進에 노력하여

大統領으로서의 職責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國民앞에 엄숙히 宣誓합니다."

②前項의 宣誓에는 國會議員과 大法院의 法官이 참석한다.

第69條 ①大統領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②大統領이 闕位된 경우의 後任者는 前任者의 殘任期間中 在任한다.

③大統領은 1次에 限하여 重任할 수 있다.

第70條 大統領이 闕位되거나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國務總理, 法律에 정한 國務委員의 順位로 그 權限을 代行한다.

第71條 大統領은 條約을 締結·批准하고 外交使節을 信任接受 또는 派遣하며 宣戰布告와 講和를 한다.

第72條 ①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軍을 統帥한다.

②國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로 정한다.

第73條 ①內憂·外患·天災·地變 또는 중대한 財政·經濟上의 危機에 있어서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緊急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限하여, 大統領은 最少限으로 필요한 財政·經濟上의 處分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發할 수 있다.

②國家의 安危에 관계되는 중대한 交戰狀態에 있어서 國家를 保衛하기 위하여 緊急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가 불가능한 때에 限하여, 大統領은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發할 수 있다.

③第1項과 第2項의 命令 또는 處分은 지체없이 國會에 보고하여 그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④前項의 承認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命令 또는 處分은 그 때부터 效力을 喪失한다. 다만, 그 命令에 의하여 改正 또는 廢止되었던 法律은 그 命令이 承認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效力을 회복한다.

⑤大統領은 第3項과 第4項의 事由를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第74條 大統領은 法律에서 具體的으로 範圍를 정하여 委任받은 事項과 法律을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事項에 관하여 大統領令을 發할 수 있다.

第75條 ①大統領은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兵力으로써 軍事上의 필요 또는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戒嚴을 宣布할 수 있다.

②戒嚴은 非常戒嚴과 警備戒嚴으로 한다.

③戒嚴이 宣布된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令狀制度,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 政府나 法院의 權限에 관하여 특별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④戒嚴을 宣布한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國會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國會가 戒嚴의 解除를 要求한 때에는 大統領은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第76條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員을 任命한다.

第77條 ①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赦免·減刑·復權을 命할 수 있다.

②一般赦免을 命하려면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赦免·減刑·復權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78條 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勳章 기타의 榮典을 수여한다.

第79條 大統領은 國會에 출석하여 發言하거나 書翰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第80條 大統領의 國法上 行爲는 文書로써 하며, 이 文書에는 國務總理와 關係國務委員이 副署한다. 軍事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第81條 大統領은 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 各部의 長 기타 法律이 정하는 公私의 職을 겸하거나 營業에 종사할 수 없다.

第82條 大統領은 內亂 또는 外患의 罪를 犯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職中 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第2款 國務會議

第83條 ①國務會議는 政府의 權限에 속하는 중요한 政策을 審議한다.

②國務會議는 大統領·國務總理와 10人以上 20人以下의 國務委員으로 構成한다.

第84條 ①國務總理는 大統領이 任命하고, 國務委員은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으로 任命될 수 없다.

③國務總理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第85條 ①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長이 된다.

②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補佐하고 國務會議의 副議長이 된다.

第86條 다음 事項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1. 國政의 基本的計劃과 政府의 一般政策
2. 宣戰·講和 기타 중요한 對外政策
3. 條約案·法律案과 大統領令案

4. 豫算案·決算·國有財産處分의 基本計劃, 國家의 負擔이 될 契約 기타 財政에 관한 重要事項
5. 戒嚴과 解嚴
6. 軍事에 관한 重要事項
7. 國會의 臨時會 集會의 要求
8. 榮典授與
9. 赦免·減刑과 復權
10. 行政各部間의 權限의 劃定
11. 政府안의 權限의 委任 또는 配定에 관한 基本計劃
12. 國政處理 狀況의 評價·分析
13. 行政各部의 중요한 政策의 樹立과 調整
14. 政黨解散의 提訴
15. 政府에 提出 또는 廻付된 政府의 政策에 관계되는 請願의 審査
16. 檢察總長·國立大學校總長·大使·各軍參謀總長·海兵隊司令官·公使 기타 法律이 정한 公務員과 중요한 國營企業體管理者의 任命
17. 기타 大統領·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提出한 事項

第87條 ①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되는 對外政策·軍事政策과 國內政策의 樹立에 관하여 國務會議의 審議에 앞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安全保障會議를 둔다.

②國家安全保障會議는 大統領이 主宰한다.

③國家安全保障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3款 行政各部

第88條 行政各部의 長은 國務委員中에서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89條 國務總理는 行政에 관하여 大統領의 命을 받아 行政各部를 統轄한다.

第90條 國務總理 또는 行政各部의 長은 所管事務에 관하여 法律이나 大統領令의 委任 또는 職權으로 總理令 또는 部令을 發할 수 있다.

第91條 行政各部의 設置·組織과 職務範圍는 法律로 정한다.

第4款 監査院

第92條 國家의 歲入·歲出의 決算, 國家 및 法律에 정한 團體의 會計 檢査와 行政機關 및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監察을 하기 위하여 大統領所屬下에 監査院을 둔

다.

第93條 ①監査院은 院長을 포함한 5人以上 11人以下의 監査委員으로 構成한다.

②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하며,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되 1次에 限하여 連任될 수 있다.

③院長이 闕位된 경우에 任命된 後任者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④監査委員은 院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며,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되 法律이 정하는 바에 依하여 連任될 수 있다.

第94條 監査院은 歲入·歲出의 決算을 每年 檢査하여 大統領과 次年度 國會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第95條 監査院의 組織·職務範圍·監査委員의 資格·監査對象公務員의 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3節 法 院

第96條 ①司法權은 法官으로 構成된 法院에 속한다.

②法院은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各級法院으로 組織된다.

③法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第97條 ①大法院에 部를 둘 수 있다.

②大法院의 法官의 數는 16人以下로 한다.

③大法院과 各級法院의 組織은 法律로 정한다.

第98條 法官은 이 憲法과 法律에 의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한다.

第99條 ①大法院長인 法官은 法官推薦會議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國會의 同意를 얻어 任命한다. 大統領은 法官推薦會議의 提請이 있으면 國會에 同意를 要請하고, 國會의 同意를 얻으면 任命하여야 한다.

②大法院判事인 法官은 大法院長이 法官推薦會議의 同意를 얻어 提請하고 大統領이 任命한다. 이 경우에 提請이 있으면 大統領은 이를 任命하여야 한다.

③大法院長과 大法院判事가 아닌 法官은 大法院判事會議의 議決을 거쳐 大法院長이 任命한다.

④法官推薦會議는 法官 4人, 辯護士 2人, 大統領이 指名하는 法律學敎授 1人, 法務部長官과 檢察總長으로 構成한다.

⑤法官推薦會議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100條 ①大法院長인 法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連任될 수 없다.

②法官의 任期는 10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될 수 있다.

③法官의 停年은 65歲로 한다.

第101條 ①法官은 彈劾 또는 刑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하며, 懲戒處分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停職·減俸 또는 불리한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②法官이 중대한 心身上의 障害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退職하게 할 수 있다.

第102條 ①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된 때에는 大法院은 이를 最終的으로 審査할 權限을 가진다.

②命令·規則·處分이 憲法이나 法律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된 때에는 大法院은 이를 最終的으로 審査할 權限을 가진다.

第103條 政黨解散을 命하는 判決은 大法院 法官 定數의 5分의 3以上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第104條 大法院은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訴訟에 관한 節次, 法院의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105條 裁判의 審理와 判決은 公開한다. 다만, 審理는 安寧秩序를 방해하거나 善良한 風俗을 害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法院의 決定으로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106條 ①軍事裁判을 管轄하기 위하여 特別法院으로서 軍法會議를 둘 수 있다.

②軍法會議의 上告審은 大法院에서 管轄한다.

③非常戒嚴下의 軍事裁判은 軍人·軍屬의 犯罪나 軍事에 관한 間諜罪의 경우와, 哨兵·哨所·有害飮食物供給·捕虜에 관한 罪中 法律에 정한 경우에 限하여 單審으로 할 수 있다.

第4節 選擧管理

第107條 ①選擧管理의 公正을 期하기 위하여 選擧管理委員會를 둔다.

②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大統領이 任命하는 2人, 國會에서 選出하는 2人과 大法院 判事會議에서 選出하는 5人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委員長은 委員中에서 互選한다.

③委員의 任期는 5年으로 하며 連任될 수 있다.

④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⑤委員은 彈劾 또는 刑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⑥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法令의 範圍안에서 選擧의 管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⑦各級選擧管理委員會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108條 ①選擧運動은 各級選擧管理委員會의 管理下에 法律에 정한 範圍안에서 하되 균등한 機會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選擧에 관한 經費는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負擔시킬 수 없다.

第5節 地方自治

第109條 ①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利에 관한 事務를 處理하고 財産을 管理하며 法令의 範圍안에서 自治에 관한 規定을 制定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의 種類는 法律로 정한다.

第110條 ①地方自治團體에는 議會를 둔다.

②地方議會의 組織·權限·議員選擧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任方法 기타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運營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4章 經 濟

第111條 ①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個人의 經濟上의 自由와 創意를 존중함을 基本으로 한다.

②國家는 모든 國民에게 生活의 基本的 需要를 충족시키는 社會正義의 실현과 균형있는 國民經濟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範圍안에서 經濟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한다.

第112條 鑛物 기타 중요한 地下資源·水産資源·水力과 經濟上 利用할 수 있는 自然力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一定한 期間 그 採取·開發 또는 利用을 特許할 수 있다.

第113條 農地의 小作制度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第114條 國家는 農地와 山地의 效率的 利用을 위하여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制限과 義務를 課할 수 있다.

第115條 國家는 農民·漁民과 中小企業者의 自助를 基盤으로 하는 協同組合을 육성하고 그 政治的 中立性을 보장한다.

第116條 國家는 對外貿易을 육성하며 이를 規制·調整할 수 있다.

第117條 國防上 또는 國民經濟上 緊切한 필요로 인하여 法律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그 經營을 統制 또는 管理할 수 없다.

第118條 ①國民經濟의 發展과 이를 위한 科學振興에 관련되는 중요한 政策樹立에 관하여 國務會議의 審議에 앞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經濟·科學審議會議를 둔다.

②經濟·科學審議會議는 大統領이 主宰한다.

③經濟·科學審議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5章 憲法改正

第119條 ①憲法改正의 提案은 國會의 在籍議員 3分의 1以上 또는 國會議員選擧權者 50萬人以上의 贊成으로써 한다.

②提案된 憲法改正案은 大統領이 30日以上의 期間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120條 ①國會는 憲法改正案이 公告된 날로부터 60日以內에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②憲法改正案에 대한 國會의 議決은 在籍議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第121條 ①憲法改正案은 國會가 議決한 後 60日以內에 國民投票에 붙여 國會議員選擧權者 過半數의 投票와 投票者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②憲法改正案이 前項의 贊成을 얻은 때에는 憲法改正은 確定되며 大統領은 즉시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

附 則

第1條 ①이 憲法은 이 憲法에 의한 國會가 처음으로 集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이 憲法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法律의 制定과 이 憲法에 의한 大統領·國會議員의 選擧 기타 準備는 이 憲法施行前에 할 수 있다.

②國家再建非常措置法은 이 憲法의 施行과 동시에 그 效力을 喪失한다.

第2條 이 憲法에 의한 最初의 大統領과 國會議員의 選擧 및 最初의 國會의 集會는 이 憲法의 公布日로부터 1年以內에 한다. 이에 의하여 選擧된 大統領과 國會議員의 任期는 最初의 國會의 集會日로부터 開始되고 1967年 6月 30日에 終了된다.

第3條 國家再建非常措置法에 의거한 法令과 條約은 이 憲法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限 그 效力을 持續한다.

第4條 ①特殊犯罪處罰에關한特別法·不正選擧關聯者處罰法·政治活動淨化法 및 不正蓄財處理法과 이에 관련되는 法律은 그 效力을 持續하며 이에 대하여 異議를 할 수 없다.

②政治活動淨化法 및 不正蓄財管理法과 이에 관련되는 法律은 이를 改廢할 수 없다.

第5條 國家再建非常措置法 또는 이에 의거한 法令에 의하여 행하여진 裁判·豫算 또는 處分은 그 效力을 持續하며 이 憲法을 理由로 提訴할 수 없다.

第6條 이 憲法施行當時의 公務員과 政府가 任命한 企業體의 任員은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憲法에 의하여 選任方法이 變更된 公務員은 이 憲法에 의하여 後任者가 選任될 때까지 그 職務를 행한다.

第7條 ①이 憲法施行當時에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 設置될 機關의 權限에 속하는 職務를 행하고 있는 機關은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운 機關이 設置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職務를 행한다.

②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 設置되는 機關은 이 憲法施行後 1年以內에 構成되어야 한다.

③이 憲法에 의한 最初의 地方議會의 構成時期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第8條 國土收復後의 國會議員의 數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第9條 이 憲法施行當時의 大統領令·國務院令과 閣令은 이 憲法에 의한 大統領令으로 본다.

●憲法改正〔1969·10·21〕

憲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6條第2項 "國會議員의 數는 150人以上 200人以下의 範圍안에서 法律로 정한다"를 "國會議員의 數는 150人以上 250人以下의 範圍안에서 法律로 정한다"로 한다.

第39條 "國會議員은 大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地方議會議員 기타 法律이 정하는 公私의 職을 겸할 수 없다"를 "國會議員은 法律이 정하는 公私의 職을 겸할 수 없다"로 한다.

第61條第2項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大統領에 대한 彈劾訴追는 國會議員 50人以上의 發議와 在籍議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69條第3項 "大統領은 1次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를 "大統領의 계속 在任은 3期에 限한다"로 한다.

附 則

이 憲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大韓民國憲法〔1972·12·27〕

前 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의 崇高한 獨立精神과 4.19義擧 및 5.16革命의 理念을 계승하고 祖國의 平和的 統一의 歷史的 使命에 입각하여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民主共和國을 建設함에 있어서,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하게 하며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 7月 12日에 制定되고 1962年 12月 26日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1972年 11月 24日

第1章 總 綱

第1條 ①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②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國民은 그 代表者나 國民投票에 의하여 主權을 행사한다.

第2條 大韓民國의 國民의 要件은 法律로 정한다.

第3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附屬島嶼로 한다.

第4條 大韓民國은 國際平和의 維持에 노력하고 侵略的 戰爭을 否認한다.

第5條 ①이 憲法에 의하여 締結·公布된 條約과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

②外國人에 대하여는 國際法과 條約에 정한 바에 의하여 그 地位를 보장한다.

第6條 ①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이며, 國民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②公務員의 身分과 政治的 中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第7條 ①政黨의 設立은 自由이며, 複數政黨制는 보장된다.

②政黨은 그 組織과 活動이 民主的이어야 하며, 國民의 政治的 意思形成에 參與

하는데 필요한 組織을 가져야 한다.

③政黨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되거나 國家의 存立에 危害가 될 때에는 政府는 憲法委員會에 그 解散을 提訴할 수 있고, 政黨은 憲法委員會의 決定에 의하여 解散된다.

第2章 國民의 權利와 義務

第8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國家는 國民의 基本的 人權을 最大限으로 보장할 義務를 진다.

第9條 ①모든 國民은 法 앞에 平等하다. 누구든지 性別·宗教 또는 社會的 身分에 의하여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

②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할 수 없다.

③勳章등의 榮典은 이를 받은 者에게만 效力이 있고, 어떠한 特權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第10條 ①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逮捕·拘禁·押收·搜索·審問·處罰·强制勞役과 保安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上 자기에게 不利한 陳述을 强要당하지 아니한다.

③逮捕·拘禁·押收·搜索에는 檢事의 要求에 의하여 法官이 發付한 令狀을 提示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인 경우와 罪를 犯하고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事後에 令狀을 要求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逮捕·拘禁을 받은 때에는 즉시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다만, 法律이 정하는 경우에 刑事被告人이 스스로 辯護人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國家가 辯護人을 붙인다.

第11條 ①모든 國民은 行爲時의 法律에 의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行爲로 訴追되지 아니하며, 同一한 犯罪에 대하여 거듭 處罰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遡及立法에 의하여 參政權의 制限 또는 財産權의 剝奪을 받지 아니한다.

第12條 모든 國民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居住·移轉의 自由를 制限받지 아니한다.

第13條 모든 國民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職業選擇의 自由를 制限받지 아니한다.

第14條 모든 國民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住居의 自由를 侵害받지 아니한다. 住居에 대한 押收나 搜索에는 檢事의 要求에 의하여 法官이 發付한 令狀을 提示하여야 한다.

第15條 모든 國民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通信의 祕密을 侵害받지 아니한다.

第16條 ①모든 國民은 宗敎의 自由를 가진다.

②國敎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宗敎와 政治는 分離된다.

第17條 모든 國民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第18條 모든 國民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를 制限받지 아니한다.

第19條 ①모든 國民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②著作者·發明家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보호한다.

第20條 ①모든 國民의 財産權은 보장된다. 그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 정한다.

②財産權의 行使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의 收用·使用 또는 制限 및 그 補償의 基準과 方法은 法律로 정한다.

第21條 모든 國民은 20歲가 되면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選擧權을 가진다.

第22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擔任權을 가진다.

第23條 ①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機關에 文書로 請願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請願에 대하여 審査할 義務를 진다.

第24條 ①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律에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軍人 또는 軍屬이 아닌 國民은 大韓民國의 領域안에서는 軍事에 관한 間諜罪의 경우와, 哨兵·哨所·有害飮食物供給·捕虜에 관한 罪中 法律에 정한 경우 및 非常戒嚴이 宣布되거나 大統領이 法院의 權限에 관하여 緊急措置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軍法會議의 裁判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國民은 신속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刑事被告人은 상당한 理由가 없는 限 지체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第25條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에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6條 ①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損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公務員 자신의 責任은 免除되지 아니한다.

②軍人·軍屬·警察公務員 기타 法律로 정한 者가 戰鬪·訓練등 職務執行과 관련하여 받은 損害에 대하여는 法律이 정한 報償 이외에 國家나 公共團體에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賠償은 請求할 수 없다.

第27條 ①모든 國民은 能力에 따라 균등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모든 國民은 그 보호하는 子女에게 적어도 初等敎育과 法律이 정하는 敎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

③義務敎育은 無償으로 한다.

④敎育의 自主性과 政治的 中立性은 보장되어야 한다.

⑤敎育制度와 그 運營에 관한 基本的인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28條 ①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社會的·經濟的 方法으로 勤勞者의 雇傭의 增進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모든 國民은 勤勞의 義務를 진다. 國家는 勤勞의 義務의 內容과 條件을 民主主義原則에 따라 法律로 정한다.

③勤勞條件의 基準은 法律로 정한다.

④女子와 少年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第29條 ①勤勞者의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정하는 範圍안에서 보장된다.

②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로 인정된 者를 제외하고는 團結權·團體交涉權 또는 團體行動權을 가질 수 없다.

③公務員과 國家·地方自治團體·國營企業體·公益事業體 또는 國民經濟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事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制限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30條 ①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社會保障의 增進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第31條 모든 國民은 婚姻의 純潔과 保健에 관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第32條 ①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列擧되지 아니한 理由로 輕視되지 아니한다.

②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制限하는 法律의 制定은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限한다.

第33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

第34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의 義務를 진다.

第3章 統一主體國民會議

第35條 統一主體國民會議는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推進하기 위한 온 國民의 總意에 의한 國民的 組織體로서 祖國統一의 神聖한 使命을 가진 國民의 主權的 受任機關이다.

第36條 ①統一主體國民會議는 國民의 直接選擧에 의하여 選出된 代議員으로 構成한다.

②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의 數는 2,000人以上 5,000人以下의 範圍안에서 法律로 정한다.

③大統領은 統一主體國民會議의 議長이 된다.

④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의 選擧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37條 ①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으로 選擧될 수 있는 者는 國會議員의 被選擧權이 있고 選擧日 現在 30歲에 達한 者로서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하여 國民主權을 성실히 行使할 수 있는 者라야 한다.

②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으로 選擧될 수 있는 者의 資格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③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은 政黨에 加入할 수 없으며, 國會議員과 法律이 정하는 公職을 兼할 수 없다.

④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의 任期는 6年으로 한다.

第38條 ①大統領은 統一에 관한 重要政策을 決定하거나 變更함에 있어서, 國論統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統一主體國民會議의 審議에 붙일 수 있

다.

②第1項의 경우에 統一主體國民會議에서 在籍代議員 過半數의 贊成을 얻은 統一政策은 國民의 總意로 본다.

第39條 ①大統領은 統一主體國民會議에서 討論없이 無記名投票로 選擧한다.

②統一主體國民會議에서 在籍代議員 過半數의 贊成을 얻은 者를 大統領當選者로 한다.

③第2項의 得票者가 없는 때에는 2次 投票를 하고, 2次 投票에도 第2項의 得票者가 없는 때에는 最高得票者가 1人이면 最高得票者와 次點者에 대하여, 最高得票者가 2人以上이면 最高得票者에 대하여, 決選投票를 함으로써 多數得票者를 大統領當選者로 한다.

第40條 ①統一主體國民會議는 國會議員 定數의 3分의 1에 해당하는 數의 國會議員을 選擧한다.

②第1項의 國會議員의 候補者는 大統領이 一括 推薦하며, 候補者 全體에 대한 贊反을 投票에 붙여 在籍代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代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當選을 決定한다.

③第2項의 贊成을 얻지 못한 때에는 大統領은 當選의 決定이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候補者의 全部 또는 一部를 變更한 候補者名簿를 다시 作成하여 統一主體國民會議에 提出하고 그 選擧를 要求하여야 한다.

④大統領이 第2項의 候補者를 推薦하는 경우에, 統一主體國民會議에서 選擧할 國會議員 定數의 5分의 1의 範圍안에서 順位를 정한 豫備候補者名簿를 提出하여 第2項의 議決을 얻으면, 豫備候補者는 名簿에 記載된 順位에 따라 闕位된 統一主體國民會議選出 國會議員의 職을 承繼한다.

第41條 ①統一主體國民會議는 國會가 發議·議決한 憲法改正案을 最終的으로 議決·確定한다.

②第1項의 議決은 在籍代議員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第42條 統一主體國民會議의 組織·運營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4章 大統領

第43條 ①大統領은 國家의 元首이며, 外國에 대하여 國家를 代表한다.

②大統領은 國家의 獨立·領土의 保全·國家의 繼續性과 憲法을 守護할 責務를

진다.

③大統領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성실한 義務를 진다.

④行政權은 大統領을 首班으로 하는 政府에 속한다.

第44條 大統領으로 選擧될 수 있는 者는 國會議員의 被選擧權이 있고 選擧日 現在 계속하여 5年以上 國內에 居住하고 40歲에 達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公務로 外國에 派遣된 期間은 國內居住期間으로 본다.

第45條 ①大統領의 任期가 滿了되는 때에는 統一主體國民會議는 늦어도 任期滿了 30日前에 後任者를 選擧한다.

②大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統一主體國民會議는 3月以內에 後任者를 選擧한다. 다만, 殘任期間이 1年未滿인 때에는 後任者를 選擧하지 아니한다.

③大統領이 闕位된 경우의 後任者는 前任者의 殘任期間 中 在任한다.

第46條 大統領은 就任에 즈음하여 다음의 宣誓를 한다.

"나는 國憲을 遵守하고 國家를 保衛하며 國民의 自由와 福利의 增進에 노력하고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하여 大統領으로서의 職責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國民 앞에 嚴肅히 宣誓합니다."

第47條 大統領의 任期는 6年으로 한다.

第48條 大統領이 闕位되거나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國務總理, 法律에 정한 國務委員의 順位로 그 權限을 代行한다.

第49條 大統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國家의 중요한 政策을 國民投票에 붙일 수 있다.

第50條 大統領은 條約을 締結·批准하고 外交使節을 信任·接受 또는 派遣하며 宣戰布告와 講和를 한다.

第51條 ①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軍을 統帥한다.

②國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로 정한다.

第52條 大統領은 法律에서 具體的으로 範圍를 정하여 委任받은 事項과 法律을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事項에 관하여 大統領令을 發할 수 있다.

第53條 ①大統領은 天災·地變 또는 重大한 財政·經濟上의 危機에 處하거나,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公共의 安寧秩序가 重大한 威脅을 받거나 받을 憂慮가 있어, 신속한 措置를 할 필요가 있다고 判斷할 때에는 內政·外交·國防·經濟·財政·司法등 國政全般에 걸쳐 필요한 緊急措置를 할 수 있다.

②大統領은 第1項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憲法에 規定되어 있는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暫定的으로 정지하는 緊急措置를 할 수 있고, 政府나 法院의 權限에 관하여 緊急措置를 할 수 있다.

③第1項과 第2項의 緊急措置를 한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國會에 통고하여야 한다.

④第1項과 第2項의 緊急措置는 司法的 審査의 對象이 되지 아니한다.

⑤緊急措置의 原因이 消滅한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⑥國會는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緊急措置의 解除를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으며, 大統領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54條 ①大統領은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兵力으로써 軍事上의 필요 또는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戒嚴을 宣布할 수 있다.

②戒嚴은 非常戒嚴과 警備戒嚴으로 한다.

③非常戒嚴이 宣布된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令狀制度,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 政府나 法院의 權限에 관하여 특별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④戒嚴을 宣布한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國會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國會가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戒嚴의 解除를 要求한 때에는 大統領은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第55條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員을 任命한다.

第56條 ①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赦免·減刑·復權을 命할 수 있다.

②一般赦免을 命하려면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赦免·減刑·復權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57條 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勳章 기타의 榮典을 수여한다.

第58條 大統領은 國會에 출석하여 發言하거나 書翰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第59條 ①大統領은 國會를 解散할 수 있다.

②國會가 解散된 경우 國會議員總選擧는 解散된 날로부터 30日以後 60日以前에 實施한다.

第60條 大統領의 國法上 行爲는 文書로써 하며, 이 文書에는 國務總理와 關係國務委員이 副署한다. 軍事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第61條 大統領은 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 기타 法律이 정하는 公私의 職을 兼할 수 없다.

第62條 大統領은 內亂 또는 外患의 罪를 犯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職中 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第5章 政 府

第1節 國務總理와 國務委員

第63條 ①國務總理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補佐하고 行政에 관하여 大統領의 命을 받아 行政各部를 統轄한다.

③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總理로 任命될 수 없다.

第64條 ①國務委員은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國務委員은 國政에 관하여 大統領을 補佐하며 國務會議의 構成員으로서 國政을 審議한다.

③國務總理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④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委員으로 任命될 수 없다.

第2節 國務會議

第65條 ①國務會議는 政府의 權限에 속하는 중요한 政策을 審議한다.

②國務會議는 大統領·國務總理와 15人以上 25人以下의 國務委員으로 構成한다.

③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長이 되고, 國務總理는 副議長이 된다.

第66條 다음 事項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1. 國政의 基本的計劃과 政府의 一般政策
2. 宣戰·講和 기타 중요한 對外政策
3. 憲法改正案·國民投票案·條約案·法律案과 大統領令案
4. 豫算案·決算·國有財產處分의 基本計劃·國家의 負擔이 될 契約 기타 財政에 관한 重要事項
5. 大統領의 緊急措置 또는 戒嚴과 그 解除
6. 軍事에 관한 重要事項
7. 國會의 解散
8. 國會의 臨時會 集會의 要求

9. 榮典授與

10. 赦免·減刑과 復權

11. 行政各部 間의 權限의 劃定

12. 政府안의 權限의 委任 또는 配定에 관한 基本計劃

13. 國政處理狀況의 評價·分析

14. 行政各部의 중요한 政策의 樹立과 調整

15. 政黨解散의 提訴

16. 政府에 提出 또는 廻付된 政府의 政策에 관계되는 請願의 審査

17. 檢察總長·國立大學校總長·大使·各軍參謀總長·海兵隊司令官 기타 法律에 정한 公務員과 國營企業體 管理者의 任命

18. 기타 大統領·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提出한 事項

第67條 ①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되는 對外政策·軍事政策과 國內政策의 樹立에 관하여 國務會議의 審議에 앞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安全保障會議를 둔다.

②國家安全保障會議는 大統領이 主宰한다.

③國家安全保障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3節 行政各部

第68條 行政各部의 長은 國務委員中에서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69條 國務總理 또는 行政各部의 長은 所管事務에 관하여 法律이나 大統領令의 委任 또는 職權으로 總理令 또는 部令을 發할 수 있다.

第70條 行政各部의 設置·組織과 職務範圍는 法律로 정한다.

第4節 監査院

第71條 國家의 歲入·歲出의 決算, 國家 및 法律에 정한 團體의 會計檢査와 行政機關 및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監察을 하기 위하여 大統領所屬下에 監査院을 둔다.

第72條 ①監査院은 院長을 포함한 5人以上 11人以下의 監査委員으로 構成한다.

②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하며, 그 任期는 4年으로 한다.

③院長이 闕位된 경우에 任命된 後任者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④監査委員은 院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며, 그 任期는 4年으로 한다.

第73條 監査院은 歲入·歲出의 決算을 每年 檢査하여 大統領과 次年度 國會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第74條 監査院의 組織·職務範圍·監査委員의 資格·監査對象公務員의 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6章 國 會

第75條 立法權은 國會에 속한다.

第76條 ①國會는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擧에 의하여 選出된 議員 및 統一主體國民會議가 選擧하는 議員으로 構成한다.

②國會議員의 數는 法律로 정한다.

③國會議員의 選擧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77條 國會議員의 任期는 6年으로 한다. 다만, 統一主體國民會議가 選擧한 國會議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第78條 國會議員은 法律이 정하는 公私의 職을 겸할 수 없다.

第79條 ①國會議員은 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會期中 國會의 同意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한다.

②國會議員이 會期前에 逮捕 또는 拘禁된 때에는 現行犯人이 아닌 限 國會의 要求가 있으면 會期中 釋放된다.

第80條 國會議員은 國會에서 職務上 행한 發言과 表決에 관하여 國會外에서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81條 國會議員은 그 地位와 特權을 濫用하여서는 아니된다.

第82條 ①國會의 定期會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年 1回 集會되며, 國會의 臨時會는 大統領 또는 國會在籍議員 3分의 1以上의 要求에 의하여 集會된다.

②定期會의 會期는 90日을, 臨時會의 會期는 30日을 초과할 수 없다.

③國會는 定期會·臨時會를 합하여 年 150日을 초과하여 開會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이 集會를 要求한 臨時會의 日數는 이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④大統領이 臨時會의 集會를 要求할 때에는 期間과 集會要求의 이유를 明示하여야 한다.

⑤大統領의 要求에 의하여 集會된 臨時會에서는 政府가 提出한 議案에 限하여 處理하며, 國會는 大統領이 集會要求時에 정한 期間에 限하여 開會한다.

第83條 國會는 議長 1人과 副議長 2人을 選擧한다.

第84條 國會는 憲法 또는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그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可否同數인 때에는 否決된 것으로 본다.

第85條 ①國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거나 議長이 國家의 安全保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公開하지 아니한 會議의 內容은 公表되어서는 아니된다.

第86條 國會에 提出된 法律案 기타의 議案은 會期中에 議決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統一主體國民會議에서 選擧되지 아니한 國會議員의 任期가 滿了되거나 國會가 解散된 때에는 例外로 한다.

第87條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提出할 수 있다.

第88條 ①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은 政府에 移送되어 15日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②法律案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第1項의 期間안에 異議書를 붙여 國會로 還付하고 그 再議를 要求할 수 있다. 國會의 閉會中에도 또한 같다.

③大統領은 法律案의 一部에 대하여 또는 法律案을 修正하여 再議를 要求할 수 없다.

④再議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國會는 再議에 붙이고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으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⑤大統領이 第1項의 期間안에 公布나 再議의 要求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⑥大統領은 第4項과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確定된 法律을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第5項에 의하여 法律이 確定된 後 또는 第4項에 의한 確定法律이 政府에 移送된 後 5日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하지 아니할 때에는 國會議長이 이를 公布한다.

⑦法律은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公布한 날로부터 20日을 경과함으로써 效力을 발생한다.

第89條 ①國會는 國家의 豫算案을 審議·確定한다.

②政府는 會計年度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會計年度 開始 90日前까지 國會에 提

出하고, 國會는 會計年度 開始 30日前까지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期間안에 豫算案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政府는 國會에서 豫算案이 議決될 때까지 다음 各號의 經費를 歲入의 範圍안에서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支出할 수 있다.

1. 公務員의 報酬와 事務處理에 필요한 基本經費
2. 憲法이나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機關 또는 施設의 維持費와 法律上 支出의 義務가 있는 經費
3. 이미 豫算上 承認된 繼續費

第90條 ①한 會計年度를 넘어 계속하여 支出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政府는 年限을 정하여 繼續費로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豫測할 수 없는 豫算外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충당하기 위한 豫備費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豫備費의 支出은 次期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91條 豫算成立後에 생긴 事由로 인하여 豫算에 變更을 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政府는 追加更正豫算案을 編成하여 國會에 提出할 수 있다.

第92條 國會는 政府의 同意없이 政府가 提出한 支出豫算 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새 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第93條 國債를 모집하거나 豫算外에 國家의 負擔이 될 契約을 締結하려 할 때에는 政府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第94條 租稅의 種目과 稅率은 法律로 정한다.

第95條 ①國會는 相互援助 또는 安全保障에 관한 條約, 國際組織에 관한 條約, 通商條約, 漁業條約, 講和條約, 國家나 國民에게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條約, 外國軍隊의 地位에 관한 條約 또는 立法事項에 관한 條約의 締結·批准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

②宣戰布告, 國軍의 外國에의 派遣 또는 外國軍隊의 大韓民國領域 안에서의 駐留에 대하여도 國會는 同意權을 가진다.

第96條 ①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國會나 그 委員會에 출석하여 國政處理狀況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陳述하고 質問에 응답할 수 있다.

②國會나 그 委員會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出席·答辯하여야 하며,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出席要求를 받은 때에는 國

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으로 하여금 出席·答辯하게 할 수 있다.

第97條 ①國會는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에 대하여 個別的으로 그 解任을 議決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解任議決은 國會在籍議員 3分의 1以上의 發議에 의하여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③第2項의 議決이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國務總理 또는 當該 國務委員을 解任하여야 한다. 다만, 國務總理에 대한 解任議決이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國務總理와 國務委員 全員을 解任하여야 한다.

第98條 ①國會는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議事와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②國會는 議員의 資格을 審査하며 議員을 懲戒할 수 있다.

③議員을 除名하려면 國會在籍議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④第2項과 第3項의 處分에 대하여는 法院에 提訴할 수 없다.

第99條 ①大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憲法委員會委員·法官·中央選擧管理委員會委員·監査委員 기타 法律에 정한 公務員이 그 職務執行에 있어서 憲法이나 法律을 違背한 때에는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議決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彈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3分의 1以上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議決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에 대한 彈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發議와 國會在籍議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③彈劾訴追의 議決을 받은 者는 彈劾決定이 있을 때까지 그 權限行使가 정지된다.

④彈劾決定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지는 아니한다.

第7章 法 院

第100條 ①司法權은 法官으로 構成된 法院에 속한다.

②法院은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各級 法院으로 組織된다.

③法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第101條 ①大法院에 部를 둘 수 있다.

②大法院의 法官의 數는 16人以下로 한다.

③大法院과 各級 法院의 組織은 法律로 정한다.

第102條 法官은 이 憲法과 法律에 의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한다.

第103條 ①大法院長인 法官은 大統領이 國會의 同意를 얻어 任命한다.

②大法院長이 아닌 法官은 大法院長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大法院長인 法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한다.

④大法院長이 아닌 法官의 任期는 10年으로 한다.

⑤法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될 수 있다.

⑥法官은 法律이 정하는 年齡에 達한 때에는 退職한다.

第104條 ①法官은 彈劾·刑罰 또는 懲戒處分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停職·減俸되거나 不利한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②法官이 重大한 心身上의 障害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退職하게 할 수 있다.

第105條 ①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된 때에는 法院은 憲法委員會에 提請하여 그 決定에 의하여 裁判한다.

②命令·規則·處分이 憲法이나 法律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된 때에는 大法院은 이를 最終的으로 審査할 權限을 가진다.

第106條 大法院은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訴訟에 관한 節次, 法院의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107條 裁判의 審理와 判決은 公開한다. 다만, 審理는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安寧秩序를 방해하거나 善良한 風俗을 害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法院의 決定으로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108條 ①軍事裁判을 管轄하기 위하여 特別法院으로서 軍法會議를 둘 수 있다.

②軍法會議의 上告審은 大法院에서 管轄한다.

③非常戒嚴下의 軍事裁判은 軍人·軍屬의 犯罪나 軍事에 관한 間諜罪의 경우와, 哨兵·哨所·有害飮食物供給·捕虜에 관한 罪中 法律에 정한 경우에 限하여 單審으로 할 수 있다.

第8章 憲法委員會

第109條 ①憲法委員會는 다음 事項을 審判한다.

1. 法院의 提請에 의한 法律의 違憲與否

2. 彈 劾

3. 政黨의 解散

②憲法委員會는 9人의 委員으로 構成하며,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第2項의 委員中 3人은 國會에서 選出하는 者를, 3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者를 任命한다.

④憲法委員會의 委員長은 委員中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110條 ①憲法委員會 委員의 任期는 6年으로 한다.

②憲法委員會 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③憲法委員會 委員은 彈劾 또는 刑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④憲法委員會 委員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第111條 ①憲法委員會에서 法律의 違憲決定, 彈劾의 決定 또는 政黨解散의 決定을 할 때에는 委員 6人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②憲法委員會의 組織과 運營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9章 選擧管理

第112條 ①選擧와 國民投票의 公正한 管理 및 政黨에 관한 事務를 處理하게 하기 위하여 選擧管理委員會를 둔다.

②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9人의 委員으로 構成하며,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第2項의 委員中 3人은 國會에서 選出하는 者를, 3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者를 任命한다.

④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長은 委員中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⑤委員의 任期는 5年으로 한다.

⑥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⑦委員은 彈劾 또는 刑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⑧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法令의 範圍안에서 選擧管理·國民投票管理 또는 政黨事務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⑨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113條 ①選擧運動은 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 管理下에 法律에 정한 範圍안에서 하되 균등한 機會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選擧에 관한 經費는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負擔시킬 수 없다.

第10章 地方自治

第114條 ①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利에 관한 事務를 處理하고 財産을 管理하며 法令의 範圍안에서 自治에 관한 規定을 制定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의 種類는 法律로 정한다.

第115條 ①地方自治團體에는 議會를 둔다.

②地方議會의 組織·權限·議員選擧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任方法 기타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運營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11章 經 濟

第116條 ①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個人의 經濟上의 自由와 創意를 존중함을 基本으로 한다.

②國家는 모든 國民에게 生活의 基本的 需要를 충족시키는 社會正義의 실현과 균형있는 國民經濟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範圍안에서 經濟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한다.

第117條 ①鑛物 기타 重要한 地下資源, 水産資源, 水力과 經濟上 利用할 수 있는 自然力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期間 그 採取·開發 또는 利用을 特許할 수 있다.

②國土와 資源은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그 균형있는 開發과 利用을 위한 計劃을 樹立한다.

第118條 農地의 小作制度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第119條 國家는 農地와 山地 기타 國土의 效率的인 利用·開發과 保全을 위하여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制限과 義務를 課할 수 있다.

第120條 ①國家는 農民·漁民의 自助를 基盤으로 하는 農漁村開發을 위하여 計劃을 樹立하며, 地域社會의 균형있는 발전을 期한다.

②農民·漁民과 中小企業者의 自助組織은 育成된다.

第121條 國家는 對外貿易을 育成하며 이를 規制·調整할 수 있다.

第122條 國防上 또는 國民經濟上 緊切한 필요로 인하여 法律에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그 經營을 統制 또는 管理할 수 없다.

第123條 ①國民經濟의 발전과 이를 위한 科學技術은 暢達·振興되어야 한다.

②大統領은 經濟·科學技術의 暢達·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諮問機構를 둘 수 있다.

第12章 憲法改正

第124條 ①憲法의 改正은 大統領 또는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發議로 提案된다.

②大統領이 提案한 憲法改正案은 國民投票로 確定되며, 國會議員이 提案한 憲法改正案은 國會의 議決을 거쳐 統一主體國民會議의 議決로 確定된다.

③憲法改正이 確定되면 大統領은 즉시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

第125條 ①國會에 提案된 憲法改正案은 20日以上의 期間 이를 公告하여야 하며, 公告된 날로부터 60日以內에 議決하여야 한다.

②憲法改正案에 대한 國會의 議決은 在籍議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③第2項의 議決을 거친 憲法改正案은 지체없이 統一主體國民會議에 廻付되고 그 議決로 憲法改正이 確定된다. 統一主體國民會議에 廻付된 憲法改正案은 廻付된 날로부터 20日以內에 議決되어야 한다.

第126條 ①大統領이 提案한 憲法改正案은 20日以上의 期間 이를 公告하여야 하며, 公告된 날로부터 60日以內에 國民投票에 붙여야 한다.

②國民投票에 붙여진 憲法改正案은 國會議員選擧權者 過半數의 投票와 投票者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 憲法改正이 確定된다.

附 則

第1條 이 憲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이 憲法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法律의 制定과 이 憲法에 의한 大統領·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 및 國會議員의 選擧와 기타 이 憲法施行에 관한 準備는 이 憲法施行前에 할 수 있다.

第2條 ①이 憲法에 의하여 統一主體國民會議에서 選擧된 最初의 大統領의 任期는 이 憲法施行日로부터 開始된다.

②이 憲法에 의하여 選擧된 最初의 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의 任期는 統一主體國民會議의 最初의 集會日로부터 開始되고 1978年 6月 30日에 終了된다.

第3條 이 憲法에 의한 最初의 國會議員總選擧는 이 憲法施行日로부터 6月以內에 實施한다.

第4條 1972年 10月 17日부터 이 憲法에 의한 國會의 最初의 集會日까지 非常國務會議가 代行한 國會의 權限은 이 憲法施行當時의 憲法과 이 憲法에 의한 國會가 행한 것으로 본다.

第5條 이 憲法施行當時의 公務員과 政府가 任命한 企業體의 任員은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憲法에 의하여 選任方法이나 任命權者가 變更된 公務員은 이 憲法에 의하여 後任者가 選任될 때까지 그 職務를 행하며, 이 경우 前任者인 公務員의 任期는 後任者가 選任되는 前日까지로 한다.

第6條 ①이 憲法施行當時의 法令과 條約은 이 憲法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限 그 效力을 持續한다.

②이 憲法施行當時의 大統領令·國務院令과 閣令은 이 憲法에 의한 大統領令으로 본다.

第7條 非常國務會議에서 制定한 法令과 이에 따라 행하여진 裁判과 豫算 기타 處分등은 그 效力을 持續하며 이 憲法 기타의 理由로 提訴하거나 異議를 할 수 없다.

第8條 이 憲法施行當時에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 設置된 機關의 權限에 속하는 職務를 행하고 있는 機關은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운 機關이 設置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職務를 행한다.

第9條 1972年 10月 17日부터 이 憲法施行日까지 大統領이 행한 特別宣言과 이에 따른 非常措置에 대하여는 提訴하거나 異議를 할 수 없다.

第10條 이 憲法에 의한 地方議會는 祖國統一이 이루어질 때까지 構成하지 아니한다.

第11條 ①特殊犯罪處罰에關한特別法·不正選擧關聯者處罰法·政治活動淨化法 및 不正蓄財處理法과 이에 관련되는 法律은 그 效力을 持續하며 이에 대하여 異議를 할 수 없다.

②政治活動淨化法 및 不正蓄財處理法과 이에 관련되는 法律은 이를 改廢할 수 없다.

●大韓民國憲法〔1980·10·27〕

前 文

悠久한 民族史, 빛나는 文化, 그리고 平和愛護의 傳統을 자랑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의 崇高한 獨立精神을 계승하고 祖國의 平和的 統一과 民族中興의 歷史的 使命에 입각한 第5民主共和國의 출발에 즈음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타파하며,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하는 새로운 歷史를 創造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 7月 12日에 制定되고 1960年 6月 15日, 1962年 12月 26日과 1972年 12月 27日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1980年 10月 25日

第1章 總 綱

第1條 ①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②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第2條 ①大韓民國의 國民의 要件은 法律로 정한다.

②在外國民은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第3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附屬島嶼로 한다.

第4條 ①大韓民國은 國際平和의 維持에 노력하고 侵略的 戰爭을 否認한다.

②國軍은 國家의 安全保障과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수행함을 使命으로 한다.

第5條 ①憲法에 의하여 締結·公布된 條約과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

②外國人에 대하여는 國際法과 條約에 정한 바에 의하여 그 地位를 보장한다.

第6條 ①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이며, 國民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②公務員의 身分과 政治的 中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第7條 ①政黨의 設立은 自由이며, 複數政黨制는 보장된다.

②政黨은 그 組織과 活動이 民主的이어야 하며, 國民의 政治的 意思形成에 參與하는데 필요한 組織을 가져야 한다.

③政黨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政黨의 運營에 필요한 資金을 補助할 수 있다.

④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는 憲法委員會에 그 解散을 提訴할 수 있고, 政黨은 憲法委員會의 決定에 의하여 解散된다.

第8條 國家는 傳統文化의 계승·발전과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하여야 한다.

第2章 國民의 權利와 義務

第9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個人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確認하고 이를 보장할 義務를 진다.

第10條 ①모든 國民은 法 앞에 平等하다. 누구든지 性別·宗敎 또는 社會的 身分에 의하여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

②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할 수 없다.

③勳章등의 榮典은 이를 받은 者에게만 效力이 있고, 어떠한 特權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第11條 ①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逮捕·拘禁·押收·搜索·審問·處罰과 保安處分을 받지 아니하며,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强制勞役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上 자기에게 不利한 陳述을 强要당하지 아니한다.

③逮捕·拘禁·押收·搜索에는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發付한 令狀을 提示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인 경우와 長期 3年以上의 刑에 해당하는 罪를

犯하고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事後에 令狀을 請求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逮捕·拘禁을 당한 때에는 즉시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다만, 法律이 정하는 경우에 刑事被告人이 스스로 辯護人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國家가 辯護人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逮捕·拘禁을 당한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適否의 審査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

⑥被告人의 自白이 拷問·暴行·脅迫·拘束의 부당한 長期化 또는 欺罔 기타의 方法에 의하여 自意로 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正式裁判에 있어서 被告人의 自白이 그에게 不利한 유일한 證據일 때에는 이를 有罪의 證據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處罰할 수 없다.

第12條 ①모든 國民은 行爲時의 法律에 의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行爲로 訴追되지 아니하며, 同一한 犯罪에 대하여 거듭 處罰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遡及立法에 의하여 參政權의 제한 또는 財産權의 剝奪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國民은 자기의 行爲가 아닌 親族의 行爲로 인하여 不利益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第13條 모든 國民은 居住·移轉의 自由를 가진다.

第14條 모든 國民은 職業選擇의 自由를 가진다.

第15條 모든 國民은 住居의 自由를 侵害받지 아니한다. 住居에 대한 押收나 搜索에는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發付한 令狀을 提示하여야 한다.

第16條 모든 國民은 私生活의 祕密과 自由를 侵害받지 아니한다.

第17條 모든 國民은 通信의 祕密을 侵害받지 아니한다.

第18條 모든 國民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第19條 ①모든 國民은 宗敎의 自由를 가진다.

②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宗敎와 政治는 分離된다.

第20條 ①모든 國民은 言論·出版의 自由와 集會·結社의 自由를 가진다.

②言論·出版은 他人의 名譽나 權利 또는 公衆道德이나 社會倫理를 侵害하여서는 아니된다. 言論·出版이 他人의 名譽나 權利를 侵害한 때에는 被害者는 이에 대한 被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1條 ①모든 國民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②著作者·發明家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보호한다.

第22條 ①모든 國民의 財產權은 보장된다. 그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 정한다.

②財產權의 行使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公共必要에 의한 財產權의 收用·使用 또는 制限은 法律로써 하되, 補償을 支給하여야 한다. 補償은 公益 및 關係者의 利益을 정당하게 衡量하여 法律로 정한다.

第23條 모든 國民은 20歲가 되면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選擧權을 가진다.

第24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擔任權을 가진다.

第25條 ①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機關에 文書로 請願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請願에 대하여 審査할 義務를 진다.

第26條 ①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律에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軍人 또는 軍務員이 아닌 國民은 大韓民國의 領域 안에서는 중대한 軍事上 機密·哨兵·哨所·有害飮食物供給·捕虜·軍用物·軍事施設에 관한 罪 중 法律에 정한 경우와, 非常戒嚴이 宣布되거나 大統領이 法院의 權限에 관하여 非常措置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軍法會議의 裁判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國民은 신속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刑事被告人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限 지체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④刑事被告人은 有罪의 判決이 確定될 때 까지는 無罪로 推定된다.

第27條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에 정당한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8條 ①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損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정당한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公務員 자신의 責任은 免除되지 아니한다.

②軍人·軍務員·警察公務員 기타 法律로 정하는 者가 戰鬪·訓練등 職務執行과 관련하여 받은 損害에 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報償外에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賠償은 請求할 수 없다.

第29條 ①모든 國民은 能力에 따라 균등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모든 國民은 그 보호하는 子女에게 적어도 初等敎育과 法律이 정하는 敎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

③義務敎育은 無償으로 한다.

④敎育의 自主性·專門性 및 政治的 中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國家는 平生敎育을 振興하여야 한다.

⑥學校敎育 및 平生敎育을 포함한 敎育制度와 그 運營, 敎育財政 및 敎員의 地位에 관한 基本的인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30條 ①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社會的·經濟的 方法으로 勤勞者의 雇傭의 增進과 適正賃金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모든 國民은 勤勞의 義務를 진다. 國家는 勤勞의 義務의 內容과 條件을 民主主義原則에 따라 法律로 정한다.

③勤勞條件의 基準은 人間의 尊嚴性을 보장하도록 法律로 정한다.

④女子와 少年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⑤國家有功者·傷痍軍警 및 戰歿軍警의 遺家族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優先的으로 勤勞의 機會를 賦與받는다.

第31條 ①勤勞者는 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自主的인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다만, 團體行動權의 行使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로 인정된 者를 제외하고는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질 수 없다.

③國家·地方自治團體·國公營企業體·防衛産業體·公益事業體 또는 國民經濟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事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32條 ①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社會保障·社會福祉의 增進에 노력할 義務를 진다.

③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第33條 모든 國民은 깨끗한 環境에서 生活할 權利를 가지며, 國家와 國民은 環境保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34條 ①婚姻과 家族生活은 個人의 尊嚴과 兩性의 平等을 기초로 成立되고 維持되어야 한다.

②모든 國民은 保健에 관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第35條 ①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列擧되지 아니한 이유로 輕視되지 아니한다.

②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限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內容을 侵害할 수 없다.

第36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

第37條 ①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의 義務를 진다.

②누구든지 兵役義務의 履行으로 不利益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第3章 政 府

第1節 大統領

第38條 ①大統領은 國家의 元首이며, 外國에 대하여 國家를 代表한다.

②大統領은 國家의 獨立·領土의 保全·國家의 繼續性과 憲法을 守護할 責務를 진다.

③大統領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성실한 義務를 진다.

④行政權은 大統領을 首班으로 하는 政府에 속한다.

第39條 ①大統領은 大統領選擧人團에서 無記名投票로 選擧한다.

②大統領에 立候補하려는 者는 政黨의 推薦 또는 法律이 정하는 數의 大統領選擧人의 推薦을 받아야 한다.

③大統領選擧人團에서 在籍大統領選擧人 過半數의 贊成을 얻은 者를 大統領當選者로 한다.

④第3項의 得票者가 없을 때에는 2次投票를 하고, 2次投票에도 第3項의 得票者가 없을 때에는 最高得票者가 1人이면 最高得票者와 次點者에 대하여, 最高得票者가 2人以上이면 最高得票者에 대하여 決選投票를 함으로써 多數得票者를 大統領當選者로 한다.

⑤大統領의 選擧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40條 ①大統領選擧人團은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擧에 의하여 選出된 大統領選擧人으로 構成한다.

②大統領選擧人의 數는 法律로 정하되, 5,000人以上으로 한다.

③大統領選擧人의 選擧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41條 ①大統領選擧人으로 選出될 수 있는 者는 國會議員의 被選擧權이 있고, 選擧日 現在 30歲에 達하여야 한다. 다만, 國會議員과 公務員은 大統領選擧人이 될 수 없다.

②大統領選擧人은 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한다.

③大統領選擧人은 政黨에 소속할 수 있다.

④大統領選擧人은 選擧人이 된 後 처음 實施되는 國會議員의 選擧에 있어서 國會議員으로 選出될 수 없다.

⑤大統領選擧人은 당해 大統領選擧人團이 選擧한 大統領의 任期開始日까지 그 身分을 가진다.

第42條 大統領으로 選擧될 수 있는 者는 國會議員의 被選擧權이 있고, 選擧日 現在 계속하여 5年以上 國內에 居住하고 40歲에 達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公務로 外國에 派遣된 期間은 國內居住期間으로 본다.

第43條 ①大統領의 任期가 滿了되는 때에는 大統領選擧人團은 늦어도 任期滿了 30日前에 後任者를 選擧한다.

②大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새로이 大統領選擧人團을 構成하여 3月以內에 後任者를 選擧한다.

第44條 大統領은 就任에 즈음하여 다음의 宣誓를 한다.

"나는 憲法을 遵守하고 國家를 保衛하며 民族文化의 발전 및 國民의 自由와 福利의 增進에 노력하고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하여 大統領으로서의 職責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國民 앞에 嚴肅히 宣誓합니다."

第45條 大統領의 任期는 7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第46條 大統領이 闕位되거나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國務總理, 法律에 정한 國務委員의 順位로 그 權限을 代行한다.

第47條 大統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外交·國防·統一 기타 國家安危에 관한 重要政策을 國民投票에 붙일 수 있다.

第48條 大統領은 條約을 締結·批准하고, 外交使節을 信任·接受 또는 派遣하며, 宣戰布告와 講和를 한다.

第49條 ①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軍을 統帥한다.

②國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로 정한다.

第50條 大統領은 法律에서 具體的으로 範圍를 정하여 委任받은 事項과 法律을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事項에 관하여 大統領令을 發할 수 있다.

第51條 ①大統領은 天災·地變 또는 중대한 財政·經濟上의 危機에 處하거나, 國家의 安全을 威脅하는 交戰狀態나 그에 準하는 중대한 非常事態에 處하여 國家를 保衛하기 위하여 급속한 措置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內政·外交·國防·經濟·財政·司法 등 國政全般에 걸쳐 필요한 非常措置를 할 수 있다.

②大統領은 第1項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憲法에 規定되어 있는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暫定的으로 정지할 수 있고, 政府나 法院의 權限에 관하여 특별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③第1項과 第2項의 措置를 한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國會에 통고하여 承認을 얻어야 하며, 承認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措置는 效力을 喪失한다.

④第1項과 第2項의 措置는 그 目的을 達成할 수 있는 最短期間內에 限定되어야 하고, 그 原因이 消滅한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⑤國會가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非常措置의 解除를 要求한 때에는 大統領은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第52條 ①大統領은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兵力으로써 軍事上의 필요에 응하거나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戒嚴을 宣布할 수 있다.

②戒嚴은 非常戒嚴과 警備戒嚴으로 한다.

③非常戒嚴이 宣布된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令狀制度,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 政府나 法院의 權限에 관하여 특별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④戒嚴을 宣布한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國會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國會가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戒嚴의 解除를 要求한 때에는 大統領은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第53條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員을 任命한다.

第54條 ①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赦免·減刑·復權을 命할 수 있다.

②一般赦免을 命하려면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赦免·減刑·復權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55條 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勳章 기타의 榮典을 수여한다.

第56條 大統領은 國會에 출석하여 發言하거나 書翰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第57條 ①大統領은 國家의 安定 또는 國民全體의 利益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國會議長의 諮問 및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친 後 그 事由를 明示하여 國會를 解散할 수 있다. 다만, 國會가 構成된 後 1年以內에는 解散할 수 없다.

②大統領은 같은 事由로 2次에 걸쳐 國會를 解散할 수 없다.

③國會가 解散된 경우 國會議員 總選擧는 解散된 날로부터 30日以後 60日以內에 實施한다.

第58條 大統領의 國法上 行爲는 文書로써 하며, 이 文書에는 國務總理와 관계 國務委員이 副署한다. 軍事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第59條 大統領은 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 기타 法律이 정하는 公私의 職을 兼할 수 없다.

第60條 大統領은 內亂 또는 外患의 罪를 犯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職中 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第61條 前職大統領의 身分과 禮遇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第2節 行政府

第1款 國務總理와 國務委員

第62條 ①國務總理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補佐하고, 行政에 관하여 大統領의 命을 받아 行政各部를 統轄한다.

③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總理로 任命될 수 없다.

第63條 ①國務委員은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國務委員은 國政에 관하여 大統領을 補佐하며, 國務會議의 構成員으로서 國政을 審議한다.

③國務總理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④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委員으로 任命될 수 없다.

第2款 國務會議

第64條 ①國務會議는 政府의 權限에 속하는 중요한 政策을 審議한다.

②國務會議는 大統領·國務總理와 15人以上 30人以下의 國務委員으로 構成한다.

③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長이 되고, 國務總理는 副議長이 된다.

第65條 다음 事項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1. 國政의 基本計劃과 政府의 一般政策
2. 宣戰·講和 기타 중요한 對外政策
3. 憲法改正案·國民投票案·條約案·法律案과 大統領令案
4. 豫算案·決算·國有財産處分의 基本計劃·國家의 負擔이 될 契約 기타 財政에 관한 重要事項
5. 大統領의 非常措置 또는 戒嚴과 그 解除
6. 軍事에 관한 重要事項
7. 國會의 解散
8. 國會의 臨時會 集會의 要求
9. 榮典授與
10. 赦免·減刑과 復權
11. 行政各部間의 權限의 劃定
12. 政府안의 權限의 委任 또는 配定에 관한 基本計劃
13. 國政處理狀況의 評價·分析
14. 行政各部의 중요한 政策의 樹立과 調整
15. 政黨解散의 提訴
16. 政府에 提出 또는 回附된 政府의 政策에 관계되는 請願의 審査
17. 合同參謀議長·各軍參謀總長·檢察總長·國立大學校總長·大使 기타 法律에 정한 公務員과 國營企業體 管理者의 任命
18. 기타 大統領·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提出한 事項

第66條 ①國政의 중요한 事項에 관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元老로 構成되는 國政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國政諮問會議의 議長은 直前大統領이 된다. 다만, 直前大統領이 없을 때에는 大統領이 指名한다.

③國政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67條 ①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되는 對外政策·軍事政策과 國內政策의 樹立에 관하여 國務會議의 審議에 앞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安全保障會議를

둔다.

②國家安全保障會議는 大統領이 主宰한다.

③國家安全保障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68條 ①平和統一政策의 수립에 관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3款 行政各部

第69條 行政各部의 長은 國務委員 중에서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70條 國務總理 또는 行政各部의 長은 所管事務에 관하여 法律이나 大統領의 委任 또는 職權으로 總理令 또는 部令을 發할 수 있다.

第71條 行政各部의 設置·組織과 職務範圍는 法律로 정한다.

第4款 監査院

第72條 國家의 歲入·歲出의 決算, 國家 및 法律에 정한 團體의 會計檢査와 行政機關 및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監察을 하기 위하여 大統領所屬下에 監査院을 둔다.

第73條 ①監査院은 院長을 포함한 5人以上 11人以下의 監査委員으로 構成한다.

②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며, 1次에 限하여 重任할 수 있다.

③院長이 闕位된 경우에 任命된 後任者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④監査委員은 院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며, 1次에 限하여 重任할 수 있다.

第74條 監査院은 歲入·歲出의 決算을 每年 檢査하여 大統領과 次年度 國會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第75條 監査院의 組織·職務範圍·監査委員의 資格·監査對象公務員의 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4章 國 會

第76條 立法權은 國會에 속한다.

第77條 ①國會는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擧에 의하여 選出된 議員으로

構成한다.

②國會議員의 數는 法律로 정하되, 200人以上으로 한다.

③國會議員의 選擧區와 比例代表制 기타 選擧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78條 國會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第79條 國會議員은 法律이 정하는 職을 兼할 수 없다.

第80條 ①國會議員은 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會期中 國會의 同意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한다.

②國會議員이 會期前에 逮捕 또는 拘禁된 때에는 現行犯人이 아닌 限 國會의 要求가 있으면 會期中 釋放된다.

第81條 國會議員은 國會에서 職務上 행한 發言과 表決에 관하여 國會外에서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82條 ①國會議員은 淸廉의 義務가 있다.

②國會議員은 國家利益을 優先하여 良心에 따라 職務를 행한다.

③國會議員은 그 地位를 濫用하여 國家·公共團體 또는 企業體와의 契約이나 그 處分에 의하여 財産上의 權利·利益 또는 職位를 取得하거나 他人을 위하여 그 取得을 알선할 수 없다.

第83條 ①國會의 定期會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年 1回集會되며, 國會의 臨時會는 大統領 또는 國會在籍議員 3分의 1以上의 要求에 의하여 集會된다.

②定期會의 會期는 90日을, 臨時會의 會期는 30日을 초과할 수 없다.

③國會는 定期會·臨時會를 합하여 年 150日을 초과하여 開會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이 集會를 要求한 臨時會의 日數는 이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④大統領이 臨時會의 集會를 要求할 때에는 期間과 集會要求의 이유를 明示하여야 한다.

⑤大統領의 要求에 의하여 集會된 臨時會에서는 政府가 提出한 議案에 限하여 處理하며, 國會는 大統領이 集會要求時에 정한 期間에 限하여 開會한다.

第84條 國會는 議長 1人과 副議長 2人을 選擧한다.

第85條 國會는 憲法 또는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그 在籍議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可否同數인 때에는 否決된 것으로 본다.

第86條 ①國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거나 議長

이 國家의 安全保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公開하지 아니한 會議의 內容은 公表되어서는 아니된다.

第87條 國會에 提出된 法律案 기타의 議案은 會期中에 議決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國會議員의 任期가 滿了되거나 國會가 解散된 때에는 例外로 한다.

第88條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提出할 수 있다.

第89條 ①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은 政府에 移送되어 15日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②法律案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第1項의 期間內에 異議書를 붙여 國會로 還付하고, 그 再議를 要求할 수 있다. 國會의 閉會中에도 또한 같다.

③大統領은 法律案의 一部에 대하여 또는 法律案을 修正하여 再議를 要求할 수 없다.

④再議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國會는 再議에 붙이고, 在籍議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으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⑤大統領이 第1項의 期間內에 公布나 再議의 要求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⑥大統領은 第4項과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確定된 法律을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第5項에 의하여 法律이 確定된 後 또는 第4項에 의한 確定法律이 政府에 移送된 後 5日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하지 아니할 때에는 國會議長이 이를 公布한다.

⑦法律은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公布한 날로부터 20日을 경과함으로써 效力을 발생한다.

第90條 ①國會는 國家의 豫算案을 審議·確定한다.

②政府는 會計年度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會計年度 開始 90日前까지 國會에 提出하고, 國會는 會計年度 開始 30日前까지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會計年度가 開始될 때까지 豫算案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政府는 國會에서 豫算案이 議決될 때까지 다음의 目的을 위한 經費는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執行할 수 있다.

1. 憲法이나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機關 또는 施設의 維持·運營
2. 法律上 支出義務의 履行
3. 이미 豫算으로 承認된 事業의 계속

第91條 ①한 會計年度를 넘어 계속하여 支出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政府는 年限을 정하여 繼續費로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豫備費는 總額으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豫備費의 支出은 次期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92條 政府는 豫算에 變更을 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追加更正豫算案을 編成하여 國會에 提出할 수 있다.

第93條 國會는 政府의 同意없이 政府가 提出한 支出豫算 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새 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第94條 國債를 모집하거나 豫算外에 國家의 負擔이 될 契約을 締結하려 할 때에는 政府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第95條 租稅의 種目과 稅率은 法律로 정한다.

第96條 ①國會는 相互援助 또는 安全保障에 관한 條約, 중요한 國際組織에 관한 條約, 友好通商航海條約, 主權의 制約에 관한 條約, 講和條約, 國家나 國民에게 중대한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條約 또는 立法事項에 관한 條約의 締結·批准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

②宣戰布告, 國軍의 外國에의 派遣 또는 外國軍隊의 大韓民國領域 안에서의 駐留에 대하여도 國會는 同意權을 가진다.

第97條 國會는 特定한 國政事案에 관하여 調査할 수 있으며, 그에 직접 관련된 書類의 提出, 證人의 출석과 證言이나 의견의 陳述을 要求할 수 있다. 다만, 裁判과 進行中인 犯罪搜查·訴追에 간섭할 수 없다.

第98條 ①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國會나 그 委員會에 출석하여 國政處理狀況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陳述하고 質問에 응답할 수 있다.

②國會나 그 委員會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出席要求를 받은 때에는 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第99條 ①國會는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에 대하여 個別的으로 그 解任을 議決할 수 있다. 다만, 國務總理에 대한 解任議決은 國會가 任命同意를 한 後 1年以內

에는 할 수 없다.

②第1項의 解任議決은 國會在籍議員 3分의 1以上의 發議에 의하여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③第2項의 議決이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國務總理 또는 당해 國務委員을 解任하여야 한다. 다만, 國務總理에 대한 解任議決이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國務總理와 國務委員 全員을 解任하여야 한다.

第100條 ① 國會는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議事와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②國會는 議員의 資格을 審査하며, 議員을 懲戒할 수 있다.

③議員을 除名하려면 國會在籍議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④第2項과 第3項의 處分에 대하여는 法院에 提訴할 수 없다.

第101條 ①大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憲法委員會 委員·法官·中央選擧管理委員會 委員·監査委員 기타 法律에 정한 公務員이 그 職務執行에 있어서 憲法이나 法律을 違背한 때에는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議決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彈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3分의 1以上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議決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에 대한 彈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發議와 國會在籍議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③彈劾訴追의 議決을 받은 者는 彈劾決定이 있을 때까지 그 權限行使가 정지된다.

④彈劾決定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지는 아니한다.

第5章 法 院

第102條 ①司法權은 法官으로 構成된 法院에 속한다.

②法院은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各級 法院으로 組織된다.

③法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第103條 ①大法院에 部를 둘 수 있다.

②大法院에 行政·租稅·勞動·軍事 등을 專擔하는 部를 둘 수 있다.

③大法院에 大法院判事를 둔다. 다만,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大法院判事가

아닌 法官을 둘 수 있다.

④大法院과 各級 法院의 組織은 法律로 정한다.

第104條 法官은 憲法과 法律에 의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한다.

第105條 ①大法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大法院判事는 大法院長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大法院長과 大法院判事가 아닌 法官은 大法院長이 任命한다.

第106條 ①大法院長의 任期는 5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②大法院判事의 任期는 5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③大法院長과 大法院判事가 아닌 法官의 任期는 10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④法官의 停年은 法律로 정한다.

第107條 ①法官은 彈劾 또는 刑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하며, 懲戒處分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停職·減俸 또는 不利한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②法官이 중대한 心身上의 障害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退職하게 할 수 있다.

第108條 ①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 法院은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憲法委員會에 提請하여 그 決定에 의하여 裁判한다.

②命令·規則·處分이 憲法이나 法律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는 大法院은 이를 最終的으로 審査할 權限을 가진다.

③裁判의 前審節次로서 行政審判을 할 수 있다. 行政審判의 節次는 法律로 정하되, 司法節次가 準用되어야 한다.

第109條 大法院은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訴訟에 관한 節次, 法院의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110條 裁判의 審理와 判決은 公開한다. 다만, 審理는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安寧秩序를 방해하거나 善良한 風俗을 害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法院의 決定으로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111條 ①軍事裁判을 管轄하기 위하여 特別法院으로서 軍法會議를 둘 수 있다.

②軍法會議의 上告審은 大法院에서 管轄한다.

③軍法會議의 組織·權限 및 裁判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④非常戒嚴下의 軍事裁判은 軍人·軍務員의 犯罪나 軍事에 관한 間諜罪의 경우와, 哨兵·哨所·有害飮食物供給·捕虜에 관한 罪중 法律에 정한 경우에 限하여 單審으로 할 수 있다.

第6章 憲法委員會

第112條 ①憲法委員會는 다음 事項을 審判한다.

1. 法院의 提請에 의한 法律의 違憲與否
2. 彈 劾
3. 政黨의 解散

②憲法委員會는 9人의 委員으로 構成하며, 委員은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第2項의 委員중 3人은 國會에서 選出하는 者를, 3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者를 任命한다.

④憲法委員會의 委員長은 委員중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113條 ①憲法委員會 委員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②憲法委員會 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③憲法委員會 委員은 彈劾 또는 刑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④憲法委員會 委員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第114條 ①憲法委員會에서 法律의 違憲決定, 彈劾의 決定 또는 政黨解散의 決定을 할 때에는 委員 6人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②憲法委員會의 組織과 運營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7章 選擧管理

第115條 ①選擧와 國民投票의 公正한 管理 및 政黨에 관한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選擧管理委員會를 둔다.

②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大統領이 任命하는 3人, 國會에서 選出하는 3人과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3人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委員長은 委員중에서 互選한다.

③委員의 任期는 5年으로 한다.

④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⑤委員은 彈劾 또는 刑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⑥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法令의 範圍안에서 選擧管理·國民投票管理 또는 政黨事務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⑦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116條 ①各級 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人名簿의 作成등 選擧事務에 관하여 관계行政機關에 필요한 指示를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指示를 받은 당해 行政機關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117條 ①選擧運動은 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 管理下에 法律이 정하는 範圍안에서 하되, 균등한 機會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選擧에 관한 經費는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負擔시킬 수 없다.

第8章 地方自治

第118條 ①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利에 관한 事務를 處理하고 財産을 管理하며, 法令의 範圍안에서 自治에 관한 規定을 制定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의 種類는 法律로 정한다.

第119條 ①地方自治團體에 議會를 둔다.

②地方議會의 組織·權限·議員選擧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任方法 기타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運營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9章 經 濟

第120條 ①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個人의 經濟上의 自由와 創意를 존중함을 基本으로 한다.

②國家는 모든 國民에게 生活의 基本的 需要를 충족시키는 社會正義의 실현과 균형있는 國民經濟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範圍안에서 經濟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한다.

③獨寡占의 폐단은 적절히 規制·調整한다.

第121條 ①鑛物 기타 중요한 地下資源·水産資源·水力과 經濟上 利用할 수 있는 自然力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期間 그 採取·開發 또는 利用을 特許할 수 있다.

②國土와 資源은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그 균형있는 開發과 利用을 위하여 필요한 計劃을 樹立한다.

第122條 農地의 小作制度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다만, 農業生産性의 提高와 農地의 合理的인 利用을 위한 賃貸借 및 委託經營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第123條 國家는 農地와 山地 기타 國土의 效率的이고 균형있는 利用·開發과 保全을 위하여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義務를 課할 수 있다.

第124條 ①國家는 農民·漁民의 自助를 基盤으로 하는 農漁村開發을 위하여 필요한 計劃을 樹立하며, 地域社會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한다.

②國家는 中小企業의 事業活動을 保護·育成하여야 한다.

③國家는 農民·漁民과 中小企業의 自助組織을 育成하여야 하며, 그 政治的 中立性을 보장한다.

第125條 國家는 건전한 消費行爲를 啓導하고 生産品의 品質向上을 促求하기 위한 消費者保護運動을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第126條 國家는 對外貿易을 育成하며, 이를 規制·調整할 수 있다.

第127條 國防上 또는 國民經濟上 緊切한 필요로 인하여 法律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그 經營을 統制 또는 管理할 수 없다.

第128條 ①國家는 國民經濟의 발전에 노력하고 科學技術을 暢達·振興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國家標準制度를 確立한다.

③大統領은 第1項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諮問機構를 둘 수 있다.

第10章 憲法改正

第129條 ①憲法改正은 大統領 또는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發議로 提案된다.

②大統領의 任期延長 또는 重任變更을 위한 憲法改正은 그 憲法改正提案 당시의 大統領에 대하여는 效力이 없다.

第130條 提案된 憲法改正案은 大統領이 20日以上의 期間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131條 ①國會는 憲法改正案이 公告된 날로부터 60日以內에 議決하여야 하며, 國

會의 議決은 在籍議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②憲法改正案은 國會가 議決한 後 30日以內에 國民投票에 붙여 國會議員選擧權者 過半數의 投票와 投票者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③憲法改正案이 第2項의 贊成을 얻은 때에는 憲法改正은 確定되며, 大統領은 즉시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

附 則

第1條 이 憲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이 憲法에 의한 最初의 大統領과 國會議員의 選擧는 1981年 6月 30日까지 實施한다.

第3條 이 憲法 施行당시의 大統領의 任期는 이 憲法에 의한 最初의 大統領이 選出됨과 동시에 終了된다.

第4條 이 憲法 施行과 동시에 이 憲法 施行당시의 統一主體國民會議는 廢止되고 그 代議員의 任期도 終了된다.

第5條 ①이 憲法 施行당시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이 憲法施行과 동시에 終了된다.

②이 憲法에 의하여 選擧된 最初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國會의 最初의 集會日로부터 開始된다.

第6條 ①國家保衛立法會議는 이 憲法에 의한 國會의 最初의 集會日 前日까지 存續하며, 이 憲法施行日로부터 이 憲法에 의한 國會의 最初의 集會日 前日까지 國會의 權限을 代行한다.

②國家保衛立法會議는 各界의 代表者로 構成하되, 그 組織과 運營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③國家保衛立法會議가 制定한 法律과 이에 따라 행하여진 裁判 및 豫算 기타 處分등은 그 效力을 持續하며, 이 憲法 기타의 이유로 提訴하거나 異議를 할 수 없다.

④國家保衛立法會議는 政治風土의 刷新과 道義政治의 具現을 위하여 이 憲法施行日以前의 政治的 또는 社會的 腐敗나 混亂에 현저한 責任이 있는 者에 대한 政治活動을 規制하는 法律을 制定할 수 있다.

第7條 새로운 政治秩序의 確立을 위하여 이 憲法 施行과 동시에 이 憲法 施行당시의 政黨은 당연히 解散된다. 다만, 늦어도 이 憲法에 의한 最初의 大統領選擧日 3月以前까지는 새로운 政黨의 設立이 보장된다.

第8條 ①이 憲法에 의하여 選擧方法이나 任命權者가 變更된 公務員과 大法院長·大法院判事·監査院長·監査委員·憲法委員會委員은 이 憲法에 의하여 後任者가 選任될 때까지 그 職務를 행하며, 이 경우 前任者인 公務員의 任期는 後任者가 選任되는 前日까지로 한다.

②이 憲法중 公務員의 任期 또는 重任制限에 관한 規定은 이 憲法에 의하여 그 公務員이 最初로 選出 또는 任命된 때로부터 適用한다.

第9條 이 憲法 施行당시의 法令과 條約은 이 憲法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한 그 效力을 持續한다.

第10條 이 憲法에 의한 地方議會는 地方自治團體의 財政自立度를 감안하여 順次的으로 構成하되, 그 構成時期는 法律로 정한다.

Ⅱ.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2001·5·24 법률제6481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금·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나.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유치 또는 수용하는 데 사용하는 시설
   다. 군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 및 헌병대영창을 포함한다)
   라. 외국인보호소
   마. 다수인보호시설
3. "다수인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수의 사람을 보호·수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이 법이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

(추 133)

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4인(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⑤위원중 4인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한다.

⑥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7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대통령은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8조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추 133)

제9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0조 (위원의 겸직금지) ①위원은 재직중 다음 각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3. 그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인권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1조 (퇴직 인권위원의 공직취임 제한) 위원은 퇴직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다.

제12조 (소위원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자문기구)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사무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

(추 133)

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소속직원중 5급이상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①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밖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19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국가기관과의 협의) ①관계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

(추 133)

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밖의 공·사단체(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1조 (정부보고서 작성시 위원회 의견청취) 국제인권규약의 규정에 따라 관계국가기관이 정부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2조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등에 필요한 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조회를 받은 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 (청문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 (시설의 방문조사) ①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결로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직원 및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소속직원 및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위임받은 전문가가 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직원을 동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위원등"이라 한다)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추 133)

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방문 및 조사를 받는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즉시 방문 및 조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등은 구금·보호시설의 직원 및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이하 "시설수용자"라 한다)와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은 위원등이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장소에 입회할 수 있다. 다만,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한다.

⑥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의 절차와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①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등에 대하여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표명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설명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26조 (인권교육과 홍보) ①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인권교육과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훈련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장과 협의하여 인권에 관한 연구를 요청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다.

(추 133)

⑥위원회는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단체 또는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인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7조 (인권자료실) ①위원회는 인권자료실을 둘 수 있다.

②인권자료실은 인권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와 자료등을 수집·정리·보존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인권자료실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으로 본다.

④인권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①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조사 또는 처리한 내용에 관하여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위원회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9조 (보고서 작성등) ①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③관계기관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한 의견,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

제30조 (위원회의 조사대상) ①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추 133)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②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우대를 차별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한 경우 그 우대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③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①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소속공무원등"이라 한다)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시설수용자가 위원회 위원 또는 소속직원(이하 "위원등"이라 한다)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속공무원등은 즉시 그 뜻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추 133)

③소속공무원등은 제1항에 따라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보에 대한 위원회의 확인서 및 면담일정서는 발급받는 즉시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 혹은 시설수용자가 진정을 원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등으로 하여금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게 하여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때 진정을 접수한 위원등은 즉시 접수증명원을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등의 구금·보호시설의 방문 및 진정의 접수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진정인(진정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과 위원등과의 면담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시설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

⑦소속공무원등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할 수 없다.

⑧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서 작성과 제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금·보호시설에서 이행하여야 할 조치 및 그밖의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진정의 각하등) ①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자가 한 진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이

(추 133)

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중인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진정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7.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9.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10. 진정의 취지가 당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을 각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을 관계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정을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진정을 각하 또는 이송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진정인에게 권리를 구제받는 데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제33조 (다른 구제절차와 이송) ①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 정한 권리구제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진정을 그 다른 국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정 또는 고소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관할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진정을 이송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진정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 (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①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의 인멸등을 방지하거나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는 검찰총장

(추 133)

또는 관할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또는 관할수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 (조사의 목적) ①위원회의 조사는 국가기관의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 (조사의 방법)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등의 제출요구
3.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자료등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
4. 당사자, 관계인, 관계기관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②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등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자료등에 대하여 실지조사 또는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14일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행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위원등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는 "관계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추 133)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위원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⑦위원회가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 당해 자료·물건 또는 시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관계국가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소명하고 그 자료·물건의 제출이나 그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계국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인 경우
2. 범죄수사나 계속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7조 (질문·검사권) ①위원회는 제36조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등의 소재 또는 관계인에 관하여 알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서류 및 그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②제3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8조 (위원의 제척등) ①위원과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진정의 당사자이거나 그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진정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

(추 133)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39조 (진정의 기각) ①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사실이 아닌 경우
2.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회는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 (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사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1조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조정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3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위원회가 회부한 조정을 심의·의결한다.

③조정위원중 2인은 위원회가 위원중에서, 1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회가 위촉하되 비상임으로 하며, 조정위원 3인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1.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국가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의 직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3.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이상의 직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④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운영, 조정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⑤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 및 위원회의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 (조정) ①위원회는 진정에 대하여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하고 제40조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진정을

(추 133)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②조정은 조정절차의 개시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중에 당사자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손해배상 그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3.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조정위원회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당사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43조 (조정의 효력)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과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44조 (구제조치등의 권고) ①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2조제4항 각호에 정한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 (고발 및 징계권고) ①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추 13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 군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수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3월이내에 수사를 종료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위원회는 제44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조치를 하기 전에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7조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①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 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의 요청의 절차·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①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가 계속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의료, 급식, 피복등의 제공
2. 장소, 시설, 자료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3.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장소의 변경
4.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5.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등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6. 그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추 133)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 또는 증거의 확보나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9조 (조사와 조정등의 비공개)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50조 (처리결과의 공개) 위원회는 이 장에 의한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결과, 관계기관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등이 한 조치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 칙

제51조 (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 (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자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3조 (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4조 (공무원등의 파견)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등에 있어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5조 (불이익 금지와 지원)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추 133)

②위원회는 인권침해행위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나 자료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 절차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벌 칙

제56조 (인권옹호업무방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
2.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3. 위계로써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4. 이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는 타인의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

②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제4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57조 (진정서작성등의 방해)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 (자격사칭) 제5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 (비밀누설) 제5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처리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60조 (긴급구제조치방해)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하는 조치를 방해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 (비밀침해) 제31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침해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추 133)

제6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등을 제출한 자

②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권위원 및 소속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규칙의 제정·공포,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일이전에 할 수 있다.

②(인권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된 인권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③(대통령령의 제정) 위원장은 국무총리에게 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추 133)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정 2002· 2· 9 대통령령제17517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수인보호시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아동직업훈련시설·자립지원시설 및 아동단기보호시설
2.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
3. 정신보건시설 :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한다)·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4. 부랑인복지시설 : 부랑인의 보호 및 재활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5. 노인복지시설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및 실비양로시설
   나.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및 실비노인요양시설
6.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 :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소·선도보호시설 및 자립자활시설
7. 갱생보호시설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한다)

제3조 (구금·보호시설의 방문조사) ①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구금·보

(추 141)

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그 취지·일시·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미리 통지를 하면 조사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이나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이하 "시설수용자"라 한다) 등의 진술을 듣는 일
2.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녹음, 녹화, 사진촬영, 시설수용자의 건강상태조사 등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그 밖의 상황을 확인하는 일

④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음 또는 녹화한 내용은 당해 진술의 취지 또는 조사대상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조사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당초 녹음 또는 녹화된 상태 그대로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등은 구금·보호시설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내용을 방문조사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조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시설수용자와의 면담) ①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등이 시설수용자와 면담하는 경우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위원 등은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면담장소에 입회하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의 수를 제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등이 시설수용자와 면담하는 장소에 입회하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은 위원 등의 승낙없이는 면담에 참여할 수 없

(추 141)

으며,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설수용자의 진술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면담조사 이후의 보호조치) ①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위원은 면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금·보호시설의 직원 또는 시설수용자가 신체·건강상의 위해 그 밖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진정방법의 고지 등) ①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시설수용자를 최초로 보호·수용하는 때에는 시설수용자에게 인권침해사실을 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인권침해에 관하여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기재한 안내서를 시설수용자가 상시로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진정함의 설치·운용) ①구금·보호시설의 장은 구금·보호시설안의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함을 설치한 때에는 위원회에 진정함이 설치된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시설수용자가 직접 진정서를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한 후 진정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이 진정함에 들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진정함에 진정서 또는 서면이 들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함용 봉투의 양식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 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위원회명의의 서신을 개봉한 결과 당해 서신이 위원회가 진정인인 시설수용자에게 발송한 서신임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서신중 위원회가 열람금지를

(추 141)

요청한 특정서면은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 ①시설수용자가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내는 진정서 그 밖의 서면의 작성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이를 금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보내기 위하여 작성 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압수 또는 폐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작성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고 작성 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시설수용자가 징벌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이유로 위원회에 보내기 위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방문진정접수)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등이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진정을 접수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방문의 통지)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등이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제척 및 기피) ①위원회의 위원과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이하 이 조와 제15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의 제척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②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은 위원회에 그 원인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과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은 위원은 지체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제척 및 기피신청의 처리) ①위원장은 제척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

(추 141)

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각하한다.

제14조 (의결절차의 정지) 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의결절차를 정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위원의 회피) ①위원이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회피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6조 (소위원회 위원의 지명)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위원이 제척·기피 또는 회피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직무를 수행할 다른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17조 (전문위원)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8조 (여비 등의 지급)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인에게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위원장은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과태료의 부과금액·납부기간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주어진 기간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추 141)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②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국가인권위원회소속공무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③보안업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추 141)

●국가인권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2002·2·4 대통령령제17512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기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소속하에 인권자료실을 둔다.

제2장 위원회

제3조 (직무)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제5조 (사무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을 두며, 사무총장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 (하부조직) ①사무처에 총무과·인권정책국·행정지원국·인권침해조사국·차별조사국 및 교육협력국을 둔다.

②사무총장밑에 공보담당관·감사담당관 및 인권상담센터를 둔다.

제7조 (공보담당관) ①공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공보담당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제8조 (감사담당관) ①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추 141)

1.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
2.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3. 소속직원의 윤리규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소속직원의 재산등록·심사·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5. 인권위원의 겸직금지 및 퇴직인권위원의 공직취임제한에 관한 사항
6. 소속직원의 비위방지계획의 수립·집행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7.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과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8. 그 밖에 위원장 및 사무총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9조 (인권상담센터) ①인권상담센터에 소장을 두되,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진정사항의 안내 및 상담
2. 진정서 등의 접수·분류 및 송부

제10조 (총무과) ①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직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그 밖의 인사사무
2. 보안업무
3. 관인의 관리
4. 문서의 분류·수발·통제·보존 등 문서관리
5. 비상대비 및 직장예비군·민방위대의 관리
6.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7. 세입·세출예산의 운용과 결산 및 회계
8. 그 밖에 다른 국·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 (인권정책국) ①인권정책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정책총괄과·법제개선담당관 및 인권연구담당관을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정책총괄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법제개선담당관 및 인권연구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권정책의 추진에 대한 분석·평가

(추 141)

2.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간보고서 및 인권백서의 작성
3. 대통령 및 국회에 제출하는 인권상황종합보고서의 작성
4. 자문기구의 운영

⑤법제개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인권관련 법령·제도·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보고서 작성에 대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4.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국제인권조약과 인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국내시행에 관한 법률적 지원

⑥인권연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각종 연구단체 등에 대한 연구요청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2. 인권관련 연구기관·전문가 등과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의 수행 및 지원

제12조 (행정지원국) ①행정지원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예산행정운영과·법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을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예산행정운영과장 및 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정보화담당관은 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예산행정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국회관계업무의 총괄·조정
4. 조직·정원의 관리 및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5.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6. 통계 및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및 분석
7. 위원회 및 소위원회 안건의 취합 및 관리
8. 위원회 의사일정의 수립 및 조정
9. 조정위원회의 운영

(추 141)

⑤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에 대한 법률적 자문
2. 법령안 및 국무회의 제출안건의 입안·심사 및 협의
3. 소송 및 행정심판관련 사무의 총괄
4. 위원회 결정 및 조정사례의 분석 및 결정례집 발간
5. 위원회소관 법령질의·회신 그 밖의 법무관련 사항

⑥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운영
2. 정보화관련 제도개선 및 정보통신 보안활동
3. 전산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운영지원
4.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의 유통관리
5. 그 밖의 정보화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제13조 (인권침해조사국) ①인권침해조사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인권침해조사1과·인권침해조사2과 및 조사기획담당관을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인권침해조사1과장 및 인권침해조사2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조사기획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인권침해조사1과장 및 인권침해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진정사항의 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진정사항의 조사와 관련된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⑤조사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조사 및 구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총괄·조정
2. 조사절차 및 기법에 관한 연구와 개선에 관한 사항
3. 조사 및 구제와 관련된 통계의 유지·관리

제14조 (차별조사국) ①차별조사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차별조사1과 및 차별조사2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차별조사1과장 및 차별조사2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추 141)

④차별조사1과장 및 차별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진정사항의 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진정사항의 조사와 관련된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급 지급,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 (교육협력국) ①교육협력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국내협력과·국제협력담당관 및 인권교육담당관을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내협력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제협력담당관 및 인권교육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국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권단체와의 상호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국내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⑤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조사·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에 관한 사항
2.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권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⑥인권교육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인권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인권교육업무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의
3. 인권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제16조 (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국 또는 담당관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국 또는 담당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에 두는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정원과 5급 이하 공무원의

(추 141)

계급별 정원중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11조제2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권정책국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제3장 인권자료실

제19조 (인권자료실) ①인권자료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실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실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인권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보존
2. 국내외 도서관 등과의 인권관련 자료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인권자료실 자료의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사항 등

제20조 (인권자료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인권자료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가인권위원회공무원정원표(제17조관련)

총 계	175
정무직 계	4
위원장(장관급)	1
상임위원(차관급)	3
별정직 계	2
사무총장(1급상당)	1
6급상당	1
일반직 계	138
이사관·부이사관	4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2
서기관	8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7
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0
행정사무관	22
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20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	17
행정주사 또는 6급상당 별정직	13
전산주사	1
행정주사보	23
행정주사보 또는 7급상당 별정직	7
전산주사보	1
기능직 계	31
기능7급 사무원	2
기능8급 사무원	4
기능9급 사무원	8
기능10급 사무원	13
기능10급 운전원	4

(추 141)

〔별표 2〕

인권자료실공무원정원표(제20조관련)

총 계	5
일반직 계	4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1
행정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2
기능직 계	1
기능9급 사무원	1

(추 141)

Ⅲ. 근로기준법

第3章 勤勞基準

●勤勞基準法

소관부처 : 노동부

制定 1997·3·13 法律第5309號
改正 1997·12·24 法律第5473號
1998·2·20 法律第5510號
1999·2·8 法律第5885號
2001·8·14 法律第6507號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憲法에 의하여 勤勞條件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勤勞者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國民經濟의 발전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勤勞條件의 기준) 이 法에서 정하는 勤勞條件은 最低基準이므로 勤勞關係當事者는 이 기준을 이유로 勤勞條件을 低下시킬 수 없다.

第3條 (勤勞條件의 決定) 勤勞條件은 勤勞者와 使用者가 동등한 地位에서 自由意思에 의하여 決定하여야 한다.

第4條 (勤勞條件의 준수) 勤勞者와 使用者는 團體協約, 就業規則과 勤勞契約을 준수하여야 하며 各者가 성실하게 이행할 義務가 있다.

第5條 (均等處遇) 使用者는 勤勞者에 대하여 男女의 差別的 待遇를 하지 못하며 國籍, 信仰 또는 社會的 身分을 이유로 勤勞條件에 대한 差別的 處遇를 하지 못한다.

第6條 (强制勤勞의 금지) 使用者는 暴行, 脅迫, 監禁 기타 精神상 또는 身體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拘束하는 수단으로써 勤勞者의 自由意思에 반하는 勤勞를 强要하지 못한다.

第7條 (暴行의 금지) 使用者는 事故發生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勤勞者에게 暴行, 毆打行爲를 하지 못한다.

第8條 (中間搾取의 排除) 누구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營利로 他人의 就業에 介入하거나 中間人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第9條 (公民權行使의 보장) 使用者는 勤勞者가 勤勞時間중에 選擧權 기타 公民權의 행사 또는 公의 職務를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時間을 請求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權利行使 또는 公의 職務를 執行함에 지장이 없는 한 請求한 時刻을 변경할 수 있다.

(추 135)

第10條 (적용범위) ①이 法은 常時 5人이상의 勤勞者를 사용하는 모든 事業 또는 事業場에 적용한다. 다만, 同居의 親族만을 사용하는 事業 또는 事業場과 家事使用人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常時 4人이하의 勤勞者를 사용하는 事業 또는 事業場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法의 一部規定을 적용할 수 있다.

第11條 (적용범위) 이 法과 이 法에 의하여 발하는 大統領令은 國家, 特別市·廣域市·道, 市·郡·區, 邑·面·洞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第12條 (보고, 출석의 義務) 使用者 또는 勤勞者는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勞動部長官·勞動委員會 또는 勤勞監督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출석하여야 한다.

第13條 (法令要旨등의 게시) ①使用者는 이 法과 이 法에 의하여 발하는 大統領令의 요지와 就業規則을 常時 각 事業場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勤勞者에게 周知시켜야 한다.

②使用者는 第1項의 命令中 寄宿舍에 관한 規定과 寄宿舍規則을 寄宿舍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寄宿하는 勤勞者에게 周知시켜야 한다.

第14條 (勤勞者의 定義) 이 法에서 "勤勞者"라 함은 職業의 種類를 불문하고 事業 또는 事業場에 賃金을 目的으로 勤勞를 提供하는 者를 말한다.

第15條 (使用者의 定義) 이 法에서 "使用者"라 함은 事業主 또는 事業經營擔當者 기타 勤勞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事業主를 위하여 행위하는 者를 말한다.

第16條 (勤勞의 定義) 이 法에서 "勤勞"라 함은 精神勞動과 肉體勞動을 말한다.

第17條 (勤勞契約의 定義) 이 法에서 "勤勞契約"이라 함은 勤勞者가 使用者에게 勤勞를 提供하고 使用者는 이에 대하여 賃金을 지급함을 目的으로 체결된 契約을 말한다.

第18條 (賃金의 定義) 이 法에서 "賃金"이라 함은 使用者가 勤勞의 對償으로 勤勞者에게 賃金, 俸給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金品을 말한다.

第19條 (平均賃金의 定義) ①이 法에서 "平均賃金"이라 함은 이를 算定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月間에 그 勤勞者에 대하여 지급된 賃金의 總額을 그 기간의 總日數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就業후 3月미만도 이에 준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된 금액이 당해 勤勞者의 通常賃金보다 低額일

(추 81)

경우에는 그 通常賃金額을 平均賃金으로 한다.

第20條 (所定勤勞時間의 定義) 이 法에서 "所定勤勞時間"이라 함은 第49條, 第67條 本文 또는 産業安全保健法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勤勞時間의 범위안에서 勤勞者와 使用者間에 정한 勤勞時間을 말한다.

第21條 (短時間勤勞者의 定義) 이 法에서 "短時間勤勞者"라 함은 1週間의 所定勤勞時間이 당해 事業場의 同種 業務에 종사하는 通常勤勞者의 1週間의 所定勤勞時間에 비하여 짧은 勤勞者를 말한다.

第2章 勤勞契約

第22條 (이 法 위반의 勤勞契約) ①이 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勤勞條件을 정한 勤勞契約은 그 부분에 한하여 無效로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無效로 된 부분은 이 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第23條 (契約期間) 勤勞契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年을 초과하지 못한다.

第24條 (勤勞條件의 명시) 使用者는 勤勞契約 체결시에 勤勞者에 대하여 賃金, 勤勞時間 기타의 勤勞條件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賃金의 構成項目, 計算方法 및 支拂方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第25條 (短時間勤勞者의 勤勞條件) ①短時間勤勞者의 勤勞條件은 당해 事業場의 同種 業務에 종사하는 通常勤勞者의 勤勞時間을 기준으로 算定한 比率에 따라 決定되어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條件을 決定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1週間의 所定勤勞時間이 현저히 짧은 短時間勤勞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는 이 法의 一部規定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26條 (勤勞條件의 위반) ①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명시된 勤勞條件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勤勞者는 勤勞條件 위반을 이유로 損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勤勞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者가 損害賠償을 請求할 경우에는 勞動委員會에 申請할 수 있으며 勤勞契約이 解除되었을 경우에는 使用者는 就業을 目的으로 居住를 변경하는 勤勞者에게 歸鄕旅費를 지급하여야 한다.

第27條 (違約豫定의 금지) 使用者는 勤勞契約 불이행에 대한 違約金 또는 損害賠償額을 豫定하는 契約을 체결하지 못한다.

第28條 (前借金相殺의 금지) 使用者는 前借金 기타 勤勞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前

(추 93)

貸償權과 賃金을 相殺하지 못한다.

第29條 (强制貯金의 금지) ①使用者는 勤勞契約에 附隨하여 强制貯蓄 또는 貯蓄金의 관리를 規定하는 契約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使用者가 勤勞者의 委託으로 貯蓄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改正 99·2·8〉

1. 貯蓄의 종류·기간 및 金融機關을 勤勞者가 결정하고, 勤勞者 본인의 이름으로 貯蓄할 것
2. 勤勞者가 貯蓄證書등 관련자료의 閱覽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第30條 (解雇등의 制限) ①使用者는 勤勞者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解雇, 休職, 停職, 轉職, 減俸 기타 懲罰을 하지 못한다.

②使用者는 勤勞者가 業務상 負傷 또는 疾病의 療養을 위하여 休業한 期間과 그 후 30日間 또는 産前·産後의 여성이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休業한 期間과 그 후 30日間은 解雇하지 못한다. 다만, 使用者가 第87條에 規定된 一時補償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8, 2001·8·14〉

③削除 〈99·2·8〉

第31條 (경영상 이유에 의한 解雇의 제한) ①使用者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勤勞者를 解雇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緊迫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讓渡·引受·合併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第1項의 경우에 使用者는 解雇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解雇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對象者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男女의 性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使用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解雇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解雇의 기준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事業場에 勤勞者의 過半數로 조직된 勞動組合이 있는 경우에는 그 勞動組合(勤勞者의 過半數로 조직된 勞動組合이 없는 경우에는 勤勞者의 過半數를 代表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勤勞者代表"라 한다)에 대하여 解雇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日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協議하여야 한다.

(추 135)

④使用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人員을 解雇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勞動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⑤使用者가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勤勞者를 解雇한 때에는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解雇를 한 것으로 본다.

〔全文改正 98·2·20〕

第31條의2 (우선 재고용등) ①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者를 解雇한 使用者는 勤勞者를 解雇한 날부터 2年이내에 勤勞者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解雇된 勤勞者가 원하는 경우 解雇전의 직책등을 감안하여 그 勤勞者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解雇된 勤勞者에 대하여 生計安定, 再就業, 職業訓練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8·2·20〕

第32條 (解雇의 豫告) ①使用者는 勤勞者를 解雇(경영상 이유에 의한 解雇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日전에 그 豫告를 하여야 하며 30日전에 豫告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日分이상의 通常賃金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天災·事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勤勞者가 고의로 事業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財産상 損害를 끼친 경우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8〉

②削除 〈99·2·8〉

第33條 (정당한 이유없는 解雇등의 救濟申請) ①使用者가 勤勞者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解雇·休職·停職·轉職·減俸 기타 懲罰을 한 때에는 당해 勤勞者는 勞動委員會에 그 救濟를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救濟申請과 審査節次등에 관하여는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第82條 내지 第8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第85條第5項을 제외한다.

第34條 (退職金制度) ①使用者는 繼續勤勞年數 1年에 대하여 30日分이상의 平均賃金을 退職金으로서 退職하는 勤勞者에게 지급할 수 있는 制度를 設定하여야 한다. 다만, 勤勞年數가 1年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 105)

②第1項의 退職金制度를 設定함에 있어서 하나의 事業내에 差等制度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使用者는 勤勞者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勤勞者가 退職하기 전에 당해 勤勞者가 계속 勤勞한 기간에 대한 退職金을 미리 精算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精算하여 지급한 후의 退職金 算定을 위한 繼續勤勞年數는 精算時點부터 새로이 起算한다.

④使用者가 勤勞者를 被保險者 또는 受益者로 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退職保險 또는 退職一時金信託(이하 "退職保險등"이라 한다)에 加入하여 勤勞者의 退職시에 一時金 또는 年金으로 受領하게 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退職金制度를 設定한 것으로 본다. 다만, 退職保險등에 의한 一時金의 額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退職金의 額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改正 97·12·24〉

第35條 (豫告解雇의 적용예외) 第32條의 規定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勤勞者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日傭勤勞者로서 3月을 繼續勤務하지 아니한 者
2. 2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者
3. 月給勤勞者로서 6月이 되지 못한 者
4. 季節的 業務에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者
5. 修習使用중의 勤勞者

第36條 (金品淸算) 使用者는 勤勞者가 사망 또는 退職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日이내에 賃金·補償金 기타 일체의 金品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當事者間의 合意에 의하여 期日을 연장할 수 있다.

第37條 (賃金債權 優先辨濟) ①賃金·退職金·災害補償金 기타 勤勞關係로 인한 債權은 使用者의 總財産에 대하여 質權 또는 抵當權에 의하여 擔保된 債權을 제외하고는 租稅·公課金 및 다른 債權에 우선하여 辨濟되어야 한다. 다만, 質權 또는 抵當權에 우선하는 租稅·公課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債權은 使用者의 總財産에 대하여 質權 또는 抵當權에 의하여 擔保된 債權, 租稅·公課金 및 다른 債權에 우선하여 辨濟되어야 한다. 〈改正 97·12·24〉

(추 105)

1. 최종 3月分의 賃金

2. 최종 3年間의 退職金

3. 災害補償金

〈1997·12·24 法律第5473號에 의하여 1997·8·21 憲法裁判所에서 不合致決定된 本條第2項을 改正〉

③第2項第2號의 退職金은 繼續勤勞年數 1年에 대하여 30日分의 平均賃金으로 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新設 97·12·24〉

第38條 (使用證明書) ①使用者는 勤勞者가 退職후라도 사용기간, 業務種類, 地位와 賃金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證明書를 請求한 때에는 사실대로 記入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證明書에는 勤勞者가 요구한 사항만을 記入하여야 한다.

第39條 (就業妨害의 금지) 누구든지 勤勞者의 就業을 방해할 目的으로 秘密記號 또는 名簿를 작성·사용하거나 通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40條 (勤勞者의 名簿) ①使用者는 각 事業場別로 勤勞者名簿를 작성하고 勤勞者의 姓名, 生年月日, 履歷 기타 大統領令이 정한 사항을 記入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記入할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訂正하여야 한다.

第41條 (契約書類의 보존) 使用者는 勤勞者名簿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勤勞契約에 관한 중요한 書類를 3年間 보존하여야 한다.

第3章 賃 金

第42條 (賃金支拂) ①賃金은 通貨로 직접 勤勞者에게 그 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法令 또는 團體協約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賃金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通貨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賃金은 매월 1回이상 일정한 期日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臨時로 지급하는 賃金, 手當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賃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3條 (都給事業에 대한 賃金지급) ①事業이 數次의 都給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下受給人이 直上受給人의 歸責事由로 勤勞者에게 賃金을 지급하지 못한

(추 105)

때에는 그 直上受給人은 당해 受給人과 連帶하여 責任을 진다.

②第1項의 直上受給人의 歸責事由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4條 (非常時 支拂) 使用者는 勤勞者가 出産, 疾病, 災害 기타 大統領令이 정한 非常한 경우의 費用에 충당하기 위하여 請求하는 경우에는 支給期日전이라도 旣往의 勤勞에 대한 賃金을 지급하여야 한다.

第45條 (休業手當) ①使用者의 歸責事由로 인하여 休業하는 경우에는 使用者는 休業期間중 당해 勤勞者에 대하여 平均賃金의 100分의 70이상의 手當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平均賃金의 100分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通常賃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通常賃金을 休業手當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勞動委員會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第1項의 기준에 미달하는 休業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

第46條 (都給勤勞者) 使用者는 都給 기타 이에 준하는 制度로 사용하는 勤勞者에 대하여는 勤勞時間에 따라 一定額의 賃金을 보장하여야 한다.

第47條 (賃金臺帳) 使用者는 각 事業場別로 賃金臺帳을 작성하고 賃金과 家族手當 計算의 기초가 되는 사항, 賃金額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賃金支給시마다 記入하여야 한다.

第48條 (賃金의 時效) 이 法 規定에 의한 賃金債權은 3年間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第4章 勤勞時間과 休息

第49條 (勤勞時間) ①1週間의 勤勞時間은 休憩時間을 除하고 44時間을 초과할 수 없다.

②1日의 勤勞時間은 休憩時間을 除하고 8時間을 초과할 수 없다.

第50條 (彈力的 勤勞時間制) ①使用者는 就業規則(就業規則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週間이내의 일정한 單位기간을 平均하여 1週間의 勤勞時間이 第49條第1項의 勤勞時間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特定週에 第49條第1項의 勤勞時間을, 特定日에 第49條第2項의 勤勞時間을 초과하여 勤勞하게 할 수 있다. 다만, 特定週의 勤勞時間은 48時間을 초과할 수 없다.

②使用者는 勤勞者代表와의 書面合意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추 105)

1月이내의 單位期間을 平均하여 1週間의 勤勞時間이 第49條第1項의 勤勞時間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特定週에 第49條第1項의 勤勞時間을, 特定日에 第49條第2項의 勤勞時間을 초과하여 勤勞하게 할 수 있다. 다만, 特定週의 勤勞時間은 56時間을, 特定日의 勤勞時間은 12時間을 초과할 수 없다.

1. 對象勤勞者의 범위
2. 單位期間(1月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單位期間에 있어서의 勤勞日 및 당해 勤勞日別 勤勞時間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15歲이상 18歲미만의 勤勞者와 妊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1·8·14〉

④使用者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勤勞者를 勤勞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賃金水準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賃金補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削除 〈99·2·8〉

第51條 (選擇的 勤勞時間制) 使用者는 就業規則(就業規則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始業 및 終業時刻을 勤勞者의 決定에 맡기기로 한 勤勞者에 대하여 勤勞者代表와의 書面合意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1月이내의 精算期間을 平均하여 1週間의 勤勞時間이 第49條第1項의 勤勞時間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週間에 第49條第1項의 勤勞時間을, 1日에 第49條第2項의 勤勞時間을 초과하여 勤勞하게 할 수 있다.

1. 對象勤勞者의 범위(15歲이상 18歲미만의 勤勞者를 제외한다)
2. 精算期間(1月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精算期間에 있어서의 總勤勞時間
4. 반드시 勤勞하여야 할 時間帶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開始 및 終了時刻
5. 勤勞者가 그의 決定에 의하여 勤勞할 수 있는 時間帶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開始 및 終了時刻
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第52條 (延長勤勞의 제한) ①當事者間의 合意가 있는 경우에는 1週間에 12時間을 한도로 第49條의 勤勞時間을 연장할 수 있다.

②當事者間의 合意가 있는 경우에는 1週間에 12時間을 한도로 第50條의 勤勞時間을 연장할 수 있으며 第51條第2號의 精算期間을 平均하여 1週間에 12時間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第51條의 勤勞時間을 연장할 수 있다.

③使用者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勞動部長官의 認可와 勤勞者의 同意를 얻어 第1項과 第2項의 勤勞時間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事態가 급박하여 勞

(추 135)

動部長官의 認可를 받을 時間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勞動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勤勞時間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후 延長時間에 상당하는 休憩 또는 休日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第53條 (休憩) ①使用者는 勤勞時間이 4時間인 경우에는 30分이상, 8時間인 경우에는 1時間이상의 休憩時間을 勤勞時間 途中에 주어야 한다.

②休憩時間은 勤勞者가 자유로 이용할 수 있다.

第54條 (休日) 使用者는 勤勞者에 대하여 1週日에 平均 1回이상의 有給休日을 주어야 한다.

第55條 (延長·夜間 및 休日勤勞) 使用者는 延長勤勞(第52條·第58條 및 第67條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연장된 時間의 勤勞)와 夜間勤勞(下午 10時부터 上午 6時까지 사이의 勤勞) 또는 休日勤勞에 대하여는 通常賃金의 100分의 50이상을 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第56條 (勤勞時間 計算의 特例) ①勤勞者가 出張 기타의 사유로 勤勞時間의 전부 또는 일부를 事業場밖에서 勤勞하여 勤勞時間을 算定하기 어려운 때에는 所定勤勞時間을 勤勞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所定勤勞時間을 초과하여 勤勞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業務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時間을 勤勞한 것으로 본다.

②第1項 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業務에 관하여 勤勞者代表와의 書面合意가 있는 때에는 그 合意에서 정하는 時間을 그 業務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時間으로 본다.

③業務의 성질에 비추어 業務 수행방법을 勤勞者의 裁量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業務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務는 使用者가 勤勞者代表와 書面合意로 정한 時間을 勤勞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書面合意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對象業務
2. 使用者가 業務의 遂行手段 및 時間配分등에 관하여 勤勞者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勤勞時間의 算定은 당해 書面合意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削除 〈99·2·8〉

⑤第1項 및 第3項의 施行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7條 (月次有給休暇) ①使用者는 1月에 대하여 1日의 有給休暇를 주어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給休暇는 勤勞者의 自由意思로 1年間에 한하여 積置

(추 135)

하여 사용하거나 分割하여 사용할 수 있다.

第58條 (勤勞時間 및 休憩時間의 特例)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業에 대하여 使用者는 勤勞者代表와 書面合意를 한 때에는 第5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週 12時間을 초과하여 延長勤勞하게 하거나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休憩時間을 변경할 수 있다.

1. 運輸業, 物品販賣 및 保管業, 金融保險業
2. 映畵製作 및 興行業, 通信業, 敎育硏究 및 調査事業, 廣告業
3. 醫療 및 衛生事業, 接客業, 燒却 및 淸掃業, 理容業
4. 기타 公衆의 편의 또는 業務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

②削除 〈99·2·8〉

第59條 (年次有給休暇) ①使用者는 1年間 皆勤한 勤勞者에 대하여는 10日, 9割이상 出勤한 者에 대하여는 8日의 有給休暇를 주어야 한다.

②使用者는 2年이상 繼續勤勞한 勤勞者에 대하여는 1年을 초과하는 繼續勤勞年數 1年에 대하여 第1項의 休暇에 1日을 加算한 有給休暇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休暇 總日數가 20日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日數에 대하여는 通常賃金을 지급하고 有給休暇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使用者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有給休暇는 勤勞者의 請求가 있는 時期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就業規則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通常賃金 또는 平均賃金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勤勞者가 請求한 時期에 有給休暇를 주는 것이 事業運營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時期를 변경할 수 있다.

④勤勞者가 業務상의 負傷 또는 疾病으로 休業한 기간과 産前·産後의 여성이 第72條의 規定에 의하여 休業한 기간은 第1項의 規定의 적용에 있어서는 出勤한 것으로 본다. 〈改正 2001·8·14〉

⑤第1項 및 第2項의 有給休暇는 1年間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消滅된다. 다만, 使用者의 歸責事由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60條 (有給休暇의 대체) 使用者는 勤勞者代表와의 書面合意에 의하여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月次有給休暇日 또는 第59條의 規定에 의한 年次有給休暇日에 갈음하여 特定勤勞日에 勤勞者를 休務시킬 수 있다.

第61條 (적용의 제외) 이 章과 第5章에서 정한 勤勞時間, 休憩와 休日에 관한 規定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勤勞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土地의 耕作·開墾, 植物의 栽植·栽培·採取事業 기타의 農林事業

(추 135)

2. 動物의 飼育, 水産動植物의 採捕·養殖事業, 기타의 畜産, 養蠶, 水産事業
3. 監視 또는 斷續的으로 勤勞에 從事하는 者로서 使用者가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者
4. 大統領令이 정한 業務에 從事하는 勤勞者

第5章 여성과 少年

第62條 (最低年齡과 就職認許證) ①15歲미만인 者는 勤勞者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就職認許證을 소지한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1·8·14〉

②第1項의 就職認許證은 本人의 申請에 의하여 義務敎育에 지장이 없는 限 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제63조 (사용금지) ①사용자는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이상의 여성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8·14〕

第64條 (年少者證明書) 使用者는 18歲미만인 者에 대하여는 그 年齡을 증명하는 戶籍證明書와 親權者 또는 後見人의 同意書를 事業場에 비치하여야 한다.

第65條 (勤勞契約) ①親權者 또는 後見人은 未成年者의 勤勞契約을 代理할 수 없다.

②親權者, 後見人 또는 勞動部長官은 勤勞契約이 未成年者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向後 이를 解止할 수 있다.

第66條 (賃金請求) 未成年者는 獨自的으로 賃金을 請求할 수 있다.

第67條 (勤勞時間) 15歲이상 18歲미만인 者의 勤勞時間은 1日에 7時間, 1週日에 42時間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當事者間의 合意에 의하여 1日에 1時間, 1週日에 6時間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68조 (야업(夜業)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사용자는 18세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

(추 135)

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8·14〕

第69條 (時間外勤勞) 使用者는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團體協約이 있는 경우라도 1日에 2時間, 1週日에 6時間, 1年에 150時間을 초과하는 時間外의 勤勞를 시키지 못한다. 〈改正 2001·8·14〉

第70條 (坑內勤勞 금지) 使用者는 여성과 18歲미만인 者를 坑內에서 勤勞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1·8·14〉

第71條 (生理休暇) 使用者는 여성인 勤勞者에 대하여 月 1日의 有給生理休暇를 주어야 한다. 〈改正 2001·8·14〉

제72조 (임산부의 보호) ①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1·8·14〕

第73條 (育兒時間) 生後 1年미만의 乳兒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請求가 있는 경우에는 1日 2回 각각 30分이상의 有給授乳時間을 주어야 한다. 〈改正 2001·8·14〉

第74條 및 **第75條** 削除 〈99·2·8〉

第6章 安全과 保健

第76條 (安全과 保健) 勤勞者의 安全과 保健에 관하여는 産業安全保健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7章 技能習得

第77條 (技能習得者의 弊端 제외) 使用者는 養成工, 修習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技能의 習得을 目的으로 하는 勤勞者를 酷使하거나 家事 기타 技能習得에

(추 135)

관계없는 業務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第78條 내지 **第80條** 削除 〈99·2·8〉

第8章 災害補償

第81條 (療養補償) ①勤勞者가 業務상 負傷 또는 疾病에 걸린 경우에는 使用者는 그 費用으로 필요한 療養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療養費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第1項에 規定한 業務상 疾病과 療養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2條 (休業補償) 第81條의 規定에 의하여 療養중에 있는 勤勞者에 대하여는 使用者는 勤勞者의 療養중 平均賃金의 100分의 60의 休業補償을 행하여야 한다.

第83條 (障害補償) 勤勞者가 業務상 負傷 또는 疾病에 걸려 完治後 身體에 障害가 있는 경우에는 使用者는 그 障害程度에 따라 平均賃金에 別表에 정한 日數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障害補償을 행하여야 한다.

第84條 (休業補償, 障害補償의 예외) 勤勞者가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業務상 負傷 또는 疾病에 걸리고 또한 使用者가 그 過失에 대하여 勞動委員會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休業補償 또는 障害補償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第85條 (遺族補償) 勤勞者가 業務상 사망한 경우에는 使用者는 그 遺族에 대하여 平均賃金의 1,000日分의 遺族補償을 행하여야 한다.

第86條 (葬儀費) 勤勞者가 業務상 사망한 경우에는 使用者는 平均賃金의 90日分의 葬儀費를 지급하여야 한다.

第87條 (一時補償) 第81條의 規定에 의하여 補償을 받는 勤勞者가 療養開始後 2年을 경과하여도 負傷 또는 疾病이 完治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平均賃金의 1,340日分의 一時補償을 행하여 그 후의 이 法에 의한 모든 補償責任을 免할 수 있다.

第88條 (分割補償) 使用者는 지급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補償을 받은 者의 同意를 얻은 경우에는 第83條, 第85條 또는 第87條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을 1年間에 걸쳐 分割補償할 수 있다.

第89條 (補償請求權) 補償을 받을 權利는 退職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讓渡 또는 押留하지 못한다.

第90條 (다른 損害賠償과의 관계) 補償을 받게 될 者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民法 기타 法令에 의하여 이 法의 災害補償에 상당한 金品을 받을 경우에는 그 價額의 한도내에서 使用者는 補償의 責任을 免한다.

第91條 (勞動部長官의 審査와 仲裁) ①業務상의 負傷, 疾病 또는 사망의 인정,

(추 135)

療養의 방법, 補償金額의 決定 기타 補償의 실시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勞動部長官에게 審査 또는 事件의 仲裁를 請求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請求가 있는 경우에는 勞動部長官은 1月이내에 審査 또는 仲裁를 하여야 한다.

③勞動部長官은 필요에 의하여 職權으로 審査 또는 事件의 仲裁를 할 수 있다.

④勞動部長官은 審査 또는 仲裁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醫師에게 診斷 또는 檢案을 시킬 수 있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 또는 仲裁의 請求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 또는 仲裁의 開始는 時效의 中斷에 관하여는 이를 裁判상의 請求로 본다.

第92條 (勞動委員會의 審査와 仲裁) ①第91條第2項의 기간내에 審査 또는 仲裁를 하지 아니하거나 審査와 仲裁의 결과에 不服이 있는 者는 勞動委員會의 審査 또는 仲裁를 請求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請求가 있는 경우에는 勞動委員會는 1月이내에 審査 또는 仲裁를 하여야 한다.

第93條 (都給事業에 대한 예외) ①事業이 數次의 都給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災害補償에 대하여는 元受給人을 使用者로 본다.

②第1項의 경우에 元受給人이 書面상 契約으로 下受給人에게 補償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受給人도 또한 使用者로 본다. 다만, 2人이상의 下受給人에게 同一한 事業에 대하여 重複하여 補償을 담당하게 하지 못한다.

③第2項의 경우에 元受給人이 補償의 請求를 받은 경우에는 補償을 담당한 下受給人에게 우선 催告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그 下受給人이 破産의 宣告를 받거나 또는 행방이 알려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94條 (書類의 보존) 使用者는 災害補償에 관한 중요한 書類를 2年間 보존하여야 한다.

第95條 (時效) 이 法의 規定에 의한 災害補償請求權은 3年間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第9章 就業規則

第96條 (就業規則의 작성·신고) 常時 10人이상의 勤勞者를 사용하는 使用者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就業規則을 작성하여 勞動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

(추 81)

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 始業·終業의 時刻, 休憩時間, 休日, 休暇 및 交代勤勞에 관한 사항
2. 賃金의 決定·計算·지급방법, 賃金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昇給에 관한 사항
3. 家族手當의 計算·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退職에 관한 사항
5. 退職金, 賞與 및 最低賃金에 관한 사항
6. 勤勞者의 食費, 作業用品等 부담에 관한 사항
7. 勤勞者를 위한 敎育施設에 관한 사항
8. 安全과 保健에 관한 사항
9. 業務상과 業務외의 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0. 表彰과 制裁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당해 事業 또는 事業場의 勤勞者 全體에 적용될 사항

第97條 (規則의 작성, 변경의 節次) ①使用者는 就業規則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事業 또는 事業場에 勤勞者의 過半數로 組織된 勞動組合이 있는 경우에는 그 勞動組合, 勤勞者의 過半數로 組織된 勞動組合이 없는 경우에는 勤勞者의 過半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就業規則을 勤勞者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②使用者는 第96條의 規定에 의하여 就業規則을 申告할 때에는 第1項의 의견을 記入한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第98條 (制裁規定의 제한) 就業規則에서 勤勞者에 대하여 減給의 制裁를 정할 경우에는 그 減額은 1回의 額이 平均賃金의 1日分의 2分의 1을, 總額이 1賃金支給期에 있어서의 賃金總額의 10分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第99條 (團體協約 준수) ①就業規則은 法令 또는 당해 事業 또는 事業場에 대하여 적용되는 團體協約에 반할 수 없다.

②勞動部長官은 法令 또는 團體協約에 저촉되는 就業規則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第100條 (위반의 효력) 就業規則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勤勞條件을 정한 勤勞契約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無效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無效로 된 부분은 就業規則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추 81)

第10章 寄宿舍

第101條 (寄宿舍 생활의 보장) ①使用者는 事業 또는 事業場의 附屬寄宿舍에 寄宿하는 勤勞者의 私生活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②使用者는 寄宿舍 생활의 自治에 필요한 任員選擧에 간섭하지 못한다.

第102條 (規則의 작성, 변경) ①附屬寄宿舍에 勤勞者를 寄宿시키는 使用者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寄宿舍規則을 작성하여야 한다. 〈改正 99·2·8〉

1. 起寢, 就寢, 외출과 외박에 관한 사항
2. 行事에 관한 사항
3. 食事에 관한 사항
4. 安全과 保健에 관한 사항
5. 建設物과 設備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寄宿舍에 寄宿하는 勤勞者 全體에 적용될 사항

②使用者는 第1項의 規則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寄宿舍에 寄宿하는 勤勞者의 過半數를 代表하는 者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削除 〈99·2·8〉

④使用者와 寄宿舍에 寄宿하는 勤勞者는 寄宿舍規則을 준수하여야 한다.

第103條 (設備와 安全衛生) ①使用者는 附屬寄宿舍에 대하여 勤勞者의 健康, 風紀와 生命의 유지에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강구하여야 할 措置의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章 勤勞監督官등

第104條 (監督機關) ①勤勞條件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勞動部 및 그 소속기관에 勤勞監督官을 둔다.

②勤勞監督官의 資格, 任免과 職務配置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5條 (勤勞監督官의 權限) ①勤勞監督官은 事業場, 寄宿舍 기타 附屬建物에 臨檢하고 帳簿와 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使用者와 勤勞者에 대하여 尋問할 수 있다.

(추 105)

②醫師인 勤勞監督官 또는 勤勞監督官의 委囑을 받은 醫師는 就業을 금지하여야 할 疾病에 걸릴 疑心이 있는 勤勞者에 대하여 檢診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勤勞監督官 또는 그 委囑을 받은 醫師는 그 身分證明書와 勞動部長官의 臨檢 또는 檢診指令書를 提示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臨檢 또는 檢診指令書에는 그 時日, 場所 및 범위를 明記하여야 한다.

⑤勤勞監督官은 이 法 기타 勞動關係法令 위반의 罪에 관하여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관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司法警察官의 職務를 행한다.

第106條 (勤勞監督官의 義務) 勤勞監督官은 職務상 알게 된 秘密을 엄수하여야 한다. 勤勞監督官을 그만 둔 때에도 또한 같다.

第107條 (監督機關에 대한 申告) ①事業 또는 事業場에서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하여 발하는 大統領令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勤勞者는 그 사실을 勞動部長官 또는 勤勞監督官에게 通告할 수 있다.

②使用者는 第1項의 通告를 이유로 勤勞者에 대하여 解雇 기타 不利한 處遇를 하지 못한다.

第108條 (司法警察權 行使者의 제한) 이 法 기타 勞動關係法令에 의한 臨檢, 書類의 제출, 尋問等 搜査는 檢事와 勤勞監督官이 專行한다. 다만, 勤勞監督官의 職務에 관한 犯罪의 搜査에 한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09條 (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勞動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地方勞動官署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第12章 罰 則

第110條 (罰則) 第6條, 第7條, 第8條, 第30條第1項·第2項 또는 第39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11條 (罰則) 勤勞監督官이 이 法에 위반된 사실을 故意로 默過한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5年이하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第112條 (罰則) 第36條, 第42條, 第43條, 第45條, 第55條, 第63條 또는 第70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0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13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

(추 81)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2·8, 2001·8·14〉

1. 第9條, 第29條第1項, 第32條, 第34條第1項·第2項, 第49條, 第52條第1項·第2項·第3項 本文, 第53條, 第54條, 第57條第1項, 第59條第1項·第3項, 第62條, 第67條, 제68조제1항·제2항, 第69條, 第72條, 第73條, 第81條, 第82條, 第83條, 第85條, 第86條 및 第107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5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3. 削除 〈99·2·8〉

第114條 (罰則) 第44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0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15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2·8, 2001·8·14〉

1. 第5條, 第13條, 第23條, 第24條, 第27條, 第28條, 第29條第2項, 第38條, 第40條, 第41條, 第46條, 第47條, 第52條第3項 但書, 第64條, 제65조, 제68조제3항, 제71조, 第77條, 第94條, 第96條, 第97條, 第98條, 第101條第2項, 第102條, 第103條 및 第106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削除 〈99·2·8〉
3. 第9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4. 第105條의 規定에 의한 勤勞監督官 또는 그 委囑을 받은 醫師의 臨檢 또는 檢診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尋問에 대하여 陳述을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陳述을 하며 帳簿·書類의 提出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虛僞帳簿·書類를 제출한 者
5.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勞動部長官, 勞動委員會 또는 勤勞監督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報告 또는 출석을 하지 않거나 虛僞의 報告를 한 者

第116條 (兩罰規定) 이 法의 위반행위를 한 者가 당해 事業의 勤勞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事業主를 위하여 행위한 代理人, 使用人 기타의 從業者인 경우에는 事業主에 대하여도 각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다만, 事業主(事業主가 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 事業主가 營業에 관하여 成年者와 동일의 能力을 갖지 아니하는 未成年者 또는 禁治産者인 경우에는 그 法定代理人을 事業主로 한다. 이하 이 條에 있어서 같다)가 위반방지에 필요한 措置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事業主가 위반의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措置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알고 그 是正에 필요한 措置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위반을 敎唆한 경우에는 事業主도 行爲者로서 處罰한다.

(추 135)

附 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改正 98·2·20〉

第2條 (보고등의 요구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部長官, 勞動委員會 및 勤勞監督官이 使用者 또는 勤勞者에 대하여 행한 보고, 출석 및 帳簿와 書類의 제출요구는 이 法에 의하여 행한 보고, 출석 및 帳簿와 書類의 제출요구로 본다.

第3條 (勤勞契約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締約되거나 작성된 勤勞契約, 就業規則 및 寄宿舍規則은 이 法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작성된 勤勞契約, 就業規則 및 寄宿舍規則으로 본다.

第4條 (解雇의 豫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解雇의 豫告는 이 法에 의한 解雇의 豫告로 본다.

第5條 (退職金制度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定된 退職金制度와 미리 精算하여 지급된 退職金은 이 法에 의하여 設定되거나 지급된 것으로 본다.

第6條 (休日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使用者가 勤勞者에 준 休日 및 休暇는 이 法에 의하여 준 休日 및 休暇로 본다.

第7條 (災害補償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災害補償은 이 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第8條 (書面合意의 효력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使用者와 勤勞者代表간의 書面合意 또는 使用者와 勤勞者간의 合意는 이 法에 의한 書面合意 또는 合意로 본다.

第9條 (同意의 효력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使用者가 勞動組合, 勤勞者의 過半數, 勤勞者, 補償을 받을 자 및 寄宿舍에 寄宿하는 勤勞者의 過半數를 代表하는 者등의 同意를 얻은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하여 同意를 얻은 것으로 본다.

第10條 (請求등의 효력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者가 勞動部長官, 勞動委員會 및 使用者에게 행한 請求 또는 申請등과 使用者가 勞動部長官 및 勞動委員會에 행한 請求 또는 申請등은 이 法에 의하여 행한 請求 또는 申請등으로 본다.

第11條 (申告의 효력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使用者가 勞動部長官에 행한 申告는 이 法에 의하여 행한 申告로 본다.

第12條 (認可등의 효력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部長官 및 勞動委員會가 행한 認可, 認定, 承認, 命令, 審査, 仲裁 및 認可의 取消등의 행위는 이 法에 의하여 행한 認可, 認定, 承認, 命令, 審査, 仲裁 및 認可의 取消등의 행위로 본다.

(추 105)

第13條 (就職認許證등의 효력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이 발행한 就職認許證, 身分證明書, 臨檢指令書 및 檢診指令書는 이 法에 의하여 발행한 就職認許證, 身分證明書, 臨檢指令書 및 檢診指令書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就業중인 13歲이상 15歲미만의 勤勞者가 이 法 施行후 3月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就職認許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勞動部長官은 就職認許證을 發行하여야 한다.

第14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5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勤勞基準法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한 경우 이 法중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附 則 〈97·12·24 法547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賃金債權 優先辨濟에 대한 經過措置) ①第37條第2項第2號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전에 退職한 勤勞者의 경우에는 1989年 3月 29日이후의 繼續勤勞年數에 대한 退職金을 優先辨濟의 대상으로 한다.

②第37條第2項第2號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전에 採用된 勤勞者로서 이 法 施行후 退職하는 勤勞者의 경우에는 1989年 3月 29日이후부터 이 法 施行전까지의 繼續勤勞年數에 대한 退職金에 이 法 施行후의 繼續勤勞年數에 대하여 발생하는 최종 3年間의 退職金을 合算한 금액을 優先辨濟의 대상으로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辨濟의 대상이 되는 退職金은 繼續勤勞年數 1年에 대하여 30日分의 平均賃金으로 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辨濟의 대상이 되는 退職金은 250日分의 平均賃金을 초과할 수 없다.

附 則 〈98·2·20 法5510〉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 則 〈99·2·8 法5885〉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부 칙 〈2001·8·14 法6507〉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전후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주 135)

〔別 表〕

身體障害等級과 災害補償表(第83條관련)

等 級	災害補償	等 級	災害補償
第1級	1,340日分	第8級	450日分
第2級	1,190日分	第9級	350日分
第3級	1,050日分	第10級	270日分
第4級	920日分	第11級	200日分
第5級	790日分	第12級	140日分
第6級	670日分	第13級	90日分
第7級	560日分	第14級	50日分

(주 81)

●근로기준법시행령

소관부처 : 노동부

제정 1997·3·27 대통령령제15320호
개정 1998·2·24 대통령령제15682호
1999·3·3 대통령령제16164호
2001·10·31 대통령령제17402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근로기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98·2·24〕

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개정 98·2·24, 99·3·3, 2001·10·31〉

1. 법 제3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습사용중의 기간
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4.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사업별 또는 직업별로 정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4조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19조, 이 영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추 138)

제5조 (평균임금의 조정) ①법 제82조, 법 제83조 및 법 제85조 내지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인당 1개월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에 지급된 평균액보다 100분의 5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2회이후의 평균임금의 증감을 위한 조정은 직전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평균액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시에 그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그 근로자의 직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직종과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

④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6조 (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
2.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3.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을 말한다)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일급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제7조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24조 전단에서 "기타의 근로조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6조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

제8조 (근로조건의 명시방법) 사용자는 법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등)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98·2·24〉

②법 제25조제3항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4주간(4주간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③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 제34조, 법 제54조, 법 제57조 및 법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2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①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1월동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시 근로자수가 99인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인이상
2. 상시 근로자수가 100인이상 999인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이상
3. 상시 근로자수가 1000인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00인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고의 사유
2. 해고예정인원
3.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내용
4. 해고의 일정

〔본조신설 98·2·24〕

(추 95)

제10조 삭제 〈99·3·3〉

제11조 (퇴직보험등) ①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보험 또는 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98·2·24〉

1. 삭제 〈98·2·24〉
2.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근로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일시금 또는 연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3. 퇴직보험등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환급금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4.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5. 보험사업자등이 퇴직보험등의 계약체결전에 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등에게 주지시키고 계약체결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6. 보험사업자등이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상황과 일시금 또는 연금의 수급 예상액을 피보험자등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②제1항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퇴직금중 그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③사용자는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이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8·2·24〉

제12조 (수습근로자의 정의) 법 제35조제5호에서 "수습사용중의 근로자"라 함은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이내인 자를 말한다.

제13조 삭제 〈99·3·3〉

제14조 (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증명서를 청구

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후 3년이내로 한다.

제15조 (근로자명부의 기재사항)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명부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 명
2. 성 별
3. 생년월일
4. 주 소
5. 이 력
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7.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
8. 해고·퇴직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조 (근로자명부 비치의 예외) 사용기간이 30일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 (보존대상서류등) ①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99·3·3, 2001·10·31〉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법 제52조제3항, 법 제61조제3호 및 법 제6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인가에 관한 서류
8. 법 제50조제2항, 법 제51조, 법 제56조제2항·제3항 및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합의 서류
9.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②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날부터 기산

(추 138)

한다. 〈개정 99·3·3〉

1. 근로자명부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에 있어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
3. 임금대장에 있어서는 최후의 기입을 한 날
4. 고용·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 제1항제7호의 승인 또는 인가에 관한 서류는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날
6. 제1항제8호의 서면합의 서류는 서면합의를 한 날
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에 있어서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8. 기타 서류에 있어서는 그 완결한 날

제18조 (매월 1회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되는 정근수당
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장려금·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기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

제19조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제20조 (지급기일전의 임금지급) 법 제44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비상한 경우"라 함은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추 108)

1. 출산하거나 질병 또는 재해를 입은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주일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제21조 (휴업수당의 산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 사용자는 법 제4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과 그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산출하여 그 차액의 100분의 70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과 휴업기간중에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1. 성 명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수당 기타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사용기간이 30일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2·24〉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2·24〉

1.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

(추 108)

제23조 (탄력적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등) ①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②삭제 〈99·3·3〉

③노동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보전방안의 강구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보전방안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제24조 (선택적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법 제51조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등의 계산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

제25조 (주휴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제26조 (재량근로의 대상업무등) ①법 제5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
3. 신문·방송 또는 출판사업에 있어서 기사의 취재·편성 또는 편집업무
4.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업무
5. 방송프로·영화등의 제작사업에 있어서 프로듀서 또는 감독업무
6.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삭제 〈99·3·3〉

제27조 (월차유급휴가)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은 이를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28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등) ①법 제5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②삭제 〈99·3·3〉

제29조 (휴가수당의 지급일)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은 유급휴가를 주기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불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추 108)

업무"라 함은 사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1조 (취직인허신청) ①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이상 15세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직인허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대상자 및 재학중인 자에 한한다)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0·31〕

제32조 (취직인허증의 교부) 노동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취직을 인허할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취직인허증에 직종을 지정하여 본인 및 사용자가 될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3조 (취직인허의 금지직종) 노동부장관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직종과 15세미만인 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수 없다.

제34조 (취직인허증의 비치 및 반환) ①15세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비치한 경우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한 것으로 본다.

②15세미만인 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사용자와 당해 15세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을 노동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 (취직인허증의 재교부) 사용자 또는 15세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6조 (취직인허의 취소) 노동부장관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인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0·31〕

제37조 (임산부등의 사용금지직종)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부, 임산부가 아닌 18세이상의 여성 및 18세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별표

(추 138)

2와 같다.

〔전문개정 2001·10·31〕

제38조 (근로시간의 계산) 법 제67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제39조 (갱내근로 허용업무)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과 18세미만인 자를 일시적으로 갱내에서 근로시킬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 및 복지 업무
2. 신문·출판·방송프로그램 제작등을 위한 보도·취재업무
3.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업무
4. 관리·감독 업무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행하는 실습업무

〔본조신설 2001·10·31〕

제40조 (업무상 질병의 범위등) ①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중 업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 (휴업보상의 산출)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내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 사용자는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과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산출하여 그 차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2조 (요양 및 휴업보상의 시기)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매월 1회이상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43조 (장해등급의 결정) ①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을 행할 신체장해의 등급은 별표 4와 같다.

②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조정한 등급에 의한다. 이 경우 그 조정된 등급이 제1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1급으로 한다.

1. 제5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 :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3개등급 인상

(추 138)

2. 제8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 :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2개등급 인상
3. 제13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 :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1개등급 인상

③별표 4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에 준하여 장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④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한 부위에 장해가 가중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의 금액은 가중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보상의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4조 (유족의 범위등) ①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유족보상의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1.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2.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3.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4.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형제자매

②유족의 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하되,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 또는 사용자에 대한 예고에 의하여 제1항의 유족중의 특정한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45조 (동 순위자) 동 순위의 유족보상 수급권자가 2인이상 있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을 그 인원수에 의하여 등분한다.

제46조 (보상수령확정자의 사망) 유족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유족이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은 동 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 순위자에게, 동 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제47조 (보상시기) ①장해보상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후 지체없이 이

(추 138)

를 행하여야 한다.

②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은 근로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48조 (재해보상시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제49조 (서류보존기간의 기산일)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보존기간의 계산은 재해보상이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

제50조 (기숙사규칙안의 게시등) 사용자는 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18세미만인 경우에는 기숙사규칙안을 7일이상 기숙사의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알린 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1조 (기숙사에서의 남녀의 거주구분) 사용자는 남성과 여성을 기숙사의 같은 방에 거주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1·10·31〕

제52조 (기숙사의 설치장소) 사용자가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음 또는 진동이 심한 장소등을 피하여야 한다.

제53조 (침실) 취업시간을 달리하는 2개조이상의 근로자를 동일한 침실에 기숙시켜서는 아니된다.

제54조 (기숙사의 설치기준) 기숙사 침실의 면적은 1인당 2.5제곱미터이상으로 하며, 1실의 거주인원은 15인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55조 (권한의 위임) 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8·2·24, 2001·10·31〉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출석의 요구
2. 및 3. 삭제 〈99·3·3〉
3의2.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의 수리
4. 및 5. 삭제 〈99·3·3〉
6.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7. 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게 또는 휴일의 명령
8. 및 9. 삭제 〈99·3·3〉
10. 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추 138)

승인

11.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15세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의 발급
12.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
13. 법 제6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산부와 18세미만인 자의 야업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14. 내지 16. 삭제 〈99·3·3〉
17.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의 인정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중재 및 이를 위한 진단·검안에 관한 사항
18.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 신고의 수리
19. 법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의 변경명령
20. 삭제 〈99·3·3〉
21. 법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검 또는 검진지령서의 발급
22. 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법사실 통고의 수리
23.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보전방안의 제출명령 및 확인
24.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직인허 신청의 접수
25.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직인허증 반환의 접수
26.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취직인허의 취소 및 사용정지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4220호 근로기준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평균임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평균임금을 산정 또는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의 산정 또는 조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교육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시설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설치중인 교육시설의 요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추 138)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기준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98·2·24 대령1568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중 법 제82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한 것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해보상 관련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중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은 이 영중 재해보상 관련규정의 시행이후에 발생하는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 〈99·3·3 대령1616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0·31 대령17402〉

이 영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01·10·31〉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규정

(제1조의2관련)

구 분	적 용 법 규 정
제1장 총 칙	제1조 내지 제12조, 제14조 내지 제21조
제2장 근로계약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7조 내지 제29조, 제30조제2항, 제32조, 제35조 내지 제41조
제3장 임 금	제42조 내지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8조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3조, 제54조, 제61조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2조, 제63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미만자에 한한다), 제64조 내지 제67조, 제68조제2항·제3항, 제69조, 제70조, 제72조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제8장 재해보상	제81조 내지 제95조
제11장 근로감독관등	제104조 내지 제109조
제12장 벌 칙	제110조 내지 제116조(제1장 내지 제6장, 제8장, 제11장의 규정중 상시 4인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별표 1의2〕〈개정 2001·10·31〉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결정기준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관련)

1. 근로계약의 체결

가.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임금·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각, 시간급임금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임금의 계산

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임금을 일급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1일 소정근로시간수에 시간급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시간수로 한다.

(추 138)

3. 초과근로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하여야 하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률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다.

4. 휴일·휴가의 적용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 및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각각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text{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 \times \frac{\text{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text{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times 8$$

다. 사용자는 여성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생리휴가 및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 가목 및 다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마. 나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

5.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단시간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을 두거나 달리 적용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라.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추 138)

〔별표 2〕〈개정 2001·10·31〉

임산부등의 사용금지직종(제37조관련)

구 분	사 용 금 지 직 종
임신중인 여성	1. 납, 수은, 크롬, 비소, 황린, 불소(불화수소산), 염소(산), 시안화수소(시안산), 2-브로모프로판, 아닐린, 수산화칼륨, 페놀,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아세테이트, 염화비닐, 벤젠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2.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Cytomegalovirus)·B형 간염 바이러스등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농후한 업무. 다만, 의사·간호사·방사선기사등으로서 면허증을 소지한 자 또는 양성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3.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편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에 의한 정전작업, 활선작업 및 활선 근접작업 4.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9조 및 제60조에서 규정하는 둥근톱으로서 지름 25센티미터이상, 동 규칙 제61조 및 제62조에 규정하는 띠톱으로서 플리의 지름 75센티미터이상의 기계를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5.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6편제2장제3절에서 규정하는 통나무비계의 설치·해체업무와 제6편제5장의 규정에 의한 건물 해체작업(다만, 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6. 착암기·항타기등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강렬한 진동을 일으키는 작업 7. 연속작업에 있어서는 5kg이상, 단속작업에 있어서는 10kg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8.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열·한냉작업 9.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실내작업과 잠수작업 10.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힌다든지 또는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거나 앞으로 구부린 채 있어야 하는 업무

(추 138)

	11.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6편제3장제3절에서 규정하는 터널작업, 동 규칙 제439조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동 규칙 제452조의 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12. 원자력법 제97조 규정에 의한 방사선작업 종사자등의 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업무 13. 그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업무
산후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여성	1. 납, 비소를 취급하는 업무. 다만, 모유수유를 하지 아니하는 여성으로서 본인이 취업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3. 그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업무
임산부가 아닌 18세이상의 여성	1.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다만, 의학적으로 가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그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업무
18세미만자	1.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2. 산업조건기준에관한규칙 제2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실내작업과 잠수작업 3. 유류(주유업무를 제외한다)·양조의 업무 4.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5.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6. 청소년보호법등 다른 법률에서 18세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 7.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등에서 18세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 8. 그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업무

(추 138)

〔별표 3〕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제40조제1항관련)

구 분	범 위
업무상 질병	1. 업무상의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2. 무겁고 힘든 업무로 인한 근육·건·관절의 질병과 내장탈장 3. 고열·자극성의 가스나 증기·유해광선 또는 이물로 인한 결막염 기타의 안질환 4. 라듐방사선·자외선·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으로 인한 질병 5. 덥고 뜨거운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열사병등 열중증 6. 덥고 뜨거운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이상의 화상 및 춥고 차가운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이상의 동상 7. 분진을 비산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르는 폐결핵등 합병증 8. 지하작업으로 인한 안구진탕증 9. 이상기압하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감압병 기타의 질병 10. 제사 또는 방적등의 업무로 인한 수지봉와직염 및 피부염 11. 착암기등 진동발생공구 취급작업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신경염 기타의 질병 12.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귀질환 13. 영상표시단말기(VDT)등 취급자에게 나타나는 경견완증후군 14. 납·그 합금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15.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16. 망간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17. 크롬·니켈·알루미늄 또는 이상의 화합물로 인한 궤양 기타의 질병 18. 아연 기타의 금속중기로 인한 금속열 19. 비소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0. 인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1. 초산염가스 또는 아황산가스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2. 황화수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3. 이황화탄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4. 일산화탄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5. 청산 기타의 시안화합물로 인한 중독과 그 속발증 또는 기타의 질병 26. 광산·가성알카리·염소·불소·석탄산 또는 이상의 화합물 기타 부식성 또는 자극성의 물체로 인한 부식·궤양 및 염증

(추 138)

	27. 벤젠 또는 벤젠의 동족체와 그 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28. 아세톤 또는 기타의 용제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과 기타의 질병 29. 제27호 및 제28호외의 지방족 또는 방향족의 탄화수소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기타의 질병 30. 매연·광물유·동유·칠·타르·시멘트등으로 인한 봉와직염·습진 기타의 피부질환 31. 매연·타르·핏치·아스팔트·광물유·파라핀 또는 이상의 물질을 포함한 것으로 인한 원발성 상피암 32. 제14호 내지 제31호에 기재된 것외의 독성·극성 기타 유해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또는 피부 및 점막의 질환 33. 환자의 검진·치료·간호 기타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로 인한 각종 전염성 질환 34. 습윤지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와일씨병 35. 옥외노동에 기인하는 쯔쯔가무시병 36. 동물 또는 그 시체, 짐승의 털, 피혁 기타 동물성의 물체 및 넝마 기타 고물의 취급으로 인한 탄저병·단독 및 페스트 37. 제1호 내지 제36호외에 중앙노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질병 38. 기타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
요 양	1. 진 찰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개 호 6. 이 송

〔별표 4〕〈개정 2001·10·31〉

신체장해의 등급(제43조제1항관련)

등 급	신 체 장 해
제1급 평균임금의 1,340일분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추 138)

	5. 두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2급 평균임금의 1,190일분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 평균임금의 1,050일분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4급 평균임금의 920일분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5급 평균임금의 790일분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추 138)

제6급 평균임금의 670일분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7급 평균임금의 560일분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성 13. 양쪽 고환을 잃은 사람

(추 138)

제8급 평균임금의 450일분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또는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개 관절중의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 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제9급 평균임금의 350일분	1. 두 눈이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모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에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추 138)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10급 평균임금의 270일분	1.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3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팔의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평균임금의 200일분	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추 138)

	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0. 10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12급 평균임금의 140일분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성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성
제13급 평균임금의 90일분	1.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추 138)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 발가락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4급 평균임금의 50일분	1. 한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8.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성 11. 한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추 138)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정 1997·4·7 노동부령제115호
개정 1998·6·11 노동부령제130호
1999·2·22 노동부령제142호
2001·10·31 노동부령제176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손해배상 청구의 신청)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근로조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청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 사본
2.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제3조 및 **제4조** 삭제 〈99·2·22〉

제4조의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사용자는 영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경영상 이유에의한해고계획신고서에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한 내용을 기재한 해고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6·11〕

제5조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99·2·22〕

제6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등의 구제신청) 근로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고등의구제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6·11〉

제7조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지급 승인신청) 사용자는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지급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준미달의휴업수당지급승인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6·11〉

(추 138)

제8조 삭제 〈99·2·22〉

제9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의 연장신청등) ①사용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고자 하거나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근로시간연장인가또는승인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 재난관리법상의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의 수습을 위하여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

③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인가 또는 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근로시간연장인가또는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 삭제 〈99·2·22〉

제12조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승인신청등) ①사용자는 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적 또는 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감시적또는단속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이 되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④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감시적또는단속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취직인허 신청등) ①15세미만인 자는 법 제62조 및 근로기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직인허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15세미만인자의취직인허증교부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용자 또는 15세미만인 자는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직인허증을 재교

(추 109)

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15세미만인자의취직인허증재교부신청서에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리게 된 사유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15세미만인자의취직인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야업·휴일근로의 인가) ①사용자는 법 제6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부 또는 18세미만인 자를 야업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당해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 및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결과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0·31〕

제15조 (업무상 부상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신청) 사용자는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업무상상병에관한중대과실인정신청서에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재해인정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등의 청구) 근로자는 법 제91조제1항 및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의 인정등에 관하여 이의등이 있어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해인정등의이의에관한심사또는중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부상 또는 질병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2. 이의등의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17조 (취업규칙의 신고등) 사용자는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취업규칙신고또는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6·11〉

1. 취업규칙(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기재한

(추 138)

서류)

2.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3.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18조 삭제 〈99·2·22〉

제19조 (서식) ①법 및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명부 : 별지 제25호서식
2.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대장 : 별지 제26호서식
3. 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게 또는 휴일부여 명령서 : 별지 제27호서식
4.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해지서 : 별지 제28호서식
5. 내지 7. 삭제 〈99·2·22〉
8. 법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명령서 : 별지 제32호서식
9. 법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검 또는 검진지령서 : 별지 제33호서식

②사용자는 제1항제1호의 근로자명부와 동항제2호의 임금대장을 통합하여 사용하거나 그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6·11 노동부령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2·22 노동부령1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0·31 노동부령176〉

이 규칙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추 138)

〔별 표〕〈개정 99·2·22〉

근로자의 귀책사유(제5조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등을 절취 또는 불법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청구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④사 업 장 명		⑤근 무 부 서		
	⑥종 사 업 무		⑦입 사 일	년 월 일	
피신청인	⑧사 업 장 명		⑨사 업 의 종 류		
	⑩대 표 자 명		⑪주민등록번호		
	⑫근 로 자 수		⑬전 화 번 호		
	⑭소 재 지				
⑮신청이유 및청구금액					

근로기준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근로조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 1. 근로계약서 사본	수수료
2.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없 음

※ ⑮란은 뒷쪽의 기재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322-06311민 210㎜×297㎜

97.3.25 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추 109)

(뒷 쪽)

※ "⑮신청이유 및 청구금액"란 기재요령
근로계약당시 근로조건, 입사이후 근로조건 및 손해배상 청구금액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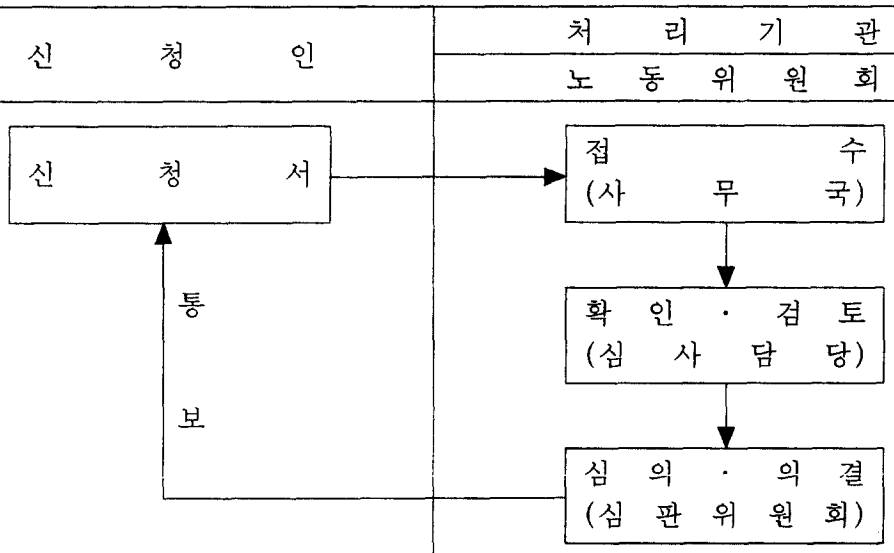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 삭제 〈99·2·22〉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99·2·22〉 (앞 쪽)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계획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사업장 개 요	①사 업 장 명		②사 업 의 종 류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근 로 자 수	(여)	⑥전 화 번 호		
	⑦소 재 지				
근 로 자 대 표	⑧직 위		⑨성 명		
⑩해 고 의 사 유 (별 지 작 성 가 능)					
⑪해 고 예 정 인 원	(여:) · 상시 근로자의 %				
노 동 조 합 또 는 근 로 자 대 표 와 의 협 의 내 용	⑪해고계획 통 보 일	· · ·	⑫해고계획 통보방법		
	⑬해고계획 통보내용 (별지 작성 가능)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해 고 의 기 준			
		기 타			
⑭해 고 의 일 정					

(추 109)

근로기준법 제3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한 내용을 기재한 해고관련서류 1부 ※ ⑧, ⑬, ⑭란은 뒷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 음

32322-09611민
98.3.26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뒷 쪽)

※ 작성요령

⑧란에는 노동조합장,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된 대표자등을 기재합니다.

⑬란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란에는 "연장근로의 축소, 근로시간 단축, 신규채용의 중지, 배치전환, 재교육·훈련의 실시, 퇴직희망자의 모집등"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행하였거나 앞으로 행할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합니다.

"해고의 기준"란에는 "근속년수가 짧은 자, 근무성적·능력이 낮은 자등"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기타"란에는 해고자 우선 재고용 여부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⑭란에는 해고예고일, 해고예정일등을 기재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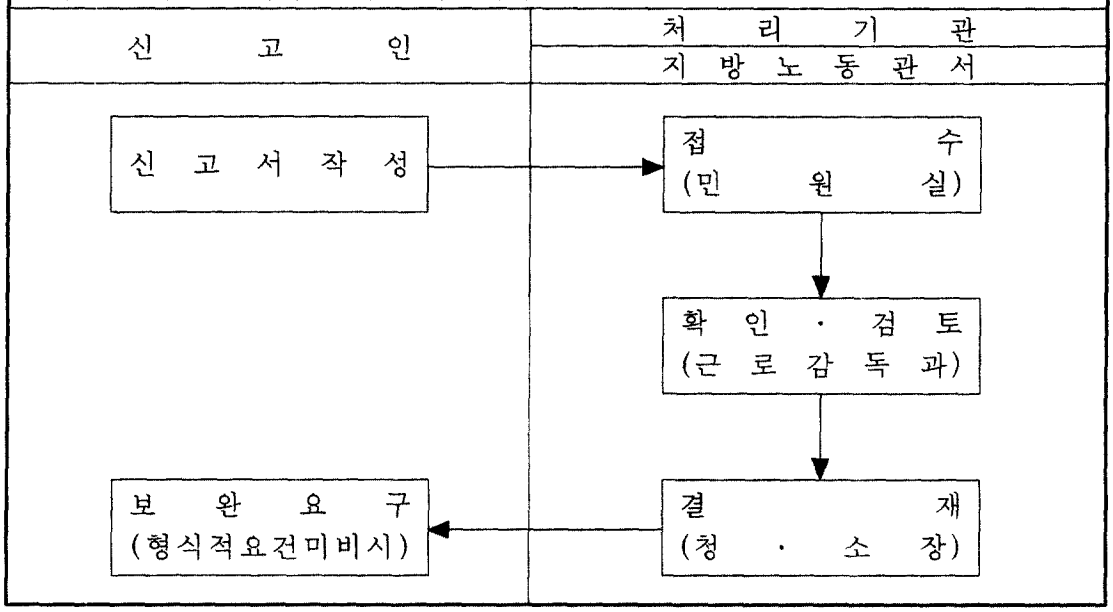

(추 109)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삭제 〈99·2·22〉

〔별지 제8호서식〕 〈개정 99·2·22〉 (앞 쪽)

해고등의구제신청서					처리기간 60 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④사 업 장 명		⑤근 무 부 서		
피신청인	⑥사 업 장 명		⑦사 업 의 종 류		
	⑧직 위 및 성 명		⑨주민등록번호		
	⑩주소또는소재지			(전화 :)	
⑪신청취지					
⑫신청이유(별지 작성 가능)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등에 대한 구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 없 음					수수료 없 음

32322-07011민
97.3.25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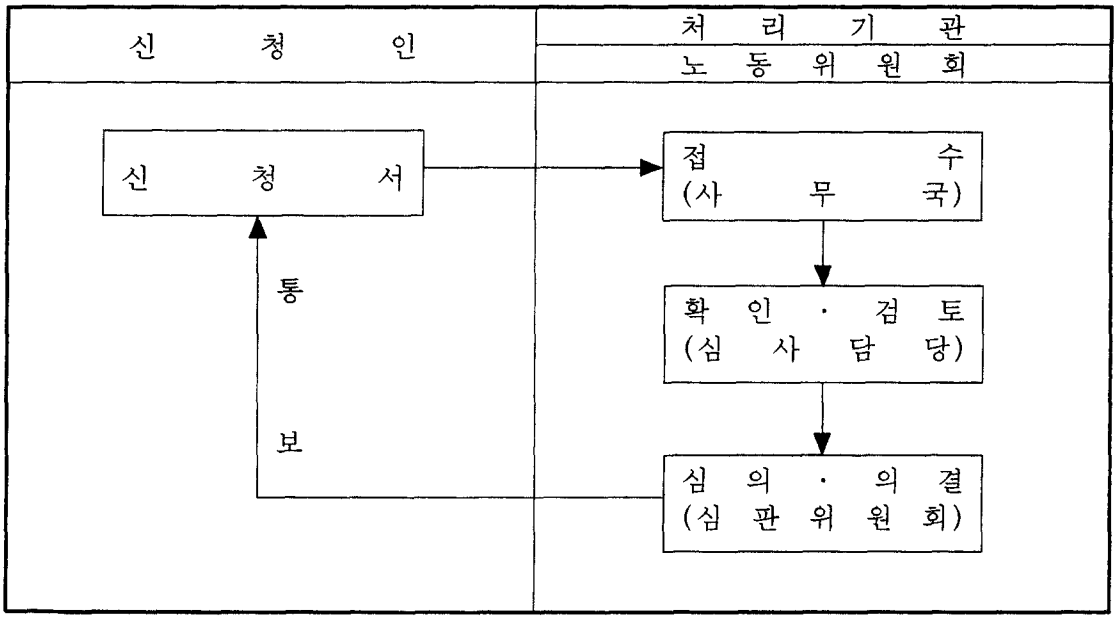

(추 109)

〔별지 제9호서식〕〈개정 98·6·11〉 (앞 쪽)

기준미달의휴업수당지급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사 업 장 명			②사 업 의 종 류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근 로 자 수			⑥전 화 번 호				
	⑦소 재 지							
승 인 신 청 내 용	⑧근 로 자 수	계	명	남	명	여	명	
	⑨휴 업 기 간							
	⑩지급하고자 하는 휴업수당							
⑪기준미달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구체적 사유								
근로기준법 제4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 없 음								수수료 없 음

32322-07111민
98.3.26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뒷 쪽)

※ 작성요령
"⑨휴업기간"란에는 휴업의 시작일과 종료일 및 총 휴업일수를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합니다.
"⑩지급하고자 하는 휴업수당"란에는 평균임금의 00% 또는 통상임금의 00% 등으로 기재합니다.
"⑪기준미달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구체적 사유"란에는 휴업의 사유 및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등을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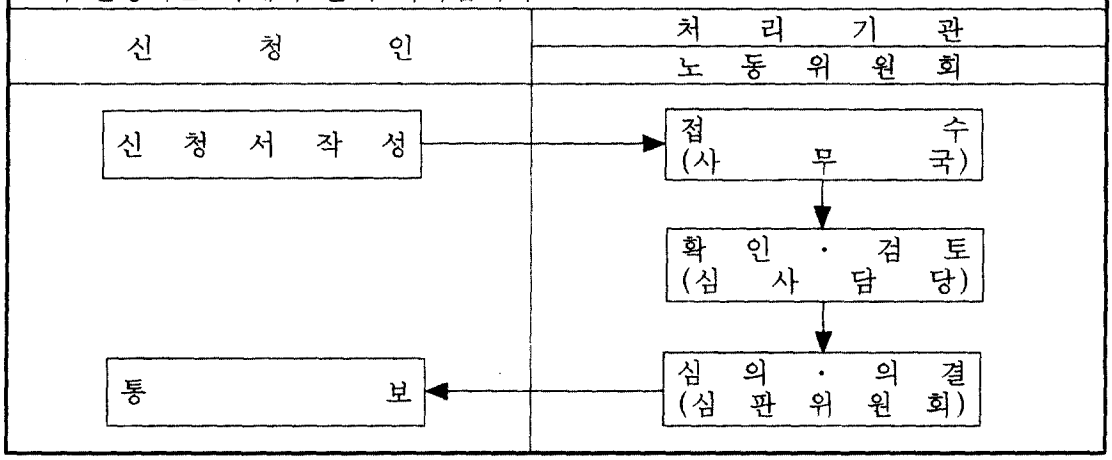

(추 109)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99·2·22〉

〔별지 제11호서식〕 (앞 쪽)

근로시간연장[□인가 □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3 일
①사 업 장 명			②사 업 의 종 류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소 재 지	(전화 :)					
⑥연장업무의종류						
⑦연 장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					
⑧근 로 자 수	계 명	남 명	여 명			
⑨연장사유발생일	년 월 일					
⑩시간연장 사유(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근로시간 연장[□인가 □승인]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32322-07311민
97.3.25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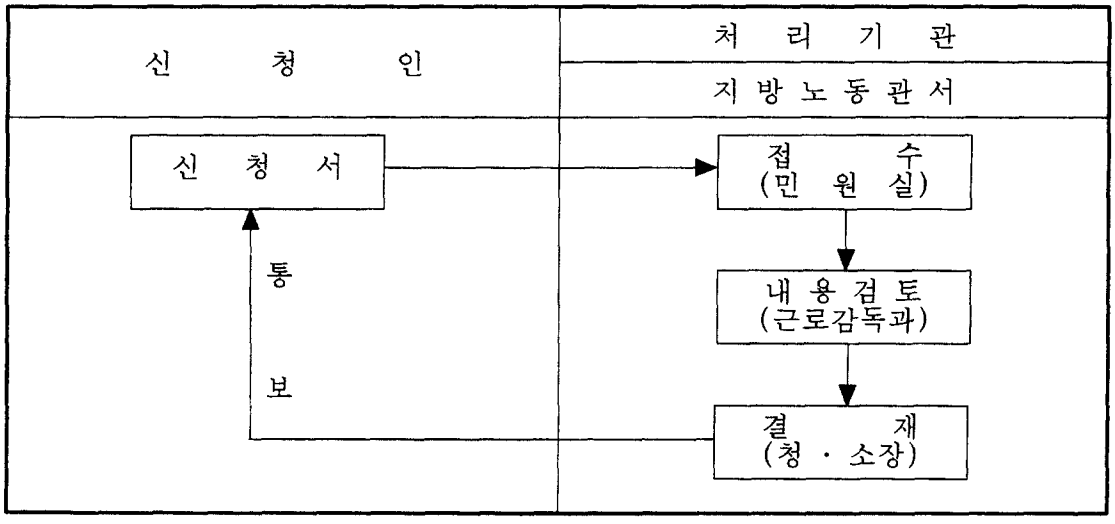

(추 109)

〔별지 제12호서식〕

제 호

근로시간연장[□인가 □승인]서

①사 업 장 명		②사 업 의 종 류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소 재 지			
⑥연장업무의종류		⑦연장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⑧근 로 자 수	계 명	남 명	여 명

근로기준법 제52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근로시간 연장을[□인가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32322-07411일
97.3.25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99·2·22〉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처리기간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신청서						30 일
신청인	①사 업 장 명		②사 업 의 종 류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근 로 자 수		⑥전 화 번 호			
	⑦소 재 지					
신청내용	⑧종 사 업 무					
	⑨근 로 자 수	감시적근로	계 명	남 명	여 명	
		단속적근로	계 명	남 명	여 명	
	⑩근로의형태	감시적근로				
		단속적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시적 □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 없 음	수수료
	없 음

32322-07711민
97.3.25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추 109)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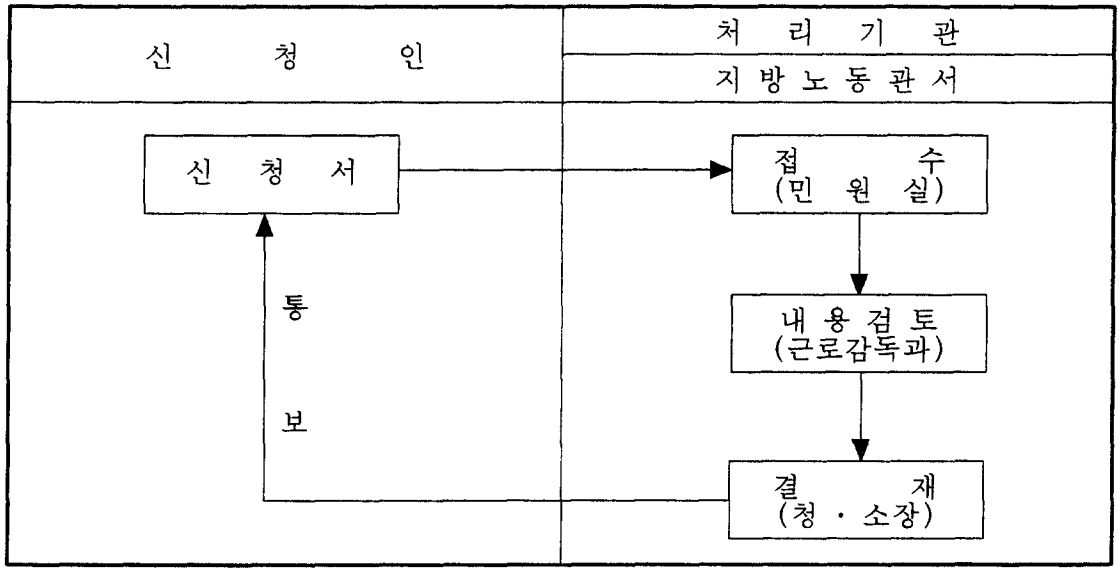

〔별지 제16호서식〕

제 호

[□ 감시적 / □ 단속적] 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서

①사 업 장 명				
②대 표 자 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소 재 지				
⑤사 업 의 종 류				
⑥종 사 업 무				
⑦승 인 근 로 자 수	감시적근로	계 명	남 명	여 명
	단속적근로	계 명	남 명	여 명
⑧근 로 형 태	감시적근로			
	단속적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감시적 / □ 단속적] 근로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32322-07811일
97.3.25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추 109)

〔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01·10·31〉 (앞 쪽)

15세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 부 /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3 일

※ 기재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시오.

15세미만인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사용자	④사 업 장 명		⑤사 업 의 종 류	
	⑥대표자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소 재 지	(전화 :)		
	⑨15세미만자의 종사업무		⑩임 금	
	⑪근 로 시 간		⑫사 용 기 간	
학 교	⑬학 교 명		⑭학교장성명	㊞
	⑮소 재 지	(전화 :)		
	⑯수 업 시 간			
	⑰의 견			
친권자 또는 후견인	⑱성 명	㊞	⑲주민등록번호	
	⑳주 소	(전화 :)		
	㉑15세미만인자와의 관계		㉒동 의 여 부	

근로기준법 제6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15세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 부 /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가 될 자 (서명 또는 인)

15세미만인 자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 취직인허증을 못쓰게 되거나 잃어버리게 된 사유서 (재교부 신청시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 음

32322-07911민
97.3.25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기재요령

1. "⑨15세미만 자의 종사업무"란에 15세미만 자를 2이상의 업무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직종을 모두 기재하시기 바라며, 이중 일부 직종에 대해서만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2. 학교란은 "15세미만 자"가 영 제31조제3항에 의한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아니한 자와 제13조제2항에 의한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추 138)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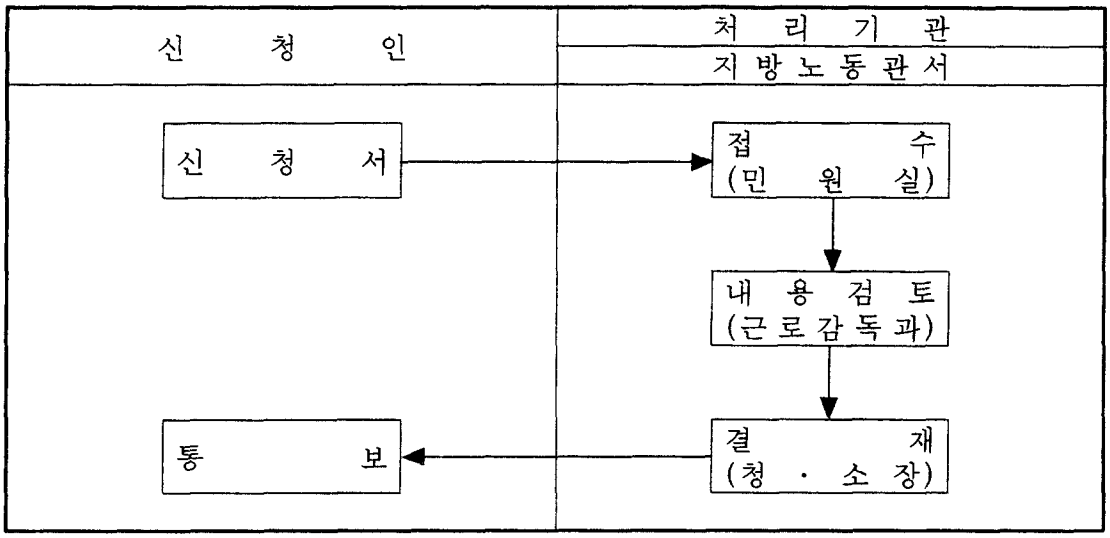

〔별지 제18호서식〕

제 호		15세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근로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사용자	④사 업 장 명		⑤사 업 의 종 류		
	⑥대표자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소 재 지				
	⑨15세미만자의 종사업무	1. 2. 3.	⑩임 금		
	⑪근 로 시 간		⑫사 용 기 간		
학 교	⑬학 교 명				
	⑭소 재 지				
친권자 또는 후견인	⑮성 명		⑯주민등록번호		
	⑰주 소				
	⑱관 계				

근로기준법 제6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15세미만인 자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사무소)장 ㊞

32322-08011일
97.3.25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추 138)

〔별지 제19호서식〕〈개정 2001·10·31〉 (앞 쪽)

[□임 산 부 / □18세미만인 자]의 [□야 업 / □휴 일] 근로인가신청서				처리기간 3 일
①사 업 장 명		②사 업 의 종 류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소 재 지	(전화 :)			
⑥신 청 이 유				
⑦사 유 발 생 일	년 월 일	⑧종 사 업 무		
⑨인 가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⑩근 로 형 태		
⑪근 로 자 수	야업근로	계 명	남 명	여 명
	휴일근로	계 명	남 명	여 명

근로기준법 제68조제2항 단서·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 산. 부 / □18세미만인 자]의 [□야 업 / □휴 일]의 근로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 1. 당해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 사본 2.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결과 사본	수수료 없 음

32322-08111민
97.3.25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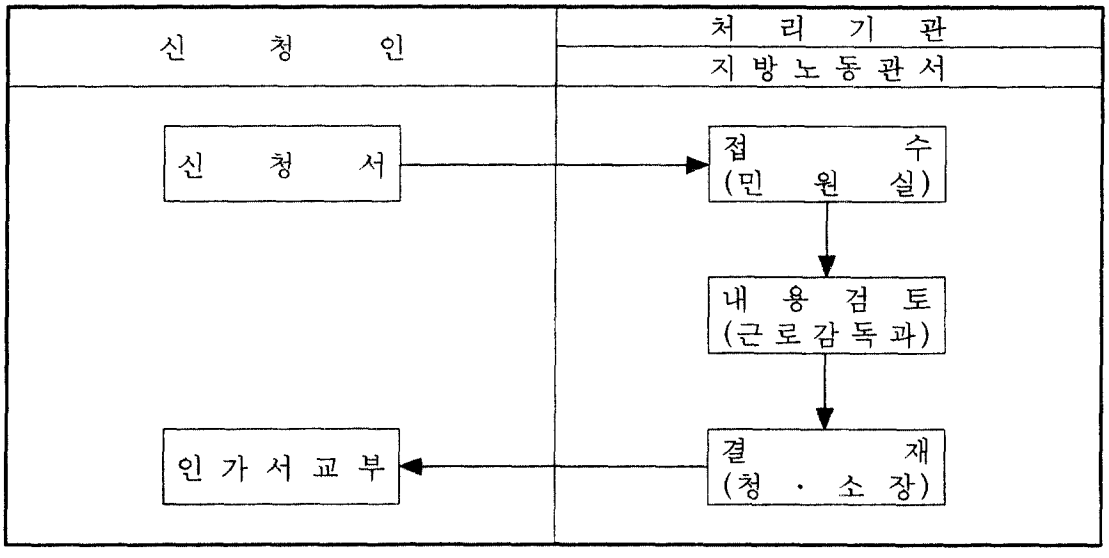

(추 138)

〔별지 제20호서식〕〈개정 2001·10·31〉

제 호

[□임 산 부 / □18세미만인 자]의 [□야 업 / □휴 일] 근로인가서

①사 업 장 명		②사 업 의 종 류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소 재 지			
⑥사 유 발 생 일		⑦업 무 의 종 류	
⑧인 가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⑨근 로 형 태	

⑩근 로 자 수	야업근로	계 명	남 명	여 명
	휴업근로	계 명	남 명	여 명

근로기준법 제68조제2항 단서·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 산 부 / □18세미만인 자]의 [□야 업 / □휴 일] 근로를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사무소)장 ㊞

32322-08211일
97.3.25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앞 쪽)

업무상 상병에 관한 중대과실인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사 업 장 명		②사업의종류			
	③대표자성명		④근 로 자 수			
	⑤소 재 지	(전화 :)				
대 상 근로자	⑥성명	⑦주민등록 번 호	⑧근로형태	⑨취업장소	⑩종사업무	⑪입사일
						년 월 일
상 병 상 황	⑫상 병 명	⑬상 병 발 생 일	⑭상 병 부 위	⑮상 병 상 태		
		년 월 일				

⑯근로자의 중대과실(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8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상병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자료	수수료 없 음

32322-08311민
97.3.25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추 138)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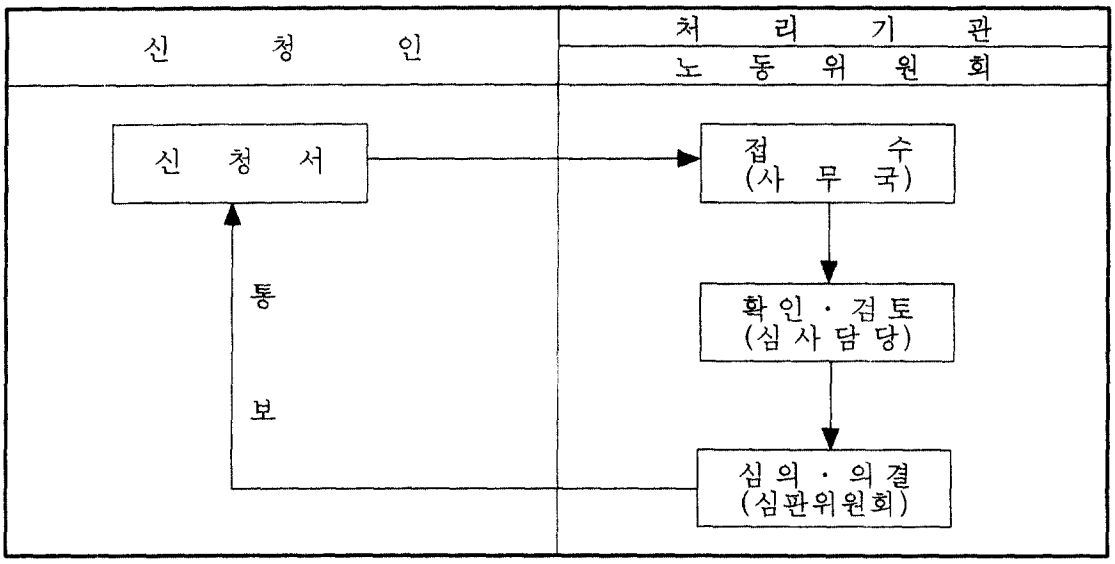

〔별지 제22호서식〕 (앞 쪽)

재해인정등의이의에관한 [□심 사 □중 재] 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사업장 개 요	①사 업 장 명			②사 업 의 종 류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소 재 지	(전화 :)					
재 해 근로자	⑥성 명	⑦주민등록 번 호	⑧입사일	⑨종 사 업 무	⑩근 로 형 태	⑪임금지급 형 태	⑫평 균 임금액
	⑬주 소	(전화번호 :)					
⑭재해발생원인 및 경위							
⑮이의사항과 심사 또는 중재를 요하는 내용							

근로기준법 제91조제1항·제9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해인정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중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재해자와의 관계 :)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 1. 부상 또는 질병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수수료
2. 이의등의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없 음

⑭란은 뒷쪽의 기재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322-08411민
97.3.25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추 109)

(뒷 쪽)

※ "⑭재해발생 원인 및 경위"란 기재요령
"재해발생 원인 및 경위"란에는 재해일시 및 장소, 재해당시 업무, 재해정도(부상, 질병, 사망, 장해) 및 현재 상황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방노동관서(노동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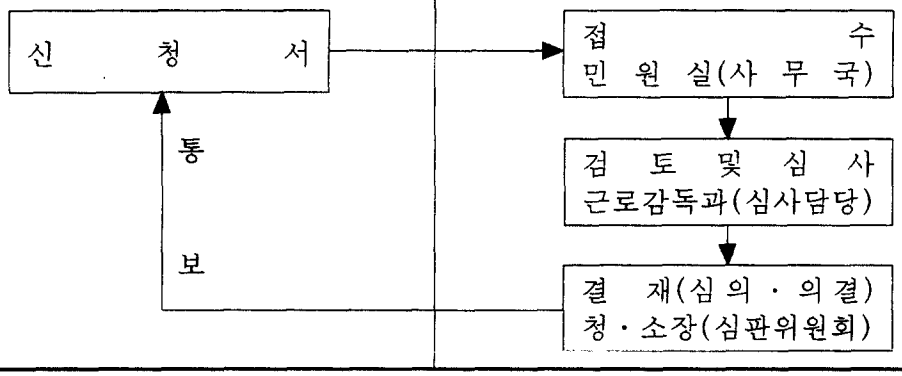

〔별지 제23호서식〕〈개정 98·6·11〉 (앞 쪽)

취업규칙 [□ 신 고 /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일
①사 업 장 명		②사 업 의 종 류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 민 등 록 번 호	
⑤근 로 자 수	계 명(노동조합원수 : 명)	여 명	
⑥소 재 지	(전화 :)		
⑦의 견 청 취 일 또 는 동 의 일	년 월 일		

근로기준법 제9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취업규칙을 [□ 신 고 / □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 1. 취업규칙(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기재한 서류) 수수료 없 음
2.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3.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32322-08511민
97.3.25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추 109)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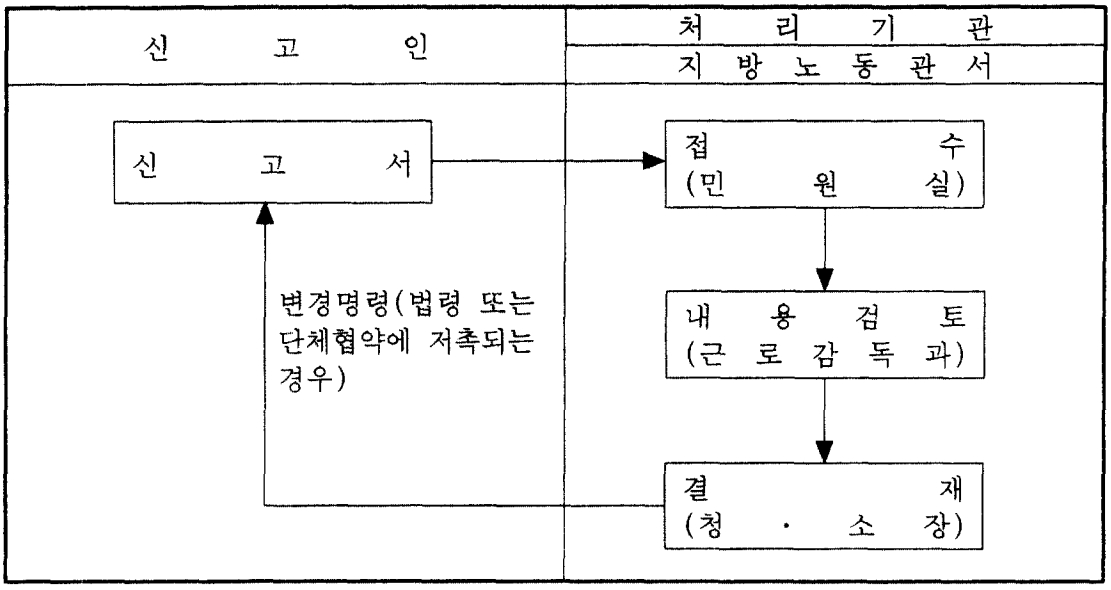

〔별지 제24호서식〕 삭제 〈99·2·22〉

〔별지 제25호서식〕

근 로 자 명 부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④부 양 가 족		명	⑤종 사 업 무		
이력	⑥기능및자격		퇴직	⑩해 고 일	년 월 일
	⑦최 종 학 력			⑪퇴 직 일	년 월 일
	⑧경 력			⑫사 유	
	⑨병 역			⑬금품청산등	
⑭고 용 일 (계 약 기 간)		년 월 일 ( )	⑮근로계약갱신일		년 월 일
⑯근로계약조건					
⑰특기사항(교육, 건강, 휴직등)					

32322-08711비
97.3.25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추 109)

〔별지 제26호서식〕

임 금 대 장

관리번호 :

성 명	주민등록번호	기능및자격	고용연월일	종사업무	임금계산기초사항			가족수당계산기초사항		
					기본시간급	기본일급	기본월급	부양가족수	1인당지급액	계산기간

구분 / 월별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근로시간수	휴일근로시간수	야간근로시간수	기본급	제수당						현금	기타임금		총액	공제액	영수액	영수인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현물					
														품명	수량평가액				

32322-08811비
97.3.25 승인

380㎜ × 268㎜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추 109)

〔별지 제27호서식〕

제 호 휴게 또는 휴일부여 명령서			
①사 업 장 명		②사 업 의 종 류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소 재 지			
⑥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년 월 일 발생한 근로시간의 연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2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휴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합니다. 휴 게 시간 휴 일 일 년 월 일 지방노동청(사무소)장 ㊞			

32322-08911일
97.3.25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8호서식〕

제 호 근 로 계 약 해 지 서			
①사 업 장 명		②사 업 의 종 류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소 재 지			
⑥근 로 자 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⑨종 사 업 무			
⑩계 약 내 용			
⑪해 지 사 유			
근로기준법 제6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해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사무소)장 ㊞			

32322-09011일
97.3.25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서식〕 내지 〔별지 제31호서식〕 삭제 〈99·2·22〉

〔별지 제32호서식〕〈개정 98·6·11〉

제 호

취업규칙변경명령서

①사 업 장 명		②사 업 의 종 류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소 재 지			
⑥변경을 명하는 사항			
⑦변경을 명하는 사유			
⑧변 경 기 한	년 월 일까지		

근로기준법 제9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중 위의 사항에 관하여 변경할 것을 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32322-09411일
97.3.25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3호서식〕

제 호

[□임 검 / □검 진] 지령서

①사 업 장 명			②사 업 의 종 류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소 재 지					
⑥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⑦장 소					
⑧범 위					
⑨임검(검 진)자	소 속		직 위		성 명

근로기준법 제10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검 / □검진] 실시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32322-09511일
97.3.25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추 109)

휴 게 휴 일 휴 가 임 금	휴일을 주는 방법	
	휴가를 주는 방법	
	지급하고자하는 임금기초	
	승급의 방법	
	임금계산 방법	
	임금 지급 방법	
위험 유해 업무에 관한 방호 방법		
양성계약에 상기 이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		
기타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사용자 직 성명 ㊞

노동부장관 귀하

(기입상의 방법)

1. 임금계산방법은 월급·주급 또는 일급제등의 별을 기입할 것
2. 임금지급방법은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그 방법을 기입할 것

〔서식 제5호〕

기능습득자고용신고서

사업의 종류	사업의 명칭		사업체의 소재지		
기능습득자성명	성 별	생년월일	습득시키고자하는 업무의종류	본 적	
				주 소	
기능습득자의법정대리인의 성명		고 용 년 월 일		양성계약 기 간	
비 고					

년 월 일

사용자 직 성명 ㊞

노동부장관 귀하

〔서식 제 6 호〕

기능습득자증명서

기능습득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제 호

년 월 일 교부

노 동 부 인

노 동 부
기 능 습 득 자 증 명 서
부 인

사업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체의 소재지

사용자 직 성명

습득업무의 종류

양성 계약 기간

〔서식 제 7 호〕

기능습득자명부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종사할업무의종류	본 적	
				주 소	
고 용	년 월 일		양성기간		기 타
해고또는퇴직	년 월 일			기타사유	
이 력					
사 망	년 월 일			원 인	

Ⅳ. 고용정책기본법

第5章 雇 傭

●雇傭政策基本法

소관부처 : 노동부

制定 1993·12·27 法律第4643號
改正 1997·12·13 法律第5454號(政府部處名稱등의변경에따른建築法등의整備에관한法律)
1997·12·24 法律第5474號(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
1998· 2·20 法律第5509號
2001· 8·14 법률제6510호(근로자복지기본법)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國家가 雇傭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施行함으로써 國民 개개인이 그 能力을 최대한 開發·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勞動市場의 효율성의 제고와 人力의 需給均衡을 도모하여 雇傭의 안정, 勤勞者의 經濟的·社會的 地位의 향상 및 國民經濟·社會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8·2·20〉

第2條 (基本原則) 國家는 이 法의 運用에 있어서 勤勞者의 職業選擇의 自由, 勤勞의 權利, 事業主의 雇傭管理에 관한 自主性을 존중하여야 하며, 能力을 開發하고자 하는 勤勞者의 意慾을 북돋우고 雇傭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事業主가 주도적인 役割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第3條 (勤勞者 및 事業主등의 責務) ①勤勞者는 자신의 適性과 能力에 적합한 職業을 選擇하여 職業生活의 전기간에 걸쳐 끊임없이 職業에 필요한 能力(이하 "職業能力"이라 한다)을 開發하고, 職業을 통하여 自己發展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事業主는 사업에 필요한 人力을 스스로 養成하고, 자기가 雇傭하는 勤勞者의 職業能力開發을 위하여 노력하며, 勤勞者가 그 能力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勤勞할 수 있도록 雇傭管理의 개선 및 勤勞者의 雇傭安定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改正 98·2·20〉

③勞動組合은 勤勞者의 職業能力開發을 위한 노력과 事業主의 勤勞者에 대한 職業能力開發·雇傭安定 및 雇傭管理改善등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第4條 (國家의 施策) ①國家는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施策을 종합적으로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97·12·24,

(추 137)

98·2·20〉

1. 國民 각자의 能力과 適性에 적합한 職業에의 就業과 産業에 필요한 人力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職業紹介, 職業指導 또는 雇傭情報의 蒐集·제공에 관한 사항
2. 勤勞者의 職業能力의 開發·향상 및 産業에 필요한 숙련된 人力의 養成·확보의 촉진을 위한 職業能力開發訓練 및 技術資格檢定에 관한 사항
3. 景氣變動, 産業構造의 變化등으로 인한 勤勞者의 失業의 豫防, 事業主의 雇傭調整에 대한 지원 및 失業者의 就職促進등 雇傭安定에 관한 사항
4. 人力不足의 豫防과 勞動市場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就職이 특히 곤란한 者의 就職의 촉진을 위한 勤勞者의 職業의 轉換, 地域間의 移動 및 職場에의 적응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勤勞者의 職業能力의 開發·발휘와 勤勞者의 能力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企業의 雇傭管理改善등의 지원·촉진에 관한 사항
6. 住居를 移轉하여 就職하는 勤勞者등을 위한 宿所 기타 勤勞者의 雇傭促進 및 雇傭安定에 필요한 施設의 設置 또는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雇傭保險 기타 雇傭安定과 職業能力開發등에 관한 사항

②國家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수립·施行함에 있어서 經濟·社會의 균형있는 발전, 企業經營基盤의 개선, 國土의 균형있는 開發등의 施策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雇傭機會의 增大, 地域間 不均衡의 是正, 中小企業에 대한 우대등을 도모하여야 하며, 勤勞者의 能力發揮에 障碍가 되는 雇傭慣行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5條 (雇傭政策基本計劃의 수립·施行) ①勞動部長官은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雇傭政策에 관한 中·長期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改正 98·2·20〉

1. 人力의 需要와 供給에 영향을 미치는 經濟·産業·敎育 또는 人口政策등의 動向에 관한 사항
2. 雇傭動向과 人力의 需給展望에 관한 사항
3. 第4條第1項 各號의 施策의 기본이 되는 사항
4. 기타 雇傭에 관련된 主要施策에 관한 사항

③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本計劃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國務會議에 보고하고 公表하여야 한다.

(추 101)

④勞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行政機關의 長에 대하여 基本計劃의 수립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第6條 (雇傭政策審議會) ①雇傭에 관한 主要事項을 審議·調整하게 하기 위하여 勞動部에 雇傭政策審議會(이하 "政策審議會"라 한다)를, 特別市·廣域市 및 道에 地方雇傭審議會를 둔다. 〈改正 97·12·13〉

②政策審議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調整한다. 〈改正 98·2·20〉

1.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施策중 主要施策에 관한 사항과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雇傭安定과 職業能力開發 및 雇傭保險에 관련된 主要施策의 수립·調整 기타 관련主要政策의 調整에 관한 사항
3. 人力의 供給構造와 産業構造의 變化등에 따른 雇傭 및 失業對策에 관한 사항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③政策審議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30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고, 委員長은 勞動部長官이 되며, 委員은 勤勞者와 事業主를 代表하는 者, 雇傭問題에 관하여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중에서 勞動部長官이 위촉하는 者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次官이 된다.

④政策審議會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政策審議會의 審議事項을 보다 전문적으로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政策審議會에 분야별로 專門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⑤專門委員會는 政策審議會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審議·議決한다.

⑥政策審議會·地方雇傭審議會 및 專門委員會의 구성·機能·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條 (職業安定機關) 國家는 이 法등 雇傭關係法律을 효율적으로 運用하여 勤勞者의 雇傭促進과 事業主의 人力確保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地域別로 職業安定機關을 設置·운영하여야 한다. 〈改正 98·2·20〉

第2章 雇傭情報등의 蒐集·제공

第8條 (雇傭情報의 蒐集 및 제공) ①勞動部長官은 求人과 求職의 신속하고 적정한 결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雇傭動向, 職業에 관한 情報 기타 雇傭에 관한 情報(이하 "雇傭情報"라 한다)를 蒐集·정리하여야 한다.

②勞動部長官은 雇傭情報의 蒐集·정리 또는 配布등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

(추 93)

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求職者 및 求人者, 職業訓練機關, 敎育機關 기타 雇傭情報를 필요로 하는 者가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第9條 (職業에 관한 調査·硏究) ①勞動部長官은 職業現況 및 動向分析, 職業指導 및 職務分析 기타 職業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 관하여 調査·硏究하여야 한다.

②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硏究의 성과를 활용하여 標準職業名의 작성, 職業辭典의 製作 기타 職業에 관한 資料를 蒐集·정리하여야 한다.

③第8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硏究 및 蒐集·정리에 관하여 準用한다.

第10條 (人力의 需給動向등의 작성) ①勞動部長官은 人力의 需給에 영향을 미치는 經濟·産業의 動向 및 그 展望등이 포함된 人力의 需給動向 및 展望을 매년 작성·公表하여야 한다. 〈改正 98·2·20〉

②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人力의 需給動向 및 展望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行政機關, 敎育·硏究機關, 事業主 또는 事業主團體, 勞動組合 기타 關係機關에 대하여 필요한 資料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8·2·20〉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의 제공을 요청받은 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3章 職業能力의 開發등

第11條 (職業能力開發體制의 확립) ①國家는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의 整備, 職業能力開發訓練의 내용 및 訓練方法의 硏究·開發, 職業能力開發訓練敎師의 養成·확보 및 資質向上등 職業能力開發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97·12·24〉

②國家는 敎育·硏究機關이 행하는 敎育·硏究, 公共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이 행하는 職業能力開發訓練, 事業主 기타 개인 또는 團體가 행하는 職業能力開發訓練이 상호 밀접히 관련되도록 함으로써 産業에 필요한 職業能力을 갖춘 勤勞者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97·12·24〉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職業能力開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第12條 (學生등에 대한 職業指導) 國家는 敎育法에 의한 各級學校의 學生등에 대하여 장래의 職業選擇을 지원하고, 각자의 適性과 能力에 맞는 職業에의 就職을 촉진하기 위하여 職業에 관한 情報를 제공하며, 職業適性檢査등 職業指導를 받

(추 101)

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第13條 (職業能力開發의 지원등) ①事業主는 그가 雇傭하는 勤勞者에 대하여 필요한 職業能力開發訓練을 실시하고, 勤勞者가 職業能力開發訓練과 職業能力開發에 관한기타 敎育訓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改正 97·12·24〉

②勞動部長官은 勤勞者와 事業主에게 職業能力開發에 관한 情報의 제공과 相談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第14條 (職業能力評價制度의 개선등) ①國家는 職業能力評價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여 勤勞者의 知識·技術 및 技能에 대한 檢定制度를 확립하고, 勞動組合·使用者團體 기타 關係者와 協調하여 이를 확충·보급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定制度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第4章 勤勞者등의 雇傭促進의 지원

第15條 (求職者에 대한 指導) ①職業安定機關은 求職者에게 求人의 職種·賃金등 勤勞條件, 就職地域, 필요한 技能 기타 求人의 내용등에 관한 求人情報와 관련雇傭情報를 제공함으로써 求職者가 그 適性·能力·經驗 또는 技能의 정도등에 알맞는 職業을 選擇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職業安定機關은 求職者에게 職業能力開發의 기회에 관한 情報를 제공하고, 求職者가 그 技能·敎育水準등에 적합한 職業能力開發訓練과 職業能力開發에 관한 기타 敎育訓練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등에 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改正 97·12·24〉

第16條 (高齡者등의 雇傭促進의 지원) ①國家는 高齡者·障碍人 기타 勞動市場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就職이 특히 곤란한 者의 雇傭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就職에 적합한 職種의 開發, 職業能力開發機會의 확대, 雇傭情報의 제공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事業主 기타 關係者에 대하여 高齡者·障碍人등의 雇傭機會를 확대하고 作業環境 및 業務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資料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高齡者·障碍人의 雇傭促進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第17條 (女性의 雇傭促進의 지원) ①國家는 雇傭에 있어서 男女의 균등한 기회 및 待遇의 확보와 職業에의 적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職業能力의 開發·향상과 福祉施設의 확충등을 통하여 女性의 就業機會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추 10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男女의 雇傭平等과 女性의 就業機會의 확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第18條 (青少年의 雇傭促進의 지원) 國家는 青少年이 그 適性과 能力에 알맞는 職業을 選擇할 수 있도록 青少年에게 雇傭情報를 제공하고, 職業相談·職業適性檢査등의 職業指導와 職業訓練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職業能力을 開發·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第19條 (就業機會의 균등한 보장) 事業主는 勤勞者를 모집·採用함에 있어서 性別, 信仰, 社會的 身分, 出身地域 또는 出身學校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균등한 就業機會를 보장하여야 한다.

第20條 (雇傭促進訓練의 실시)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失業者·生活保護對象者·非進學青少年 또는 零細農漁民등이 그 能力에 적합한 職業에의 就業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雇傭促進訓練을 실시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雇傭促進訓練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改正 97·12·24〉

第21條 (雇傭促進施設의 設置·운영) ①勞動部長官은 勤勞者의 원활한 移動 및 雇傭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施設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1. 移動勤勞者를 위한 宿泊·給食施設
2. 勤勞者를 위한 敎養·體育 또는 娛樂施設등
3. 女性勤勞者의 雇傭促進을 위한 施設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雇傭促進施設

②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의 設置·운영을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위임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團體 또는 非營利法人에 委託할 수 있다.

第5章 事業主의 人力確保의 지원

第22條 (求人者에 대한 지원) ①職業安定機關은 求人者에 대하여 求職의 내용등의 求職情報와 관련雇傭情報를 제공함으로써 求人者가 당해 作業 또는 職務에 적합한 勤勞者를 雇傭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職業安定機關은 人力需給의 균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求人者에 대하여 雇傭情報를 제공하고, 求人의 時期·人員 또는 地域 기타 求人의 방법에 관하여 相談·助言등의 指導를 할 수 있다. 〈改正 98·2·20〉

第23條 (企業의 雇傭管理에 대한 지원) ①職業安定機關 및 公共職業訓練機關은 勤

(추 101)

勞者의 모집·採用 또는 配置, 職業能力의 開發, 昇進·賃金體系 기타 企業의 雇傭管理에 관하여 事業主·勤勞者代表 또는 勞動組合등으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雇傭情報등을 활용하여 相談·指導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勞動部長官은 企業內部의 勞動市場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企業의 雇傭管理實態등을 지속적으로 調査·硏究하고, 관련資料와 情報를 蒐集·分析하여야 한다.

第24條 (中小企業의 人力確保支援計劃의 수립·施行) ①勞動部長官은 中小企業의 人力確保를 지원하기 위하여 作業環境의 개선, 福利厚生施設의 확충 기타 雇傭管理의 개선등을 지원하기 위한 計劃(이하 "中小企業의 人力確保支援計劃"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할 수 있다. 〈改正 98·2·20〉

②勞動部長官은 中小企業의 人力確保支援計劃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8·2·20〉

③中小企業의 人力確保支援計劃의 수립·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8·2·20〉

第25條 (中小企業의 人力確保의 지원)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中小企業의 人力確保支援計劃의 원활한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改正 98·2·20〉

第6章 雇傭調整支援 및 雇傭安定對策

第26條 (事業主의 雇傭調整의 지원등) ①政府는 國內外 經濟事情의 變化등으로 雇傭事情이 급격히 악화된 業種 또는 地域의 事業主에 대한 雇傭調整의 지원, 勤勞者의 失業의 豫防, 失業者의 再就職促進 기타 雇傭安定과 失業者의 生活安定을 위하여 필요한 支援措置를 할 수 있다.

②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種 또는 地域에 있어서의 勤勞者의 雇傭安定 및 失業者의 再就職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 行政機關 및 事業主團體와 협력하여 職業訓練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支援措置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7條 (大量雇傭變動의 申告등) ①事業主는 生産設備의 自動化·新設 또는 增設, 사업규모의 縮小·調整등으로 인한 雇傭量의 변동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雇傭量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職業安定機關에 申告하여야 한다.

②職業安定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받은 때에는 求人·求職을 開

(추 93)

拓하고, 職業紹介를 확대하며, 公共職業訓練機關으로 하여금 職業訓練을 실시하게 하는 등 失業者의 再就職促進 또는 당해 사업에 있어서의 人力의 확보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98·2·20〉

第28條 (失業對策事業의 실시) ①勞動部長官은 産業別·地域別 失業狀況을 조사하여 다수의 失業者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失業者의 취업촉진 등 雇傭安定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된 失業對策事業(이하 "失業對策事業"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失業者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실시 및 훈련지원
2. 失業者에 대한 生計費, 生業資金, 醫療保險料등 社會保險料, 醫療費(家族의 醫療費를 포함한다), 學資金(子女의 學資金을 포함한다), 住宅傳貰資金등의 지원
3. 失業의 豫防, 失業者의 취업촉진 기타 雇傭安定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事業主에 대한 지원
4. 雇傭促進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貸付
5. 失業者에 대한 就勞事業등의 실시
6. 기타 失業의 解消에 필요한 사업

②勞動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失業對策事業의 일부를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한 勤勞福祉公團(이하 "公團"이라 한다)에 委託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無給休職者는 이를 失業者로 본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失業對策事業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98·2·20〕

第28條의2 (失業對策事業의 資金造成등) ①公團은 第2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失業對策事業을 委託받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에 소요되는 資金을 造成한다.

1. 政府 또는 政府외의 者의 出捐 또는 보조
2. 第28條의3의 規定에 의한 資金의 借入
3. 第28條의4의 規定에 의한 債券의 발행
4. 기타 收入金

②公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造成된 資金을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의 規定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財源으로 하여 관리·運用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

〔本條新設 98·2·20〕

(추 137)

第28條의3 (資金의 借入) 公團은 第2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失業對策事業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資金을 借入(國際機構·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으로부터의 借入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本條新設 98·2·20〕

第28條의4 (債券의 발행) ①公團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②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債券發行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財政經濟院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③政府는 公團이 발행하는 債券의 元利金의 償還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國會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債券의 消滅時效는 滿期償還日부터 起算하여 元金은 5年, 利子는 2年으로 完成한다.

⑤기타 債券發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8·2·20〕

第29條 (關係機關의 協力) ①勞動部長官은 失業者의 雇傭安定 또는 人力의 需給調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 대하여 그 소관工事의 開始·정지 또는 勤勞者의 雇傭등에 관하여 協力을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8·2·20〉

②中央行政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力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7章 補 則

第30條 (보고 및 檢査) ①勞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主, 이 法에 의한 지원을 받은 者 또는 받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勞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主의 事務所 또는 事業場에 出入하여 關係者에게 質問하게 하거나 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행하는 關係公務員은 그 身分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關係者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31條 (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勞動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 또는 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7·12·13〉

第32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

(추 137)

다.

1.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2.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3.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質問에 대하여 答辯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答辯을 한 者 또는 同條同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勞動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勞動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1994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4條 내지 第26條의 規定은 1995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職業安定및雇傭促進에관한法律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 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 則 〈97·12·24 法547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附 則 〈98·2·20 法5509〉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다른 法律의 改正) 勤勞者의生活向上과雇傭安定支援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을 削除한다.

부 칙 〈2001·8·14 법65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추 137)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소관부처 : 노동부

제정 1994 · 7 · 16 대통령령제14326호
개정 1994 · 12 · 23 대통령령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5 · 4 · 15 대통령령제14628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6 · 7 · 13 대통령령제15120호
1998 · 3 · 16 대통령령제15743호
1998 · 5 · 16 대통령령제15798호
1998 · 12 · 31 대통령령제15967호(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1999 · 5 · 13 대통령령제16308호(산업발전법시행령)
1999 · 5 · 24 대통령령제16326호(기획예산처직제)
2001 · 1 · 29 대통령령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목적) 이 영은 고용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고용보험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율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고용정책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고용정책심의회의 구성)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라 함은 재정경제부 · 교육인적자원부 · 외교통상부 · 행정자치부 · 과학기술부 · 농림부 · 산업자원부 · 정보통신부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노동부 · 건설교통부 · 해양수산부 · 기획예산처의 차관 및 국가보훈처차장을 말한다. 〈개정 98 · 3 · 16, 99 · 5 · 24, 2001 · 1 · 29〉

〔전문개정 96 · 7 · 13〕

제4조 (임기)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정책심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위원장은 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전문위원회)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심의회에 다음 각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98 · 3 · 16〉

(추 130)

1. 고용정책전문위원회

2. 삭제 〈98·3·16〉

3. 고용보험전문위원회

4.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

②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노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고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2급 내지 3급 공무원중에서 정책심의회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정책심의회의 위원중에서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정책심의회는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정책기본법 및 직업안정법의 시행에 관련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을 고용정책전문위원회에, 고용보험법의 시행에 관련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을 고용보험전문위원회에,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시행에 관련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을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에 각각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8·3·16〉

⑤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정책심의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전문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의2 (조사·연구위원) ①고용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9인이내의 조사·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조사·연구위원은 고용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본조신설 98·3·16〕

제8조 (협조의 요청) 정책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이하 "심의회등"이라 한다)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수당) 심의회등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조사·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3·16〉

(추 104)

제10조 (간사) 심의회등에는 각각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동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외에 심의회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지방고용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고용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96·7·13〉

제13조 (지방고용심의회의 기능등) ①지방고용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6·7·13, 98·3·16〉

1. 고용정책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도의 고용촉진·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중요사항
3. 직업안정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제한에 관한 사항
4. 기타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지방고용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고용심의회에 기능별 또는 지역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고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지방고용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조 (전문기관에의 자문등)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보의 수집 및 제공,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력의 수급동향등의 작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98·3·16〉

(추 104)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당해 자문 및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98·12·31〉

제16조 (고용촉진시설의 설치) ①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이라 함은 근로자의 취직·고용문제등에 대한 상담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96·7·13, 98·3·16〉

1.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3. 한국경영자총협회
4. 기타 근로자의 취직·고용문제등에 대한 상담등 고용촉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단체 또는 법인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법인

제17조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8·3·16〉

1. 중소기업의 고용동향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의 작업환경·복리후생시설 기타 고용관리의 현황 및 개선등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지원관련 법령에 의한 자금지원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에 관련된 것으로서 노동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8·3·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지원요청에 대한 처리계획 및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추 104)

제18조 (지원대상 업종·지역등)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지원등이 필요한 업종 또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지역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 또는 지역으로 한다.

1. 사업의 전환이나 사업의 축소·정지·폐지로 인하여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
2. 제1호의 업종이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당해 지역의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안의 근로자에 대한 실업의 예방, 재취직의 촉진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구직자의 다수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구직자의 수에 비해 고용기회가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고용개발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노동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 또는 지역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한 고용조정의 지원등의 기간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 또는 지역을 지정·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 (고용조정지원등) ①노동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중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중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의 지원등이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6·7·13, 98·3·16, 99·5·13〉

제20조 (대량고용변동의 신고기준등)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

(추 110)

준"이라 함은 1월이내의 기간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직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1.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30인이상
2.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제21조 (실업대책사업의 실시)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당해 실업대책의 시행주체·종류·규모 및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8·3·16〉

1. 다수의 인력을 사용하는 사업
2.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3. 고용상황의 변화에 따라 용이하게 그 규모를 변경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사업

제21조의2 (기타 실업대책사업) 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해소와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실업대책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실시하여 실업자를 고용하는 취로사업등 고용촉진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등에 대한 지원
2. 기타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실업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생계·의료지원등 생활안정지원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등에 대한 지원

〔본조신설 98·5·16〕

제21조의3 (실업대책사업의 위탁등)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98·5·16〉

1.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2.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대부사업

(추 104)

3. 제21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대책사업을 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98·3·16〕

제21조의4 (실업자로 보는 무급휴직자의 범위)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급휴직자"라 함은 6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무급으로 휴직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98·3·16〕

제22조 (공공사업등에의 재취직촉진)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대책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이 실시하는 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 실시하는 사업의 시행주체에 대하여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실직자의 고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취로사업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장기 구직자에 대한 취로기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조정) 노동부장관은 실업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해 그 훈련시기의 조정, 훈련기간의 단축, 훈련직종의 조정, 위탁훈련의 범위조정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8·12·31〉

제23조의2 (출연금의 교부) ①법 제2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공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단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를 받은 경우 당해 분기별 사

(추 104)

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3·16〕

제23조의3 (자금의 차입) 공단은 법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사유 및 차입금액(물자도입인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수량 및 그 가격)
2. 차입처
3. 차입조건
4.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5. 기타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98·3·16〕

제23조의4 (채권발행의 승인신청) 공단은 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발행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발행금액·발행방법 및 발행조건과 상환의 방법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채권발행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3·16〕

제23조의5 (채권의 형식) 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8·3·16〕

제23조의6 (채권의 발행방법) ①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이를 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매출기간과 제23조의7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3·16〕

제23조의7 (채권의 응모등) ①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청약서 2통에 인수하고자 하는 채권의 권종·수·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추 96)

②제1항의 채권청약서는 공단의 이사장이 이를 작성하고, 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단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8. 이미 발행한 채권중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총액
9.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 및 주소
10. 채권의 인수가액을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납금액 및 시기

③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98·3·16〕

제23조의8 (총액인수의 방법) 제23조의7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인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98·3·16〕

제23조의9 (채권의 발행총액) 공단은 채권의 발행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채권의 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청약서에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98·3·16〕

제23조의10 (채권인수가액의 납입등) ①공단은 채권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금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3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③채권은 그 인수가액의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98·3·16〕

(추 96)

제23조의11 (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단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23조의7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7제2항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연월일

〔본조신설 98·3·16〕

제23조의12 (채권원부) ①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23조의7제2항제2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사항

②채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취득연월일

③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중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98·3·16〕

제23조의13 (채권의 이전) ①기명식 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공단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공단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98·3·16〕

제23조의14 (이권흠결의 경우) ①이권이 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권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98·3·16〕

제23조의15 (채권소지인등에 대한 통지등) ①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추 96)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3·16〕

제24조 (보고 및 검사)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요구하는 때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25조 (권한의 위임)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검사
2.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26조 (과태료의 부과)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중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의5"를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로 한다.

(추 96)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5·4·15 대령14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6·7·13 대령15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3·16 대령157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중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5·16 대령157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12·31 대령1596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 〈99·5·13 대령1630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 칙 〈99·5·24 대령163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추 130)

●고용정책기본법시행규칙

제정 1994·8·2 노동부령제 93호
개정 1998·12·31 노동부령제139호(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용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삭제 〈98·12·31〉

제5조 (대량고용변동의 신고등) ①영 제20조의 단서에서 "이직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이직하는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용근로자 또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일용근로자 또는 6월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로서 6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자 또는 6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로서 당해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
2. 수습 사용된 날부터 3월이내의 자
3. 자기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자
4. 상시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자로 고용된 자
5.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직하는 자

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량의 변동신고는 그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직하는 자의 이직일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후의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추 106)

〔별지 제1호서식〕

대량고용변동신고서						
※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 고 인	사업장명		업 종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근로자수	총 원	명	남	명	여	명
이직자수	총 원	명(여 명)	이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고용정책기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장 귀하						
덧붙임 : 이직근로자 현황(별지 제2호서식)						

※ 신고안내

신고하는 곳		수수료	없 음	처리기간	즉 시
유의사항 1. 1개월이내의 기간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30인이상, 300인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상시근로자 총수의 10%이상의 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30일이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이를 위반하게 되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하게 됩니다.					

32324-08411인 297㎜×210㎜
94.6.3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이 직 근 로 자 현 황

이직 연월일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담당 직무	학력	기술기능 정도	채용 일자	월평균 임금	이직 사유

※ 기술기능정도: 1. 미숙련기능자 2. 반숙련기능자 3. 숙련기능자 4. 지도기능자 5. 미소지기술자 6. 기타 공인자격증 소지기술자 7. 기사 2급 8. 기사 1급 9. 기술사

32324-08511비 297㎜×210㎜
94.6.30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추 106)

Ⅴ.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법

소관부처 : 노동부

전문개정 2001 · 8 · 14 법률제6508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을 지원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차별"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그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차별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질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로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3.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②이 법에서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밖의 요구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남녀고용평등 실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추 135)

제4조 (관계자의 책무) ①근로자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저해하는 제반 관행 및 제도를 개선하여 남녀근로자가 동등한 여건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을 지원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을 저해하는 모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시책의 수립등) ①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선정·지원
3.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의 설정·추진
4. 남녀차별 개선 및 여성취업 확대를 위한 조사·연구
5. 그밖에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그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 수립) ①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취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에 관한 사항
3.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정착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5.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6.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에 관한 사항
7. 근로여성을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추 135)

제 2 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등

제 1 절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제 7 조 (모집과 채용)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모집·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키·체중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그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8 조 (임금) ①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의하여 설립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제 9 조 (임금외의 금품등) 사업주는 임금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등 복리후생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교육·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정년·퇴직 및 해고)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 절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제12조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①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

(추 135)

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의 방법·내용 및 횟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①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그 주장을 제기한 근로자가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그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절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제15조 (직업지도) 직업안정기관은 여성이 적성·능력·경력 및 기능의 정도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에 적응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하여 고용정보 및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직업지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직업능력개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하여 모든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있어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 (여성고용촉진) ①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요건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제18조 (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①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휴

(추 135)

가기간중 무급휴가에 해당하는 기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산전후휴가급여"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재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③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관계서류의 작성·확인등 제반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요건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9조 (육아휴직) ①사업주는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종료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①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요건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1조 (보육시설)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탁아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이하 "직장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사업주의 범위등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다.

③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

(추 135)

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복지시설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여성을 위한 교육·육아·주택등 공공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근로여성을 위한 제1항의 복지시설의 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장 분쟁의 예방과 조정

제23조 (상담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선정요건, 비용의 지원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명예고용평등감독관)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장 소속근로자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명예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당해 사업장의 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피해근로자에 대한 상담·조언
2. 당해 사업장의 고용평등 이행상태 자율점검 및 지도시 입회
3.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에 대한 개선건의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남녀고용평등 제도에 대한 홍보·계몽
5. 그밖에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사업주는 명예감독관이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독관의 위촉·해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분쟁의 자율적 해결) ①사업주는 제7조 내지 제14조, 제18조제3항,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로부터 고충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설치하는 고충처리기관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그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고충처리기관은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

(추 135)

표하는 자 각각 동수로 구성한다. 다만,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노사협의회가 이 법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충처리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을 설치하여야 할 사업주의 범위, 설치방법, 고충처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조정의 신청) ①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의 노동조합과 당해 사업주(이하 "관계당사자"라 한다)의 쌍방 또는 일방은 이 법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은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27조 (고용평등위원회의 설치) 이 법에 의한 분쟁의 조정과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노동행정기관에 고용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8조 (위원회의 구성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5인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은 사업주단체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남녀고용평등업무와 관계되는 공무원중에서 지방노동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②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그밖에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2인이내의 상근전문위원을 둔다.

③위원의 자격, 임기 및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위원회의 조정 및 의견제출) ①위원회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관계당사자에게 이를 수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관계당사자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출석, 자료의 제출 그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③관계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정서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

(추 135)

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조정서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④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조정의 결과를 관계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관계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작성·권고한 경우 그 내용 및 결과를 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이 법 위반여부에 관한 의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입증책임)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의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제5장 보 칙

제31조 (보고 및 검사등) ①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보고와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2조 (고용평등 이행실태등의 공표) 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평등 이행실태, 그밖의 조사결과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관계서류의 보존) 사업주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4조 (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파견근로가 행해지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사업주를 이 법에 의한 사업주로 본다.

제35조 (경비보조)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여성의 취업촉진과 복지증진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추 135)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때
3. 속임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3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 칙

제37조 (벌칙) ①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업주가 제8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사업주가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9조제1항 및 제4항,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9조 (과태료) ①사업주가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사업주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제출한 자

(추 135)

3.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고용평등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고용평등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고용평등위원회로 본다.

④(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추 135)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소관부처 : 노동부

전문개정 2001·10·31 대통령령제17401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남녀고용평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거의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8조 내지 제10조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실태조사) 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고용실태·고용환경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①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그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교육은 사업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등을 배포·게시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낮거나 규모가 영세한 경우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업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할 교육의 내용·방법등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사업주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

(추 138)

은 훈련과정중에 제2항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과정을 수료한 근로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이전에 당해 사업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의한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중인 근로자
3.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 다만,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 및 신체적·정신적인 장애 또는 이혼등으로 인하여 당해 영아의 양육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육아휴직의 신청등)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이하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아의 성명·생년월일, 육아휴직 개시일 및 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연월일, 신청인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개시예정일 7일전까지 육아휴직신청을 할 수 있다.

1. 출산예정일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 및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이혼등으로 인하여 당해 영아의 양육이 곤란한 경우

③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때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때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이내에 휴직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자녀의 출생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육아휴직의 변경신청등) ①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제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주에게

(추 138)

그 사유를 명시하여 휴직개시예정일을 당초의 휴직개시예정일전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종료하고자 하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전(제6조제2항제2호의 사유에 의하여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7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육아휴직신청의 철회등) ①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육아휴직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②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육아휴직개시예정일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육아휴직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근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당해 영아의 사망
2. 당해 영아가 양자인 경우에는 파양 또는 입양의 취소
3.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질병 및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이혼등으로 인하여 당해 영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때

제9조 (영아의 사망등에 따른 육아휴직의 종료) ①육아휴직중인 근로자는 그 영아가 사망하거나 영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아의 사망등에 대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였으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개시일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통지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아의 사망등이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에 각각 그 육아휴직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④육아휴직중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개시하거나 새로운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또는 휴직의 개시일의 전

(추 138)

날에 육아휴직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복지시설의 우선 설치지역)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여성을 위한 공공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공업단지·농공지구등 근로여성의 밀집지역부터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 (고충처리기관의 설치범위)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처리기관을 설치하여야 할 사업주는 상시 3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로 한다.

②제1항의 고충처리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 고충처리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30인이상이고 그 사업장에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에 관하여 처리권한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고충처리기관의 설치방법등)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은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이하 "사업주위원"이라 한다)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를 동수로 하여 구성하되, 각각 3인이상 10인이내로 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0인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각각 2인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위원은 사업주가 위촉하고, 근로자위원은 그 사업의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서 다수를 득표한 자의 순으로 선출한다. 다만, 그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당해 사업 소속근로자에 한한다)를 근로자위원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위원 및 근로자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여성근로자 비율을 고려하여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고충처리기관을 설치하는 사업주는 고충처리기관의 조직·운영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이를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이 경우 그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고충처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 (고충신고등)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신고는 구두·서면·우편·전신·모사전송·인터넷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고충처리기관이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고충의 처리

(추 138)

를 위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고충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관련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익위원의 자격)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한다.

1. 일반직 4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관련공익단체에서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4.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사회학·심리학·여성학·법학·경제학등 관련분야의 조교수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5. 그밖에 남녀고용평등 관련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15조 (위원장등) ①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공익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행한다.

제17조 (회의의 구성등) ①위원회에는 소속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익회의를 둔다.

②위원장은 각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공익회의는 법 제26조 및 법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중 직장내 성희롱 관련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공익회의에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을 처리하고 전체회의는 그외의 사항을 처리한다.

(추 138)

제18조 (회의의 소집 및 정족수) ①전체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공익회의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전체회의는 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 각각 2인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공익회의는 공익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상근전문위원)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전문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 6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행정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노사관계, 근로여성관계 그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관련단체에서 근로여성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노동행정에 10년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상근전문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분쟁사건의 조사내용 및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지방노동청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개최 및 운영등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21조 (위원의 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련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보존서류의 종류)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추 138)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7조 내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모집·채용, 임금, 임금외의 금품등,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에 관한 서류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에 관한 서류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에 관한 서류
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에 관한 서류

제24조 (권한의 위임등)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기관의 지정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고용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사업실시 비용의 지원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지도
4.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원받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지도
5.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위촉·해촉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관계서류의 제출, 사업장에의 출입, 관계인에의 질문 및 관계서류의 검사에 관한 사항
7.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제2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그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육아휴직의 적용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육아

(추 138)

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추 138)

〔별 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제3항관련)

위 반 행 위	해당법규정	금 액
1. 사업주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희롱을 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	
가. 성희롱과 관련하여 최근 3년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또다시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나. 한 사람에게 수차례 성희롱을 하거나 2인이상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		500만원
다. 그밖에 성희롱을 한 경우		300만원
2. 사업주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제2항	400만원
3. 사업주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제3항제1호	200만원
4. 사업주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반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제3항제1호	200만원
5. 사업주가 법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제3항제1호	200만원
6. 사업주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	법 제39조제3항제2호	200만원
7. 사업주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9조제3항제3호	200만원

비 고 :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추 138)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전문개정 2001·10·31 노동부령제175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장내 성희롱 판단기준의 예시) 남녀고용평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판단을 위한 기준의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선정·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남녀고용평등실적이 우수한 기업(이하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이라 한다)을 매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기회평등보장, 직업능력개발 및 모성보호등 분야별로 성 차별적 고용관행을 선도적으로 개선하거나 그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나누어 선정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선정 및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의 설정등) 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를 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으로 설정하고 남녀고용평등의식의 확산을 위한 기념행사, 세미나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상시 1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

제6조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성희

(추 138)

롱예방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 사업주단체
2.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노무법인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업집단이 운영하는 연수·교육 시설

제7조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 지정절차)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예방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예방교육 강사보유현황
3. 예방교육시 사용할 교재등의 자료
4. 그밖에 예방교육 자료의 개발등 관련사업의 실시 경험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접수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통보하되,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희롱예방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내용중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에 관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지정서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은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조 (예방교육의 위탁 및 사후관리) ①사업주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희롱예방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예방교육기관에 영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②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 장은 사업주로부터 성희롱예방교육의 위탁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시간이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를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추 138)

③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 장은 성희롱예방교육의 위탁을 받아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에게 교육일시·교육내용등을 명시한 소정의 증서, 교육자료 사본 및 교육이수자명부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증서·교육자료 및 교육이수자명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이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련서류 및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등) 사업주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의 정도 및 지속성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 (민간단체의 선정등)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정관의 목적사업에 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일 것
2. 노동관련 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사회학·심리학·여성학·경제학·법학등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노동관련 분야에서 1년이상 종사한 자 또는 공인노무사 1인이상이 상담원으로 종사하고 있을 것
3. 상담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6.6제곱미터이상의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②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민간단체는 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을 전담하는 별도의 상담실(이하 "고용평등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평등상담실을 설치·운영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비용의 지원수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매년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민간단체별 지원수준을 달리 할 수 있다.

④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는 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

(추 138)

단된 때

3. 그밖에 관련법령의 위반으로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⑤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운영과 선정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위촉·운영등)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의 구성원
2.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의 위원 또는 고충처리위원
3. 노동조합의 임원 또는 인사·노무담당부서의 관리자
4. 그밖에 당해 사업의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하여 활동함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명예감독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명예감독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노사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에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명예감독관은 업무수행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명예감독관이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업무와 겸직하여 비상근, 무보수로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근로자인 명예감독관이 퇴직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의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
2. 명예감독관이 업무수행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3. 그밖에 명예감독관으로 활동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어 노·사대표가 공동으로 해촉을 요청한 때

⑦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명예감독관의 위촉·해촉 및 운영등

(추 138)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 (고충처리기관의 운영규정) 사업주가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처리기관의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충처리기관의 위원의 수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2. 고충의 처리절차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고충처리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제14조 (고충사항의 접수 및 처리대장)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 (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등)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고용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 (회의의 소집절차)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사건조사)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정사건접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지체없이 상근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건을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분쟁의 관계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상근전문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사건조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조사를 받은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여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당사자, 참고인등 이해관계인이 서명·날인한 진술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사건조사서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 (분쟁조정안의 작성등)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안에는 당사자·조정내용·조정이유·조정일자·위원회의 명칭을 기재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당사자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출석요구는 별지 제8호서식, 자료제출요구는 별지 제9호서식, 자료제출등 협력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추 138)

제19조 (지방노동행정기관의 의견요청) ①법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위원회가 법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사실관계, 법적 근거, 위원회의 의견 및 위원회의 명칭을 기재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2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고용평등위원회의 조정절차 그밖에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 (경비보조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에서 "여성의 취업촉진과 복지증진에 관련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사업
2.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사업
3. 근로여성의 복지증진사업
4. 여성의 취업과 관련한 조사·연구사업
5. 영유아보육사업
6. 그밖에 노동부장관이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추 138)

〔별 표〕

직장내 성희롱 판단을 위한 기준의 예시(제2조관련)

1. 성적인 언동에 대한 예시

가. 육체적 행위

(1)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2) 가슴·엉덩이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3)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나. 언어적 행위

(1)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한다)

(2)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3)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4)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5) 회식자리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시각적 행위

(1)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라. 그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2.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의 예시

채용탈락·감봉·승진탈락·전직·정직·휴직·해고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 비 고 : 성희롱여부의 판단시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저해하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추 138)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4 일
신청기관	명 칭		법인등록번호	
	주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FAX번호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없 음
2. 예방교육 강사 보유현황 1부	
3. 예방교육시 사용할 교재등의 자료	
4. 그밖의 예방교육 자료의 개발등 관련사업의 실시 경험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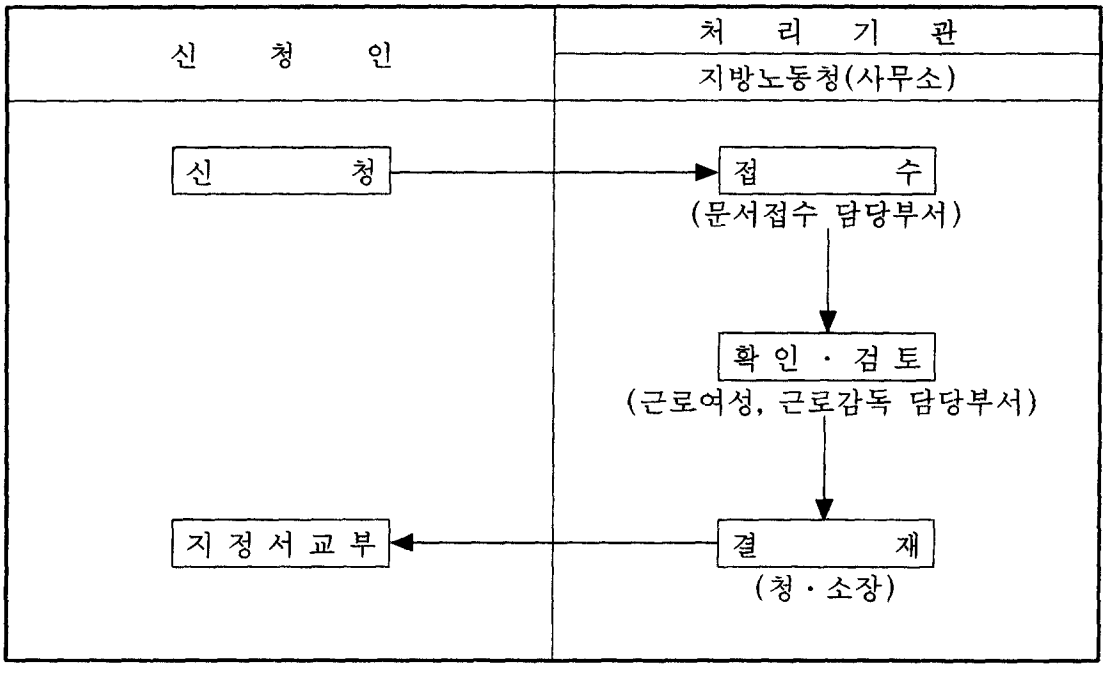

(추 138)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기관지정서

기 관 명 칭 :
소 재 지 :
대 표 자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위 법인(단체, 시설)을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210㎜×297㎜
(인쇄용지(1종) 120g/㎡)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기관변경신청서					처리기간 5일
변경신고인	명 칭		법인등록번호		
	주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사항 ※변경사항만 기재합니다.	구 분	(소재지, 단체명, 대표자명)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기관 지정서	없 음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추 138)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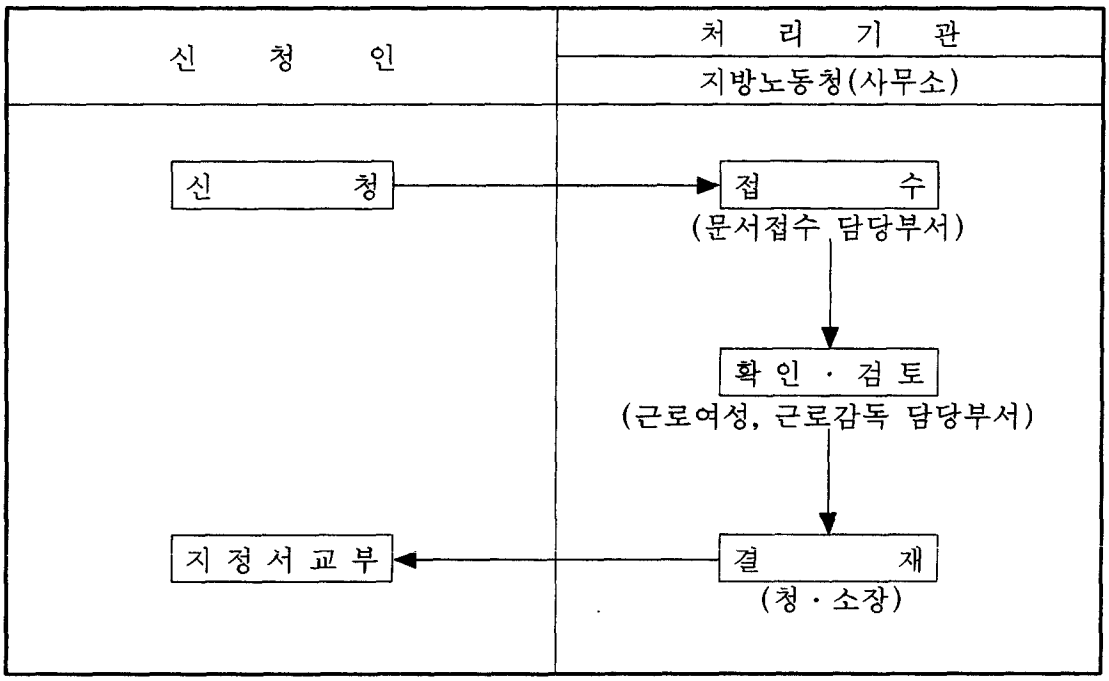

〔별지 제4호서식〕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 고 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사업주 확 인
		성명	소속부서				

297㎜ × 210㎜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추 138)

〔별지 제5호서식〕

고용평등조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당사자	근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위 (소속부서)		성 별	
		주 소	(전화 :)		
	사업주	사업체명		업 종	
		대표자성명		상시근로자수	명(여 : 명)
		사업장 소재지	(전화 :)		
조정신청 내 용		남녀고용평등법 제 조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조정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용평등위원회위원장 귀하

※비 고

구체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합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조정사건접수대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사건내용 및 신청사항	관계당사자		처 리		결 재		
			신청인	피신청인	일자	결과	담당	부위원장	위원장

297㎜×210㎜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추 138)

〔별지 제7호서식〕 (제1쪽)

사건조사서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소	(전화 :)
진술일시 및 장소	
위의 사람은 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신청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진술하다.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2쪽)

위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이며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다.
년 월 일
진술자 성명 (서명)
○○지방노동청 고용평등위원회
조사자 성명 (서명)

(추 138)

〔별지 제8호서식〕

제 호

출 석 요 구

수 신:

남녀고용평등법 제2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 )에 대한 조정신청 사건조사에 필요하여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 . 오전(후) 시까지 _____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 이 출석요구서와 신분증, 아래 증거자료와 그밖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귀하가 주장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이와 관련한 자료를 준비하여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1.
2.
3.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출석요구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지방청 고용평등위원회(전화 -)에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조정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고용평등위원회위원장 ㊞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보관용)
자료제출요구서

담 당	위원장	결재

성 명	
주 소 (소 재 지)	
자료제출자의성명 (직 위)	
자 료 제 출 기 한	

○자료제출사항

1.
2.
3.

제 호

(발송용)
자료제출요구서

○성 명:
○자료제출사유:
○자료제출기한:
○자료제출사항:

1.
2.
3.

남녀고용평등법 제2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니 기한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지방청 고용평등위원회(전화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고용평등위원회 ㊞

297㎜×210㎜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협력요청서					
당사자	근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위 (소속부서)		성 별	
		주 소			
	사업주	사업체명		업 종	
		대표자성명		근로자수	명(여: 명)
		사업장 소재지		(전화:)	
사건요지					
협력요청 사항		1. 2. 3. 4.			
남녀고용평등법 제2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쟁조정을 위한 협력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고용평등위원회위원장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요청서					
관계당사자	근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위 (소속부서)			
		주소또는 소재지		성 별	
	사업주	사업체명		업 종	
		대표자성명		상시근로자수	명(여: 명)
		사업장 소재지		(전화:)	
의견요청내용(별지작성가능)					
남녀고용평등법 제29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귀 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사무소)장 ㊞ ○○고용평등위원회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 관계증빙서류 1부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Ⅵ.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男女差別禁止및救濟에관한法律

소관부처 : 여성부

制定 1999·2·8 法律第5934號
改正 2001·1·29 法律第6401號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憲法의 男女平等理念에 따라 雇傭, 教育, 財貨·施設·用役 등의 제공 및 이용, 法과 政策의 執行에 있어서 男女差別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被害者의 權益을 救濟함으로써 社會의 모든 영역에서 男女平等을 實現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男女差別"이라 함은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人間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認識·享有하거나 權利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性別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區別·排除 또는 제한을 말한다.
2. "性戲弄"이라 함은 業務, 雇傭 기타 관계에서 公共機關의 종사자, 使用者 또는 勤勞者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業務등과 관련하여 性的 言動등으로 性的 屈辱感 또는 嫌惡感을 느끼게 하거나 性的 言動 기타 요구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雇傭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3. "公共機關"이라 함은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團體를 말한다.
4. "使用者"라 함은 事業主 또는 事業經營擔當者 기타 勤勞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事業主를 위하여 행위하는 者를 말한다.

第2章 男女差別의 금지

第3條 (雇傭에서의 차별금지) 公共機關 및 使用者는 雇傭分野에 있어서 男女의 平等한 기회와 대우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採用, 昇進, 轉補, 解雇, 停年등에 있어서 男女差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추 128)

第4條 (敎育에서의 차별금지) 公共機關 및 使用者는 敎育에 있어서 敎育機會·조건·방법등에서 男女差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5條 (財貨·施設·用役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금지) 公共機關 및 使用者는 財貨·施設·用役등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서 男女差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6條 (法과 政策의 執行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公共機關은 法令에 의하여 職務를 수행하거나 權限을 행사함에 있어서 男女差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7條 (性戲弄의 금지등) ①公共機關의 종사자, 使用者 및 勤勞者는 性戲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公共機關의 長 및 使用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性戲弄의 방지를 위하여 敎育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性戲弄은 男女差別로 본다.

第8條 (男女差別禁止의 예외) 다른 法律에 規定된 男女平等을 촉진하기 위한 暫定的 措置등은 이 法에 의한 男女差別로 보지 아니한다.

第3章 專擔機構

第9條 (男女差別改善委員會의 設置) 男女差別事項의 調査·是正勸告 기타 이 法에 의한 男女差別改善事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女性部長官소속하에 男女差別改善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全文改正 2001·1·29〕

第10條 (機能) 男女差別改善事務에 관한 委員會의 機能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男女差別事項에 대한 資料要求등 調査
2. 男女差別 여부의 決定·調停·是正勸告·告發
3. 男女差別的 法令·制度나 정책등의 개선에 대한 권고 또는 意見表明
4. 第2號 및 第3號의 사항에 관한 措置結果의 통보 요구
5. 男女差別禁止에 대한 기준 및 改善指針의 수립·보급

第10條의2 (委員會의 구성) ①委員會는 委員長과 常任委員 1人을 포함한 10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②委員長은 女性部長官이 되며,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에서 女

(추 128)

性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1. 大學이나 공인된 硏究機關에서 15年이상 女性關聯 學問을 講義하거나 硏究한 經歷이 있고 副敎授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職에 5年이상 근무한 者
2. 2級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公務員의 職에 있던 者로서 男女平等 또는 女性關聯 業務에 3年이상 근무한 者
3.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로서 15年이상 근무한 者
4. 女性關聯 分野에서 15年이상 活動한 經歷이 있고 識見과 德望이 있는 者

③女性部 소속公務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常任委員을 겸할 수 있다. 이 경우 第2項·第10條의3 및 第10條의4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委員중 2人이상은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이어야 한다.

⑤委員長은 委員會를 대표하고, 委員會의 업무를 통할한다.

⑥委員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常任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本條新設 2001·1·29〕

第10條의3 (委員의 任期) 委員(委員長을 제외한다)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1次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01·1·29〕

第10條의4 (委員의 身分保障) ①委員(委員長을 제외한다)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免職되지 아니한다.

1.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경우
2. 國會議員 또는 地方議會議員이 된 경우
3. 政黨에 加入한 경우
4. 長期間의 心身衰弱으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職務와 관련된 非違事實이 있거나 委員職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②委員(委員長을 제외한다)이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에 해당된 때에는 당연히 免職되며, 同項第4號 및 第5號에 해당된 때에는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免職된다.

〔本條新設 2001·1·29〕

(추 128)

第11條 (會議의 구분) ①委員會의 會議는 委員 全員으로 구성되는 會議(이하 "全員會議"라 한다)와 委員長 또는 常任委員 1人과 非常任委員 4人이내로 구성되는 會議(이하 "小會議"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小會議는 그 管掌事項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문별로 둔다.

第12條 (全員會議 및 小會議의 管掌事項) ①全員會議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改正 2001·1·29〉

1. 委員會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2. 男女差別禁止에 대한 기준 및 改善指針의 수립
3. 委員會에서 종전에 議決한 決定·의견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小會議에서 議決되지 아니하거나 小會議가 全員會議에서 처리하도록 決定한 사항
5.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에 대한 裁決
6. 기타 全員會議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小會議는 第1項 各號외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第13條 (會議의 議事 및 議決定足數) ①全員會議의 議事는 委員長, 常任委員의 順으로 主宰하며, 在籍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改正 2001·1·29〉

②小會議의 議事는 委員長 또는 常任委員이 主宰하며, 構成委員 全員의 출석과 出席委員 全員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14條 (委員의 記名·捺印) 委員會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議決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議決書로 하여야 하고, 議決에 참여한 委員은 그 議決書에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第15條 (委員의 除斥·忌避·回避) ①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件에 대한 審議·議決에서 除斥된다.

1. 委員 또는 그 配偶者나 配偶者였던 者가 當事者이거나 共同權利者 또는 共同義務者인 事件
2. 委員이 當事者와 家族 및 親族關係에 있거나 當事者의 法律·經營등에 대한 諮問·顧問등으로 있는 事件
3. 委員이 證言이나 鑑定을 한 事件
4. 委員이 當事者의 代理人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事件

②男女差別事項을 申請한 者와 당해 公共機關 또는 使用者는 委員에게 審議·議

(추 128)

決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忌避申請을 할 수 있다.

③委員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忌避申請에 대하여 委員會의 議決을 거치지 아니하고 決定한다. 다만, 이 決定에 대하여 當該 委員, 公共機關 또는 使用者의 異議가 있는 경우 全員會議의 議決을 거쳐 決定한다.

④委員 本人이 第1項 各號의 1의 사유 또는 第2項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事件의 審議·議決을 回避할 수 있다.

第16條 (幹事) ①男女差別改善의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幹事 1人을 둔다.

②幹事는 女性部 소속公務員중에서 委員長이 지명하는 者가 된다. 〈改正 2001·1·29〉

第17條 (公務員등의 派遣) ①委員長은 委員會의 業務遂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教育機關 또는 團體등에 대하여 公務員 또는 職員의 派遣을 요청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務員등의 派遣要請을 받은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委員會와 協議하여 그 소속公務員 또는 職員을 委員會에 派遣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에 派遣된 公務員 또는 職員은 그 所屬機關 또는 團體로부터 獨立하여 委員會의 業務를 수행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에 公務員 또는 職員을 派遣한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委員會에 派遣된 者에 대하여 人事·處遇등에 있어서 불리한 措置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8條 (專門要員) ①委員長은 委員會의 男女差別改善事務에 관한 전문적인 調査·研究業務를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委員會에 2人이내의 專門要員을 둘 수 있다.

②第1項의 專門要員은 委員長이 任命한다.

第19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委員會의 公務員이 아닌 委員 및 專門要員은 男女差別改善事務에 대하여는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20條 (委員會의 準則) 이 法에 規定된 것외에 委員會의 男女差別改善事務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委員會의 準則으로 정한다.

(추 128)

第4章 調査등의 節次

第21條 (男女差別事項의 是正申請등) ①第3條 내지 第7條의 規定에 위반한 男女差別로 被害를 입은 者(自然人에 한한다)는 委員會에 이 法에 의한 是正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男女差別事項의 是正申請은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書面 또는 口述로 하여야 한다.

1. 申請人의 이름과 住所
2. 申請의 趣旨 및 이유와 男女差別事項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第22條 (男女差別事項의 調査) ①委員會는 男女差別事項의 是正申請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에 관하여 필요한 調査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男女差別事項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年이 경과한 사항
2. 男女差別事項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다른 法令에 의하여 처리되었거나 그 처리를 위한 節次가 진행중인 사항
4. 기타 委員會가 調査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委員會는 중대한 男女差別事項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根據가 있는 때에는 職權으로 필요한 調査를 할 수 있다.

③委員會는 다른 機關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男女差別事項을 그 機關에 移送할 수 있다. 이 경우 移送의 방법·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委員會는 調査를 開始한 후에도 調査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종결할 수 있다.

⑤委員會는 접수된 男女差別事項에 관하여 第1項 但書에 의하여 調査를 하지 아니하거나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機關에 移送한 때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종결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지체없이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第1項의 調査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是正申請을 접

(추 128)

수한 날부터 90日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第23條 (調査의 방법) ①委員會는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할 수 있다.

1. 公共機關 또는 使用者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關係 資料·書類등의 제출요구
2. 申請人·利害關係人 또는 參考人의 출석 또는 意見陳述등의 요구
3. 鑑定人의 지정 및 鑑定의 의뢰

②委員會는 그 業務遂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女性部 소속職員 또는 專門要員으로 하여금 公共機關 또는 使用者에 대하여 實地調査를 하게 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申請人·利害關係人 또는 參考人의 陳述을 듣게 할 수 있다. 〈改正 2001·1·29〉

③第2項의 경우 당해 職員 또는 專門要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24條 (調査의 限界와 事實照會) ①委員會가 第23條第1項第1號·第2號,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설명을 요구하거나 關係 資料·書類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實地調査를 하고자 하는 경우 關係公共機關의 長 또는 使用者로부터 당해 資料 또는 書類등이 공개되면 國家安全保障·國防·統一·外交關係등 國家의 중대한 利益을 害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確認書가 委員會에 제출된 때에는 委員會는 그 資料나 書類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資料 또는 書類등에 대한 實地調査를 할 수 없다.

②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나 書類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資料 또는 書類등에 대한 實地調査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公共機關의 長 또는 使用者에게 照會하여 필요한 事項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第25條 (合意勸告) 委員會는 是正申請을 調査하는 過程에서 男女差別事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申請人 및 被申請人에게 合意를 권고할 수 있다.

第26條 (調停節次의 開始) ①委員會는 申請人과 被申請人 사이에 第25條의 合意勸告에 따른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是正申請을 調停에 回附할 수 있다.

②申請人과 被申請人은 第25條의 合意勸告에 따른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委員會에 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

(추 128)

③委員會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回附 또는 調停申請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調停節次를 開始하여야 한다.

④調停節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7條 (調停) 調停은 申請人과 被申請人 사이에 合意된 사항을 調停書에 기재한 후 申請人과 被申請人이 記名·捺印하고 委員會가 이를 確認함으로써 成立한다. 이 경우 當事者間에 調停書와 동일한 내용의 合意가 成立된 것으로 본다.

第28條 (是正措置의 권고 및 意見表明) ①委員會는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의 결과 男女差別事項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男女差別임을 決定하고 당해 公共機關의 長 또는 使用者에게 是正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권고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措置는 다음과 같다.

1. 男女差別行爲의 중지
2. 原狀回復·損害賠償 기타 필요한 救濟措置
3. 재발방지를 위한 敎育 및 對策樹立등을 위한 措置
4. 日刊新聞의 廣告欄을 통한 公表
5.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항

③委員會는 男女差別事項을 調査·決定하는 過程에서 法令·制度나 政策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부당한 행위 또는 이 法의 規定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公共機關의 長이나 使用者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表明할 수 있다.

第29條 (의견제출기회의 부여) 委員會는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共機關의 長 또는 使用者에게 是正措置의 권고를 하기 전에 미리 당해 公共機關의 長·使用者·申請人 또는 利害關係人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第30條 (決定의 통지) 委員會는 男女差別事項의 是正申請에 대한 決定을 申請人 및 당해 公共機關의 長 또는 使用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31條 (처리결과의 통보) ①第28條의 規定에 의한 是正措置의 권고나 改善勸告 또는 의견을 통보받은 公共機關의 長 또는 使用者는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公共機關의 長 또는 使用者는 是正措置의 권고나 改善勸告 또는 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추 128)

③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처리결과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申請人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第32條 (異議申請) ①이 法에 의한 委員會의 是正措置의 권고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委員會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에 대하여 30日이내에 裁決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裁決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日의 범위안에서 決定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第33條 (公表) 委員會는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是正措置의 권고나 改善勸告 또는 의견과 第3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처리결과의 내용을 公表할 수 있다. 다만,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公表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私生活의 秘密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4條 (告發) 委員會는 男女差別事項을 調査한 결과 그 내용이 關係法律의 刑事處罰 規定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管轄捜査機關등에 告發할 수 있다.

第35條 (訴訟支援) ①委員會는 第28條의 規定에 의하여 男女差別事項으로 決定된 사항에 대하여 女性發展基本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女性發展基金으로 訴訟을 지원할 수 있다. 〈改正 2001·1·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의 訴訟支援 要件 및 節次등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章 補 則

第36條 (國會에의 보고) ①委員會는 매년 定期國會에 前年度의 男女差別事項에 관한 是正事項 기타 활동등에 관한 年次報告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年次報告書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7條 (협조요청) 委員會는 職務遂行上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公共機關에 대하여 資料提出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公共機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37條의2 (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委員會의 權限중 경미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委員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추 128)

〔本條新設 2001·1·29〕

第38條 (罰則)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實地調査를 정당한 이유없이 방해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39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23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關係 資料·書類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關係 資料·書類등을 제출한 者
2. 第23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者
3.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實地調査를 거부 또는 기피한 者

②第23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鑑定을 의뢰받은 者가 허위의 鑑定을 한 때에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委員會가 賦課·徵收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委員會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委員會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다른 法律의 改正) 女性發展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를 削除한다.

부 칙 〈2001·1·29 法640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여성특별위원회의 결정·조정(調停)·시정권고·고발·개선권고·의견표명 기타 행위 또는 여성특별위원회에 대한 시정신청·이의신청 기타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행위 또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추 128)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소관부처 : 여성부

제정 1999·6·30 대통령령제16429호
개정 2001·1·29 대통령령제17121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단체의 범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출자총액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인 기관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제2장 남녀차별의 금지

제3조 (남녀차별금지에 대한 기준의 고시)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남녀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남녀차별금지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제4조 (성희롱 예방교육등)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연 1회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있어서의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성희롱의 피해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추 129)

제3장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운영

제5조 (상임위원) 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은 여성부 차별개선국장이 겸한다.

〔전문개정 2001·1·29〕

제6조 내지 **제11조** 삭제 〈2001·1·29〉

제12조 (위원의 기피·회피)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피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에게 그 원인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피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이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장 조사등의 절차

제13조 (남녀차별사항의 시정신청)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남녀차별사항의 시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피신청인의 주소·성명(법인등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의 내용
2. 소송의 제기 기타 법령상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의 선정이 필요한 경우 3인이내의 대표자 선정 및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5. 기타 남녀차별사항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자료

제14조 (피신청인의 경정등) 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하거나 피신청인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신청인을 경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제15조 (신청서의 보완) ①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추 129)

②제1항의 보완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구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없이는 남녀차별사항을 처리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는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16조 (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위원회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7조 (남녀차별사항의 이송) ①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남녀차별사항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송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제1항제3호의 사항중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처리를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2. 남녀차별사항외에 다른 사항이 중요사항으로 관련되어 있어서 이를 함께 고려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녀차별사항을 이송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조사완료기간의 예외) ①법 제2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사과정에서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등 특별한 추가절차가 필요한 경우
2. 신청인의 자료제출 거부등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조사가 지연되는 경우
3. 남녀차별사항의 심의과정에서 새로운 주장 또는 자료가 제출되어 이의 조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간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조사기간의 연장사유와 조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조사의 방법) ①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설명요구 또는 관계자료·서류등의 제출요구를 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제출일시 및 요구사항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공공기관 또는 사용자가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불응한 경우에는 남녀차별사항

(추 129)

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의견진술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성명, 요구의 취지, 출석일시와 장소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의 의뢰는 감정인 또는 감정기관, 감정기간, 감정의 목적 및 내용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0조 (소속직원의 실지조사등)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 소속직원 또는 전문요원이 실지조사를 하거나 신청인등의 진술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관계공공기관, 사용자, 신청인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방문의 취지·내용·일시·장소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②여성부 소속직원 또는 전문요원이 제1항의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1.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신청인등의 진술을 듣는 일
2. 관계기관 또는 신청인등이 소지하는 문서·장부 그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그밖의 상황을 확인하는 일

제21조 (조정절차) ①위원회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신청인·피신청인 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출석,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이를 수락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이를 수락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조정에 회부하거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조정의 결과를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시정조치의 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권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추 129)

1. 남녀차별사항의 내용
2. 시정조치의 권고내용
3. 처리결과의 통보기한

②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관련법령·제도나 정책등의 현황 및 문제점
2.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권고 또는 의견의 내용
3. 처리결과의 통보기한

제23조 (의견제출기회의 부여) 위원회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줄 때에는 의견제출의 일시 및 장소등에 관한 사항을 당해 공공기관의 장·사용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등)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대상 및 내용, 이의신청사유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완된 서류가 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32조제2항의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정조치의 권고의 부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분석·검토가 필요한 경우
2. 이의신청의 심의과정에서 새로운 주장 또는 자료가 제출되어 이의 조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3. 신청인·피신청인등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간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추 129)

제25조 (소송지원의 요건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재산 및 월평균소득이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소송수행을 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②위원회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된 남녀차별사항중 중대한 남녀차별사항으로서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결정에 불응한 민사사건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소후 집행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2. 기타 소송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건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지원액은 위원회가 정한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위원회는 소송지원 과정에서 사정변경등으로 인하여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송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26조 (소송지원의 절차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소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소송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7조 (연차보고서의 작성)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원회가 접수한 남녀차별사항의 현황
2.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직권조사의 실적
3. 남녀차별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합의권고·조정 및 시정조치권고의 실적
4. 중요 남녀차별적 법령·제도나 정책등의 개선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실적
5. 기타 남녀차별개선사무에 관한 위원회의 활동

제28조 (경비의 지급) 위원회의 비상임위원,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

(추 129)

견된 공무원 및 직원,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요원,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 및 감정인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제28조의2 (권한의 위임) 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제외 결정
2.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기관에의 이송
3.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종결 결정

〔본조신설 2001·1·29〕

제2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위원회는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는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지원

부 칙 〈2001·1·29 대령17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Ⅶ. 여성발전기본법

●女性發展基本法

소관부처 : 여성부

制定 1995·12·30 法律第5136號
改正 1998· 2·28 法律第5529號(政府組織法)
1999· 1·29 法律第5733號(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
1999· 2· 8 法律第5934號(男女差別禁止및救濟에관한法律)
2001· 1·29 法律第6400號(政府組織法)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憲法의 男女平等理念을 具現하기 위한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責務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男女平等을 촉진하고 女性의 발전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基本理念) 이 法은 개인의 尊嚴을 기초로 하여 男女平等의 촉진, 母性의 보호, 性差別的 意識의 解消 및 女性의 能力開發을 통하여 건강한 家庭의 具現과 國家 및 社會의 발전에 男女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責任을 分擔할 수 있도록 함을 그 基本理念으로 한다.

第3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女性政策"이라 함은 男女平等의 촉진, 女性의 社會參與擴大 및 福祉增進에 관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2. "女性團體"라 함은 男女平等의 촉진, 女性의 社會參與擴大 및 福祉增進을 주된 目的으로 設立된 法人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團體를 말한다.
3. "女性關聯施設"이라 함은 男女平等의 촉진, 女性의 社會參與擴大 및 福祉增進을 위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

第4條 (國民의 責務) 모든 國民은 男女平等의 촉진과 女性의 발전의 중요성을 認識하고 그 實現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5條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男女平等의 촉진, 女性의 社會參與擴大 및 福祉增進을 위하여 필요한 法的·制度的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財源을 調達할 責務를 진다.

(추 128)

第6條 (暫定的 優待措置)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女性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暫定的인 優待措置를 취할 수 있다.

第2章 女性政策 基本計劃등

第7條 (女性政策基本計劃의 수립) ①女性部長官은 女性政策에 관한 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5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改正 2001·1·29〉

②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女性政策의 基本方向
2. 女性政策의 推進目標
   가. 男女平等의 촉진
   나. 女性의 社會參與擴大
   다. 女性의 福祉增進
   라. 기타 女性政策에 관한 主要施策
3. 女性政策 추진과 관련한 財源의 調達方法

第8條 (年度別 施行計劃의 수립등) ①中央行政機關의 長과 特別市長·廣域市長 및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基本計劃에 의한 年度別 施行計劃(이하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女性部長官은 施行計劃을 調整하고 그 履行狀況을 點檢하여야 한다. 〈改正 2001·1·29〉

第9條 (計劃樹立 및 施行의 협조) ①女性部長官, 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市·道知事는 基本計劃과 施行計劃의 수립·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公共機關 기타 法人 또는 團體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改正 2001·1·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者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第10條 削除 〈98·2·28〉

第11條 削除 〈99·2·8〉

第12條 削除 〈99·1·29〉

(추 128)

第13條 (女性關聯問題의 調査등) ①女性部長官은 효율적인 女性政策의 수립을 위하여 輿論調査, 性別統計作成등을 통하여 女性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調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2001·1·29〉

②女性部長官은 情報體系의 構築을 통한 女性關聯 情報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改正 2001·1·29〉

第14條 (女性週間) 政府는 女性의 발전을 도모하고 汎國民的으로 男女平等의 촉진등에 대한 關心을 높이기 위하여 1年중 1週間을 女性週間으로 지정한다.

第3章 女性政策의 基本施策

第15條 (政策決定過程 및 政治參與)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각종 委員會등 政策決定過程에 女性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女性의 政治參與擴大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16條 (公職參與)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公務員의 採用·補職管理·昇進·褒賞·敎育訓練등의 合理的 운영으로 女性의 公職參與擴大를 위한 여건을 造成하여야 한다.

第17條 (雇傭平等)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關係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勤勞者의 採用·敎育訓練·昇進·退職등 雇傭全般에 걸쳐 男女平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育兒休職制 실시등 勤勞者의 家庭生活과 職場生活을 調和시킬 수 있는 制度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事業主는 性戱弄의 豫防등 職場내의 平等한 勤務環境 造成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第18條 (母性保護의 强化) ①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事業主는 女性의 姙娠·出産 및 授乳期間동안에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就業女性의 姙娠·出産 및 授乳와 관련한 母性保護費用에 대하여 社會保障基本法에 의한 社會保險 및 財政등을 통한 社會的 부담을 높여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추 128)

第19條 (家庭敎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家庭에서부터 男女平等에 관한 敎育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20條 (學校敎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校敎育에 있어서 男女平等理念을 鼓吹하고 女性의 敎育機會를 擴大하여야 한다.

第21條 (社會敎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公立硏修機關 및 社會敎育機關과 企業體의 硏修敎育課程에서 男女平等意識을 提高하는 敎育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22條 (女性福祉增進)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社會構造의 變化에 따른 女性福祉需要에 副應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關係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低所得 母子家庭, 未婚母, 家出女性 및 要保護女性의 발생을 豫防하고 이들을 善導·보호하여야 한다.

③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老人인 女性과 農漁村에 居住하는 女性의 福祉增進에 노력하여야 한다.

第23條 (嬰幼兒保育등)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關係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嬰幼兒의 보호와 건전한 敎育을 위하여 保育施設擴大 기타 필요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放課후 兒童의 보호와 건전한 生活을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24條 (平等한 家族關係 확립등)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民主的이고 平等한 家族關係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家族構造의 變化에 따라 맞벌이夫婦·偏父母家庭등에 대하여 필요한 支援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25條 (性暴力 및 家庭暴力 豫防)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關係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性暴力犯罪의 豫防과 被害者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家庭에서 일어나는 暴力問題에 대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26條 (家事勞動價値의 評價)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家事勞動에 대한 經濟的 價値를 정당하게 評價하여 이를 法制度나 施策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27條 (女性國際協力)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際機構나 國際會議에 있어서

(추 71)

의 女性의 참여를 확대하고 女性의 國際的 平和增進運動과 國際協力强化를 위한 活動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際聯合 女性差別撤廢協約등 女性關聯國際條約의 체결 또는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第28條 (大衆媒體의 性差別改善)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大衆媒體의 性差別的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大衆媒體를 통한 男女平等意識을 확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第4章 女性發展基金

第29條 (基金의 設置등) ①國家는 이 法의 目的을 實現하기 위한 사업등의 지원에 필요한 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女性發展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②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國家의 出捐金
2. 國家외의 者가 出捐하는 現金·物品 기타 財産
3. 基金의 운영으로 생기는 收益金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

③基金은 女性部長官이 관리·運用한다. 〈改正 2001·1·29〉

第30條 (基金의 用途) 基金은 다음 各號의 사업에 사용한다.

1. 女性의 權益增進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女性團體事業의 지원
3. 女性關聯施設의 設置 및 운영의 지원
4. 女性의 國際協力事業의 지원
5. 기타 男女平等實現과 女性發展등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

第31條 (基金의 會計機關) ①女性部長官은 基金의 收入과 支出에 관한 業務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公務員중에서 基金出納命令官과 基金出納公務員을 任命하여야 한다. 〈改正 2001·1·29〉

②會計關係職員等의責任에關한法律중 財務官과 歲入徵收官에 관한 規定은 基金出納命令官에게, 支出官과 出納公務員에 관한 規定은 基金出納公務員에게 準用한다.

第5章 女性團體의 지원등

第32條 (女性團體의 지원)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女性團體의 組織과 活動에 필요한 行政的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豫算의 범위안에서 그 活動등에 필요한 經費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추 128)

②개인·法人 또는 團體는 女性團體의 施設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金錢 기타 財産을 出捐할 수 있다.

第33條 (女性關聯施設의 設置·운영)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女性의 權益 및 福祉增進을 위한 女性과 관련된 施設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女性의 權益 및 福祉增進을 위한 女性과 관련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新設 2001·1·29〉

第34條 (女性自願奉仕活動의 지원)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女性의 自願奉仕活動의 活性化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第6章 補 則

第35條 (權限의 위임·委託) 女性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에 위임하거나 그 事務의 일부를 女性團體 또는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한국여성개발원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9·1·29, 2001·1·29〉

第36條 削除 〈2001·1·29〉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다른 法律의 改正) 基金管理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에 第119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19. 女性發展基本法

③(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女性政策審議委員會規程에 의한 女性政策審議委員會는 이 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女性政策審議委員會로 본다.

附 則 〈98·2·28 法55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附 則 〈99·1·29 法573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1條** 省略

附 則 〈99·2·8 法5934〉

①(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省略

부 칙 〈2001·1·29 法640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추 128)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소관부처 : 여성부

제정 1996·6·29 대통령령제15099호
개정 1998·2·28 대통령령제15693호(여성특별위원회규정)
1999·6·30 대통령령제16429호(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2001·1·29 대통령령제17116호(여성부직제)
2001·4·21 대통령령제17200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성정책의 범위등) ①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정책을 말한다.

1. 교육에서의 남녀평등 및 남녀차별의식의 개선에 관한 정책
2.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확대에 관한 정책
3. 고용상의 남녀차별해소에 관한 정책
4. 여성고용촉진 및 안정에 관한 정책
5. 여성보건 및 모성보호에 관한 정책
6. 보육시설에 관한 정책
7. 저소득 모자가정의 여성, 미혼모, 가출여성등 요보호여성 및 노인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8. 농어촌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9.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에 관한 정책
10. 가사노동가치의 평가등에 관한 정책
11. 여성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정책
12. 기타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정책

②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98·2·28, 2001·1·29〉

1.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2. 기타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

(추 132)

체

③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2.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제3조 (잠정적 우대조치의 도입) 여성부장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잠정적 우대조치의 도입을 위하여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2001·1·29〉

제2장 여성정책기본계획등

제4조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개정 98·2·28, 2001·1·29〉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의 소관 여성관련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각각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여성부장관은 이 시행계획안을 총괄·조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개정 98·2·28, 2001·1·29〉

②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다음 연도의 소관 여성관련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중순까지 시·도지사에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여성부장관에게 각각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여성부장관은 그 시행결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2001·1·29〉

제6조 (협조부서의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당해 기관에 여성정책 관련 협조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추 130)

제7조 내지 **제16조** 삭제 〈98·2·28〉

제17조 내지 **제24조** 삭제 〈2001·1·29〉

제25조 (여성관련 문제의 조사 및 보고) 여성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2001·1·29〉

제26조 (여성주간 행사)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여성주간으로 한다.

②제1항의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등에서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등을 통한 홍보
5. 기타 남녀평등의 촉진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제27조 (여성위원참여 확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연도별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 (대중매체의 성차별개선 지원 및 협조요청) 여성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에 의한 성차별적 내용에 관하여는 방송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개선되도록 방송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8·2·28, 2001·1·29, 2001·4·21〉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29조 (기타 수입금)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98·2·28, 2001·1·29〉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3. 기타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추 132)

제30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여성부장관은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한다. 〈개정 98·2·28, 2001·1·29〉

1.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 및 융자
2. 금융기관에의 예치
3. 기타 기금조성을 위하여 여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의 투자 및 융자

②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③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여성발전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 삭제 〈2001·4·21〉

제32조 (기금의 용도) 법 제3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98·2·28, 99·6·30, 2001·1·29〉

1. 여성의 능력개발
2. 여성의 사회교육 및 여성지도자 양성
3. 여성의 자원활동
4.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잠정적 우대조치 및 여성관련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홍보
5. 유공자 포상 및 격려
6.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지원
7. 기타 여성부장관이 여성발전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3조 (기금의 회계기관) 여성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2001·1·29〉

제5장 여성단체의 지원등

제34조 (여성단체의 지원 및 보조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단체에 지원 및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및 보조
2. 여성권익사업에 관한 지원 및 사업비 보조

(추 132)

3. 여성단체의 활동목적에 맞는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시설·설비등의 지원 및 행사비 보조
4.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지원 및 보조

제34조의2 (여성관련시설의 지원) 여성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2.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3. 고충상담
4. 그밖의 후생복지 및 문화활동의 지원

〔본조신설 2001·4·21〕

제35조 (여성자원활동센터의 설치·운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여성자원활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지역별·센터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센터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센터의 운영현황 및 운영계획을 여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2001·1·29〉

③삭제 〈98·2·28〉

제6장 보 칙

제36조 (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여성의 권익과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 및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여성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전문개정 98·2·28〕

제37조 (권한의 위임) 여성부장관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비보조에 관한 업무중 당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경비교부 및 그 교부에 따른 당해 사업의 관리업무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01·4·21〕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추 132)

②(다른 법령의 폐지) 여성정책심의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여성정책심의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부 칙 〈98·2·28 대령1569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9·6·30 대령16429〉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 〈2001·1·29 대령171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2001·4·21 대령1720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Ⅷ.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

소관부처 : 법무부

制定 1994·1·5 法律第4702號
改正 1995·1·5 法律第4933號(保護觀察등에관한法律)
1997·8·22 法律第5343號
1997·8·22 法律第5358號(社會福祉事業法)
1997·12·13 法律第5453號(行政節次法의施行에따른公認會計士法등의整備에관한法律)
1997·12·13 法律第5454號(政府部處名稱등의변경에따른建築法등의整備에관한法律)
1998·12·28 法律第5593號
2001·1·29 法律第6400號(政府組織法)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性暴力犯罪를 예방하고 그 被害者를 보호하며, 性暴力犯罪의 處罰 및 그 節次에 관한 特例를 規定함으로써 國民의 人權伸張과 건강한 社會秩序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①이 法에서 "性暴力犯罪"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罪를 말한다. 〈改正 97·8·22 法5343, 98·12·28〉

1. 刑法 第22章 性風俗에 관한 罪중 第242條(淫行媒介)·第243條(淫書等의 頒布等)·第244條(淫書等의 製造等) 및 第245條(公然淫亂)의 罪
2. 刑法 第31章 略取와 誘引의 罪중 醜行 또는 姦淫을 目的으로 하거나 醜業에 사용할 目的으로 범한 第288條(營利等을 爲한 略取, 誘引, 賣買等)·第292條(略取, 誘引, 賣買된 者를 授受 또는 隱匿. 다만, 第288條의 略取·誘引이나 賣買된 者를 授受 또는 隱匿한 罪에 한한다)·第293條(常習犯. 다만, 第288條의 略取·誘引이나 賣買된 者 또는 移送된 者를 授受 또는 隱匿한 罪의 常習犯에 한한다)·第294條(未遂犯. 다만, 第288條의 未遂犯 및 第292條의 未遂犯중 第288條의 略取·誘引이나 賣買된 者를 授受 또는 隱匿한 罪의 未遂犯과 第293條의 常習犯의 未遂犯중 第288條의 略取·誘引이나 賣買된 者를 授受 또는 隱匿한 罪의 常習犯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
3. 刑法 第32章 强姦과 醜行의 罪중 第297條(强姦)·第298條(强制醜行)·第299條(準强姦, 準强制醜行)·第300條(未遂犯)·第301條(强姦등 傷害·致傷)·第301條의2(强姦등 殺人·致死)·第302條(未成年者等에 對한 姦淫)·第303條(業務上威力等에 依한 姦淫) 및 第305條(未成年者에 대한 姦淫, 醜行)의 罪
4. 刑法 第339條(强盜强姦)의 罪
5. 이 法 第5條(特殊强盜强姦등) 내지 第14條의2(카메라등利用撮影)의 罪

②第1項 各號의 犯罪로서 다른 法律에 의하여 加重處罰되는 罪는 性暴力犯罪로 본다.

第3條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義務)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性暴力犯罪를 예방하고 그 被害者를 보호하며 有害環境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法的·制度

(추 128)

的 裝置를 마련하고 필요한 財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青少年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青少年에 대한 性敎育 및 性暴力豫防에 필요한 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青少年에 대한 性敎育 및 性暴力豫防에 필요한 敎育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7·8·22 法5343〉

第4條 (被害者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性暴力犯罪의 被害者를 고용하고 있는 者는 누구든지 性暴力犯罪와 관련하여 被害者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第2章 性暴力犯罪의 處罰 및 節次에 관한 特例

第5條 (特殊强盜强姦등) ①刑法 第319條第1項(住居侵入), 第330條(夜間住居侵入竊盜), 第331條(特殊竊盜) 또는 第342條(未遂犯. 다만, 第330條 및 第331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를 범한 者가 同法 第297條(强姦) 내지 第299條(準强姦, 準强制醜行)의 罪를 범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97·8·22 法5343〉

②刑法 第334條(特殊强盜) 또는 第342條(未遂犯. 다만, 第334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를 범한 者가 同法 第297條(强姦) 내지 第299條(準强姦, 準强制醜行)의 罪를 범한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97·8·22 法5343〉

第6條 (特殊强姦등) ①凶器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人이상이 合同하여 刑法 第297條(强姦)의 罪를 범한 者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②第1項의 방법으로 刑法 第298條(强制醜行)의 罪를 범한 者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③第1項의 방법으로 刑法 第299條(準强姦, 準强制醜行)의 罪를 범한 者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예에 의한다. 〈改正 97·8·22 法5343〉

④第1項의 방법으로 身體障碍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女子를 姦淫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醜行한 者도 第1項 또는 第2項의 예에 의한다.

第7條 (親族關係에 의한 强姦등) ①親族關係에 있는 者가 刑法 第297條(强姦)의 罪를 범한 때에는 5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改正 97·8·22 法5343〉

②親族關係에 있는 者가 刑法 第298條(强制醜行)의 罪를 범한 때에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改正 97·8·22 法5343〉

③親族關係에 있는 者가 刑法 第299條(準强姦, 準强制醜行)의 罪를 범한 때에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예에 의한다. 〈改正 97·8·22 法5343〉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親族의 범위는 4寸이내의 血族과 2寸이내의 姻戚으로 한다. 〈改正 97·8·22 法5343〉

⑤第1項 내지 第3項의 親族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親族을 포함한다. 〈新設

(추 89)

97·8·22 法5343〉

第8條 (障碍人에 대한 姦淫등) 身體障碍 또는 精神上의 障碍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女子를 姦淫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醜行한 者는 刑法 第297條(强姦) 또는 第298條(强制醜行)에 정한 刑으로 處罰한다. 〈改正 97·8·22 法5343〉

第8條의2 (13歲미만의 未成年者에 대한 强姦, 强制醜行등) ①13歲미만의 女子에 대하여 刑法 第297條(强姦)의 罪를 범한 者는 5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13歲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刑法 第298條(强制醜行)의 罪를 범한 者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 또는 500萬원이상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13歲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刑法 第299條(準强姦, 準强制醜行)의 罪를 범한 者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예에 의한다.

④僞計 또는 威力으로써 13歲미만의 女子를 姦淫하거나 13歲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醜行을 한 者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예에 의한다.

〔本條新設 97·8·22 法5343〕

第9條 (强姦등 傷害·致傷) ①第5條第1項, 第6條 또는 第12條(第5條第1項 또는 第6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를 범한 者가 사람을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7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97·8·22 法5343〉

②第7條, 第8條 또는 第12條(第7條 또는 第8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를 범한 者가 사람을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97·8·22 法5343〉

第10條 (强姦등 殺人·致死) ①第5條 내지 第8條, 第12條(第5條 내지 第8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 또는 刑法 第297條(强姦) 내지 第300條(未遂犯)의 罪를 범한 者가 사람을 殺害한 때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改正 97·8·22 法5343〉

②第6條 내지 第8條, 第12條(第6條 내지 第8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를 범한 者가 사람을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97·8·22 法5343〉

③削除 〈97·8·22 法5343〉

第11條 (業務상 威力등에 의한 醜行) ①業務·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僞計 또는 威力으로써 醜行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法律에 의하여 拘禁된 사람을 監護하는 者가 그 사람을 醜行한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2條 (未遂犯) 第5條 내지 第10條 및 第14條의2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改正 97·8·22 法5343, 98·12·28〉

第13條 (公衆密集場所에서의 醜行)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公衆이 밀

(추 103)

집하는 場所에서 사람을 醜行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4條 (通信媒體利用淫亂)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性的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目的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性的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圖畵, 映像 또는 물건을 相對方에게 도달하게 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4條의2 (카메라등利用撮影)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機械裝置를 利用하여 性的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他人의 身體를 그 意思에 反하여 撮影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本條新設 98·12·28〕

第15條 (告訴) 第11條·第13條 및 第14條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7·8·22 法5343〉

第16條 (保護觀察등) ①法院이 性暴力犯罪를 범한 者에 대하여 刑의 宣告를 猶豫할 경우에는 1年동안 保護觀察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性暴力犯罪를 범한 者가 少年인 경우에는 반드시 保護觀察을 명하여야 한다.

②法院이 性暴力犯罪를 범한 者에 대하여 刑의 執行을 猶豫할 경우에는 그 執行猶豫期間내에서 일정기간동안 保護觀察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社會奉仕 또는 受講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2이상 併科할 수 있다. 다만, 性暴力犯罪를 범한 者가 少年인 경우에는 반드시 保護觀察·社會奉仕 또는 受講을 명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法5343〉

③性暴力犯罪를 범한 者로서 刑의 執行중에 假釋放된 者는 假釋放期間동안 保護觀察을 받는다. 다만, 假釋放을 許可한 行政官廳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保護觀察·社會奉仕 및 受講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保護觀察등에관한法律을 準用한다. 〈改正 95·1·5, 97·8·22 法5343〉

第17條 (保護監護) 第5條 내지 第10條 및 第12條의 罪는 社會保護法 第5條(保護監護)의 別表에 規定된 罪로 본다. 〈改正 97·8·22 法5343〉

第18條 (告訴制限에 대한 예외) 性暴力犯罪에 대하여는 刑事訴訟法 第224條(告訴의 제한)의 規定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을 告訴할 수 있다.

第19條 (告訴期間) ①性暴力犯罪중 親告罪에 대하여는 刑事訴訟法 第230條(告訴期間)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犯人을 알게 된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告訴하지 못한다. 다만, 告訴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起算한다.

②刑事訴訟法 第230條(告訴期間)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20條 (特定强力犯罪의處罰에관한特例法의 準用) ①性暴力犯罪에 대한 處罰節次에는 特定强力犯罪의處罰에관한特例法 第7條(證人에 대한 身邊安全措置)·第8條(出版物등으로부터의 被害者保護)·第9條(訴訟進行의 協議)·第12條(簡易公判節次의 決定) 및 第13條(判決宣告)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第5條·第6條·第9條·第10條 및 第12條(第5條·第6條·第9條 및 第10

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는 特定强力犯罪의處罰에관한特例法 第2條(適用範圍)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定强力犯罪로 본다.

第21條 (被害者의 身元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①性暴力犯罪의 搜査 또는 裁判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公務員은 被害者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被害者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人的事項과 사진등을 公開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第1項에 規定된 者는 性暴力犯罪의 訴追에 필요한 犯罪構成事實을 제외한 被害者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公開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2條 (審理의 非公開) ①性暴力犯罪에 대한 審理는 그 被害者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決定으로 이를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證人으로 召喚받은 性暴力犯罪의 被害者와 그 家族은 사생활보호등의 사유로 證人訊問의 非公開를 신청할 수 있다.

③裁判長은 第2項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許可與否 및 公開, 法廷외의 場所에서의 訊問등 證人의 訊問方式 및 場所에 관하여 決定할 수 있다.

④法院組織法 第57條(裁判의 公開)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3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22條의2 (信賴關係에 있는 者등의 同席) ①法院은 第5條 내지 第9條와 第11條 및 第12條(第10條의 未遂犯을 제외한다)의 犯罪의 被害者를 證人으로 訊問하는 경우에는 檢事 또는 被害者의 申請에 의하여 被害者와 信賴關係에 있는 者를 同席하게 할 수 있다.

②搜査機關이 第1項의 被害者를 調査하는 경우에는 被害者의 申請에 의하여 被害者가 지정하는 者를 同席하게 할 수 있다.

〔本條新設 97·8·22 法5343〕

第22條의3 (申告義務) 18歲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敎育 또는 治療하는 施設의 責任者 및 關聯從事者는 자기의 보호 또는 監督을 받는 사람이 第5條 내지 第10條, 刑法 第301條(强姦등 傷害·致傷) 및 第301條의2(强姦등 殺人·致死)의 犯罪의 被害者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搜査機關에 申告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7·8·22 法5343〕

第22條의4 (證據保全의 特例) ①被害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은 被害者가 公判期日에 출석하여 證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疏明하여 당해 性暴力犯罪를 搜査하는 檢事에 대하여 刑事訴訟法 第184條(證據保全의請求와그節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據保全의 請求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第1項의 요청을 받은 檢事는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證據保全의 請求를 할 수 있다.

〔本條新設 97·8·22 法5343〕

第3章 性暴力被害相談所등

第23條 (相談所의 설치)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性暴力被害相談所(이하 "相談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외의 者가 相談所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法5343, 97·12·13 法5454〉

③相談所의 設置基準과 申告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女性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8·22 法5343, 2001·1·29〉

第24條 (相談所의 業務) 相談所의 業務는 다음과 같다.

1. 性暴力被害를 申告받거나 이에 관한 相談에 응하는 일
2. 性暴力被害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病院 또는 性暴力被害者保護施設로 데려다 주는 일
3. 加害者에 대한 告訴와 被害賠償請求등 司法處理節次에 관하여 大韓辯護士協會·大韓法律救助公團등 關係機關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
4. 性暴力犯罪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
5. 기타 性暴力犯罪 및 性暴力被害에 관하여 調査·研究하는 일

第25條 (保護施設의 설치)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性暴力被害者保護施設(이하 "保護施設"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社會福祉法人 기타 非營利法人은 市·道知事에게 申告하고 保護施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改正 97·8·22 法5358〉

③保護施設의 設置基準과 申告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女性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8·22 法5343·法5358, 2001·1·29〉

第26條 (保護施設의 業務) 保護施設의 業務는 다음과 같다.

1. 第24條 各號의 일
2. 性暴力被害者를 一時保護하는 일
3. 性暴力被害者의 신체적·정신적 安定回復과 사회복귀를 도우는 일
4. 기타 性暴力被害者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第27條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休止 또는 廢止) 第23條第2項 또는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설치한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을 休止 또는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 女性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

(추 128)

正 97·8·22 法5343, 2001·1·29〉

第28條 (監督) ①女性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長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調査하게 하거나 帳簿 기타 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8·22 法5343, 2001·1·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公務員이 그 職務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29條 (施設의 閉鎖등) 市·道知事는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業務의 정지 또는 廢止를 명하거나 施設을 閉鎖할 수 있다. 〈改正 97·8·22 法5343·法5358〉

1. 第23條第3項 또는 第2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또는 調査·檢査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第29條의2 (청문) 市·道知事는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의 廢止를 명하거나 施設을 閉鎖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7·12·13 法5453〕

第30條 (經費의 보조)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23條第2項 또는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설치한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經費를 보조할 수 있다.

第31條 (秘密嚴守의 義務)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長이나 이를 보조하는 者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職務상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2條 (유사명칭사용금지) 이 法에 의한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이 아니면 性暴力被害相談所·性暴力被害者保護施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第33條 (醫療保護) ①女性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國·公立病院·保健所 또는 民間醫療施設을 性暴力被害者의 治療를 위한 專擔醫療機關으로 지정할 수 있다. 〈改正 97·8·22 法5343, 2001·1·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專擔醫療機關은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長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醫療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性暴力被害者의 保健相談 및 指導
2. 性暴力被害의 治療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治療

第34條 (權限의 위임) 女性部長官과 市·道知事는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추 128)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7·8·22 法5343, 2001·1·29〉

第4章 罰 則

第35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7·8·22 法5343·法5358〉

1. 營利를 目的으로 이 法에 의한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을 설치·운영한 者
2. 第21條 또는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秘密嚴守義務를 위반한 者
3.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의 閉鎖, 業務의 休止 또는 廢止命令을 받고도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을 계속 운영한 者

第36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者 또는 調査·檢査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者
2.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유사명칭사용금지를 위반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女性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賦課·徵收한다. 〈改正 97·8·22 法5343, 2001·1·29〉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女性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7·8·22 法5343, 2001·1·29〉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女性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7·8·22 法5343, 2001·1·29〉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37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14條의2 또는 第35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改正 97·8·22 法5343, 98·12·28〉

附 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추 128)

第2條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행하여진 第2條의 罪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②1個의 행위가 이 法 施行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때에는 이 法 施行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이 法 第20條 및 第22條의 規定은 이 法 施行전에 公訴가 제기된 事件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의6 및 第5條의7을 削除한다.

附 則 〈95·1·5 法493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4條** 省略

附 則 〈97·8·22 法534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97·8·22 法535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附 則 〈97·12·13 法545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草地法등의 改正에 따른 經過措置) ①내지 ③省略

④이 法 施行日부터 1998年 6月 30日까지는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 第29條의2의 改正規定중 "施設을 閉鎖"를 "許可를 取消"로 본다.

⑤내지 ⑧省略

附 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 則 〈98·12·28 法5593〉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 칙 〈2001·1·29 法640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추 12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소관부처 : 여성부

제정 1994·7·20 대통령령제14332호
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6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9·4·24 대통령령제16262호(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령)
1999·10·20 대통령령제16581호
2001·1·29 대통령령제17116호(여성부직제)

제1조 (목적) 이 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교육계획의 수립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의 대상
2.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3. 기타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 및 단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0·20〕

제2조 (경비보조의 부담)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2항 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조 (기타 치료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병감염여부의 검사 및 감염성병의 치료
2. 임신여부의 검사
3. 성폭력피해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추 130)

제4조 (권한의 위임)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7·12·31, 99·4·24, 99·10·20〉

1.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의 설치신고의 접수
2.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의 설치신고
3.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

3의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대한 감독

4.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폐쇄등

4의2. 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

5.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6.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5조 (과태료의 부과) ①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부과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2001·1·29〉

②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4·12·23, 2001·1·29〉

③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2001·1·29〉

④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는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2001·1·29〉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12·23 대령1444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97·12·31 대령15598〉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4·24 대령16262〉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추 130)

부 칙 〈99 · 10 · 20 대령165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 1 · 29 대령17116〉

제 1 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내지 **제 5 조** 생략

(추 13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1994·8·25 보건사회부령제941호
개정 1999·4·6 보건복지부령제104호
2001·1·31 여 성 부 령제 1호(여성부직제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담소의 설치신고)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담소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4. 상담소설치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5.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7. 상담소의 평면도 1부
8. 상담소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각 1부

②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담소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소설치신고를 마친 자가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장의 변경의결서(개인의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말한다) 1부
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추 130)

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소재지의 변경에 한한다) 1부

4. 상담소신고필증

제3조 (상담소의 설치기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보호시설의 설치신고)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보호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6〉

1. 정관 1부

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보호시설의 설치의결서 1부

5.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7. 보호시설의 평면도 1부

8. 보호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각 1부

②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보호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4·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시설의 장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각각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6〉

1.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시설의 장의 변경에 한한다) 1부

2. 입소정원의 변경의결서(입소정원의 변경에 한한다) 1부

3. 입소자조치계획서(입소정원의 변경에 한한다) 1부

4.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

(추 110)

며 보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정원의 변경에 한한다) 1부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에 한한다) 각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보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정원의 변경에 한한다) 각 1부
7. 보호시설설치신고필증

제5조 (보호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휴지·폐지 신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휴지 또는 폐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6〉

1.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입소자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1부
3.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4.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제7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 삭제 〈99·4·6〉

제9조 (보호시설의 입소대상) ①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은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미성년자로서 보호자의 입소동의가 있는 경우
3. 기타 근친상간 피해자,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등으로서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상담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받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호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입소조치하되,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9·4·6〉

제10조 (퇴소)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소

(추 110)

시켜야 한다.

1.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자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이 만료된 자
3. 퇴소를 희망하는 자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자

제11조 (상담 및 보호) ①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장은 상담요구자와 입소자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상담계획을 수립·실시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상담기록표에 상담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자의 심신의 안정과 신변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보호의 기간) 법 제2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입소한 자의 보호기간은 6월이내로 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3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9·4·6〉

제13조 (의료기관 지정의 공고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이하 "전담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전담의료기관지정서를 지정된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4·6〉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전담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대표자의 성명 및 진료과목을 공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공고일부터 30일이내에 지정현황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여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6, 2001·1·31〉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99·4·6〉

(추 130)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부녀상담소와 여성회관의 상담실은 이 법에 의한 상담소로 본다.

③(상담원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한국여성개발원과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의 회원단체에서 실시한 성폭력상담교육을 이수한 자는 별표 1의 상담원의 자격기준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99·4·6 보건복지부령10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 및 별표 2 제5호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1·1·31 여성부령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추 130)

〔별표 1〕〈개정 2001·1·31〉

상담소 설치기준(제3조관련)

1. 상담소에는 구획된 개별상담실과 전화상담실을 두어야 한다.
2. 상담실은 사생활의 비밀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말소리가 새어 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삭제 〈99·4·6〉
4. 시설종사자
   가. 상담소장 1인
   나. 상담원 2인이상
5. 시설종사자의 자격
   상담소장 및 상담원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학(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회복지법인·법률구조법인등 비영리법인이 개설·운영하는 상담원 교육기관에서 별지에 의한 상담원 교육을 수료한 자로 한다. 다만, 대학에서 상담원 교육과목의 일부를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가.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상담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마. 보건의료·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바.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사. 종교단체가 인정하는 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여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별 지〕

상담원 교육내용

구 분	교 육 과 목	이 수 시 간
계		64
소양분야	여성학 사회복지개론	6
전문분야	성폭력에 관한 여성학적 시각 상담원리와 기법 상담과정 상담의 이론 상담유형별 유의사항	40

(추 130)

	의학적 대응방안(산부인과) 법적절차 및 대응방식 상담사례 연구를 통한 상담실습 상담실습(상담전화 받는 역할극) 상담원의 자세 및 역할, 수칙	
기 타	분임토의 및 발표 실무사례발표 및 토의실습	18

비 고 : 1. 교육기간은 2주로 한다.

2. 교육기관의 장은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교육훈련 과목별 이수시간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99·4·6〉

보호시설의 설치기준(제5조관련)

1. 보호시설의 규모 : 1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보호시설의 연면적 : 9.9제곱미터에 입소정원을 곱한 면적이어야 한다.
3. 구조 및 설비
   가. 거실 면적은 입소정원당 3.3제곱미터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적당한 난방 및 통풍시설을 하고, 상당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에 용이하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면하게 하여야 한다.
   라.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상담실을 갖추어야 한다.
   바. 조리실은 채광 및 환기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목욕·샤워 및 세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아. 수세식 변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급·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시설종사자
   가. 시설의 장 1인
   나. 상담원 2인이상
5. 시설종사자의 자격 : 별표 1 제5호의 시설종사자의 자격과 동일함

(추 110)

〔별표 3〕〈개정 99·4·6〉

행정처분기준(제7조관련)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 정 처 분		
		1 차	2 차	3 차
1.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29조제1호	경 고	업무정지 1월	상담소폐쇄
2.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29조제1호	경 고	경 고	보호시설 폐 쇄
3.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또는 장부등의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법 제29조제2호	경 고	경 고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폐 쇄

비 고 :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폐쇄는 업무정지 1월로, 업무정지는 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제14조관련)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과 태 료
1.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28조제1항 법 제36조제1항	200만원
2. 정당한 사유없이 허위보고한 자	법 제28조제1항 법 제36조제1항	300만원
3.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자	법 제28조제1항 법 제36조제1항	300만원
4. 유사명칭 사용자	법 제32조 법 제36조제2항	200만원

(추 110)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성폭력상담소설치신고서 ※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합니다.				처리기간 10 일
신고인	법인명		대표자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개요	명칭			
	소재지			
	상담소장성명		주민등록번호	
	설치연월일			
시설설비				
직원	총 명 (소장 1명 상담원 명)			
예산	수입총액 원		지출총액 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없 음
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4. 상담소설치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5.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7. 상담소의 평면도 1부	
8. 상담소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각 1부	

31319-00311민 210㎜×297㎜
94.6.2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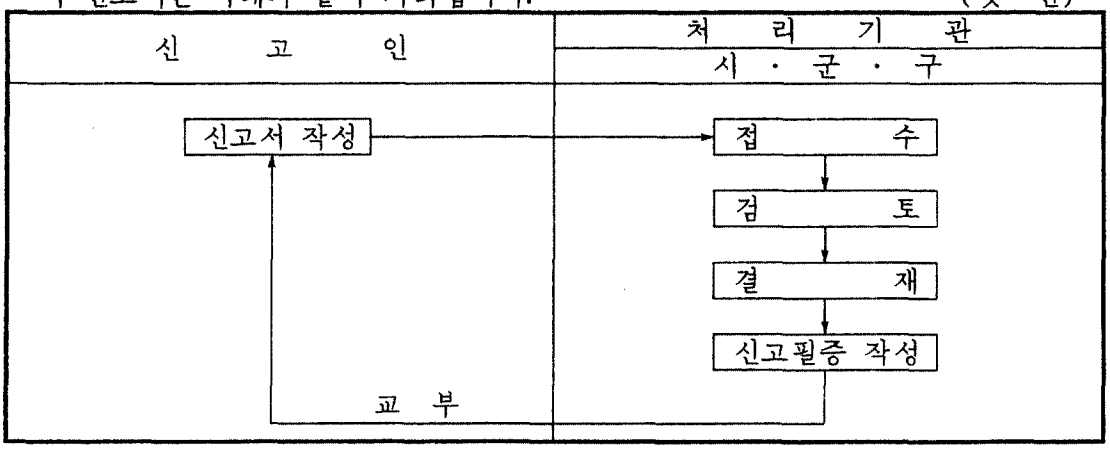

(추 52)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제 호

성폭력상담소설치신고필증

상담소명

소 재 지

소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성폭력상담소 설치신고를 마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31319-00511일
94.6.2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뒷 면)

변 경 사 항		
일 자	내 용	기록자㊞

(추 52)

〔별지 제3호서식〕 (앞 면)

성폭력상담소(소재지·명칭·상담소장)변경신고서 ※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합니다.				처리기간 5 일
신청인	법 인 명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시 설 명				
소 장 성 명		변경연월일		
변경사항	구 분	소 재 지	상담소명칭	상 담 소 장
	현 재			
	변 경 후			
재산활용계획				
사 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장의 변경의결서(개인의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말한다) 1부
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소재지의 변경에 한한다) 각 1부
4. 상담소신고필증

31319-00811민
94.6.2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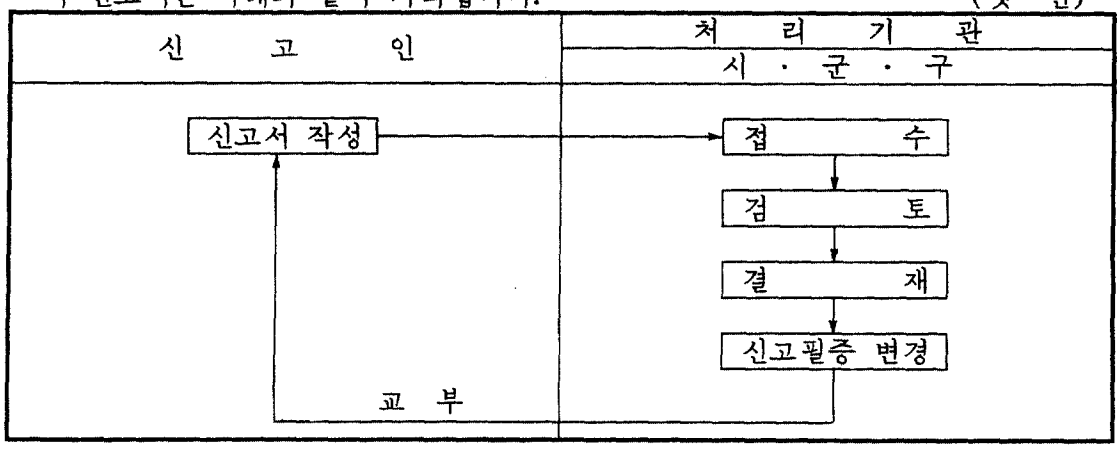

(추 52)

〔별지 제4호서식〕〈개정 99·4·6〉 (앞 면)

성폭력보호시설설치신고서					처리기간 10 일
신고인	법 인 명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시설개요	명 칭		사 업 명		
	소 재 지				
	시설장성명		주민등록번호		
	설치연월일		입 소 정 원		명
시설설비					
직원	총 명	시설장 1명	상담원 명		
예산	수 입 총 액	원	지 출 총 액	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설치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정관 1부	없 음
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보호시설의 설치의결서 1부	
5.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7. 보호시설의 평면도 1부	
8. 보호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각 1부	

31319-00411민
94.6.2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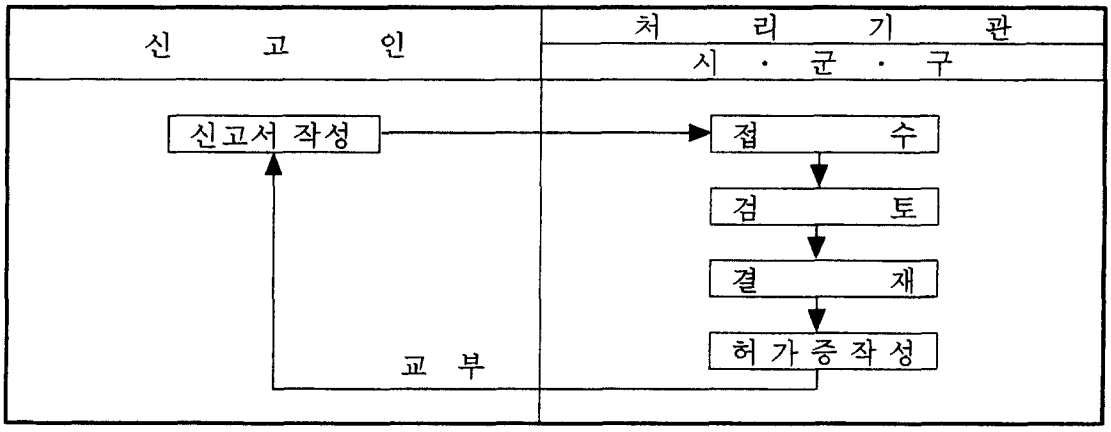

(추 110)

〔별지 제5호서식〕〈개정 99·4·6〉 (앞 면)

제 호

성폭력보호시설설치신고필증

시 설 명
소 재 지
입 소 정 원 명
경 영 법 인 명
시 설 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성폭력보호시설의 설치신고를 마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31319-00611일
94.6.2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뒷 면)

변 경 사 항		
일 자	내 용	기록자㊞

(추 110)

〔별지 제 6 호서식〕〈개정 99·4·6〉 (앞 면)

성폭력보호시설(소재지·명칭·시설의 장)변경신고서 ※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합니다.				처리기간 5 일
신고인	법 인 명		대 표 자 성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시 설 명				
시 설 장 성 명		변 경 연 월 일		
변경사항	구 분	소 재 지	보호시설명칭	시설의 장
	현 재			
	변 경 후			
재 산 활 용 계 획				
사 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 2 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1부	없 음
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소재지의 변경에 한한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소재지의 변경에 한한다) 각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5. 보호시설설치신고필증	

31319-00811민
94.6.2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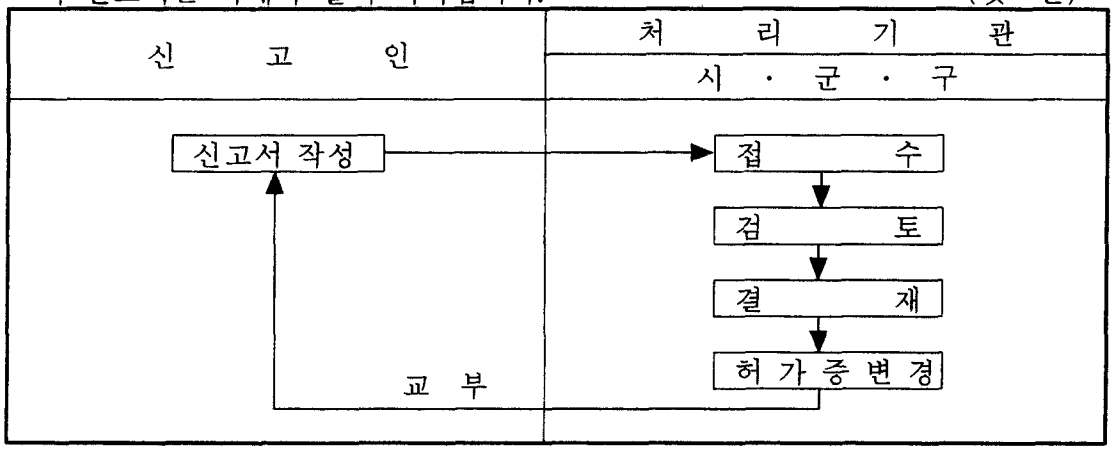

(추 110)

〔별지 제 7 호서식〕〈개정 99·4·6〉 (앞 면)

성폭력보호시설입소정원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 일
신고인	법 인 명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시 설 명 칭			사 업 종 별	
변경사항	현입소정원	명		
	현입소인원	명		
	요청입소정원	명		
변 경 사 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5조제 2 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입소정원의 변경의결서 1부	없 음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1부	
3.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6. 보호시설설치신고필증	

31319-00911민
94. 6. 2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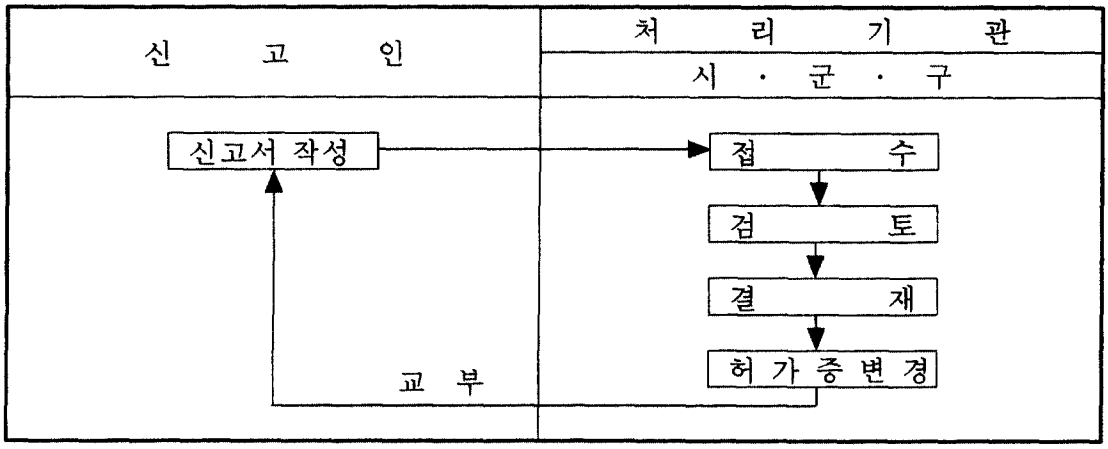

(추 110)

〔별지 제8호서식〕〈개정 99·4·6〉 (앞 면)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 폐지(휴지) 신고서 ※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합니다.					처리기간 6 일
신고인	법 인 명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시설의 명칭			사업종별		
소 재 지			시설장명		
폐지연월일			휴지기간	부터 까지	
입소자의 조치계획	귀 가	명	취 업	명	
	전 원	명	퇴 소	명	
	위 락	명	기 타	명	
재산활용계획					
사 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폐지 또는 사업휴지의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1부 3.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4.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없 음

31319-00711민
94.6.2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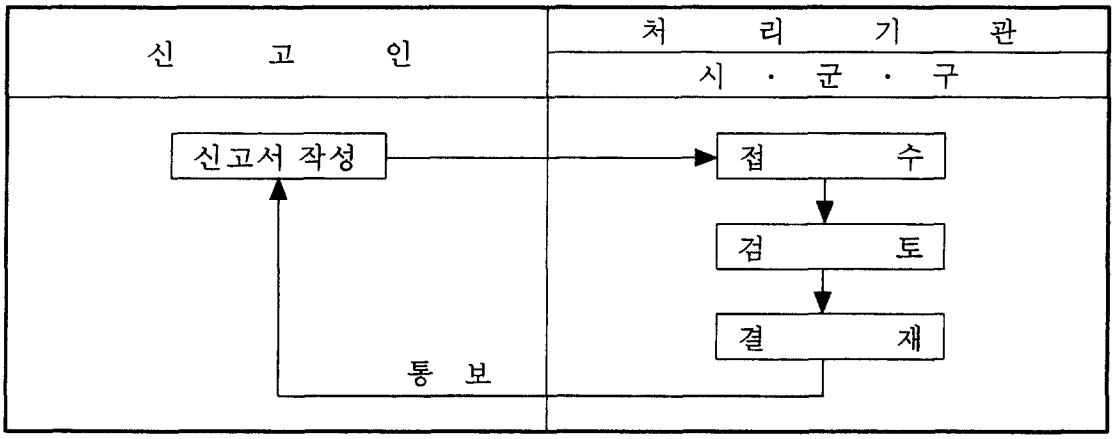

(추 110)

〔별지 제9호서식〕

개인상담기록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학 력		직 업	
성장배경			
상담내용(일시, 상담원, 상담내용, 상담원 의견, 조치결과를 기록함)			

31319-01111일
94.6.2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0호서식〕

제 호

전담의료기관지정서

기 관 명
소 재 지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의 기관을 성폭력피해자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31319-01211일
94.6.2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추 52)

〔별지 제11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 . .

문서번호

수 신 발 신 ㊞

참 조

제 목 성폭력피해자 전담 의료기관 지정보고

지정연월일	의료기관명칭	주 소	대표자성명	진료과목

31319-00111보
94.5.4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99·4·6〉

(추 110)

IX. 장애인복지법

●障碍人福祉法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全文改正 1999·2·8 法律第5931號
改正 2001·1·29 法律第6400號(政府組織法)
2001·4·7 法律第6460號(담배事業法)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障碍人의 인간다운 삶과 權利보장을 위한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障碍發生의 예방과 障碍人의 의료, 敎育,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障碍人福祉對策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障碍人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障碍人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障碍人의 福祉增進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 (障碍人의 定義) ①障碍人은 신체적·정신적 障碍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者를 말한다.

②이 法의 적용을 받는 障碍人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障碍人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障碍를 가진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障碍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1. 신체적 障碍라 함은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障碍, 내부기관의 障碍등을 말한다.
2. 정신적 障碍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障碍를 말한다.

第3條 (基本理念) 障碍人福祉의 基本理念은 障碍人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社會統合을 이루는데 있다.

第4條 (障碍人의 權利) ①障碍人은 인간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②障碍人은 國家·社會의 구성원으로서 政治·經濟·社會·文化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權利가 있다.

第5條 (障碍人 및 家族의 義務) ①障碍人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社會·經濟活動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障碍人의 가족은 障碍人의 자립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6條 (重症障碍人의 보호)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

(추 131)

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障碍人에 대하여 평생 필요한 보호등을 행하도록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7條 (保護者에 대한 配慮)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의 福祉에 관한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障碍人의 부모 및 배우자 기타 障碍人을 보호하는 者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그 死後에 障碍人의 생활에 관하여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第8條 (差別禁止등) ①누구든지 障碍를 이유로 政治·經濟·社會·文化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障碍를 이유로 政治·經濟·社會·文化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障碍人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障碍人을 비하·모욕하거나 障碍人을 이용하여 부당한 營利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障碍人의 障碍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9條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의 발생을 예방하고, 障碍의 조기발견에 대한 國民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障碍人의 福祉를 증진할 責任을 진다.

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女性障碍人의 權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福祉施策을 障碍人 및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國民이 障碍人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10條 (國民의 責任) 모든 國民은 障碍發生의 예방, 障碍의 조기발견에 노력하여야 하며 障碍人의 인격을 존중하고 社會統合의 理念에 기초하여 障碍人福祉增進에 협력하여야 한다.

第11條 (障碍人福祉調整委員會) ①障碍人福祉 綜合政策을 수립하고 관계部處間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政策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國務總理소속하에 障碍人福祉調整委員會를 둔다.

②障碍人福祉調整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障碍人福祉政策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障碍人福祉增進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중요한 障碍人 고용촉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추 113)

5. 障碍人福祉에 관한 關聯部處의 협조사항

6. 기타 障碍人福祉와 관련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③障碍人福祉調整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行政機關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障碍人福祉調整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2條 (障碍人의 날) ①國民의 障碍人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障碍人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4月 20日을 障碍人의 날로 하고 障碍人의 날부터 1주간을 障碍人週間으로 한다.

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13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第2條의 規定에 의한 障碍人중 精神保健法과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다른 法律의 적용을 받는 障碍人에 대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第14條 (法制상의 措置등)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이 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法制상 및 財政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第2章 基本施策의 강구

第15條 (障碍發生豫防)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의 발생원인과 그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障碍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의 추진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약물중독 및 환경오염등에 의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第16條 (醫療·再活治療)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이 생활기능을 습득 또는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심리치료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障碍人의 障碍를 보완하기 위하여 재활보조기구의 제공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17條 (社會適應訓練)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이 재활치료후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추 113)

第18條 (教育)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社會統合의 理念에 따라 障碍人이 그 연령·능력·障碍의 종별 및 정도에 따른 충분한 教育을 받을 수 있도록 教育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의 教育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에게 전문적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制度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각급 학교의 장은 教育을 필요로 하는 障碍人이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障碍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모든 교육기관은 교육대상 障碍人의 입학 및 修學등에 있어서 障碍의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의 정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第19條 (職業再活)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후지도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障碍人 적합직종 및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第20條 (情報에의 접근)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이 원활하게 情報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통신 및 방송시설등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방송국의 장등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뉴스, 國家的 주요사항의 중계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에 聽覺障碍人을 위한 手話 또는 폐쇄자막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國家的인 행사 기타 教育, 집회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聽覺障碍人을 위한 手話通譯을 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手話通譯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第2項 및 第3項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등 민간사업자 및 민간행사주최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視覺障碍人의 情報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점자

(추 113)

및 음성도서등을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21條 (便宜施設)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이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22條 (安全對策의 강구)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추락사고등 障碍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등에 대비하여 視覺, 聽覺 및 이동에 불편을 겪는 障碍人을 위하여 피난로 확보, 점자·음성 및 문자 안내판의 설치, 긴급 통보시스템등 障碍人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第23條 (選擧權등 행사의 편의제공)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의 選擧權 행사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설비의 설치, 選擧權 행사에 관한 홍보, 選擧用 보조기구의 개발·보급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第24條 (住宅의 普及)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공공주택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障碍人에게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택의 구입자금·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의 지원등 障碍人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25條 (文化環境의 整備등)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의 증진을 위하여 관련시설 및 설비 기타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26條 (福祉硏究등의 振興)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 福祉增進을 위한 硏究와 障碍人 福祉振興, 障碍人 體育振興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障碍人 福祉硏究·福祉振興·體育振興등을 위해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이하 "복지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③복지진흥회의 사업과 활동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복지진흥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租稅特例制限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를 감면하고 복지진흥회에 기부된 재산에 대한 所得計算의 特例를 적용한다.

第27條 (經濟的 부담의 輕減)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 地方公企業法에 의한 地方公社 또는 地方公團

(추 113)

은 障碍人 및 障碍人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障碍人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稅制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의 감면등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 地方公企業法에 의한 地方公社 또는 地方公團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障碍人 및 障碍人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障碍人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障碍人 및 障碍人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者의 운임등을 감면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3章 福祉措置

第28條 (調査) ①保健福祉部長官은 이 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障碍人의 실태조사를 5年마다 실시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조사의 방법과 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9條 (障碍人 登錄) ①障碍人, 그 法定代理人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보호자는 障碍狀態 기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登錄하여야 하며 市長·郡守·區廳長은 登錄을 신청한 障碍人이 第2條의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障碍人登錄證(이하 "登錄證"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證을 교부받은 者와, 그 法定代理人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보호자는 당해 障碍人이 第2條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한 때에는 그 登錄證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市長·郡守·區廳長은 障碍狀態의 변화에 따른 障碍等級의 조정을 위하여 障碍診斷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障碍診斷命令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第2項 또는 第5項의 規定을 위반한 경우에는 登錄證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④障碍人의 障碍認定 및 等級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保健福祉部에 障碍判定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⑤登錄證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登錄證과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추 113)

⑥障碍人의 登錄, 登錄證의 교부와 반환, 障碍診斷 및 障碍判定委員會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30條 (障碍人福祉相談員) ①障碍人의 福祉增進을 위한 상담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市·郡·區(自治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障碍人福祉相談員을 둔다.

②障碍人福祉相談員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障碍人福祉相談員의 임용·직무·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1條 (再活相談 및 入所등의 措置) ①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하 "障碍人福祉實施機關"이라 한다)은 障碍人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國·公立病院, 保健所, 保健支所 기타 醫療機關(이하 "醫療機關"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의료 및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것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설치한 障碍人福祉施設에서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3.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설치된 障碍人福祉施設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서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4.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사업장내 직업훈련시설이 행하는 직업훈련 또는 취업알선을 필요로 하는 者에 대하여 관련시설 또는 직업안정업무기관에 소개하는 것

②障碍人福祉實施機關은 第1項의 재활상담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障碍人福祉相談員으로 하여금 당해 障碍人의 가정, 障碍人이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에 응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第32條 (障碍類型別 再活서비스 제공등)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의 일상생활에서의 편의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障碍類型別 재활서비스 제공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豫算의 범위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第33條 (醫療費의 지급) ①障碍人福祉實施機關은 의료비의 부담이 곤란하다고 인

(추 113)

정되는 障碍人에 대하여 障碍程度, 경제적 부담능력등을 고려하여 障碍의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의료비 지급의 대상·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34條 (子女敎育費의 지급) ①障碍人福祉實施機關은 경제적 부담능력등을 감안하여 障碍人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障碍人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교육비 지급의 대상·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35條 (障碍人使用自動車등에 대한 지원등)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는 障碍人이 이동수단인 자동차등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편의도모와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租稅減免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市長·郡守·區廳長은 障碍人의 자동차등 이용과 관련된 지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障碍人이 사용하는 자동차등임을 식별하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는 이를 대여하거나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者 이외의 者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36條 (障碍人補助犬의 訓練·普及支援등)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의 福祉增進을 위하여 障碍人을 보조하는데 필요한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保健福祉部長官은 장애인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障碍人이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거나 공공장소 및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추 113)

第37條 (資金의 貸與등)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에 대하여 사업의 개시, 필요한 지식·기능의 습득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第38條 (生業支援)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는 소관공공시설내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障碍人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財政經濟部長官 또는 한국담배인삼공사사장은 障碍人이 담배事業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障碍人을 담배소매인으로 우선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改正 2001·4·7〉

③障碍人이 郵便法令에 의하여 국내우표류 판매업 계약신청을 한 경우에는 우편관서는 당해 障碍人이 국내우표류 판매업을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허가, 위탁 또는 지정등을 받은 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설치 허가권자는 매점·자동판매기의 허가를 위하여 그 설치장소, 판매할 물건의 종류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障碍人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第39條 (自立訓練費의 지급) ①障碍人福祉實施機關은 第31條第1項第2號 또는 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障碍人福祉施設에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거나 위탁한 障碍人에 대하여 당해 시설에서 훈련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립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물건을 지급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자립훈련비의 지급 및 물건의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40條 (生産品의 購買)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 기타 공공단체는 그 소요물품중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한 품목 및 물량의 범위내에서 매년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障碍人福祉施設, 障碍人福祉團體에 생산을 의뢰하여야 하며 동 물품의 구매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추 131)

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는 障碍人福祉施設, 障碍人福祉團體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품목, 물량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며, 수의계약의 절차, 방법등에 관하여는 관계法令에 의한다.

第41條 (雇傭의 촉진)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스스로 경영하는 사업에 障碍人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이들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障碍人에게 적합한 직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者에 대하여 障碍人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이들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第42條 (公共施設의 優先利用) 國家와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는 障碍人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公共施設의 일부를 障碍人으로 하여금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第43條 (國·公有財産의 優先賣却 또는 有·無償 賃貸)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이 法에 의한 障碍人福祉施設의 설치 또는 障碍人福祉團體의 障碍人福祉事業 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者에게 國·公有 토지 및 시설등을 우선 賣却하거나 賃貸 또는 無償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토지 및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대부받은 者가 그 매수·임차 또는 대부일부터 2年이내에 障碍人福祉施設의 설치 또는 障碍人福祉團體의 障碍人福祉事業 관련시설의 설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환수하거나 賃借契約을 취소할 수 있다.

第44條 (障碍手當)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程度와 障碍人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障碍人의 소득보전을 위해 障碍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障碍手當의 지급의 대상·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5條 (障碍兒童扶養手當 및 保護手當)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兒童을 보호·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障碍程度를 고려하여 障碍兒童의 보호자에게 障碍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을 위해 障碍兒童扶養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

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을 보호하는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障碍程

(추 113)

度를 고려하여 障碍人의 보호자에게 障碍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을 위해 保護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障碍兒童扶養手當, 保護手當의 지급대상·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6條 (再活의 硏究)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再活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障碍豫防·의료·敎育 및 직업재활등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豫算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第4章 福祉施設 및 團體

第47條 (保護措置등)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의 年齡 및 障碍의 종별과 정도를 고려하여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障碍人福祉施設에서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회복훈련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障碍人이 기능회복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48條 (障碍人福祉施設) ①障碍人福祉施設의 종류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障碍人生活施設 : 障碍人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再活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障碍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2. 障碍人地域社會再活施設 :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등 障碍人에게 전문적인 상담·치료·훈련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3. 障碍人職業再活施設 : 일반 고용이 어려운 障碍人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障碍人有料福祉施設 : 障碍人이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등 편의를 제공받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시설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시설

②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障碍人福祉施設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49條 (障碍人福祉施設의 設置)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福祉施設을 설치

(추 113)

할 수 있다.

②第1項에 規定된 者 외의 者가 障碍人福祉施設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소재지 관할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중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다만,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폐쇄명령을 받고 1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는 시설의 설치·운영신고를 할 수 없다.

③第48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醫療法에 의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障碍人福祉施設의 시설기준, 신고, 변경신고 및 입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50條 (施設運營의 開始등) ①第4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신고를 한 者는 지체없이 시설운영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시설운영자는 시설운영을 중단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시설운영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시설운영의 중단·재개 또는 시설폐지의 경우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거주자의 權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조치 및 이의 이행여부 확인
2. 이용료, 사용료등 비용을 시설거주자가 부담하는 경우 이의 반환조치 및 확인
3. 보조금, 후원금등의 사용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의 회수조치
4. 기타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시설운영 개시·중단·재개 및 시설폐지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51條 (監督) ①障碍人福祉實施機關은 障碍人福祉施設을 설치·운영하는 者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시설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 장부 기타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관계公務員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權限을 표시

(추 113)

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第52條 (施設의 개선, 사업의 停止, 閉鎖등) 障碍人福祉實施機關은 障碍人福祉施設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第4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 검사,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3. 社會福祉法人 또는 非營利法人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社會福祉法人 또는 非營利法人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4. 시설의 회계부정이나 不法行爲 기타 부당행위등이 발견되었을 때
5.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6.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할 때

第53條 (團體의 보호·육성)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의 福祉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障碍人福祉團體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내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團體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第54條 (障碍人福祉團體協議會) ①障碍人福祉團體의 활동지원과 障碍人의 福祉增進을 위하여 障碍人福祉團體協議會(이하 "協議會"라고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協議會는 社會福祉事業法에 의한 社會福祉法人으로 하되, 社會福祉事業法 第23條第1項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協議會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第5章 再活補助機具

第55條 (再活補助機具) "再活補助機具"라 함은 障碍人이 障碍의 예방과 보완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기타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第56條 (再活補助機具 品目告示등) 保健福祉部長官은 再活補助機具의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再活補助機具의 품목을 고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준·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第57條 (再活補助機具의 교부등)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의 신청이 있을

(추 113)

때에는 豫算의 범위내에서 再活補助機具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再活補助機具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비용의 지급은 再活補助機具의 교부 또는 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있는 者의 범위와 再活補助機具의 교부·대여·수리 및 비용지급의 기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58條 (再活補助機具業體의 지원·육성)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再活補助機具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再活補助機具를 생산하는 업체(이하 "再活補助機具業體"라 한다)에 대한 생산장려금의 지급·기술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再活補助機具業體의 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再活補助機具業體중 우수업체를 지정하여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생산장려금의 지급, 기술지원, 우수업체의 지정, 자금의 융자와 보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59條 (再活補助機具 硏究開發의 지원등) ①保健福祉部長官은 再活補助機具의 품질향상등을 위하여 再活補助機具에 관한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이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再活補助機具에 관한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자금의 보조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60條 (義肢·補助器製造業所의 開設事實通報등) ①義肢·補助器의 제조·개조·수리 또는 신체에의 장착을 업(이하 "義肢·補助器製造業"이라 한다)으로 하는 者는 그 제조업소를 개설한 후 7日이내에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제조업소의 개설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조업소의 소재지변경등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義肢·補助器製造業者는 第63條의 規定에 의한 義肢·補助器技士를 1명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義肢·補助器製造業者 자신이 義肢·補助器技士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義肢·補助器製造業者가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폐쇄명령을 받은 후 6月이 지

(추 113)

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제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義肢·補助器製造業者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義肢·補助器를 제조 또는 개조하여야 한다.

第61條 (義肢·補助器製造業所의 閉鎖등) ①市長·郡守·區廳長은 義肢·補助器製造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第60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義肢·補助器技士를 두지 아니하고 義肢·補助器製造業을 한 때
2. 營業停止處分期間중에 영업행위를 하거나 3回이상 營業停止處分을 받은 때

②市長·郡守·區廳長은 義肢·補助器製造業者가 義肢·補助器製造業을 함에 있어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義肢·補助器着用者의 신체에 손상을 가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6月의 범위안에서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第6章 障碍人福祉專門人力

第62條 (障碍人福祉專門人力의 양성등) 國家와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는 수화통역사, 점역사등 障碍人福祉專門人力 기타 障碍人福祉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者의 양성 및 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第63條 (義肢·補助器技士資格證의 교부등) ①保健福祉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第64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試驗에 합격한 者(이하 "義肢·補助器技士"라 한다)에게 義肢·補助器技士의 資格證을 교부한다. 〈改正 2001·1·29〉

1. 高等敎育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義肢·補助器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者
2. 保健福祉部長官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第1號에 해당하는 학교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義肢·補助器技士의 資格證을 교부받은 者

②義肢·補助器技士의 資格證을 분실 또는 훼손한 者에게는 그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한다.

③義肢·補助器技士의 資格證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證의 교부·재교부절차 기타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추 128)

第64條 (義肢·補助器技士國家試驗의 실시등) ①義肢·補助器技士 國家試驗은 保健福祉部長官이 실시하되, 國家試驗의 실시시기·실시방법·시험과목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保健福祉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家試驗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第65條 (應試資格의 제한등)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64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試驗에 응시할 수 없다.

1. 精神疾患者
2. 麻藥·大麻 또는 向精神性醫藥品中毒者
3. 禁治産者·限定治産者·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 또는 刑法중 第234條·第317條第1項, 醫療法, 國民健康保險法, 종전의 國民醫療保險法·醫療保險法, 醫療保護法, 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 麻藥法·大麻管理法, 向精神性醫藥品管理法 또는 後天性免疫缺乏症豫防法에 위반하여 禁錮이상의 刑의 선고를 받고 그 刑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者

②부정한 방법으로 第64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試驗에 응시한 者 또는 國家試驗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者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者는 그 후 2回에 한하여 第64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試驗에 응시할 수 없다.

第66條 (補修敎育) ①保健福祉部長官은 義肢·補助器技士에 대하여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시기·실시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67條 (資格의 取消) 保健福祉部長官은 義肢·補助器技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第63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義肢·補助器技士資格證을 대여한 때
2. 第65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추 113)

3. 第68條의 規定에 의한 資格停止處分期間중에 그 업무를 행하거나 資格停止處分을 3回 받은 때

第68條 (資格의 정지) 保健福祉部長官은 義肢·補助器技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月의 범위안에서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義肢·補助器技士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義肢·補助器着用者의 신체에 손상을 가한 사실이 있는 때
2. 第66條의 規定에 의한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回이상 받지 아니한 때

第69條 (手數料) 義肢·補助器技士 國家試驗에 응시하고자 하거나 義肢·補助器技士의 資格證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第7章 補 則

第70條 (費用의 負擔) 第33條第1項, 第34條第1項, 第39條第1項, 第44條第1項, 第45條第1項·第2項, 第57條第1項, 第58條第1項·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와 第4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障碍人福祉施設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豫算의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障碍人福祉實施機關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第71條 (費用의 收納) ①第31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障碍人福祉實施機關은 당해 障碍人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

②第48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障碍人有料福祉施設을 설치·운영하는 者는 그 시설에 입소하는 者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第72條 (費用의 보조)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障碍人福祉施設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第73條 (押留禁止) 이 法에 의하여 障碍人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이를 押留하지 못한다.

第74條 (租稅의 減免) 이 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품 및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障

(추 113)

碍人福祉施設 및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障碍人福祉團體에서 障碍人이 제작한 물품에 대하여는 租稅特例制限法, 地方稅法 기타 租稅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를 감면한다.

第75條 (審査請求) ①障碍人, 그 法定代理人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보호자는 이 法에 의한 福祉措置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障碍人福祉實施機關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障碍人福祉實施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1月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者는 行政審判法에 따라 行政審判을 제기할 수 있다.

第76條 (權限의 위임등) 이 法에 의한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立再活院長,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위임하거나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第8章 罰 則

第77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1.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4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障碍人福祉施設을 설치·운영한 者
3. 第5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시설거주자 권익보호조치에 위반한 시설운영자
4. 정당한 이유없이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者, 조사·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5.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명령등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者
6. 第60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義肢·補助器技士를 두지 아니하고 義肢·補助器製造業을 한 者
7. 第6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후 6月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製造業을 한 者
8. 第6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業所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者

(추 113)

第78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1. 第18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障碍人의 입학지원 거부 또는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거부등 불이익한 조치등을 취한 者
2. 第63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義肢·補助器技士資格證을 대여한 者
3. 第71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비용을 수납한 者

第79條 (兩罰規定)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第77條 또는 第78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과한다.

第80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1. 第2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證의 반환명령을 거부하거나 第29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證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者
2. 第35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者 외에게 양도한 者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등을 사용한 者
3. 第36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등을 동반한 障碍人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者
4. 第5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시설운영개시의무를 위반한 者
5. 第5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시설운영 중단, 재 운영, 시설의 폐지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者
6. 第6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義肢·補助器製造業所의 개설 또는 변경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者
7. 第60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義肢·補助器를 제조 또는 개조한 義肢·補助器製造業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이 부과·징수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

(추 113)

은 날부터 30日이내에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재판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附 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시행한다. 다만, 第6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義肢·補助器技士의 의무배치에 관한 사항은 2003年 1月 1日부터 시행한다.

第2條 (設立準備) ①종전의 規定에 의한 財團法人 韓國障碍人福祉體育會는 이 法 第26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 본다.

②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의 설립을 위해 이 法 시행후 6月이내에 保健福祉部長官의 허가를 받아 정관의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이 法 시행당시 다른 法令에서 韓國障碍人福祉體育會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法에 의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第3條 (처분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시행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신청,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4條 (障碍人手帖에 대한 經過措置) ①이 法 시행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교부된 障碍人手帖은 第29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障碍人登錄證으로 본다.

②市長·郡守·區廳長은 이 法 시행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교부된 障碍人手帖을 이 法 시행후 1年이내에 이 法에 의한 障碍人登錄證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第5條 (障碍人福祉施設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시행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설치된 障碍人福祉施設은 이 法 시행후 1年이내에 이 法에 의한 설치기준을 갖추어 각각 障碍人生活施設, 障碍人地域社會再活施設, 障碍人職業再活施設, 障碍人有料福祉施設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시설로 신고하여야 한다.

第6條 (義肢·補助器製造業所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시행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보장구제조, 수리업을 허가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義肢·補助器製造

(추 113)

業所의 개소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第7條 (義肢·補助器技士國家試驗의 特例) 이 法 시행후 3年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는 義肢·補助器技士國家試驗은 第63條第1項의 各號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第64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第8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9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시행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障碍人福祉法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法중 그에 관한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의 해당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1·29 法640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2001·4·7 法646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주 13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전문개정 1999·12·31 대통령령제16682호
개정 2000· 3·13 대통령령제16751호(방송법시행령)
2000· 7·27 대통령령제1692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2001· 1·29 대통령령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목적)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별표 1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②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국정홍보처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행정각부의 장이 된다. 〈개정 2001·1·29〉

④위촉위원은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중 3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 (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추 130)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제8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제73조 내지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수화·폐쇄자막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00·3·13〉

1. 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방송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0조 내지 제74조, 제82조 및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거방송
3. 국경일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경일 및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의한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의 중계방송
4. 기타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

제12조 (수화통역 실시행사)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경일 또는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연설회로 한다.

1. 국경일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경일

(추 117)

2.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의한 기념일중 보건의날, 장애인의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현충일, 국군의날, 노인의날 및 한글날

제13조 (감면대상시설의 종류등)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 또는 사업의 관리자등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4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고, 표본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실태조사에 의하여 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별·연령·학력·가족상황등 장애인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장애유형·장애정도 및 장애발생원인등 장애특성에 관한 사항
3. 취업·직업훈련, 소득 및 소비, 주거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4. 재활보조기구사용·복지시설이용·재활서비스 및 편의시설 설치욕구등 복지욕구에 관한 사항
5. 장애수당·재활보조기구교부 및 장애인등록제도등 복지지원상황에 관한 사항
6. 여가 및 사회활동등 사회참여상황에 관한 사항
7. 생활만족도 및 생활환경에 대한 태도등 장애인의 의식에 관한 사항
8.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조사연도)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는 2000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5년마다 1회씩 실시하되, 조사의 일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보호자의 범위) 법 제29조제1항·제2항 및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기타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17조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임용)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상담원

(추 117)

(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운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중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2. 장애인에 대한 진단·진료 또는 보건등에 관한 지도와 관계전문기관에 대한 진단·진료 또는 보건지도등의 의뢰
3.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입소·통원 또는 그 이용의 알선
4. 장애인에 대한 재활보조기구의 교부와 사용·수리등에 관한 지도
5.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취업알선과 이에 관한 관계전문기관에 대한 의뢰
6.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개발·조직·활용 및 알선
7.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에 관한 조사 및 지도
8. 기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19조 (자금대여의 종류 및 대여한도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대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업자금 및 장애인사용자동차 구입비
2.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3.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4.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5.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대여의 한도·이율 및 거치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추 117)

제20조 (자금의 대여절차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금대여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대여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자금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금대여 신청인이 생활보호법 및 모자복지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19조제1항 각호의 자금을 대여받은 때에는 같은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 (대여자금의 상환방법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대여를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한 대여내용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상환하여야 할 자가 거주지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한 경우에는 전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지체없이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생업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내에 매점(15제곱미터이하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을 장애인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소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기타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③국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세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 (생산품의 구매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 117)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 및 물량의 범위안에서 국가등이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할 물품의 품목 및 물량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의 백분율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가등이 당해연도에 구매하는 해당품목의 총구매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1. 행정봉투 : 100분의 2이상
2. 복사용지(전자복사용지 및 보존복사용지) : 100분의 2이상
3. 재생화장지 : 100분의 10이상
4. 칫솔 : 100분의 20이상
5. 면장갑(작업용 면장갑 및 고무코팅 면장갑) : 100분의 20이상
6. 쓰레기분리수거용 합성수지(PE) 봉투 : 100분의 20이상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생산물품의 원활한 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물품에 대한 구매신청의 접수 및 납품의 대행과 당해 물품의 생산시설간 생산량 조정업무등을 담당하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4조 (국가등의 구매의무) 국가등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구매요구를 받은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 및 납품기한등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제25조 (장애수당등의 지급대상자) ①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이 필요한 자로 한다. 〈개정 2000·7·27〉

②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중증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미만(당해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0세이하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0·7·27〉

③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중증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이상(당해 장애인이 20세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장애인을 보호·부양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0·7·27〉

(추 123)

제26조 (장애수당등의 지급신청등) ①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하 "장애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생활상태 또는 장애인 부양여부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7조 (장애수당등의 지급시기) 장애수당등은 당해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다음달부터 당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매분기별로 이를 지급한다.

제28조 (장애수당등의 지급기준등) ①장애수당등의 구체적인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장애인의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장애수당등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29조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기사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업무를 위탁한다.

1.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2.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연구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③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과목·응시수수료 및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①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필기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추 117)

1. 보건의료관계 법규
2. 해부·생리학
3. 재활의학
4. 운동·생체역학
5. 재활공학·재료학
6. 의지학
7. 보조기학

②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전 과목 총점의 6할이상, 매 과목 4할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31조 (시험위원) ①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①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의 합격자를 결정·발표하고,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국가시험 합격번호 및 합격연월일

제33조 (관계기관등에의 협조요청)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 (비용의 부담) ①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제1항, 법 제34조제1항, 법 제39조제1항, 법 제44조제1항, 법 제45조제1항·제2항, 법 제57조제1항 및 법 제5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

(추 117)

용은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제35조 (비용의 수납)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장애인이나 그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7·27〉

제36조 (비용의 보조)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중 일부를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비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평가의 결과등 당해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52조, 법 제61조제1항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폐쇄, 제조업소의 폐쇄 또는 의지·보조기기사의 자격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추 123)

제2조 (수화통역의 실시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연설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수화통역사의 수급사정으로 인하여 수화통역사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수화통역사가 확보되는 범위안에서 수화통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8호 바목중 "장애인복지법 제45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3조"로 한다.

②노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장애인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지도원"을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상담원"으로 한다.

③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중 "신체장애자용 의자"를 "휠체어"로 한다.

④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사업란중 제1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8.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수첩"을 "등록증"으로 한다.

⑥생활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장애인복지시설

⑦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2항중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수첩"을 "등록증"으로 한다.

⑧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단서중 "장애인복지법 제37조제5호"를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3호"로 한다.

⑨저작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시각장애인생활시설

다. 장애인생활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중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⑩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1항제3호중 "장애인수첩 사본"을 "장애인등록증 사본"으로 한다.

(추 117)

⑪행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119조중 "신체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3·13 대령1675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 칙 〈2000·7·27 대령169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추 130)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관련)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指骨關節)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이상을 각각 제1지골관절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관절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정도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뇌졸중(腦卒中)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등에 제한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가.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이상을 잃은 사람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이하인 사람
   라. 평형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정신지체인(精神遲滯人)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추 117)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7. 발달장애인(發達障碍人)
소아기자폐증, 비전형적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情動障碍), 양극성정동장애 및 반복성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정도의 활동에도 호흡곤란등의 장애가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별표 2〕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3조관련)

시 설 의 종 류	감 면 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무궁화호·통일호 및 비둘기호에 한한다)	100분의 50
2. 도시철도(철도법에 의하여 수도권 지역에서 철도청이 운영하는 전기철도를 포함한다)	100분의 100
3. 공영버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100분의 100
4. 국·공립 공연장	100분의 50
5. 공공체육시설(국가등이 설치·관리·운영하는 시설중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에 한한다)	100분의 50
6. 고 궁	100분의 100
7. 능 원	100분의 100
8. 국·공립의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9.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비 고

1. 철도등 운송수단인 경우에 있어서는 여객운임에 한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개호인 1인을 포함한다.

(추 117)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관련)

1. 일반기준

처분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과태료 처분대상	근거법령	과태료
1.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의 반환명령을 거부하거나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자	법 제80조제1항 제1호	200만원
2.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외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등을 사용한 자	법 제80조제1항 제2호	200만원
3.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법 제80조제1항 제3호	200만원
4.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개시의무를 위반한 자	법 제80조제1항 제4호	150만원
5.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중단, 재운영, 시설의 폐지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법 제80조제1항 제5호	150만원
6.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개설 또는 변경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1항 제6호	150만원
7. 법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를 제조 또는 개조한 의지·보조기제조업자	법 제80조제1항 제7호	150만원

(추 117)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9·12·31 보건복지부령제141호
개정 2001· 6·30 보건복지부령제196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애인의 장애등급등) ①장애인복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 (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①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2매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상태가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외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등록증의 교부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당해 장애인에게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②장애인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이하

(추 134)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와 통합된 등록증으로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삭제 〈2001·6·30〉
2.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1·6·30〉

④장애인은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 및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의2 (등록증의 서식등) ①등록증의 재질·규격 및 표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표기사항의 위치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1. 재질 : 플라스틱
2. 규격 : 가로 8.6센티미터, 세로 5.4센티미터
3. 표기사항 : 장애인의 성명·주소·사진·주민등록번호·장애종류·장애등급·등록일, 보호자 연락처, 기재사항 변경란, 발급일, 발급기관, 발급기관의 직인. 다만,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기사항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 발급기관의 직인은 그 직인의 인영을 인쇄함으로써 날인에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6·30〕

제5조 (장애등급의 조정) ①장애인은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진단

(추 134)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장애상태의 확인)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여 적정한 장애등급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상태에 현저한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통보서를 당해 장애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장애진단 및 장애등급의 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 (등록증의 반환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반환명령서를 반환기일 2주전까지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8조 (장애인증명서의 발급)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에 의하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등록현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관계서류를 신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0조 (장애판정위원회의 기능)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판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정·장애등급사정기준 및 장애진단방법에 관한 사항
2. 기타 장애인정 및 장애등급사정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애인에 대한 진단·재활·치료·교육 및 훈련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추 134)

부한 자

2. 장애인복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12조 (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14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보건복지부 장애인제도과장으로 한다.

제16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의료비지급의 대상 및 기준)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6·3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
2. 제1호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제공되는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당해 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한한다. 〈개정 2001·6·30〉

제19조 (의료비지급의 절차등) ①제1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의료기관에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장애인등록증
2.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추 134)

3. 건강보험증(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를 제시받은 의료기관은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이 의료비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당해 장애인에게 의료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의료비지급대상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의 지급을 청구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는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자녀교육비 지급의 대상 및 기준)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교육비를 지급받는 자에게는 그 지급받은 금액만큼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녀를 둔 장애인
2.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각종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의 입학금·수업료 기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1. 중학교·고등공민학교
2.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3. 특수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별 지급액등 지급의 세부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녀교육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학비지급신청서에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녀교육비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추 134)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 장애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자녀교육비의 지급방법 및 시기) 자녀교육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에게 전분기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1. 제1분기 : 3월 1일 ~ 5월 31일
2. 제2분기 : 6월 1일 ~ 8월 31일
3. 제3분기 : 9월 1일 ~ 11월 30일
4. 제4분기 : 12월 1일 ~ 그 다음해의 2월말일

제23조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대상)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이하 "장애인자동차표지"라 한다)의 발급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이륜차로서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한다) 또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이하 "장애인복지단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로 한다.

1.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장애인의 배우자
   나.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다.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라. 장애인의 형제·자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
   가.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제24조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등) ①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장

(추 134)

및 제2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 또는 체류지를 말한다)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제2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에 한한다)
3.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에 한한다)
4.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2매(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사실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사용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때 또는 장애인자동차표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장애인자동차표지(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
2.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2매(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를 제외한다)
3.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④장애인사용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자동차에 사용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현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자동차 사용에 있어서의 편의를 위하여 보행

(추 134)

상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자동차를 이용함에 있어 그 장애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관계법령에 의한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원인과 결과등을 참작하여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최대한 계도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1. 다리부위 또는 척추부위에 장애가 있는 자(장애가 팔에 국한되는 경우 또는 기능의 손상이 없이 신체에 변형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별표 1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1급 내지 제5급의 시각장애인
3.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
4. 기타 중증의 장애로 보행에 현저한 제약을 받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위주의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함에 있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보행상의 장애가 있음을 장애인자동차표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26조 (장애인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의 발급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이하 "전문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훈련중에 있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보조견으로 한다.

제27조 (보조견표지의 발급등)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당해 훈련기관에서 훈련중에 있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보조견에 대하여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전문훈련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보조견의 전신사진 1매
2. 장애인보조견이 훈련중에 있거나 훈련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받은 때에는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별표 2에 의한 보조견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전문훈련기관의 장은 사용중인 보조견표지를 잃어버리거나 동 표지가 훼손되

(추 134)

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재발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장애인보조견표지(훼손되어 못쓰게 된 때에 한한다)

⑤전문훈련기관의 장은 장애인보조견이 사망하거나 장애인보조견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장애인보조견에 사용중인 보조견표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견표지발급현황을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 (자금의 대여신청)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금대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생업자금 :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장애인사용자동차 구입비 : 차량매매계약서
3.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지도 및 기술훈련시설의 장이 발급하는 훈련증명서
4. 기능회복훈련에 필요한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 용도를 명시한 매매계약서
5.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사용처·용도등을 명시한 매매계약서

제29조 (자금대여 관리카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대여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금대여 내용을 자금대여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②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자금대여 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자금을 대여하고 그 대여내역 및 상환방법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 (자립훈련비 지급등)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립훈련비의 지급대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자립을 목적으로 훈련을 받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자립훈련비의 지급대상 및 종류별 지급금액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추 124)

제31조 (장애수당등의 지급신청) ①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또는 보호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여부를 조사·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별표 3과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3조 (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4조 (시설의 설치·운영신고등) ①법 제4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법인에 한한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한다)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7.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②법 제4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설의 명칭 또는 시설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추 134)

1.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사유서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조서 1부(입소정원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 (장애인의 시설입소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을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주거편의·상담·치료 및 훈련등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의뢰서를 그 시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6조 (시설운영의 중단·재개·폐지신고등) ①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운영을 일시중단하거나 재개 또는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운영의 중단·재개 또는 폐지 3월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운영의 중단·재개·폐지사유서 1부(법인의 경우에는 중단·재개·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시설거주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4. 보조금·후원금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5.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6.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추 134)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의 중단 또는 폐지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치계획에 따라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50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시설거주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등 신청대상자)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대여 또는 수리등(이하 "교부등"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6·3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
2. 제1호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등의 결정)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당해 장애인의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에 따라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등을 하여야 할 재활보조기구가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이거나 재활보조기구의 수리가 그 재활보조기구의 주요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벼운 것인 경우에는 진단을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진단서를 작성하여 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래의 장애명
2. 현재의 증상
3. 재활의료가 필요한 경우 그 의료의 방법
4.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처방 및 제작상의 소견

제39조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의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를 교부 또는 수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재활보조기구교부(수리)의뢰서를 교부하여야

(추 134)

한다. 다만, 직접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절차) ①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활보조기구 제조·수리업자에게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의뢰서를 제출하고, 장애인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보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를 의뢰받은 재활보조기구 제조·수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의뢰서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제조 또는 수리하여 당해 장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1조 (재활보조기구 교부 또는 수리비용의 청구)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를 교부 또는 수리한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재활보조기구교부(수리)비용청구서에 그가 교부 또는 수리한 재활보조기구가 처방대로 제조·수리되었는지에 관한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제42조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를 위한 비용의 지급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대상자중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하거나 수리하여 주는 것이 소요예산 및 재활보조기구의 이용 또는 제조·수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장애인에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급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조·수리비등의 시가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 (재활보조기구업체의 지원·육성등) 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장려금의 지급 및 기술지원 대상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우수업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장려금의 지급대상품목·지급액 및 지급절차등과 기술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4조 (우수업체의 지정 및 취소등) ①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재활보조기구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재활보조기구의 제조에 필

(추 134)

요한 설비 및 기계기구, 우수종사자의 확보정도 및 신기술개발능력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활보조기구 개발·보급 계획서 1부
2. 지정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1부
3. 재활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실적 1부
4. 재산목록(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1부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지정된 우수업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위반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5조 (자금의 융자 및 보조) ①우수업체에 대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재활보조기구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사업비
2. 재활보조기구의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비
3. 기타 재활보조기구의 품질향상과 제조원가 절감을 위한 투자비

②우수업체에 대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이율 및 상환방법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보조금의 지급액등 보조금 지급의 세부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6조 (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개설사실통보등) ①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제조업소를 개설한 자는 그 제조업소를 개설한 후 7일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내역서 1부
2. 제조·수리를 담당할 의지·보조기기사 자격증 사본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개설사실을 통보한 후 제조 또는 수리하여야 하는 의지·보조기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

(추 134)

관이 고시하는 의지·보조기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개설사실 통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제조업소의 소재지 변경으로 인하여 관할관청이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통보서를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업소의 명칭·개설자 또는 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때
2.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기사의 변경이 있는 때
3.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는 때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개설사실 또는 변경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의지·보조기제조업소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7조 (의지·보조기관련 교과목)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관련 교과목은 별표 5와 같다.

제48조 (자격증의 교부신청등)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기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1부.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외국 학교의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및 의지·보조기기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3. 응시원서와 동일원판의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센티미터×4센티미터) 사진 2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한 날부터 2월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9조 (자격등록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자격등록대장에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

(추 134)

하여야 한다.

제50조 (자격증의 재교부신청등) ①의지·보조기기사는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지·보조기기사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설명서) 1부
2.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센티미터×4센티미터) 사진 2매
3.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재교부신청에 한한다) 1부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자격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자격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51조 (자격증의 회수·반환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보조기기사에 대한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의지·보조기기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알려 시·도지사로 하여금 당해 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보조기기사의 자격정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된 자격증을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당해 의지·보조기기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52조 (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방법등) ①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의지·보조기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의지·보조기제조업에 신규로 종사하는 자
2.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은 국립재활원장(이하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③보수교육의 실시시기, 교과과정, 실시방법 기타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이 정한다.

제53조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①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당해연도의 보수교육계획서를, 매년 3월말까지 별지 제41호

(추 134)

서식에 의한 전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42호서식의 보수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4조 (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대상자 명단(대상자의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기타 이수자의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55조 (수수료) ①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등은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공고한다.

②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2천원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6조 (비용의 수납)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설에 입소·통원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비용수납신고서에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 (행정처분기준) 법 제61조제2항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58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제59조 (공통서식)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카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지급신청서,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대여신청서,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대여관리카드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신청서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후 134)

의한다.

〔전문개정 2001·6·30〕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의 특례) ①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중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3년이상 의지·보조기제조업에 종사한 자
2. 5년이상 의지·보조기제조업에 종사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제조업 종사경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의지·보조기관련 사업자단체가 이를 확인한다.

제3조 (사용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립재활원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중 "장애인수첩 사본"을 "장애인등록증 사본"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구비서류란중 "장애인수첩 사본"을 "장애인등록증 사본"으로 한다.

②국민의료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장애인복지법 제1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29조"로,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한다.

부 칙 〈2001·6·30 보건복지부령196〉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의 교부신청에 관한 특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전에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증 재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③(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등록

(추 134)

증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증으로 본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서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통서식을 고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개정 2001·6·30〉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제2조제1항관련)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제1급

1.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다리를 무릎관절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2급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2. 한 팔을 팔꿈치관절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발목관절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3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쇼파관절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무릎관절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4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관절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5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쇼파관절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6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추 134)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제4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중 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고관절(股關節)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5급

1.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6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제1급

1. 두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2급

1. 한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척추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거나 자기 힘으로 일어서기가 곤란한 사람

제3급

1.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4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을 잃

(추 117)

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5급

1.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8. 척추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제6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5. 척추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신체에 변형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제5급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센티미터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이상 짧은 사람

제6급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이상인 사람
3.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20세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이하인 사람(다만,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18세이상에서 적용 가능)
5. 성장이 멈춘 18세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이하인 사람

(추 117)

2. 뇌병변장애인

제1급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제2급

1. 보행이 현저하게 제한되었거나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2.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제3급

1. 보행이 상당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제4급

1.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또는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제5급

1.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었거나 또는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시 파행을 보이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제6급

보행시 파행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제1급

좋은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이하인 사람

제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제3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08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이하로 남은 사람

제4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이하로 남은 사람

제5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2.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 1이상을 잃은 사람

제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이 손실된 사람

제2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이상인 사람(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제3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이상인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제4급

1.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이상인 사람(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2.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량의 명료도가 50퍼센트이하인 사람

제5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이상인 사람(40센티미터이상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제6급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이상인 사람

나. 평형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

제3급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제4급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 또는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를 걸으려면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사람

제5급

양측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이상 벗어나며 복합적인 신체운동은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추 117)

제3급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제4급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 또는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정신지체인

제1급

지능지수 34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제2급

지능지수가 35이상 49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제3급

지능지수 50이상 70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발달장애(자폐증)인

제1급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제2급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제3급

제2급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제1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환청·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추 117)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지 1년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3. 반복성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의욕 및 행동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4.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제2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환청·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2.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의욕 및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3. 만성적인 반복성우울장애로 망상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의욕 및 행동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4. 만성적인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제3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환청·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반복성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추 117)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제2급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1개월이상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제5급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제1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증상등이 일어나서 운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상시적으로 개호인이 필요한 사람(심장질환을 진단받은지 1년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제2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증상등이 일어나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제3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증상등이 일어나서 가벼운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제5급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가. 같은 등급에 2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한다.

나. 서로 다른 등급에 2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장애의 정도를 감안하여 당해 주된 장애등급보다 1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할 수 없다.

(1)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중복된 경우

(2) 정신지체장애와 발달장애가 중복된 경우

(3) 기타 장애부위가 동일하거나 장애성격이 중복되어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추 134)

〔별표 2〕

장애인보조견표지(제27조제3항관련)

장 애 인 보 조 견	
발 급 번 호	-
훈 련 기 관	
보건복지부장관 ㊞	

비 고

1. 규 격 : 가로 110밀리미터(마크 45밀리미터) × 세로 45밀리미터
2. 색 상
   가. 마크바탕·글씨·선 : 청색
   나. 마크 : 흰색
3. 발급번호 : "발급연도"-"일련번호"로 표기한다.
4. 부착위치 : 보조견 손잡이중 식별이 용이한 부위에 부착한다.

〔별표 3〕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제32조관련)

구 분	시설의 종류 및 기능
1. 장애인생활시설	가.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 장애유형이 같거나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교육·직업·심리·사회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나. 중증장애인요양시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입소하게 하여 상담·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 6세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활에 필요한 의료·교육·심리·사회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가.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추 117)

	나.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라. 장애인단기보호시설 : 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마.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스스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내 소규모 주거시설 바. 장애인체육시설 :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회복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사. 장애인수련시설 : 장애인의 문화·취미·오락활동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아. 장애인심부름센터 :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자. 수화통역센터 :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차. 점자도서관 :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카.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가. 장애인작업활동시설 :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작업활동·일상생활훈련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부기능으로 직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등을 실시하는 시설 나. 장애인보호작업시설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직업훈련 및 일거리등을 제공하여 보호적 조건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등을 실시하는 시설 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 직업능력은 있으나 사회적 제약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근로의

(추 117)

	기회를 제공하여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등을 실시하는 시설 라. 장애인직업훈련시설 :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직업평가·사회적응훈련 및 직업훈련등을 일정기간 실시하여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및 사후 지도등을 실시하는 시설 마.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주기능으로 장애인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부기능으로 장애인생산품에 관한 상담·홍보·판로개척 및 정보제공등을 실시하는 시설
4.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로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등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별표 4〕〈개정 2001·6·30〉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33조관련)

Ⅰ. 공통기준(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중 장애인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장애인체육시설·장애인수련시설·장애인심부름센터·수화통역센터·점자도서관 및 점서및녹음서출판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중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제외한다)

1. 시설의 입지조건

시설은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시설의 규모

상시 10인이상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시설종류별 개별기준에서 10인미만의 소규모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와 장애인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예외로 한다.

3.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가.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유형별·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6세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시설은 이 기준에 의한 구조 및 설비외에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중 영아시설에 준하는 설비를 따로 갖추어야 한다.

나. 시설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에 의한 편

(추 134)

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 생활시설 및 청각·언어장애인 생활시설은 각각 1인당 21.78제곱미터이상, 시각장애인 생활시설은 1인당 19.8제곱미터이상, 정신지체인 또는 발달장애인 생활시설은 1인당 21.12제곱미터이상,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및 장애영유아 생활시설은 1인당 18.48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1)·(3)·(7)·(8)·(9) 및 (10)의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중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경우에는 (5)·(6)의 설비중 한 설비로 다른 설비를 겸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거 실

(가) 겨울에도 상당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게 설계하여야 한다.

(다)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라) 복도·다락등을 제외한 바닥의 면적은 시설거주자 1인당 6세미만의 경우에는 2.0제곱미터이상, 6세이상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세미만의 경우에는 10인이하, 6세이상의 경우에는 8인이하로 한다.

(마) 6세이상의 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남녀별로 거실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진찰·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 및 기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4) 재활상담실

거실 가까운 곳에 설치하되 비밀보장에 필요한 방음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집단활동실

여가·체력단련·재활프로그램등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자원봉사자실

자원봉사자·후원자등 지역사회 자원활용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추 117)

(7) 조리실

(가)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목욕실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하여 설치하되, 욕탕·샤워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9)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0)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1) 화장실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인생활시설에 있어서의 변기의 수는 여자용은 10인당 2개이상, 남자용은 15인당 대변기 2개, 소변기 2개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2) 급·배수시설

(가) 급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빗물·오수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13)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관리 및 운영요원의 배치기준

시설에는 다음 각목의 관리 및 운영요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이 입소하여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다·라·마·바·아·카 및 타의 요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시설의 장 : 1인

나. 총 무 : 1인

다. 의사 또는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를 포함한다) : 1인이상. 다만, 시설의 장이 의사인 경우에는 의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추 117)

라. 간호사 : 1인이상. 다만, 중증장애인요양시설과 장애영유아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시설거주자 50인당 1인이상

마. 생활보조원 : 시설거주자가 18세이상의 성인의 경우는 10인당 1인이상, 아동 및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시설거주자 5인당 1인이상,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시설거주자 4인당 1인이상,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및 장애영유아생활시설의 경우 시설거주자 3인당 1인이상. 다만,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생활시설에 두어야 할 인원보다 1.5배이상의 인원을 두어야 한다.

바. 영양사 : 1인이상

사. 사무원 : 1인이상. 다만, 시설거주자가 100인이상인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아. 사회재활교사 : 1인이상. 다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경우에는 점자해독이 가능한 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경우에는 수화통역이 가능한 자이어야 하며 여성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에는 적어도 1인의 여성교사를 두어야 한다.

자. 직업훈련교사 : 직업훈련 또는 작업과목에 따라 필요한 인원

차. 시설관리기사 : 1인이상. 다만, 입소하여 생활하는 장애인이 200인이상인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카. 취사원 : 시설당 1인. 다만, 시설거주자가 50인이상인 시설의 경우에는 매 50인을 초과하는 때마다 1인을 추가한다.

타. 세탁원 : 취사원과 동일

5. 관리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직 종 별	자 격 기 준
시 설 의 장	(1)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장애관련 분야에 3년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2) 특수학교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교사(교사자격증소지자)로서 당해 시설 입소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위 각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총 무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 (2) 제1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추 117)

사회재활교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심리학·교육학 또는 장애인재활 관련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직업훈련교사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사업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시설관리기사	전기, 소방설비, 건축설비, 산업안전, 배관설비, 열관리등 시설관리와 관련된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

6.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병설하는 경우에는 주된 시설의 설비 및 직원의 일부로 하여금 병설하는 시설의 설비 및 직원을 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설거주 장애인의 재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시설별 기준

1. 설 비

공통사항에서 정한 기준외에 각목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병설하는 경우에는 주된 시설의 설비 일부로 병설하는 시설의 설비를 겸하게 할 수 있다.

가. 장애인생활시설 및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시 설 별	설 비 기 준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1)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 (가) 시설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재활사업별로 물리치료실·작업치료실·직업훈련실 및 보장구제작실등 필요한 설비와 지체장애인의 치료 및 훈련에 필요한 기계·기구류를 갖추어야 한다. (나) 기능회복훈련에 필요한 운동장·모래밭·경사지등 옥외기능회복훈련장을 갖추어야 한다. (2)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가) 재활사업별로 그 사업 목적달성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옥외운동장을 갖추어야 한다. (다) 2층이상의 건물에는 1개소이상의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 (가) 직업훈련사업을 하는 경우 직업훈련실 및 작업훈련용 기계·기구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가능한 한 청능훈련실·언어치료실과 필요한 기계·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4)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 (가) 작업치료실을 설치하되 작업치료의 종류, 기계기구의 종류 및 작업인원에 따라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중증의 정신지체인을 수용하는 거실은 1층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 필요에 따라 1인용 거실 및 2인용 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1)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중증장애인들이 생활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유행성질환 감염에 대비하여 격리보호실을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격리보호실에는 산소호흡기 및 흡입기(가래제거용)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거실을 중심으로 화장실·욕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4) 잔존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훈련, 치료를 할 수 있는 물리치료실·작업치료실 및 언어치료실등의 필요한 설비와 기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5) 중증장애인의 의료적 진단, 치료에 필요한 각종기구와 진료실, 간호실을 갖추어야 한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1)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장애영유아들이 생활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장애영유아들이 휠체어·유모차등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 및 주거공간등 생활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3) 허약아·미숙아·전염가능아동을 격리·보호할 수 있는 격리보호실이 1개이상 있어야 한다. (4) 신생아를 치료·보호할 수 있는 관계장비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거실을 중심으로 화장실, 욕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6) 잔존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훈련·치료를 할 수 있고,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등의 필요한 설비와 기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추 117)

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시 설 별	설 비 기 준
장애인복지관	(1) 건축물 연면적 : 최소 1천제곱미터이상 (2) 공통기준외 추가설비 (가) 강당 또는 회의실 (나)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다) 휴게실(또는 쉼터) (라) 직업재활실 (마) 장애인보호자 및 자원봉사자 대기실 (바) 기타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의료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장애인주간또는단기보호시설	(1) 건축물 연면적 : 최소 66제곱미터이상 (2) 기본설비 (가) 거 실 (나) 조리실 (다)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라) 사무실 (마) 집단활동실 (바) 화장실 (사) 비상재해대비시설 (아) 기타 장애인의 주간 또는 단기보호에 필요한 설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 기본설비 (가) 거실(1인당 최소 3.3제곱미터이상) (나) 조리실 (다) 화장실 (라) 기타 장애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설비 (2)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최소 생활인원은 4인이상으로 한다.
장애인체육시설	(1) 건축물 연면적 : 최소 900제곱미터이상 (2) 기본설비 (가) 체련실 (나) 경기장 (다)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라) 사무실 (마) 화장실 (바) 기타 장애인의 체육재활에 필요한 설비

(추 117)

장애인수련시설	(1) 대지 및 건축물 연면적 : 최소 1천제곱미터이상 (2) 기본설비 (가) 강당 또는 회의실 (나) 숙소(100인이상의 동시수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라) 사무실 (마) 조리실 (바) 목욕실 (사) 화장실 (아) 기타 장애인의 심신수련에 필요한 설비
점자도서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점서및녹음서출판시설	(1) 기본설비 : 사무실, 제판실, 인쇄실, 교정실, 제본실, 창고 (2) 기본장비 : 제판기, 교정대, 인쇄기, 원판호책제본가공용기구, 제본작업대, 서가점자용지재단기, 지절기

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설별	설비기준
장애인작업활동시설	(1) 최소설비 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7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2) 작업훈련을 받는 최소인원은 10인이상으로 하고 작업활동실의 면적은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1인당 2.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3) 부대시설은 훈련성격 및 시설의 용도를 고려하여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1) 최소설비 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9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2) 장애인근로자의 최소인원은 10인이상으로 하고 작업실의 면적은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1인당 2.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3) 부대시설은 운영업종 및 시설의 용도를 고려하여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1) 최소설비 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43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2) 장애인근로자의 최소인원은 30인이상으로 하고 작업실의 면적은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1인당 2.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3) 부대시설은 직종 및 작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추 117)

장애인직업훈련시설	(1) 최소설비 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9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2) 직업훈련을 받는 최소인원은 20인이상으로 하고 훈련실의 규모는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1인당 2.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3) 부대시설은 훈련업종 및 시설의 용도에 따라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 생산품판매장의 면적은 5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2) 부대시설은 상담 및 판매내용에 따라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

가. 장애인생활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유료복지시설

구분 / 시설별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상담평가요원	청능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	근로시설기사
(1)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가)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	1인이상. 다만, 시설거주 장애인이 매 30인을 초과하는 때마다 1인을 추가한다.	1인이상. 다만, 다른 전문요원이 이를 겸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인. 다만, 다른 전문요원이 이를 겸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			위와 같음			1인	
(다)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			위와 같음	1인 이상	1인 이상		
(라)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을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 장애인을 위	지체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의 경	위와 같음		1인 이상		

(추 117)

위한 생활시설	한 생활시설의 경우와 같음	우와 같음					
(2)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1인 이상		
(3) 장애영유아생활시설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1인 이상		
(4) 장애인근로작업시설	1인이상		1인. 다만, 다른 전문요원이 이를 겸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인 이상

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

(가) 장애인복지관 : 20인이상

(나)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의료법등 관계규정에 의한 필요인원

(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3인이상

(라) 장애인단기보호시설 : 3인이상

(마)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입주장애인 4인당 사회재활교사 1인

(바) 장애인체육시설 : 3인이상

(사) 장애인수련시설 : 5인이상

(아) 장애인심부름센터 : 운전원을 포함하여 6인이상

(자) 수화통역센터 : 3인이상

(차) 점자도서관 : 관장, 사서, 점자지도원, 대출열람원, 교정원 각 1인이상. 다만, 교정원은 점자지도원이 겸할 수 있다.

(카) 점서및녹음서출판시설 : 소장, 편집인, 제판원, 교정원, 인쇄원, 제본원 각 1인이상

(2) 관리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가) 장애인복지관

(추 117)

구 분	자 격 기 준
관 장	①6급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②사회복지사·특수학교 교사·치료사등 장애인재활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8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④장애인복지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대학에서 전임강사이상으로 2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⑤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자
사무국장	①7급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②사회복지사·특수학교 교사·치료사등 장애인재활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1 급	①사회복지 분야에 3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7급이상 공무원 ②사회복지사·특수학교 교사·치료사등 장애인재활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4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2급	①사회복지 분야에 3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8급이상 공무원 ②사회복지사·특수학교 교사·치료사등 장애인재활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3 급	①사회복지 분야에 1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8급이상 공무원 ②사회복지사·특수학교 교사·치료사등 장애인재활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추 117)

4 급	①사회복지 분야에 3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9급이상 공무원 ②사회복지사·특수학교 교사·치료사등 장애인재활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③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5 급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기 능 직	운전·타자·열관리 및 전산등 해당기능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
고 용 직	청소·취사 및 세탁등 당해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점자도서관·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직 종 별	자 격 기 준
시 설 의 장	①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사서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사회복지사업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사 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서 직원의 자격이 있는 자
점자지도원 대출열람원 편 집 원 제 판 원 교 정 원 인 쇄 원	관련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다) 기타 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은 공통기준을 준용한다.

Ⅲ. 시설운영의 기준

1.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요건

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경우에는 다른 장애인에 우선하여 입소시켜야 한다.

나. 전염성질환에 감염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다. 입소 또는 이용 대상시설은 장애유형·장애정도 및 연령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2. 건강관리

가. 장애인생활시설에는 시설거주자 건강관리의 책임자를 두고 의사·간호사

(추 134)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항상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의한 전담의사를 두지 아니한 시설은 시간제로 계약한 의사를 두어야 한다.

다. 생활시설에 입소하는 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라. 생활시설의 시설거주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연 1회이상의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진단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과 휴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생활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3. 급 식

생활시설의 장은 시설거주자가 필요한 영향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한다.

4. 생활지도

가.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문·잡지·라디오·도서(특히 시각장애인생활시설에 있어서는 점자도서등)를 비치하고 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정서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실시하고 적절한 오락용품도 갖추어 시설거주자등의 재활에 도움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5. 관리규정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 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운영방침

나. 직제·정원 및 직원의 업무분장

다. 시설거주(이용)자의 처우요령

라. 시설거주(이용)자의 생활수칙

마. 재활프로그램의 내용

바. 기타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장부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관리에 관한 장부

(1) 직원관계철

(2) 회의록철

(추 117)

(3) 사업일지
(4) 문서철
(5) 문서 접수·발송대장
(6) 차량운행일지

나. 사업에 관한 장부
(1) 시설거주(이용)자 관계서류(신상조사서, 명부, 건강기록부, 입·퇴소자의 명단, 보호의 경과, 지도, 개별 상담등 관계철)
(2) 재활프로그램 관리대장
(3) 교육·훈련관계서류(훈련일지 및 평가관계서류)
(4) 급식관계대장

다.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1)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2)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3) 예산서 및 결산서
(4) 비품수불대장
(5) 비품(장비)대장
(6)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빙서류
(7) 시설거주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8) 각종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

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다음의 장부를 추가로 비치하여야 한다.
(1) 장애인근로자 임금대장
(2) 자재(원료)구매대장
(3) 자재(원료)수불부
(4) 제품수불부
(5) 제품매출대장

7.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안전관리
가. 시설의 장은 근로장애인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된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장은 근로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환경 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작업장비 및 도구의 정리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8. 장애인생활시설에서의 거주자
가. 시설의 장은 시설거주자의 거실 또는 시설거주자의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사회재활교사 그밖의 필요한 직원중 1인을 시설거주자와 함께 기거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설안에서는 시설거주자외에 시설의 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추 117)

거주하지 못한다.

9. 시설의 개방운영

가. 시설운영위원회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설의 기재와 설비등을 지역사회에 최대한 개방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주민이 시설의 기능과 사업에 대하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설거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이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관계를 정립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거주자들이 원하는 지역사회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0. 사 업

가. 시설은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가 스스로 장애를 극복하고 지장없이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적·의학적·심리적 및 직능적 훈련을 행하여야 한다.

나. 재활훈련은 장애인의 유형별·연령별 특성에 따라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 재활훈련은 시설안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훈련효과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장 기타 시설외의 훈련기관에 의뢰하여 행할 수 있다.

라. 시설종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재활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 설 별	재 활 사 업
장애인생활시설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 (1) 의료재활 의료재활은 다음의 치료와 훈련을 혼합하여 행한다. 다만, 그 세부적 방법은 보편화된 치료방법과 훈련방법에 의한다. (가) 의학적 진단 의학적 진단은 재활치료를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현 증상과 치료에 의한 기능적 효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나) 재활치료 정형외과적치료·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료등 재활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심리·사회적 재활 심리·사회적 재활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거주자의 심리적 특성을 정확히 진단하여 각 개인에 알맞은 적절한 조치와 시기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심리·사회적 진단 ①심리·사회적 진단은 각종 검사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생활력에 대한 관찰 및 연구도 병행한다.

(추 117)

②재활치료가 인격형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지도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심리·사회적 재활조치

①집단지도로서 연극·레크리에이션, 각종 그룹활동 및 토론등을 실시한다.

②개별지도로서 심리요법적 상담지도를 행할 때에는 그 심리적 재활효과를 크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처치, 기능회복훈련등 재활지도와 관련하여 적절한 시기에 실시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직업재활

직업훈련은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시설거주자의 적성에 따라 준비훈련 및 응용훈련을 나누어 실시한다.

(나) 직업훈련을 통하여 장애를 극복하고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다) 훈련과목은 시설의 작업환경, 지역특성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되, 장애인의 희망, 적성, 경험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당해 장애인에게 가장 적합한 과목을 선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교육재활

교육재활은 해당장애인의 연령과 특성에 따라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1) 의학적 진단 및 재활

의학적 진단을 통하여 현 증상과 그 기능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알맞은 재활훈련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심리·사회적 재활

지체장애인생활시설에 있어서의 심리·사회적 재활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직업재활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과목의 직업훈련을 하도록 노력하고 다음의 준비훈련 및 기본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생활훈련

시설거주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동작에 숙달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추 117)

(나) 보행훈련

시각장애인의 안전보행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의사소통훈련

점자, 통신, 컴퓨터등 의사소통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CCTV 사용훈련

저시력자의 시력 활용 증진에 관한 훈련 및 보조기기 활용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

(1) 의학적 진단 및 치료

의학적 진단에 있어서는 임상진단과 동시에 청각의 기능적 상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치료에 있어서는 시설거주자의 장애의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치료의 방침을 세워야 한다.

(2) 청력검사 및 어음명료도 검사

청력의 검사는 주로 순음청력검사에 의하여 행하되, 난청의 종류·청력손실·연령등에 의하여 타각적 청력검사·어음명료도 검사등도 함께 행할 수 있다. 또한 청력검사는 청능훈련 및 독화훈련중에도 정기적으로 행하도록 한다.

(3) 청각훈련

(가) 보청기 사용훈련

보청기 사용훈련은 보청기의 일일 사용시간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청기의 검사 및 선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①보청기의 검사는 그 출력·감도·주파수의 특성·음량압축·내구력등 그 성능에 관하여 상세히 하여야 한다.

②보청기의 선정은 청력측정 및 어음명료도 검사등에 의하여 청력장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보청기의 착용에 의하여 어음명료도 및 어음쾌적도의 검사를 행한 후 장애인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청능훈련

청능훈련은 잔존 청력을 훈련하여 건청인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거나 쉽게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청능훈련 기재등을 이용하여 음성 및 언어에 따라 판별능력을 훈련함과 동시에 도로·집회장등 소음이 많은 장소에서의 훈련도 실시하여야 한다.

(추 117)

(다) 독화훈련

독화훈련은 청각을 대신하여 회화의 이해를 쉽게하는 것으로 청능훈련과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라) 운동기능훈련

평형기능장애를 가진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의 원인 및 종류에 따라 운동기능훈련을 행하여야 한다.

(4) 음성·언어기능 재활훈련

시각적 방법·촉각적 방법등과 특수한 기계장치 활용에 의한 언어기능 재활훈련을 실시하되, 청능훈련 및 독화훈련과 관련시켜 실시하여야 한다.

(5) 심리·사회적 재활

지체장애인생활시설에 있어서의 심리·사회적 재활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6) 직업재활

직업훈련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보청기등의 활용에 의하여 직업적응이 쉽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시설거주자의 재활·자립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시킴과 아울러 건청인과의 의사소통 방법등 사회적 개발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다) 직업훈련 과목은 그 지역의 실정과 시설거주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직종을 광범위하게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

(1) 생활지도

시설거주자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을 쉽게 하도록 모든 기회를 통하여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지도

필요한 경우 시설거주자가 자립하여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작업지도를 하되, 1일 8시간, 1주당 4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심리·사회적 재활 및 의료적 재활

정신지체인 또는 발달장애인의 정신적·신체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심리·사회적, 의료적 재활사업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추 117)

(가) 심리·사회적 진단

①심리·사회적 진단은 각종 검사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생활력에 대한 관찰 및 연구도 병행한다.

②재활치료가 인격형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지도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심리·사회적 재활조치

지체장애인생활시설에 있어서의 심리·사회적 재활에 준하여 실시하되, 특히 정신지체인 또는 발달장애인의 정신적·신체적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4) 직업생활지도

시설거주자가 직업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통하여 직업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1) 보호조치

(가) 시설내에 응급조치 및 후송체계를 갖추어 중증장애인의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체적 손상과 감염의 예방을 위하여 격리보호실을 활용하는 등 특별관리하여야 한다.

(나) 시설거주자의 개인별 장애상태와 특성을 파악하여 그 정도에 알맞은 개별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다) 입소장애인의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집단보호와 함께 개별보호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하며 시설거주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시설거주자의 권익이 부당히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의료재활

(가) 잔존기능의 퇴화 방지와 기능 향상을 위한 치료(재활의학치료, 소아과치료,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등)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다) 특수 보장구를 이용하여 대체 기능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생활지도

(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훈련, 감각훈련등 정서의 안정 및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생활 지도 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나) 전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훈련이 실시되어야 한다.

(다) 일상생활에 있어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다양한 경험과 정서적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 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라) 시설거주자 및 보호자 가족의 심리·사회재활을 위한 상담활동 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4) 특수교육

유치원 입학연령에 해당하는 유아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학령기에 해당하는 자는 전원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교육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5) 다른 시설로의 전원

시설거주자중 잔존능력의 향상으로 재활의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그에 적합한 다른 시설로의 전원등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1) 보호조치

(가) 시설내에 응급조치 및 후송체계를 갖추어 장애영유아의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체적 손상과 감염의 예방을 위하여 격리보호실을 활용하는 등 특별관리하여야 한다.

(나) 시설거주자의 개인별 장애상태와 특성을 파악하여 그 정도에 알맞은 개별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2) 의료재활 및 생활지도

중증장애인요양시설에 있어서의 의료재활 및 생활지도에 준하여 실시한다.

(3) 조기 특수교육

조기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3세미만의 영유아에 대하여는 조기특수교육사업이 전개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다른 시설로의 전원

장애영유아의 잔존능력이 향상되어 재활의 가능성이 있는 때, 또는 유아기가 지나 7세이상이 된 때에는 장애유형에 알맞은 다른 생활시설로의 전원등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추 117)

장 애 인 지 역 사 회 재 활 시 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 지역의 특성과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장애인직업 재 활 시 설	〈장애인작업활동시설〉 (1) 교육·훈련 이용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의 유형별·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한 재활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시하여야 하며, 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2) 재활사업 (가)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훈련 : 가정생활 및 독립생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사회적응훈련 :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통합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인관계기술, 각종시설을 이용하는 기술등을 습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 작업훈련 : 작업기능의 향상을 위한 작업활동을 제공하고 보호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작업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라) 통근훈련 : 지역사회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통근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한다. (마) 취미 및 여가활동 :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사회성과 대인관계기술을 습득하고 긍정적인 생활인의 자세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1) 보호고용 장애인근로자에게 보호적인 환경에서 유상적인 작업을 제공하여야 하며, 작업에 대한 보수가 제공되어야 한다. (2) 훈련관리 (가) 장애인근로자의 개인별 재활계획을 수립하여 직업전훈련, 직업적응훈련, 고용상담 및 직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근로자가 작업공정을 잘 이해하고 작업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작업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근로자의 급여지급은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애근로자 개인별통장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추 117)

(3) 재활사업

(가) 보호작업시설의 재활사업은 장애인의 유형, 연령별 특성과 당해 시설에서 수행중인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활사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는 일반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재활사업은 아래의 내용으로 주10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직업전훈련 : 기능학습훈련,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②직업적응훈련 : 보상기능훈련, 인성적응훈련, 작업훈련등

③직업평가 : 작업수행, 태도, 적응, 기능평가

④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⑤부모회의 조직 및 운영

⑥전환고용훈련

(4) 작업환경

(가) 작업공정상 장애인이 아닌 자를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원은 전체 작업인원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시설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근로중인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시설운영개선의 재투자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1) 재활사업

(가) 근로작업시설의 재활사업은 장애인의 유형, 연령별 특성과 현재 수행중인 업종의 특성에 따라 재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는 일반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재활사업은 다음의 내용으로 주4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사회적응훈련 : 대인적응기술, 사회성훈련등

②직업평가 : 작업수행, 태도, 적응, 기능평가

③취업 및 사후지도 : 직업상담, 알선, 사후관리

④전환고용 및 지원고용 : 전환고용, 지원고용

(2) 통근지원

(가) 장애인근로자의 출·퇴근을 돕기 위한 통근차량의 운영등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근로자는 지역적인 접근성, 장애특성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하고 통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추 117)

(3) 근로환경

(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능력에 따라 적정임금을 제공하기 위한 근로활동을 유지하되, 최저임금이상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나) 작업공정상 장애인이 아닌 자를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원은 전체 작업인원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장애인근로자의 급여지급은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애근로자 개인별통장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라) 시설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근로중인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시설운영개선을 위한 재투자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마) 근로장애인의 독립적인 사회경제 활동 및 직업적인 잠재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사회적응훈련, 직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직업훈련시설〉

(1) 직업훈련·평가

직업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의 잠재능력과 현재의 직업능력의 수준을 파악,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재활계획을 수립하여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및 직업평가, 고용알선(지원고용 포함), 사후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재활사업

(가) 직업준비훈련 : 기술훈련이나 취업에 앞서 직업생활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직업의식, 태도, 예절등을 훈련하여 직업인으로서의 기본소양과 자질을 갖추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직업훈련 :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기술과 기능을 훈련하여 적합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 기능인으로 양성한다.

(다) 사회적응훈련 :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술외에 각종 지역사회시설 이용, 대인관계, 직장예절, 작업태도, 금전관리기술등을 습득하여 원만한 직업생활을 하도록 지도한다.

(라) 상담지도 : 개인의 신상, 사회적응, 동료관계, 가정문제등을 상담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개별,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새로운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여 원만한 직업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지도한다.

(추 117)

	(마) 현장훈련 및 고용전환 : 현장에서의 훈련을 통하여 지역사회 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바)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 훈련성과를 평가, 분석하여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적합직종에 취업을 알선하고 안정적으로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한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 사업내용 판매시설은 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가) 상담사업 : 재가장애인 및 생산시설에 대한 상담 및 관리 (나) 판촉사업 : 생산품의 전시·판매, 특별판매행사, 조달관련사업등 (다) 홍보사업 : 홍보물의 제작, 배포 (라) 개발사업 : 개인, 단체별 판로개척 (2) 생산품 선정 및 관리 (가) 판매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서 생산하는 물품과 재가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을 선정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나) 판매제품은 시장성과 소비자의 이용편익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장애인의 생산수준과 지역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판매제품 선정시에는 지역시장의 여건 및 판로구축 방안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라) 작업공정 및 생산품의 성격상 직업재활시설 이외의 시설에 하청을 주어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과정에 70퍼센트이상의 장애인근로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마) 판매수익금은 장애인 생산제품의 구입비, 관리운영비, 자원봉사관리비등 장애인의 생산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판매기술의 확보 (가) 판매시설은 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위한 상담, 판촉, 홍보등의 기술습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 소비계층별 취향과 장애인 생산수준의 적정성등을 고려한 마아켓팅 전략을 수립하여 장애인생산품의 판로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과 같다.

(추 117)

〔별표 5〕

의지·보조기관련 교과목(제47조관련)

구 분	교 과 목
법 규(1)	보건의료관계법규
의 학(4)	해부·생리학 재활의학(정형외과학을 포함한다) 재활치료학(물리치료학 및 작업치료학을 포함한다) 인체운동학
공 학(3)	생체역학 재활공학(설계 및 제도학을 포함한다) 의지·보조기 재료학
전 문(6)	의지·보조기학개론 상지의지학 하지의지학 상지보조기학 하지보조기학 척추보조기학

〔별표 6〕

행정처분의 기준(제57조관련)

1. 일반기준

처분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해당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처분을 하는 때에도 법 제61조제2항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자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1. 의지·보조기제조업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지·보조기착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가한 사실이 있는 자	법 제61조 제2항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2. 의지·보조기기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지·보조기 착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가한 사실이 있는 자	법 제68조 제1호	자격정지 3월	자격정지 6월
3.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이상 받지 아니한 의지·보조기기사	법 제68조 제2호	-	자격정지 1월

(추 117)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1·6·30〉 (앞 쪽)

장 애 인 등 록 신 청 서

장 애 인	한글성명		영 문 성 명 ※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장애부위 및 상 태			입 소 시 설 명		
세 대 주 (보호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상담소견	장애부위 및 상태 : (해당란에 ☑표시)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단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복 지 요 구	☐ 재활보조기구 지원 ☐ 학 비 ☐ 직업훈련 ☐ 장애수당등 ☐ 취업알선 ☐ 시설입소 ☐ 특수교육 ☐ 자금대여 ☐ 기 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와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분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십시요.

☐ 신 용 ☐ 직 불 ☐ 기 타 ※ 공무원이 기재합니다.

장애인	직 장 명		부서/직위	/	휴 대 폰	☎)
	직 장 주 소			직 장 전화번호	☎)	
보호자	성명 한 글		주민등록 번 호		장애인과 의 관 계	
	성명 영 문					
	직 장 명		부서/직위	/	휴 대 폰	☎)
	직 장 주 소			직 장 전화번호	☎)	
대금결제	대금청구지	①자택 ②직장			비밀번호	
	대금결제일	①1일 ②5일 ③11일 ④17일			☐☐☐☐	
자동이체 신 청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성 명	
소유차량	장애인용 LPG자동차	☐ 있음 ☐ 없음	차량명의		☐ 본 인 ☐ 보호자 ☐ 공동명의	

장애인복지법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진(2.5㎝ × 3㎝) 2매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추 134)

※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금융기관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의 사본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 장애인용 LPG자동차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대상인 LPG자동차(택시등 영업용 제외)를 말합니다.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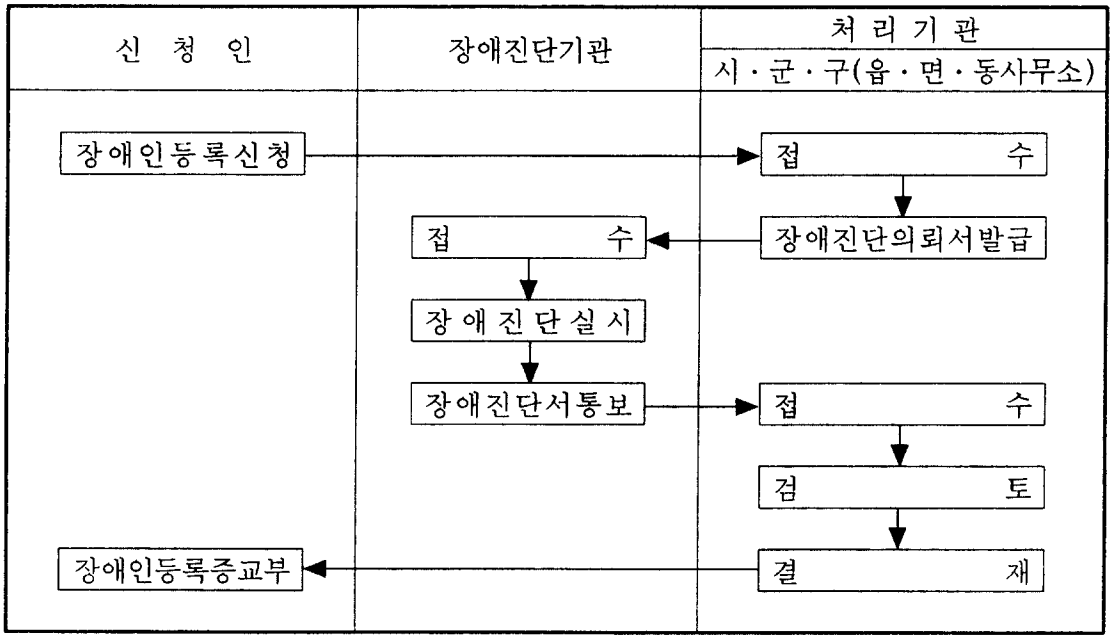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장 애 진 단 의 뢰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장애유형 :

위 사람의 장애진단을 의뢰하오니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상의 기준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하여 진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의료기관장) 귀하

※ 첨 부 : 장애진단서 서식 2부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table>
<tr><td colspan="6">장 애 진 단 서</td></tr>
<tr><td rowspan="3">진 단
대 상 자</td><td>성 명</td><td></td><td>성 별</td><td></td><td rowspan="3">사 진
2.5cm × 3cm</td></tr>
<tr><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주 소</td><td colspan="3">(전화번호 :)</td></tr>
<tr><td rowspan="5">장애상태</td><td>장 애 명</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장 애 부 위
또는 질환명</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장 애 정 도</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장 애 원 인</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장애발생시기</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진단의사
소 견</td><td colspan="5"></td></tr>
<tr><td>장애등급</td><td colspan="5">( )장애인 급 호</td></tr>
<tr><td>재 판 정</td><td>필요사유</td><td colspan="2"></td><td>재판정할 시기</td><td></td></tr>
</table>

장애인복지법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진단결과를 통보합니다.

. . .

진 단 의 사 명 (서명 또는 인)

(의사면허번호)

진 단 기 관 명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비 고

1. 장애진단 및 진단서 발행시 진단받는 자가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진단서는 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우송하여야 합니다.
2. 장애등급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을 기재합니다.

210㎜×297㎜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01·6·30〉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01·6·30〉 (앞 쪽)

장애인등록증재교부신청서

장애인 성명	한 글		주민등록 번호		종전 등록증 발급기관 (시·군·구)	
	영 문					
	※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					
재교부 사유	□분실 □훼손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교부신청 □기타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와 통합된 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분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십시요.

※ 신용카드 기능을 직불카드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난중 자동이체신청란의 계좌번호란에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십시요.

장애인	직 장 명		부서/직위	/	휴 대 폰	☎)
	직 장 주 소			직 장 전화번호	☎)	
보호자	성명	한 글		주민등록 번 호		장애인과의 관계
		영 문				
	직 장 명		부서/직위	/	휴 대 폰	☎)
	직 장 주 소			직 장 전화번호	☎)	
대금결제	대금청구지	①자택 ②직장			비밀번호	
	대금결제일	①1일 ②5일 ③11일 ④17일			□□□□	
자동이체 신청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소유차량	장애인용 LPG자동차	□있음 □없음	차량명의		□본 인 □보호자 □공동명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추 134)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합니다) ※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금융기관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의 사본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 장애인용 LPG자동차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대상인 LPG자동차(택시 등 영업용 제외)를 말합니다.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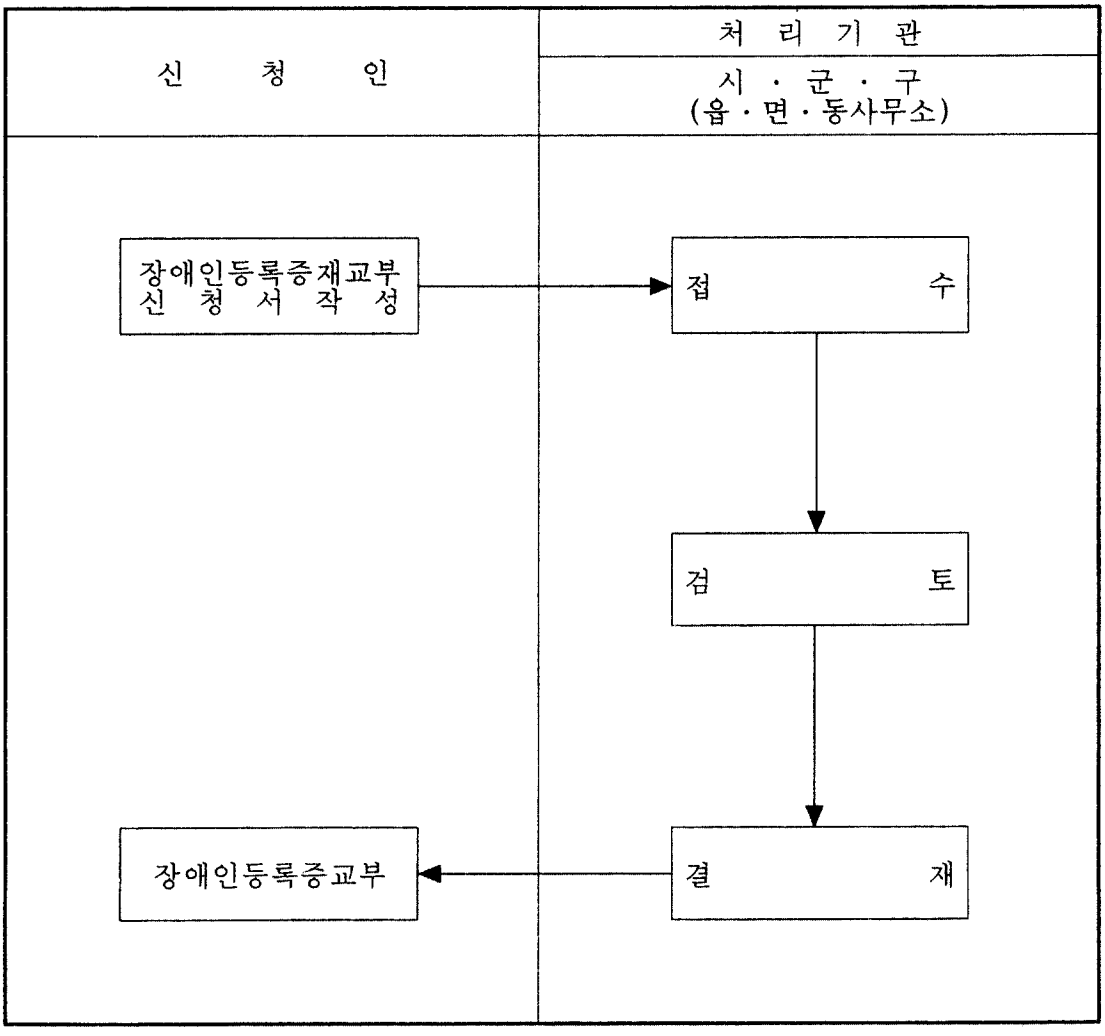

(추 134)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01·6·30〉 (앞 쪽)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3 일
장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보호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발 급 기 관					

변경내용	현 행	변 경	사 유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장애인등록증
2.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비 고

1. 이 서식은 장애인등록증의 기재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등록카드에 변경내용을 기록한 후 장애인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교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군·구(3일) (읍·면·동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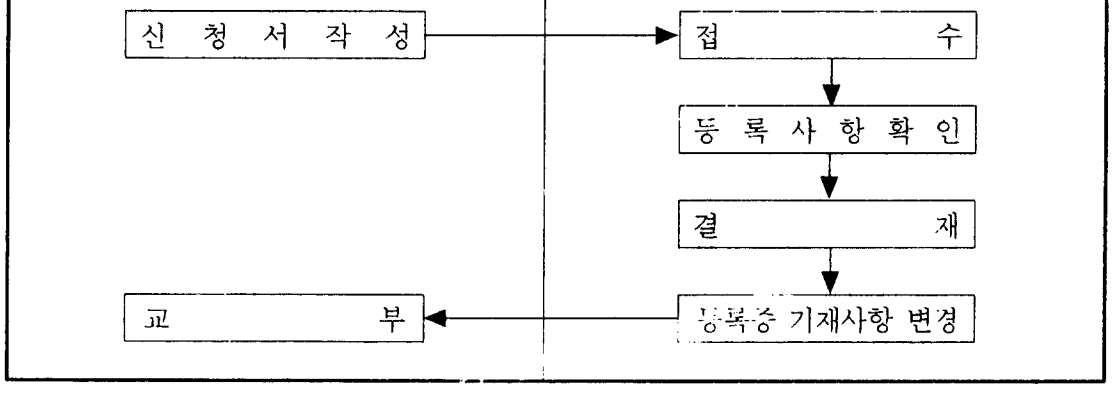

(추 134)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장 애 등 급 조 정 신 청 서						처리기간 15 일
장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입소시설명		
보호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인과의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장애인등록증	교부번호	제 호 (교부기관)		교부일자	년 월 일	

조정신청내용	구 분	현 재	※조 정	신 청 사 유
	장 애 명			□ 예전보다 더욱 심함 (심한상태 :)
	장 애 등 급			
	중복장애명			□ 예전보다 호전되었음 (호전된 상태 :)
	진단기관명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비 고 : ※표란은 확인관청에서 기재할 사항이오니 쓰지 마십시오.

수수료 없 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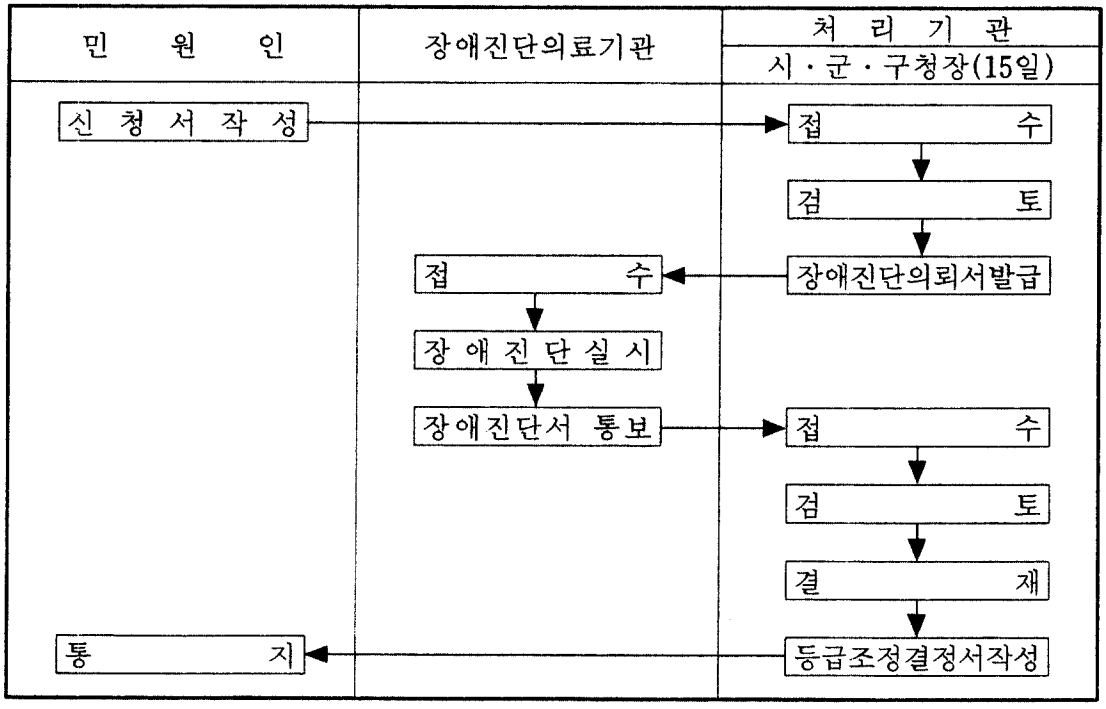

(추 117)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장애등급재판정통보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보호자성명 :

장애인등록증 : 제 호(년 월 일 교부)

위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을 재판정받아야 함을 통보하오니 아래 기한까지 주소지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장애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단기한 : . . .

위 진단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제 호

장애인등록증반환명령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보호자성명 :

반환등록증 : 제 호(년 월 일 교부)

반 환 사 유 :

반 환 기 일 :

반 환 장 소 :

(추 117)

벌 칙 : 반환기일까지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의 반환을 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발급번호 / 제 호		장 애 인 증 명 서			
장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		보호자와의 관계		
장애종별 및 등급			등 록 번 호		
용 도					
제 출 처					

위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확 인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추 117)

〔별지 제12호서식〕 (제1면)

장 애 인 등 록 현 황								
구 분			전분기 누 계 (a)	당 분 기 증 (△) 감				당분기까지누계 (f=a+b+c-d-e)
				신규등록 (b)	전 입 (c)	전 출 (d)	기 타 (e)	
합 계		계						
		남						
		여						
지체장애인	소계	계						
		남						
		여						
	1급	계						
		남						
		여						
	2급	계						
		남						
		여						
	3급	계						
		남						
		여						
	4급	계						
		남						
		여						
	5급	계						
		남						
		여						
	6급	계						
		남						
		여						
뇌병변장애인	소계	계						
		남						
		여						
	1급	계						
		남						
		여						
	2급	계						
		남						
		여						
	3급	계						
		남						
		여						
	4급	계						
		남						
		여						
	5급	계						
		남						
		여						
	6급	계						
		남						
		여						
비 고 : 기타란은 사망·이민등의 수를 기재합니다.								

210㎜×297㎜
(보존용지(1종) 70g/㎡)

(추 117)

(제 2 면)

구 분			전분기 누계 (a)	당분기증(△)감				당분기까지누계 (f=a+b+c-d-e)
				신규등록 (b)	전 입 (c)	전 출 (d)	기 타 (e)	
시각장애인	소계	계						
		남						
		여						
	1급	계						
		남						
		여						
	2급	계						
		남						
		여						
	3급	계						
		남						
		여						
	4급	계						
		남						
		여						
	5급	계						
		남						
		여						
	6급	계						
		남						
		여						
청각장애인	소계	계						
		남						
		여						
	1급	계						
		남						
		여						
	2급	계						
		남						
		여						
	3급	계						
		남						
		여						
	4급	계						
		남						
		여						
	5급	계						
		남						
		여						
	6급	계						
		남						
		여						

(추 117)

(제3면)

구 분			전분기누계 (a)	당분기증(△)감				당분기까지누계 (f=a+b+c-d-e)
				신규등록 (b)	전 입 (c)	전 출 (d)	기 타 (e)	
언어장애인	소계	계						
		남						
		여						
	1급	계						
		남						
		여						
	2급	계						
		남						
		여						
	3급	계						
		남						
		여						
	4급	계						
		남						
		여						
	5급	계						
		남						
		여						
	6급	계						
		남						
		여						
정신지체인	소계	계						
		남						
		여						
	1급	계						
		남						
		여						
	2급	계						
		남						
		여						
	3급	계						
		남						
		여						
발달장애인	소계	계						
		남						
		여						
	1급	계						
		남						
		여						
	2급	계						
		남						
		여						
	3급	계						
		남						
		여						

(추 117)

(제 4 면)

구 분			전분기 누계 (a)	당분기증(△)감				당분기까지누계 (f=a+b+c-d-e)
				신규등록 (b)	전 입 (c)	전 출 (d)	기 타 (e)	
정신장애인	소계	계						
		남						
		여						
	1급	계						
		남						
		여						
	2급	계						
		남						
		여						
	3급	계						
		남						
		여						
신장장애인	소계	계						
		남						
		여						
	1급	계						
		남						
		여						
	2급	계						
		남						
		여						
	4급	계						
		남						
		여						
	5급	계						
		남						
		여						
심장장애인	소계	계						
		남						
		여						
	1급	계						
		남						
		여						
	2급	계						
		남						
		여						
	3급	계						
		남						
		여						

(추 117)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장 애 인 의 료 비 청 구 서					처리기간 20 일
※ 접수번호	※ 접 수 일	※ 처 리 일	※ 담 당		※ 확 인
제 호	년 월 일	년 월 일			

의료기관	지정번호	제 호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우편번호		
				전화번호		

청 구 내 용					
진료장애인성명		주민등록번 호		의료보장증의 종 류	(1종·2종)
장애인등록증번호	제 호	장 애 명		장 애 등 급	급 호
진료비용의 내용					
청 구 건 수	총 진 료 비	의료보호부담액	본인부담액		비용청구액

장애인복지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장애인의료비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장애인진료비명세서 1부 비 고 : ※표란은 확인관청에서 기재할 사항이오니 기재하지 마십시오.	수수료 없 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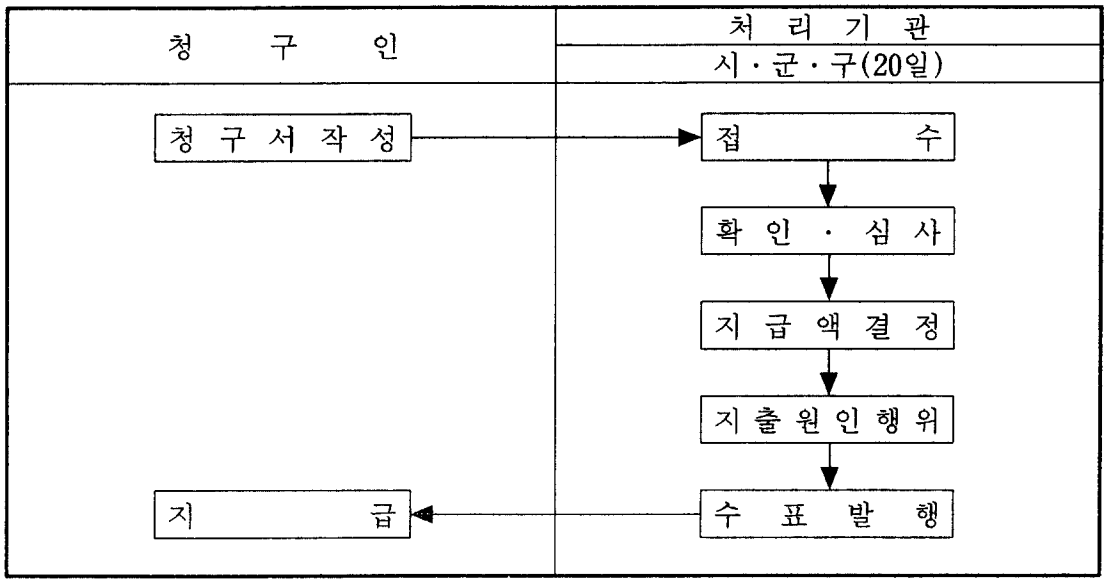

(추 117)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2001·6·30〉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발급번호 제 호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사용장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장애유형 및 등급	장애 급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자동차	자동차등록번호		차종·차명	
	차대번호		연 식	
	배기량	cc	용 도	
재발급신청사유				

위 자동차는 장애인이 사용하는(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신규발급의 경우에 한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 한합니다)
3.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 한합니다)
4. 장애인자동차표지(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을 위한 재발급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5. 재발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기재사항의 변경을 위한 재발급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6. 사진(3센티미터 × 4센티미터) 2매(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비 고 : 등록장애인인지의 여부와 보호자명의 차량인 경우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인지의 여부는 공부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 × 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추 134)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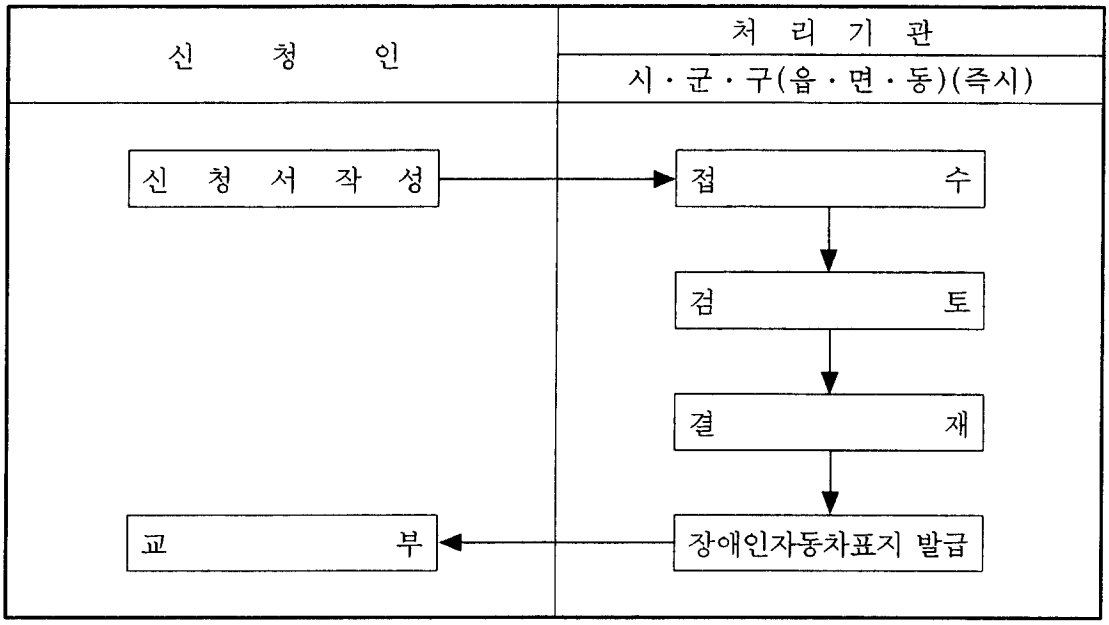

〔별지 제16호서식〕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관리대장

발급번호	일자	장애인					자동차					구분	비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유형 및 등급	주소	사진	등록번호	차종 차명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297㎜×210㎜
(보존용지(2종) 70g/㎡)

※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 - 일련번호를 기입합니다(예, 90-001, 002).
2. 발급구분 : 신규 및 재발급등 해당발급종류를 기재합니다.
3. 비 고 : 반납 및 변경내용등 주요사항을 기재합니다.

(추 134)

〔별지 제17호서식〕 (앞 쪽)

장애인보조견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1. 신청기관 개요

기 관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2. 신청대상 보조견(해당란에 ☑표시)

보 조 견 명		성 별		모 색	
생 년 월 일	년 월 일	훈 련 기 간	월		
담당조련사명		훈 련 이 수 여 부	□훈 련 중 □훈련이수		

3. 사용자(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이 름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장애유형 및 등급	

장애인복지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2항(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의 발급(재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훈련기관의 장)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장애인보조견의 전신사진 1매	없 음

2. 장애인보조견이 훈련중에 있거나 훈련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재발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재발급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4. 장애인보조견표지(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합니다)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추 134)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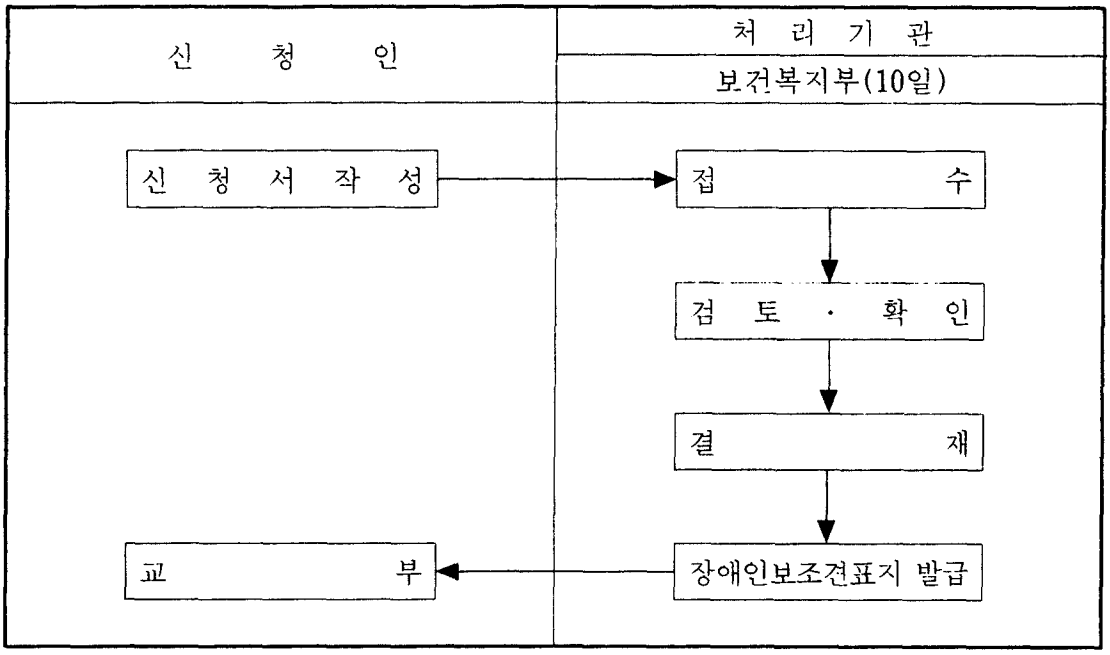

〔별지 제18호서식〕

장애인보조견표지 발급대장

발급 번호	발급 연월일	발급 구분	보조견					사용자				비고
			이름	생년 월일	모색	훈련 기관	훈련 기간	이름	주민 등록 번호	주소	장애 유형 및 등급	

297㎜×210㎜
(보존용지(2종) 70g/㎡)

※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 -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예 : 2000 - 1).
2. 발급구분 : 신규 또는 재발급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사 용 자 : 보조견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별지 제19호서식〕 내지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2001·6·30〉

(추 134)

〔별지 제22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				
시설개요	명칭		시설종류				
	소재지		(전화)				
	시설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설치연월일		입소정원				명
시설설비내역	거실	㎡	사무실	㎡	의료재활실	㎡	
	재활상담실	㎡	집단활동실	㎡	직업훈련실	㎡	
	조리실	㎡	목욕실	㎡	세탁장	㎡	
	건조장	㎡	화장실	㎡	도서실	㎡	
	오락실	㎡	자원봉사자실	㎡	강의실	㎡	
	강당	㎡	운동장	㎡	대지	㎡	
	기타						
직원	정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예산	수입총액	지출총액		
	명	명		원	원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정관 1부(법인에 한합니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합니다)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합니다)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7.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합니다)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추 117)

〔별지 제23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 □명 칭 □시설의 장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법 인 명		대표자성명		
	주 소	(전화 :)			
시설 현황	명 칭		종 류		
	소 재 지	(전화 :)			
변경 내용	시설의 명칭				
	시설의 장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면허·자격 (번 호)
	시설의 장 주 소	(전화 :)			
변 경 사 유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시설의 장)을 변경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 □소 재 지 □입소정원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 일
신청인	①법 인 명		②대표자성명			
	③주 소	(전화번호 :)				
시설 개요	④명 칭		⑤종 류			
	⑥소 재 지	(전화번호 :)				
	⑦시설장성명		⑧변경연월일		⑨현입소인원	명
변경 사항	구 분	⑩변 경 전		⑪변 경 후		
	⑫소 재 지					
	⑬입 소 정 원	명		명		
⑭재 산 활 용 계 획						
⑮사 유						

(추 117)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입소정원)를 변경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사유서 1부	없 음
2. 시설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조서 1부(입소정원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5.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앞 쪽)

제 호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시설의 명칭:
소 재 지:
시 설 종 류:
입 소 정 원: 명
운영법인명:
시설의 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 고 조 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신고서를 수리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210㎜×297㎜
(보존용지(1종) 120g/㎡)

(추 117)

(뒤 쪽)

1. 변경사항

번호	연월일	변 경 내 용	기재자성명㊞

2. 행정처분 사항

처분연월일	근 거	처 분 내 용	기재자성명㊞

〔별지 제26호서식〕 (앞 쪽)

장애인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

1. 신고사항

시설 개요	시설의 명칭		시설의 종류	
	신고번호		설치·운영연월일	
	소재지	(전화 :)		
	시설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소정원	명		
시설의 운영자	법인명		대표자	
	주 소	(전화 :)		
직 원	총인원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명	명		
예 산	수입총액	지출총액		
	원	원		

2. 공통내역

거 실	㎡	사 무 실	㎡
의료재활실	㎡	재활상담실	㎡
집단활동실	㎡	직업훈련실	㎡
조 리 실	㎡	목 욕 실	㎡
세 탁 장	㎡	건 조 장	㎡
화 장 실	㎡	도 서 실	㎡
오 락 실	㎡	자원봉사자실	㎡
강 의 실	㎡	강 당	㎡
운 동 장	㎡	대 지	㎡
	㎡		㎡
	㎡		㎡

3. 개별설비

설비명	규모	설비명	규모
	㎡		㎡
	㎡		㎡
	㎡		㎡
	㎡		㎡
	㎡		㎡

4. 기타설비

설비명	규모	설비명	규모
	㎡		㎡
	㎡		㎡
	㎡		㎡
	㎡		㎡
	㎡		㎡

297㎜×210㎜
(보존용지(2종) 70g/㎡)

(추 117)

(뒤 쪽)

5. 각종 변경내용		
연·월·일	내 용	기재자성명㊞

6. 행정처분 사항			
처분연·월·일	문서번호	내 용	기재자성명㊞

〔별지 제27호서식〕

제 호

장애인복지시설입소(통원)의뢰서

입소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장애원인	
	장애명		장애등급	급 호	중복장애명	
보증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직 업		입소(통원)장애인과의 관계			
입소(통원)기간						
위탁비용지원내역						

장애인복지법 제31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의 입소(통원)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귀하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추 117)

〔별지 제28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중단 □운영재개 신고서 □폐 지					처리기간 5 일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			
시설개요	명칭		종류		
	소재지		시설장의 성명		
	중단·재개·폐지 연월일		중단기간		

입소자 조치계획	퇴소						위탁	기타
	귀가	명	전원	명	취업	명	명	명

재산활용계획	
중단·재개 또는 폐지 사유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을 폐지(시설의 운영을 중단·재개)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시설운영의 중단·재개·폐지사유서 1부(법인의 경우에는 중단·재개·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없 음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3. 시설거주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4. 보조금·후원금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5.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6.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추 117)

〔별지 제29호서식〕 (앞 쪽)

재활보조기구교부(대여·수리)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1. 인적사항(해당란에 ☑ 표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남·여	
전 주 소						
현 주 소	(전화번호 :)					
전입연월일	년 월 일		직 업			
주 거 형 태	□ 재가(자가, 전세, 월세) □ 시설입소 □ 기 타					
사 회 보 장	□ 생활보호(시설·거택·자활) □ 기 타					
2. 신청내용(해당란에 ☑ 표시)						
장 애 명		장애등급	급 호	중복장애명		
희망보조기구	□ 재활보조기구명( )					
수리를 요하는 부위		교부(대여·수리)상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3.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실적(최근)						
교부연도	종 류	교부기관	교부연도	종 류	교부기관	

장애인복지법 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대여·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추 117)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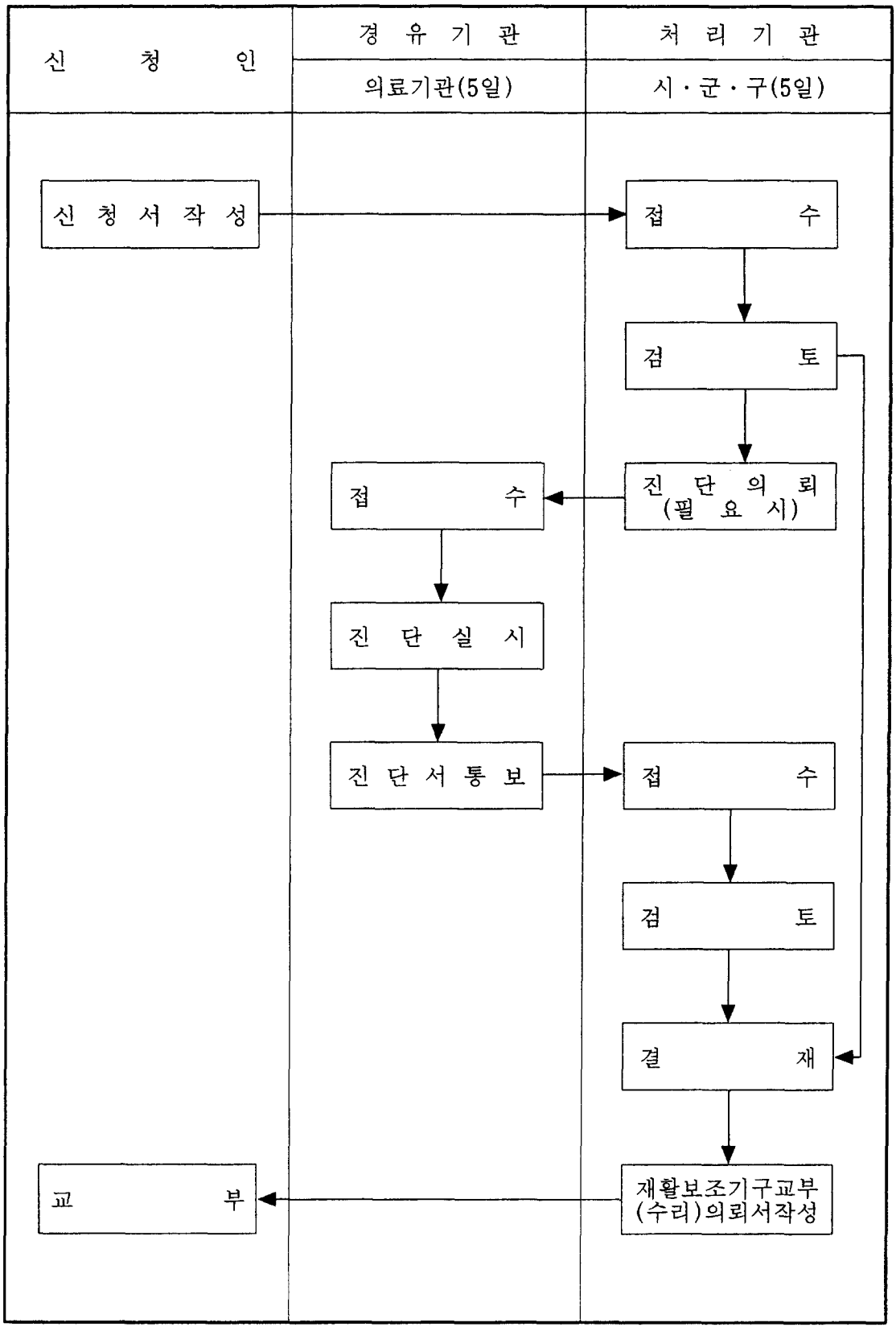

(추 117)

〔별지 제30호서식〕

재활보조기구교부(수리)의뢰서						
장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남·여
	주 소					
	장 애 명		장 애 등 급		급 호	
재활보조기구종류 및 처방			보조기구제조(수리)에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사항			
비고						

장애인복지법 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업체장) 귀하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1호서식〕 (앞 쪽)

재활보조기구교부(수리)비용청구서						처리기간 15 일
보조기구 업체	업 체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우 편 번 호	
					전 화 번 호	
청 구 내 용						
장 애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남·여
	주 소				장애종류 및 등급	
보조기구 제조·수리내역	보조기구종류		비용청구금액			천원
	보조기구 수리 부위		소요비용 산출내역			

장애인복지법 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의료기관의 확인서 1부(재활보조기구가 처방대로 제조·수리되었는지의 여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추 117)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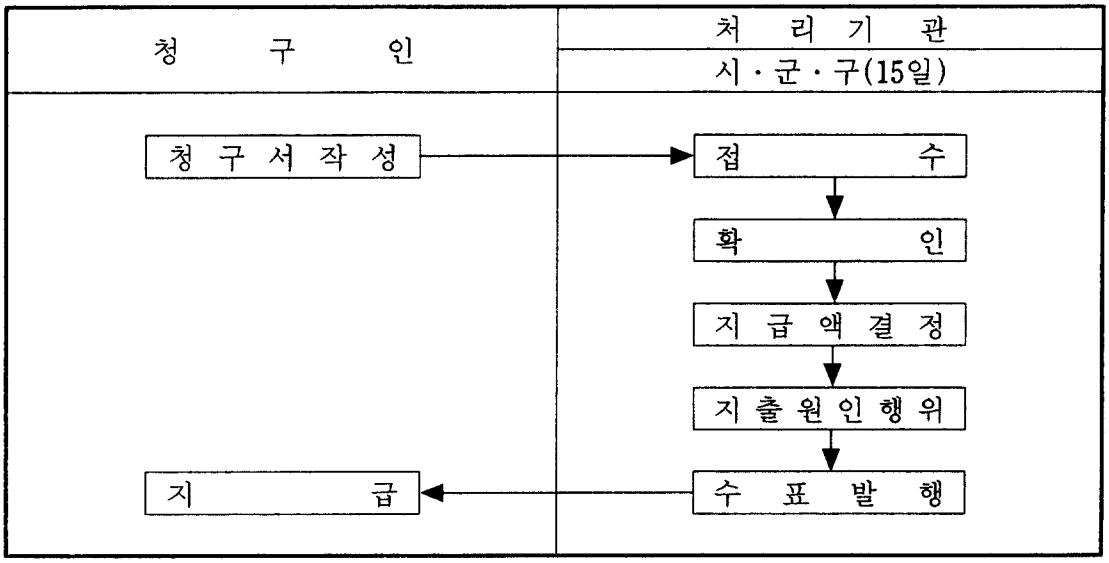

〔별지 제32호서식〕 (앞 쪽)

우수재활보조기구업체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업체	업 체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시설개요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상 시 종 업 원 수	명	제조·수리기술자 (의지·보조기기사)		명 (명)		
시설설비	시설총규모	㎡	상 담 실	㎡	채 형 실	㎡	
	작 업 실	㎡	기 타	㎡	장 비	종	
자 산 총 액		천원	연 간 총매출액	천원	연간주생산품 매 출 액	천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재활보조기구업체로 지정하여 줄 것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업체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재활보조기구개발·보급 계획서 1부
2. 지정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1부
3. 재활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실적 1부
4. 재산목록(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추 117)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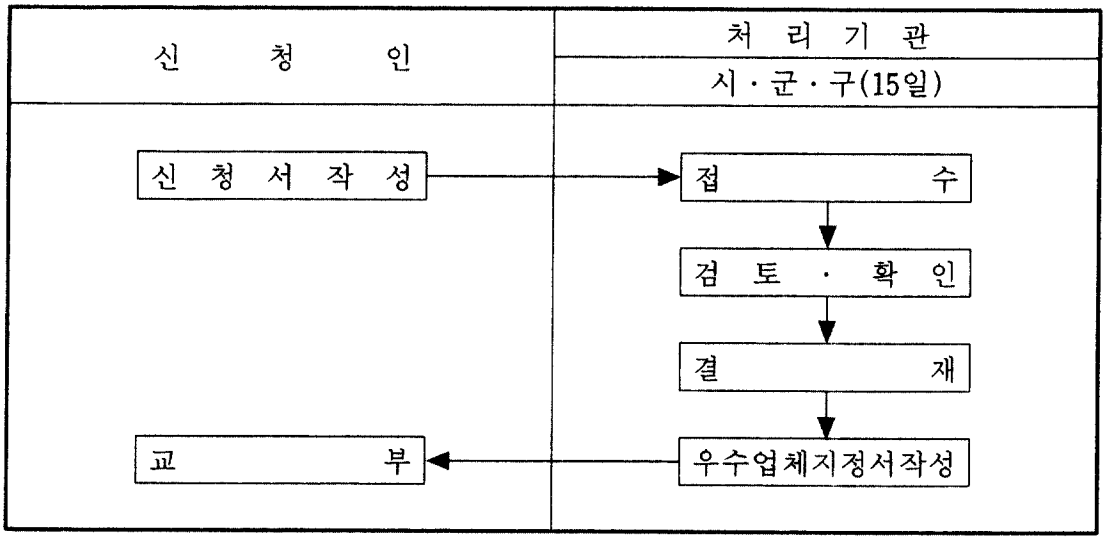

〔별지 제33호서식〕

제 호

우수재활보조기구업체지정서

업 체 명 칭 :
소 재 지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개 설 연 월 일 :
재활보조기구종류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재활보조기구업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인

190㎜×268㎜
(보존용지(1종) 120g/㎡)

(추 117)

〔별지 제34호서식〕

의지·보조기제조업 □개설 □변경 통보서						
업 소	명 칭		개설일자			
	소 재 지	(☎)				
개설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시설 개요	시설총규모	㎡	상 담 실	㎡	채 형 실	㎡
	작 업 실	㎡	기 타	㎡	장 비	종
	상시종사자수	명	의지·보조기기사수		명	
기사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증번호		자격취득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증번호		자격취득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증번호		자격취득일			
변경내역						

장애인복지법 제6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지·보조기제조업 개설(변경)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개설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내역서 1부(개설의 경우에 한합니다)
2. 제조·수리를 담당할 의지·보조기기사의 자격증 사본 1부(개설 또는 의지·보조기기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통보의 경우에 한합니다)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추 117)

〔별지 제35호서식〕 (앞 쪽)

의지·보조기제조업소관리대장

1. 개설통보내용

업 소	명 칭		개설일자		
	소 재 지	(전화번호 :)			
개 설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시 설 개 요	시설총규모	㎡	상 담 실	㎡	채 형 실 ㎡
	작 업 실	㎡	기 타	㎡	장 비 종
	상시종사자수	명	의지·보조기기사수		명
기 사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자격증번호		자 격 취 득 일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자격증번호		자 격 취 득 일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자격증번호		자 격 취 득 일		

297㎜×210㎜
(보존용지(1종) 70g/㎡)

(뒤 쪽)

2. 변경내용

연 월 일	내 용	기재자성명㊞

3. 행정처분 사항

처분연월일	문서번호	내 용	기재자성명㊞

(추 117)

〔별지 제36호서식〕 (앞 쪽)

의지·보조기기사자격증교부신청서						처리기간
응시번호		※ 합격증번호		합격연도		60 일
신청인	성 명	(한글) (한자)				사 진 (3cm×4cm)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출신학교		졸업일자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지·보조기기사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 접수자		수수료
1.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1부(외국학교 출신자의 경우에는 외국학교의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및 의지·보조기기사자격증 사본 각 1부)			없 음
2.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3. 사진(3cm×4cm) 2매(응시원서에 첨부한 것과 동일원판의 것이어야 합니다)			

※표는 본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절---------취---------선----------

자격등록증교부신청서접수증			
접수번호		자격종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추 117)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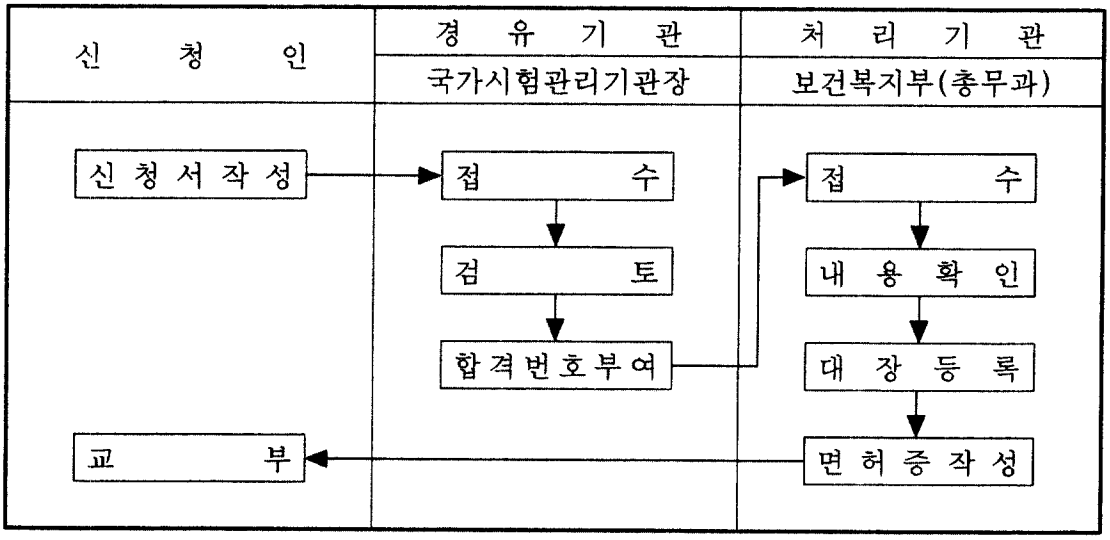

〔별지 제37호서식〕

제 호

사 진
(3cm×4cm)

의지·보조기기사자격증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근 거

위와 같이 자격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190㎜×268㎜
(보존용지(1종) 120g/㎡)

(추 117)

〔별지 제38호서식〕 (앞 쪽)

자 격 등 록 대 장

작성		담당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사 진 (3cm×4cm)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 호				
등록근거	년 월 일 대학(전문대) 과졸업 년 월 일 제 회 국가시험 합격 제 호			

관련면허 (자 격)	종 별	번 호	취득연월일	합격연월일	합격번호

190㎜×134㎜
(보존용지(1종) 70g/㎡)

(뒤 쪽)

행 정 처 분 사 항

(추 117)

〔별지 제39호서식〕 (앞 쪽)

				주민등록증 대조필	
의지·보조기기사자격증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 진 (3cm×4cm)
	주 소	(전화번호 :)			
자격증번호			교부연월일		
신청사유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지·보조기기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의지·보조기기사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설명서) 1부	(수입인지) (2000원)
2.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사진 2매	
3.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재교부신청에 한합니다) 1부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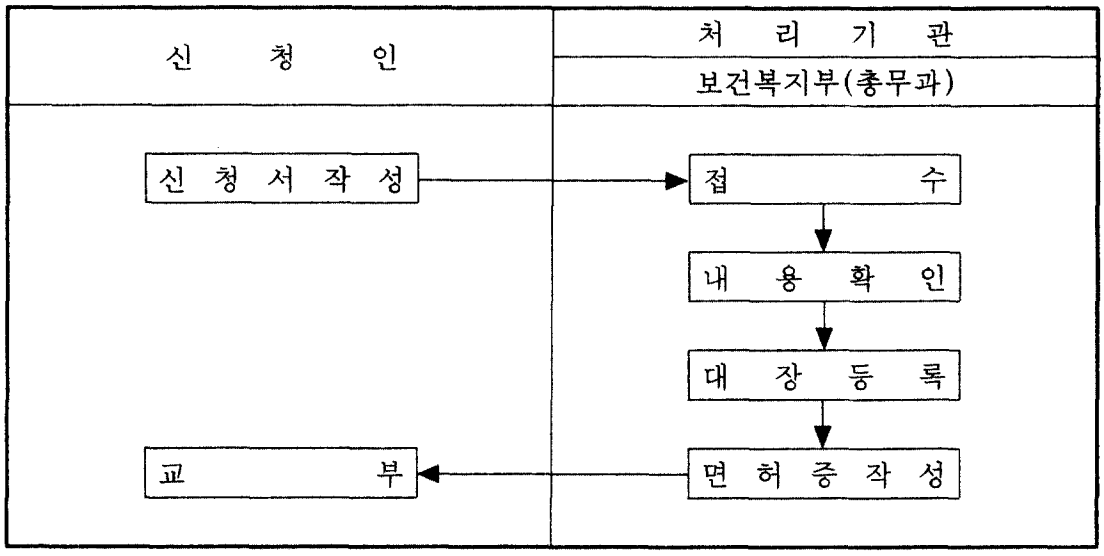

(추 117)

〔별지 제40호서식〕

기 관 명

우/주소	전화번호( )	FAX( )
○○○과	과장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보건복지부장관 발 신 ㊞
제 목 년도 보수교육계획서 제출

보수교육 실시기관명	교육예정 인원	교육과목	교육예정 시간	교육예정 일자	소요예산	피교육자 경비부담액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1호서식〕

기 관 명

우/주소	전화번호( )	FAX( )
○○○과	과장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보건복지부장관 발 신 ㊞
제 목 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 제출

기관명		대표자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			
보수교육 대상자수	보수교육 이수자수	보수교육 미이수자수	미이수 사유	비 고
※ 당초 보수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기재함				
1. 변경내용				
당 초		변 경		
2. 변경사유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추 117)

〔별지 제42호서식〕

보수교육이수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격종별		자격증번호	제 호

귀하는 년도 차 보수교육 전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장애인복지법 제6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증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국립재활원장 ㊞

190㎜×134㎜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3호서식〕

비용수납신고서						처리기간 10 일
대상 장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장애명		장애등급	급 호	중복장애명	
신청내용						
부양 의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부담능력		장애인과의 관계			
비용수납예정금액	비용산출근거					
매월 원						

장애인복지법 제7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에 입소·통원 또는 이용하는 자의 비용을 수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시설명) (설치·운영자)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추 117)

X.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障碍人·老人·妊産婦등의便宜增進保障에관한法律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制定 1997·4·10 法律第5332號
改正 1997·12·13 法律第5453號(行政節次法의施行에따른公認會計士法등의整備에관한法律)
1999·1·21 法律第5672號

第1條 (目的) 이 法은 障碍人·老人·妊産婦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安全하고 편리하게 施設 및 設備를 이용하고 情報에 接近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社會活動參與와 福祉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障碍人등"이라 함은 障碍人·老人·妊産婦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移動과 施設利用 및 情報에의 接近등에 불편을 느끼는 者를 말한다.
2. "便宜施設"이라 함은 障碍人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移動과 施設利用의 편리를 도모하고 情報에의 接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施設과 設備를 말한다.
3. "施設主"라 함은 이 法에서 정하는 對象施設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당해 對象施設에 대한 별도의 管理義務者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4. "施設主管機關"이라 함은 便宜施設의 設置 및 운영에 관하여 指導와 監督을 행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 및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道路"라 함은 道路法 第2條 및 第3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 및 그 附屬物과 地下道路의 구조 및 設置에 관한 建設交通部令에서 規定하고 있는 地下道路를 말한다.
6. "公園"이라 함은 自然公園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自然公園 및 同條第7號의 規定에 의한 公園施設과 都市公園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都市公園 및 同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公園施設을 말한다.
7. "公共建物 및 公衆利用施設"이라 함은 不特定多數人이 이용하는 建築物, 施設 및 그 附帶施設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建物 및 施設을 말한다.
8. "共同住宅"이라 함은 住宅建設促進法 第3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共同住宅

(추 104)

을 말한다.

9. "交通手段"이라 함은 自動車管理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 鐵道法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鐵道의 운행에 사용되는 車輛 및 都市鐵道法 第3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都市鐵道의 운행에 사용되는 車輛을 말한다.

10. "通信施設"이라 함은 電氣通信基本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電氣通信設備와 郵便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郵便物등 通信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施設을 말한다.

第3條 (便宜施設 設置의 기본원칙) 施設主는 障碍人등이 公共建物 및 公衆利用施設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便宜施設을 設置하여야 한다.

第4條 (接近權) 障碍人등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 및 幸福을 추구할 權利를 보장받기 위하여 障碍人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施設과 設備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障碍人등이 아닌 사람이 接近할 수 있는 情報에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자유롭게 接近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진다.

第5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便宜施設에 관한 사항은 다른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第6條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義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施設 및 設備를 이용하고 情報에 接近할 수 있도록 각종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第7條 (對象施設) 便宜施設을 設置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對象施設"이라 한다)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道 路
2. 公 園
3. 公共建物 및 公衆利用施設
4. 共同住宅
5. 交通手段
6. 通信施設
7. 기타 障碍人등의 편의를 위하여 便宜施設의 設置가 필요한 建物·施設 및 그 附帶施設

(추 93)

第8條 (便宜施設의 設置基準) ①對象施設別로 設置하여야 하는 便宜施設의 종류는 對象施設의 규모, 用途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便宜施設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細部基準(이하 "細部基準"이라 한다)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이 경우 便宜施設에 대한 案內表示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改正 99·1·21〉

第9條 (施設主의 義務) ①施設主는 對象施設을 設置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주요부분(用途變更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때에는 障碍人등이 항상 對象施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便宜施設을 第8條의 規定에 적합하게 設置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②削除 〈99·1·21〉

第10條 (便宜施設에 관한 指導·監督) ①保健福祉部長官은 便宜施設의 設置·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施設主管機關은 그 소관 對象施設에 대한 便宜施設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指導와 監督을 행하여야 한다.

第11條 (實態調査) ①施設主管機關은 便宜施設 活性化 政策의 基礎資料 확보등을 위하여 便宜施設 設置에 관한 實態調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態調査의 실시시기, 실시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③施設主管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態調査의 실시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施設主에 대하여 필요한 資料提出을 요구할 수 있다.

第12條 (設置計劃의 수립·施行 및 보고) ①施設主管機關은 便宜施設 設置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對象施設에 대한 便宜施設設置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便宜施設設置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對象施設의 便宜施設 設置實態 및 整備計劃
2. 對象施設의 建築·大修繕·用途變更의 경우 또는 交通手段 구입등의 경우에 있어서의 便宜施設設置計劃
3. 對象施設 및 便宜施設 設置基準에 관한 弘報
4. 기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하는 사항

(추 104)

③施設主管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便宜施設 設置計劃과 그 施行實績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保健福祉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保健福祉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計劃등을 종합하여 便宜施設 設置에 관한 國家綜合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第13條 (設置의 지원)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民間의 便宜施設 設置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設置를 촉진하기 위하여 金融支援과 技術支援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法人 및 개인이 이 法에서 정하는 便宜施設을 設置한 경우에는 당해 施設의 設置에 소요된 금액에 대하여 租稅減免規制法, 地方稅法등 租稅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를 減免한다.

第14條 (硏究開發의 촉진등)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便宜施設에 관한 硏究開發을 촉진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保健福祉部長官은 便宜施設 設置事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便宜施設 詳細標準圖를 작성하여 이를 普及하여야 한다. 이 경우 建築物에 대한 便宜施設 詳細標準圖는 해당 便宜施設에 관하여 建築法 第1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標準設計圖書로 본다.

第15條 (적용의 緩和) ①施設主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第8條第2項의 細部基準에 적합한 便宜施設의 設置가 곤란하거나 不合理한 경우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施設主管機關의 승인을 얻어 이에 따라 便宜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1. 細部基準에 적합한 便宜施設의 設置가 構造的으로 곤란한 경우
2. 細部基準에 적합하게 便宜施設을 設置할 경우 安全管理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對象施設의 用途 및 周邊與件에 비추어 細部基準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우

②施設主管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障碍人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의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

(추 93)

로 정한다.

第16條 (施設利用상의 편의제공) ①障碍人등의 이용이 많은 公共建物 및 公衆利用施設의 施設主는 휠체어·點譯案內冊子등을 비치하여 障碍人등이 당해 施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휠체어·點譯案內冊子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公共建物 및 公衆利用施設의 범위와 휠체어·點譯案內冊子등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휠체어·點譯案內冊子등의 利用料는 無料를 원칙으로 하되 修理에 소요되는 費用등을 감안하여 實費로 할 수 있다.

第17條 (障碍人專用駐車區域등) ①公共建物 및 公衆利用施設의 施設主는 駐車場法令이 정하는 設置比率에 따라 障碍人專用駐車區域을 設置하여야 한다.

②市長·郡守·區廳長은 障碍人의 申請이 있는 경우 運轉者가 障碍人이거나 障碍人을 乘車시키기 위한 自動車임을 식별하는 標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標識가 부착되지 아니한 自動車를 障碍人專用駐車區域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8條 (便宜施設設置促進基金의 設置) 保健福祉部長官은 便宜施設設置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便宜施設設置促進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第19條 (基金의 財源) ①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조성한다.

1. 政府 또는 政府외의 者로부터의 出捐金 또는 寄附金
2.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徵收額의 100分의 50
3. 基金의 運用에 의하여 생기는 收益金

②政府외의 者가 基金에 出捐 또는 寄附한 금액에 대하여는 租稅減免規制法·地方稅法 기타 租稅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所得計算의 特例를 적용한다.

第20條 (基金의 用途) 基金은 다음 各號의 사업에 사용한다.

1. 便宜施設 詳細標準圖의 작성등 硏究開發事業
2. 便宜施設 設置등과 관련한 技術支援事業
3. 便宜施設에 관한 敎育 및 弘報事業
4. 便宜施設 設置에 필요한 資金의 融資 및 補助事業

(추 93)

5. 기타 保健福祉部長官이 便宜施設設置促進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第21條 (基金의 運用·관리) ①基金은 保健福祉部長官이 運用·관리하되, 그 運用·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第1項의 基金에 대하여는 公共資金管理基金法 第5條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22條 (資料提出 요구 및 檢查) ①保健福祉部長官과 施設主管機關은 施設主에게 便宜施設의 設置 및 운영에 관련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便宜施設設置 및 設置된 便宜施設의 細部基準에의 적합성 여부에 관하여 檢查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查를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23條 (是正命令등) ①施設主管機關은 對象施設이 이 法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施設主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法에 적합하도록 便宜施設의 設置 및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保健福祉部長官은 施設主管機關에게 소관 對象施設에 대한 便宜施設의 設置 및 개선등 是正措置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施設主管機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24條 削除 〈97·12·13〉

第25條 (罰則)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로서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받고 是正期間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者는 5百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26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5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27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1·21〉

1.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휠체어·點譯案內冊子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者로서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받고 是正期間내에 이를 이행하

(추 104)

지 아니한 者

2. 정당한 사유없이 第11條第3項 및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提出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한 者 또는 檢査를 거부·기피·방해한 者

②第17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障碍人自動車標識를 부착하지 아니한 自動車를 障碍人專用駐車區域에 주차한 者는 2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施設主管機關이 賦課·徵收하되, 過怠料를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에 따른 過怠料의 금액, 過怠料의 賦課·徵收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1·21〉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당해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28條 (履行强制金) ①施設主管機關은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是正命令을 받은 후 是正期間내에 당해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施設主에 대하여 便宜施設 設置費用등을 고려하여 3千萬원이하의 履行强制金을 賦課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履行强制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에 따른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施設主管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賦課하기 전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賦課·徵收한다는 뜻을 미리 文書로써 戒告하여야 한다.

④施設主管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履行强制金의 금액·賦課事由·納付期限 및 收納機關·異議提起方法 및 異議提起機關등을 명시한 文書로써 행하여야 한다.

⑤施設主管機關은 최초의 是正命令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回 당해 是正命令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賦課·徵

(추 104)

收할 수 있다.

⑥施設主管機關은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是正命令을 받은 者가 是正命令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履行强制金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賦課된 履行强制金은 이를 徵收하여야 한다.

⑦第27條第4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履行强制金의 徵收 및 異議節次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⑧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徵收額의 100分의 50은 賦課權者가 사용하되, 다음 各號외의 用途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便宜施設에 관한 敎育 및 弘報事業
2. 便宜施設 設置費用의 融資 또는 보조사업
3. 기타 保健福祉部長官이 障碍人등의 生活便宜增進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⑨第8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의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⑩履行强制金의 賦課權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履行强制金으로 徵收한 금액의 運用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第29條 (權限의 위임·委託) 이 法에 의한 保健福祉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위임하거나 保健福祉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設立된 法人에게 委託할 수 있다.

附 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便宜施設設置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障碍人福祉法 第33條의 規定을 적용하여 建築許可申請등 對象施設의 設置·변경을 위한 行政節次가 진행중이거나 施工중인 對象施設에 대한 便宜施設의 設置에 관하여는 종전의 障碍人福祉法 第33條의 規定을 적용한다.

②이 法 施行전에 設置된 對象施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은 이 法 施行日부터 2年이상 7年내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便宜施設을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對象施設의 施設主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을 위반한 施設主에 대하여 第23條·第25條 및 第28條의 規定을

(추 93)

準用한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基金管理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에 第122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22. 障碍人·老人·妊産婦등의便宜增進保障에관한法律

②障碍人福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3條第2項 내지 第5項을 각각 削除한다.

第57條第3號를 削除한다.

附 則 〈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72條의 規定은 1998年 4月 1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附 則 〈99·1·2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7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1999年 6月 1日부터 施行한다.

(추 10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시행령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제정 1998·2·24 대통령령제15675호
개정 1998·6·24 대통령령제15817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999·5·24 대통령령제16356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9·6·8 대통령령제16386호
1999·9·29 대통령령제16559호(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98·6·24, 99·6·8〉

1.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건축물중 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공공용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2.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역사,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고속철도역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정류소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제3조 (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대상시설의 변경)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99·6·8〉

1. 도로를 개축 또는 수선하는 때

(추 113)

2. 자연공원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과 도시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변경결정에 의하여 별표 1에 의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변경하는 때
3.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때

제6조 (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①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계획의 시행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의 구체적 범위, 설치계획, 시행실적의 제출시기·제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7조 (적용의 완화) ①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과학기술의 발전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설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적용의 완화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여부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추 111)

1.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탁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②기금은 현금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③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은행에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출납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 및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관 및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준용한다.

제10조 (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99·5·24〉

1. 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2. 편의시설·장애인복지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기금운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기타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다른 법령의 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회계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2조 (시정명령)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할 때

(추 111)

에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기술적인 곤란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시설주관기관은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99·6·8〉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4조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계단의 유효바닥면적등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대상시설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4. 기타 숙박시설의 장애인용 객실등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해당숙박시설에 확보되어야 하는 장애인용 객실수에 상당하는 일반객실의 연평균수입금액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5.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유지·관리하지 아니

(추 111)

한 경우 :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 및 자재비의 산정기준,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효바닥면적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와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장애인용객실등 편의시설의 범위 및 금액산정기준 기타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이의절차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 (이행강제금징수액의 사용절차) ①법 제2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주관기관은 징수한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을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시설주관기관은 징수한 이행강제금중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 편성하고 수납·지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편의시설설치계획의 기준연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립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설치계획의 기준연도는 2000년으로 한다.

제3조 (기존 대상시설의 편의시설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법 시행전에 설치된 대상시설중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설치기간 및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99·6·8〉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항중 "장애인복지법령"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추 111)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주택단지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중 "장애인복지법령"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10호중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로 한다.

부 칙 〈98·6·24 대령15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 〈99·5·24 대령1635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99·6·8 대령1638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편의시설설치 대상시설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중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대상시설은 동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대상시설로 본다.

근린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운수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장례식장	의료시설
노유자시설·교육연구시설·청소년수련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방송·통신시설	공공용시설

부 칙 〈99·9·29 대령1655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추 113)

〔별표 1〕〈개정 99·6·8〉

편의시설설치대상시설(제3조관련)

1. 도 로
2. 공 원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기숙사(바목의 (1) 내지 (3)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과 차목의 공장에 부설된 시설로서 30인이상이 기숙하는 것에 한한다)

나.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등)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 1천제곱미터미만인 시설

○ (2)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3) 일반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4) 안마시술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5) 읍·면·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시설

(6) 대피소

○ (7) 공중화장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1)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2)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3) 집회장(예식장·공회장·회의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4)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5)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6)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

(추 111)

미터의상인 시설

라. 판매 및 영업시설

(1) 도·소매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의상인 시설

(2)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3) 철도역사

(4) 공항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5)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및 종합여객시설

(6) 정류소

(7) 교통신호기

마. 의료시설

(1)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2)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3) 장례식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의상인 시설

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1)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 (2)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의상인 시설

○ (3)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의상인 시설

(4)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5)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실·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6)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마을·청소년수련의 집·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사. 운동시설(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의상인 시설에 한한다)

○ (1) 체육관

○ (2)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등의 운동장을 말한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아. 업무시설

(추 11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자. 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호텔 및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가족호텔·국민호텔·해상관광호텔·휴양콘도미니엄·한국전통호텔)

차. 공 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령에 의하여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카. 자동차관련시설

(1) 주차장

(2) 운전학원

타. 공공용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시설

파. 관광휴게시설

(1)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시설

(2) 휴게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4.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다. 다세대주택(세대수가 10세대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5. 교통수단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과 시외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나. 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에 한한다)

다.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6. 통신시설

가. 공중전화

나. 우체통

(추 111)

〔별표 2〕〈개정 99·9·29〉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1. 도 로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1) 보도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경계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보도의 중앙에는 시각장애인의 보행기준선이 되는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횡단보도	(1)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턱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횡단보도에 연접한 양쪽 보도와 횡단도중의 일시대기용 안전지대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지하도 및 육교등	(1) 주변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하도 및 육교는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지하도 및 육교의 출입구 부근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지하도에 설치하는 방향표지안내도·구조배치안내도 및 피난안내도등에는 시각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점자를 병기하거나 음성안내장치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도로에 연접 또는 부설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대수에 따라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마.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휴게시설 및 지하도 상가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휴게시설 및 지하도상가에 대하여는 그 용도·규모에 따라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2. 공 원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공원시설(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안의 보도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추 113)

다. 장애인용 화장실	화장실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점자블록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시각장애인의 공원이용 편의를 위하여 공원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사.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 및 도시공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공원시설의 종류에 따라 제1호·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2) 공원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

(추 95)

	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자동차관련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앨 수 있다.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등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등의 출입구(문)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 이르는 개찰구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너비등을 고려하여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등	(가)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는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의 건축물중 6층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중 장애인시설 및 노인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중 학교 및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중 공연장 및 관람장, 전

(추 95)

	시시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 층수가 2층이상인 교통시설에는 장애인등이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이 있는 층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라) 교통시설의 승강장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차량과의 간격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교통시설중 택시승강장과 차도의 경계에 높이차이가 있는 때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용 화장실	화장실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욕실은 1개실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샤워실 및 탈의실은 1개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 점자블록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주출입구로부터 매표소·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안내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교통시설중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의 승·하차지점에는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럭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가)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버스정류장의 노선안내작동기에는 시각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추 95)

	(다) 공원·근린공공시설·장애인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터미널 및 역사의 주변,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각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서 장애인등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등 추락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기숙사 및 숙박시설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이상(숙박시설은 0.5퍼센트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실로 본다.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관람장 및 도서관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퍼센트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가 2천석이상인 경우에는 20석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1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읍·면·동사무소 및 장애인시설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각각 2대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6)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교통시설등의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추 95)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대상시설 \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		
숙사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기숙사가 2동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장애인용 침실이 설치된 동에만 적용 가능함. 다만, 장애인용 침실수는 전체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반 침실의 경우 출입구(문)는 권장사항임
근린시설	수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일반목욕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안마시술소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읍·면·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																	

(후 111)

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		
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의료보험 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공공도서관	대피소	공중화장실	종교집회장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이거나 관람석을 1층에 배치할 경우 또는 승강기단 또는 권장사항임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 복도·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항임
					권장	
의무	권장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추 111)

시설												
시설	전시장, 동·식물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 복도·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항임
판매 및 영업	도·소매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경보 및 피난설비의 증축 후 방지설비의 설치는 권장사항임
시설	정비소				의무							
시설	교통신호기								의무	의무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 복도·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항임
의료시설	장례식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추 111)

교육및복지	학교(장애인특수학교제외)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장애인학생을 위한 교실·화장실을 1층에 배치할 경우 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항임
	장애인특수학교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장애종별에 따라 설치기준 완화 가능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권장	권장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 복도·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항임
	도서관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아동관련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포함)	의무	권장	의무	권장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복도·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항임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제외)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추 111)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장애종별에 따라 설치기준 완화 가능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운영	시설	동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유도 및 안내설비 중 전자문자안내 설비는 민원실등 이용이 많은 곳의 에는 권장사항임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 복도·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항임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여관제외), 관광숙박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관	여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일반침실의 경우 출입구(문)는 권장사항임

(추 111)

| 공 | 장 | | |

4. 공동주택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1)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접근로를 (1)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나.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1)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1)의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앨 수 있다.
다.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1)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전용주택의 세대내 출입문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라.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마.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아파트는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바. 장애인용 화장실 및 욕실	장애인전용주택의 화장실 및 욕실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추 95)

사.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아.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에는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등을 설치할 수 있다.
자.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1)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경로당·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약국·일반목욕장·슈퍼마켓, 일용품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학원·금융업소·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호 가목 (1), (3) 내지 (7)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총세대수가 300세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중 (1)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한 시설(별표 1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5. 교통수단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버스	(1) 버스안에는 시각장애인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정류장등에 관한 자동안내방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승강구 제1단의 높이는 가급적 낮추어야 하며, 휠체어사용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를 갖출 수 있다. (3) 승강구 부근에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고속버스등 좌석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청각장애인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정류장등을 알려주는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추 113)

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철도차량	(1) 철도차량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도록 승강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승강장에 별도의 휠체어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열차편성당 객차내 휠체어를 고정시킬 수 있는 승차공간을 확보하거나 좌석을 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 장애인용 승차공간 또는 좌석이 설치된 차량의 화장실에는 장애인용 대변기를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각 및 청각장애인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정류장등에 관한 자동안내방송장치 및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도시철도차량	(1) 도시철도차량에는 장애인등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위치에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시각 및 청각장애인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정류장등에 관한 자동안내방송장치 및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6. 통신시설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1)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공중전화를 설치하거나, 장애인의 타당성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기를 1대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소음도가 75데시벨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표시전화기, 큰문자버튼전화기, 음량증폭전화기, 보청기 호환성 전화기, 골도전화기(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두개골에 진동을 주는 방법으로 통화가 가능한 전화기를 말한다)등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우체통은 장애인등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하도록 위치 및 구조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추 95)

〔별표 3〕〈신설 99·6·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제3항관련)

위 반 행 위 자	근 거 법 령	과태료금액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휠체어·점역안내책자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로서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7조제1항제1호	100만원
2.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1조제3항 및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법 제27조제1항제2호	200만원
3.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법 제27조제2항	10만원 (12만원)

※ 비 고 : 위 표 제3호의 과태료금액중 괄호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별표 4〕

정비대상시설 및 설치기준(부칙 제3조관련)

1. 정비대상시설과 정비기한

정 비 대 상 시 설	정 비 기 한	
	법 시행후 2년 이 내	법 시행후 7년 이 내
횡단보도	○	
읍·면·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5개이상의 대변기를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제외)	○	
종합병원	○	
장애인특수학교	○	

(추 1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 및 종합여객시설	○	
철도역사(통일호이상의 열차가 정차하는 역에 한함), 도시철도역사		○

2.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8조제2항의 세부기준에 의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장애인의 통행 또는 이용에 편리한 접근로·출입구(문)·복도·계단 또는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치기준중 유효폭·기울기 및 유효바닥면적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도시철도역사에는 해당편의시설의 설치에 갈음하여 계단을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주출입구로 이르는 접근로의 유효폭 및 기울기등의 확보가 지형상 곤란하여 휠체어사용자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는 출입구(문)·복도·계단 또는 장애인용 화장실의 유효폭 또는 유효바닥면적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다. 도시철도역사에 장애인용 승강기·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의 설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추 111)

XI.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障碍人雇傭促進및職業再活法

소관부처 : 노동부

全文改正 2000·1·12 法律第6166號
改正 2001·1·29 法律第6400號(政府組織法)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障碍人이 그 能力에 맞는 職業生活을 통하여 人間다운 生活을 할 수 있도록 障碍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障碍人"이라 함은 身體 또는 精神上의 障碍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職業生活에 상당한 制約을 받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2. "重症障碍人"이라 함은 障碍人중 勤勞能力이 현저하게 상실된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3.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이라 함은 障碍人의 職業指導·職業適應訓練·職業能力開發訓練·就業斡旋·就業·就業후 適應指導등에 대하여 이 法이 정하는 措置를 강구하여 障碍人이 職業生活을 통하여 自立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事業主"라 함은 勤勞者를 사용하여 事業을 행하거나 하고자 하는 者를 말한다.
5. "勤勞者"라 함은 勤勞基準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를 말한다.
6. "職業能力開發訓練"이라 함은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訓練을 말한다.
7.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이라 함은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말한다.
8. "障碍人標準事業場"이라 함은 障碍人이 勤勞하기에 적합한 生産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場을 말한다.

第3條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에 관하여 事業主 및 國民一般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教育·弘報 및 障碍人雇傭促進運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추 128)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事業主·障碍人 기타 關係者에 대한 지원과 障碍人의 특성을 고려한 職業再活의 措置를 강구하여야 하며, 障碍人의 雇傭促進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綜合的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重症障碍人 및 女性障碍人에 대한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第4條 (事業主의 責任) ①事業主는 障碍人의 雇傭에 관한 政府의 施策에 協調하여야 하며, 障碍人이 가진 能力을 정당하게 評價하여 雇傭의 機會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雇傭管理를 행할 義務를 가진다.

②事業主는 勤勞者가 障碍人이라는 이유로 採用·昇進·轉補 및 敎育訓練등 人事管理上의 差別待遇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5條 (障碍人의 自立努力등) ①障碍人은 職業人으로서의 自覺을 가지고 스스로의 能力의 開發·向上을 도모하여 유능한 職業人으로서 自立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障碍人의 家族 또는 障碍人을 보호하고 있는 者는 障碍人에 관한 政府의 施策에 協調하여야 하며 障碍人의 自立促進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第6條 (障碍人雇傭促進및職業再活基本計劃등) ①勞動部長官은 保健福祉部長官과 협의하여 障碍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을 위한 基本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障碍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에 관한 사항
2. 第59條의 規定에 의한 障碍人雇傭促進및職業再活基金에 관한 사항
3. 障碍人을 위한 施設의 設置·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障碍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을 위하여 勞動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第1項의 基本計劃 및 障碍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勞動部에 障碍人雇傭促進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④委員會에는 障碍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調査·硏究하기 위하여 5人이내의 常勤硏究委員을 둔다.

⑤委員會의 委員중 3分의 1이상은 障碍人으로 하여야 한다.

⑥委員會의 구성·機能과 硏究委員 기타 委員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추 119)

第7條 (教育人的資源部 및 保健福祉部와의 連繫) ①教育人的資源部長官은 特殊教育振興法에 의한 特殊教育對象者의 就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職業教育 내용등에 대하여 勞動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01·1·29〉

②保健福祉部長官은 職業再活事業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勞動部長官과 긴밀히 協調하여야 한다.

第2章 障碍人雇傭促進 및 職業再活

第8條 (障碍人職業再活實施機關) ①障碍人職業再活實施機關(이하 "再活實施機關"이라 한다)은 障碍人에 대한 職業再活事業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障碍人에게 직접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重症障碍人의 自立能力 제고를 위한 職業再活實施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再活實施機關은 다음 各號의 1과 같다.

1. 特殊教育振興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特殊教育機關
2. 障碍人福祉法 第48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障碍人福祉館
3. 障碍人福祉法 第48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障碍人職業再活施設
4. 障碍人福祉法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障碍人福祉團體
5.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
6. 기타 勞動部令으로 정하는 機關으로서 勞動部長官이 障碍人에 대한 職業再活事業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機關

第9條 (職業指導) ①勞動部長官 및 保健福祉部長官은 障碍人이 그 能力에 맞는 職業에 就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障碍人에 대한 職業相談·職業適性檢査 및 職業能力評價등을 실시하고, 雇傭情報를 제공하는 등 職業指導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勞動部長官 및 保健福祉部長官은 障碍人이 그 能力에 맞는 職業生活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障碍人에게 적합한 職種開發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勞動部長官 및 保健福祉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職業指導를 행함에 있어서 특별히 전문적 知識과 技術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再活實施機關등 關係專門機關에 의뢰하고 그 費用을 지급할 수 있다.

④勞動部長官 및 保健福祉部長官은 職業指導를 실시하거나 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필요한 費用을 融資·지원할 수 있다.

(추 128)

⑤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費用支給 및 融資·지원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條 (職業適應訓練) ①勞動部長官 및 保健福祉部長官은 障碍人이 그 希望·適性·能力등에 맞는 職業生活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職業環境에 적응시키기 위한 職業適應訓練을 실시할 수 있다.

②勞動部長官 및 保健福祉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職業適應訓練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訓練基準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勞動部長官 및 保健福祉部長官은 障碍人의 職業能力開發·향상을 위하여 職業適應訓練施設 또는 訓練課程을 設置·운영하거나 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필요한 費用(訓練費를 포함한다)을 融資·지원할 수 있다.

④勞動部長官 및 保健福祉部長官은 職業適應訓練施設에서 職業適應訓練을 받는 障碍人에 대하여 訓練手當을 지원할 수 있다.

⑤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融資·지원기준 및 訓練手當의 지급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條 (職業能力開發訓練) ①勞動部長官은 障碍人이 그 希望·適性·能力등에 맞는 職業生活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障碍人에게 職業能力開發訓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勞動部長官은 障碍人의 職業能力開發·향상을 위하여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 또는 訓練課程을 設置·운영하거나 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필요한 費用(訓練費를 포함한다)을 融資·지원할 수 있다.

③勞動部長官은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에서 職業能力開發訓練을 받는 障碍人에 대하여 訓練手當을 지원할 수 있다.

④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融資·지원기준 및 訓練手當의 지급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2條 (支援雇傭) ①勞動部長官 및 保健福祉部長官은 重症障碍人중 事業主가 운영하는 事業場에서는 職務遂行이 어려운 障碍人이 職務를 수행할 수 있도록 支援雇傭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의 내용 및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추 119)

第13條 (保護雇傭)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중 정상적인 作業條件하에서 일하기 어려운 障碍人을 위하여 특정한 勤勞環境을 제공하고 그 勤勞環境에서 일할 수 있도록 保護雇傭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4條 (就業斡旋등) ①勞動部長官은 雇傭情報를 바탕으로 障碍人의 希望·適性·能力과 職種등을 고려하여 障碍人에게 적합한 職業을 알선하여야 한다.

②勞動部長官은 障碍人이 職業生活을 통하여 自立할 수 있도록 障碍人의 雇傭促進을 위한 시책을 講究하여야 한다.

③勞動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就業斡旋 및 雇傭促進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業務의 일부를 再活實施機關등 關係專門機關에 의뢰하고 그 費用을 지급할 수 있다.

④勞動部長官은 就業斡旋施設을 設置·운영하거나 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필요한 費用(就業斡旋을 위한 지원금을 포함한다)을 融資·지원할 수 있다.

⑤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費用支給 및 融資·지원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5條 (就業斡旋機關間 連繫등) ①勞動部長官은 障碍人의 就業機會를 확대하기 위하여 就業斡旋 업무를 수행하는 再活實施機關間 求人·求職情報의 交流와 障碍人勤勞者 관리등의 효율적인 連繫를 도모하고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障碍人雇傭促進公團에서 이를 綜合的으로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就業斡旋電算網 構築등의 措置를 講究하여야 한다.

②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就業斡旋電算網 構築등의 措置를 강구함에 있어서 職業安定法 第4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職業安定機關과 連繫되도록 하여야 한다.

第16條 (自營業障碍人 지원) ①勞動部長官은 自營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障碍人에게 創業에 필요한 資金등을 融資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融資基準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第17條 (障碍人勤勞者 지원) ①勞動部長官은 障碍人勤勞者의 안정적인 職業生活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資金을 融資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融資基準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추 119)

第18條 (就業후 適應指導) ①勞動部長官 및 保健福祉部長官은 障碍人의 職業安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事業場에 雇傭되어 있는 障碍人에 대하여 作業環境適應에 필요한 指導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導의 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9條 (事業主에 대한 雇傭指導) 勞動部長官은 障碍人을 雇傭하거나 하고자 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採用·配置·作業補助具·作業設備 또는 作業環境 기타 障碍人의 雇傭管理에 관하여 技術的 사항에 대한 指導를 실시하여야 한다.

第20條 (障碍人雇傭 優秀事業主의 優待) ①勞動部長官은 障碍人의 雇傭에 모범이 되는 事業主를 障碍人雇傭 優秀事業主로 선정하여 事業을 지원하는 등의 措置(이하 "優待措置"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障碍人雇傭 優秀事業主의 선정·優待措置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1條 (事業主에 대한 資料提供) 勞動部長官은 障碍人을 雇傭하거나 하고자 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障碍人의 身體的·精神的 條件, 職業能力등에 관한 情報 기타 資料를 제공하여야 한다.

第22條 (障碍人實態調査) 勞動部長官은 障碍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障碍人의 就業職種·勤勞形態·勤續期間·賃金水準등 雇傭現況에 대하여 全國的인 實態調査를 실시할 수 있다.

第3章 障碍人雇傭義務 및 負擔金

第23條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障碍人雇傭義務)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障碍人을 所屬公務員 定員의 100分의 2이상 雇傭하여야 한다.

②각 試驗實施機關(이하 "各級機關"이라 한다)의 長은 障碍人이 新規採用人員의 100分의 2이상 採用되도록 試驗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在職중인 障碍人公務員의 數가 1萬名미만인 경우에는 公開採用比率을 100分의 5로 한다.

③任用權을 위임받은 機關의 長이 公開採用을 하지 아니하고 公務員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경우 職務의 성격상 障碍人의 勤務가 부적합한 職務分

(추 119)

野·職種·職級등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國家公務員法에 의한 中央人事管掌機關의 長과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소속各級機關의 公務員採用計劃을 포함한 障碍人公務員採用計劃과 그 실시상황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勞動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勞動部長官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障碍人公務員採用計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障碍人公務員採用計劃을 제출한 者에 대하여 그 計劃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雇傭義務의 履行實績이 현저히 부진한 때에는 그 내용을 公表할 수 있다.

第24條 (事業主의 障碍人雇傭義務)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一定數이상의 勤勞者를 雇傭하는 事業主는 그 勤勞者의 總數의 100分의 5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이하 "義務雇傭率"이라 한다)이상에 해당(그 數에 1人미만의 端數가 있을 경우에는 그 端數는 버린다)하는 障碍人을 雇傭하여야 한다. 다만, 障碍人을 雇傭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職種의 勤勞者가 상당한 比率을 차지하는 業種에 대하여는 勞動部長官이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정하는 적용제외율에 해당하는 勤勞者의 數(그 數에 1人미만의 端數가 있을 경우에는 그 端數는 버린다)를 그 勤勞者의 總數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특정한 障碍人의 能力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職種에 대하여는 그 雇傭하여야 할 比率을 大統領令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比率은 義務雇傭率로 보지 아니한다.

第25條 (事業主의 障碍人雇傭計劃 수립등) ①勞動部長官은 事業主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障碍人의 雇傭에 관한 計劃 및 그 실시상황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計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事業主에 대하여 그 計劃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勞動部長官은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가 정당한 사유없이 障碍人雇傭計劃의 수립 또는 雇傭義務의 이행에 있어서 현저히 미달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公表할 수 있다.

第26條 (障碍人雇傭奬勵金의 지급) ①勞動部長官은 障碍人의 雇傭促進과 職業安定을 위하여 障碍人을 雇傭한 事業主(第24條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추 119)

事業主를 포함한다)에게 雇傭奬勵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雇傭奬勵金은 매월 상시 雇傭하고 있는 障碍人數에서 義務雇傭率(第24條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事業主에 대한 雇傭奬勵金의 지급에 있어서도 동일한 率을 적용한다)에 의하여 雇傭하여야 할 障碍人 總數를 뺀 數에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支給單價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할 負擔金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差減한 금액으로 한다.

③雇傭奬勵金의 支給單價는 最低賃金法에 의하여 月단위로 換算한 最低賃金額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다만, 重症障碍人 및 女性障碍人의 支給單價는 重症障碍人 및 女性障碍人외의 者에게 적용되는 支給單價의 2배의 범위안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雇傭奬勵金의 지급 및 請求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그 支給時期·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長官이 정한다.

第27條 (障碍人雇傭負擔金의 납부등) ①義務雇傭率에 미달하는 障碍人을 雇傭하는 事業主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勞動部長官에게 障碍人雇傭負擔金(이하 "負擔金"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負擔金은 事業主가 義務雇傭率에 의하여 雇傭하여야 할 障碍人 總數에서 매월 상시 雇傭하고 있는 障碍人 數를 뺀 數에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基礎額을 곱한 금액의 年間 合計額으로 한다.

③負擔基礎額은 障碍人을 雇傭하는 경우에 매월 소요되는 다음 各號의 費用의 平均額을 기초로 하여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勞動部長官이 정하되 매년 會計年度 개시 30日전까지 告示하여야 한다. 다만, 負擔基礎額은 이를 告示하는 당해연도의 最低賃金額의 100分의 60이상이어야 한다.

1. 障碍人을 雇傭하는 경우 필요한 施設·裝備의 設置, 修理에 소요되는 費用
2. 障碍人의 적정한 雇傭管理를 위한 措置에 필요한 費用
3. 기타 障碍人을 雇傭하기 위하여 특별히 소요되는 費用등

④勞動部長官은 障碍人福祉法 및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한 職業再活施設 또는 障碍人標準事業場에 生産設備와 原料·技術등을 제공하고 生産管理 및 生産品의 판매를 전담하는 事業主 또는 職業再活施設에 都給을 주어 그 生産品을 納品받는 事業主에 대하여 負擔金을 減免하거나 雇傭奬勵金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추 119)

⑤事業主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申告書와 당해연도의 負擔金을 다음 年度의 初日부터 90日(年度중에 事業을 廢止 또는 종료한 경우에는 그 事業을 廢止 또는 종료한 날부터 60日)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申告·납부하여야 한다.

⑥勞動部長官은 事業主가 第5項에서 정한 기간내에 申告書 또는 負擔金을 申告·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調査하여 負擔金을 徵收할 수 있다.

⑦勞動部長官은 事業主가 납부한 負擔金의 금액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다르거나 허위의 申告에 起因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調査하여 그 差額을 追徵하거나 還給하여야 한다.

⑧負擔金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分割納付하게 할 수 있다.

⑨第4項의 規定에 의한 都給의 기준 기타 負擔金 減免 또는 雇傭奬勵金支給의 요건·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長官이 정한다.

第28條 (加算金 및 延滯金의 徵收) ①勞動部長官은 第27條第6項 및 第7項 規定에 의하여 負擔金을 徵收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事業主가 납부하여야 할 負擔金에 대하여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加算金으로 徵收한다.

②勞動部長官은 負擔金의 納付義務者가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納付期限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에 納付期間滿了日의 다음날부터 完納日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日 7錢의 한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에 따라 計算한 延滯金을 徵收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9條 (통지) 勞動部長官은 第27條第6項 및 第7項의 規定에 의한 徵收를 하고자 할 때에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付義務者에게 그 금액과 納付期限을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第30條 (督促 및 滯納處分) ①勞動部長官은 負擔金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을 納付義務者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期限을 정하여 이를 督促하여야 한다.

②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督促을 하는 경우에는 督促狀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10日이상의 납부기간을 주어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督促을 받은 者가 그 納付期限까지 負擔金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勞動部長官은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추 119)

의하여 徵收할 수 있다.

第31條 (徵收優先順位) 負擔金 기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徵收金의 徵收優先順位는 國稅 및 地方稅의 다음으로 한다.

第32條 (書類의 송달) 負擔金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에 관한 書類의 송달에 관하여는 國稅基本法 第8條 내지 第1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33條 (消滅時效) 負擔金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을 徵收하거나 그 還給을 받을 權利와 雇傭奬勵金을 받을 權利는 3年間 행사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완성된다.

第34條 (時效의 중단) ①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消滅時效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雇傭奬勵金의 請求
2.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납부통지
3.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督促
4.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滯納處分 節次에 따라 행하는 交付請求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중단된 消滅時效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통지한 納付期限
2. 督促에 의한 納付期限
3. 交付請求중의 기간

第35條 (缺損處分) 勞動部長官은 滯納者에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負擔金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을 缺損處分할 수 있다.

1. 滯納處分이 終結되고 滯納額에 충당될 配分金額이 그 滯納額에 부족될 때
2.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消滅時效가 완성될 때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徵收 가능성이 없을 때

第4章 韓國障碍人雇傭促進公團

第36條 (韓國障碍人雇傭促進公團의 設立) ①障碍人이 職業生活을 통하여 自立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障碍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韓國障碍人雇傭促進公團(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②公團은 다음 各號의 事業을 수행한다.

(추 119)

1. 障碍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에 관한 情報의 蒐集·分析·제공 및 調査·研究
2. 障碍人에 대한 職業相談·職業適性檢査, 職業能力評價등 職業指導
3. 障碍人에 대한 職業適應訓練·職業能力開發訓練·就業斡旋·就業후 適應指導
4. 障碍人職業生活相談員등 專門要員의 養成·研修
5. 事業主와 關係機關에 대한 職業再活 및 雇傭管理에 관한 技術的 사항의 指導·지원
6. 障碍人의 職業適應訓練施設,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 및 障碍人標準事業場 운영
7. 障碍人의 雇傭促進을 위한 就業斡旋機關間 就業斡旋電算網 構築·관리, 弘報·敎育 및 障碍人技能競技大會등 關聯事業
8. 기타 障碍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을 위하여 필요한 事業 및 勞動部長官 또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이 委託하는 事業
9. 第1號 내지 第8號의 事業에 附帶되는 事業

③公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社會福祉事業法에 의한 社會福祉法人 기타 非營利法人이 운영하는 障碍人福祉團體등에 그 業務의 일부를 委託할 수 있다.

第37條 (法人格) 公團은 法人으로 한다.

第38條 (事務所) ①公團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정한다.

②公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第39條 (設立登記) ①公團은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와 分事務所의 設置·移轉 기타 登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0條 (定款) ①公團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目 的
2. 명 칭
3. 主된 事務所·分事務所 및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傘下機關에 관한 사항
4. 事業에 관한 사항
5. 財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추 119)

6.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7. 理事會에 관한 사항

8.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公告에 관한 사항

10. 內部規定의 制定·改正 및 廢止에 관한 사항

11. 解散에 관한 사항

②公團의 定款은 勞動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41條 (任員의 任免) ①公團에 理事長 1人을 포함한 10人이상 15人이하의 理事 및 監事 1人을 둔다.

②理事長을 포함한 理事 3人은 常勤으로 한다.

③理事長은 勞動部長官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免하며, 理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當然職 理事를 제외하고는 理事長의 추천(非常勤理事의 2分의 1은 保健福祉部長官이 추천한다)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이 任免한다.

④常勤理事와 非常勤理事중 각각 3分의 1이상은 障碍人으로 하여야 한다.

⑤監事는 勞動部長官이 任免한다.

第42條 (任員의 任期) 理事長 및 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다만, 當然職 理事의 任期는 그 在任期間으로 한다.

第43條 (任員의 職務) ①理事長은 公團을 代表하고 公團의 業務를 總括한다.

②常勤理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團의 業務를 分掌하고 理事長의 유고시에는 定款이 정하는 順位에 따라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監事는 公團의 業務 및 會計를 監査한다.

第44條 (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團의 任員이 될 수 없다.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2.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第45條 (任員의 兼職制限) 理事長과 常勤理事는 勞動部長官의 승인없이 다른 職務를 兼할 수 없다.

第46條 (理事會) ①公團에는 그 業務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理事長과 理事로 구성된 理事會를 둔다.

(추 119)

②理事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③理事會는 在籍人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人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④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⑤理事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公團의 定款으로 정한다.

第47條 (職員의 任免) 公團의 職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長이 任免한다. 이 경우 障碍人 採用을 고려하여야 한다.

第48條 (傘下機關) ①公團은 第3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傘下機關을 둘 수 있다.

②公團의 理事長은 傘下機關을 指揮·監督한다.

③傘下機關의 設置,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公團의 定款으로 정한다.

第49條 (國有財産등의 無償貸付) 國家는 公團의 設立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國有財産法 및 物品管理法에 의하여 國有財産과 物品을 公團에 無償으로 貸付할 수 있다.

第50條 (資金의 借入) 公團은 第3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資金을 借入(國際機構,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으로부터의 借入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第51條 (公團의 會計) ①公團의 事業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②公團은 會計規程을 정하여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52條 (事業計劃등의 승인) 公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事業年度의 事業計劃 및 豫算案을 작성하여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勞動部長官은 保健福祉部長官과 협의하여야 한다.

第53條 (事業計劃 및 豫算案 작성의 特例) ①保健福祉部長官은 障碍人의 職業再活등을 위하여 第9條 내지 第15條 및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에 대하여 매년도 4月 20日까지 다음 年度의 事業計劃 및 豫算案을 작성하여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 및 豫算案에 반영될 수 있도록 公團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公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保健福祉部長官이 요청한 事業計劃과 豫算案을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 및 豫算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이 요청하는 豫算案의 금액과 公團이 第9條 내지 第15條 및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에 포함된 사업수행에 필

(추 119)

요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은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前年度 障碍人雇傭負擔金의 3分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保健福祉部長官이 요청하는 금액과 公團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금액의 配分比率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4條 (決算書의 제출) 公團은 매 事業年度의 歲入·歲出決算書를 작성하여 勞動部長官이 지정하는 公認會計士의 會計監査를 받아 다음 事業年度 2月末日까지 勞動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55條 (剩餘金의 처리) 公團은 매 事業年度末의 決算結果 剩餘金이 생긴 때에는 移越損失을 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年度에 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第56條 (業務의 指導·監督) ①勞動部長官은 公團의 業務를 指導·監督한다.

②勞動部長官은 公團에 대하여 業務·會計 및 財産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第57條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公團이 아닌 者는 韓國障碍人雇傭促進公團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第58條 (民法의 準用) 公團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5章 障碍人雇傭促進및職業再活基金

第59條 (障碍人雇傭促進및職業再活基金의 設置) 勞動部長官은 公團의 운영, 雇傭奬勵金의 지급등 障碍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을 위한 事業을 수행하기 위하여 障碍人雇傭促進및職業再活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第60條 (基金의 財源) ①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政府 또는 政府외의 者로부터의 出捐金 또는 寄附金
2. 第27條 및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加算金 및 延滯金
3. 基金의 運用에 의하여 생기는 收益金과 기타 公團의 收入金
4.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借入金

②政府는 會計年度마다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出捐金을 歲出豫算에 計上하여야 한다.

第61條 (基金의 用途) 基金은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費用의 지급에 사용한다.

1. 公團의 事業遂行에 필요한 經費

(추 119)

2.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雇傭奬勵金
3. 障碍人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政策에 관한 調査·硏究에 필요한 經費
4. 職業指導, 職業適應訓練, 職業能力開發訓練, 就業斡旋 또는 障碍人雇傭을 위한 施設·裝備의 設置·修理에 필요한 費用의 融資·지원
5. 職業指導, 就業斡旋, 就業후 適應指導를 행하는 者에 대한 필요한 經費의 融資·지원
6. 障碍人에 대한 職業適應訓練, 職業能力開發訓練을 행하는 者 및 당해 障碍人에 대한 訓練費·訓練手當
7. 自營業障碍人에 대한 創業資金 및 障碍人勤勞者에 대한 職業生活安定資金등의 融資
8. 事業主의 障碍人雇傭管理를 위한 障碍人職業生活相談員등의 配置에 필요한 經費
9. 기타 障碍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에 소요되는 費用과 第1號 내지 第8號의 事業遂行에 附帶되는 經費

第62條 (基金의 運用·관리) ①基金은 勞動部長官이 運用·관리한다.

②基金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③基金을 運用함에 있어서는 그 收益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수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運用하여야 한다.

1. 銀行法 기타 法律에 의한 金融機關 또는 遞信官署에의 預託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발행하는 債券의 買入
3. 銀行法 기타 法律에 의한 金融機關이나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債券의 買入
4. 財政融資特別會計法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財政資金에의 預託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

第63條 (基金의 會計機關) ①勞動部長官은 所屬公務員중에서 基金의 支出原因行爲와 基金의 徵收에 관한 事務를 담당하는 基金出納命令官과 基金의 出納 및 支出에 관한 事務를 담당하는 基金出納公務員을 任命한다.

②勞動部長官은 第71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등에 대한 融資業務를 公團에 委託한 경우에는 公團의 常勤理事중에서 基金出納理事를, 그 職員중에서 基金出納員을 각각 任命하여야 한다. 이 경우 基金出納理事는 基金出納命令官의 業務를,

(추 119)

基金出納員은 基金出納公務員의 義務를 행한다.

③會計關係職員등의責任에관한法律중 財務官과 歲入徵收官에 관한 規定은 基金出納命令官 및 基金出納理事에게, 支出官과 出納公務員에 관한 規定은 基金出納公務員 및 基金出納員에게 각각 準用한다.

第64條 (資金計定의 設置) 勞動部長官은 基金出納公務員으로 하여금 韓國銀行에 基金計定을 設置하도록 하여야 한다.

第6章 補 則

第65條 (障碍人職業生活相談員등) ①勞動部長官은 障碍人의 職業指導, 職業適應訓練, 職業能力開發訓練, 就業후 適應指導등 障碍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을 위한 業務를 담당하는 障碍人職業生活相談員등 專門要員을 養成하여야 한다.

②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수이상의 障碍人인 勤勞者를 雇傭하는 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障碍人職業生活相談員을 두어야 한다.

③勞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再活實施機關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專門要員에 대한 協調要請이 있을 때에는 지원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專門要員의 종류·養成·配置·役割 및 資格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第66條 (보고와 檢査등) ①勞動部長官은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場에 出入하여 關係者에게 質問 또는 書類檢査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場에 出入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證票는 公務員證으로 대신할 수 있다.

第67條 (稅制支援) 第60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政府외의 者로부터의 出捐金 또는 寄附金과 第61條第2號의 雇傭奬勵金, 第4號 내지 第7號 및 第9號의 지원에 대하여는 租稅特例制限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를 減免한다.

第68條 (經費補助)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雇傭促進事業을 수행하는 者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추 119)

第69條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特例) 第24條 내지 第35條의 規定은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70條 (協調) ①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再活實施機關 기타 障碍人과 관련된 機關 및 團體는 障碍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을 도모하기 위하여 勞動部長官이 실시하는 施策에 協調하여야 한다.

②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수행하는 者(國家機關 및 地方自治團體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71條 (權限의 위임·委託) 勞動部長官은 이 法에서 정하는 權限의 일부를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 위임하거나 公團에 委託할 수 있다.

第72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勤勞基準法·職業安定法·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등 勞動關係法의 規定에 의한다.

第73條 (過怠料) ①第25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27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때
2. 第6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查를 거부·방해·기피한 때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57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2. 第65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3. 第6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質問에 대하여 答辯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또는 허위의 答辯을 한 때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勞動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⑦第5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추 119)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74條 (罰則 적용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第71條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의 業務를 委託받아 행하는 公團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附 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非常勤理事의 任期에 관한 經過規定)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任命된 非常勤理事(當然職 理事를 제외한다)의 任期는 第42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그 任期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第3條 (障碍人雇傭促進및職業再活基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障碍人雇傭促進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설치된 障碍人雇傭促進基金은 이 法에 의하여 설치된 障碍人雇傭促進및職業再活基金으로 본다.

第4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障碍人雇傭促進등에관한法律을 引用 또는 準用한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條項을 각각 引用 또는 準用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1·29 法640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추 128)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소관부처 : 노동부

전문개정 2000·7·1 대통령령제16889호
개정 2001·1·29 대통령령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2·9·11 대통령령제17736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고용정책기본법 및 직업안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장애인의 기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2·9·11 ; 제3호의 시행일 2003·3·1〉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준중 제1급 내지 제9급에 해당하는 자

제4조 (중증장애인의 기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2·9·11〉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보다 1단계 낮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 및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중 제3급 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

제5조 (장애인표준사업장)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율 및 인원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

(후 148)

하고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6조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구성등)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노동부 및 기획예산처의 3급이상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장애인 관련업무와 관계되는 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동수로 구성한다. 〈개정 2001·1·29〉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3. 장애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5. 장애인

③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동부 소속 4급이상 공무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명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기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추 130)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실무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사항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연구위원)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연구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석사학위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학사학위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이상 관련실무에 종사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장애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상근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의견청취등) 위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기타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장애인 직업지도의 지원) ①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 및 직업능력평가등의 직업지도를 실시하는 때에는 당해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라 당해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②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지도를 실시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융자·지원하는 경우에 그 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

(추 122)

작하여 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공고한다.

1. 사업수행실적
2. 시설 및 장비보유현황
3. 사업전담인력
4. 장애인의 당해 시설 이용의 편리성
5. 장애유형별 직업지도 수요등

제15조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의 지원) ①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적응훈련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외의 훈련으로서 장애인의 취업이 쉽도록 하기 위한 직업준비훈련 기타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적응훈련의 교과과정 및 시설·장비기준등은 취업희망 장애인의 개인별 능력을 기초로 직업생활에 필요한 적응력 정도를 참작하여 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공고한다.

③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적응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융자·지원하는 경우에 그 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공고한다.

1. 훈련계획
2. 훈련시설·장비 및 직업훈련교사등의 현황
3. 훈련실적등

④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수당의 지급기준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참작하여 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공고한다.

제16조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촉진)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종에 있어서는 장애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용의 융자·지원 및 훈련수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융자·지원의 내용 및 수준등을 참작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공고한다.

제17조 (지원고용의 실시·지원)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고용에 있어서의

(추 122)

지원의 내용은 훈련생에 대한 훈련수당과 사업주에 대한 보조금 및 사업장에 배치하는 직무지도원에 대한 직무수당등으로 하되, 그 구체적 기준은 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공고한다.

제18조 (취업알선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알선시설이 취업알선전산망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그 구축비용을 융자·지원할 수 있으며 직업안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는 자가 장애인을 사업장에 취업알선하여 일정기간이상 근로하게 한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알선전산망 구축비용을 융자·지원하는 경우에 그 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공고한다.

1. 당해 시설의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의 구인·구직정보 교류능력
2. 구직장애인의 당해 시설 이용의 편리성등

제19조 (취업후 적응지도의 지원)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이 작업환경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공고한다.

1. 사업장 방문 및 근무여건 확인
2. 장애인 애로사항 청취 및 상담
3. 수화통역사등의 배치등의 지원

제20조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조치의 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사업주의 장애인고용률과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수 및 사업체의 규모등을 참작하여 결정·공고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에 대하여는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제2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제외)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의무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 122)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22조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등의 제출)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의 장,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감은 당해연도의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을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그 고용계획의 실시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
2.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제23조 (적용대상 사업주의 범위)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상시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운전사가 딸린 건설장비임대업을 제외한 건설업에 있어서는 공사실적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상인 사업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실적액은 총공사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연도의 매월 15일이상(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5일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고용한 근로자수의 합계를 당해연도의 조업월수(조업한 날이 15일미만인 달은 조업월수에서 뺀다)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제24조 (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상시근로자 의무고용률은 100분의 2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이 시설의 장애인근로자는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수에 포함한다.

제25조 (특정장애인의 고용비율등)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과 이에 해당하는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은 별표 2와 같다.

제26조 (장애인고용계획등의 제출) 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당해연도의 장애인의 고용에 관

(추 122)

한 계획을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그 고용계획의 실시상황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
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
3. 법 제61조제4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을 융자·지원 또는 보조받고자 하는 사업주

제27조 (고용장려금의 지급)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는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월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이하 "월단위 최저임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로 하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 월단위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또는 여성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그 지급단가의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이하로 한다. 〈개정 2002·9·1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장려금의 세부 지급단가는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2·9·11〉

제28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사업주의 성명 및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2. 당해연도의 매월(당해연도의 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이후의 매월, 당해연도의 도중에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매월에 한한다)별로 15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수, 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율에 해당하는 근로자수 및 15일 이상 고용한 장애인근로자수
3. 당해연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액수 및 월별 내역(납부할 부담금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뜻을 기재한다)
4.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상시고용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가 이 영에 의한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징수하거

(추 148)

나 추징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납부기한을 주어야 한다.

제29조 (부담금의 환급통지) 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이 과오납되었을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부담금의 분할납부) ①법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분할납부는 당해연도의 부담금이 100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때에는 그 부담금을 연 4기로 균등분할하여 납부하되, 최초기분의 부담금은 그 연도의 초일부터 90일이내에, 제2기분은 5월 31일까지, 제3기분은 7월 31일까지, 제4기분은 9월 30일까지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가산금 징수의 예외)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가산금의 징수액이 1천원미만인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32조 (연체금의 징수)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부과율은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으로 한다.

②법 제2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연체금이 1천원미만인 경우
2. 납부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독촉한 경우
3. 천재지변등 체납에 관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33조 (체납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및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체납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며, 같은 순위의 징수금이 2이상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부담금 기타 징수금을 선순위로 한다.

1. 체납처분비

(추 122)

2. 연체금

3. 가산금

4. 부담금

제34조 (부담금 기타 징수금의 결손처분) ①법 제3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로 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
2.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연체금·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때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부담금 기타 징수금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채권의 담보로 된 재산인 경우에 그 매각추산가액이 가산금·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때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조회하여 그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분사무소의 설치승인) 공단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의 설치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분사무소에 관한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분사무소 설치승인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 칭
2. 소재지
3. 설치이유
4. 설치예정연월일
5. 조직 및 정원
6. 업무내용

제36조 (설립등기)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분사무소 및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산하기관의 소재지

(추 122)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6. 공고의 방법

제37조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①공단이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이내에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다만,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의 분사무소 설치등기는 공단의 설립등기와 함께 행한다.
2.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이내에 제36조 각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이내에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②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 새로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3주이내에 그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38조 (이전등기) ①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2주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이내에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39조 (변경등기) 공단은 제36조 각호의 사항중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이내에,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제40조 (등기신청시의 첨부서류)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공단의 정관
2.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분사무소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노동부장관의 분사무소 설치승인서
3.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의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추 122)

4.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41조 (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42조 (임원) ①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이사는 보건복지부·노동부 및 기획예산처의 3급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장애인 관련업무와 관계되는 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②공단의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근이사는 장애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제43조 (자문위원회 및 후원회) ①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주요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자문을 얻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공단에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 또는 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4조 (중요한 재산의 처분등) 공단은 다음 각호의 재산을 양도·양수·대여 또는 교환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공단의 토지·임야 및 건물
2. 교육시설·진단 및 검사용 장비 기타 이와 관련한 주요장비
3. 기타 공단의 재산증감에 중요한 사유가 되는 재산

제45조 (자금차입의 승인신청) 공단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차입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의 사유
2. 차입처
3. 차입금액
4. 차입의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추 122)

6. 기타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6조 (사업계획 및 예산서) ①공단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단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
4. 기타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방침·주요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공단이 승인을 얻은 예산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내용 및 그 사유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7조 (배분비율)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금액과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금액의 배분비율은 각각 3분의 2와 3분의 1로 한다.

제48조 (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당해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3.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및 공단 감사의 의견서
4. 기타 결산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제49조 삭제 〈2002·9·11〉

제50조 (내부규정의 승인)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추 148)

1. 공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회계·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
4.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위탁된 사업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단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51조 (업무의 감독)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2조 (정부의 출연금) ①법 제60조제1항제1호 및 법 제6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고자 하거나 기금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계상하여 출연 또는 지급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단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수행경비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노동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 사업수행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3조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등) 법 제6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출연금 또는 기부금의 출연방법 또는 기부방법등은 노동부장관이 그 출연 또는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54조 (기금의 용도) 법 제6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비용 또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지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고용사업
3. 기금의 관리·운영

(추 122)

4.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하는 사업

제55조 (기금지급의 위탁) 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융자·지원 또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은행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제5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잉여가 있는 때에는 이를 기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기금의 적립금 및 지출상 여유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④법 제6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⑤법 제6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57조 (기금운용계획)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월별 자금계획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8조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통지) 노동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는 때에는 이를 감사원장·재정경제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 (기금계정) 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각각 구분하여 한국은행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0조 (거래은행의 지정) 기금출납공무원은 그 소재지에 있는 한국은행(주된 사

(추 122)

무소·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그 소재지에 한국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국은행을 그가 발행하는 수표의 지급인(이하 "거래은행"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1조 (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①기금출납명령관이 기금의 수입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이를 기금계정에 납입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체없이 수납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한 기금의 수입금을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계정에 집중시켜야 한다.

제62조 (기금의 지출절차) ①기금출납명령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출납명령관의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거래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기금출납명령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63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①노동부장관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의 범위안에서 각 기금출납명령관에게 분기별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별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기금출납공무원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기금출납명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제64조 (기금지출 한도액의 배정) ①노동부장관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별 자금계획의 범위안에서 각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월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 지출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5조 (기금운용상황의 보고) ①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수입액보고서와 기금지출원인행위보고서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지출액보고서를 매월말일을 기준일로

(추 122)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수입액보고서, 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및 기금지출액보고서에 의하여 각각 총괄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달중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보고외에 기금운영관리에 필요한 보고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66조 (기금의 결산보고) 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의 회계연도 종료후 6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의 개황
2. 결산의 개요
3. 기금운용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차입금상황조서
6. 재산현황표
7. 연도별 기금조성 재원현황표

제67조 (다른 법령의 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68조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선임) ①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상시 10인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한다. 다만, 상시 10인미만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장애유형에 따른 특성을 감안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담원을 두게 할 수 있다.

②상담원을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이내에 상담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69조 (경비의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재활실시기관 기타 장애인고용촉진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관련단체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 122)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연구·홍보사업 및 각종 대회 개최
3. 기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9조의2 (제품의 우선구매 등) 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9·11〕

제70조 (권한의 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지도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적응훈련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4.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고용
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알선
6.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등
7.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영업장애인의 지원
8.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근로자의 지원
9.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후 적응지도
10.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1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조치
1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에 관한 자료제공
1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고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1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고용계획·실시상황의 제출명령 및 고용계획의 변경명령에 따른 고용계획·실시상황 및 변경계획의 접수
15.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
16.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감면·고용장려금의 추가지급·부담금의 추징·환급 및 분할납부
17.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및 연체금의 징수
18.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추징 및 환급통지
19.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
20.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결손처분
21. 법 제61조제3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융자·지원 및 보조
22.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에 관한 사항
23.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위탁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추 148)

경우에 한한다)

②공단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체납처분
2. 제1항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결손처분

제71조 (과태료 부과징수)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당해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1항제15호 내지 제20호·제23호 및 동조제2항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용장려금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③(권한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70조제1항제15호 내지 제20호 및 제2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무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이를 수행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계획·실시상황의 제출명령, 고용계획

(추 122)

의 변경명령 및 고용내용공표

나.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위임받은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2002·9·11 대령1773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추 148)

〔별표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 공무원(제21조관련)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렬의 공무원
   가. 1급 내지 9급공무원중 공안·광공업·농림수산·물리·교통(교통직렬 제외)·시설·정보통신(전산직렬 제외)직군의 전체 직렬
   나. 연구직공무원중 학예·광공업·농림수산·물리직군의 전체 직렬
   다. 지도직공무원중 농림수산직군의 전체 직렬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직공무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직렬의 공무원
   가. 사무보조분야를 제외한 철도현업직렬
   나. 계리 및 사무보조분야를 제외한 정보통신현업직렬
   다. 토건·기계·화공·선박·농림 및 방호직군의 전체 직렬
   라. 통신·전화수리 및 전기 직렬
4.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중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6.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직공무원중 이 표의 제3호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과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고용직공무원
7. 국회인사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렬의 공무원
   가. 경위직렬
   나. 공업·정보통신(전산직렬 제외)·시설 및 농림직군의 전체 직렬
8. 국회인사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중 전화수리·전기 및 기계 직렬 공무원

(추 122)

9.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렬 및 직류의 공무원

가. 법원사무 직렬중 조사사무 직류, 법정경위직렬

나. 통역·시설 및 공업직군의 전체 직렬

10.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직렬 및 직류의 공무원

가. 사무보조 직렬중 정리직류

나. 시설·공업·원예 및 방호직군의 전체 직렬

다. 전화수리직렬

11. 위 각호의 공무원외에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렬 또는 직류·직무분야 및 직급등에 해당하는 공무원

〔별표 2〕

특정장애인의 직종·범위 및 고용비율(제25조관련)

특정직종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	비 고
안마사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안마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 100분의 70이상 2.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을 제외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안마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 100분의 30이하	특정장애인 고용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수에 1인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는 버린다.

(추 122)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71조제3항관련)

위 반 행 위	해당법규정	금액
1.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의 제출명령, 고용계획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때	법 제73조제1항	
가.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제출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나. 기타의 사유로 제출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50만원
2.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73조제2항제1호	
가. 허위로 신고한 경우		200만원
나.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다. 기타의 사유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3.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때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법 제73조제2항제2호	
가.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검사거부·방해·기피 또는 보고미이행·허위보고를 한 경우		200만원
나. 기타의 사유로 검사거부·방해·기피 또는 보고미이행·허위보고를 한 경우		150만원
4.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법 제73조제3항제1호	
가.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자		100만원
나.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70만원

(추 122)

다. 기타의 방법으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0만원
5.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	법 제73조제3항제2호	
가. 장애인근로자를 30인이상 고용하면서 6월이상 상담원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
나. 장애인근로자를 20인이상 29인이하 고용하면서 6월이상 상담원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만원
다. 장애인근로자를 10인이상 19인이하 고용하면서 4월이상 상담원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10만원
6.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한 관계자의 답변을 방해한 때 등(1차 경고후 불응시 과태료 부과)	법 제73조제3항제3호	
가. 관계공무원의 장애인고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관계자의 답변을 방해한 경우		50만원
나. 관계공무원의 장애인고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관계자가 허위의 답변을 한 경우		50만원
다. 관계공무원의 장애인고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관계자가 답변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50만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전문개정 2000·8·21 노동부령제166호
개정 2002·9·13 노동부령제184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증장애인의 기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장애등급중 제2급을 말한다.

제3조 (장애인고용의식고취를 위한 활동) 노동부장관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주 및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을 장애인고용촉진강조기간으로 설정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대회 및 장애인고용촉진관련 세미나의 개최와 장애인고용촉진 모범사례 발표
2. 지역별 장애인고용촉진운동의 실시
3. 기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홍보·교육 및 간담회의 개최

제4조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법 제8조제2항제6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
2. 안마사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마수련기관

제5조 (자영업장애인의 창업자금 융자기준 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영업장애인에 대한 창업자금융자의 우선순위는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장애정도가 중한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대한 융자금의 연 이자율은 3퍼센트로 하고, 융자금의 거치기간은 2년으로,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기타 융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추 148)

제6조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자금 융자기준 등)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자금융자의 내역은 직업생활 안정자금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자금 등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융자금의 연 이자율은 3퍼센트로 하고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장애인근로자의 융자우선순위 기타 융자기준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 등의 제출)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의 장 등이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 및 그 고용계획의 실시상황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공무원고용계획 및 실시상황통보서에 의한다.

제8조 (시각장애인의 장애등급) 영 별표 2의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란 제1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제9조 (장애인고용계획 등의 제출)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 및 그 고용계획의 실시상황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에 의한다.

제10조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3〉

1. 장애인근로자명부 사본 1부
2. 장애인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 장애인근로자가 포함된 전체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제11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신고·납부) ①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3〉

1. 장애인근로자명부 사본 1부

(추 148)

2. 장애인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장애인근로자가 포함된 전체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및 수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 (부담금의 환급통지)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환급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애인고용부담금환급통지서에 의한다.

제13조 (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 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분할납부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고용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2·9·13〉

제14조 (부담금의 징수·추징통지)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추징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고용부담금징수·추징통지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추징 부담금의 납부 및 수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 (독촉장)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 (전문요원의 종류 등) 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9·13〉

1.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2. 장애인직업훈련교사
3. 장애인직업재활전문요원
4. 및 5. 삭제 〈2002·9·13〉
6. 수화통역전문요원
7. 점역전문요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요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소정의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개정 2002·9·13〉

1.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2.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 공단,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기타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 장애인근로자가 종

(추 148)

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요원 양성과정의 훈련실시기관, 훈련교과 및 훈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2·9·13〉

제17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2000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 부담금의 신고·납부, 부담금의 환급통지, 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 부담금의 징수·추징통지 또는 독촉은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개정규정(관련서식을 포함한다)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관련서식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2·9·13 노동부령18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요원 양성과정 이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실시한 소정의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기 관 명

우○○○-○○○ 주소		/전화( ) ○○○-○○○○ /전송( ) ○○○-○○○○
○○과	과장 ○○○ 주사, 사무관 또는 서기관 ○○○ 담당자 ○○○	

문서번호

수 신 노동부장관 시행일자 년 월 일

제 목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통보 발신 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3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구분 / 내용	적용대상공무원 정·현원									전년도 장애인고용계획 실시상황						당해연도 장애인고용계획									⑪비고
공무원별 / 계급·직급 / 직렬별 또는 직류별(직무분야)	①정원			②현원			③장애인 공무원 현원			④장애인 공무원 법정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①×2/100-③)			⑤공무원 공개채용 계획인원			⑥장애인 공무원 공개채용 실시인원			⑦장애인 공무원 법정공개채용률에 미달하는 인원(⑤×5/100-⑥)			⑧공무원 공개채용 계획인원			⑨장애인 공무원 공개채용 계획인원			⑩장애인 공무원 법정공개채용률달성도(%) (⑨×100/⑧×5/100)			
	계	1~5급(기능1~5급, 연구관)	6~9급(기능6~10급, 연구사)	계	1~5급(기능1~5급, 연구관)	6~9급(기능6~10급, 연구사)	계	1~5급(기능1~5급, 연구관)	6~9급(기능6~10급, 연구사)	계	1~5급(기능1~5급, 연구관)	6~9급(기능6~10급, 연구사)	계	1~5급(기능1~5급, 연구관)	6~9급(기능6~10급, 연구사)	계	1~5급(기능1~5급, 연구관)	6~9급(기능6~10급, 연구사)	계	1~5급(기능1~5급, 연구관)	6~9급(기능6~10급, 연구사)	계	1~5급(기능1~5급, 연구관)	6~9급(기능6~10급, 연구사)	계	1~5급(기능1~5급, 연구관)	6~9급(기능6~10급, 연구사)	
⑫총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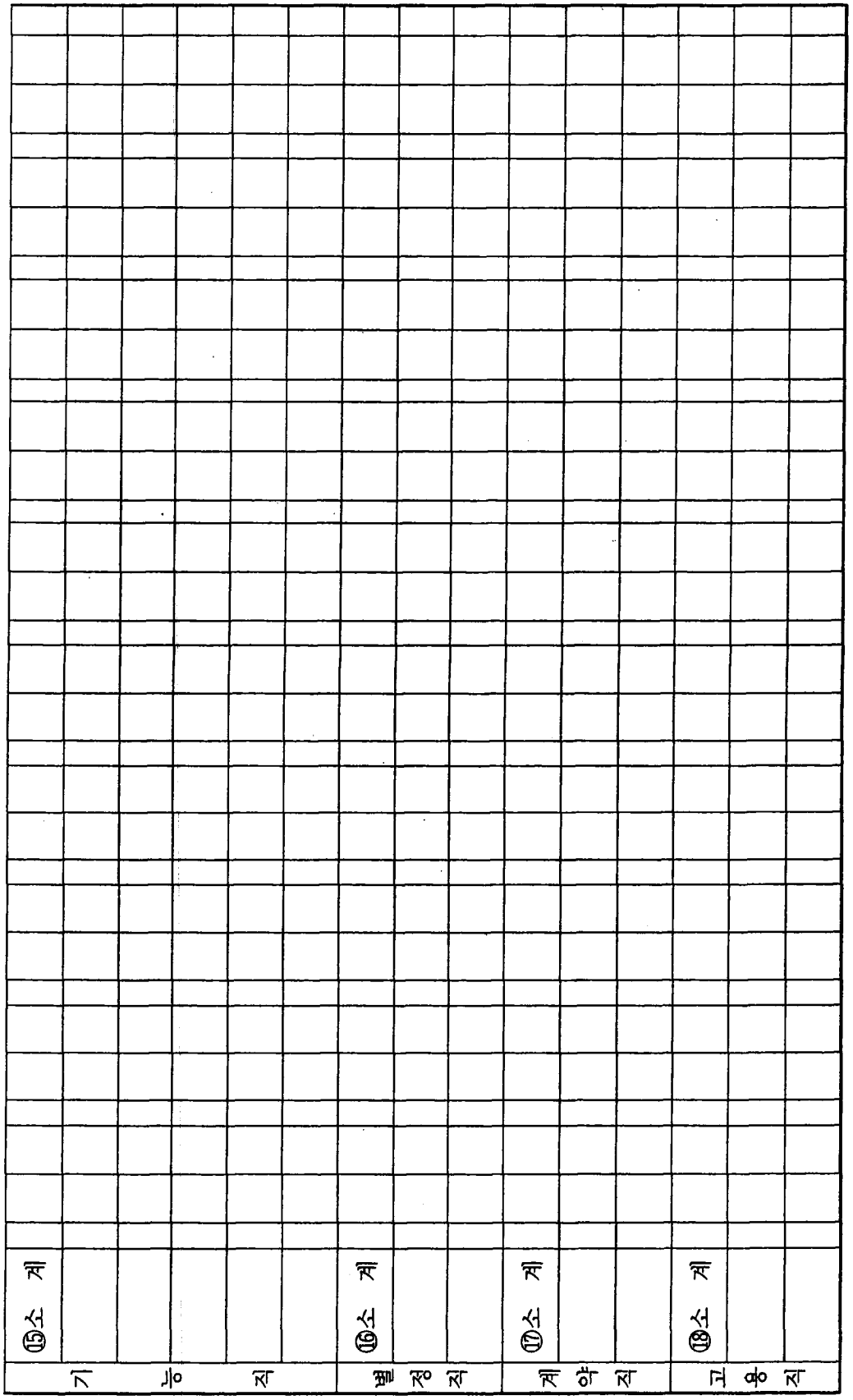

257㎜×364㎜
(신문용지 54g/㎡)

(추 124)

(뒤 쪽)

(기재요령)

(추 124)

1. 적용대상공무원 정·현원, 전년도 장애인고용계획 실시상황 및 당해연도 장애인고용계획의 작성에 있어서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제외 공무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전체공무원에서 이를 제외한다.
   ※ 작성기관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그리고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되며 특히 각 시·군·구의 사항은 반드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취합하여 총괄적인 전체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교육감이 작성기관이 됨).
   ※ 장애인공무원 여부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되, 공무원 정기건강진단시 장애의 유무·유형·정도등을 포함하여 파악할 수도 있으나, 가급적 거주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을 권장하고 장애인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따르도록 한다.
2. 공무원의 직렬·직류 및 계급등의 구분은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3. 직렬별 또는 직류별 명칭을 작성함에 있어서 일반직(연구직공무원 포함)공무원(⑬·⑭)과 기능직공무원(⑮)은 당해 기관의 직렬 또는 직류별로(예 : 행정·통계), 별정직공무원(⑯), 계약직공무원(⑰) 및 고용직공무원(⑱)은 해당직무분야를 기재한다.
4. 직급별 인원을 작성함에 있어서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은 1～5급(연구관), 기능 1～5급 및 6～9급(연구사), 기능 6～10급으로 각각 구분하고, 별정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며, 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경우 ①란 내지 ⑩란의 인원중 각각의 "계"란만 작성하고 직급별 세부내역 인원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5. 작성기준일은 당해연도 1월 1일 또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고용계획의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연도중에 신설 또는 폐지하게 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 신설되는 날이 시기가 되며, 폐지하는 날이 종기가 된다.
6. ④란·⑦란 및 ⑩란의 계산에 있어서 1인미만 또는 1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는 버린다.
7. ⑪란에는 장애인공무원 법정 공개채용률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되, 지면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에 작성·첨부한다.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2·9·13〉

□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 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서
□ 장애인고용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
□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신청서

①사업체명		②사업주		③주민등록번호	
④소재지				⑤사업장수	개
⑥전화번호		⑦월평균상시근로자수	명	⑧장애인고용률	%
⑨사업장명			⑩소재지		
⑪주된생산품.사업		⑫적용제외율	%	⑬사업자등록번호	

( )년도 장애인고용장려금(고용부담금)산정내역

월별	⑭상시근로자수(공사금액)	⑮적용제외근로자수	⑯적용대상근로자수	⑰장애인고용의무인원	⑱장애인근로자수			⑲초과고용(미달)장애인수
					전체	경증남성	중증·여성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⑳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납부액	미달고용인원 부담기초액(원) ( )×( ) = 원	㉑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신청액	원
㉒입금거래은행명 및 계좌번호			
㉓장애인고용부담금분할납부신청	제1기(90일이내) 원	제2기(5. 31) 원	제3기(7. 31) 원	제4기(9. 30) 원

유형 \ 등급	계	㉔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총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㉕장애인고용계획인원 명(예상고용률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6조(제27조, 제28조,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0조, 제11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신청서(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서, 장애인고용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추 148)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1. 장애인근로자명부 사본 1부 2. 장애인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장애인고용장려금신청시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4. 장애인근로자가 포함된 전체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만을 보고시에는 구비서류가 없습니다.	수수료 없 음

※ 이하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기재합니다.

접수일			발부(지급)일				고지(지급)금액			
결 재	담당		부장		소장		이사장		지시	결재일

257㎜×364㎜

(작성요령)

1. ⑤·⑨란에서 "사업장"이라 함은 본사·지사·지점·공장·영업소 등과 같이 하나의 경영조직으로서 유기적으로 서로 관련하여 경영활동이 행하여지는 시설·장소를 말하며, 하나의 사업주가 장소가 분리된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⑨란 이후는 사업장별로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 ⑦·⑭란의 "월평균상시근로자"와 "상시근로자"라 함은 매월 근로일수가 15일 이상(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5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⑦란의 "월평균상시근로자"는 매월 근로일수가 15일 이상인 근로자의 연간합계를 15일 이상 가동한 월수로 나누어 산출함. 다만,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인원을 총집계하여 산출). 이 경우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는 매년 노동부장관이 따로 결정·고시하는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의 공사실적액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대상인 300인으로 보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보고된 사업주의 연간공사실적액(아파트분양공사 등 자기공사 포함)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건설업 상시근로자수〕=〔연간공사실적액÷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공사실적액×300인〕〈1인 미만의 단수는 버림〉
3. ⑧란의 "장애인고용률"은 사업장별 인원을 총집계한 당해연도 12월의 장애인근로자수를 당해연도 12월의 적용대상근로자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⑫란의 "적용제외율"이라 함은 근로자수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를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결정·고시하는 「업종별적용제외율」을 말합니다.
4. ⑮란의 "적용제외근로자수"는 상시근로자수에 적용제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적용제외근로자수〕=〔상시근로자수×업종별적용제외율〕〈1인 미만의 단수는 버림〉
5. ⑯란의 "적용대상근로자수"는 ⑭란의 "상시근로자수"에서 ⑮란의 "적용제외근

(추 148)

로자수"를 빼고 산출하며, ⑰란의 "장애인고용의무인원"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장애인고용의무인원〕 = 〔적용대상근로자수 × 의무고용률(2%)〕〈1인 미만의 단수는 버림〉

6. ⑱란의 "장애인근로자수"를 기재할 경우 "경증남성"란에는 경증 남성 장애인을, "중증·여성"란에는 중증 또는 여성 장애인을 기재합니다.
7. ㉒란에는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거래은행명과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8. ㉓란의 "장애인고용부담금분할납부신청"은 부담금총액이 100만원 이상으로서 4기로 균등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9. ㉔란은 전년도 장애인고용실시상황중 12월 장애인근로자를 기준으로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을 각각 기재합니다.
10. ㉕란은 당해연도 장애인고용계획인원을 기재하되 장애인의 고용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장애인 고용률을 기재합니다.

(유의사항)

1.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대상자(⑦란의 "월평균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주)중 일부 월에 대하여 고용장려금의 수급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고용부담금과 고용장려금 상호간에 상계가 가능합니다.
2. "월평균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주일 경우에는 특정 월이 300인 미만이 되더라도 부담금납부대상이 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3. 고용장려금지급인원 산정은 월별로 장애인근로자수(전체)가 고용장려금지급기준인원을 초과할 경우 월별로 각각 계산하되, 중증 또는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우대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오니 ⑲란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고용장려금지급인원 산정시 월단위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산(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은 지급기준인원에 우선 산정)하고, ⑦란의 "월평균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주의 경우에는 장애인을 초과 고용하지 않은 월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신청(신고·납부)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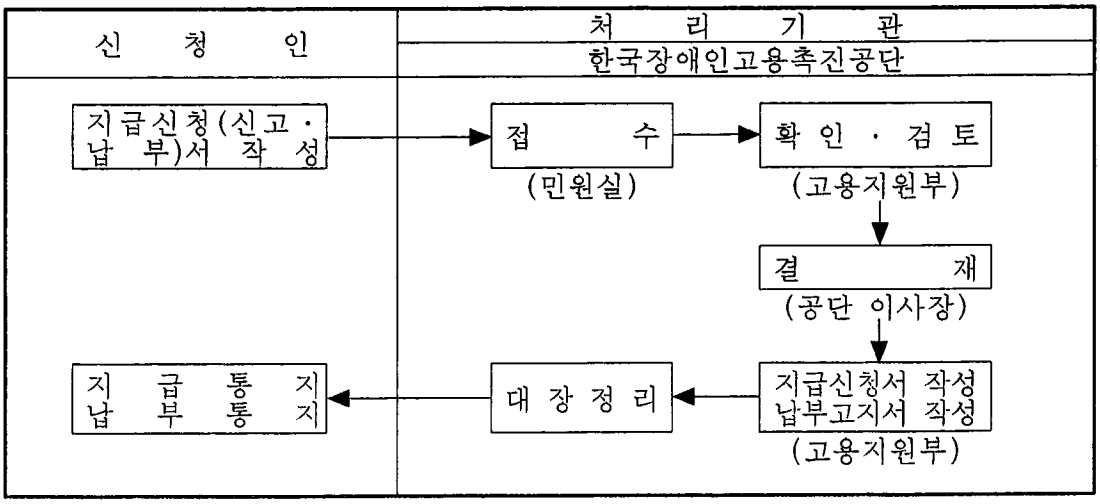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이동

〔별지 제4호서식〕

받는 이
주소

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영수증서
(납부자용)

회계연도	납부기한

사 업 체 명	
납 부 자 명 주 소	

기금징수관서	
계 좌 번 호	

회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소관	노동부	관		항		목	
구 분	계	장애인고용부담금		가 산 금			연 체 금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납 부 액	원	원		원			원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한국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_____

영수인

장애인고용부담금영수필통지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용)

회계연도	납부기한

사 업 체 명	
납 부 자 명 주 소	

기금징수관서	
계 좌 번 호	

회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소관	노동부	관		항		목	
구 분	계	장애인고용부담금		가 산 금			연 체 금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납 부 액	원	원		원			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은행 ( )지점
( )우체국

영수인

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서
(한국은행용)

회계연도	납부기한

사 업 체 명	
납 부 자 명 주 소	

기금징수관서	
계 좌 번 호	

회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소관	노동부	관		항		목	
구 분	계	장애인고용부담금		가 산 금			연 체 금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납 부 액	원	원		원			원		

한국은행 귀하
위 금액을 수납·납부하였습니다.
년 월 일 납부

( )은행 ( )지점
( )우체국

영수인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추 124)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장애인고용부담금 환급통지서			
사 업 체 명		사 업 주	
소 재 지			
환 급 내 역	년도 분		
부담금정산액	원		
부담금납부액	원		
환 급 액	원		
환 급 일 자	년 월 일		
환 급 방 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 과오납분을 위와 같이 환급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 ㊞

150㎜×95㎜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우 편 엽 서

우표

보내는 사람

□□□ - □□□

받는 사람

□□□ - □□□

(추 124)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장애인고용부담금 [□징 수 / □추 징] 통지서				
납 부 의무자	사업체명		사 업 주	
	소 재 지			

( )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추징)내역

구 분	장애인고용의무인원	장애인근로자수	부 담 금	가 산 금
조 사 전	명	명	원	원
조 사 후	명	명	원	원
부 족 액	명	명	원	원
징수(추징)총금액	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징수(추징)통지하오니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 ㊞

150㎜×95㎜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우 편 엽 서

우표

보내는 사람

□□□ - □□□

받는 사람

□□□ - □□□

(추 124)

〔별지 제7호서식〕

받는 이
주소

발행번호	회계연도

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고지서겸
영수증서(납부자용)

납부기한	고지일자

사 업 체 명	
납 부 자 명	
주 소	

기금징수관서	
계 좌 번 호	

회계연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소관	노동부	관		항		목	
	징수금 종목	금 액							
									원
									원
계									원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한국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_____기금(분임)출납이사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_____

영수인

발행번호	회계연도

장애인고용부담금영수필통지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용)

납부기한	고지일자

사 업 체 명	
납 부 자 명	
주 소	

기금징수관서	
계 좌 번 호	

회계연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소관	노동부	관		항		목	
	징수금 종목	금 액							
									원
									원
계									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은행 ( )지점
( )우체국

영수인

발행번호	회계연도

장애인고용부담금영수필통지서
(한국은행용)

납부기한	고지일자

사 업 체 명	
납 부 자 명	
주 소	

기금징수관서	
계 좌 번 호	

회계연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소관	노동부	관		항		목	
	징수금 종목	금 액							
									원
									원
계									원

한국은행 귀하

위 금액을 수납·납부하였습니다.

년 월 일 납부

( )은행 ( )지점
( )우체국

영수인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독 촉 장						
납 부 의무자	사업체명		사업주			
	소 재 지					
납 부 내 역						
기 간 별		납 부 금 액				
연 도	기 분	부담금	가산금	연체금	기타 징수금	합 계
총 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체납금액을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한국은행, 한국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합니다.

년 월 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 ㊞

150㎜×95㎜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우 편 엽 서

우표

보내는 사람

□□□ - □□□

받는 사람

□□□ - □□□

(추 124)

XII. 특수교육진흥법

●特殊教育振興法

소관부처 : 교육인적자원부

全文改正 1994·1·7 法律第4716號
改正 1995·12·29 法律第5069號(敎育法)
1997·12·13 法律第5440號
2000·1·28 法律第6217號
2001·1·29 法律第6400號(政府組織法)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特殊敎育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적절하고 고른 敎育機會를 제공하고, 敎育方法 및 與件을 개선하여 自主的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生活安定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5·12·29, 97·12·13〉

1. "特殊敎育"이라 함은 特殊敎育對象者의 特性에 적합한 敎育課程·敎育方法 및 敎育媒體등을 통하여 敎科敎育·治療敎育 및 職業敎育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特殊敎育對象者"라 함은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殊敎育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3. "特殊敎育機關"이라 함은 特殊敎育對象者에게 幼稚園·初等學校·中學校 또는 高等學校(專攻科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課程을 敎育하는 特殊學校 및 特殊學級을 말한다.
4. "特殊學級"이라 함은 特殊敎育對象者에게 統合敎育을 실시하기 위하여 高等學校이하의 各級學校에 설치된 學級으로서, 그들의 능력에 따라 全日制·時間制·特別指導·巡廻敎育등으로 운영되는 學級을 말한다.
5. "巡廻敎育"이라 함은 特殊敎育을 담당하는 敎員(이하 "特殊學校敎員"이라 한다)이 家庭이나 醫療機關, 學校 기타 시설등에 있는 特殊敎育對象者를 訪問하여 행하는 特殊敎育을 말한다.
6. "統合敎育"이라 함은 特殊敎育對象者의 正常的인 社會適應能力의 발달을 위하여 一般學校(特殊敎育機關이 아닌 學校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特殊敎育對象者를 敎育하거나, 特殊敎育機關의 在學生을 一般學校의 敎育課程에 일시적으로 참여시켜 敎育하는 것을 말한다.

(추 128)

7. "治療敎育"이라 함은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缺陷을 補充함과 동시에 生活機能을 회복시켜 주는 心理治療·言語治療·物理治療·作業治療·步行訓練·聽能訓練 및 生活適應訓練등의 敎育活動을 말한다.

第3條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임무)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特殊敎育을 振興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特殊敎育綜合計劃의 수립
2. 生活機能의 회복을 위한 治療敎育對策의 강구
3. 特殊敎育對象者의 就學指導
4. 特殊敎育의 내용 및 방법의 연구·개선
5. 特殊學校敎員의 養成 및 硏修
6. 特殊敎育機關의 설치·운영 및 特殊敎育을 위한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7. 特殊敎育에 필요한 敎材·敎具의 연구·개발 및 보급
8. 特殊敎育對象者에 대한 職業敎育對策의 강구
9. 特殊敎育機關收容計劃의 수립
10. 特殊敎育支援體制의 연구·개선
11. 기타 特殊敎育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經費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國家는 第1項의 業務推進이 부진하거나 第2項의 豫算措置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豫算擴充등 필요한 措置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新設 97·12·13〉

④國家는 第1項의 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關係中央行政機關間의 協助體制를 構築하여야 한다. 〈新設 97·12·13〉

第4條 (特殊敎育運營委員會) ①特殊敎育에 관한 主要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敎育人的資源部長官소속하에 中央特殊敎育運營委員會를, 敎育監소속하에 市·道特殊敎育運營委員會를, 敎育長소속하에 市·郡·區特殊敎育運營委員會를 둔다. 〈改正 97·12·13, 2001·1·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殊敎育運營委員會의 機能·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 中央特殊敎育運營委員會의 機能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第5條 (義務敎育등) ①特殊敎育對象者에 대한 國民學校 및 中學校 課程의 敎育은 이를 義務敎育으로 하고, 幼稚園 및 高等學校 課程의 敎育은 이를 無償으로 한다.

(추 1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義務 및 無償教育에 드는 費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이를 부담 또는 보조한다.

第6條 (私立의 特殊教育機關에 대한 보조)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私立의 特殊教育機關에 대하여 그 運營費·施設費·實驗實習費·職業輔導費 및 教員의 俸給 기타 特殊教育에 필요한 經費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第7條 (私立의 特殊教育機關에의 委託教育)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國立 또는 公立의 特殊教育機關의 收容施設이 부족하거나 特殊教育對象者의 義務教育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私立의 特殊教育機關에 그 教育을 委託할 수 있다.

第8條 (早期特殊教育施策 강구)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장애를 지닌 幼兒에 대한 幼稚園 課程의 教育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의 早期發見, 教員養成, 教育施設·설비의 확충등 早期特殊教育에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9條 (特殊教育에 관한 年次報告書) 政府는 特殊教育의 主要施策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定期國會 開會전까지 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2章 特殊教育對象者의 선정·就學등

第10條 (特殊教育對象者의 선정)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중 特殊教育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診斷·評價된 사람을 特殊教育對象者로 선정한다. 〈改正 2001·1·29〉

1. 視覺障碍
2. 聽覺障碍
3. 精神遲滯
4. 肢體不自由
5. 情緖障碍(自閉性을 포함한다)
6. 言語障碍
7. 學習障碍
8. 기타 教育人的資源部令이 정하는 장애

②第1項의 特殊教育對象者가 就學(入學·再入學·轉學 및 編入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高等學校 課程은 教育監이 市·道特殊教育運營委員會의, 中學校 課程이하의 各級學校는 教育長이 市·郡·區特殊教育運營委員會(이하 "運營委員會"라 한다)의 審査를 거쳐 이를 선정하고, 그외의 各級學校에 就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學校의 長이 이를 선정한다. 〈改正 97·12·13〉

③運營委員會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의 長은 特殊教育對象者를 審査·선정하는 때에는 그 보호자에게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보

(추 128)

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호자의 所在不明등으로 意見陳述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12·13〉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特殊敎育對象者의 診斷·評價·審査·선정의 기준 및 節次와 선정통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條 (各級學校의 지정·配置) ①特殊敎育對象者가 高等學校 課程이하의 各級學校에 就學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學校에 직접 志願하거나 高等學校 課程은 敎育監에게, 中學校 課程이하의 各級學校는 敎育長에게 學校를 지정·配置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7·12·13〉

②敎育監 또는 敎育長은 第1項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당해 運營委員會의 審査를 거쳐 적절한 學校를 지정·配置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市·道에 所在하는 特殊學校 또는 國立特殊學校를 지정·配置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市·道敎育監, 敎育長 또는 당해 學校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③運營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의 지정·配置要求를 審査할 때에는 特殊敎育對象者의 障碍程度·能力·居住地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보호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殊敎育對象者를 配置받은 學校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各級學校의 지정·配置要求 및 審査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2條 (就學便宜등) ①特殊學校는 特殊敎育對象者의 就學便宜를 위하여 寄宿舍를 설치·운영하거나 통학버스를 運行하여야 한다.

②寄宿舍를 설치·운영하는 特殊學校에는 特殊敎育對象者의 生活指導 및 보호를 위하여 敎育人的資源部令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生活指導員을 두어야 한다. 〈改正 2001·1·29〉

③通學이 어려운 特殊敎育對象者의 住民登錄地를 관할하는 敎育監은 그 特殊敎育對象者에게 宿食施設을 제공하거나 宿食에 필요한 經費를 지급하여야 한다.

第13條 (차별의 금지등) ①各級學校의 長은 特殊敎育對象者가 당해 學校에 入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入學의 志願을 거부하거나 入學銓衡合格者의 入學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7·12·13〉

②各級學校의 長은 特殊敎育對象者의 入學銓衡 및 修學등에 있어서 特殊敎育對象者의 장애의 種別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第3章 特殊敎育方法의 확장

(추 128)

第14條 (巡廻教育등) ①教育監은 各級學校에서 統合教育을 받고 있는 特殊教育對象者의 教育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巡廻教育 또는 派遣教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教育監은 學齡期가 지났거나 教育을 받지 못하고 있는 特殊教育對象者가 收容되어 있는 障碍人福祉施設·兒童福祉施設·治療機關 또는 家庭등에 特殊學校教員을 巡廻하도록 하거나 派遣하여 教育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對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15條 (統合教育) ①一般學校의 長은 特殊教育對象者 또는 그의 보호자나 特殊教育機關의 長이 統合教育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一般學校의 長은 統合教育의 편의를 위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特殊教育에 필요한 教材 및 教具를 갖추고, 傾斜路 및 손잡이와 特殊教育對象者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화장실·책상 및 의자등의 便宜施設을 설치하거나 갖추어야 한다.

③一般學校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統合教育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特殊學級을 設置·운영하여야 한다. 〈新設 97·12·13〉

第16條 (個別化教育) 各級學校의 長은 特殊教育對象者의 能力 및 特性에 적합한 個別化教育方法을 강구하여 特殊教育對象者로 하여금 그의 能力을 최대한 啓發하도록 하여야 한다.

第17條 (保護者教育) 各級學校의 長은 당해 學校에 在學중인 特殊教育對象者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또는 保護者教育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教育·治療 및 職業등에 대한 保護者教育計劃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第18條 (治療教育등) ①特殊教育機關의 長은 特殊教育對象者에 대한 健康診斷 및 生活機能의 회복정도의 판정을 定期的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特殊教育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 및 生活機能의 회복정도를 판정한 결과 治療教育이 필요한 特殊教育對象者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第19條 (治療教育擔當教員의 配置) ①特殊教育機關에는 治療教育을 담당하는 教員을 두어야 한다.

②治療教育을 담당하는 教員의 자격 및 配置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0條 (職業教育) ①特殊教育機關의 長은 特殊教育對象者의 職業教育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職業教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中學校이상의 課程을 설치한 特殊教育機關에는 職業教育에 관한 相談 및 指導를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職業擔當教師를 두어야 한다.

第21條 (專攻科의 설치) ①高等學校 課程을 설치한 特殊教育機關에는 專門技術教

(추 94)

育을 실시하기 위하여 修業年限 1年이상의 專攻科를 둘 수 있다.

②敎育人的資源部長官 및 敎育監은 地域別 또는 장애의 種別로 專攻科를 둘 特殊敎育機關을 지정할 수 있다. 〈改正 2001·1·29〉

第22條 (進路敎育) 特殊敎育機關의 長은 特殊敎育對象者가 進路에 대한 방향을 세우고 職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進路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4章 補 則

第23條 (特殊學校敎員의 資質向上)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特殊學校敎員의 資質向上을 위한 敎育 및 硏修를 定期的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 및 硏修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敎育人的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2001·1·29〉

第24條 (奬學金支給등)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各級學校에 在學중인 特殊敎育對象者에게 豫算의 범위안에서 奬學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一般學校의 長은 당해 學校에 在學중인 特殊敎育對象者에게 入學金·授業料 기타 納入金의 減免을 위한 措置를 마련하여야 한다.

第25條 (敎育課程의 운영등) ①特殊敎育機關의 敎育課程은 장애의 種別과 정도를 고려하여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정한다. 〈改正 2001·1·29〉

②特殊學校의 長은 敎育監의 승인을 얻어 당해 學校에 在學중인 精神遲滯 또는 情緖障碍(自閉性을 포함한다)를 지닌 特殊敎育對象者에 대하여 幼稚園·初等學校·中學校 또는 高等學校 課程을 統合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同一學校내의 進學에 관하여는 第11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新設 97·12·13〉

③特殊敎育對象者의 敎育을 위한 敎科用圖書는 無償으로 지급한다.

④特殊敎育을 위한 敎科用圖書의 著作·檢定·인정·발행·供給 및 價格査定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6條 (再審請求) ①特殊敎育對象者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敎育監·敎育長 또는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의 長의 措置에 대하여 異議가 있을 때에는 당해 運營委員會(學校의 長의 措置의 경우에는 中央特殊敎育運營委員會를 말한다)에 그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7·12·13〉

1. 第1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特殊敎育對象者의 선정
2.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의 지정·配置

(추 128)

②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殊敎育對象者를 配置받은 各級學校의 長은 이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運營委員會에 그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7·12·13〉

③中央特殊敎育運營委員會 및 運營委員會는 第1項 및 第2項의 再審請求를 받은 때에는 30日이내에 이를 審査·決定하여 請求人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④第3項의 審査決定에 異議가 있는 請求人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日이내에 行政審判을 제기할 수 있다.

⑤第1項 내지 第3項의 再審請求 및 審査節次와 決定通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7條 (權限의 위임) ①이 法에 의한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敎育監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2001·1·29〉

②이 法에 의한 敎育監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敎育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第5章 罰 則

第28條 (罰則) 第11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敎育監 또는 敎育長의 特殊敎育對象者 配置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各級學校의 長은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7·12·13, 2000·1·28〉

第28條의2 (罰則)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特殊敎育對象者에게 障碍를 이유로 入學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入學銓衡合格者의 入學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各級學校의 長은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本條新設 2000·1·28〕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1994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特殊敎育對象者에 대한 經過措置)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特殊敎育對象者로 판별되어 이 法 施行당시 各級學校에 在學중인 사람은 第10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선정된 特殊敎育對象者로 본다.

附 則 〈95·12·29 法506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추 128)

⑤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를 특수교육기관에 배치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전에 당해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관련된 내용을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98·7·16〉

제11조 (배치에 대한 이의)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이미 당해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의 수가 학생정원의 10퍼센트이상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2. 특수학교의 경우 당해 학교의 교육대상자의 장애종별과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별이 달라 효율적인 특수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 (순회교육 담당교사의 배치) 교육감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안에 소재한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 순회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98·7·16〉

제13조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 교육감은 교원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연수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98·7·16〉

제13조의2 (특수학급의 설치) ①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급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이상 12인이하인 학교 : 1학급이상
2. 특수교육대상자가 13인이상인 학교 : 2학급이상

②삭제 〈2001·12·19〉

〔본조신설 98·7·16〕

제14조 (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 ①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화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개개인에 대한 교육방법이 포함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화교육계획을 매 학년이 시작되기 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기중에 배치된 때에는 배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추 139)

제15조 (건강진단등)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생활기능 회복정도의 판정을 연 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치료교육 담당교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기관에 두는 치료교육 담당교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98·7·16〉

1. 특수학교의 치료교육과목 정교사·준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이 있는 자
2. 특수학교의 정교사 또는 준교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치료교육에 관련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교육 담당교원의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지체·지체부자유·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한다) 및 중복장애(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장애가 둘이상 복합된 장애를 말한다)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치료교육하는 특수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총학급수가 6개 학급이하인 때에는 1인을 배치하고, 6개 학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12학급마다 1인을 추가하여 배치한다.
2. 제1호외의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치료교육하는 특수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총학급수가 12개 학급이하인 때에는 1인을 배치하고, 12개 학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12학급마다 1인을 추가하여 배치한다.

제17조 (직업담당교사의 자격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이상의 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 두는 직업담당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98·12·31〉

1. 특수학교의 정교사·준교사 또는 실기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계 또는 기능계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다. 대학원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2. 대학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분야를 전공한 교원

제18조 (전공과의 운영)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과정을 설치

(추 139)

한 특수교육기관에 전공과를 두는 경우 그 수업연한은 장애의 종별 및 직종별 특수성을 참작하여 그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전공과를 둘 학교를 지정할 때에는 당해 전공과의 직종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제19조 (교과용도서)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교과용도서중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용 점역교과서의 원활한 발행·공급을 위하여 그에 관한 업무를 점역시설·설비를 갖춘 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 〈개정 2001·1·29〉

②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 및 가격사정등에 관하여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8·7·16〉

제20조 (재심청구) ①중앙위원회,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98·7·16〉

②위원회는 재심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위원회는 출석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심사건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탁교육의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1995학년도에 실시할 위탁교육에 관한 협의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11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중 중학교과정 교육대상자

(추 139)

②저작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점자도서관

부 칙 〈98·7·16 대령158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8·26 대령158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8·12·31 대령1596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2001·12·19 대령174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추 139)

〔별 표〕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심사 및 선정의 기준(제 9 조제 2 항관련)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4미만인 자

나. 시력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에 의하여 학습과제를 수행할 수 없고, 촉각이나 청각을 학습의 주요수단으로 사용하는 자

다. 두 눈의 교정시력은 각각 0.04이상이나 특정의 학습매체 또는 과제의 수정을 통하여서도 시각적 과제수행이 어려운 자

라.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또는 설비를 통하여서만 시각적 과제수행을 할 수 있는 자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가.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이상인 자

나. 청력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

다. 일상적인 언어생활과정에서 청각의 기능적 활용이 불가능하여 일반인과 함께 교육받기가 곤란한 자

3. 정신지체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가 75이하이며 적응행동에 결함을 지닌 자

4. 지체부자유 특수교육대상자

지체의 기능·형태상 장애를 지니고 있고, 체간의 지지 또는 손발의 운동·동작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일반적인 교육시설을 이용한 학습이 곤란한 자

5. 정서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가. 지적·신체적 또는 지각적인 면에 이상이 없음에도 학습성적이 극히 부진한 자

나. 친구나 교사들과의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문제를 지니는 자

다. 정상적인 환경하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자

라. 늘 불안해 하고 우울한 기분으로 생활하는 자

마. 학교나 개인문제에 관련된 정서적인 장애로 인하여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느끼는 자

바. 감각적 자극에 대한 반응·언어·인지능력 또는 대인관계에 결함이 있는 자

(추 53)

6. 언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조음장애·유창성장애·음성장애·기호장애등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곤란하고,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자

7.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셈하기·말하기·읽기·쓰기등 특정한 분야에서 학습상 장애를 지니는 자

※ 비 고 : 시력측정은 국제시시력표에, 청력측정은 국제공업규격품인 청력계에 의하며, 정신지체정도의 진단을 위하여는 지능검사, 적응행동검사, 언어·학력검사등을 실시하되,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사용하여야 함

(추 53)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5·4·28 교 육 부 령제660호
개정 1998·8·8 교 육 부 령제720호
2000·7·19 교 육 부 령제770호
2001·1·31 교육인적자원부령제779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특수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가 위탁교육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교육기관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8·8〉

1. 취학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제3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등)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중 전문대학과정이상 각급학교의 취학에 있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교육대상자선정신청서(전문대학과정이상)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8·8, 2000·7·19〉

1.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사본 1부
2. 진단서 1부
3. 고등학교졸업증서 사본 또는 고등학교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합격증서 사본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합격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②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중 고등학교과정이하의 각급학교의 취학에 있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신청서(고등학교과정이하)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8·8, 2000·7·19〉

1.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사본, 진단서 또는 학교장의견서 1부
2. 삭제 〈98·8·8〉

(추 130)

3. 중학교졸업증서 사본 또는 중학교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합격증서 사본 또는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합격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③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장애영역별 진단·평가의 도구는 별표 1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애영역진단·평가의 도구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④당해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특수교육대상자선정결과통지서(전문대학과정이상)에 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결과통지서(고등학교과정이하)에 의하여 각각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8·8〉

제4조 (각급학교의 지정·배치등) ①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학교의 지정·배치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98·8·8〉

1.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특수교육기관이 아닌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4. 다른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특수학교

②영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원 상황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8·8·8〉

제5조 (생활지도원)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학교의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가. 의료기사법에 의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육사

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추 9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도원은 학생 10인당 1인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15인당 1인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제6조 (숙식경비의 부담) ①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숙식에 필요한 경비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가 별지 제7호서식의 특수교육대상자숙식경비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 취학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기타 경비산출의 근거자료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숙식경비 지급의 청구를 받은 교육감은 14일이내 이를 심사하여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소요경비를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8·8·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숙식에 필요한 경비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장애의 정도에 비추어 통상의 통학거리를 벗어난 지역의 학교에 배치되었거나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가 거주하는 시·도에 소재하는 특수교육기관의 부족등의 사유로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특수학교에 배치한 경우등에 이를 지급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숙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 교육감은 당해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지급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입학전형 및 수학편의의 제공등) ①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의 영역, 장애의 정도 및 능력에 따라 입학전형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8·8·8〉

②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수학에 불편이 없도록 교수 및 학습활동에 필요한 각종 기기 및 장비등을 제공하거나 이의 사용 및 인력의 활용등을 최대한 허용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순회교육·파견교육 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의 영역, 장애의 정도 및 능력등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제9조 (개별화교육 운영등) ①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6조 및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화교육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당해 학교에 개별화교육

(추 130)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으로 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③개별화교육계획에는 대상학생의 인적사항, 현재의 학습수행 수준, 장·단기 교육목표, 교육의 시작 및 종료시기, 교수의 방법 및 평가계획 기타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건강진단등)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생활기능 회복정도의 판정을 위하여 장애영역별로 필요한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도함한다)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11조 (치료교육 담당교원의 배치등) ①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기관에 치료교육 담당교원을 배치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치료교육 과목의 교원자격외에 치료교육 영역의 자격 또는 면허가 있는 자를 우선하여 배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교육 담당교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장애의 영역과 치료교육의 영역이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제12조 (특수학교교원등의 자질향상)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제13조 (재심청구등)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하고자 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나 각급학교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청구서에 처분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8·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8·8 교육부령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7·19 교육부령77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31 교육인적자원부령77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추 130)

〔별표 1〕 〈개정 98·8·8〉

특수교육대상자진단·평가의 도구(제3조제3항관련)

장 애 영 역	진 단 · 평 가 의 도 구
시각장애·청각장애 및 지체부자유	1. 기초학습기능검사 2. 시력검사 3. 시기능검사 및 촉기능검사(시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4. 청력검사(청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정 신 지 체	1. 지능검사 2. 사회성숙도검사 3. 적응행동검사 4. 기초학습검사 5. 운동능력검사
정 서 장 애	1. 적응행동검사 2. 성격진단검사 3. 행동발달평가 4. 학습준비도검사
언 어 장 애	1. 구문검사 2. 음운검사 3. 언어발달검사
학 습 장 애	1. 지능검사 2. 기초학습기능검사 3. 학습준비도검사 4. 시지각발달검사 5. 지각운동발달검사 6.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비 고 : 장애영역의 진단·평가시에는 장애인증명서·장애인수첩 또는 진단서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별표 2〕 〈개정 98·8·8〉

장애영역별치료교육영역(제11조제2항관련)

장 애 영 역	치 료 교 육 영 역
시 각 장 애	시기능훈련, 촉기능훈련, 보행훈련, 감각·운동기능훈련, 생활훈련, 상담 및 심리치료, 행동치료등
청 각 장 애	청능훈련, 언어치료, 상담 및 심리치료, 행동치료등
정 신 지 체	감각·운동기능훈련, 언어치료, 작업치료, 생활훈련, 상담 및 심리치료, 행동치료등
지 체 부 자 유	감각·운동기능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상담 및 심리치료, 행동치료등
정 서 장 애	감각·운동기능훈련, 언어치료, 작업치료, 생활훈련, 상담 및 심리치료, 행동치료등

비 고 :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애영역이외에 다른 장애영역에 대한 치료교육영역의 자격이 있는 자의 추가배치가 가능함

(추 99)

〔별지 제1호서식〕〈개정 98·8·8〉

위탁교육기관변경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학 생 명			보 호 자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주 민 등 록 번 호			위 탁 교 육 증인 학교명	학교 부 (학년 반)	
변경 내용	회 망 학 교 명				
	사 유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도교육감 귀하

붙 임 : 1. 취학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란	접수연월일	년 월 일	결정 번호	제 호	결정 내용	
	결정연월일	년 월 일				

25252-03211민
95.3.31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0·7·19〉 (앞 면)

특수교육대상자선정신청서(전문대학과정이상)			사 진 (3cm×4cm)
장 애 종 별	접 수 번 호	학 생 명	
	(시·도) ( )-( )-( )	한글 : 한자 :	

출신학교(재학중 포함)	주민등록번호	주 소
( )고등학교(특수학급여부 :) ( )학교 고등부 년 월 졸업(예정)		□□□-□□□
년 시행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합격		(전화번호 :)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 생 성 명 : ㊞

보호자성명 : ㊞

붙 임 : 1.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사본 1부
2. 진단서 1부
3. 고등학교졸업증서 사본 또는 고등학교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합격증서 사본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합격증서 1부(해당자에 한함)

(추 122)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학교장 ㊞

시·도교육청 교육감 ㊞

학교의 장 귀하

(절 취 선)

특수교육대상자선정신청서(전문대학과정이상)접수증

장애종별	원서접수번호	학생명	출신학교(재학중 포함)	교부자 성명㊞
	( )-( )-( )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학교의 장 ㊞

25252-02711민
95.3.31 승인

210㎜×297㎜
(인쇄용지(2급) 60g/㎡)

(뒷 면)

1. 특수교육대상자선정신청서 제출 및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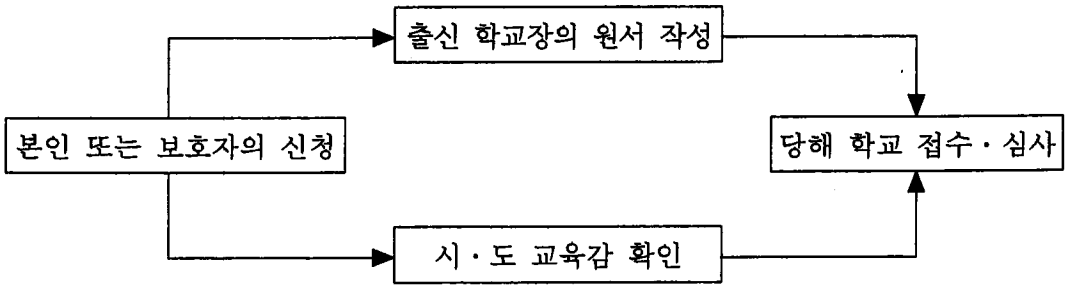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장애종별 : 시각장애·청각장애·정신지체·지체부자유등 장애의 분야를 기재함

(나) 접수번호 : 당해 학교에서 부여하므로 지원자는 기재하지 아니함

(다)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출신학교의 장 또는 시·도교육감(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함)의 날인이 있어야 함

(라) 진단서는 시각장애·청각장애는 안과 또는 이비인후과, 정신지체·정서장애는 정신과, 지체부자유는 정형외과등 해당 장애부분의 의사 진단내용이 상세히 기재된 것에 한함

(추 99)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0·7·19〉 (앞 면)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신청서(고등학교과정이하)

접수번호	-

신청인	대상자	장애종별						사진 3×4㎝
		성명(한자)		성별	남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신학교	학교 제 학년 반 재학 졸업 수료					
	보호자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대상자의 ( )	
		주소				전화번호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생성명: ㊞

보호자성명: ㊞

붙 임: 1.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사본, 진단서 또는 학교장의견서 1부
2. 〈삭제〉
3. 중학교졸업증서 사본 또는 중학교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합격증서 사본 또는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합격증서 1부(해당자에 한함)

시·도교육감(교육장) 귀하

(절 취 선)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신청서(고등학교과정이하)접수증

접수번호

장애종별	학생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비고
			-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증명함

접수자	년 월 일 성명 서명㊞

년 월 일

시·도교육감(교육장) ㊞

25252-02811민
95.3.31 승인

210㎜×297㎜
(인쇄용지(2급) 60g/㎡)

(추 122)

(뒷 면)

1.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신청서 제출 및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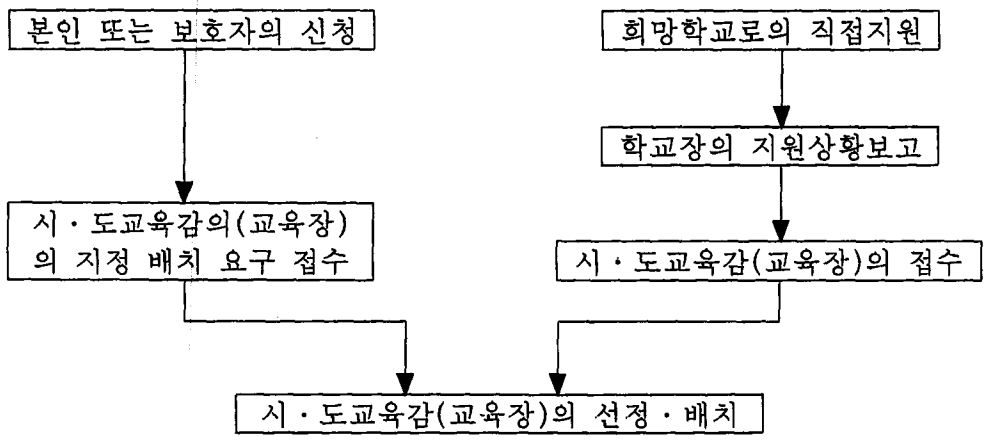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장애종별 : 시각장애·청각장애·정신지체·지체부자유등 장애의 분야를 기재함

(나) 접수번호 : 시·도(하급)교육청에서 부여하므로 지원자는 기재하지 아니함

(다)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시·도교육감(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함)의 날인이 있어야 함

(라) 진단서는 시각장애·청각장애는 안과 또는 이비인후과, 정신지체·정서장애는 정신과, 지체부자유는 정형외과등 해당 장애부분의 의사 진단내용이 상세히 기재된 것에 한함

〔별지 제4호서식〕 〈개정 98·8·8〉

특수교육대상자선정결과통지서(전문대학과정이상)

교부번호 :
장애종별 [ ]
주 소 :
성 명 : 성별(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출신학교 : 학교 제 학년 재학(졸업)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교부자서명㊞

년 월 일

학교의 장 ㊞

25252-02911일
95.3.31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추 99)

〔별지 제5호서식〕 〈개정 98·8·8〉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결과통지서(고등학교과정이하)

교부번호 :

배정학교 | 학교 부 제 학년 (학급)

주 소 :

성 명 : 성별(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출신학교 : 학교 부 제 학년 재학(졸업)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동법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되었음을 통지합니다.

교부자서명㊞

년 월 일

시·도교육감(교육장) 인

25252-03011일
95.3.31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서식〕 〈개정 98·8·8〉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 신 : 시·도교육감(교육장) 발 신 : 학교장 인

제 목 :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상황통보

특수교육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로 직접 입학지원한 학생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종별 / 지원현황	계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기타
계							
( )과정							

붙임 : 1.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신청서 사본 1부
2. 시·도교육감(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끝.

25252-03111보
95.3.31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추 99)

〔별지 제7호서식〕 〈개정 98·8·8〉

특수교육대상자숙식경비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4 일
학교명		학생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년도 숙식경비의 산정내역					
구분	숙식비용			비고	
지급신청금액					
산정내역					

특수교육진흥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도교육감 귀하

붙임 : 1. 취학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기타경비산출의 근거자료 1부							수수료 없음
처리란	접수일	년 월 일	지급결정번호	제 호	지급결정액	월 원	
	지급결정일	년 월 일					

25252-03311민
95.3.31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서식〕 〈개정 98·8·8〉 (앞 면)

재심청구서						
①사건						
②청구인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속학교				
	학교장	성명		학교명	(전화번호 :)	
③피청구인						
④재심청구의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⑤재심청구의취지						

(추 99)

⑥재심청구의이유	
⑦기 타 입 증 자 료	
⑧근 거 법 률	특수교육진흥법 제26조

위와 같이 재심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특수교육운영위원회위원장 귀하

붙 임 : 처분사유설명서 사본 1부

25252-03411민
95.3.31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뒷 면)

1. 재심청구서 작성요령

①사 건 명 : ○○ 처분 취소 청구

③피청구인 : 처분권자를 말함

④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 년 월 일자 ○○ 처분

⑤재심청구의 취지 : 피청구인이 년 월 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 처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함

⑥재심청구의 이유 : 청구의 취지가 인용될 수 있도록 원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기술

⑦기타 입증자료 : 본 건과 관련있는 제반증거 및 참고자료

※ 재심청구이유 및 입증자료 내용이 많을 때는 목록만 기재하고 첨부자료로 제시 가능

2. 재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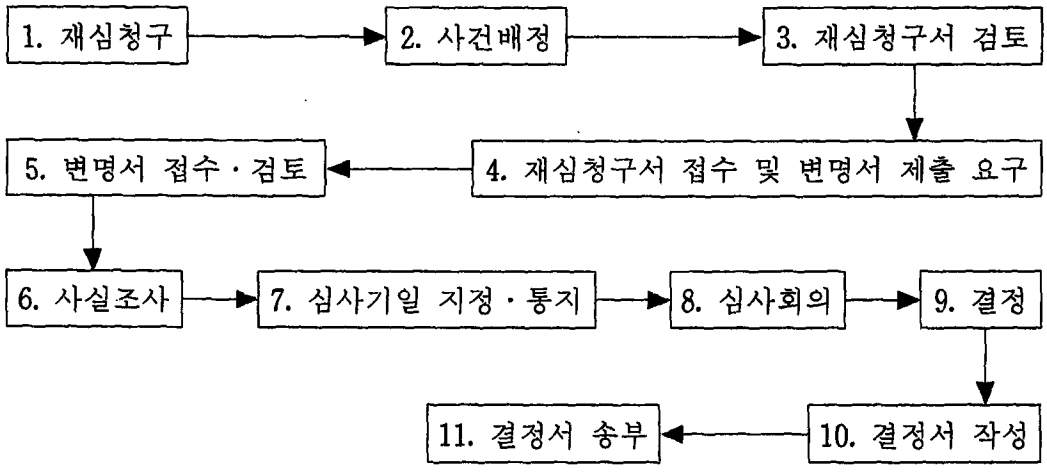

(추 99)

XIII. 교육공무원법

第5節 教 員

第1款 教育公務員

●教育公務員法

소관부처 : 교육인적자원부

全文改正 1981·11·23 法律第3458號
改正 1987·11·28 法律第3953號
1988· 4· 6 法律第4009號(教育法)
1990·12·27 法律第4268號(政府組織法)
1990·12·31 法律第4304號
1991· 3· 8 法律第4347號(地方教育自治에관한法律)
1991· 3· 8 法律第4348號
1991· 5·31 法律第4376號(教員地位向上을위한特別法)
1993·12·27 法律第4620號
1994·12·31 法律第4841號
1995·12·29 法律第5065號
1996· 8·14 法律第5158號
1996·12·30 法律第5207號
1999· 1·29 法律第5717號
2000· 1·28 法律第6211號
2001· 1·29 法律第6400號(政府組織法)
2002· 8·26 法律第6710號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教育을 통하여 國民全體에 奉仕하는 教育公務員의 職務와 責任의 特殊性에 비추어 그 資格·任用·報酬·研修 및 身分保障 등에 관하여 教育公務員에 適用할 國家公務員法 및 地方公務員法에 대한 特例를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6·12·30〉

第2條 (定義) ①이 法에서 "教育公務員"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改正 88·4·6, 2000·1·28〉

1. 教育機關에 근무하는 教員 및 助教
2. 教育行政機關에 근무하는 奬學官·奬學士
3. 教育機關·教育行政機關 또는 教育研究機關에 근무하는 教育研究官·教育研究士

②이 法에서 "教育機關"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國立 또는 公立의 學校 또는 機關을 말한다. 〈改正 93·12·27, 2000·1·28〉

1. 初·中等教育法 第2條 및 高等教育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各級學校
2.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研修機關
3. 教育關係의 法令 또는 條例에 의하여 設置된 學生修練機關 등 教育研修機關

(추 147)

③이 法에서 "敎育行政機關"이라 함은 敎育人的資源部 및 그 所屬機關과 서울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의 敎育官署를 말한다. 〈改正 88·4·6, 90·12·27, 91·3·8 法4347, 93·12·27, 95·12·29, 2001·1·29〉

④이 法에서 "敎育硏究機關"이라 함은 敎育에 관하여 專門的으로 調査·硏究를 하기 위하여 設立된 國立 또는 公立의 機關을 말한다.

⑤이 法에서 "任用"이라 함은 新規採用·昇進·昇給·轉職·轉補·兼任·派遣·降任·休職·職位解除·停職·復職·免職·解任 및 罷免을 말한다.

⑥이 法에서 "職位"라 함은 1人의 敎育公務員에게 賦與할 수 있는 職務와 責任을 말한다.

⑦이 法에서 "轉職"이라 함은 敎育公務員의 種別과 資格을 달리하는 任用을 말한다.

⑧이 法에서 "轉補"라 함은 敎育公務員의 同一職位 및 資格내에서의 勤務機關이나 部署를 달리하는 任用을 말한다.

⑨이 法에서 "復職"이라 함은 休職·職位解除 또는 停職중에 있는 敎育公務員을 職位에 復歸시키는 것을 말한다.

⑩이 法에서 "降任"이라 함은 同種의 職務내에서 下位의 職位에 任命하는 것을 말한다.

第2章 敎育公務員人事委員會

第3條 (人事委員會의 設置) ①敎育公務員(公立大學에 근무하는 敎育公務員을 제외한다. 이하 第4條까지 같다)의 人事에 관한 重要事項에 관하여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諮問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敎育人的資源部에 敎育公務員人事委員會(이하 "人事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90·12·27, 96·12·30, 2001·1·29〉

②人事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7人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③委員長은 敎育人的資源部次官이 되고, 委員은 7年이상의 敎育經歷 또는 敎育行政經歷이 있고, 人事行政에 관한 識見이 豊富한 者중에서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委囑한다. 〈改正 90·12·27, 94·12·31, 2001·1·29〉

④人事委員會의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條 (人事委員會의 機能)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事項에 관하여는 人事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90·12·27, 2001·1·29〉

1. 敎育公務員의 人事行政에 관한 方針 및 基準의 決定과 基本計劃의 樹立에 관한 事項
2. 敎育公務員의 人事에 관한 法令의 制定 또는 改廢에 관한 事項

(추 128)

3. 기타 教育公務員의 人事에 관한 중요한 事項

第5條 (大學人事委員會) ①副總長·大學院長·單科大學長에 대한 補職同意 및 敎授·副敎授·助敎授·專任講師에 대한 任用同意 기타 大學敎員의 人事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大學(産業大學, 敎育大學, 專門大學 및 放送·通信大學을 포함하되, 大學의 單科大學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人事委員會(이하 "大學人事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93·12·27, 96·12·30, 2000·1·28〉

②大學人事委員會의 構成·機能과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章 資 格

第6條 (敎師의 資格) 敎師는 初·中等敎育法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이 있는 者이어야 한다. 〈改正 2000·1·28〉

第7條 (校長·校監등의 資格) 校長·校監·園長·園監은 初·中等敎育法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이 있는 者이어야 한다. 〈改正 2000·1·28〉

第8條 (敎授등의 資格) 敎授·副敎授·助敎授·專任講師·助敎는 高等敎育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資格이 있는 者이어야 한다. 〈改正 2000·1·28〉

第9條 (敎育專門職員의 資格) 奬學官·敎育硏究官·奬學士·敎育硏究士는 別表의 資格基準에 해당하는 者이어야 한다. 〈改正 88·4·6〉

第4章 任 用

第10條 (任用의 原則) ①敎育公務員의 任用은 그 資格·再敎育成績·勤務成績 기타 能力의 實證에 의하여 행한다.

②敎育公務員의 任用에 있어서는 敎員으로서의 資格을 갖추고 任用을 원하는 모든 者에 대하여 能力에 따라 균등한 任用의 機會가 보장되어야 한다. 〈新設 91·3·8 法4348〉

第10條의2 (外國人 敎員) 大學은 敎育 또는 硏究를 위하여 外國人을 敎員으로 任用할 수 있다.

〔本條新設 99·1·29〕

第11條 (新規採用등) ①敎師의 新規採用은 公開銓衡에 의한다. 〈改正 90·12·31〉

〈1990·12·31 法律 第4304號에 의하여 1990·10·8 憲法裁判所에서 違憲決定된 本項을 改正〉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開銓衡에 있어서 담당할 職務遂行에 필요한 年齡 기타 필요한 資格要件과 公開銓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4·12·31〉

③削除 〈99·1·29〉

(추 137)

④大學의 敎員을 新規採用함에 있어서는 特定大學에서 學士學位를 취득한 者가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되, 그 구체적인 採用比率등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9·1·29〉

⑤大學의 敎員을 新規採用하고자 할 때에는 審査委員을 任命 또는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審査를 거쳐야 한다. 〈新設 99·1·29〉

⑥第5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委員의 任命 또는 위촉방법, 審査段階·審査方法 기타 審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9·1·29〉

第11條의2 (契約制 任用등) 大學의 敎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勤務期間·給與·勤務條件, 業績 및 成果約定등 契約條件을 정하여 任用할 수 있다. 〔本條新設 99·1·29〕

第12條 (特別採用)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採用할 수 있다. 〈改正 93·12·27, 96·12·30〉

1. 第44條第1項第1號의 事由로 인한 休職期間 滿了로 退職하거나 國家公務員法 第70條第1項第3號 또는 地方公務員法 第62條第1項第3號의 事由로 退職한 敎育公務員을 退職한 날로부터 2年이내에 退職時에 在職한 職位에 상당하는 職位의 敎育公務員으로 任用하는 경우 또는 敎育公務員인 者가 一般職의 國家 또는 地方公務員으로 되기 위하여 退職한 者를 退職時에 在職한 職位에 상당하는 職位의 敎育公務員으로 任用하는 경우
2. 任用豫定職에 相應한 硏究實績 또는 勤務實績이 3年이상인 者를 任用하는 경우
3. 競爭試驗에 의한 缺員補充이 곤란한 島嶼·僻地등 특수한 地域에 근무할 者와 특수한 敎科目을 담당할 者를 任用하는 경우
4. 敎育經歷·敎育行政經歷 또는 敎育硏究經歷이 있는 公務員으로서 競爭試驗에 의하여 任用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5. 私立學校에 근무하는 敎員을 敎育公務員으로 任用하는 경우

②國家公務員法 第70條第1項第3號 또는 地方公務員法 第62條第1項第3號의 事由로 免職된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優先的으로 特別採用할 수 있다. 〈改正 96·12·30〉

第13條 (昇進) 敎育公務員의 昇進任用은 同種의 職務에 종사하는 바로 下位職에 있는 者중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經歷評定·再敎育成績·勤務成績 기타 能力의 實證에 의하여 행한다.

第14條 (昇進候補者名簿) ①敎育公務員의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第13條의 規定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順位에 따라 資格別로 昇進候補者名簿를 작성·備置하여야 한다. 〈改正 91·3·8 法4348〉

(추 137)

②敎育公務員의 昇進任用에 있어서는 昇進候補者名簿의 高順位者順으로 缺員된 職에 대하여 3倍數의 범위안에서 昇進任用하거나 昇進任用提請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特殊資格이 있는 者를 昇進任用하거나 昇進任用提請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15條 (優秀敎育公務員 등의 特別昇進) ①敎育公務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고, 上位의 資格證을 所持하거나 資格基準에 達한 때에는 第13條 및 第1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特別昇進任用할 수 있다. 다만, 第4號 또는 第5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資格證을 所持하지 아니하거나 資格基準에 達하지 아니한 때에도 特別昇進任用할 수 있다. 〈改正 93·12·27, 96·12·30〉

1. 敎育者로서의 人品과 創意力이 뛰어나고 淸廉과 透徹한 奉仕精神으로 職務에 精勵하여 敎育風土刷新에 다른 敎育公務員의 龜鑑이 되는 者
2. 敎授·指導 및 硏究 등 職務遂行能力이 卓越하여 敎育發展에 至大한 貢獻을 한 者
3. 國家公務員法 第53條 또는 地方公務員法 第78條의 規定에 의한 提案의 採擇施行으로 豫算의 節減 등 行政運營發展에 현저한 實績이 있는 者
4. 在職중 功績이 특히 현저한 者가 國家公務員法 第74條의2 또는 地方公務員法 第66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名譽退職할 때
5. 在職중 功績이 특히 현저한 者가 公務로 인하여 死亡한 때

②第1項의 特別昇進의 要件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6條 (身體檢査) 敎育公務員의 新規採用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身體檢査를 시행하여야 하며,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身體檢査의 合格基準에 未達하는 者를 任用하거나 任用提請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7條 (補職管理의 原則) ①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法令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敎育公務員에 대하여 그 資格에 相應한 一定한 職位를 賦與하여야 한다.

②소속敎育公務員을 補職함에 있어서는 당해 敎育公務員의 資格·專攻分野·再敎育經歷·勤務經歷 및 適性 등을 考慮하여 適格한 職位에 任用하여야 한다.

第18條 (兼任) ①職位 및 職務內容이 類似하고 擔當職務遂行에 支障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敎育公務員과 一般職公務員·다른 特定職公務員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關聯敎育·硏究機關 기타 關聯機關·團體의 任·職員을 서로 兼任시킬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公務員으로 兼任시키는 경우에는 第9條 또는 初·中等敎育法 第21條第1項·第2項 및 高等敎育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資格基準에 達하거나 資格證을 所持한 者이어야 한다. 〈改正 2000·1·28〉

(추 147)

第19條 (兼職禁止) 各級學校의 監督廳에 在職하는 者는 大學의 長 또는 副總長·大學院長·單科大學長·副學長(大學의 副學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敎務處長·學生處長(또는 敎學處長)·敎務課長·學生課長·校長·校監·園長·園監 등의 職位를 겸할 수 없다. 〈改正 93·12·27〉

第20條 (人事交流) 專門大學 및 中等學校에 근무하는 敎育公務員은 相互間에 轉職 또는 轉補할 수 있다. 〈改正 91·3·8 法4348〉

第21條 (轉職 등의 제한) 敎育公務員의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敎育公務員이 당해 職에 任用된 날로부터 1年 이내에 다른 職에 任用하거나 勤務地를 變更하는 人事措置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機構의 改編 또는 職制의 改廢나 定員의 變更이 있는 경우
2. 당해 敎育公務員의 昇進 또는 降任으로 인하는 경우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별한 事由가 있는 경우

第22條 (敎育硏修機關 등에의 敎員의 配置) 敎育人的資源部長官 또는 敎育監은 敎育이나 敎育에 관한 전문적인 調査·硏究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2條第2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敎育硏修機關과 敎育硏究機關에 敎員을 둘 수 있다. 〈改正 2001·1·29〉

〔全文改正 93·12·27〕

제22조의2 (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 ①교육감은 교원배치의 적정과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 이상의 인근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교사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여야 하고, 그 학교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02·8·26〕

第23條 (人事記錄) 敎育機關·敎育行政機關 또는 敎育硏究機關의 長은 敎育人的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敎育公務員의 人事記錄을 作成·維持·保管하여야 한다. 〈改正 90·12·27, 2001·1·29〉

第24條 (大學의 長의 任用) ①大學(公立大學을 제외한다. 이하 第27條까지 같다)의 長은 당해 大學의 추천을 받아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用한다. 새로이 設立되는 大學의 長을 任用하거나 大學의 長의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學長으로 在職 중인 者를 당해 大學의 總長으로, 總長으로 在職 중인 者를 당해 大學의 學長으로 그 任期 중에 任用하는 경우에는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用한다. 〈改正 90·12·27, 91·3·8 法4348, 93·12·27, 94·12·31,

(추 147)

96·12·30, 2001·1·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大學의 長을 任用提請하고자 할 때에는 人事委員會의 諮問을 거쳐야 한다. 〈改正 90·12·27, 93·12·27, 2001·1·29〉

③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大學의 長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1·3·8 法4348, 93·12·27, 94·12·31〉

④大學의 敎員으로 在職중에 당해 大學의 長으로 任用된 者가 第28條第1號의 任期를 마친 경우에는 第2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學의 長의 任期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大學의 長 任用직전의 敎員으로 任用된 것으로 본다. 〈新設 96·12·30〉

第25條 (敎授등의 任用) ①敎授·副敎授는 大學의 長의 提請으로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을 거쳐 大統領이 任用하고, 助敎授는 大學의 長의 提請으로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任用한다. 〈改正 90·12·27, 93·12·27, 2001·1·29〉

②大學의 長이 第1項의 敎育公務員을 任用提請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大學人事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만, 大學人事委員會를 構成할 수 없는 新設의 大學은 당해 大學人事委員會가 構成될 때까지 人事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改正 93·12·27〉

③第1項의 敎育公務員의 轉補는 당해 大學人事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大學의 長의 提請으로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행한다. 〈改正 90·12·27, 93·12·27, 2001·1·29〉

第26條 (專任講師·助敎의 任用) ①專任講師·助敎는 大學의 長이 任用한다. 〈改正 93·12·27〉

②大學의 長이 專任講師를 任用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大學人事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改正 93·12·27, 96·12·30〉

第27條 (副總長·大學院長·單科大學長·副學長의 補職) ①副總長은 敎授중에서, 大學院長·單科大學長·副學長은 敎授 또는 副敎授중에서 大學의 長의 提請으로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補한다. 〈改正 90·12·27, 93·12·27, 2001·1·29〉

②大學의 長이 第1項의 敎育公務員을 補職提請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大學人事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改正 93·12·27〉

第28條 (大學의 長등의 任期) 大學의 長 및 副總長·大學院長·單科大學長·副學長의 任期는 다음과 같다. 다만, 第24條第1項 後段 또는 第55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되는 者의 任期는 第1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大學의 長의 任期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改正 93·12·27, 94·12·31, 96·12·30〉

1. 大學의 長 : 4年

(추 128)

2. 副總長·大學院長·單科大學長·副學長：2年

第29條 (奬學官등의 任用) ①教育人的資源部와 그 所屬機關에 근무하는 奬學官 및 教育研究官은 教育人的資源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用한다. 〈改正 2001·1·29〉

②教育監所屬 奬學官 및 教育研究官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당해 教育監의 추천을 받아 教育人的資源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用한다. 〈改正 2001·1·29〉

1. 教育行政機關에 근무하는 市·道教育廳 課長級이상의 職位에 해당하는 者
2. 市·道 教育研修機關의 長
3. 市·道 教育研究機關의 長
4. 市·道 教員研修機關의 長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教育專門職員외의 教育監所屬 奬學官 및 教育研究官은 당해 教育監의 추천으로 教育人的資源部長官이 任用한다. 〈改正 2001·1·29〉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用하는 教育專門職員의 轉補는 教育人的資源部長官이 행하고,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教育人的資源部長官이 任用하는 教育專門職員의 轉補는 당해 教育監이 행한다. 〈改正 2001·1·29〉

〔全文改正 93·12·27〕

第29條의2 (校長의 任用) ①校長은 教育人的資源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用한다. 〈改正 93·12·27, 2001·1·29〉

②校長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改正 95·12·29〉

③校長은 1次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 다만, 第31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校長으로 在職하는 回數는 이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新設 95·12·29〉

④校長의 任期가 學期途中에 만료되는 때에는 任期가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學期의 末日을 任期의 滿了日로 한다.

⑤第47條의 規定에 의한 停年전에 任期가 만료되는 校長으로서 教師로 勤務할 것을 희망하는 者(教師資格證을 가진 者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授業擔當能力 및 건강등을 참작하여 教師로 任用할 수 있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된 教師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元老教師로 優待하여야 한다.

⑦校長은 任期중에 轉補될 수 있으며, 校長의 轉補는 教育人的資源部長官이 행한다. 〈改正 2001·1·29〉

(추 128)

〔本條新設 91·3·8 法4348〕

第30條 (校監·教師·奬學士등의 任用)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教育公務員은 教育人的資源部長官이 任用한다. 〈改正 90·12·27, 91·3·8 法4348, 93·12·27, 2001·1·29〉

1. 第24條·第25條·第26條 및 第29條의2에 規定된 者를 제외한 教員
2. 奬學士·教育研究士

第31條 (招聘教員) ①大學은 國家機關·研究機關·公共團體 또는 産業體등에서 근무하거나 外國에 居住하고 있는 者와 外國人중 高等教育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資格이 있는 者를 招聘教員으로 任用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教科를 教授하기 위한 招聘教員으로 任用하는 경우에는 高等教育法 第16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2000·1·28〉

②高等學校이하 各級學校의 長은 당해 學校에 특별히 필요한 者(校長資格證 또는 教師資格證을 가진 者로 한한다)를 教員으로 招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招聘하고자 하는 教員의 任用權者에게 招聘校長 또는 招聘教師로 任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新設 95·12·29〉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의 요청을 받은 任用權者는 任用이 요청된 者중에서 당해 學校의 招聘校長 또는 招聘教師를 任用할 수 있다. 〈新設 95·12·29〉

④招聘教員의 任用·報酬·服務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2條 (期間制教員) ①高等學校이하 各級學校 教員의 任用權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豫算의 범위안에서 教員의 資格證을 가진 者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教員을 任用할 수 있다. 〈改正 96·12·30, 99·1·29〉

1. 教員이 第44條第1項 各號의 1의 사유로 休職하게 되어 後任者의 補充이 불가피한 때
2. 教員이 派遣·研修·停職·職位解除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職務를 離脫하게 되어 後任者의 補充이 불가피한 때
3. 特定教科를 限時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4. 教育公務員이었던 者의 知識이나 經驗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된 教員(이하 "期間制教員"이라 한다)은 正規의 教員으로 任用됨에 있어서 어떠한 優先權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同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된 者를 제외하고는 責任이 중한 監督的 職位에 任用될 수 없다. 〈改正 99·1·29〉

(추 128)

③期間制敎員에 대하여는 第43條 내지 第47條·第49條 내지 第51條와 國家公務員法 第16條·第70條·第73條 내지 第73條의3·第75條·第76條·第78條 내지 第80條·第82條 내지 第83條의2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하며, 任用期間이 滿了된 때에는 당연히 退職된다. 〈改正 96·12·30〉

第33條 (任用權의 위임등)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大統領은 그 任用權의 一部를 敎育人的資源部長官에게,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그 任用權의 一部를 敎育機關·敎育行政機關 또는 敎育硏究機關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0·12·27, 2001·1·29〉

②高等敎育法 第5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委託된 各種學校 소속敎員의 任用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任用의 기준에 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新設 95·12·29, 2000·1·28〉

第5章 報 酬

第34條 (報酬決定의 原則) ①敎育公務員의 報酬는 優待되어야 한다.

②敎育公務員의 報酬는 資格 및 經歷과 職務의 困難性 및 責任의 정도에 따라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5條 (報酬에 관한 規定) 第34條第2項의 大統領令에는 國家公務員法 第47條 및 地方公務員法 第45條에 規定된 事項 이외에 다음의 事項을 規定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1. 大統領令이 정하는 學校의 敎員이나 學科를 담당하는 敎員에 대한 特別手當에 관한 事項
2. 期間制敎員의 報酬에 관한 事項
3. 硏究手當에 관한 事項
4. 敎職手當에 관한 事項

第36條 (名譽退職) ①敎育公務員으로서 20年이상 勤續한 者가 停年전에 自進하여 退職하는 경우에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名譽退職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公務員중 校長이 任期滿了전에 自進하여 退職하는 경우 그 停年은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年齡으로 본다.

③第1項의 名譽退職手當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추 128)

〔全文改正 96·8·14〕

第6章 研 修

第37條 (研修의 機會均等) 教育公務員에게는 研修機關에서 再教育을 받거나 研修할 機會가 균등히 賦與되어야 한다.

第38條 (研修와 教材費) ①教育公務員은 그 職責을 수행하기 위하여 不斷히 研究와 修養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教育公務員의 研修와 그에 필요한 施設 및 奬勵에 관한 計劃을 樹立하여 그 實施에 노력하여야 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研修에 必要한 教材費를 支給할 수 있다.

③國家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教材費를 支給하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그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第39條 (研修機關의 設置) ①教育公務員의 再教育과 研修를 위하여 研修機關을 둔다.

②第1項의 研修機關의 設置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0條 (特別研修)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特別研修計劃을 樹立하여 教育公務員을 國內外의 教育機關 또는 研究機關에서 一定한 期間 研修를 받게 할 수 있다.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研修에 所要되는 經費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支給할 수 있다.

③教育人的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研修중인 教育公務員이 研修目的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指導·監督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0·12·27, 2001·1·29〉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研修를 받은 教育公務員에 대하여는 6年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一定한 期間 服務義務를 賦課할 수 있다.

⑤教育人的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研修를 받고 있거나, 받은 教育公務員이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指導·監督을 위한 指示事項을 履行하지 아니하거나,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服務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本人 또는 連帶保證人에게 그 特別研修에 所要된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의 返納을 命할 수 있으며, 이를 履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特別研修經費의 財源에 따라 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改正 90·12·27, 2001·1·29〉

(추 128)

第41條 (硏修機關 및 勤務場所 이외에서의 硏修) 敎員은 授業에 지장이 없는 한 所屬機關의 長의 承認을 얻어 硏修機關 또는 勤務場所 이외의 施設 또는 場所에서 硏修할 수 있다.

第42條 (硏修 및 勤務成績의 評定) ①敎育機關·敎育行政機關·敎育硏究機關의 長은 定期 또는 隨時로 그 소속敎育公務員의 再敎育 및 硏修의 實績과 勤務成績을 評定하여 人事管理에 反映시켜야 한다.

②第1項의 再敎育 및 硏修의 實績과 勤務成績의 評定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章 身分保障·懲戒·訴請

第43條 (敎權의 尊重과 身分保障) ①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敎員은 그 專門的 地位나 身分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改正 91·3·8 法4348〉

②敎育公務員은 刑의 宣告·懲戒處分 또는 이 法에서 정하는 事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意思에 反하여 休職·降任 또는 免職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敎育公務員은 勸告에 의하여 辭職을 당하지 아니한다.

第44條 (休職) ①敎育公務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로 休職을 願하는 경우에는 任用權者는 休職을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내지 第4號 및 第11號의 경우에는 本人의 意思에 불구하고 休職을 명하여야 하고, 第7號의 경우에는 本人이 원하는 경우 休職을 명하여야 한다. 〈改正 90·12·27, 93·12·27, 94·12·31, 96·8·14, 2000·1·28, 2001·1·29〉

1. 身體·精神上의 障碍로 長期療養을 요할 때
2. 兵役法에 의한 兵役의 服務를 위하여 徵集 또는 召集된 때
3. 天災·地變 또는 戰時·事變이나 기타의 事由로 인하여 生死 또는 所在가 不明하게 된 때
4.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한 義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職務를 離脫하게 된 때
5. 學位取得을 目的으로 海外留學을 하거나 外國에서 1年이상 硏究 또는 硏修하게 된 때
6. 國際機構·外國機關 또는 在外國民敎育機關에 臨時로 雇傭된 때
7. 子女(休職申請당시 1歲미만인 子女에 한한다)를 養育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女敎員이 姙娠 또는 出産하게 된 때
8.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指定하는 國內의 硏究機關이나 敎育機關등에서 硏修하게 된 때

(추 128)

9. 事故 또는 疾病등으로 長期間의 療養을 요하는 父母, 配偶者, 子女 또는 配偶者의 父母의 看護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配偶者가 國外勤務를 하게 되거나 第5號에 해당하게 된 때
11. 敎員의勞動組合設立및운영등에관한法律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組合專任者로 종사하게 된 때

②政黨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敎員이 國會議員으로 當選된 때에는 國會法 第2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期중 그 敎員의 職은 休職된다. 〈改正 93·12·27, 95·12·29〉

③大學에 在職중인 敎育公務員이 敎育公務員외의 公務員으로 任用되는 사유로 休職을 원하는 경우에는 任用權者는 休職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休職期間은 그 公務員의 在任期間으로 한다. 〈新設 96·12·30〉

④任免權者는 第1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休職을 이유로 人事上 불리한 處遇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同號의 休職期間중 최초 1年이내의 기간은 勤續期間에 算入한다. 〈新設 2000·1·28〉

第45條 (休職期間등) ①休職期間은 다음과 같다. 〈改正 88·11·28, 94·12·31, 96·8·14, 2000·1·28〉

1. 第44條第1項第1號의 事由로 인한 休職期間은 1年이내로 한다.
2. 第44條第1項第2號 및 第4號의 事由로 인한 休職期間은 그 服務期間이 滿了될 때까지로 한다.
3. 第44條第1項第3號의 事由로 인한 休職期間은 3月이내로 한다.
4. 第44條第1項第5號의 事由로 인한 休職期間은 3年이내로 한다. 다만, 學位取得의 경우에는 3年의 범위안에서 延長할 수 있다.
5. 第44條第1項第6號의 事由로 인한 休職期間은 그 雇傭期間으로 한다.
6. 第44條第1項第7號의 사유로 인한 休職期間은 1年이내로 한다. 다만, 女敎員의 경우 任用權者는 2年의 범위내에서 그 休職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7. 第44條第1項第8號의 規定에 의한 休職期間은 3年이내로 한다.
8. 第44條第1項第9號의 사유로 인한 休職期間은 1年이내로 하되, 在職期間중 總 3年을 초과할 수 없다.
9. 第44條第1項第10號의 사유로 인한 休職期間은 3年이내로 하되, 3年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總 休職期間은 配偶者의 國外勤務, 海外留學·硏究 또는 硏修期間을 초과할 수 없다.
10. 第44條第1項第11號의 사유로 인한 休職期間은 그 專任期間으로 한다.

②大學에 근무하는 敎員인 경우에 第1項의 休職期間은 第1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任用期間중의 殘餘期間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第44條第1項第2號·第

(추 117)

4號 내지 第10號, 同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休職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4·12·31, 96·8·14, 96·12·30〉

③第1項第6號 또는 第9號의 規定에 의하여 2年이상 休職한 敎員이 復職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硏修를 받아야 한다. 〈新設 87·11·28, 96·8·14〉

第46條 (降任者의 優先昇進任用의 제한) 國家公務員法 第73條의3第2項 또는 地方公務員法 第65條의3第2項의 規定을 敎育公務員에 適用함에 있어서 本人의 同意에 의하여 降任을 條件으로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를 달리하는 機關에 轉入된 者는 優先하여 昇進任用할 수 없다. 〈改正 96·12·30〉

第47條 (停年) ①敎育公務員의 停年은 62歲로 한다. 다만, 高等敎育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敎員인 敎育公務員의 停年은 65歲로 한다. 〈改正 99·1·29〉

②敎育公務員(任期가 있는 敎育公務員을 포함한다)은 그 停年이 達한 날이 속하는 學期의 末日에 당연히 退職된다. 〈改正 93·12·27〉

第48條 (敎員의 不逮捕特權) 敎員은 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學校의 長의 同意없이 學園안에서 逮捕되지 아니한다.

第49條 (苦衷處理) ①敎育公務員(公立大學에 근무하는 敎育公務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누구나 人事·組織·處遇등 각종 職務條件과 기타 身上問題에 대하여 人事相談이나 苦衷의 審査를 請求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待遇를 받지 아니한다. 〈改正 96·12·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請求를 받은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任用推薦權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를 苦衷審査委員會에 附議하여 審査하게 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相談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苦衷의 解消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敎育公務員의 苦衷을 審査하기 위하여 敎育人的資源部에 敎育公務員中央苦衷審査委員會를,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 單位로 敎育公務員普通苦衷審査委員會를 두되, 敎育公務員中央苦衷審査委員會의 機能은 敎員地位向上을위한特別法에 의한 敎員懲戒再審委員會에서 이를 管掌한다. 〈改正 2001·1·29〉

④敎育公務員中央苦衷審査委員會는 敎育公務員普通苦衷審査委員會의 審査를 거친 再審請求와 副敎授이상의 大學敎員과 第29條第1項·第2項 및 第29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用하는 奬學官·敎育硏究官 및 校長의 苦衷을 審査한다.

(추 128)

⑤敎育公務員普通苦衷審査委員會는 助敎授이하의 大學敎員과 第29條第3項 및 第30條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任用하는 敎育公務員의 苦衷을 審査한다. 〈改正 2001·1·29〉

⑥第5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同項에 規定된 敎育公務員의 苦衷이 任用權者를 달리하는 2이상의 機關에 관련된 경우에는 敎育公務員中央苦衷審査委員會에서, 原 所屬機關의 敎育公務員普通苦衷審査委員會에서 苦衷을 審査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直近 上級機關의 敎育公務員普通苦衷審査委員會에서 각각 이를 審査할 수 있다.

⑦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審査結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處分廳 또는 關係機關의 長에 대하여 그 是正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處分廳 또는 關係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敎育公務員苦衷審査委員會의 구성·權限·審査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93·12·27〕

第50條 (懲戒委員會의 設置) ①敎育公務員의 懲戒處分을 議決하게 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敎育機關·敎育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 및 敎育硏究機關에 敎育公務員懲戒委員會(이하 "懲戒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96·12·30〉

②懲戒委員會의 種類·構成·權限·審議節次·懲戒委員會 委員의 除斥이나 忌避에 관한 事項 및 懲戒對象者의 陳述權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懲戒對象者에게 陳述의 機會를 賦與하지 아니한 懲戒의 議決은 이를 無效로 한다.

第51條 (懲戒議決의 要求) ①敎育機關·敎育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 또는 敎育硏究機關의 長은 그 소속敎育公務員이 國家公務員法 第78條第1項 各號의 1 및 地方公務員法 第69條第1項 各號의 1의 懲戒事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懲戒事件을 管轄하는 懲戒委員會에 그 懲戒議決을 要求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해 懲戒事件을 管轄하는 懲戒委員會가 上級機關에 設置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上級機關의 長에게 懲戒議決의 要求를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추 128)

②第1項의 경우에 懲戒議決要求權者 自身에 관한 懲戒事件은 그 直近監督廳의 長이 이를 要求한다.

第52條 削除 〈91·5·31〉

第53條 (國家公務員法과의 관계) ①國家公務員法 第16條第2項을 教育公務員(公立大學에 근무하는 教育公務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인 教員에 적용함에 있어서 同條第2項의 "訴請審査委員會"는 이를 "教員懲戒再審委員會"로 본다. 〈新設 94·12·31, 96·12·30〉

②國家公務員法 第43條第1項을 教育公務員에 適用함에 있어서 同條同項의 "第71條第1項第3號·第5號 또는 第71條第2項의 規定"은 이를 "教育公務員法 第44條第1項第2號·第4號 내지 第11號, 第44條第2項 또는 同條第3項의 規定"으로 본다. 〈改正 94·12·31, 96·8·14, 96·12·30, 2000·1·28〉

③國家公務員法 第70條第1項第3號에서의 職制의 改廢와 同法 第73條의3第1項에서의 職制의 變更에는 初·中等教育法 第2條 및 高等教育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各級學校(公立大學을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學校·學科 또는 學部의 廢止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改正 96·12·30, 2000·1·28〉

④國家公務員法 第32條의4를 教育公務員에게 適用함에 있어서 同條第1項의 "國家의 各級機關의 長"은 이를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로 본다.

⑤國家公務員法 第6條·第17條·第21條 내지 第24條·第28條의2·第28條의3·第31條 내지 第32條의2·第34條·第36條 내지 第39條·第40條의2·第41條·第42條第2項 및 第50條의 規定은 教育公務員에게, 同法 第76條의 規定은 教員(公立大學의 教員을 제외한다)에게 각각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1·5·31, 93·12·27, 96·12·30〉

第8章 公立大學의 教育公務員

第54條 (地方教育公務員人事委員會) ①公立大學에 勤務하는 教育公務員(이하 "公立大學教育公務員"이라 한다)의 人事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地方自治團體에 地方教育公務員人事委員會를 둔다.

②地方教育公務員人事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7人의 委員으로 구성하며, 委員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副團體長이 된다. 이 경우 副團體長이 2人이상인 地方自治團體에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副團體長을 말한다.

(추 117)

③委員은 7年이상의 敎育經歷·敎育行政經歷 또는 行政經歷이 있고 人事行政에 관한 識見이 풍부한 者중에서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任命 또는 위촉한다.

④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는 地方敎育公務員人事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1. 公立大學敎育公務員의 人事行政에 관한 方針 및 기준의 決定과 基本計劃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公立大學敎育公務員의 人事에 관한 條例 및 規則의 制定 또는 改廢에 관한 사항
3. 기타 公立大學敎育公務員의 人事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⑤地方敎育公務員人事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6·12·30〕

第55條 (公立大學의 長등의 任用) ①公立大學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公立大學의 추천을 받아 地方敎育公務員人事委員會의 諮問을 거쳐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任用한다. 새로이 설립되는 公立大學의 長을 任用하거나 公立大學의 長의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學長으로 在職중인 者를 당해 公立大學의 總長으로, 總長으로 在職중인 者를 당해 公立大學의 學長으로 그 任期중에 任用하는 경우에는 地方敎育公務員人事委員會의 諮問을 거쳐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任用한다.

②敎授·副敎授·助敎授는 公立大學의 長의 提請으로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任用하고, 專任講師·助敎는 公立大學의 長이 任用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授·副敎授·助敎授를 任用提請하거나 專任講師를 任用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大學人事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 하며, 大學人事委員會를 구성할 수 없는 새로이 설립되는 公立大學은 당해 大學人事委員會가 구성될 때까지 地方敎育公務員人事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④副總長은 敎授중에서, 大學院長·單科大學長 및 副學長은 敎授 또는 副敎授중에서 大學人事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公立大學의 長이 補한다.

⑤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2項에 規定된 權限의 일부를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公立大學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第24條第4項의 規定은 公立大學의 長의 任用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

(추 79)

우 "大學"은 "公立大學"으로, "第25條"는 "第55條第2項 및 第3項"으로 본다.

〔本條新設 96·12·30〕

第56條 (公立大學教育公務員의 苦衷處理) ①公立大學教育公務員은 누구나 人事·組織·處遇등 각종 職務條件과 기타 身上問題에 대하여 人事相談이나 苦衷의 審査를 請求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待遇를 받지 아니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請求를 받은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이를 苦衷審査委員會에 附議하여 審査하게 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相談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苦衷의 解消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公立大學教育公務員의 苦衷을 審査하기 위하여 地方自治團體에 公立大學教育公務員苦衷審査委員會(이하 "公立大學苦衷委員會"라 한다)를, 公立大學에는 公立大學教育公務員普通苦衷審査委員會(이하 "公立大學普通苦衷委員會"라 한다)를 두되, 公立大學苦衷委員會의 機能은 地方教育公務員人事委員會에서 이를 管掌한다.

④公立大學苦衷委員會는 公立大學普通苦衷委員會의 審査를 거친 再審請求와 副教授이상의 公立大學教育公務員의 苦衷을 審査한다.

⑤公立大學普通苦衷委員會는 助教授이하의 公立大學教育公務員의 苦衷을 審査한다.

⑥第5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同項에 規定된 公立大學教育公務員의 苦衷이 任用權者를 달리하는 2이상의 機關에 관련되거나, 原所屬機關의 公立大學普通苦衷委員會에서 苦衷을 審査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公立大學苦衷委員會에서 이를 審査할 수 있다.

⑦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審査結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處分廳 또는 關係機關의 長에 대하여 그 是正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處分廳 또는 關係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公立大學苦衷委員會의 구성·權限 및 審査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

〔本條新設 96·12·30〕

第57條 (地方公務員法과의 관계) ①地方公務員法 第20條의2를 公立大學教育公務

(추 79)

員인 敎員에 적용함에 있어서 同條의 "審査委員會"는 이를 "敎員懲戒再審委員會"로 본다.

②地方公務員法 第41條第1項을 公立大學敎育公務員에 적용함에 있어서 同條同項의 "第63條第1項第3號·第5號 또는 第63條第2項의 規定"은 이를 "敎育公務員法 第44條第1項第2號·第4號 내지 第10號 또는 第44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으로 본다.

③地方公務員法 第62條第1項第3號에서의 職制의 改廢와 同法 第65條의3第1項에서의 職制의 변경에는 公立의 大學에 있어서의 學校·學科 또는 學部의 廢止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④地方公務員法 第30條의4를 公立大學敎育公務員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同條第1項의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이를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로 본다.

⑤地方公務員法 第6條·第7條 내지 第11條·第22條 내지 第24條·第29條의2 내지 第30條의2·第32條·第34條 내지 第37條·第39條·第39條의2·第40條 및 第74條의 規定은 公立大學敎育公務員에게, 同法 第67條第2項의 規定은 公立大學敎育公務員인 敎員에게 각각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本條新設 96·12·30〕

附 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40日이 經過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第2條 (副總長補職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시행당시 在職중인 大學校의 副總長은 그 殘任期間중 이 法에 의하여 補職된 것으로 본다.

第3條 (校長의 任用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시행당시 在職중인 校長은 이 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第4條 (懲戒處分 및 職位解除중인 敎育公務員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시행당시 懲戒處分중에 있는 者와 종전의 第51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職位解除된 者에 대한 처리는 종전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5條 (休職 및 職位解除중인 敎育公務員의 報酬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시행당시 종전의 第47條第1項第2號 또는 第6號의 事由로 休職된 敎育公務員과 종전의 第51條의2第1項 또는 第2項의 事由로 職位解除중인 敎育公務員의 報酬는 大統領令으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한다.

第6條 (名譽退職手當에 대한 經過措置)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名譽退職手當은

(추 79)

大統領令으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第35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한다.

第7條 (資格證등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시행당시에 종전의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인정된 敎員의 資格 또는 資格證은 계속 그 效力이 있는 것으로 본다.

第8條 (私立學校法의 改正) 私立學校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第1號중 "敎育公務員法 第16條"를 "國家公務員法 第33條"로 한다.

第54條의3第1項第3號중 "敎育公務員法 第35條의2"를 "國家公務員法 第49條"로 한다.

第58條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8條의2 (國家公務員法의 準用) 國家公務員法 第73條의2의 規定은 이를 私立學校 敎員에게 準用한다. 이 경우 準用規定중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任免權者"로 본다.

第9條 (서울大學校病院設置法의 改正) 서울大學校病院設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중 "敎育公務員法 第43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國家公務員法 第64條"를 "國家公務員法 第64條"로 한다.

第10條 (文化保護法의 改正) 文化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2項 및 第22條第2項중 "敎育公務員法 第16條"를 각각 "國家公務員法 第33條"로 하고, 同法 附則 第2項중 "敎育公務員法 第46條第1項第1號"를 "國家公務員法 第70條第1項第1號"로 한다.

附 則 〈87·11·28〉

이 法은 198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88·4·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8年 5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地方自治團體別로 地方議會가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2條 내지 **第17條** 省略

附 則 〈90·12·2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10條** 省略

附 則 〈90·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國·公立의 敎育大學·師範大學등의 卒業者등에 대한 經過措置) 任用權者는 敎師를 新規로 採用함에 있어서 1993年度까지 任用權者가 정하는 바에 따라 採用豫定人員의 一定比率을 1989年度이전에 國立 또는 公立의 敎育大學·師範大學 기타 敎員養成機關에 入學한 者로서 소정의 敎育課程을 履修하고 卒業하거나 修了한 者로 選拔·任用할 수 있다.

(추 79)

附 則 〈91·3·8 法434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法律 第4310號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 施行후 최초로 실시되는 地方議會議員選擧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2條** 省略

附 則 〈91·3·8 法434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大學敎員 任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大學에 在職중인 敎員과 이 法 施行후 新規로 任用되는 大學敎員에 관하여는 第11條第3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總長·學長 任命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在職중인 總長 및 學長은 이 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④(校長의 任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在職중인 校長은 이 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보며, 그 任期는 이 法 施行日부터 開始된다.

附 則 〈91·5·31 法437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附 則 〈93·12·27 法4620〉

①(施行日) 이 法은 1994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奬學官 및 敎育硏究官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在職중인 奬學官 및 敎育硏究官은 이 法에 의하여 任用된 것으로 본다.

③(苦衷審査委員會에 係屬중인 苦衷事件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敎育公務員中央苦衷審査委員會에 係屬중인 苦衷事件은 第49條第3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敎員懲戒再審委員會에서 이를 承繼하여 처리한다.

附 則 〈94·12·31 法484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 則 〈95·12·29 法5065〉

이 法은 1996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96·8·14 法5158〉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 則 〈96·12·30 法5207〉

①(施行日) 이 法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公立大學敎育公務員의 任用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公立大學敎育公務員은 이 法에 의하여 任用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任期가 있거나 기간을 정하여 任用된 者의 任期 또는 任用期間의 起算日은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된 날로 한다.

(추 117)

③(懲戒處分 및 職位解除 중인 公立大學敎育公務員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懲戒處分要求 중에 있거나 職位解除된 公立大學敎育公務員에 대한 처리는 당해 大學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각각 이를 承繼한다.

④(다른 法律의 改正) 地方公務員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項第2號중 "地方消防公務員"을 "公立의 大學 및 專門大學에 근무하는 敎育公務員 및 地方消防公務員"으로 한다.

附 則 〈99·1·29 法571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0條의2, 第11條第4項·第5項 및 第6項의 改正規定은 1999年 9月 1日부터 施行하며, 第11條第3項 및 第11條의2의 改正規定은 200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契約制 任用에 관한 經過措置)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任用된 敎員의 경우에는 第11條의2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任用期間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停年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在職 중인 敎育公務員(高等敎育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교원을 제외한다)중 生年月日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47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각 해당號에 規定된 日字에 當然退職된다.

1. 1934年 2月 28日 이전인 者 : 1999年 2月 28日
2. 1934年 3月 1日부터 1937年 8月 31日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者 : 1999年 8月 31日

第4條 (名譽退職에 관한 經過措置) ①附則 第3條의 規定에 의한 當然退職日에 退職하거나 그 이전에 自進하여 退職하는 敎育公務員의 名譽退職手當의 支給對象 및 支給額에 관하여는 第47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停年을 적용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在職 중인 敎育公務員중 生年月日이 1937年 9月 1日부터 1942年 8月 31日까지인 者가 2000年 8月 31日 이전에 自進하여 退職하는 경우에 名譽退職手當의 支給對象 및 支給額에 관하여는 第47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停年을 적용한다.

附 則 〈2000·1·28 法621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4條第1項의 改正規定중 本人이 원하는 경우 休職을 명하여야 하는 育兒休職 關聯規定은 200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부 칙 〈2001·1·29 法640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2002·8·26 法67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추 147)

〔別 表〕〈改正 88·4·6〉

基準 / 職名	資格基準
奬學官·教育研究官	1. 大學·師範大學·教育大學卒業者로서 7年이상의 教育經歷이나 2年이상의 教育經歷을 포함한 7年이상의 教育行政經歷 또는 教育研究經歷이 있는 者 2. 2年制教育大學 또는 專門大學卒業者로서 9年이상의 教育經歷이나 2年이상의 教育經歷을 포함한 9年이상의 教育行政經歷 또는 教育研究經歷이 있는 者 3. 行政高等考試 合格者로서 4年이상의 教育經歷이나 教育行政經歷 또는 教育研究經歷이 있는 者 4. 2年이상의 奬學士·教育研究士의 經歷이 있는 者 5. 11年이상의 教育經歷이나 2年이상의 教育經歷을 포함한 11年이상의 教育研究經歷이 있는 者 6. 博士學位를 所持한 者
奬學士·教育研究士	1. 大學·師範大學·教育大學卒業者로서 5年이상의 教育經歷이나 2年이상의 教育經歷을 포함한 5年이상의 教育行政經歷 또는 教育研究經歷이 있는 者 2. 9年이상의 教育經歷이나 2年이상의 教育經歷을 포함한 9年이상의 教育行政經歷 또는 教育研究經歷이 있는 者

(備考) : 1) 이 表의 "大學"에는 韓國放送通信大學 學士課程을, "專門大學"에는 韓國放送通信大學 專門大學課程과 종전의 初級大學·實業高等專門學校 및 專門學校를 포함한다.

2) 特殊地勤務를 위하여 奬學官·教育研究官 또는 奬學士·教育研究士를 任用할 때에는 教育行政經歷 또는 教育研究經歷을 教育經歷으로 갈음할 수 있다.

XIV. 사립학교법

第4節 私立學校

●私立學校法

소관부처 : 교육인적자원부

制定 1963·6·26 法律第1362號
改正 1963·12·16 法律第1621號
1964·11·10 法律第1664號
1965·12·30 法律第1735號
1967·1·16 法律第1869號
1972·12·28 법률제2396호
1973·3·10 법률제2587호
1973·12·20 법률제2649호
1975·7·23 법률제2775호
1976·12·31 法律第2961號
1977·12·31 法律第3057號
1978·12·5 法律第3114號
1981·2·28 法律第3373號
1981·11·23 法律第3458號(敎育公務員法)
1986·5·9 法律第3812號
1990·4·7 法律第4226號
1990·12·27 法律第4268號(政府組織法)
1991·3·8 法律第4347號(地方敎育自治에관한法律)
1991·5·31 法律第4376號(敎員地位向上을위한特別法)
1995·12·29 法律第5069號(敎育法)
1997·1·13 法律第5274號
1997·8·22 法律第5345號
1997·12·13 法律第5438號(初·中等敎育法)
1997·12·13 法律第5453號(行政節次法의施行에따른公認會計士法등의整備에관한法律)
1997·12·13 法律第5454號(政府部處名稱등의변경에따른建築法등의整備에관한法律)
1999·1·21 法律第5683號
1999·5·24 法律第5982號(政府組織法)
1999·8·31 法律第6004號
2000·1·28 法律第6212號
2000·12·30 法律第6332號
2001·1·29 法律第6400號(政府組織法)
2002·8·26 法律第6715號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私立學校의 特殊性에 비추어 그 自主性을 확보하고 公共性을 昂揚함으로써 私立學校의 健全한 발달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①이 法에서 "私立學校"라 함은 學校法人 또는 公共團體외의 法人 기타 私人이 設置하는 初·中等敎育法 第2條 및 高等敎育法 第2條에 規定된 學校를 말한다. 〈改正 99·8·31〉

②이 法에서 "學校法人"이라 함은 私立學校만을 設置·經營함을 目的으로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을 말한다.

③이 法에서 "私立學校經營者"라 함은 初·中等敎育法 및 高等敎育法과 이 法에

(추 147)

의하여 私立學校를 設置·經營하는 公共團體외의 法人(學校法人을 제외한다) 또는 私人을 말한다. 〈改正 99·8·31〉

第3條 (學校法人이 아니면 設立할 수 없는 私立學校등) ①學校法人이 아닌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私立學校를 設置·經營할 수 없다. 다만, 初·中等教育法 第5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體가 그 雇傭勤勞青少年의 教育을 위하여 中學校 또는 高等學校를 設置·經營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76·12·31, 77·12·31, 86·5·9, 95·12·29, 97·1·13, 99·8·31〉

1. 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大學
2. 削除 〈99·8·31〉
3. 産業大學·專門大學·技術大學
4. 大學·産業大學·專門大學 또는 技術大學에 準하는 各種學校

②削除 〈99·8·31〉

第4條 (管轄廳)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그 住所地를 管轄하는 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教育監의 指導·監督을 받는다. 〈改正 91·3·8, 95·12·29, 97·1·13, 99·8·31〉

1. 私立의 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高等技術學校·公民學校·高等公民學校·特殊學校·幼稚園 및 이들에 準하는 各種學校
2. 第1號에 規定한 私立學校를 設置·경영하는 學校法人 또는 私立學校經營者

②削除 〈91·3·8〉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教育人的資源部長官의 指導·監督을 받는다. 〈개정 72·12·28, 77·12·31, 86·5·9, 90·4·7, 90·12·27, 97·1·13, 99·8·31, 2001·1·29〉

1. 私立의 大學·産業大學·專門大學·技術大學 및 이들에 準하는 各種學校(이하 "大學教育機關"이라 한다)
2. 第1號에 規定한 私立學校를 設置·經營하는 學校法人
3. 第1號에 規定한 私立學校와 기타의 私立學校를 아울러 設置·經營하는 學校法人

第2章 學校法人

第1節 通 則

第5條 (資産) ①學校法人은 그 設置·經營하는 私立學校에 필요한 施設·設備와 당해 學校의 經營에 필요한 財産을 갖추어야 한다.

②第1項에 規定한 私立學校에 필요한 施設·設備와 財産에 관한 基準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64·11·10〉

(추 128)

第6條 (事業) ①學校法人은 그가 設置한 私立學校의 敎育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收益을 私立學校의 經營에 충당하기 위하여 收益을 目的으로 하는 사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改正 97·1·13〉

②削除 〈99·8·31〉

③學校法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益事業을 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事項을 公告하여야 한다.

1. 事業의 名稱과 그 事務所의 所在地
2. 事業의 種類
3. 事業經營에 관한 資本金
4. 事業經營의 代表者의 姓名·住所
5. 事業의 始期 및 그 期間
6. 기타 필요한 事項

④第1項의 收益事業에 관한 會計는 당해 學校法人이 設置·經營하는 私立學校의 經營에 관한 會計와 區分하여 別途會計로 經理하여야 한다.

第7條 (住所) 學校法人의 住所는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 있는 것으로 한다.

第8條 (設立의 登記) ①學校法人은 設立許可를 받은 때에는 3週日내에 다음 登記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

1. 目 的
2. 名 稱
3. 事務所
4. 設立許可의 年月日
5. 存立時期나 解散事由를 정한 때에는 그 時期 또는 事由
6. 資産의 總額
7. 出資의 方法을 정한 때에는 그 方法
8. 理事의 姓名·住所
9. 削除 〈81·2·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하여야 할 事項은 登記한 후가 아니면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改正 97·1·13〉

③法院은 登記한 事項을 지체없이 公告하여야 한다.

第9條 (學校法人의 權利能力등) 學校法人의 權利能力과 不法行爲能力에 관하여는 民法 第34條 및 第35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추 112)

第2節 設 立

第10條 (設立許可) ①學校法人을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一定한 財産을 出捐하고, 다음 各號의 사항을 記載한 定款을 作成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技術大學을 設置·경영하는 學校法人을 설립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産業體가 일정한 財産을 出捐하여야 한다. 〈改正 64·11·10, 90·4·7, 90·12·27, 97·1·13, 2001·1·29〉

1. 目 的
2. 名 稱
3. 設置·經營하고자 하는 私立學校의 種類와 名稱
4. 事務所의 所在地
5. 資産 및 會計에 관한 事項
6. 任員의 定員 및 그 任免에 관한 事項
7. 理事會에 관한 事項
8. 收益事業을 經營하고자 할 때에는 그 事業의 種類 기타 事業에 관한 事項
9. 定款의 變更에 관한 事項
10. 解散에 관한 事項
11. 公告에 관한 事項과 그 方法
12. 기타 이 法에 의하여 定款에 記載하여야 할 事項

②學校法人의 設立當初의 任員은 定款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第1項第6號의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技術大學을 設置·경영하는 學校法人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體에 勤務하는 者를 任員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新設 97·1·13〉

④第1項第10號의 事項을 정함에 있어서 殘餘財産의 歸屬者에 관한 規定을 두고자 할 때에는 그 歸屬者는 學校法人이나 기타 敎育事業을 經營하는 者중에서 選定되도록 하여야 한다.

第11條 (定款의 補充) ①學校法人을 設立하고자 하는 者가 第10條第1項 各號에 規定한 事項중 그 目的과 資産에 관한 事項만을 정하고 死亡한 경우에는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利害關係人의 請求에 의하여 그외의 事項을 정할 수 있다. 〈改正 90·4·7, 90·12·27, 2001·1·29〉

②第1項의 경우에 利害關係人이 없거나 그 請求가 없을 때에는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職權으로 第1項의 事項을 정할 수 있다. 〈改正 90·12·27, 97·1·13,

(추 128)

2001·1·29〉

第12條 (設立의 時期) 學校法人은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의 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第13條 (民法의 準用) 民法 第47條·第48條·第50條 내지 第54條 및 第55條第1項의 規定은 學校法人의 設立에 이를 準用한다.

第3節 機 關

第14條 (任員) ①學校法人에는 任員으로서 7人이상의 理事와 2人이상의 監事를 두어야 한다. 다만, 幼稚園만을 設置·경영하는 學校法人에는 任員으로서 5人이상의 理事와 1人이상의 監事를 둘 수 있다. 〈改正 64·11·10, 90·4·7, 97·1·13, 99·8·31〉

②理事중 1人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長이 된다.

第15條 (理事會) ①學校法人에 理事會를 둔다.

②理事會는 理事로써 構成한다.

③理事會는 理事長이 召集하고 理事長이 그 議長이 된다.

④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發言할 수 있다.

第16條 (理事會의 機能) ①理事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改正 81·2·28, 86·5·9, 90·4·7〉

1. 學校法人의 豫算·決算·借入金 및 財産의 取得·處分과 管理에 관한 事項
2. 定款의 變更에 관한 事項
3. 學校法人의 合併 또는 解散에 관한 事項
4. 任員의 任免에 관한 事項
5. 學校法人이 設置한 私立學校의 長 및 敎員의 任免에 관한 사항
6. 學校法人이 設置한 私立學校의 經營에 관한 重要事項
7. 收益事業에 관한 事項
8. 기타 法令이나 定款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項

②理事長 또는 理事가 學校法人과 利害關係가 相反하는 때에는 그 理事長 또는 理事는 당해 事項에 관한 議決에 參與하지 못한다.

第17條 (理事會의 召集) ①理事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理事會를 召集할 수 있다.

②理事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召集要求가 있을 때에는 그 召集要求日로부터 20日이내에 理事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1. 在籍理事 半數이상이 會議의 目的을 提示하여 召集을 要求한 때

(추 128)

2. 第19條第4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監事가 召集을 要求한 때

③理事會를 召集할 때에는 적어도 會議 7日전에 會議의 目的을 明示하여 各 理事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理事 全員이 集合되고 또 그 全員이 理事會의 開催를 要求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理事會를 召集하여야 할 경우에 그 召集權者가 闕位되거나 또는 이를 忌避함으로써 7日이상 理事會의 召集이 불가능할 때에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同으로 管轄廳의 승인을 얻어 이를 召集할 수 있다. 〈改正 90·4·7, 97·1·13〉

第18條 (議決定足數) 理事會의 議事는 定款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改正 97·1·13〉

第19條 (任員의 職務) ①理事長은 學校法人을 代表하고 이 法과 定款에 規定된 職務를 행하며 기타 學校法人 內部의 事務를 統轄한다.

②理事長이 闕位되거나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定款에 規定이 없을 때에는 理事會의 互選에 의하여 다른 理事가 理事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③理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學校法人의 業務에 관한 事項을 審議·決定하며, 理事會 또는 理事長으로부터 委任받은 事項을 처리한다.

④監事는 다음의 職務를 행한다. 〈改正 81·2·28, 90·4·7〉

1. 學校法人의 財產狀況과 會計를 監査하는 일
2. 理事會의 運營과 그 業務에 관한 事項을 監査하는 일
3. 學校法人의 財產狀況과 會計 또는 理事會의 運營과 그 業務에 관한 事項을 監査한 결과 不正 또는 不備한 點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理事會와 管轄廳에 보고하는 일
4. 第3號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理事會의 召集을 要求하는 일
5. 學校法人의 財產狀況 또는 理事會의 運營과 그 業務에 관한 事項에 대하여 理事長 또는 理事에게 의견을 陳述하는 일

第20條 (任員의 選任과 任期) ①任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會에서 選任한다.

②任員은 管轄廳의 승인을 얻어 就任한다. 〈改正 64·11·10, 81·2·28, 90·4·7, 97·1·13〉

③理事長·理事 및 監事의 任期는 定款으로 정하되, 理事는 5年, 監事는 2年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重任할 수 있다. 〈改正 64·11·10〉

第20條의2 (任員就任의 承認取消) ①任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추 80)

였을 때에는 管轄廳은 그 就任承認을 取消할 수 있다. 〈改正 90·4·7〉

1. 이 法 또는 同施行令의 規定에 違反한 때
2. 任員間의 紛爭·會計不正 및 顯著한 부당등으로 인하여 당해 學校法人의 設立目的을 達成할 수 없게 한 때
3. 學事行政에 관하여 당해 學校의 長의 權限을 侵害하였을 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就任承認의 取消는 管轄廳이 당해 學校法人에게 그 事由를 들어 是正을 要求한 날로부터 15日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限한다. 〈改正 90·4·7〉

③削除 〈90·4·7〉

〔本條新設 64·11·10〕

第21條 (任員選任의 制限) ①理事定數의 半數이상은 大韓民國國民이어야 한다. 다만, 大學敎育機關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學校를 設置·경영하는 學校法人으로서 大韓民國國民이 아닌 者가 學校法人의 基本財産額의 2分의 1이상에 해당하는 財産을 出捐한 學校法人인 경우에는 理事定數의 3分의 2미만을 大韓民國國民이 아닌 者로 할 수 있다. 〈改正 97·8·22〉

②理事會의 構成에 있어서 各 理事相互間에 民法 第777條에 規定된 親族關係에 있는 者가 그 定數의 3分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0·4·7, 99·8·31〉

③理事중 적어도 3分의 1이상은 敎育經驗이 3年이상 있는 者라야 한다. 〈改正 86·5·9, 97·1·13〉

④監事는 監事相互間 또는 理事와 民法 第777條에 規定된 親族關係에 있는 者가 아니어야 한다. 〈改正 99·8·31〉

⑤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基準이상의 學校法人에서는 監事중 1人은 公認會計士의 資格을 가진 者라야 한다. 〈新設 81·2·28〉

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改正 81·11·23, 90·4·7〉

1. 國家公務員法 第33條의 규정에 해당되는 者
2.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추 117)

3. 第54條의2의 規定에 의한 解任要求에 의하여 解任된 者로서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전문개정 73·3·10〕

第23條 (任員의 兼職禁止) ①理事長은 당해 學校法人이 設置·經營하는 私立學校의 長을 兼할 수 없다.

②理事는 監事 또는 당해 學校法人이 設置·經營하는 私立學校의 敎員 기타 職員을 겸할 수 없다. 다만, 學校의 長은 예외로 한다.

③監事는 理事長·理事 또는 學校法人의 職員(당해 學校法人이 設置·經營하는 私立學校의 敎員 기타 職員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④削除 〈90·4·7〉

第24條 (任員의 補充) 理事 또는 監事중에 缺員이 생긴 때에는 2月이내에 이를 補充하여야 한다.

第25條 (臨時理事의 選任) ①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學校法人이 理事의 缺員補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당해 學校法人의 目的을 달성할 수 없거나 損害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利害關係人의 請求 또는 職權에 의하여 臨時理事를 選任하여야 한다. 〈改正 2001·1·29〉

②臨時理事는 조속한 시일내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臨時理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在任한다. 이 경우 그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도 그 在任期間은 2年이내로 하되, 1次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④臨時理事는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任員으로 選任될 수 없다.

〔全文改正 99·8·31〕

第26條 (任員의 報酬制限) ①學校法人의 任員중 定款에서 정한 常勤하는 任員을 제외한 任員에 대하여는 報酬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다만, 實費의 辨償은 예외로 한다. 〈改正 81·2·28, 97·1·13〉

②學校法人은 그 學校法人의 基本財産額의 3分의 1이상에 해당하는 財産을 당해 法人의 基本財産으로 出捐 또는 寄贈한 者중 生計가 곤란한 者에 대하여는 당해 學校法人의 收益이 있는 범위안에서 生計費·醫療費·葬禮費를 支給할 수 있다.

(추 128)

다만,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報酬를 받는 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78·12·5, 86·5·9, 97·1·13〉

③第2項의 財産을 出捐 또는 寄贈한 者중 生計가 곤란한 者의 基準과 生計費·醫療費·葬禮費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78·12·5〉

第26條의2 (大學評議員會) ①大學敎育機關에 敎育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大學評議員會를 둘 수 있다.

②大學評議員會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0·4·7〕

第27條 (民法의 準用) 民法 第59條第2項·第61條·第62條·第64條 및 第65條의 規定은 學校法人의 理事長과 理事에게 이를 準用한다. 다만, 民法 第62條중 "他人"을 "다른 理事"로 한다.

第4節 財産과 會計

第28條 (財産의 管理 및 保護) ①學校法人이 그 基本財産을 賣渡·贈與·交換 또는 用途變更하거나 擔保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義務의 負擔이나 權利의 抛棄를 하고자 할 때에는 管轄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管轄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0·4·7, 97·1·13〉

②學校敎育에 直接 사용되는 學校法人의 財産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은 이를 賣渡하거나 擔保에 제공할 수 없다. 〈改正 64·11·10〉

③初·中等敎育法 第10條 및 高等敎育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授業料 기타 納付金(入學金·學校運營支援費 또는 期成會費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權利와 이 法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별도 計座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預金債權은 이를 押留하지 못한다. 〈新設 99·1·21〉

第29條 (會計의 區分) ①學校法人의 會計는 그가 設置·經營하는 學校에 속하는 會計와 法人의 業務에 속하는 會計로 區分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에 속하는 會計는 이를 校費會計와 附屬病院會計(附屬病院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區分할 수 있으며, 각 會計의 歲入·歲出에 관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되 授業料 기타 納付金은 校費會計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計座로 관리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法人의 業務에 속하는 會計는 이를 一般業務會計와 第6條의 規定에 의한 收益事業會計로 區分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에 속하는 會計의 豫算은 당해 學校의 豫算·決算

(추 112)

諮問委員會의 諮問을 거쳐 學校의 長이 編成하여 學校法人의 理事會가 審議·議決하고 學校의 長이 執行한다. 다만, 幼稚園은 豫算·決算諮問委員會의 諮問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90·4·7, 99·8·31〉

⑤豫算·決算諮問委員會는 10人이상의 敎職員으로 구성하되, 그 組織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新設 90·4·7〉

⑥第2項의 規定에 의한 校費會計에 속하는 收入은 다른 會計에 轉出하거나 貸與할 수 없다. 다만, 借入金의 元利金을 償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81·2·28〕

第30條 (會計年度) 學校法人의 會計年度는 그가 設置·經營하는 私立學校의 學年度에 따른다.

第31條 (豫算 및 決算의 제출) ①學校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會計年度 開始전에 豫算을, 每 會計年度 終了후에는 決算을 管轄廳에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64·11·10, 90·4·7〉

②管轄廳은 第1項의 豫算이 부당하게 編成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是正을 指導할 수 있다. 〈改正 90·4·7〉

③學校에 속하는 會計의 決算은 每 會計年度 종료후 豫算·決算諮問委員會의 諮問을 거쳐야 한다. 다만, 幼稚園은 豫算·決算諮問委員會의 諮問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新設 90·4·7, 99·8·31〉

④管轄廳은 學校法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決算書를 제출할 때에 學校法人으로부터 獨立된 公認會計士 또는 會計法人의 監査證明書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新設 97·1·13〉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査證明書를 제출하여야 할 學校法人의 대상범위, 實施時期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7·1·13〉

第32條 (財産目錄등의 備置) ①學校法人은 每 會計年度 終了후 2月이내에 每 會計年度末 현재의 財産目錄·貸借對照表 및 收支計算書 기타 필요한 帳簿 또는 書類를 作成하여 이를 恒時 그 事務所에 備置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②第1項에 의하여 備置할 帳簿 또는 書類의 種類와 그 書式은 敎育人的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0·12·27, 2001·1·29〉

第33條 (會計規則등) 學校法人의 會計規則 기타 豫算 또는 會計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정한다. 〈改正 90·4·7, 90·12·27, 2001·1·29〉

第5節 解散과 合併

第34條 (解散事由) ①學校法人은 다음의 事由에 의하여 解散한다. 〈改正 90·12·

(추 128)

27, 2001·1·29〉

1. 定款에 정한 解散事由가 발생한 때

2. 目的의 達成이 불가능한 때

3. 다른 學校法人과 合併한 때

4. 破産한 때

5.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解散命令이 있은 때

②第1項第2號의 事由에 의한 解散은 理事定數의 3分의 2이상의 同意를 얻어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0·12·27, 2001·1·29〉

第35條 (殘餘財産의 歸屬) ①解散한 學校法人의 殘餘財産은 合併 및 破産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敎育人的資源部長官에 대한 淸算終結의 申告가 있은 때에 定款으로 指定한 者에게 歸屬된다. 〈改正 90·12·27, 2001·1·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處分되지 아니한 財産중 大學敎育機關을 設置·경영하는 學校法人의 財産은 國庫에, 第4條第1項第1號에 規定한 學校를 設置·경영하는 學校法人의 財産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에 각각 귀속된다. 〈改正 90·4·7, 97·1·13〉

③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庫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귀속된 財産을 私立學校敎育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學校法人에 대하여 讓與·無償貸付 또는 補助金으로 支給하거나 기타 學校事業에 사용한다. 〈改正 90·4·7〉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庫에 귀속된 財産은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地方自治團體에 귀속된 財産은 당해 市·道敎育監이 管理하되,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財政經濟部長官의, 市·道敎育監은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改正 90·4·7, 90·12·27, 91·3·8, 97·1·13, 99·5·24, 2001·1·29〉

第35條의2 (解散 및 殘餘財産歸屬에 관한 特例) ①高等學校이하 各級學校를 設置·경영하는 學校法人은 學生數의 激減으로 인하여 그 目的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市·道敎育監의 認可를 받아 解散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敎育監의 認可를 받고자 하는 學校法人은 解散認可申請書에 殘餘財産處分計劃書를 첨부하여 市·道敎育監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추 128)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解散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殘餘財産處分計劃은 理事定數의 3分의 2이상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法人의 解散 및 殘餘財産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審査하기 위하여 市·道敎育監소속하에 私學整備審査委員會를 둔다.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私學整備審査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⑥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解散한 學校法人은 그 殘餘財産의 전부 또는 일부를 第10條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殘餘財産處分計劃書에서 정한 者에게 귀속시키거나 公益法人의設立·運營에관한法律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公益法人의 設立을 위한 財産으로 出捐할 수 있다.

〔本條新設 97·8·22〕

第36條 (合併節次) ①學校法人이 다른 學校法人과 合併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定數의 3分의 2이상의 同意가 있어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合併은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0·12·27, 2001·1·29〉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認可申請書에 合併후 存續하는 學校法人 또는 合併에 의하여 設立되는 學校法人의 定款과 기타 大統領令이 定하는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改正 64·11·10〉

第37條 (同前) ①學校法人은 第36條第2項의 認可를 받은 때에는 그 認可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日이내에 財産目錄과 貸借對照表를 作成하여야 한다.

②學校法人은 第1項의 期間내에 그 債權者에 대하여 異議가 있으면 一定한 期間내에 提議할 것을 公告하고, 또 알고 있는 債權者에게는 各別로 이를 催告하여야 한다. 다만, 그 期間은 2月이상이어야 한다.

第38條 (同前) ①債權者가 第37條第2項의 期間내에 合併에 대하여 異議를 提議하지 아니한 때에는 合併으로 인하여 存續 또는 設立된 學校法人의 債務引受를 承認한 것으로 본다.

②債權者가 第37條第2項의 期間내에 異議를 提議한 때에는 學校法人은 이를 辨濟하거나 상당한 擔保를 제공하여야 한다.

第39條 (同前) 合併에 의하여 學校法人을 設立할 경우에는 定款 기타 學校法人의 設立에 관한 事務는 各 學校法人이 選任한 者가 共同으로 행하여야 한다.

第40條 (合併의 效果) 合併후 存續하는 學校法人 또는 合併에 의하여 設立된 學校

(추 128)

法人은 合併에 의하여 消滅된 學校法人의 權利·義務(당해 學校法人이 그가 經營하는 事業에 관하여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認可 기타 處分에 基因하여 가지는 權利·義務를 포함한다)를 承繼한다. 〈改正 90·12·27, 2001·1·29〉

第41條 (合併의 時期) 學校法人의 合併은 合併후 存續하는 學校法人 또는 合併에 의하여 設立되는 學校法人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登記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第42條 (民法등의 準用) ①民法 第79條, 第81條 내지 第95條의 規定은 學校法人의 解散과 淸算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다만, 民法 第79條중 "理事"를 "理事長"으로 한다. 〈改正 64·11·10〉

②이 法 第18條와 民法 第59條第2項·第61條·第62條·第64條 및 第65條의 規定은 學校法人의 淸算人에 이를 準用한다.

第6節 支援과 監督

第43條 (支援)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敎育의 振興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私立學校敎育의 지원을 위하여 大統領令 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補助를 申請한 學校法人 또는 私學支援團體에 대하여 補助金을 交付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改正 64·11·10, 90·4·7〉

②管轄廳은 第1項 또는 第3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學校法人 또는 私學支援團體에 대하여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權限을 가진다. 〈改正 64·11·10, 90·4·7〉

1.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學校法人 또는 私學支援團體로부터 그 業務 또는 會計의 狀況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2. 당해 學校法人 또는 私學支援團體의 豫算이 지원의 目的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豫算에 대하여 필요한 變更措置를 勸告하는 일

③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 또는 第3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法人 또는 私學支援團體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支援成果가 低調하여 계속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學校法人 또는 私學支援團體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管轄廳의 勸告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은 이를 中斷할 수 있다. 〈改正 64·11·10, 90·4·7〉

第43條의2 削除 〈77·12·31〉

第44條 (實業敎育의 優先的인 지원)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第43條第1項 또는 第35條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學校法人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實業學校를 設

(추 128)

置·經營하는 學校法人에게 優先權을 주어야 한다. 〈改正 90·4·7〉

第45條 (定款變更) 學校法人의 定款의 變更은 理事定數의 3分의 2이상의 贊成에 의한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0·12·27, 2001·1·29〉

〔全文改正 75·7·23〕

第46條 (收益事業의 停止命令) 管轄廳은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收益事業을 하는 學校法人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學校法人에 대하여 그 事業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0·4·7〉

1. 당해 學校法人이 당해 事業으로부터 생긴 收益을 그가 設置한 私立學校의 經營 이외의 目的에 사용한 때
2. 당해 事業을 계속함이 당해 學校法人이 設置·經營하는 私立學校의 敎育에 支障이 있을 때

第47條 (解散命令) ①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學校法人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學校法人에 대하여 解散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0·12·27, 2001·1·29〉

1. 設立許可條件에 違反한 때
2. 目的의 達成이 불가능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명령은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또는 管轄廳이 시정 지시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야 한다. 〈개정 73·3·10, 90·4·7〉

第47條의2 (청문)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第47條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法人의 解散을 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2001·1·29〉

〔本條新設 97·12·13 法5453〕

第48條 (보고徵收등) 管轄廳은 監督上 필요한 때에는 學校法人 또는 私學支援團體에 대하여 報告書의 提出을 命하거나, 帳簿·書類등을 檢査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64·11·10, 90·4·7〉

第3章 私立學校經營者

第49條 削除 〈99·8·31〉

第50條 (學校法人에의 組織變更) ①私立學校經營者중 民法에 의한 財團法人은 그 組織을 變更하여 學校法人이 될 수 있다.

②削除 〈99·8·31〉

(추 128)

第50條의2 削除 〈77·12·31〉

第51條 (準用規定) 第5條·第28條第2項·第29條·第31條 내지 第33條·第43條·第44條 및 第48條의 規定은 私立學校經營者에게 이를 準用한다. 다만, 第31條 내지 第33條의 準用에 있어서는 그 設置·經營하는 私立學校에 관한 部分에 限한다.

第4章 私立學校敎員

第1節 資格·任免·服務

第52條 (資格) 私立學校의 敎員의 資格에 관하여는 國·公立學校의 敎員의 資格에 관한 規定에 의한다.

第53條 (學校의 長의 任免) ①各級學校의 長은 당해 學校를 設置·經營하는 學校法人 또는 私立學校經營者가 任免한다. 〈改正 90·4·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法人이 大學敎育機關의 長을 任期중에 解任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理事定數의 3分의 2이상의 贊成에 의한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新設 97·1·13〉

③各級學校의 長의 任期에 관하여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學校法人 및 法人인 私立學校經營者는 定款으로, 私人인 私立學校經營者는 規則으로 정할 수 있다.

〔全文改正 81·2·28〕

第53條의2 (學校의 長이 아닌 敎員의 任免) ①各級學校의 敎員은 당해 學校法人 또는 私立學校經營者가 任免하되, 다음 各號의 1에 의하여야 한다. 〈改正 90·4·7〉

1. 學校法人 및 法人인 私立學校經營者가 設置·經營하는 私立學校의 敎員의 任免은 당해 學校의 長의 提請으로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2. 私人인 私立學校經營者가 設置·經營하는 私立學校의 敎員의 任免은 당해 學校의 長의 提請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大學敎育機關의 敎員의 任免權은 당해 學校法人의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總長·學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0·4·7〉

③大學敎育機關의 敎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勤務期間·給與·勤務條件, 業績 및 成果約定등 契約條件을 정하여 任用할 수 있다. 이 경우 勤務期間에 관

(추 137)

하여는 國·公立大學의 敎員에게 적용되는 관련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9·8·31〉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된 敎員의 任用期間이 종료되는 경우에 任免權者는 敎員人事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당해 敎員에 대한 再任用與否를 결정하여야 한다. 〈新設 99·8·31〉

〔全文改正 81·2·28〕

第53條의3 (敎員人事委員會) ①各級學校(初等學校·高等技術學校·公民學校·高等公民學校·幼稚園과 이들에 準하는 各種學校를 제외한다)의 敎員(學校의 長을 제외한다)의 人事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당해 學校에 敎員人事委員會를 둔다. 〈改正 90·4·7, 95·12·29, 2000·1·28〉

②敎員人事委員會의 組織·機能과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學校法人 및 法人인 私立學校經營者의 경우에는 定款으로, 私人인 私立學校經營者의 경우에는 規則으로 정한다. 〈改正 90·4·7〉

〔本條新設 81·2·28〕

第53條의4 (國·公立大學 敎員에 관한 規定의 準用) 學校의 長이 아닌 大學敎育機關의 敎員의 任用에 관하여는 敎育公務員法 第11條第4項·第5項 및 第6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本條新設 99·8·31〕

第54條 (任免에 관한 보고 및 解職등의 要求) ①各級學校의 敎員의 任免權者가 敎員을 任免(各級學校의 長으로서 任期滿了로 解任된 경우는 제외한다)한 때에는 任免한 날부터 7日이내에 管轄廳에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0·4·7〉

②削除 〈90·4·7〉

③管轄廳은 私立學校의 敎員이 이 法에 規定된 免職事由 및 懲戒事由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敎員의 任免權者에게 그 解職 또는 懲戒를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0·4·7, 97·12·13 法5438〉

〔全文改正 81·2·28〕

第54條의2 (解任要求) ①各級學校의 長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管轄廳은 任免權者에게 당해 學校의 長의 解任을 요구할 수 있다. 〈改正 81·2·28, 90·4·7〉

1. 第58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할 때

(추 137)

2. 學生의 入學(編入學을 포함한다)·授業 및 卒業에 관한 당해 學校의 長의 權限에 속하는 事項으로서 教育關係法律 또는 그 法律에 의한 命令에 違反할 때
3.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 또는 다른 教育關係法令에 違反하였을 때
4. 學校에 속하는 會計의 執行에 관하여 不正 또는 顯著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解任의 요구는 管轄廳이 당해 學校法人 또는 私立學校經營者에게 그 事由를 밝혀 是正을 要求한 날로부터 15日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限한다. 〈改正 90·4·7〉

〔本條新設 64·11·10〕

第54條의3 (任命의 제한)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學校의 長에 任命될 수 없다. 〈改正 81·11·23, 90·4·7, 97·1·13〉

1. 第20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任員就任承認이 取消되고 2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2. 第54條의2의 規定에 의한 解任要求에 의하여 解任되고 2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3. 國家公務員法 第74條의2 및 教育公務員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하여 退職한 者

②削除 〈90·4·7〉

〔全文改正 81·2·28〕

第54條의4 (期間制教員) ①各級學校 教員의 任免權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教員資格證을 가진 者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任用하는 教員(이하 "期間制教員"이라 한다)을 任用할 수 있다. 이 경우 任免權者는 學校法人의 定款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을 學校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7·8·22〉

1. 教員이 第59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休職하여 後任者의 補充이 불가피한 때
2. 教員이 派遣·研修·停職·職位解除 또는 休暇등으로 1月이상 職務에 종사할 수 없어 後任者의 補充이 불가피한 때
3. 罷免·解任 또는 免職處分을 받은 教員이 教員地位向上을위한特別法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教員懲戒再審委員會에 再審을 請求하여 後任者의 補充發令을 하지 못하게 된 때
4. 特定教科를 限時的으로 담당할 教員이 필요한 때

(추 112)

②期間制教員에 대하여는 第56條, 第58條第2項, 第58條의2, 第59條, 第61條 내지 第64條, 第64條의2, 第65條, 第66條 및 第66條의2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하며 任用期間이 만료되면 당연히 退職된다. 〈改正 97·8·22, 97·12·13 法5454〉

③期間制教員의 任用期間은 1年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年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新設 97·8·22〉

〔本條新設 90·4·7〕

第55條 (服務) 私立學校의 教員의 服務에 관하여는 國·公立學校의 教員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2節 身分保障 및 社會保障

第56條 (意思에 反한 休職·免職등의 금지) ①私立學校 教員은 刑의 宣告·懲戒處分 또는 이 法에 정하는 事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本人의 意思에 反하여 休職 또는 免職등 不利한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學級·學科의 改廢에 의하여 廢職이나 過員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0·4·7〉

②私立學校 教員은 勸告에 의하여 辭職을 당하지 아니한다.

〔全文改正 81·2·28〕

第57條 (當然退職의 事由) 私立學校의 教員이 國家公務員法 第33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退職된다. 〈改正 97·12·13 法5438〉

第58條 (免職의 事由) ①私立學校의 教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教員의 任免權者는 이를 免職시킬 수 있다. 〈改正 77·12·31, 81·2·28〉

1. 身體 또는 精神上의 障碍로 1年이상 職務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支障이 있을 때
2. 勤務成績이 극히 不良한 때
3. 政府를 破壞함을 目的으로 하는 團體에 加入하고 이를 幇助한 때
4. 政治運動 또는 勞動運動을 하거나 集團的으로 授業을 拒否하거나 또는 어느 政黨을 支持 또는 反對하기 위하여 學生을 指導·煽動한 때
5. 人事記錄에 있어서 不正한 採點·記載를 하거나 虛僞의 證明이나 陳述을 한 때

②第1項第2號 내지 第5號의 事由에 의하여 免職시키는 경우에는 第62條의 規定에 의한 教員懲戒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第58條의2 (職位의 解除) ①私立學校의 教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教員의 任免權者는 職位를 賦與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97·1·13〉

〈1997·1·13 法律 第5274號에 의하여 1994·7·29 憲法裁判所에서 違憲決定된 本項 但書를 削除〉

1. 職務遂行能力이 부족하거나 勤務成績이 극히 不良한 者, 또는 教員으로서 勤務態度가 심히 不誠實한 者
2. 懲戒議決이 요구중인 者
3. 刑事事件으로 起訴된 者(略式命令이 請求된 者는 제외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職位를 賦與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消滅된 때에는 任免權者는 지체없이 職位를 賦與하여야 한다.

③任免權者는 第1項第1號에 의하여 職位解除된 者에 대하여 3月이내의 기간 待機를 命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待機命令을 받은 者에 대하여는 任免權者는 能力回復이나 態度改善을 위한 研修 또는 특별한 研究課題의 賦與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⑤私立學校 教員에 대하여 第1項第1號와 第2號 또는 第3號의 職位解除事由가 競合하는 때에는 第2號 또는 第3號의 職位解除處分을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0·4·7〕

第59條 (休職의 事由) ①私立學校의 教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休職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教員의 任免權者는 休職을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내지 第4號 및 第11號의 경우에는 本人의 의사에 불구하고 休職을 명하여야 하고, 第7號의 경우에는 本人이 원하는 경우 休職을 명하여야 한다. 〈改正 90·4·7, 90·12·27, 97·1·13, 2000·1·28, 2001·1·29〉

1. 身體·精神上의 障碍로 長期療養을 요할 때
2. 兵役法에 의한 兵役의 服務를 위하여 徵集 또는 召集된 때
3. 天災·地變 또는 戰時·事變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生死 또는 所在가 不明하게 된 때
4.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한 義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職務를 離脫하게 된 때
5. 學位取得을 目的으로 海外留學을 하거나 外國에서 1年이상 研究 또는 研修하게 된 때
6. 國際機構·外國機關 또는 在外國民教育機關에 雇傭된 때
7. 子女(休職申請당시 1歲미만인 子女에 한한다)를 養育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女教員이 姙娠 또는 出産하게 된 때
8. 教育人的資源部長官이 지정하는 國內의 研究機關이나 教育機關등에서 研修하게 된 때

(추 128)

9. 事故 또는 疾病등으로 長期間의 療養을 요하는 父母, 配偶者, 子女 또는 配偶者의 父母의 看護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配偶者가 國外勤務를 하게 되거나 第5號에 해당하게 된 때

11. 敎員의勞動組合設立및운영등에관한法律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組合 專任者로 종사하게 된 때

12. 기타 定款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第1項의 休職의 期間과 休職者의 身分 및 處遇등에 관하여는 定款(私立學校經營者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敎員의 身分保障 및 懲戒에 관한 規則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한다.

③任免權者는 第1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休職을 이유로 人事上 불리한 處遇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同號의 休職期間은 勤續期間에 算入한다. 〈新設 2000·1·28〉

第60條 (敎員의 不逮捕特權) 私立學校의 敎員은 現行犯人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所屬學校長의 同意없이 學園안에서 逮捕되지 아니한다.

제60조의2 (사회보장) ①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이 질병·부상·폐질·퇴직·사망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改正 77·12·31〉

②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의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1. 상당한 기간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사항
2. 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
3. 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중 소득능력에 장애를 받을 경우에 그 본인이 받는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4. 직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폐질·부상·질병·출산 기타 사고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73·12·20〕

第60條의3 (名譽退職) ①私立學校敎員으로서 20年이상 勤續한 者가 停年전에 자진하여 退職하는 경우에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名譽退職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名譽退職手當의 支給對象範圍·支給額·支給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0·4·7〕

第3節 懲 戒

第61條 (懲戒의 事由 및 種類) ①私立學校의 敎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

(추 117)

에는 당해 敎員의 任免權者는 懲戒議決의 要求를 하여야 하고, 懲戒議決의 결과에 따라 懲戒處分을 하여야 한다.

1. 이 法과 기타 敎育關係法令에 違反하여 敎員의 本分에 背馳되는 行爲를 한 때
2. 職務上의 義務에 違反하거나 職務를 태만히 한 때
3. 職務의 내외를 不問하고 敎員으로서의 品位를 損傷하는 行爲를 한 때

②懲戒는 罷免·解任·停職·減俸·譴責으로 한다. 〈改正 86·5·9〉

③停職은 1月이상 3月이하의 期間으로 하고, 停職處分을 받은 者는 그 期間중 身分은 보유하나 職務에 종사하지 못하며 報酬의 3分의 2를 減한다. 〈新設 86·5·9〉

④減俸은 1月이상 3月이하의 期間, 報酬의 3分의 1을 減한다. 〈改正 86·5·9〉

⑤譴責은 前過에 대하여 訓戒하고 회개하게 한다.

〔全文改正 81·2·28〕

第62條 (敎員懲戒委員會의 設置) ①私立學校의 敎員의 懲戒事件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그 任免權者의 區分에 따라 學校法人·私立學校經營者 및 당해 學校에 敎員懲戒委員會를 둔다. 다만, 私立幼稚園 敎員의 懲戒事件은 敎育公務員法 第50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되는 敎育公務員懲戒委員會에서 審議·議決한다. 〈改正 99·8·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員懲戒委員會는 5人이상 9人이하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그 委員은 당해 學校의 敎員 또는 學校法人의 理事중에서 당해 學校法人 또는 私立學校經營者가 任命한다. 다만, 學校法人인 경우에는 당해 學校法人의 理事인 委員의 數가 委員의 2分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新設 90·4·7〉

③敎員懲戒委員會의 組織·權限 및 審議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81·2·28〕

第63條 (除斥事由) 敎員懲戒委員會委員은 그 자신에 관한 懲戒事件을 審理하거나 被懲戒者와 親族關係가 있을 때에는 당해 懲戒事件의 審理에 관여하지 못한다.

第64條 (懲戒議決의 要求) 私立學校의 敎員의 任免權者는 그 소속敎員중에 第61條第1項의 懲戒事由에 해당하는 者가 있을 때에는 미리 充分한 調査를 한 후 당해 懲戒事件을 管轄하는 敎員懲戒委員會에 그 懲戒議決을 要求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81·2·28〕

(추 112)

第64條의2 (懲戒議決要求事由의 통지) 懲戒議決要求權者가 第64條의 規定에 의하여 懲戒議決을 요구할 때에는 懲戒議決要求와 동시에 懲戒對象者에게 懲戒事由를 기재한 說明書를 송부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0·4·7〕

第65條 (眞相調査 및 의견의 開陳) ①敎員懲戒委員會는 懲戒事件을 審理함에 있어서 眞相을 調査하여야 하며, 懲戒議決을 행하기 전에 本人의 陳述을 들어야 한다. 다만, 2回 이상 書面으로 召喚하여도 不應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改正 64·11·10〉

②敎員懲戒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關係人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第66條 (懲戒議決) ①敎員懲戒委員會는 懲戒事件을 審理한 결과 懲戒를 議決한 때에는 主文과 理由를 記錄한 懲戒議決書를 作成하고 이를 任命權者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②任命權者가 第1項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日 이내에 그 議決內容에 따라 懲戒處分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任命權者는 懲戒處分의 事由를 記載한 決定書를 당해 敎員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99·8·31〉

③第1項의 懲戒議決은 在籍委員 3分의 2 이상의 출석과 在籍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행하여야 한다. 〈改正 90·4·7〉

第66條의2 (懲戒事由의 時效) ①懲戒議決의 요구는 懲戒事由가 발생한 날부터 2年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②懲戒委員會의 구성·懲戒議決 기타 節次上의 瑕疵나 懲戒量定의 過多를 이유로 敎員地位向上을위한特別法에 의한 敎員懲戒再審委員會 또는 法院에서 懲戒處分의 無效 또는 取消의 決定이나 判決을 한 때에는 第1項의 期間이 경과하거나 그 殘餘期間이 3月 미만인 경우에는 그 決定 또는 判決이 확정된 날부터 3月 이내에는 다시 懲戒議決을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7·1·13〉

〔本條新設 90·4·7〕

제67조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에 대하여는 제52조 내지 제6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2·8·26〕

第67條의2 내지 **第69條** 削除 〈91·5·31〉

第5章 補 則

第70條 (보고·調査 등) 管轄廳은 私立學校의 敎育에 관하여 調査를 하거나 統計

(후 147)

기타 필요한 事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帳簿 기타 書類등을 檢査하게 하거나 敎育의 實施狀況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0·4·7〉

第70條의2 (事務機構 및 職員) ①學校法人 또는 私立學校經營者는 그의 事務와 그가 設置·經營하는 學校의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事務機構를 두되, 그 設置·運營과 事務職員의 定員·任免·報酬·服務 및 身分保障에 관하여는 學校法人 또는 法人인 私立學校經營者의 경우에는 定款으로 정하고, 個人인 私立學校經營者의 경우에는 規則으로 정한다. 〈改正 90·4·7, 99·8·31〉

②各級學校의 소속事務職員은 學校의 長의 제청으로 學校法人 또는 私立學校經營者가 任免한다. 〈改正 90·4·7〉

〔本條新設 76·12·31〕

第71條 (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敎育監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2001·1·29〉

〔全文改正 97·1·13〕

第72條 削除 〈2000·1·28〉

第6章 罰 則

第73條 (罰則) 學校法人의 理事長 또는 私立學校經營者(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 또는 理事)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81·2·28, 90·4·7, 97·1·13, 99·8·31〉

1.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管轄廳의 命令에 違反하여 事業을 계속한 때
2. 第28條(第51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違反한 때
3. 削除 〈81·2·28〉
4. 第48條(第51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管轄廳의 命令에 違反한 때

第73條의2 (罰則) 學校法人의 理事長이나 私立學校經營者(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 또는 理事) 또는 大學敎育機關의 長이 第29條第6項(第51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0·4·7, 97·1·13〉

〔本條新設 81·2·28〕

第74條 (過怠料) ①學校法人의 理事長·監事 또는 淸算人이나 私立學校經營者(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 또는 理事)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5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7·1·13, 99·8·31〉

1. 이 法에 의한 登記를 하지 아니한 때
2. 第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公告하여야 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公告한 때
3. 第13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民法 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財産目錄 또는 第32條(第51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財産目錄 기타 書類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기재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기재한 때
4. 第19條第4項第3號·第48條(第51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보고한 때
5. 第31條(第51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第37條第2項 또는 第38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6. 第42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民法 第79條 또는 第9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破産宣告의 申請을 하지 아니한 때
7. 第42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民法 第88條第1項 또는 第9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公告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公告한 때
8. 第42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民法 第86條 또는 第9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태만하거나 不實한 申告를 한 때
9. 第42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民法 第90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②私立學校 敎員의 任免權者가 第5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에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1·5·31, 97·1·13, 99·8·31〉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廳이 賦課·徵收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管轄廳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

(추 112)

議를 제기한 때에는 管轄廳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안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管轄에 따라 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全文改正 90·4·7〕

第74條의2 削除 〈90·4·7〉

附 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①이 法의 施行당시 第3條에 規定된 私立學校를 設置·經營하는 民法에 의한 財團法人은 이 法의 施行日로부터 6月이내에 그 組織을 學校法人으로 改編하여야 한다. 다만, 不可避한 事情으로 이 期間내에 그 組織을 變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財團法人에 대하여는 文敎部長官은 1966年 12月 31日까지 그 期間을 延長할 수 있으며, 이 期間까지 특수한 事情으로 인하여 그 組織이 不可能하다고 文敎部長官이 인정하는 財團法人에 있어서는 第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設置한 學校를 維持經營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財團法人에 대하여는 다른 法令에 優先하여 이 法에 의한 學校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하고, 그가 設置·經營하는 學校에 대하여는 이 法에 의한 私立學校에 관한 規定을 適用한다. 〈改正 64·11·10, 65·12·30, 67·1·16〉

②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財團法人이 學校法人으로 그 組織을 變更함에 있어서는 第50條第2項 및 第50條의2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63·12·16〉

③前項의 경우에 당해 財團法人의 定款에 定款變更에 理事會와 그외의 당해 財團法人의 機關의 議決을 요하게 하는 規定이 있고 그 財團法人의 理事의 全員 또는 過半數가 臨時理事인 때에는 理事會 이외의 機關의 議決을 거치지 아니하고 理事會의 議決만으로써 學校法人으로 組織變更을 하기 위한 定款變更을 할 수 있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法人으로 改編된 경우에 이 法 施行이전에 당해 財團法人에 대하여 행한 文敎部長官의 處分은 이 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改編된 學校法人에게 행한 것으로 본다.

⑤學校法人으로 改編된 경우에 그 改編전의 財團法人의 任員은 그대로 學校法人

의 任員으로서 殘任期間동안 存在한다. 다만, 그 殘任期間이 5年이상일 때에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5年이 되는 날에 그 任期가 滿了되는 것으로 본다.

⑥財團法人이 그 組織을 改編하여 學校法人이 된 경우에 그 財團法人이 學校經營으로 인하여 발생한 종전의 債權·債務는 改編된 學校法人이 이를 包括 繼承한다. 〈新設 64·11·10〉

第3條 (同前) 이 法 施行당시 私立學校에 在職중에 있는 敎員은 이 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第4條 削除 〈64·11·10〉

附 則 〈63·12·16〉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64·11·10〉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第50條의2第2項의 規定은 1963年 7月 25日부터 이를 適用한다.

附 則 〈65·12·30〉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67·1·16〉

이 法은 1967年 1月 1日부터 適用한다.

부 칙 〈72·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3·3·1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3·12·20〉

이 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75·7·23〉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大學(師範大學 및 初級大學을 포함한다)에 勤務하는 敎員은 1976年 2月末日附로 第53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再任用하여야 한다.

附 則 〈76·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定款등의 제출) 이 法 施行당시의 學校法人 또는 私立學校 經營者는 이 法 施

行日로부터 6月내에 第70條의2의 規定에 의한 定款 또는 規則을 정하여 監督廳에 제출하여야 한다.

附 則 〈77·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專門大學에 관한 規定은 1979年 1月1日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公布당시 懲戒處分을 받은 者중 停職處分은 減俸 6月로, 謹愼處分은 譴責處分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經過措置) 이 法 公布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初級大學·實業高等專門學校 및 專門學校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까지 專門大學 또는 이에 準하는 各種學校로 改編하고 文敎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④(經過措置) 이 法 公布당시의 初級大學으로서 附則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專門大學 또는 이에 準하는 各種學校로 改編되는 學校에 在職중인 敎員은 그 改編된 당해 學校의 敎員으로 任命된 것으로 보되, 그 任期는 종전의 例에 의한다.

⑤(經過措置) 이 法 公布당시의 實業高等專門學校 및 專門學校로서 附則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專門大學으로 改編되는 學校에 在職중인 敎員에 대하여는 1979年 2月末日부로 第53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再任用하여야 한다.

附 則 〈78·12·5〉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81·2·2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敎員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大學敎育機關에 근무하는 敎員(學校의 長을 제외한다) 및 事務職員은 당해 學校의 長이 任命한 것으로 본다.

③(敎員懲戒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敎員懲戒委員會 및 再審委員會에 계속중인 懲戒 및 再審請求事件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④(學校長 任命制限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專門大學의 長으로 在職중인 者는 第54條의3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職에서 解任될 때까지 在任할 수 있다.

⑤(學校長 任命制限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私立學校의 長으로 在職중인 者는 第54條의3第1項第3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1981學年度末까지 在任할 수 있다.

⑥(罰則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行爲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 則 〈81·11·2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40日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0條** 省略

附 則 〈86·5·9〉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在任중인 理事는 그 任期滿了時까지 이 法에 의하여 就任된 것으로 본다.

附 則 〈90·4·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敎育長에 관한 經過措置) 地方自治團體別로 敎育長이 選出될 때까지는 第4條第1項, 第35條第4項 및 第71條중 "市·郡 및 自治區敎育長"은 "敎育長 및 敎育區廳長"으로, 第4條第2項중 "特別市·直轄市·道敎育長"은 "서울特別市·直轄市·道敎育委員會"로, 第35條第4項 및 第71條중 "市·道敎育長"은 "市·道敎育委員會"로, 第35條第4項중 "敎育長"은 "敎育委員會 또는 敎育長"으로 본다.

第3條 (大學敎育機關의 敎職員의 任用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大學敎育機關에 在職중인 敎員 및 事務職員은 이 法에 의하여 당해 學校法人이 任用한 것으로 본다.

第4條 (敎員懲戒事件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繫屬중인 懲戒事件에 대하여는 第6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敎員懲戒委員會가 審理·議決한다.

第5條 (再審請求事件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再審委員會에 繫屬중이거나 이 法 施行이후 이 法에 의하여 再審委員會가 設置될 때까지 제기되는 再審請求事件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감독청의 승인을 받았거나 감독청에 보고된 교원"을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으로 한다.

第60條의2의 題目 및 本文중 "監督廳"을 각각 "管轄廳"으로 한다.

附 則 〈90·12·2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10條** 省略

附 則 〈91·3·8〉

(추 6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法律 第4310號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 施行후 최초로 실시되는 地方議會議員選擧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2條** 省略

附 則 〈91·5·31 法437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附 則 〈95·12·29 法506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 則 〈97·1·13 法5274〉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理事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在任중인 理事는 第21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그 任期滿了시까지 이 法에 의하여 就任된 것으로 본다.

③(過怠料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 則 〈97·8·22 法5345〉

①(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適用時限) 第35條의2의 改正規定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學校法人의 解散認可를 申請하는 者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改正 2000·12·30〉

附 則 〈97·12·13 法543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4條** 省略

附 則 〈97·12·13 法545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 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 則 〈99·1·21 法5683〉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 則 〈99·5·24 法598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 則 〈99·8·31 法6004〉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1條第2項·第4項 및 第53條의4의 改正規定은 2000年 3月 1日부터 施行하고, 第53條의2第3項의 改正規定은

(추 127)

200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契約制 任用에 관한 經過措置)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任用된 敎員의 경우에는 第53條의2第3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任用期間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臨時理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在任 중인 臨時理事의 任期는 1999年 12月 31日까지로 한다.

附 則 〈2000·1·28 法6212〉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59條第1項의 改正規定중 本人이 원하는 경우 休職을 명하여야 하는 育兒休職 關聯規定은 200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부 칙 〈2000·12·30 法633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29 法640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2002·8·26 法67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추 147)

●사립학교법시행령

소관부처 : 교육인적자원부

제정 1969·12·4 대통령령제 4396호
개정 1976·1·16 대통령령제 7952호
1976·11·8 대통령령제 8276호
1979·2·24 대통령령제 9347호
1981·5·21 대통령령제10319호
1983·12·30 대통령령제11304호
1986·7·9 대통령령제11945호
1989·8·18 대통령령제12781호(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1990·7·19 대통령령제13057호
1991·2·1 대통령령제13282호(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1·6·19 대통령령제13389호(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1993·2·23 대통령령제13855호
1997·8·9 대통령령제15455호
1997·12·31 대통령령제15575호
1998·11·3 대통령령제15922호
2000·12·30 대통령령제17085호
2001·1·29 대통령령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2·3·30 대통령령제17556호

제1조 (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의 협조)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및 동조제3항제3호의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청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항에 관련되는 사립학교의 관할청을 거쳐야 한다. 〈개정 90·7·19, 91·2·1, 97·8·9, 2001·1·29〉

제2조 삭제 〈2002·3·30〉

제3조 (수익사업의 공고방법과 보고) ①학교법인이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관한 공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학교법인이 제1항에 의하여 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공고의 내용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0·7·19〉

제4조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서
2. 정 관

(추 143)

3. 재산목록

4. 재산출연증서

5.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

6. 재산의 소유권증명(등기부등본)

7. 재산의 평가조서

8. 재산의 수익조서

9. 임원의 이력서

10. 임원의 신원증명서

11. 임원의 취임승낙서

12. 임원의 호적등본

13.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법 제21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4.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설립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첨부)

②제1항제3호의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7호의 재산평가조서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이하 "감정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76·11·8, 89·8·18, 90·7·19〉

④제1항제8호의 재산수익조서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0·7·19〉

⑤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정관 및 재산목록의 부본을 각 1통씩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재산의 구분) ①학교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4. 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추 143)

②학교법인의 자산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6조 (정관보충의 절차)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보충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1·2·1, 2001·1·29〉

②제1항의 공고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의하되, 3회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에는 당해 정관의 보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 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허가서 또는 인가서 등의 등본을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이사회의 소집승인신청)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승인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입증하는 서류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3.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한 서류

제9조 (감사의 보고) 학교법인의 감사가 법 제19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사를 종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90·7·19〉

제9조의2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외국인으로 할 수 있는 학교)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라 함은 대학·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본조신설 97·12·31〕

제9조의3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할 학교법인)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중 1인을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할 학교법인은 대학·산업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로서 그 입학정원이 500인 이상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제1호에

(추 143)

규정된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감사로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0·7·19, 98·11·3〉

〔전문개정 86·7·9〕

제10조 (임시이사의 선임청구)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청구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91·2·1, 2001·1·29〉

제10조의2 (생계곤란자의 기준) 법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재산을 출연 또는 기증한 자중 생계가 곤란한 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개인적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자
2. 학교법인의 이사로 되어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그 직을 사임한 자

〔본조신설 79·2·24〕

제10조의3 (생계비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생계비·의료비 및 장례비의 범위는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1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것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개정 86·7·9〉

1. 월 생계비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의 최고 호봉 또는 호급에 해당하는 봉급월액의 70퍼센트.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연금·퇴직연금일시금·퇴직일시금 또는 퇴직금을 받거나 기타의 수입이 있는 자의 월생계비의 한도액은 그 수입을 참작하여 당해 학교법인이 정한다.

2. 의료비

   의료시설에의 입원가료에 요하는 의료비

3. 장례비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의 최고 호봉 또는 호급에 해당하는 봉급월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본조신설 79·2·24〕

제10조의4 삭제 〈83·12·30〉

(추 143)

제10조의5 (생계비 등의 지급) 학교법인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의료비 또는 장례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86·7·9〕

제11조 (기본재산의 처분)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매도·증여또는교환에관한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0·7·19, 97·8·9〉

1. 처분재산명세서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
3. 이사회회의록 사본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 한한다)

②삭제 〈90·7·19〉

③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담보제공에관한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와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8·9〉

1.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2. 피담보액
3. 담보처
4.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5. 이사회회의록 사본

④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등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97·8·9〉

⑤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분할하거나 법·이 영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7·8·9, 98·11·3, 2002·3·30〉

(추 143)

1.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수익용기본재산을 매도 또는 교환하는 경우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손실보상금을 당해 기본재산의 용도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 또는 담보의 제공가액이 5천만원 미만(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 3억원 미만)인 경우
4.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비회계·부속병원회계 및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업무회계(이하 이 항에서 "교비회계등"이라 한다)의 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으로서 법인 및 학교에 계속적으로 투입·운용되는 기본적 자산의 가액을 말한다)에 대한 총차입금(차입하고자 하는 차입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차입비율"이라 한다)이 각 20퍼센트 미만이고 교비회계등의 차입금의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인 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차입비율 각 20퍼센트와 총차입금의 합계액 200억원 미만의 범위안에서 금융기관(법률에 의하여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 등을 말한다)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5.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학진흥기금에서 융자받는 경우(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총차입금의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총차입금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6. 수익용기본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7.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가액이 5천만원 미만(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 3억원 미만. 다만, 의무부담의 경우에는 그 총합계액이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

(추 143)

한한다)인 경우

제12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전 또는 통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재산의 경우와 교육·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간에 교환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2·1, 93·2·23, 98·11·3, 2002·3·30〉

1. 교 지
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 실습 또는 연구시설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②관할청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위치의 변경인가일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93·2·23, 98·11·3, 2002·3·30〉

제13조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①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2. 학사관계제증명수수료
3.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추 143)

5.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 등의 판매대금
6.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7. 교육용 기자재 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8.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9.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③부속병원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진료수입
2. 일반업무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3. 부속병원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4. 부속병원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5. 기타 부속병원운영에 따른 제수입

④부속병원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2. 부속병원관리·운영과 진료에 필요한 물건비
3. 부속병원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4. 교비회계 또는 일반업무회계로의 전출금
5. 제3항제4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6. 기타 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81·5·21〕

제14조 (예산과 결산의 제출시기)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제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86·7·9, 90·7·19, 98·11·3〉

(추 143)

②연도중도에 예산을 추가 또는 갱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성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예산을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7·19, 98·11·3〉

③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학교법인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7·8·9, 98·11·3, 2001·1·29〉

1. 당해 회계연도의 입학정원이 2,000명이상인 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있어서는 전문대학이하 각급학교의 교비회계에 대한 결산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회계연도의 입학정원이 2,000명미만인 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회계부정·결산서의 허위작성 기타 현저히 부당한 회계처리로 학교법인의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특별히 감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법인(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있어서는 전문대학이하 각급학교의 교비회계에 대한 결산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15조 (학교법인의 해산인가신청)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사회회의록 사본
2. 재산목록
3. 남의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5조의2 (해산인가신청서의 작성등) ①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산사유
2. 재학생처리계획
3. 교직원처리계획
4. 이사회회의록 사본

②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산목록 및 조성경위
2. 재산감정평가내역
3. 잔여재산귀속예정자 및 귀속사유
4. 공익법인의 정관(법 제3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잔여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97·12·31〕

제15조의3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추 129)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교육감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감소속 4급 또는 4급상당 공무원중 5인이내
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법률학·회계학·감정평가 관련 학과목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중 5인이내
3. 당해 특별시·광역시·도 관할구역안에 소재한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 5인이내

③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법 제35조의2의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97·12·31〕

제15조의4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학교법인의 해산의 타당성 여부
2. 잔여재산처분계획의 적정성 여부
3. 기타 학교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⑤위원회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위원회의 위원장·위원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제15조의3 및 제15조의4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추 102)

〔본조신설 97·12·31〕

제16조 (합병인가신청) ①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합병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1·3〉

1. 합병이유서
2.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입증하는 각 학교법인의 이사회회의록 사본
3.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4. 합병약정서
5.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
6. 삭제 〈98·11·3〉
7. 합병전의 각 학교법인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8.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9.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에 대한 제4조제1항제9호 내지 제14호에 게기한 서류(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계속 재임되는 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9호 내지 제12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4조제2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조 (국가의 지원대상)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지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행한다. 〈개정 90·7·19〉

1. 실업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2.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수한 학과 또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학교경영에 재정적 곤란을 받는 학교법인
4. 특수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5. 기타 특히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법인

②제1항의 보조 또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0·7·19, 91·2·1, 2001·1·29〉

제18조 (정관변경인가신청) ①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신·구)을 기재한 서류
2. 이사회회의록 사본

②제1항의 경우에 정관의 변경이 당해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 경영하고 있는 학

(추 129)

교와 다른 사립학교를 새로이 설치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이외에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8호 및 제14호의 서류(제4호 내지 제8호의 서류는 증자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그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4조제1항제14호중 "설립"은 "정관변경후"로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정관의 변경이 당해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 경영하던 사립학교를 폐지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이외에 그 폐지하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재산처리와 학생조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그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인가신청) ①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조직변경이유서
2. 정관(신·구)
3. 이사회회의록 사본
4.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14호의 서류(이 경우에 제14호중 "설립후"는 "조직 변경후"로 한다)

②제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0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학교법인의 설립등기)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하여 학교법인으로 되는 경우의 그 학교법인의 설립등기에 관하여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에 법 제8조중 "설립허가"를 "조직변경의 인가"로 한다.

제21조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절차의 특례) ①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법 제5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한 정관변경의 절차에 관한 승인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1·2·1, 2001·1·29〉

1. 이유서
2. 승인을 얻고자 하는 정관변경의 절차를 기재한 서류
3. 이사회회의록 사본

②재단법인의 이사회가 전항제2호의 정관변경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2조 삭제 〈90·7·19〉

제22조의2 삭제 〈81·5·21〉

(추 129)

제22조의3 (학력평가) ①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장은 관할구역내에 소재하는 사립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사 임용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립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사에 임용될 것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학력평가를 행하고, 그 학력평가 사항을 기재한 명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86·7·9, 90·7·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평가의 범위·방법·절차와 명부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0·7·19〉

〔본조신설 76·11·8〕

제23조 (교원의 임면보고) ①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임명보고를 할 때에는 그 임명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0·7·19〉

1. 인사기록카드
2. 제청권자의 제청서의 사본
3. 이사회회의록의 사본(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 한한다)
4.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서(대학교육기관에 한한다)

②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해임보고를 할 때에는 그 해임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해임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90·7·19, 97·12·31〉

1. 사직원(본인의 원에 의하여 해임한 경우에 한한다)
2. 해임사유서 및 징계위원회의 동의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한 경우에 한한다)
3. 징계의결서의 사본(징계에 의하여 해임한 경우에 한한다)
4. 이사회회의록의 사본(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81·5·21〕

제24조 (관할청의 교원의 해직 또는 징계의 요구) 사립학교의 관할청이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원의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0·7·19〉

1. 해직 또는 징계요구의 대상자 및 그 인적사항
2. 해직 또는 징계의 구별(징계의 경우에는 그 종류)
3. 해직 또는 징계요구의 사유

(추 92)

제24조의2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별로 설치하되, 법 제5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임면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학교에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90·7·19〕

제24조의3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90·7·19〉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위원장은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81·5·21〕

제24조의4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81·5·21〕

제24조의5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징계요구의 내용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1·5·21〕

제24조의6 (위원의 기피등) ①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0·7·19〕

(추 8)

제25조 (교원의 징계의결의 요구)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징계의 종류와 양을 기재한 서류
3. 징계사유서와 징계요구자의 의견서
4. 징계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
5. 징계혐의자의 이력서
6. 근무성적표

제26조 (징계의결서의 작성요령)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서의 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적용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7조 삭제 〈91·6·19〉

제28조 (권한의 위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규정된 학교법인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그의 권한을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에게 이를 위임한다. 〈개정 79·2·24, 86·7·9, 90·7·19, 91·2·1, 97·8·9, 2001·1·29〉

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
2.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의 인가
3.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인가중 학교법인의 목적 명칭과 그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종류·명칭 및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관한 정관변경의 인가
4.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의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인가와 조직변경을 위한 정관변경의 절차에 관한 승인

제29조 (과태료의 부과절차) ①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관할청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추 129)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0·7·19〕

제30조 (재단법인의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신·구)
2. 이사회회의록 사본
3. 제4조제1항제3호의 서류

②제4조제2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6·1·16 대령795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6·11·8 대령827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금융기관이 행한 학교법인의 재산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업자가 행한 평가로 본다.

부 칙 〈79·2·24 대령934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5·21 대령103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9조의2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중 공인회계사인 감사가 없는 학교법인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감사중 1인을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부 칙 〈83·12·30 대령1130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7·9 대령1194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개방대학의 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개방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부터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

(추 129)

다.

부 칙 〈89·8·18 대령1278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 칙 〈90·7·19 대령1305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중 "교육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이를 "교육감"으로 본다.

부 칙 〈91·2·1 대령1328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1·6·19 대령1338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 〈93·2·23 대령1385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8·9 대령1545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2·31 대령15575〉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학교법인의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30〉

부 칙 〈98·11·3 대령159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30 대령1708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2002·3·30 대령175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추 143)

XV. 출입국관리법

●出入國管理法

소관부처 : 법무부

全文改正 1992·12· 8 法律第4522號
改正 1993·12·10 法律第4592號
1994·12·22 法律第4796號(都農複合形態의市設置에따른行政特例등에관한法律)
1996·12·12 法律第5176號
1997·12·13 法律第5434號
1999· 2· 5 法律第5755號
2001·12·29 法律第6540號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大韓民國에 入國하거나 大韓民國으로부터 出國하는 모든 國民 및 外國人의 出入國管理와 大韓民國에 滯留하는 外國人의 滯留管理 및 難民의 認定節次등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3·12·10〉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3·12·10, 99·2·5〉

1. "國民"이라 함은 大韓民國의 國民을 말한다.
2. "外國人"이라 함은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를 말한다.

2의2. "難民"이라 함은 難民의地位에관한協約(이하 "難民協約"이라 한다) 第1條 또는 難民의地位에관한議定書 第1條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協約의 적용을 받는 者를 말한다.

3. "旅券"이라 함은 大韓民國政府·外國政府 또는 權限있는 國際機構에서 발급한 旅券 또는 難民旅行證明書 기타 旅券에 갈음하는 證明書로서 大韓民國政府가 有效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4. "船員手帖"이라 함은 大韓民國政府 또는 外國政府가 발급한 船員임을 증명하는 文書로서 旅券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 "出入國港"이라 함은 出國 또는 入國할 수 있는 大韓民國의 港口·空港 기타 場所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6. "在外公館의 長"이라 함은 外國에 駐在하는 大韓民國의 大使·公使·總領事·領事 또는 領事業務를 수행하는 機關의 長을 말한다.
7. 削除 〈99·2·5〉

(추 139)

8. "船舶등"이라 함은 大韓民國과 大韓民國밖의 地域사이에서 사람 또는 물건을 輸送하는 船舶·航空機·汽車·自動車 기타의 交通機關을 말한다.

9. "乘務員"이라 함은 船舶등에서 그 業務를 수행하는 者를 말한다.

10. "運輸業者"라 함은 船舶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者와 그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去來를 代理하는 者를 말한다.

11. "外國人保護室"이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外國人을 보호할 目的으로 出入國管理事務所 또는 그 出張所에 設置한 場所를 말한다.

12. "外國人保護所"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外國人을 보호할 目的으로 設置한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13. "出入國事犯"이라 함은 第94條 내지 第100條의 規定에 의한 罪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者를 말한다.

第2章 國民의 出入國

第3條 (國民의 出國) ①國民이 大韓民國으로부터 大韓民國밖의 地域으로 出國(이하 "出國"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有效한 旅券 또는 船員手帖을 가지고 出國하는 出入國港에서 出入國管理公務員의 出國審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出入國港으로 出國할 수 없는 때에는 管轄出入國管理事務所長(이하 "事務所長"이라 한다) 또는 管轄出入國管理事務所出張所長(이하 "出張所長"이라 한다)의 許可를 받아 出入國港외의 場所에서 出入國管理公務員의 出國審査를 받은 후 出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받을 때에는 行先國 또는 經由國의 有效한 入國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大韓民國과의 協定에 의하여 入國査證이 免除되는 國家로 出國하거나 出入國管理公務員이 査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條 (出國의 금지) ①法務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國民에 대하여는 出國을 금지할 수 있다. 〈改正 2001·12·29〉

1.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刑事裁判에 係屬중인 자
3. 懲役刑 또는 禁錮刑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罰金 또는 追徵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추 139)

5.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國稅·關稅 또는 地方稅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6. 그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②出入國管理公務員은 出國審査를 함에 있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國이 금지된 者를 出國시켜서는 아니된다.

第5條 (국민의 旅券등의 보관) ①出入國管理公務員은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國이 금지된 者의 旅券 또는 船員手帖을 回收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出入國管理公務員은 국민의 僞造 또는 變造된 旅券이나 船員手帖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回收하여 보관할 수 있다. 〈改正 2001·12·29〉

第6條 (國民의 入國) ①國民이 大韓民國밖의 地域으로부터 大韓民國에 入國(이하 "入國"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有效한 旅券 또는 船員手帖을 가지고 入國하는 出入國港에서 出入國管理公務員의 入國審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出入國港으로 入國할 수 없는 때에는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의 許可를 받아 出入國港외의 場所에서 出入國管理公務員의 入國審査를 받은 후 入國할 수 있다.

②出入國管理公務員은 國民이 有效한 旅券 또는 船員手帖을 잃어버리거나 기타의 사유로 이를 가지지 아니하고 入國하고자 할 때에는 確認節次를 거쳐 入國하게 할 수 있다.

第3章 外國人의 入國 및 上陸

第1節 外國人의 入國

第7條 (外國人의 入國) ①外國人이 入國하고자 할 때에는 有效한 旅券 또는 船員手帖과 法務部長官이 발급한 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外國人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査證없이 入國할 수 있다. 〈改正 93·12·10〉

1. 再入國許可를 받고 再入國許可期間이 만료되기 전에 入國하는 者
2. 大韓民國과 査證免除協定을 체결한 國家의 國民으로서 그 協定에 의하여 免除對象이 되는 者

(추 139)

3. 國際親善·觀光 또는 大韓民國의 이익등을 위하여 入國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入國許可를 받는 者

4. 難民旅行證明書를 발급받고 出國하여 그 有效期間이 만료되기 전에 入國하는 者

③法務部長官은 公共秩序의 유지 또는 國家利益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2項第2號의 者에 대하여 査證免除協定의 적용을 일시정지할 수 있다.

④大韓民國과 修交하지 아니한 國家나 法務部長官이 外務部長官과 協議하여 지정한 國家의 國民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在外公館의 長이나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이 발급한 外國人入國許可書를 가지고 入國할 수 있다.

⑤法務部長官은 第1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査證 또는 外國人入國許可書를 발급하는 事務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出入國管理公務員을 在外公館등에 駐在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2 (허위초청등의 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허위의 신원보증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1·12·29〕

第8條 (査證) ①第7條의 規定에 의한 査證은 1回에 한하여 入國할 수 있는 單數査證과 2回이상 入國할 수 있는 複數査證으로 구분한다.

②法務部長官은 査證發給에 관한 權限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在外公館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査證發給에 관한 기준과 節次는 法務部令으로 정한다.

第9條 (査證發給認定書) ①法務部長官은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査證을 발급함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招請人의 申請에 의하여 査證發給認定書를 발급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査證發給認定書의 발급대상·발급기준 및 節次는 法務部令으로 정한다.

第10條 (滯留資格) ①外國人으로서 入國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滯留

(추 139)

資格을 가져야 한다. 〈改正 96·12·12〉

②1回에 부여할 수 있는 滯留資格別 滯留期間의 上限은 法務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6·12·12〉

第11條 (入國의 금지등) ①法務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外國人에 대하여는 入國을 금지할 수 있다. 〈改正 97·12·13〉

1. 傳染病患者·麻藥類中毒者 기타 公衆衛生상 危害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
2. 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에서 정하는 銃砲·刀劍·火藥類등을 違法하게 가지고 入國하려는 者
3. 大韓民國의 이익이나 公共의 安全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者
4. 經濟秩序 또는 社會秩序를 해하거나 선량한 風俗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者
5. 精神障碍人·放浪者·貧困者 기타 救護를 요하는 者
6. 强制退去命令을 받고 出國한 후 5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7. 1910年 8月 29日부터 1945年 8月 15日까지 日本政府, 日本政府와 同盟關係에 있던 政府, 日本政府의 優越한 힘이 미치던 政府의 指示 또는 連繫하에 人種, 民族, 宗敎, 國籍, 政治的 見解등을 이유로 사람을 虐殺·虐待하는 일에 관여한 者
8. 기타 第1號 내지 第7號의 1에 준하는 者로서 法務部長官이 그 入國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者

②法務部長官은 入國하고자 하는 外國人의 本國이 第1項 各號외의 사유로 國民의 入國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外國人의 入國을 거부할 수 있다.

第12條 (入國審査) ①外國人이 入國하고자 할 때에는 入國하는 出入國港에서 出入國管理公務員의 入國審査를 받아야 한다.

②第6條第1項 但書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③出入國管理公務員은 入國審査를 함에 있어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審査하여 入國을 許可한다.

1. 旅券 또는 船員手帖과 査證이 有效할 것. 다만, 査證은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추 139)

2. 入國目的이 滯留資格과 부합할 것

3. 滯留期間이 法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4.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入國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④出入國管理公務員은 外國人이 第3項 各號의 1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入國을 許可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出入國管理公務員은 第7條第2項第2號 또는 第3號에 해당하는 者에게 入國을 許可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滯留資格을 부여하고 滯留期間을 정하여야 한다.

⑥出入國管理公務員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하기 위하여 船舶등에 出入할 수 있다.

⑦第5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6·12·12〉

第12條의2 (船舶등의 제공금지) ①누구든지 外國人을 不法으로 大韓民國밖의 地域으로부터 大韓民國에 入國시키거나 大韓民國으로부터 大韓民國밖의 地域으로 出國시킬 目的으로 船舶등이나 여권·선원수첩·사증·탑승권 그밖에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2001·12·29〉

②누구든지 不法으로 入國한 外國人을 大韓民國안에서 隱匿 또는 逃避하게 하거나 그러한 目的으로 船舶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本條新設 97·12·13〕

제12조의3 (외국인의 여권등의 보관) ①제5조제2항의 규정은 외국인의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선원수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이 법을 위반하여 조사중인 자로서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하는 출입국사범의 여권·선원수첩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29〕

第13條 (條件附入國許可) ①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外國人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條件附入國을 許可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第12條第3項第1號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일정 기간내에 그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者

2. 第11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된다고 疑心되거나 第12條第3項第2號의 요건

(추 139)

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疑心되어 특별히 審査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

3. 기타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이 條件附入國을 許可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

②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條件附入國을 許可할 때에는 條件附入國許可書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許可書에는 住居의 제한, 출석요구에 응할 義務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千萬원이하의 保證金을 預置하게 할 수 있다.

③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條件附入國許可를 받은 外國人이 그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그 預置된 保證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國庫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④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保證金의 預置 및 반환과 國庫歸屬節次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節 外國人의 上陸

第14條 (乘務員의 上陸許可) ①出入國管理公務員은 外國人乘務員이 船舶등에 옮겨 타거나 休養등의 目的으로 上陸하고자 할 때에는 船舶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나 本人의 申請에 의하여 15日의 범위내에서 乘務員上陸의 許可를 할 수 있다. 다만, 第11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出入國管理公務員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할 때에는 乘務員上陸許可書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乘務員上陸許可書에는 上陸許可의 기간, 行動地域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乘務員上陸許可를 받은 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上陸許可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발급받은 乘務員上陸許可書는 그 船舶등이 최종 出港할 때까지 國內의 다른 出入國港에서도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新設 96·12·12〉

第15條 (緊急上陸許可) ①出入國管理公務員은 船舶등에 타고 있는 外國人(乘務員을 포함한다)이 疾病 기타 事故로 긴급히 上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船舶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의 申請에 의하여 30日의 범위내에서 緊急上陸의 許可를 할 수 있다.

②第14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추 139)

"乘務員上陸許可書"는 "緊急上陸許可書"로, "乘務員上陸許可"는 "緊急上陸許可"로 본다.

③船舶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는 緊急上陸한 者의 生活費·治療費·葬禮費 기타 上陸중에 발생한 모든 費用을 부담하여야 한다.

第16條 (災難上陸許可) ①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遭難한 船舶등에 타고 있는 外國人(乘務員을 포함한다)을 긴급히 救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船舶등의 長, 運輸業者, 水難救護法에 의한 救護業務執行者 또는 그 外國人을 救助한 船舶등의 長의 申請에 의하여 30日의 범위내에서 災難上陸의 許可를 할 수 있다.

②第14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乘務員上陸許可書"는 "災難上陸許可書"로, "乘務員上陸許可"는 "災難上陸許可"로 본다.

③第15條第3項의 規定은 災難上陸許可를 받은 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緊急上陸"은 "災難上陸"으로 본다. 〈新設 96·12·12〉

第16條의2 (難民臨時上陸許可) ①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船舶등에 타고 있는 外國人이 難民協約 第1條A(2)에 規定된 이유 기타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生命·身體 또는 身體의 自由를 침해받을 恐怖가 있는 領域으로부터 逃避하여 곧바로 大韓民國에 庇護를 申請하는 경우 그 外國人을 上陸시킬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法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90日의 범위내에서 難民臨時上陸許可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法務部長官은 外務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②第14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乘務員上陸許可書"는 "難民臨時上陸許可書"로, "乘務員上陸許可"는 "難民臨時上陸許可"로 본다.

〔本條新設 93·12·10〕

第4章 外國人의 滯留와 出國

第1節 外國人의 滯留

第17條 (外國人의 滯留 및 活動범위) ①外國人은 그 滯留資格과 滯留期間의 범위내에서 大韓民國에 滯留할 수 있다.

(추 139)

②大韓民國에 滯留하는 外國人은 政治活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法務部長官은 大韓民國에 滯留하는 外國人이 政治活動을 한 때에는 그 外國人에 대하여 書面으로 그 活動의 중지 기타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

第18條 (外國人雇傭의 제한) ①外國人이 大韓民國에서 就業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就業活動을 할 수 있는 滯留資格을 받아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滯留資格을 가진 外國人은 지정된 勤務處외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滯留資格을 가지지 아니한 者를 雇傭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누구든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滯留資格을 가지지 아니한 者의 雇傭을 알선 또는 勸誘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누구든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滯留資格을 가지지 아니한 者의 雇傭을 알선할 目的으로 그를 자기 支配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9條 (外國人을 雇用한 者등의 申告義務) ①外國人을 雇用한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日이내에 이를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6·12·12〉

1. 外國人을 解雇하거나 外國人이 退職 또는 死亡한 때
2. 雇傭된 外國人의 所在를 알 수 없게 된 때
3. 雇傭契約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때
4. 雇傭된 外國人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때

②第1項의 規定은 外國人에게 産業技術을 研修시키는 業體의 長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新設 96·12·12〉

第19條의2 (産業研修生의 보호등) ①政府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研修活動을 할 수 있는 滯留資格을 가지고 지정된 産業體에서 研修하고 있는 外國人(이하 "産業研修生"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體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7·12·13〕

第19條의3 (産業研修生의 관리등) ①法務部長官은 産業研修生의 研修場所離脫, 研

(추 139)

修目的외의 活動 기타 許可된 조건의 위반 여부등을 調査하여 그 外國人의 出國 등 産業研修生의 관리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研修生의 관리 및 産業研修生의 入國과 관련된 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法務部長官은 産業研修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者(이하 이 項에서 "研修就業者"라 한다)에 대하여 就業活動을 할 수 있도록 그 滯留資格變更許可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研修就業者의 관리에 관하여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本條新設 97·12·13〕

第20條 (滯留資格외 活動) 大韓民國에 滯留하는 外國人이 그 滯留資格에 해당하는 活動과 竝行하여 다른 滯留資格에 해당하는 活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法務部長官의 滯留資格外活動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21條 (勤務處의 변경·추가) ①大韓民國에 滯留하는 外國人이 그 滯留資格의 범위내에서 그의 勤務處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法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누구든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勤務處의 변경·追加許可를 받지 아니한 外國人을 雇傭하거나 雇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法律에 의하여 雇傭을 알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3·12·10〉

第22條 (活動範圍의 제한) 法務部長官은 公共의 安寧秩序 또는 大韓民國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大韓民國에 滯留하는 外國人에 대하여 居所 또는 活動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기타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

第23條 (滯留資格부여) 大韓民國의 國籍을 잃거나 大韓民國에서의 出生 기타 사유로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滯留資格을 가지지 못하고 滯留하게 되는 外國人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日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滯留資格을 받아야 한다.

第24條 (滯留資格變更許可) ①大韓民國에 滯留하는 外國人이 그 滯留資格과 다른 滯留資格에 해당하는 活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法務部長官의 滯留資格變更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第31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그 身分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의 滯留資格을 변경하고자 하는 者는 그 身分變更日부터 30日이내에 法務部長官의

(추 139)

滯留資格變更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25條 (滯留期間延長許可) 外國人이 滯留期間을 초과하여 계속 滯留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만료전에 法務部長官의 滯留期間延長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6·12·12〉

第26條 削除 〈96·12·12〉

第27條 (旅券등의 휴대 및 제시) ①大韓民國에 滯留하는 外國人은 항상 旅券·船員手帖·外國人入國許可書·外國人登錄證 또는 上陸許可書(이하 "旅券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17歲미만인 外國人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 本文의 外國人은 出入國管理公務員 또는 權限있는 公務員이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 旅券등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2節 外國人의 出國

第28條 (出國審査) ①外國人이 出國하고자 할 때에는 有效한 旅券 또는 船員手帖을 가지고 出國하는 出入國港에서 出入國管理公務員의 出國審査를 받아야 한다. 〈改正 96·12·12〉

②第3條第1項 但書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③第5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6·12·12〉

④第12條第6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新設 96·12·12〉

제29조 (외국인출국의 정지)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2·29〕

第30條 (再入國許可) ①法務部長官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그의 滯留期間내에 出國하였다가 再入國하고자 하는 경우 그의 申請에 의하여 再入國을 許可할 수 있다. 〈改正 2001·1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入國許可는 1回에 한하여 再入國할 수 있는 單數再入國許可와 2回이상 再入國할 수 있는 複數再入國許可로 구분한다.

③外國人이 疾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받은 기간내에 再入國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法務部長官의 再入國許

(추 139)

可期間延長許可를 받아야 한다.

④法務部長官은 再入國許可期間延長許可에 관한 權限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在外公館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再入國許可 및 그 期間 延長許可에 관한 기준 및 節次는 法務部令으로 정한다.

第5章 外國人의 登錄등

第1節 外國人의 登錄

第31條 (外國人登錄) ①外國人이 入國한 날부터 90日을 초과하여 大韓民國에 滯留하게 되는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入國한 날부터 90日이내에 그의 滯留地를 관할하는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外國人登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外國人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駐韓外國公館(大使館과 領事館을 포함한다)과 國際機構의 職員 및 그의 家族
2. 大韓民國政府와의 協定에 의하여 外交官 또는 領事와 유사한 特權 및 免除를 누리는 者와 그의 家族
3. 大韓民國政府가 招請한 者등으로서 法務部令이 정하는 者

②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滯留資格을 받는 者로서 그 날부터 90日을 초과하여 滯留하게 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滯留資格을 받는 때에 外國人登錄을 하여야 한다.

③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滯留資格變更許可를 받는 者로서 入國한 날부터 90日을 초과하여 滯留하게 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滯留資格變更許可를 받는 때에 外國人登錄을 하여야 한다.

第32條 (外國人登錄事項)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登錄事項은 다음과 같다.

1. 姓名·性別·生年月日 및 國籍
2. 旅券의 番號·發給日字 및 有效期間
3. 勤務處와 職位 또는 擔當業務
4. 本國의 住所와 國內滯留地
5. 滯留資格과 滯留期間
6. 기타 法務部令이 정하는 사항

第33條 (外國人登錄證의 발급) ①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登錄을 받은 事務

(추 139)

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外國人에게 外國人登錄證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外國人이 17歲미만인 때에는 이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登錄證을 발급받지 아니한 外國人이 17歲가 된 때에는 60日이내에 滯留地管轄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外國人登錄證發給申請을 하여야 한다.

第34條 (外國人登錄票등의 작성 및 관리) ①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登錄을 받은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登錄外國人記錄票를 작성·비치하고, 外國人登錄票를 작성하여 그 外國人이 滯留하는 市(特別市와 廣域市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郡 또는 區(自治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長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改正 96·12·12〉

②市·郡 또는 區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登錄票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登錄事項을 外國人登錄臺帳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登錄外國人記錄票·外國人登錄票 및 外國人登錄臺帳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5條 (外國人登錄事項變更의 申告)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外國人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14日이내에 滯留地管轄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外國人登錄事項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改正 96·12·12, 2001·12·29〉

1. 姓名·性別·生年月日 및 國籍
2. 旅券의 番號·發給日字 및 有效期間
3. 그밖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항

第36條 (滯留地變更의 申告) ①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外國人이 그의 滯留地를 변경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轉入한 날부터 14日이내에 新滯留地의 시·군·구의 장 또는 新滯留地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改正 94·12·22, 96·12·12, 2001·12·29〉

②外國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할 때에는 外國人登錄證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의 장 또는 사무소장·출장소장은 그 外國人登錄證에 滯留地變更事項을 기재한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改正 2001·12·29〉

(추 13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체없이 新滯留地의 시·군·구의 장에게 체류지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新設 2001·12·29〉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직접 전입신고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체류지변경통보를 받은 시·군·구의 장은 지체없이 前滯留地의 市·郡 또는 區의 長에게 滯留地變更申告書寫本을 첨부하여 外國人登錄票의 이송요청을 하여야 한다. 〈改正 96·12·12, 2001·12·29〉

⑤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登錄票의 이송요청을 받은 前滯留地의 市·郡 또는 區의 長은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日이내에 新滯留地의 市·郡 또는 區의 長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新設 96·12·12, 2001·12·29〉

⑥제5항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登錄票를 이송받은 시·군·구의 장은 신고인의 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고 第3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改正 96·12·12, 2001·12·29〉

⑦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轉入申告를 받은 시·군·구의 장 또는 사무소장·출장소장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前滯留地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出張所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2001·12·29〉

第37條 (外國人登錄證의 반납등) ①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外國人이 出國하는 때에는 出入國管理公務員에게 外國人登錄證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3·12·10〉

1. 再入國許可를 받고 一時出國하였다가 그 許可期間내에 다시 入國하고자 하는 경우
2. 複數査證所持者 또는 再入國許可免除對象國家國民으로서 一時出國하였다가 許可된 滯留期間내에 다시 入國하고자 하는 경우
3. 難民旅行證明書를 발급받고 일시 出國하였다가 그 有效期間내에 다시 入國하고자 하는 경우

②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外國人이 國民으로 되거나 死亡한 경우 또는 第31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外國人登錄證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登錄證

(추 139)

을 반납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滯留地의 市·郡 또는 區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大韓民國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1項 各號의 1의 경우에 해당하는 外國人의 外國人登錄證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⑤第4項의 경우 그 外國人이 許可된 기간내에 다시 入國한 때에는 14日이내에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으로부터 外國人登錄證을 반환받아야 하고, 그 許可받은 기간내에 다시 入國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登錄證을 반납한 것으로 본다.

第38條 (指紋찍기)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外國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指紋을 찍어야 한다. 〈改正 99·2·5〉

1. 20歲이상의 外國人으로서 外國人登錄을 하는 者. 다만, 滯留期間이 入國한 날 또는 滯留資格을 부여받은 날부터 1年미만인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 法에 위반하여 調査를 받거나 기타 다른 法律에 위반하여 搜査를 받고 있는 者
3. 身元이 확실하지 아니한 者
4. 기타 法務部長官이 大韓民國의 安全이나 이익을 위하여 특히 指紋을 찍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者

②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紋찍기를 거부하는 外國人에 대하여는 滯留期間延長許可등 이 法에 의한 許可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2節 (第39條 내지 第45條) 削除 〈99·2·5〉

第6章 强制退去등

第1節 强制退去의 對象者

第46條 (强制退去의 對象者)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이 章에 規定된 節次에 따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外國人을 大韓民國밖으로 强制退去시킬 수 있다. 〈改正 93·12·10, 96·12·12, 2001·12·29〉

1. 第7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1의2. 제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외국인 또는 동조에 규정된 허위초청등의 행

(추 139)

위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

2. 第11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入國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者
3. 제12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이 붙인 조건에 위반한 者
5. 第14條第1項, 第15條第1項·第16條第1項 또는 第1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上陸한 者
6. 第14條第2項, 第15條第2項·第16條第2項 또는 第16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出入國管理公務員이 붙인 조건에 위반한 者
7. 第17條第1項·第2項, 第18條, 第20條, 第21條, 第23條, 第24條 또는 第25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8.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法務部長官이 정한 居所 또는 活動範圍의 제한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者
9. 第2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出國하려고 한 者
10. 第31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11.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釋放된 者

第2節 調 査

第47條 (調査) 出入國管理公務員은 第46條 各號의 1에 해당된다고 疑心되는 外國人(이하 "容疑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調査할 수 있다.

第48條 (容疑者의 출석요구 및 訊問) ①出入國管理公務員은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容疑者의 출석을 요구하여 訊問할 수 있다.

②出入國管理公務員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訊問을 하는 때에는 다른 出入國管理公務員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訊問을 함에 있어 容疑者가 행한 陳述은 이를 調書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調書는 이를 容疑者에게 읽어 주거나 閱覽하게 한 후 誤記가 있고 없음을 물어 容疑者가 그 내용에 대한 增減 또는 변경의 請求를 한 때에는 그 陳述을 調書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調書에는 容疑者로 하여금 間印한 후 署名 또는 記名捺印하게 하고, 容疑者가

(추 139)

署名 또는 記名捺印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한 때에는 그 뜻을 調書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國語에 통하지 못하는 者나 聽覺障碍人 또는 言語障碍人의 陳述에는 通譯人으로 하여금 通譯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聽覺障碍人 또는 言語障碍人에게는 文字로 묻거나 陳述하게 할 수 있다.

⑦陳述중 國語아닌 文字 또는 符號가 있는 때에는 이를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第49條 (參考人의 출석요구 및 陳述) ①出入國管理公務員은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參考人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陳述을 들을 수 있다.

②第48條第2項 내지 第7項의 規定은 參考人의 陳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50條 (檢査 및 書類등의 제출요구) 出入國管理公務員은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容疑者의 同意를 얻어 그의 住居 또는 물건을 檢査하거나 書類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第3節 보 호

第51條 (보호) ①出入國管理公務員은 外國人이 第46條 各號의 1에 해당된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逃走하거나 逃走할 염려가 있는 경우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으로부터 保護命令書를 발부받아 그 外國人을 보호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命令書의 발부를 申請할 때에는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資料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出入國管理公務員은 外國人이 第46條 各號의 1에 해당된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逃走하거나 逃走할 염려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여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으로부터 保護命令書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出入國管理公務員의 名義로 緊急保護書를 발부하여 그 外國人을 보호할 수 있다.

④出入國管理公務員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外國人을 보호한 경우 48時間 이내에 保護命令書를 발부받아 그 外國人에게 이를 내보여야 하며, 이를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보호를 解除하여야 한다.

第52條 (보호기간 및 保護場所) ①보호기간은 10日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

(추 139)

유가 있는 때에는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의 許可를 받아 10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1次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보호할 수 있는 場所는 外國人保護室·外國人保護所 기타 法務部長官이 지정하는 場所로 한다.

第53條 (保護命令書의 執行) 出入國管理公務員이 保護命令書를 執行할 때에는 容疑者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第54條 (보호의 통지) 出入國管理公務員은 容疑者를 보호한 때에는 國內에 있는 그의 法定代理人·配偶者·直系親族·兄弟姉妹·家族·辯護人(이하 "法定代理人등"이라 한다) 또는 容疑者가 지정하는 者에게 3日이내에 보호의 日時·場所 및 이유를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法定代理人등이 없거나 용의자가 통지받을 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2001·12·29〉

第55條 (보호에 대한 異議申請) ①保護命令書에 의하여 보호된 者 또는 그의 法定代理人등은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을 거쳐 法務部長官에게 보호에 대한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②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關係書類를 審査하여 그 申請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決定으로 이를 棄却하고,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決定으로 보호된 者의 保護解除를 명하여야 한다.

③法務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을 함에 앞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陳述을 들을 수 있다.

第56條 (外國人의 일시보호) ①出入國管理公務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外國人을 48時間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外國人保護室에 일시보호할 수 있다. 〈改正 96·12·12〉

1. 第1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入國이 許可되지 아니한 者
2.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條件附入國許可를 받은 者로서 逃走하거나 逃走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者
3. 第6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國命令을 받은 者로서 逃走하거나 逃走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者

②出入國管理公務員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일시보호한 外國人에 대하여 出

(추 139)

國交通便의 미확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8時間내에 送還할 수 없는 때에는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의 許可를 받아 48時間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1次에 한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新設 96·12·12〉

第57條 (被保護者의 處遇) 外國人保護室 및 外國人保護所의 設備, 보호되어 있는 者의 處遇·給養·警備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務部令으로 정한다.

第4節 審査 및 異議申請

第58條 (審査決定)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出入國管理公務員이 容疑者에 대한 調査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容疑者가 第46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審査하여 決定하여야 한다.

第59條 (審査후의 節次) ①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審査의 결과 容疑者가 第46條 各號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容疑者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하고, 容疑者가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즉시 보호를 解除하여야 한다.

②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審査의 결과 容疑者가 第46條 各號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强制退去命令書를 발부할 수 있다.

③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强制退去命令書를 발부하는 경우 그 容疑者에 대하여 法務部長官에게 異議申請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第60條 (異議申請) ①容疑者가 强制退去命令에 대하여 異議申請을 하고자 할 때에는 强制退去命令書를 받은 날부터 7日이내에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을 거쳐 法務部長官에게 異議申請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書를 접수한 때에는 審査決定書 및 調査記錄을 첨부하여 法務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法務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書등을 접수한 때에는 異議申請이 이유있는지의 여부를 審査決定하여 그 뜻을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法務部長官으로부터 異議申請이 이유있다는 決定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容疑者에게 그 뜻을 알리고, 容疑者가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보호를 解除하여야 한다.

⑤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法務部長官으로부터 異議申請이 이유없다는 決定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容疑者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한다.

第61條 (滯留許可의 特例) ①法務部長官은 第6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을

함에 있어 異議申請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容疑者가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기타 大韓民國에 滯留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의 滯留를 許可할 수 있다.

②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 滯留期間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第5節 强制退去命令書의 執行

第62條 (强制退去命令書의 執行) ①强制退去命令書는 出入國管理公務員이 이를 執行한다.

②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司法警察官吏에게 强制退去命令書의 執行을 의뢰할 수 있다.

③强制退去命令書를 執行할 때에는 그 命令을 받은 者에게 强制退去命令書를 내보이고 지체없이 그를 第64條의 規定에 의한 送還國에 送還하여야 한다. 다만, 第76條의 規定에 의하여 船舶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가 送還하게 되는 경우에는 出入國管理公務員은 그 船舶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에게 그를 引渡할 수 있다.

第63條 (强制退去命令을 받은 者의 보호 및 保護解除) ①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强制退去命令을 받은 者를 즉시 大韓民國밖으로 送還할 수 없는 때에는 送還이 가능할 때까지 그를 外國人保護室·外國人保護所 기타 法務部長官이 지정하는 場所에 보호할 수 있다.

②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强制退去命令을 받은 者가 다른 國家로부터 入國이 거부되는 등의 사유로 送還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住居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그의 보호를 解除할 수 있다.

第64條 (送還國) ①强制退去命令을 받은 者는 國籍 또는 市民權을 가진 國家에 送還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家에 送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國家에 送還할 수 있다.

1. 大韓民國에 入國하기 전에 居住한 國家
2. 出生地가 있는 國家
3. 大韓民國에 入國하기 위하여 船舶등에 탔던 港이 속하는 國家
4. 기타 本人이 送還되기를 희망하는 國家

③難民에 대하여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難民協約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追放 또는 送還이 금지되는 領域이 속하는 國家에 送還하지 아니한다. 다만, 法務部長官이 大韓民國의 이익이나 安全을 해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3·12·10〉

(추 83)

第6節 보호의 一時解除

第65條 (보호의 一時解除) ①保護命令書 또는 强制退去命令書의 발부를 받고 보호되어 있는 者, 그의 保證人 또는 法定代理人등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에게 보호의 一時解除를 請求할 수 있다.

②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는 때에는 被保護者의 情狀, 解除要請事由, 資産 기타의 사항을 참작하여 1千萬원이하의 保證金을 預置시키고 住居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一時解除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保證金의 預置 및 반환의 節次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6條 (保護一時解除의 取消) ①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보호로부터 一時解除된 者가 逃走하거나 逃走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出席命令에 응하지 아니한 때 기타 一時解除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보호의 一時解除를 取消하고 다시 보호의 措置를 할 수 있다.

②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의 一時解除를 取消하는 경우 保護一時解除取消書를 발부하고 保證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國庫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保證金의 國庫歸屬節次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節 出國권고등

第67條 (出國권고) ①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大韓民國에 滯留하는 外國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外國人에게 自進하여 出國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第17條 및 第20條의 規定을 위반한 者로서 그 위반정도가 가벼운 경우
2.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者로서 法務部長官이 그 出國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國권고를 할 때에는 出國勸告書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國勸告書를 발부하는 경우 그날부터 5日의 범위내에서 出國期限을 정할 수 있다.

第68條 (出國命令) ①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外國人에 대하여는 出國命令을 할 수 있다. 〈改正 93·12·10, 96·12·12, 2001·12·29〉

1. 第46條 各號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가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者
2. 第67條의 規定에 의한 出國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者

(추 139)

3. 第89條의 規定에 의하여 각종 許可가 取消된 者

3의2. 第100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후 出國措置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者

4. 第10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告處分후 出國措置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者

②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國命令을 할 때에는 出國命令書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國命令書를 발부할 때에는 法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出國期限을 정하고 住居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出國命令을 받고도 지정한 期限까지 出國하지 아니하거나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붙인 조건에 위반한 者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强制退去命令書를 발부하여야 한다.

第7章 船舶등의 檢索

第69條 (船舶등의 檢索 및 審査) ①船舶등이 出入國港에 出入港할 때에는 出入國管理公務員의 檢索을 받아야 한다.

②船舶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는 船舶등이 부득이 出入國港외의 場所에 出入港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第74條의 規定에 의한 出入港豫定通報書에 그 사유를 疏明하는 資料를 첨부하여 미리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제출하고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索을 받아야 한다. 다만, 航空機의 不時着, 船舶의 遭難등 불의의 事故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보고하여 檢索을 받아야 한다.

③出入國管理公務員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索을 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査하여야 한다.

1. 乘務員 및 乘客의 出入國適格여부 또는 離船여부
2. 法令을 위반하여 入國 또는 出國을 꾀하는 者가 船舶등에 타고 있는지의 여부
3. 第72條의 規定에 의한 乘船許可를 받지 아니한 者가 있는지의 여부

④出入國管理公務員은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索 및 審査를 할 때에는 船舶등의 長에게 航海日誌 기타 필요한 書類의 제출 또는 閱覽을 요구할 수 있다.

⑤出入國管理公務員은 船舶등에 乘船중인 乘務員·乘客 기타 出入者의 身元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質問을 하거나 그 身分을 증명할 수 있는 書類등의

(추 92)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⑥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船舶등의 檢索을 法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書類審査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⑦船舶등의 長은 出港檢索이 끝난 후 3時間이내에 出港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出港 직전에 다시 檢索을 받아야 한다.

第70條 (內航資格船舶등의 檢索 및 審査) 大韓民國 領域안에서 사람 또는 물건을 輸送하는 船舶·航空機 기타의 交通機關(이하 "內航資格船舶등"이라 한다)이 불의의 事故·航海상의 문제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外國에 寄港한 경우에는 그 후 入港한 때에 第7章 및 第8章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國管理公務員의 入港檢索을 받아야 한다.

第71條 (出入國의 정지등) ①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第6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의 결과 違法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關係乘務員 또는 乘客의 出國이나 入國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國의 정지는 違法한 사실의 調査에 필요한 기간에 한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마친 뒤에도 계속하여 出入國을 금지 또는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第4條·第11條 또는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法務部長官의 決定을 받아야 한다.

④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第1項, 第4條 또는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乘客 또는 乘務員의 出國을 금지 또는 정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船舶등에 대하여 出港의 일시정지 또는 回航을 명하거나 船舶등에의 出入을 제한할 수 있다.

⑤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船舶등에 대한 出港의 일시정지 또는 回航을 명하거나 出入을 제한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船舶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出港의 일시정지·回航命令 또는 出入制限을 解除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船舶등의 出港의 일시정지등은 職務遂行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第72條 (乘船許可) ①出入國港 또는 出入國港외의 場所에 碇泊하는 船舶등의 乘務員과 그 乘客 또는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할 수 있는 者외의 者가 그 船舶등에 出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의 乘船許可를 받아야 한다.

(추 83)

②出入國管理公務員외의 者가 出入國審査場에 出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第1項과 같다.

第8章 船舶등의 長 및 運輸業者의 責任

第73條 (運輸業者등의 일반적 義務) 船舶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入國 또는 上陸을 許可받지 아니한 者의 入國·上陸防止
2. 유효한 旅券 또는 船員手帖과 필요한 査證을 소지하지 아니한 者의 搭乘防止
3. 乘船許可 또는 出國審査를 받지 아니한 者의 搭乘防止
4. 出入國管理公務員이 第1號 내지 第3號에 規定된 入國·上陸·搭乘의 방지를 위하여 요청하는 監視員의 배치
5. 이 法에 위반하여 出入國을 꾀하는 者가 숨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船舶등의 檢索
6. 船舶등의 檢索 및 出入國審査가 끝날 때까지 船舶등에의 無斷出入禁止
7. 船舶등의 檢索 및 出國審査가 끝난 후 出港전까지 乘務員 또는 乘客의 乘·下船防止
8. 出入國管理公務員이 船舶등의 檢索 및 出入國審査를 위한 職務遂行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하는 사항

〔全文改正 96·12·12〕

第74條 (사전통보의 義務) 船舶등이 出入國港에 出入港하는 경우에는 그 船舶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는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出入港豫定日時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出入港豫定通報書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航空機의 不時着, 船舶의 遭難등 불의의 事故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第75條 (보고의 義務) ①出入國港 또는 出入國港외의 場所에 出入港하는 船舶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는 乘務員名簿 및 乘客名簿를 첨부한 出入港報告書를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出入國港 또는 出入國港외의 場所에 入港하는 船舶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는 旅券 또는 船員手帖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者가 그 船舶등에 타고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보고하고 그의 上陸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出入國港 또는 出入國港외의 場所에서 出港하는 船舶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는

乘務員의 歸船여부와 정당한 出國節次를 마치지 아니하고 出國하려는 者의 유무에 관하여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76條 (送還의 義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外國人이 탔던 船舶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는 그의 費用과 責任으로 그 外國人을 지체없이 大韓民國밖으로 送還하여야 한다.

1. 第7條第1項 내지 第4項 또는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者
2.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入國이 금지되거나 거부된 者
3. 第1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船舶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의 歸責事由로 入國이 許可되지 아니한 者
4.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上陸한 乘務員으로서 그가 타고 있던 船舶등이 出港할 때까지 歸船하지 아니한 者
5. 第46條第5號 또는 第6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로서 强制退去命令을 받은 者

第8章의2 難民의 인정등

第76條의2 (難民의 인정) ①法務部長官은 大韓民國안에 있는 外國人으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難民의 인정에 관한 申請이 있는 때에는 그 外國人이 難民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은 그 外國人이 大韓民國에 上陸 또는 入國한 날(大韓民國에 있는 동안에 難民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疾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1·12·29〉

③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의 인정을 한 때에는 그 外國人에게 難民認定證明書를 교부하고, 難民의 인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難民의 인정에 관한 審査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3·12·10〕

第76條의3 (難民 인정의 取消) ①法務部長官은 第7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추 139)

難民의 인정을 받은 者가 難民協約 第1條C(1) 내지 (6) 또는 第1條F(a) 내지 (c)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難民의 인정을 取消할 수 있다.

②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의 인정을 取消한 때에는 그 사실을 外國人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3·12·10〕

第76條의4 (異議申請) 第7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인정의 申請을 하였으나 難民의 인정을 받지 못한 者 또는 第76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의 인정이 取消된 者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日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法務部長官에게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行政審判法에 의한 行政審判을 請求할 수 없다.

〔本條新設 93·12·10〕

第76條의5 (難民旅行證明書) ①法務部長官은 第7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의 인정을 받은 者가 出國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申請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難民旅行證明書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의 出國이 大韓民國의 이익이나 安全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難民旅行證明書의 有效期間은 1年으로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旅行證明書를 발급받은 者는 그 증명서의 有效期間내에 大韓民國에 入國하거나 大韓民國으로부터 出國할 수 있다. 이 경우 入國에 있어서는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再入國許可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法務部長官은 第3項의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月이상 1年미만의 범위내에서 入國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할 수 있다.

⑤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旅行證明書를 발급받고 出國한 者가 疾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증명서의 有效期間내에 再入國할 수 없는 때에는 그의 申請에 의하여 6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有效期間의 연장을 許可할 수 있다.

⑥法務部長官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有效期間延長許可에 관한 權限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在外公館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本條新設 93·12·10〕

第76條의6 (難民認定證明書등의 반납) ①第7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

의 인정을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소지하고 있는 難民認定證明書 또는 難民旅行證明書를 지체없이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第59條第2項·第68條第4項 또는 第8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强制退去命令書를 발부받은 때
2. 第60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强制退去命令에 대한 異議申請이 이유없다는 통지를 받은 때
3. 第76條의3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의 인정을 取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

②法務部長官은 第76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旅行證明書를 발급받은 者가 大韓民國의 이익이나 安全을 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外國人에게 14日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難民旅行證明書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旅行證明書를 반납한 때에는 그 때에, 지정된 기한까지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경과한 때에 당해 難民旅行證明書는 각각 그 효력을 잃는다.

〔本條新設 93·12·10〕

第76條의7 (難民에 대한 滯留許可의 特例) 法務部長官은 難民의 인정을 받은 者가 第6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을 한 때에는 第61條第1項에 規定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異議申請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의 滯留를 許可할 수 있다. 이 경우 第61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本條新設 93·12·10〕

第9章 補 則

第77條 (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①出入國管理公務員은 그 職務를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기등(警察官職務執行法 제10조 내지 제10조의4에서 규정한 장비, 장구, 분사기, 무기를 말하며, 이하 "무기등"이라 한다)을 지닐 수 있다. 〈改正 2001·12·29〉

②出入國管理公務員은 警察官職務執行法 제10조 내지 제10조의4의 規定에 준하여 무기등을 사용할 수 있다. 〈改正 2001·12·29〉

第78條 (關係機關의 협조) ①出入國管理公務員은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 第80條의 規定에 의한 難民의 인정등에 관한 調査 또는 出入國事犯에 대한 調査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關係機關 또는 團體에 대하여 資料의 제출 또는 사실

(추 139)

의 調査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3·12·1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關係機關 또는 團體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第79條 (許可申請등의 義務者)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17歲미만인 경우 本人이 許可등의 申請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父母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그 申請을 하여야 한다. 〈改正 96·12·12, 2001·12·29〉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滯留資格外活動許可를 받아야 할 자

1의2.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滯留資格을 받아야 할 者

2.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滯留資格變更許可를 받아야 할 者

3.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滯留期間延長許可를 받아야 할 者

4.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登錄을 하여야 할 者

5. 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登錄事項變更申告를 하여야 할 者

6. 第36條의 規定에 의하여 滯留地變更申告를 하여야 할 者

第80條 (事實調査) ①出入國管理公務員 또는 權限있는 公務員은 이 法에 의한 신고 또는 登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19조·제31조·第35條 및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登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調査할 수 있다. 〈改正 99·2·5, 2001·12·29〉

②法務部長官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査證發給認定書의 발급,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難民의 인정 또는 第76條의3의 規定에 의한 難民 인정의 取消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出入國管理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 〈新設 93·12·10, 2001·12·29〉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登錄 또는 申請을 한 者 기타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質問을 하거나 文書 기타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3·12·10, 99·2·5〉

第81條 (出入國管理公務員등의 外國人動向調査) ①出入國管理公務員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關係機關 所屬公務員은 外國人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따라 適法하게 滯留하고 있는지 여부를 調査하기 위하여 外國人, 그 外國人을 雇傭한 者, 그 外國人의 所屬團體 또는 그 外國人이 勤務하는 業所의 代表者와 그 外國人을 宿泊시킨 者를 訪問하여 質問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7·12·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質問을 받거나 資料의 제출을 요구받은 者는 정당한

(추 139)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第82條 (證票의 휴대 및 제시) 出入國管理公務員 또는 權限있는 公務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職務를 執行하는 경우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住居 또는 물건의 檢査 및 書類 기타 물건의 제출요구
2. 第69條 및 第70條의 規定에 의한 檢索 및 審査
3. 第80條 및 第81條의 規定에 의한 質問 기타 필요한 資料의 제출요구
4. 기타 第1號 내지 第3號에 준하는 職務遂行

第83條 (出入國事犯의 申告) 누구든지 이 法을 위반하였다고 疑心되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出入國管理公務員에게 이를 申告할 수 있다.

第84條 (通報義務)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이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 第46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또는 이 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者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矯導所·少年矯導所·拘置所 및 그 支所·保護監護所·治療監護所 또는 少年院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外國人이 刑의 執行을 받고 刑期의 만료, 刑의 執行停止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釋放된 때, 保護監護處分 또는 治療監護處分을 받고 收容된 후 出所한 때 또는 少年法에 의하여 少年院에 收容된 후 退院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2001·12·29〉

第85條 (刑事節次와의 관계) ①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第46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刑의 執行을 받고 있는 때에도 强制退去의 節次를 밟을 수 있다.

②第1項의 경우 强制退去命令書가 발부된 때에는 그 外國人에 대한 刑의 執行이 종료된 후에 이를 執行한다. 다만, 그 外國人의 現在地를 관할하는 地方檢察廳檢事長의 許可를 받은 때에는 刑의 執行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强制退去命令書를 執行할 수 있다.

第86條 (身柄의 引渡) ①檢事는 强制退去命令書가 발부된 拘束被疑者에 대하여 不起訴處分을 한 때에는 出入國管理公務員에게 그를 引渡하여야 한다.

②矯導所·少年矯導所·拘置所 및 그 支所·保護監護所·治療監護所 또는 少年院의 長은 第8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에게 통보한 外國人에 대하여 强制退去命令書가 발부된 때에는 釋放·出所 또

(추 139)

는 退院과 동시에 出入國管理公務員에게 그를 引渡하여야 한다. 〈改正 2001·12·29〉

第87條 (出入國管理 手數料) ①이 法에 의하여 許可등을 받는 者는 法務部令이 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法務部長官은 國際慣例 또는 상호주의원칙 그밖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를 免除할 수 있고, 協定등에 手數料에 관한 規定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規定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改正 2001·12·29〉

제88조 (사실증명의 발급)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이 법의 절차에 의하여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시·군·구의 장은 이 법의 절차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2·29〕

第89條 (각종 許可등의 取消·변경) ①法務部長官은 外國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査證發給,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査證發給認定書의 발급,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入國許可,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條件附入國許可,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上陸許可 또는 第20條·第21條·第23條 내지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滯留許可등을 取消 또는 변경할 수 있다. 〈改正 96·12·12〉

1. 身元保證人이 보증을 撤回하거나 身元保證人이 없게 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때
3. 許可條件을 위반한 때
4. 사정변경으로 許可狀態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5. 기타 이 法 또는 다른 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出入國管理公務員의 정당한 職務命令을 위반한 때

②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각종 許可등의 取消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外國人 또는 第79條의 規定에 의한 申請人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第2項의 경우에 있어서 法務部長官은 取消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出席日時와 場所를 出席日 7日전까지 그 外國人 또는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90條 (身元保證) ①法務部長官은 査證發給, 査證發給認定書發給, 入國許可, 條

件附入國許可, 각종 滯留許可, 보호 또는 出入國事犯의 身柄引渡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招請者 기타 관계인에게 그 外國人(이하 "被保證外國人"이라 한다)의 身元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6·12·12〉

②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身元保證을 한 者(이하 "身元保證人"이라 한다)에게 被保證外國人의 滯留, 보호 및 出國에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6·12·12〉

③身元保證人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保證責任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國庫의 부담이 되게 한 때에는 法務部長官은 身元保證人에게 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改正 96·12·12〉

④身元保證人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費用을 부담하지 아니할 염려가 있거나 그 보증만으로는 保證目的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身元保證人에게 被保證外國人 1人당 300萬원이하의 保證金을 預置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6·12·12〉

⑤身元保證人의 資格·보증기간 기타 身元保證에 필요한 사항은 法務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6·12·12〉

第90條의2 (不法就業外國人의 出國費用負擔責任) ①法務部長官은 就業活動을 할 수 있는 滯留資格을 가지지 아니한 外國人을 雇用한 者(이하 "不法雇用主"라 한다)에게 그 外國人의 出國에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不法雇用主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費用負擔責任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國庫의 부담이 되게 한 때에는 法務部長官은 그 不法雇用主에게 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本條新設 96·12·12〕

第91條 (文書등의 송부) ①文書등의 송부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本人, 家族, 身元保證人, 所屬團體의 長의 順으로 직접 교부하거나 郵送의 방법에 의한다.

②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文書등의 송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송부할 文書등을 보관하고, 그 사유를 廳舍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公示送達의 방법에 의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示送達은 게시한 날부터 14日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

이 생긴다.

第92條 (權限의 위임) ①法務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市·郡 또는 區의 長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區(自治區가 아닌 區에 한한다)·邑·面·洞 또는 出張所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第93條 (南·北韓往來등의 節次) ①軍事分界線以南地域(이하 "南韓"이라 한다) 또는 海外에 居住하는 國民이 軍事分界線以北地域(이하 "北韓"이라 한다)을 거쳐 出入國하는 경우에는 南韓에서 北韓으로 가기전 또는 北韓에서 南韓으로 온 후에 出入國審査를 한다.

②外國人의 南·北韓 往來節次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의 出入國節次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2001·12·29〉

③外國人이 北韓을 거쳐 出入國하는 경우에는 이 法의 出入國節次에 관한 規定에 의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章 罰 則

第94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3·12·10, 96·12·12, 97·12·13, 2001·12·29〉

1.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出國審査를 받지 아니하고 出國한 者
2. 第7條第1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入國한 者 또는 第12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入國審査를 받지 아니하고 入國한 者

2의2. 第12條의2의 規定에 위반한 者

2의3. 제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上陸한 者
4.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者
5. 第17條第1項, 第18條第1項·第5項, 第20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5의2.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第18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就業活動을 할 수 있는 滯留資格을 가지지 아니한 外國人의 雇傭을 業으로 알선·勸誘한 者

(추 139)

6의2.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勤務處의 변경 또는 追加許可를 받지 아니한 外國人의 雇傭을 業으로 알선한 者

7.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제한등에 위반한 者

8. 第23條·第24條 또는 第25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9. 第2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出國한 者

10. 第69條 또는 第70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第95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3·12·10〉

1.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入國審査를 받지 아니하고 入國한 者

2. 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者

3. 第15條第1項·第16條第1項 또는 第1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上陸한 者

4. 第15條第2項·第16條第2項 또는 第16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者

5. 第18條第2項 또는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6. 削除 〈96·12·12〉

6의2.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勤務處의 변경 또는 追加許可를 받지 아니한 外國人을 雇傭한 者

7. 第31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8. 第51條第1項·第3項, 第56條 또는 第6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 또는 일시보호된 者로서 逃走한 者

9. 第6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者

10.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7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難民의 인정을 받은 者

第96條 削除 〈99·2·5〉

第97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3·12·10, 96·12·12〉

1. 第7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나 제한에 위반한 者

2. 第72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정당한 사유없이 第73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추 105)

4. 第74條·第75條 또는 第76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5. 第76條의6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거나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第98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3·12·10〉

1. 第18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就業活動을 할 수 있는 滯留資格을 가지지 아니한 外國人의 雇傭을 알선·勸誘한 者(業으로 하는 者를 제외한다)

1의2.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勤務處의 변경 또는 追加許可를 받지 아니한 外國人의 雇傭을 알선한 者(業으로 하는 者를 제외한다)

2. 第27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4. 및 5. 削除 〈93·12·10〉

第99條 (未遂犯등) ①第94條第1號·第2號·第2號의2·第9號 및 第95條第1號의 罪를 범할 목적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와 未遂犯은 각각 해당하는 本罪에 준하여 處罰한다. 〈改正 97·12·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를 敎唆하거나 幇助한 者는 正犯에 준하여 處罰한다.

〔全文改正 96·12·12〕

第99條의2 (難民에 대한 刑의 免除) 第94條第2號·第3號·第4號·第8號 또는 第95條第3號·第4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가 그 위반행위를 한 후 지체없이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難民協約 第1條A(2)에 規定된 이유로 그 生命·身體 또는 身體의 自由를 침해받을 恐怖가 있는 領域으로부터 직접 入國 또는 上陸한 난민이며 그 恐怖로 인하여 당해 違反行爲를 한 사실을 직접 申告하는 경우 그 사실이 立證된 때에는 그 刑을 免除한다.

〔本條新設 93·12·10〕

第100條 (過怠料) ①第19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新設 93·12·10〉

1. 第35條 또는 第37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추 105)

2. 第79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8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國管理公務員의 帳簿 또는 資料提出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한 者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3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이 法의 規定에 의한 각종 申請 또는 申告에 있어 허위사실을 기재 또는 보고한 者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3·12·10, 96·12·12〉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3·12·10, 96·12·12〉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3·12·10, 96·12·12〉

⑦第5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改正 93·12·10〉

第11章 告發과 通告處分

第1節 告 發

第101條 (告發) ①出入國事犯에 관한 事件은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의 告發이 없는 한 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改正 99·2·5〉

②出入國管理公務員외의 搜査機關이 第1項 本文에 해당하는 事件을 立件한 때에는 지체없이 管轄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第2節 通告處分

第102條 (通告處分) ①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出入國事犯에 대한 調査의 결과 犯罪의 確證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書面으로 罰金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犯則金"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改正 99·2·5〉

(추 105)

②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告處分을 받은 者가 犯則金을 臨時納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臨時納付시킬 수 있다.

③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調査結果 범죄의 情狀이 禁錮이상의 형에 처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告發하여야 한다. 〈改正 2001·12·29〉

④第47條 내지 第50條의 規定은 出入國事犯에 대한 調査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容疑者訊問調書는 刑事訴訟法 第244條의 規定에 의한 被疑者訊問調書로 본다.

第103條 (犯則金의 量定基準등) ①第10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犯則金의 量定基準은 法務部令으로 정한다.

②法務部長官은 出入國事犯의 年齡과 環境, 法 위반의 動機와 결과, 犯則金負擔能力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第10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告處分을 免除할 수 있다.

第104條 (通告處分의 告知方法) 通告處分의 告知는 通告書送達의 방법에 의한다.

第105條 (通告處分의 不履行과 告發) ①出入國事犯이 通告書의 송달을 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犯則金을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2001·12·29〉

②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出入國事犯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犯則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告發하여야 한다. 다만, 告發하기 전에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出入國事犯에 대하여 强制退去命令書를 발부한 때에는 第2項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告發하지 아니한다.

第106條 (一事不再理) 出入國事犯이 통고한 대로 犯則金을 납부한 때에는 동일한 事件에 대하여 다시 處罰받지 아니한다.

附 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3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査證發給認定書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발급된 査證發給認定書는 이 法에 의한 査證發給認定書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勤務處를 變更申告한 者는 이 法에 의한 勤務處의 변경·추가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3條 (外國人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추 139)

市·區·邑·面의 長에게 한 外國人登錄은 이 法에 의한 外國人登錄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발급된 居留申告證은 그 證을 반납 또는 更新할 때까지 이 法에 의한 外國人登錄證으로 보되,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발급된 居留申告證은 이 法 施行후 처음으로 각종 滯留關聯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하는 때에 更新하여야 한다.

③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작성된 外國人登錄票는 이 法에 의한 外國人登錄票로 본다.

第4條 (外國人保護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한 外國人收容場·外國人收容所는 이 法에 의한 外國人保護室·外國人保護所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收容은 이 法에 의한 보호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발부된 收容命令書·出國勸告書·收容一時解除取消書는 이 法에 의한 保護命令書·出國命令書·保護一時解除取消書로 본다.

第5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되, 이 法에 의한 罰則이 舊法에서 보다 가벼운 때에는 이 法에 의한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印鑑證明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3項중 "居留地"를 "滯留地"로 한다.

②不動産登記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1條의2第1項第4號중 "居留地"를 "滯留地"로 한다.

③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중 "出入國管理法 第65條 내지 第72條"를 "出入國管理法 第69條 내지 第76條"로 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외의 다른 法律에서 出入國管理法의 規定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 則 〈93·12·10 法4592〉

①(施行日) 이 法은 1994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다른 法律의 改正) 不動産登記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1條의2第1項第4號중 "出入國管理事務所長"을 "出入國管理事務所長 또는 出入國管理事務所出張所長"으로 한다.

(추 139)

附 則 〈94·12·22 法479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 則 〈96·12·12 法5176〉

①(施行日) 이 法은 1997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乘務員上陸許可書에 관한 적용례) 第14條第4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급되는 乘務員上陸許可書부터 적용한다.

③(滯留期間更新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滯留期間更新許可를 받은 者는 許可받은 기간동안 第25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滯留期間延長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附 則 〈97·12·13 法5434〉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 則 〈99·2·5 法5755〉

이 法은 1999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부 칙 〈2001·12·29 法6540〉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소관부처 : 법무부

전문개정 1993· 3·30 대통령령제13872호
개정 1994· 6·30 대통령령제14301호
1994·12·23 대통령령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31 대통령령제14486호(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중개정령)
1995·12· 1 대통령령제14817호
1997· 6·28 대통령령제15417호
1998· 4· 1 대통령령제15764호
1999· 2·26 대통령령제16120호
1999· 3·31 대통령령제16211호(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시행령)
1999·11·27 대통령령제16603호
2001· 7·16 대통령령제17305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장 국민의 출입국

제1조 (출입국심사) ①대한민국의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이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심사 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는 여권 또는 선원수첩(이하 "여권등"이라 한다)과 출입국신고서를 각각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응하여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 또는 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 국민의 출입국의 적격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마친 때에는 여권등과 출입국신고서에 출국심사인 또는 입국심사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95·12·1, 98·4·1〉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기타의 교통기관(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승무원인 국민이 출입국하는 경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무원등록증 또는 선원수첩의 확인으로써 출입국신고서의 제출과 출국심사인 또는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선박등의 승무원이 최초 출국하거나 최종 입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6·30, 95·12·1〉

⑤선박등의 승무원인 국민이 최초 출국하는 경우에는 승무원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등의 승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6·30, 97·6·28〉

⑥병역의무자인 국민이 출국심사를 받는 때에는 여권등에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거나 그 서류를 제출하였음을 입증하는 인증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⑦법 제3조제1항 및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수첩을 가지고 출

(추 135)

입국할 수 있는 자는 선원수첩에 주무관청의 출국확인을 받은 선원에 한한다.

⑧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한 여권 또는 선원수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고자 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심사하고 그의 출국사실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⑨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국민임이 확인된 때에는 출입국신고서에 입국심사인을 찍어야 한다.

제2조 (출국금지요청 및 해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금지의 요청을 하는 때에는 그 요청사유와 출국금지예정기간등을 기재한 출국금지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의 요청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출국금지를 요청한 관계기관의 장(이하 "요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④법무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요청을 심사한 후 출국을 금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6·30〉

⑤요청기관의 장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국금지기간의 만료 3일전까지 출국금지기간연장요청서에 의하여 그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요청기관의 장은 출국금지기간중이라도 출국금지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국금지해제요청서에 의하여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조 (출국금지결정등의 통지)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자 또는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통지서를 송부한다. 다만,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국금지의 결정 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의 결정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출국금지심의위원회)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출국금지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출국정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의 법무실장·검찰국장·출입국관리국장과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출국금지자의 명부비치등)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전산업무처리절차에 따라 그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출국금지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자에 대하여는 전산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작성된 출국금지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여권등의 보관·통지)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등을 보관하는 때에는 그 여권등의 명의인에게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보관한 여권등을 반환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조치가 해제된 때
2. 기타 여권등의 보관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등을 보관하는 때에는 그 여권등의 명의인 또는 소지인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실을 발급기관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여권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그 여권등의 송부를 요청받은 때, 보관중인 여권등이 보관기간중 효력이 상실된 때 또는 발급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여권등을 요청기관 또는 발급기관의 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등을 보관한 때에는 그 명의인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제7조 (사증발급)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추 35)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여권등에 사증인을 찍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근무처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7·6·28〉

③법무부장관은 사증을 발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부받아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서의 발부기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⑤법무부장관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국내의 고용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 (국제친선등을 위한 입국허가) ①법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고자 하는 자
2. 법무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대한민국을 관광 또는 통과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자
3. 기타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등을 위하여 그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법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는 자의 입국허가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법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는 자의 구체적 범위는 법무부장관이 국가와 사회의 안전 또는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

제9조 (사증면제협정적용의 일시정지)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정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무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정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외무부장관을 거쳐 당사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등)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추 86)

의하여 외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외공관의 장, 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외공관의 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국인입국허가서에 체류자격·체류기간 및 근무처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외국인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하며, 1회 입국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다만, 별표 1중 체류자격 1. 외교(A-1) 내지 3. 협정(A-3)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에 주재하기 위하여 입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외국인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2회이상 입국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다. 〈개정 94·6·30〉

⑤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이 출국하는 때에는 외국인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최종 출국하는 때에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94·6·30〉

제11조 (사증발급 권한의 위임)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중 체류자격 1. 외교(A-1) 내지 3. 협정(A-3)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중 체류자격 6. 일시취재(C-1) 내지 30. 관광취업(H-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별로 그 범위를 정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5·12·1〉

제12조 (체류자격의 구분)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97·6·28〕

제13조 (입국금지자의 명부비치등)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전산업무처리절차에 따라 그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입국금지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재외공관의 장, 사무소장·출장소장 및 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금지자에 대하여는 전산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작성된 입국금지자명부를 비치하

여야 한다.

제14조 (입국금지요청 및 해제) 법 제11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입국금지 및 입국금지해제의 요청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입국금지예정기간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입국심사)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입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여권등의 입국심사인영에는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4·1〉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삭제 〈95·12·1〉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입국하는 때에는 여권등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심사인을 찍고 별표 1중 체류자격 4. 사증면제(B-1)의 자격과 그 체류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관용사증면제협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한민국에 주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때에는 별표 1중 체류자격 1. 외교(A-1) 또는 2. 공무(A-2)의 자격과 그 체류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삭제 〈94·6·30〉

⑥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한 사증의 구분,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등이 잘못된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정정하여 그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⑦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등의 보관과 그 통지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발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대한민국의 선박등에 고용된 외국인승무원이 입국하는 경우 그 입국절차에 관하여는 제1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조건부입국허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입국을 허가하는 때에는 72시간의 범위내에서 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조건부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허가기간내에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조건부입국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추 97)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건부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그 허가기간내에 법 제12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국일은 조건부입국허가일로 한다. 〈개정 97·6·28〉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그 외국인의 조건부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건부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는 때에는 조건부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7조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귀속절차)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에게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때에는 그 외국인의 소지금·입국목적·체류비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보증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을 예치받은 때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인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뜻을 그 외국인에게 알려야 하며, 보증금의 예치 및 납부등 절차에 관하여는 정부가 보관하는 보관금의 취급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보증금은 그 외국인이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심사를 받은 때 또는 허가기간내에 법 제12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출국하는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조건부입국허가를 받은 자가 도주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금의 전부를, 기타 사유로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⑤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고귀속결정사유 및 국고귀속금액등을 기재한 보증금 국고귀속통지서를 그 외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절 외국인의 상륙

제18조 (승무원의 상륙허가) ①선박등의 장, 운수업자 또는 승무원 본인이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의 상륙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륙허가신청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2·1〉

②제1항의 경우에 다른 선박등에 옮겨타거나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다른 출입국항에 상륙하기 위하여 상륙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6·28〉

제18조의2 (복수승무원상륙허가)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한민국에 정기적으로 운항하거나 빈번히 출입항하는 선박등의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상륙을 허가하는 때에는 유효기간범위내에서 2회이상 상륙할 수 있는 복수승무원상륙의 허가를 할 수 있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유효기간 1년 및 상륙허가기간 15일이내의 복수승무원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수승무원상륙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④제18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4·6·30〕

제19조 (긴급상륙허가)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의 긴급상륙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륙허가신청서에 긴급상륙의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재난상륙허가)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등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상륙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륙허가신청서에 재난선박등의 명칭·재난장소 및 일시와 그 사유등을 기재한 재난보고서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 (난민임시상륙허가) ①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임시상륙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난민임시상륙허가신청서에 그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난민임시상륙허가서를 발급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한 시설등에 그 거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6·30〕

제21조 (상륙허가기간의 연장) ①법 제14조제1항, 법 제15조제1항, 법 제16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륙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기간내에 출국할 수 없는 때에는 상륙허가신청을 한 자가 그 연장사유를 기재한 상륙허가기간연장신청서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6·30〉

②제1항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1회에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각각 법 제14조제1항, 법 제15조제1항, 법 제16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4·6·30〉

(추 50)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제22조 (중지명령) 법무부장관이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활동중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활동중지명령서에 그 활동을 즉시 중지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강제퇴거등 조치를 한다는 뜻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직접 교부하거나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해당외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 함은 별표 1중 체류자격 9. 단기취업(C-4)·19. 교수(E-1) 내지 25. 특정활동(E-7) 및 25의2. 연수취업(E-8)의 체류자격을 말한다. 〈개정 95·12·1, 98·4·1〉

②별표 1중 체류자격 27. 거주(F-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별표 1중 체류자격 28의2. 재외동포(F-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99·11·27〉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2. 사행행위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제1항의 규정은 별표 1중 체류자격 30. 관광취업(H-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가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95·12·1〉

⑤제3항 각호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9·11·27〉

제24조 (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 ①외국인을 고용한 자 또는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6·28〉

②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때"라 함은 고용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고용주의 변경없이 근무장소를 변경 또는 추가한 때를 말한다. 〈개정 97·6·28〉

제24조의2 (산업연수업체등) ①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이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산업체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추 115)

1. 외국환관리법 제3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2. 삭제 〈2001·7·16〉
3. 대외무역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산업체로서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고시하는 산업체관련기관·단체(이하 "연수추천단체"라 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산업체

②제24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연수생의 도입규모가 결정된 경우 연수추천단체의 장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산업체별로 배정할 산업연수생의 규모를 정하여 이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4·1〕

제24조의3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 ①외국인 산업연수 및 연수취업 제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24조의4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24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에서 연수하고자 하는 산업연수생의 도입규모 결정과 모집·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2. 산업연수생으로서 제24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취업요건을 갖추어 취업이 허용된 자(이하 "연수취업자"라 한다)의 관리 및 연수취업요건등에 관한 중요사항
3.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이 외국인 산업연수 또는 연수취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법무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의 차관과 중소기업청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된 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⑥기타 위원회의 운영과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98·4·1〕

(추 135)

제24조의4 (산업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 ①제24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는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이하 "모집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산업연수생을 모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산업연수생으로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한민국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외국에서 이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대한민국에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자
3. 대한민국에서 6월이상 불법으로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
4. 불법취업의 목적으로 입국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외국인 제공자

③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산업연수생이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때에는 산업연수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산업연수생의 출입국기록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산업연수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산업연수생의 연수실태 및 연수를 마친 자의 출국여부등 산업연수생의 동향을 조사하여 매분기 1회이상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법무부장관은 제24조의5제1항 각호의 연수취업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연수취업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산업연수생에 대하여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기타 산업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98·4·1〕

제24조의5 (연수취업요건등) ①법 제1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추 97)

2. 제24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에서 산업연수생으로 2년간 연수하였을 것

3. 기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연수취업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취업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산업연수생으로 근무한 산업체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산업체의 장의 동의를 받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8·4·1〕

제24조의6 (연수취업자의 관리)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법 제1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연수취업자에 대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질병 기타 사고로 허가된 체류기간내에 출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재판계류중이거나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된 체류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천재지변등으로 선박등의 운항이 불가능하여 허가된 체류기간내에 출국할 수 없는 자

4.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24조의4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연수취업자의 관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기타 연수취업자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98·4·1〕

제24조의7 (연수추천단체등의 관리) ①법무부장관은 연수추천단체,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기관 및 제24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제도를 관리·운영하는 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산업연수 및 연수취업과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때

2. 기타 법 및 이 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때

②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4·1〕

(추 97)

제24조의8 삭제 〈99·2·26〉

제25조 (체류자격외활동허가)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등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여권등이 없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인을 찍는 것에 갈음하여 체류자격외활동허가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5·12·1〉

제26조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근무처변경·추가허가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6·30〉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등에 근무처변경·추가허가인을 찍고 변경 또는 추가된 근무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5·12·1〉

제27조 (활동범위의 제한) 법무부장관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에 대하여 거소 또는 활동범위를 제한하거나 준수사항을 정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그 이유를 기재한 활동범위등제한통지서를 직접 교부하거나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해당외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 (통지방법의 예외) ①제22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활동중지명령서 또는 활동범위등제한통지서를 교부함에 있어 본인이 없거나 기타 본인에게 직접 교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거인 또는 소속단체의 장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본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

(추 107)

하여는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하고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사본을 체류지의 시·군 또는 구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1, 97·6·28〉

③시·군 또는 구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5조 (체류지변경의 신고) ①체류지를 변경한 자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류지변경신고서를 신체류지의 시·군 또는 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97·6·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받은 시·군 또는 구의 장은 외국인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체류지변경신고필인을 찍어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신고인의 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하며, 법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지변경통보서를 변경전의 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6·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을 통보받은 전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신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송부하여야 하며, 신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체없이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97·6·28〉

제46조 (외국인등록증의 반납등)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그 외국인의 출국사실을 지체없이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12·1〉

②등록외국인이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는 시기와 방법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 등록외국인이 국민이 된 때에는 국민이 된 날부터 14일이내에 본인·배우자·부모 또는 제89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외국인등록증에 대한민국국적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부모, 제89조제1항에 규정된 자, 사망한 장소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그 사망을 안 날부터 14일

(추 86)

이내 또는 사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외국인등록증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 기타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등록외국인이 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증에 해당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의 출국사실을 통보받거나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그 체류지의 시·군 또는 구의 장에게 외국인등록말소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6·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군 또는 구의 장은 지체없이 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⑤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물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보관증을 교부하고, 이를 보관한 후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요청이 있는 때에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7조 (지문찍기) ①체류지관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문을 찍어야 할 외국인에 대하여는 지문을 찍기 전에 사진 1매를 제출하게 하여 외국인지문원지에 붙이고, 인적사항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문을 찍을 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개정 99·2·26〉

1.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인등록을 하는 때. 다만, 체류자격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으로 인하여 입국한 날부터 1년이상 체류하는 자는 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는 때, 체류자격부여로 인하여 1년이상 체류하는 자는 체류자격부여를 받는 때로 한다.

2. 외국인등록후 20세가 된 자로서 이미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20세가

(추 107)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6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인도하는 때에는 그의 인적사항 및 강제퇴거사유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송환의무가 있음을 기재한 송환지시서를 교부하고, 그 의무를 이행할 것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인도받은 뜻을 기재한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78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보호 및 보호해제)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명령서를 발부하여 이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해제하는 때에는 해제사유,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기재한 보호해제통보서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가 외국인보호소등에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보호해제사유등을 기재한 보호해제의뢰서를 외국인보호소등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해제한 자에 대하여는 주거의 제한 기타 조건의 이행여부등 그의 동향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5절 보호의 일시해제

제79조 (보호의 일시해제) 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일시해제청구서에 청구의 사유 및 보증금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이유 및 적용 법조등을 기재한 보호일시해제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보호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서에 보호해제기간, 보증금의 액수·납부일시 및 장소,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외에 보

(추 86)

증금을 납부한 경우 보호를 일시 해제하며,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보호의 일시 해제를 취소하고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보호를 일시 해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용의자가 외국인보호소등에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보호해제기간을 명시한 보호해제의뢰서를 외국인보호소등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예치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보증금은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보호일시해제를 취소하는 때에 보증금을 납부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7·6·28〉

제80조 (보호일시해제의 취소)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일시해제취소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그 취소서에 취소사유, 보호할 장소등을 기재하여 이를 보호일시해제청구인에게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 용의자를 다시 보호하여야 한다.

②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국고귀속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6절 출국권고등

제81조 (출국권고)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서 "그 위반정도가 가벼운 경우"라 함은 법 제17조 및 법 제20조의 규정을 최초로 위반한 자로서 그 위반기간이 10일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94·6·30〉

제6장 선박등의 검색

제82조 (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이 선박등에 승선하여 법 제69조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검색 및 심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4·6·30〉

1. 여권등의 유효여부
2. 승무원 또는 승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승선하였는지의 여부
3. 승선중인 승무원 또는 승객과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승무

(추 86)

원 및 승객명부의 명단이 일치하는지의 여부

4. 승무원 또는 승객중에 출입국이 금지된 자가 있는지의 여부
5. 입항선박의 경우 검색전에 승무원 또는 승객이 하선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6. 출항선박의 경우 검색시까지 귀선하지 아니한 승무원 또는 승객이 있는지의 여부
7. 승무원 또는 승객외의 자로서 승선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등에 무단출입한 자가 있는지의 여부
8.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출입국하고자 하는 자가 선박등에 숨어 있는지의 여부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승선검색으로 인하여 선박등의 출항이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박등의 출항에 앞서 여권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사전에 승무원 및 승객에 대한 자격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의2 (검색 및 심사선박등의 범위)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검색 및 심사를 받아야 할 선박등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12·1, 97·6·28〉

1. 국내항과 외국항간을 운항하는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선박등
2. 국내항과 원양구역간을 운항하는 대한민국 또는 외국선박(외국인 선원이 승선하지 아니한 조업선을 제외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등으로서 국내항에 기항한 후 국내항간을 운항하는 선박등

〔본조신설 94·6·30〕

제83조 (출입국항외의 장소에서의 검색 및 출입국심사) ①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출입항예정통보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3조제1항 단서 및 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
2. 법 제12조제2항 및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의 주무관청이 당해 선박등의 출입항을 허가

(추 86)

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색을 하여야 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검색 및 심사를 개시한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 각호의 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를 허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4조 (승선허가) ①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승선허가신청서에 승선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대리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선박등이 대한민국안의 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장소간을 항해하는 동안 그 선박등의 수리·청소·작업 기타 필요한 목적으로 그 선박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선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승선허가신청서에 승선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국심사장의 출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신청서에 출입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제85조 삭제 〈97·6·28〉

제86조 (출입항예정통보)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등의 출입항예정통보를 늦어도 당해 선박등의 출입항 24시간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규편선박등의 출입항의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7조 (보고의 의무) ①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검색을 받을 때에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심사를 받는 때에는 그때에 제출한다.

②출입국항에 출입항하는 항공기의 장 또는 항공기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운

(추 86)

수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항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출입항보고에 관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표준절차 및 권고사항부록에 정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8조 (송환의 의무)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법 제7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송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송환지시서를 발부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송환지시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환을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환지시서를 발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외국인을 송환할 때까지 그의 교통비·숙식비등의 비용을 부담하고 그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7장의2 난민의 인정등

제88조의2 (난민의 인정) ①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난민인정신청서에 난민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사진 2매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권 또는 선원수첩을 제시할 수 없는 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권 또는 선원수첩
2. 난민임시상륙허가를 받은 자는 난민임시상륙허가서
3.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중인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자는 외국인등록증

③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추 50)

④법무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난민인정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⑤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⑥법무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임을 인정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난민인정증명서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⑦법 제7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하지 아니한 때의 통지는 그 사유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 난민인정불허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6·30〕

제88조의3 (난민인정의 취소) 법 제7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취소한 때의 통지는 그 사유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 난민인정취소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6·30〕

제88조의4 (이의신청) ①법 제7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이 이유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난민인정증명서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6·30〕

(추 50)

제88조의5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①법 제7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난민여행증명서발급신청서에 난민인정증명서·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 및 사진 2매를 첨부하여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2·1〉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난민여행증명서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6·30〕

제88조의6 (난민여행증명서의 재발급) ①법무부장관은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1. 난민여행증명서가 분실되거나 없어진 경우
2. 난민여행증명서가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
3. 기타 법무부장관이 재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난민여행증명서재발급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2매를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체류지관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사유로 재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원래의 난민여행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하는 때에는 난민여행증명서발급대장에 재발급표시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체류지관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6·30〕

제88조의7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법 제76조의5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난민여행증명서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는 때에는 난민여행증명서에 유효기간연장허가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연장허가를

(추 107)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6·30〕

제88조의8 (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난민여행증명서반납명령서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그 외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6·30〕

제8장 보 칙

제89조 (허가신청등의 의무자) ①법 제79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 기타 동거인을 말한다.
②부 또는 모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자가 동항의 규정순위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90조 (사실조사)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있는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한 결과 신고 또는 등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6·30, 99·2·26〉

제91조 (외국인동향조사)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의 동향을 조사한 때에는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활동중지명령서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활동범위등제한통지서를 받은 자가 그 명령 또는 제한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계속 확인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외국인동향조사의 보고 및 기록유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2 (관계기관 소속공무원) ①법 제81조제1항에서 "관계기관 소속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고용 및 취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부 소속공무원
2. 산업연수생의 보호와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청 소속공무원
3. 기타 산업연수생의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

②관계기관 소속공무원이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의 동향을 조사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4·1〕

제92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 및 신분증)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때에는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3

(추 107)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증을 지녀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3조 (형사절차와의 관계)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 또는 출국명령서를 발부한 경우 그가 출국하여도 재판에 지장이 없다는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이 있고, 벌금상당액을 납부한 때에는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에 앞서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수 있고, 출국명령서를 발부받은 자를 출국하게 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벌금 또는 추징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 또는 출국명령서를 발부한 경우 그가 이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벌금 또는 추징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도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수 있고, 출국명령서를 발부받은 자를 출국하게 할 수 있다.

제94조 (각종허가등의 취소·변경)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등을 취소 또는 변경한 때에는 해당외국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뜻을 여권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입국허가서,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상륙허가서 및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되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서를 소지한 외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그 허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삭제 〈99·2·26〉

제94조의2 (의견진술절차) ①법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 또는 신청인의 소재불명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외국인 또는 신청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진술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또는 신청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2·26〕

제95조 (신원보증) ①법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예치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추 107)

에는 법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보증금을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증외국인의 체류·보호 및 출국비용으로 충당한다. 〈개정 97·6·28〉

③법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보증금은 신원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거나 그 보증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된 때에는 신원보증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7·6·28〉

제95조의2 (구상권행사절차)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90조제3항 또는 법 제9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상금액 산출근거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신원보증인 또는 불법고용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금납부통지를 받은 신원보증인 또는 불법고용주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6·28〕

제96조 (권한의 위임)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9조, 법 제20조, 법 제21조, 법 제23조 내지 제25조, 법 제30조제1항, 법 제89조, 법 제90조 및 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4·6·30, 97·6·28〉

②법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한한다) 또는 군수는 법 제34조제2항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4·12·31〉

제97조 (남·북한왕래등의 출입국심사절차) ①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출입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법 제9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심사를 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하거나 남·북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통일원장관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8조 (출입국항) ①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국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94·12·23, 97·6·28〉

1.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국제공항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입장소
3. 개항질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항
4. 오산군용비행장·대구군용비행장·광주군용비행장·군산군용비행장·청주군용비행장 및 서울공항

(추 107)

②도심공항터미널은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출입국항시설의 일부로 본다.

제99조 (임시납부금등의 보관)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임시납부금·보관물 및 제출물등의 보관 또는 반환절차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00조 (서식의 제정)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각종 신청서·신고서등의 서식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01조 (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장 과태료

제102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6·30〉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진술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지정된 날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7·6·28〉

③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당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위반기간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개정 97·6·28〉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0장 고발과 통고처분

제1절 고 발

제103조 (사건처분결과통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그 처분결과를 인계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2절 통고처분

제104조 (통고처분의 절차)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때에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

서와 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서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범칙금액·위반사실·적용법조·납부장소·납부기간 및 통고처분연월일을 기재하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조사결과 위반사실이 여권 또는 서류등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고 처분에 다툼이 없는 출입국사범에 대하여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용의사실인지보고서,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의자신문조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서 및 통고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의 작성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5조 (범칙금의 납부절차등) ①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받은 자는 그 범칙금을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 또는 대리점이나 우체국(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영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통고서를 발행한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06조 (통고서의 송달)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서의 송달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07조 (범칙금의 임시납부) ①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임시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임시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의 임시납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범칙금임시보관대장에 기재하고 임시납부금수령증을 그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임시납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부 칙

(추 6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출입국항지정의건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체류자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사증·사증발급인정서·외국인입국허가서등에 기재된 체류자격은 그 체류자격을 정정할 때까지 이 영에 의한 체류자격으로 보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은 이 영 시행후 처음으로 각종 체류관련 허가를 받거나 거류신고증을 외국인등록증으로 갱신하는 때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정정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체류기간은 이 영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출국지시서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출국지시서는 그 출국기한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외국인등록번호부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거류신고를 한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류신고증을 외국인등록증으로 갱신하는 때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부여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거류외국인기록표는 이 영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구·읍·면의 장이 작성·비치한 외국인등록표는 거류신고증을 외국인등록증으로 갱신하는 경우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새로 작성하여 시·군 또는 구의 장에게 송부하는 때에 교체하여야 한다.

제6조 (보호의뢰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된 수용의뢰서, 수용통지서, 수용기간연장통보서, 수용해제의뢰서, 수용해제통보서, 수용일시해제청구서 및 수용일시해제청구에대한결정서는 각각 이 영에 의한 보호의뢰서, 보호통지서, 보호기간연장통보서, 보호해제의뢰서, 보호해제통보서, 보호일시해제청구서 및 보호일시해제청구에대한결정서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인감증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중 "거류지변경신고"를 "체류지변경신고"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중 "거류신고증"을 "외국인등록증"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단서중 "거류지변경"을 "체류지변경"으로 한다.

②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출입국항지정의건 제1조제1호"를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③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거류신고로서"를 "외국인등록으로써"로 한다.

(추 68)

④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한다.

제12조 본문중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류신고를"을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로 한다.

제12조 단서, 제13조제1항·제4항 및 제14조제1항중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 외국인"을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하고, 동항제3호중 "거류지 또는 주소"를 "체류지"로 한다.

⑤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외국인수용소"를 "외국인보호소"로 한다.

제15조제5항제1호중 "거류"를 "체류"로, 동항제3호중 "출국권고"를 "출국권고, 출국명령"으로, 동항제5호중 "수용명령"을 "보호명령"으로 하고, 동조제6항제4호중 "거류외국인"을 "체류외국인"으로 한다.

제9장의 제목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수용소"를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중 "거류신고·지문찍기 및 등록"을 "등록 및 지문찍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외국인수용소"를 "외국인보호소"로, "수용명령"을 "보호명령"으로, "외국인에 대한 수용 및 보호"를 "외국인의 보호"로 한다.

제71조, 제72조제1항 및 제74조중 "외국인수용소"를 각각 "외국인보호소"로 한다.

제72조제1항중 "외국인수용소장"을 "외국인보호소장"으로 한다.

제73조제2항중 "서울외국인수용소"를 "서울외국인보호소"로 한다.

제75조제1항제6호중 "거류신고 및 등록"을 "등록"으로, 동항제10호중 "수용외국인"을 "보호외국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5호중 "수용"을 "보호"로, 동항제7호중 "수용외국인"을 "보호외국인"으로, 동항제8호중 "수용자"를 "보호자"로 하며, 동조제8항제1호중 "수용자의 보호·경비"를 "보호자의 경비"로, 동항제2호중 "수용자"를 "보호자"로, "수용명령서"를 "보호명령서"로, 동항제4호중 "수용자"를 "보호자"로 하고, 동조제9항제1호중 "수용소"를 "보호소"로, 동항제2호중 "수용자"를 "보호자"로 하며, 동조제10항제5호중 "거류외국인기록보관철"을 "체류외국인기록보관철"로 한다.

제76조의 제목 "(외국인수용장)"을 "(외국인보호실)"로 하고, 동조제1항중 "수용"을 "보호"로, "외국인수용장"을 "외국인보호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외국인수용장"을 "외국인보호실"로 한다.

〔별표 12〕의 제목중 "외국인수용소"를 "외국인보호소"로 하고, 동표중 명칭란의

(추 68)

"서울외국인수용소"를 "서울외국인보호소"로 한다.

〔별표 13〕의 제목중 "외국인수용소"를 "외국인보호소"로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외의 다른 법령에서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이나 그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중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94·6·30 대령14301〉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체류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사증입국(B-2)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관광통과(B-2)의 자격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4·12·31 대령14486〉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12·1 대령148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체류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특정직업(E-7)의 자격은 그 체류자격을 정정할 때까지 이 영에 의한 특정활동(E-7)의 자격으로 본다.

부 칙 〈97·6·28 대령15417〉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체류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상사주재(D-7)의 체류자격은 이 영에 의한 주재(D-7)의 체류자격으로 본다.

부 칙 〈98·4·1 대령1576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체류자격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입국한 산업연수생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체류기간연장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전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자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9·2·26 대령16120〉

이 영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3·31 대령162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99·11·27 대령16603〉

이 영은 199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7·16 대령1730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추 135)

〔별표 1〕〈개정 99·11·27〉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관련)

체류자격 (기 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1. 외 교 (A-1)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자와 그 가족
2. 공 무 (A-2)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와 그 가족
3. 협 정 (A-3)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가족
4. 사증면제 (B-1)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한 활동을 하려는 자
5. 관광통과 (B-2)	관광·통과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없이 입국하려는 자
6. 일시취재 (C-1)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7. 단기상용 (C-2)	시장조사, 업무연락, 견학, 상담, 계약, 수출입 기계등의 설치·보수·검수·운용요령습득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8. 단기종합 (C-3)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참석, 학술자료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외〕
9. 단기취업 (C-4)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10. 문화예술 (D-1)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자 포함〕
11. 유 학 (D-2)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12. 산업연수 (D-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13. 일반연수 (D-4)	유학(D-2)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외의 교육기관 또는 단체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연수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산업연수(D-3)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추 115)

14. 취 재 (D-5)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의 파견 또는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15. 종 교 (D-6)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대한민국에 있는 지부 또는 유관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와 대한민국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한 종교활동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16. 주 재 (D-7)	외국의 공공기관·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등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고자 하는 자[기업투자(D-8)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17. 기업투자 (D-8)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수전문인력으로 경영이나 관리 및 생산·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자[투자자가 경영자 또는 기술자로 그 기업에 파견하는 자를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하는 자는 제외]
18. 무역경영 (D-9)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경영하거나 무역 기타 영리사업을 위한 활동을 하려는 자로서 필수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수입기계등의 설치, 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제작감독등을 위하여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하는 자와 기업투자(D-8)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19. 교 수 (E-1)	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20. 회화지도 (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21. 연 구 (E-3)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교수(E-1)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22. 기술지도 (E-4)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종사하고자 하는 자

(추 86)

23. 전문직업 (E-5)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기타 국가공인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교수(E-1)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24. 예술흥행 (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기타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25. 특정활동 (E-7)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25의2. 연수취업(E-8)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연수한 자로서 기술자격검정등 연수취업요건을 갖추고 국내 기업체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자
26. 방문동거 (F-1)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자〔주한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외교(A-1) 내지 협정(A-3)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거주(F-2)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처 또는 자로서 그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자, 국민의 배우자 또는 자로서 거주(F-2)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내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
27. 거 주 (F-2)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자, 그의 배우자 및 출생자녀와 국민의 배우자〔거주(F-2)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출생자녀로서 미성년인 자와 국민의 처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실이 없는 자 및 거주(F-2)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처가 된 자로서 일정기간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한 자외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헌을 한 사실이 있거나 기타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
28. 동 반 (F-3)	문화예술(D-1) 내지 특정활동(E-7)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20세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산업연수(D-3)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28의2. 재외동포(F-4)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29. 기 타 (G-1)	외교(A-1) 내지 재외동포(F-4) 및 관광취업(H-1)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0. 관광취업 (H-1)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협정등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국내법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자는 제외〕

(추 115)

[별표 2] 〈개정 97·6·28〉

과태료부과기준표(제102조제3항관련)

해당법조문	범칙행위의 내용	위반기간등	과태료기준액
1. 법 제100조제1항	법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의 위반	3월미만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
		3월이상 6월미만	20만원이상 100만원이하
		6월이상 12월미만	30만원이상 150만원이하
		1년이상	40만원이상 200만원이하
2. 법 제100조제2항	법 제35조(등록사항변경의 신고)의 위반, 법 제37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등)의 위반, 법 제79조(허가신청등의 의무자)의 위반, 법 제81조(출입국관리공무원의 외국인 동향조사)제2항의 위반		10만원이상 100만원이하
3. 법 제100조제3항 제1호	법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제2항의 위반	3월미만	5만원이상 20만원이하
		3월이상 6월미만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6월이상 12월미만	15만원이상 40만원이하
		1년이상	20만원이상 50만원이하
4. 법 제100조제3항 제2호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신청, 신고에 있어 허위사실 기재 또는 보고		5만원이상 50만원이하

(추 86)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3·4·1 법무부령제367호
개정 1994·7·20 법무부령제386호
1995·7·10 법무부령제408호(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1995·12·1 법무부령제417호
1997·7·1 법무부령제448호
1998·4·1 법무부령제456호
1999·2·27 법무부령제471호
1999·12·2 법무부령제489호

제1장 국민의 출입국

제1조 (출입국심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에 대한 출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여권 또는 선원수첩(이하 "여권등"이라 한다)명의인의 본인여부, 여권등과 사증의 위조·변조여부, 출입국규제여부 기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 사항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조 (출입국신고서의 작성등) ①영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신고서는 공용란을 제외하고는 출입국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7·20〉

②출입국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국신고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사항별로 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제출한 출입국신고서에 잘못 기재된 것이나 기타 미비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고, 공용란은 자신이 직접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4·7·20〉

제3조 (출입국신고서의 관리) ①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신고서를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사무소장(이하 "전산망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②전산망관리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신고서를 전산처리하고 이를 마이크로필름등에 수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7·7·1〉

③전산망관리사무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처리된 결과를 출입국자명부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승무원의 등록등) ①영 제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원(부정기적

(추 115)

으로 운항하는 선박등의 승무원을 제외한다)이 승무원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권등 및 승무원등록신고서에 사진 1매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7·20, 97·7·1〉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등록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승무원의 자격심사를 한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승무원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승무원등록증을 그 승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7·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승무원이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증명서류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국외여행관계서류의 송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한 국외여행관계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출국심사인을 찍어 이를 지체없이 발급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 (행선국사증이 없는 자등의 출국)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사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행선국 또는 경유국으로부터 입국이 허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얻은 자인 경우
2. 국제회의 또는 국제경기에 참가하는 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입국사증을 받지 못하였으나 주무관청의 추천 또는 확인을 받은 자인 경우
3.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등을 가지고 있는 자인 경우
4. 행선국 또는 경유국의 출입국관리제도에 의하여 입국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자인 경우
5. 대한민국에 공관을 두고 있지 아니한 외국을 행선국으로 하는 자가 그 입국사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무사증입국을 허용하는 국가를 경유하고자 하는 자인 경우
6. 기타 출국목적이나 출국후 행선국 또는 경유국에서의 체류사실등에 비추어 사증없이도 입국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인 경우

제7조 (여권등의 보관 및 반환)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등을 보관할 때에는 보관일자·보관사유등을 보관물대장에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6조제2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등을 반환 또는 송부하는 때에는 그 뜻을 보관물대장에 기재하고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거나 송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7·1〉

(추 86)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등을 반환하는 때에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제8조 (사증등 발급의 승인) ①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이하 "미수교국가"라 한다)나 법무부장관이 외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이하 "특정국가"라 한다)의 국민 및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에 거주하는 무국적자에 대하여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급권한이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제연합기구 또는 각국 정부간의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자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체류기간 90일이하의 외국인입국허가서 또는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사증발급승인신청서에 입국의 적부에 관한 의견을 붙여 외무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사증발급승인요청서에 의하여 전문으로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상당의 전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요청이 있는 때에는 입국의 적부를 심사한 후에 그 승인여부와 승인하는 경우 그 사증의 단수 또는 복수의 구분,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각각 명시하여 이를 외무부장관을 거쳐 해당재외공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체류자격은 문자와 기호를 병기하고, 근무처, 연수장소, 학교명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4·7·20〉

④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승인을 요청한 때에는 그 승인통지를 받기 전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사증발급권한의 위임)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94·7·20, 95·12·1, 97·7·1, 99·12·2〉

1.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6. 일시취재(C-1) 내지 9. 단기취업(C-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이하의 단수사증. 이 경우에는 입국후의 체류자격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의2.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1. 유학(D-2) 및 28의2. 재외동포(F-4)의 자격에

(추 115)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2년이하의 단수사증

2.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7.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그 동반가족〔체류자격 28. 동반(F-3)〕에 대한 체류기간 1년이하의 단수사증
3. 복수사증발급협정등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6. 일시취재(C-1) 내지 8. 단기종합(C-3)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이하의 복수사증

3의2.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30. 관광취업(H-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이하의 사증

4. 기타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0. 문화예술(D-1), 12. 산업연수(D-3) 내지 16. 주재(D-7), 18. 무역경영(D-9) 내지 28. 동반(F-3) 및 29. 기타(G-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중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이하의 사증

제10조 (사증발급의 승인)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에 관한 절차는 제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94·7·20, 99·12·2〉

1. 국민에 대하여 사증발급을 억제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
2. 국가보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반국가단체에 소속하고 있는 자
3. 법무부장관이 그 사증발급에 관하여 특별히 승인을 얻어야만 사증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증발급규제자
4.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5. 기타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따로 지정한 국가의 국민 또는 단체에 소속하고 있는 자

제11조 (단체사증의 발급) ①재외공관의 장은 일시 방문하는 외교사절단, 국제행사참가단체, 수학여행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여행객 단체로서 그 구성원의 수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인원을 초과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기타의 교통기관(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단체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94·7·20, 99·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양국간 협정등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단체사증발급신청서에 구성원 전원의 여권등과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2·27〉

③재외공관의 장이 단체사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의 여권등에 사증인을 찍고 그 사증의 왼쪽 아랫부분에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 별첨"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신청

자의 여권에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증의 아랫부분에 단체의 일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2·27〉

④재외공관의 장이 단체사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에 재외공관의 확인인을 찍어 그 사증과 함께 교부하고 입국할 때에 그 대표자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94·7·20, 99·2·27〉

⑤출입국관리공무원이 단체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단체에 대하여 입국심사를 마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의 왼쪽 아랫부분에 입국심사인을 찍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9·2·27〉

⑥출입국관리공무원이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에 기재된 자에 대하여 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그 구성원의 여권에 각각 입국심사인을 찍고 그 대표자의 사증에 부여된 것과 같은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2·27〉

⑦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단체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단체의 구성원이 출국하는 때에는 구성원의 여권에 각각 출국심사인을 찍는 외에 교부한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을 회수하여 그 오른쪽 아랫부분에 출국심사인을 찍어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국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가 출국하는 때에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99·2·27〉

제12조 (사증의 유효기간등) ①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월로 한다. 〈개정 99·2·27〉

②복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으로 한다. 〈신설 99·2·27〉

1.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 외교(A-1) 내지 3. 협정(A-3)에 해당하는 자의 복수사증은 3년이내
2. 복수사증발급협정등에 의하여 발급된 복수사증은 협정상의 기간
3. 상호주의 기타 국가이익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복수사증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③사증발급신청인은 사증발급신청일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통보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사증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증발급에 있어서는 새로이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협정에 의한 사증발급) ①재외공관의 장은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협정이나 합의각서등에 사증발급에 관하여 이 규칙과 다른 규정이 있는 때 또는 법무부장관이 호혜원칙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경우에 사증발급대상자가 복수사증발급협정등이 체

(추 109)

결된 국가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단수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 (공무수행등을 위한 입국허가) ①영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을 허가하는 때에는 여권등에 입국심사인을 찍고,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 외교(A-1) 내지 3. 협정(A-3)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격과 그 체류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4·7·20〉

③영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체류기간 90일의 범위내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없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4·7·20, 95·12·1〉

1. 영 별표 1중 7. 단기상용(C-2) 또는 8. 단기종합(C-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2. 영 별표 1중 26. 방문동거(F-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연령이 17세미만이거나 61세이상인 자
3. 영 별표 1중 28. 동반(F-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연령이 17세미만인 자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국허가신청서에 유효한 사증을 가지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유서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를 받아 신청인의 진술내용이나 제출서류의 진위여부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94·7·20〉

⑤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허가를 하는 때에는 이를 외국인 입국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여권등에 입국심사인을 찍고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4·7·20〉

⑥영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기간 90일의 범위내에서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97·7·1〉

⑦제5항의 규정은 제6항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입국허가대장의 기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7·7·1〉

제15조 (관광등을 위한 입국허가) ①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영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5·12·1〉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허가를 하는 때에는 여권등에 입국심사인을 찍고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5. 관광통과(B-2)의 자격과 30일의 범

(추 109)

위내에서의 체류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국제관례,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등을 고려하여 체류기간등을 따로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94·7·20, 95·12·1, 99·2·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체류자격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범위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9·2·27〉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신설 99·2·27〉

제16조 (사무소장등의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 ①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의 국민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한 사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거나 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출입국항에 주재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에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기재한 후 발급기관란에 출입국관리사무소인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인을 찍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류자격 및 근무처의 기재방법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등)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7·20, 95·12·1, 98·4·1〉

1.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의 국민
2.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0. 문화예술(D-1) 내지 25. 특정활동(E-7)·26. 방문동거(F-1)·28. 동반(F-3) 및 28의2. 재외동포(F-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3.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주소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라 한다)에

(추 109)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소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붙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피초청인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초청인의 초청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3. 기타 그 초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④법무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사증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이를 주소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초청인에게 교부한다.

⑤주소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초청인이 동시에 신청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사증발급인정서에 사증발급대상자 명단을 첨부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95·12·1〉

제17조의2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발급) ①재외공관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증발급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외국인의 사증발급인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12·1〕

제18조 (사증발급인정서의 효력)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하고, 한번의 사증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94·7·20〉

제18조의2 (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나 상호주의원칙 또는 국가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7·1〕

제19조 (외국인의 입국심사등)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이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확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외국인승무원이 대한민국안에 정박중인 선박등에서 하선하여 승객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외국인출입국신고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광선박등의 단체승객에 대하여는 승객명부로서 출입국신고서

(추 86)

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7·20〉

제20조 (사증내용의 정정등)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이 영 제15조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내용을 정정하는 때에는 삭제된 문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남겨두고, 사증 아랫부분에 정정사실을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여권이 재발급된 경우에는 종전의 여권으로 출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새로운 여권에 입국사실확인인을 찍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1조 (주한미군지위협정 해당자의 입국)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 4 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 영 제15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신분증명서등에 의하여 그의 신분을 확인하고 여권등에 주한미군지위협정해당자인을 찍어야 한다. 영 제29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부여인을 찍을 때 또는 영 제30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변경허가인을 찍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 (조건부입국허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3조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입국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외국인으로부터 법 제12조제 3 항제 1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신설 94·7·20〉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3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입국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이를 조건부입국허가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영 제16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9조제 1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 절 외국인의 상륙

제23조 (미수교국가국민에 대한 상륙허가)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미수교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상륙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출입국항에 주재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륙허가에 있어서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당해 출입국항에 주재하는 관계기관 공무원과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 51)

2. 삭제 〈94·7·20〉

3. 기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미수교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상륙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출입국항에 주재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에게 통보하는 외에 수시로 상륙자의 동향을 파악하여 이를 외국인동향조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 (상륙허가대상자의 행동지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륙을 허가하는 때에는 관할구역(출장소장의 경우는 소속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을 행동지역으로 정한다. 다만,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륙을 허가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구역외의 지역을 행동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4·7·20, 97·7·1〉

제24조의2 (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등)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임시상륙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이를 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영 제20조의2제3항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시설등"이라 함은 난민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본조신설 94·7·20〕

제24조의3 (각종 상륙허가서 회수등)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륙허가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상륙허가서는 발급받은 외국인이 최종 출입국항에서 출국하는 때에 이를 회수하고, 영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수승무원상륙허가서는 발급받은 외국인이 최종출국하는 때에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97·7·1〉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륙허가서를 회수한 때에는 상륙허가서를 발급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2·27〉

〔본조신설 94·7·20〕

제25조 (상륙허가자의 출국등 통보)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상륙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거나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륙을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출국예정항 또는 상륙예정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7·1〉

(추 10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상륙허가를 받은 자가 상륙허가기간만료일까지 출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륙을 허가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7·1〉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제26조 (활동중지대상자등 보고)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된 자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출장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때에는 관할사무소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사후에 사무소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중지명령서의 교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활동중지명령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동중지명령서를 교부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소속단체의 장 또는 신원보증인을 입회하게 하여 중지명령을 지키도록 촉구할 수 있다.

제27조의2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 ①영 제23조제3항제1호의 "단순노무행위"라 함은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에 의한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를 말한다.

②영 제23조제3항제2호의 "사행행위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2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등에 취업하는 행위
2. 식품위생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8호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등에 취업하는 행위

③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2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는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의 출입국및체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2〕

제28조 (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사실조사등)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에 대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7·7·1〉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를 고용·연수외국인신고처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97·7·1〉

(추 115)

제29조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의 한계등)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새로이 종사하고자 하는 활동이 주된 활동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 (활동범위등제한통지서의 송부)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활동범위등 제한통지서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 (중지명령을 받은 자등에 관한 보고)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활동중지명령서 또는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활동범위등제한통지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동향을 조사하고 결과를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그 명령 또는 제한조치를 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해제를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제32조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자가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때에는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일의 범위내에서 그 체류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한 자가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등을 목적으로 일시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로 할 수 있다. 〈개정 94·7·20, 99·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신설 94·7·20〉

제33조 (출국기한의 유예)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은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를 받은 자나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자가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기한을 유예받고자 하는 자는 출국기한유예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그 출국기한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할 선박등이 없는 때에는 5일의 범위내에서, 기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제34조 (각종 허가등의 신청 및 수령) ①영 제25조, 영 제26조, 영 제29조 내지 제31조,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허가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신청과 수령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신청 및 수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

(추 115)

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97·7·1〕

제35조 (각종 허가등의 대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5조, 영 제26조, 영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7·7·1〉

제36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 발급대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국적·성명·출국기한등을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7조 (체류기간연장등의 허가기간) 제18조의2의 규정은 영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부여 또는 체류자격변경등 허가를 하는 경우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4·7·20, 97·7·1〉

제38조 (체류자격부여등에 따른 출국예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여야 한다는 뜻을 기재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권등에 출국예고인을 찍음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5·12·1〉

제 2 절 외국인의 출국

제39조 (외국인의 출국심사) ①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출국심사에 관하여는 제 1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외국인이 입국하여 대한민국안에 정박중인 선박등의 승무원으로 승선하는 때에는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외국인출입국신고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 2 조 및 제 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광선박등의 단체승객에 대하여는 승객명부로서 출입국신고서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7·20〉

④영 제35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승무원이 출국하는 경우 승무원등록에 관하여는 제 4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권고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명령서를 교부받은 자와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출국권고서·출국명령서 또는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를 회

(추 86)

수하여 이를 발급한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0조 (복수재입국허가의 기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수재입국 허가의 기준은 상호주의원칙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41조 (재입국허가기간) ①재입국허가의 최장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 단수재입국허가 : 1년
2. 복수재입국허가 : 2년

②영 별표 1중 체류자격 27. 거주(F-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학 또는 취업목적으로 재입국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단수재입국 허가의 최장기간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제42조 (재입국허가서의 회수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 이를 발급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단수재입국허가서의 명의인이 입국하는 때
2. 복수재입국허가서의 명의인이 최종 입국하는 때

〔전문개정 94·7·20〕

제43조 (재외공관장의 재입국허가 확인) ①재외공관의 장은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중인 자가 여권분실등의 사유로 재입국허가의 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지체없이 외무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사실조회를 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를 받은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재입국허가일자·재입국허가기간등을 외무부장관을 거쳐 해당 재외공관의 장에게 회보한다.

③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보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의 새 여권등에 재입국허가확인인을 찍고 서명하여야 한다.

④재외공관의 장은 영 제38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자가 외국에서 이를 분실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확인을 거쳐 재입국허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4조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 승인등) ①재외공관의 장은 영 제39조제5항 규

(추 51)

정에 의한 권한 위임이 되지 아니한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승인요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의견을 붙여 외무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에 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승인여부와 승인하는 경우 그 허가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외무부장관을 거쳐 해당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한다.

제4장 외국인의 등록등

제1절 외국인의 등록

제45조 (외국인등록의 예외) ①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외교·산업·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②법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이를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제46조 (외국인등록번호의 부여절차) ①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등록연도·등록기관 및 일련번호를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를 부여하여 사용한다.

②외국인등록번호는 1인 1번호로 하여야 하며, 이미 사용한 번호는 이를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외국인등록번호의 구성체계는 별표 2와 같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년월일은 연월일을 각 2자리수로 표시하고, 성별 구분번호는 별표 3의 성별구분에 따른 출생연대별로 남녀별 해당 1자리 수로 표시하며, 등록연도번호는 등록연도의 끝 2자리수로 표시하고, 등록 기관번호는 별

(추 35)

표 4의 등록기관별로 구분한 2자리수로 표시하며, 일련번호는 2자리수로 표시하되, 그 번호가 2자리수가 아닌 경우에만 2자리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이고, 생년월일·성별구분번호·등록연도번호 및 등록기관번호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등록번호의 부여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⑤삭제 〈97·7·1〉

제47조 (외국인등록사항) 법 제3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94·7·20〉

1. 입국일자 및 입국항
2. 사증에 관한 사항
3. 동반자에 관한 사항
4.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5. 사업자 등록번호

제48조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①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분실되거나 없어진 사실의 신고필증 또는 재발급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2·1〉

②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종전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외국인등록증발급대장의 비고란에 재발급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5·12·1〉

제49조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 ①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의 작성을 전산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②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별로 등록외국인기록보관철을 만들어 등록외국인기록표와 각종 허가 또는 통고처분관련서류등을 합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0조 (지문찍기)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문찍기에 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51조 (외국인지문원지의 기재요령) ①출입국관리공무원등 관계공무원이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지문원지중 직접 기재할 난과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1. 국적이 없는 자의 국적란에는 출생지를 기재한다.
2. 영문자로 성명을 표기하는 자의 성명란에는 먼저 성을 대문자로 쓰고, 다음

에 이름을 쓰며, 영문자 및 한자로 함께 표기하는 자의 성명란에는 먼저 영문자로 표기하고, 그 다음에 한자로 표기한다.

3. 성별란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한다.
4. 생년월일이 불명인 자의 생년월일란에는 추정연령을 기재한다.
5. 본적란에는 본국의 주소를 기재한다.
6. 대한민국안의 주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의 주소란에는 최근의 거소를 기재한다.

②외국인지문원지중 다음의 난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적·성명·성별·생년월일·본적 및 대한민국안의 주소란
2. 신장·체격·혈액형 및 머리색깔란
3. 특징란(신체에 현저하게 나타나는 특징의 명칭 및 위치를 기재하는 난)
4. 작성란

③외국인지문원지중 분류, 지문수배, 수형사항,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처분사항, 대조경력과 접수란은 경찰청소속 관계공무원이 기재한다.

제52조 (외국인지문원지의 송부등)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외국인지문원지의 작성을 마친 때에는 외국인지문원지작성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지문채취자통보서에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외국인지문원지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 절 (제53조 및 제54조) 삭제 〈99·2·27〉

제 5 장 강제퇴거등

제 1 절 조 사

제54조의2 (사건부의 등재등)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용의사실인지보고서 또는 영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용의사실인지보고서 또는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에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건번호는 사건마다 접수연도와 접수순서에 따라 연도표시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본조신설 95·12·1〕

(추 109)

제55조 (출석요구의 승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의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 (제출물목록의 교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물목록을 작성한 때에는 제출물목록 부본 1부를 제출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7조 (제출물의 보관 및 반환절차)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0조 및 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제출물보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제출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그 반환사실을 제출물보관대장에 기재하고 수령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물목록 부본을 교부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 그 정본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2절 보호명령서의 발부등

제58조 (보호명령서등 발부대장)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보호명령서발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보호명령서발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7·7·1〉

1. 영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한 때
2.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통지서를 송부한 때
3.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사항변경통지서를 송부한 때
4. 보호를 해제(보호의 일시해제의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보호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긴급보호서발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9조 (보호장소의 지정) 법 제52조제2항 및 법 제63조제1항에서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라 함은 구치소·교도소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60조 (보호사항변경통지서의 송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통지를 한 후 보호장소를 변경하거나 영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추 109)

여 보호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법 제54조에 규정된 자에게 보호사항변경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1조 (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보호명령서를 발부하거나 영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보호기간연장허가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7·7·1〉

제3절 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

제62조 (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7·7·1〉

제63조 (강제퇴거명령서의 기재요령)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명령서에는 적용법조·퇴거이유·송환국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절 출국권고서등의 발부

제64조 (출국권고서의 발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권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7·7·1〉

제65조 (출국명령기한등) ①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그 발부일부터 14일의 범위내에서 출국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7·7·1〉

제6장 선박등의 검색

제65조의2 (선박등의 검색과 서류심사) ①법 제6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의 검색을 서류심사로 갈음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폭풍등으로 인하여 승선에 위험이 따르는 경우
2. 선박등이 국내항에 기항한 후 다른 국내항간을 출입항하는 경우
3. 기타 선박등에 승선하여 검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삭제 〈99·2·27〉

〔본조신설 94·7·20〕

제66조 (승선허가서등)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허가 또는 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선·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출입국심사장출입허

(추 109)

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이를 승선·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94·7·20〉

제67조 (출입항통보 및 보고) ①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선박등이 자연의 재해·기기의 고장·피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항예정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장소에 입항한 때에는 그 선박등이 입항한 즉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입항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항예정통보서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항보고서를 전산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전자문서를 사용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99·2·27〉

제6장의2 난민의 인정등

제1절 난민인정협의회의 구성·운영등

제67조의2 (난민인정협의회) ①난민의 인정 및 이의신청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난민인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의 법무실장, 출입국관리국장, 외무부의 국제연합국장과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본조신설 94·7·20〕

제67조의3 (협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난민의 인정 및 보호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난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무부장관이 난민업무에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회부하는 사항

〔본조신설 94·7·20〕

제67조의4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 소집한다.

⑤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4·7·20〕

제67조의5 (의견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협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94·7·20〕

제67조의6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난민인정업무담당과의 과장으로 한다. 〈개정 95·12·1〉

〔본조신설 94·7·20〕

제67조의7 (실무협의회) ①협의회의 협의사항중 위원장이 사전검토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개정 95·12·1〉

②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의 출입국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 및 관계기관 소속공무원과 관계전문가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95·12·1〉

〔본조신설 94·7·20〕

제67조의8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94·7·20〕

제 2 절 난민인정증명서 발급등

제67조의9 (난민인정증명서발급대장)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76조의2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이를 난민인정증명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7·20〕

제67조의10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88조의5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외국인이 법 제76조의3제 1 항 또는 법 제76조의5제 1 항 단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7·20〕

제67조의11 (난민여행증명서의 분실 재발급) 영 제88조의6제 1 항제 1 호에 해당하는 자가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분실되었거나 없어진 사실의 신고필증 또는 재발급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체류지관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추 68)

〔본조신설 94·7·20〕

제67조의12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연장) 법무부장관은 영 제88조의7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연장허가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한다.

〔본조신설 94·7·20〕

제67조의13 (난민의 인정등에 관한 사실조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 또는 난민인정의 취소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7·20〕

제7장 보 칙

제68조 (보증금의 국고귀속보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13조제3항 또는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의 국고귀속을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 (동향조사 보고등)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동향조사의 결과를 외국인동향조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외국인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2. 외국인과 관련된 공안사범에 관한 사항
3. 신문, 통신, 방송등 대중전달매개체에 의한 외국인 및 외국단체와 관련된 주요 정보사항
4. 출입국관리의 기본정책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외국인의 체류관리에 필요한 주요 국내·외 정보사항
6.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외국인의 범법사실에 관한 사항
7. 체류외국인의 특이활동 사항 및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향조사의 결과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외국인 동향조사와 관련하여 외국인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한 기록을 기재한 외국인관련단체 동향기록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0조 (출입국사범의 신고사실확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추 68)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1조 (사증등 발급에 관한 수수료) ①사증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수수료액을 말한다)는 다음과 같다. 〈개정 98·4·1〉

1. 단수사증

   체류기간 90일이하 :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화"라 한다) 30불상당의 금액

   체류기간 91일이상 : 미화 50불상당의 금액

2. 복수사증 : 미화 80불상당의 금액

②재외공관의 장이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의 수수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으로 한다.

③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를 주재국의 통화로 징수하는 때에는 환시세의 변동을 감안하여 그 기준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재국의 공관이 2이상인 경우에는 대사가 이를 정한다.

④재외공관의 장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원칙에 비추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달리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2조 (각종 허가등에 관한 수수료) ①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허가 및 출입국사실증명발급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4·1〉

1.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하는 입국허가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의 발급. 다만, 영 제1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8만원으로 한다. 4만원
2. 체류자격외활동허가 6만원
3.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 6만원
4. 체류자격부여. 다만,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27. 거주(F-2)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는 2만원으로 한다. 4만원
5. 체류자격변경허가 5만원
6. 체류기간 연장허가. 다만,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27. 거주(F-2)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는 2만원으로 한다. 3만원
7. 단수재입국허가 3만원
8. 복수재입국허가 5만원

(추 97)

9.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미화 20불상당의 금액
10. 외국인등록증발급 및 재발급 1만원
1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1통당) 1천원
12. 외국인등록사실증명(1통당) 1천원
13. 난민여행증명서발급 및 재발급 1만원
14.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 미화 5불상당의 금액

②국민이 법 제3조제2항 단서 및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로 출국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6만원으로 한다. 〈신설 97·7·1, 98·4·1, 99·2·27〉

제73조 (수수료의 납부방법) 수수료는 해당수수료금액에 상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한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95·12·1〉

제74조 (수수료의 면제)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원칙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71조 또는 제7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별표1중 체류자격 1. 외교(A-1) 내지 3. 협정(A-3)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71조 또는 제7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4·7·20〉

제75조 (사실증명의 발급)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증명의 신청절차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관계인이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한다.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외국인등록을 한 자 또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관계인이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한다.

제76조 (사증등 발급신청시의 첨부서류) ①영 제7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 영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허가를 신청하는 때,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

(추 109)

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94·7·20, 97·7·1, 99·2·27〉

②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하는 때,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를 신청하는 때, 영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허가를 신청하는 때 및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신청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99·2·27〉

제77조 (신원보증) ①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원보증을 하는 자는 신원보증인 및 피보증외국인의 인적사항·보증기간·보증내용등을 기재한 신원보증서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인은 대한민국안에 주소를 둔 자로서 보증능력이 있는 자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97·7·1〉

③피보증외국인이 소속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있는 때의 신원보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 하며,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능력의 소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97·7·1〉

④외국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인이 되는 때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보증기간은 신원보증인의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7·7·1〉

⑤신원보증인인 국민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보증외국인은 새로이 신원보증인을 설정하여야 한다. 신원보증인인 외국인이 출국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7·1〉

⑥신원보증서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안에 주재하는 피보증외국인의 자국공관 또는 관련공관의 인증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7·7·1〉

1.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
2. 변호사법의 규정에 의한 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

⑦보증기간의 최장기간은 4년으로 한다. 〈개정 94·7·20, 97·7·1〉

⑧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정부기관이 신원보증인이 되거나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4·7·20, 97·7·1〉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서를 제출한 자가 그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의

(추 109)

범위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서의 추가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77조의2 (구상권행사절차) ①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구상금납부통지서에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구상권행사담당공무원은 구상권행사 및 수납사항을 구상권행사사건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7·1〕

제78조 (권한의 위임) ①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권한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5·12·1, 97·7·1, 98·4·1〉

1.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체류기간 90일이하의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6. 일시취재(C-1) 내지 9. 단기취업(C-4)·26. 방문동거(F-1) 및 28의2. 재외동포(F-4)의 자격에 해당하거나 체류기간 2년이하의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2. 산업연수(D-3)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2.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1의 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이내의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0. 문화예술(D-1) 내지 25. 특정활동(E-7)·26. 방문동거(F-1)·28. 동반(F-3) 및 28의2. 재외동포(F-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②법무부장관이 영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0조, 법 제21조, 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97·7·1〉

③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0조제1항,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법 제90조 및 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을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7·7·1〉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입국금지자, 제10조제3호에 규정된 사증발급 규제자, 기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9조, 법 제20조, 법 제21조, 법 제23조 내지 제25조 및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추 97)

야 한다. 〈개정 94·7·20, 97·7·1〉

제79조 (이중국적자의 출입국절차등) ①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②2이상의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가 행사하는 여권을 발급한 국가의 국민으로 본다.

③국적이 불명한 자는 그가 행사하는 여권을 발급한 국가의 국민으로 취급한다. 〈신설 94·7·20〉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중국적자에 대하여는 따로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8·4·1〉

제80조 (기록관리의 기준 및 절차)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각종 기록의 관리 기준 및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81조 (각종 보고)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강제퇴거명령·출국명령 또는 출국권고를 한 때
2. 외국인을 보호한 때,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보호장소를 변경한 때 또는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한 때
3. 과태료처분·통고처분 또는 고발조치를 한 때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전산업무처리절차를 이용하여 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 (통계보고) ①재외공관의 장, 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통계를 매월(제1호의 경우에는 반기별)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7·20〉

1. 반기별 사증발급현황(국적별·체류자격별)
2. 월별 내·외국인출국자현황(항구별)
3. 월별 내·외국인입국자현황(항구별)
4. 월별 국민출국자현황(행선국별·직업별)
5. 월별 국민출국자현황(행선국별·연령별)
6. 월별 국민출국자현황(행선국별·출국목적별)
7. 삭제 〈94·7·20〉
8. 월별 외국인입국자현황(국적별·체류자격별)

(추 97)

9. 월별 외국인입국자현황(국적별·연령별)

10. 및 11. 삭제 〈94·7·20〉

12. 월별 외국인출국자현황(국적별·체류기간별)

13. 월별 상륙허가자현황(국적별)

14. 월별 출입항선박 및 선원현황(국적별)

15. 월별 출입항선박 및 선원현황(항구별)

16. 월별 출입항 항공기 및 승무원현황(국적별)

17. 월별 체류외국인현황(국적별·체류자격별)

18. 월별 등록외국인현황(국적별·체류지역별)

19. 월별 출입국관리법위반자 처리현황(국적별·조치별)

20. 월별 이중국적자현황

21. 삭제 〈99·2·27〉

22. 월별 사증발급인정서발급현황(국적별·체류자격별)

②제8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3조 (출입국관리관계서식) ①법·영 및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 출입국관리관계서식은 별지 부록과 같다. 〈개정 99·2·27〉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관리관계서식중 각종 허가등의 대장을 전산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작성·비치할 수 있다. 〈신설 97·7·1〉

제84조 (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8장 통고처분등

제8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처분통지서에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과태료처분 통지를 하며, 과태료의 부과 및 수납사항을 과태료부과 및 수납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7·7·1〉

②법 제10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의 과태료처분에 대

(추 109)

한 이의제기는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하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4·7·20, 97·7·1〉

③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이외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제86조 (범칙금의 양정기준) ①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범칙금은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당해 출입국사범의 연령과 환경, 법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부담능력, 위반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③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달리 범칙금을 정할 수 있다. 법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7조 (범칙금의 수납기관)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납기관은 한국은행 본·지점과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으로 한다.

제88조 (범칙금납부고지서)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서를 송달하는 때에는 범칙금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출입국신고서의 서식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3년 12월 31일까지 계속사용할 수 있다.

제3조 (범칙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범칙금 양정기준의 적용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거류외국인 기록번호"를 "등록외국인 기록번호"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4조 및 동규칙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거류외국인기록표"를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83조 및 동규칙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 등록외국인기

록표"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 외국인"을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으로, "거류외국인 기록번호"를 "등록외국인 기록번호"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국내에 거류지가 있는 외국인의 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등록번호)"로 하고, 동조중 "거류신고를"을 "외국인등록을"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 외국인의 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제목중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을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별지 제7호서식중 "⑤국내거류지"를 "⑤국내체류지"로 한다.

②제1항외의 다른 법령에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이나 그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중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94·7·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증발급인정서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사증발급인정서는 그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출입국기록표는 이 규칙에 의한 승무원등록증으로 교체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95·7·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 〈95·1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출입국신고서의 서식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등록증을 반납 또는 갱신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으로 본다.

제3조 (벌칙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금 양정기

(추 86)

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7·7·1 법무부령44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등록증을 반납 또는 갱신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으로 본다.

③(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출입국관련서식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98·4·1 법무부령4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2·27 법무부령4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출입국관련서식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99·12·2 법무부령489〉

이 규칙은 199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99·12·2〉

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제18조의2관련)

체류자격(기호)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체류자격(기호)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1. 외 교(A-1)	재임기간	17. 기업투자(D-8)	2년
2. 공 무(A-2)	공무수행기간	18. 무역경영(D-9)	2년
3. 협 정(A-3)	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상의 체류기간	19. 교 수(E-1)	2년
4. 사증면제(B-1)	협정상의 체류기간	20. 회화지도(E-2)	1년
5. 관광통과(B-2)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21. 연 구(E-3)	2년
6. 일시취재(C-1)	90일	22. 기술지도(E-4)	2년
7. 단기상용(C-2)		23. 전문직업(E-5)	2년
8. 단기종합(C-3)		24. 예술흥행(E-6)	6월
9. 단기취업(C-4)		25. 특정활동(E-7)	2년
10. 문화예술(D-1)	2년	25의2. 연수취업(E-8)	1년
11. 유 학(D-2)	2년	26. 방문동거(F-1)	2년
12. 산업연수(D-3)	2년	27. 거 주(F-2)	5년
13. 일반연수(D-4)	2년	28. 동 반(F-3)	동반하는 본인에 정하여진 기간
14. 취 재(D-5)	2년	28의2. 재외동포(F-4)	2년
15. 종 교(D-6)	2년	29. 기 타(G-1)	1년
16. 주 재(D-7)	2년	30. 관광취업(H-1)	협정상의 체류기간

〔별표 2〕

외국인등록번호의 구성체계(제46조제3항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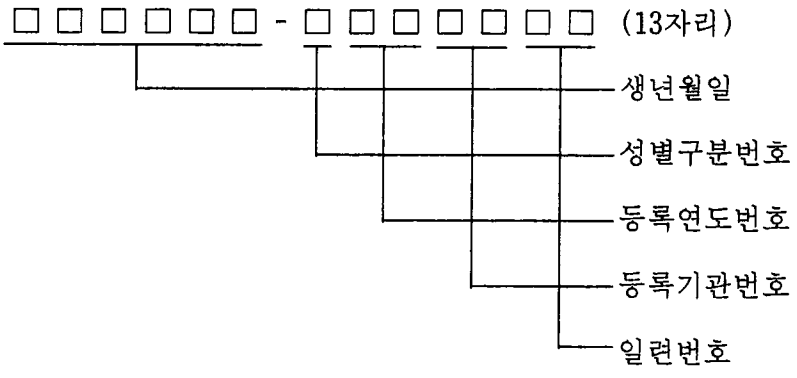

(추 115)

〔별표 3〕

성별구분번호(제46조제4항관련)

출 생 연 대	남 자	여 자
1800년대	9	0
1900년대	1	2
2000년대	5	6

〔별표 4〕〈개정 99·12·2〉

등록기관번호(제46조제4항관련)

등 록 기 관	번호	등 록 기 관	번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10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	42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12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오산출장소	44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14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포항출장소	46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16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대산출장소	48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18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목포출장소	50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20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52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22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광양출장소	54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24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통영출장소	56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26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사천출장소	58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28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거제출장소	60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29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군산출장소	62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정부출장소	30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	64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울산출장소	32	서울외국인보호소	70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40		

(추 115)

〔별표 5〕〈개정 99·12·2〉

사증발급신청등 첨부서류(제76조관련)

체류자격(기호)	첨 부 서 류
외 교(A-1)	○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통상부장관의 협조공한(신분증명서의 제시등에 의하여 해당신분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구술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외교관여권 소지여부 확인. 다만, 일반여권을 소지한 자는 외교업무수행자 및 그 가족에 한함
공 무(A-2)	○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통상부장관이나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공무수행임을 입증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함) ※ 관용여권 또는 신분증명서 소지여부 확인. 다만, 일반여권을 소지한 자는 공무수행자 또는 국제기구근무자 및 그 가족에 한함
협 정(A-3)	○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통상부장관이나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 ※ 관용여권 또는 신분증명서 소지여부 확인
일시취재(C-1)	○소속회사의 파견증명서·재직증명서 또는 외신보도증 사본
단기상용(C-2)	○상용목적으로 입국함을 입증하는 서류
단기종합(C-3)	○없 음
단기취업(C-4)	○고용계약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연예인의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협조공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문화예술(D-1)	○초청장 ○문화예술 단체임을 입증하는 서류 ·전문가의 지도인 경우에는 그 자의 경력증명서 ○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 ○체류중 일체의 경비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전문가라 함은 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공인기능보유자등을 말함
유 학(D-2)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학장 발행)
산업연수(D-3)	○연수기관이 작성한 연수계획서 ○임금 또는 급여대장 사본 ○외국인 산업연수 대상업체의 추천서나 해당산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원보증서
일반연수(D-4)	1. 대학부설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협정으로 산학연수를 위한 교환학생의 경우 ○입학 또는 재학을 입증하는 서류 ○재정입증 관련서류(미화 3,000불이상의 국내 송금이나 환전증명서)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협정서류

(추 115)

	○신원보증서(학비등 체류중 필요한 경비지불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2. 기타 연수의 경우 ○연수를 증명하는 서류 ○연수기관 설립 관련서류 ○재정입증 관련서류 • 연수기관이 체류경비등을 부담하는 경우는 경비부담확인서 • 기타의 경우는 국내 송금이나 환전증명서(미화 3,000불이상) ○신원보증서(학비등 체류중 필요한 경비지불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취 재(D-5)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국내 지사 또는 지국 설립 관련서류
종 교(D-6)	○파송명령서 ○종교단체 설립허가서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허가서 사본 ○소속단체의 체류경비지원 관련서류
주 재(D-7)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영업자금도입실적 증빙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연간 납세증명서
기업투자(D-8)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외국인투자신고서(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무역경영(D-9)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자금도입실적 증빙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연간 납세증명서
교 수(E-1)	○경력증명서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회화지도(E-2)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고용계약서 ○학원 또는 단체설립 관련서류 ○신원보증서
연 구(E-3)	○초청기관 설립 관련서류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 ○고용계약서

(추 115)

기술지도(E-4)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기술도입계약 신고수리서·기술도입계약서(또는 용역 거래인증서) 또는 방위산업체지정서 사본 ○공·사기관 설립 관련서류
전문직업(E-5)	○학위증 또는 자격증 사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고용계약서
예술흥행(E-6)	1. 관광호텔, 유흥업소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공연계획서 ○후천성면역결핍증(HIV)테스트 증명서 ○신원보증서 2. 기타의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신원보증서
특정활동(E-7)	○학위증 또는 자격증 사본 ○고용계약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나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공·사기관 설립 관련서류 ○신원보증서
연수취업(E-8)	○연수취업계약서 ○연수업체장의 추천서 ○기술자격증 사본등 ○신원보증서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방문동거(F-1)	1.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 또는 친족을 방문하는 경우 ○가족 또는 친족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호적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신원보증서 ※ 해외입양인의 경우 입양기관의 확인서 또는 양부모 진술서 2. 국내 외국공관주재원의 가사보조인의 경우 ○외국공관의 요청 공문 ○고용계약서 ○고용인의 외교관 신분증명서 사본 3.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외국국적 학생의 경우 ○입학 또는 재학을 증명하는 서류 ○부양인의 연간 납세증명서

(추 115)

거 주(F-2)	○체류자격부여 또는 체류자격변경의 경우 •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격 해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원보증서(거주자격해당자의 출생자녀는 제외) ○체류기간연장의 경우 : 없음
동 반(F-3)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호적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재외동포(F-4)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호적등본, 제적등본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는 재외국민등록법 제6조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등본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의한 보증서) •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직계존속이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법 제6조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등본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의한 보증서) • 본인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등) •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기 타(G-1)	○입국목적을 소명하는 서류(법원등의 출석요구서 또는 담당의사의 소견서등) ○소송 또는 치료경비등의 지불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관광취업(H-1)	○왕복항공권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는 경비소지 입증서류 ○여행일정 및 활동계획서

유 의 사 항

1. 재외공관의 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2. 재입국허가 신청시에는 첨부서류 없음. 다만, 외교(A-1) 내지 협정(A-3)자격 소지자는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3. 체류자격외활동허가등 신청자가 사증발급등 신청시 이미 제출하여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중인 서류는 제출 생략
4. 첨부서류중 분량이 많은 서류는 이를 발췌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필요없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5.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이 4년이상인 때에도 4년을 한도로 하여 이를 인정하며, 각종 허가를 할 때의 허가기간은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추 115)

〔별표 6〕〈개정 99·2·27〉

체류자격외활동허가등 권한의 위임범위(제78조제 2 항관련)

체류자격 (기 호)	업무구분				
	체류자격외 활 동	근 무 처 변경·추가	체류자격 부 여	체류자격 변 경	체류기간 연 장
외 교(A-1)			○	○	
공 무(A-2)			○	○	
협 정(A-3)			○	○	
사증면제(B-1)					○
관광통과(B-2)					○
일시취재(C-1)					○
단기상용(C-2)					○
단기종합(C-3)			◁		○
단기취업(C-4)					○
문화예술(D-1)	○	○		◁	○
유 학(D-2)	○	○		◁	○
산업연수(D-3)		◁			○
일반연수(D-4)	○	○		◁	○
취 재(D-5)					○
종 교(D-6)	◁	◁		◁	○
주 재(D-7)	◁	◁			○
기업투자(D-8)	○	○		○	○
무역경영(D-9)		◁		◁	○
교 수(E-1)	◁	◁			○
회화지도(E-2)	◁	◁			○
연 구(E-3)		◁		◁	○
기술지도(E-4)		◁		◁	○
전문직업(E-5)		◁			◁
예술흥행(E-6)					○
특정활동(E-7)	◁	◁			◁
연수취업(E-8)		◁		◁	○
방문동거(F-1)			○	◁	○
거 주(F-2)			◁		○
동 반(F-3)			○	○	○
재외동포(F-4)			○	○	○
기 타(G-1)					○
관광취업(H-1)		○			◁

(추 109)

비 고

1. ○표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사무의 전부를 위임함을 의미함
2. ◁표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목과 같이 사무의 일부를 위임함을 의미함

가.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외교(A-1) 또는 공무(A-2)자격 소지자에 대한 외국어회화강사(E-2)·외국인학교 교사(E-7) 또는 외국어교열요원(E-7)으로의 활동

○동일 종교재단 산하기관 근무자의 종교(D-6) 또는 교수(E-1) 상호간 활동

○교육기관, 공·사기관의 연수원등에서의 6월이하의 한시적인 외국어 강의

○방문동거(F-1) 또는 동반(F-3)자격 소지자에 대한 외국어회화강사(E-2) 또는 외국인학교 교사(E-7)로의 활동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에 대한 주재(D-7)자격의 체류자격외활동

나. 근무처변경·추가허가

○동일 종교단체내의 근무처변경·추가

○교육기관, 공·사기관의 연수원등에서의 6월이하의 한시적인 외국어 강의

○원근무처가 합병·분리되거나 양도·양수된 경우 변경되는 근무처에서의 활동이 원근무처의 고용계약에 따른 체류목적과 동일한 때의 근무처변경

○주재(D-7) 및 무역경영(D-9)자격 소지자의 같은 계열사내의 근무처변경·추가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이 채용한 외국인 영어강사의 근무처변경·추가

○산업연수(D-3)자격 소지자의 근무처변경허가(외국인산업연수생사증발급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 제2조제2항 해당자)

○무역경영(D-9)자격 소지자중 수입설비(기계)의 설치·운영등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와 수주선박 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을 위하여 파견된 자에 대한 근무처변경·추가

다. 체류자격부여

○거주(F-2)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출생자녀로 미성년인 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주한 미군 현지제대자에 대한 단기종합(C-3)자격 부여

라. 체류자격변경허가

○유학(D-2) 및 일반연수(D-4)자격으로서 상호간 변경

○국내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등에 진학한 자에 대한 유학(D-2) 및 일반연수(D-4)자격으로의 변경

○하계학교등에 입교하는 재외교포 자녀 또는 대학부설 어학연수원등에서 한국어 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중 부득이한 사유로 단기종합(C-3)자격을 소지하고 입국한 자에 대한 일반연수(D-4)자격으로의 변경

(추 109)

○부득이한 사유로 관광통과(B-2)자격으로 입국한 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이하의 방문동거(F-1)자격으로의 변경허가 및 국민의 처와 17세미만의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91일이상의 방문동거(F-1)자격으로의 변경

○산업연수(D-3)자격에서 연수취업(E-8)자격으로의 변경

○해외입양외국국적소지자에 대한 문화예술(D-1)·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자격으로의 변경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면제(B-1) 또는 단기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자격변경허가

- 산업설비(기계)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 운영, 보수등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무역경영(D-9)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
- 수주선박건조 및 산업설비제작의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발주사 또는 발주사가 지정하는 전문용역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에 대한 무역경영(D-9)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
- 재한 화교(F-2)의 처에 대한 방문동거(F-1)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
- 한국계 외국인에 대한 방문동거(F-1)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의 기술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자로서 아래 단체에 근무예정인 연구원에 대하여는 소지한 자격에 관계없이 연구(E-3)자격으로의 변경허가

- 특정기관 육성법 기타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 국공립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과학기술자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려는 아래 기술자에 대하여는 소지자격에 관계없이 기술지도(E-4)자격으로의 변경허가

-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체에 기술을 제공하는 자
-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법시행령 제17조에 예시한 정부투자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산업상의 기술을 제공하는 자

○6월미만을 체류하려는 카나다국민중 문화예술(D-1)·종교(D-6) 또는 방문동거(F-1)자격으로의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변경

마. 체류기간연장허가

○전문직업(E-5) 및 특정활동(E-7)자격 소지자에 대한 입국일부터 4년이하의 체류기간연장. 다만, 항공기조종사 및 외국인학교 교사에 대하여는 기간에 상관없이 전면위임

○관광취업(H-1)자격 소지자에 대한 입국일부터 1년이하의 체류기간연장

3. ⊘ 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임

(추 109)

〔별표 7〕 〈개정 98·4·1〉

범칙금의 양정기준(제86조제1항관련)

해당법조문	범칙행위의 내용	위반기간등	범칙금의 기준액
1. 법 제94조 제1호	법 제3조(국민의 출국)제1항의 위반		1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
2. 법 제94조 제2호	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제1항 또는 제4항, 법 제12조(입국심사)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		1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
2의2. 법 제94조제2호의2	법 제12조의2(선박등의 제공금지)의 위반		1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
3. 법 제94조 제3호	법 제14조(승무원의 상륙허가)제1항의 위반		2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
4. 법 제94조 제4호	법 제14조(승무원의 상륙허가)제2항의 위반		2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
5. 법 제94조 제5호	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제1항, 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제1항·제5항, 법 제20조(체류자격외 활동)의 위반	3월미만	50만원이상 100만원이하
		3월이상 6월미만	100만원이상 300만원이하
		6월이상 12월미만	2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1년이상	3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
6. 법 제94조 제5호의2	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제3항의 위반	3월미만	100만원이상 300만원이하
		3월이상 6월미만	200만원이상 400만원이하
		6월이상 12월미만	3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1년이상	5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
7. 법 제94조 제6호	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제4항의 위반(이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
8. 법 제94조 제6호의2	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제2항의 위반(이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
9. 법 제94조 제7호	법 제22조(활동범위의 제한)의 위반		2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
10. 법 제94조 제8호	법 제23조(체류자격부여), 법 제24조(체류자격변경허가), 법 제25조	3월미만	10만원이상 100만원이하

(추 97)

	(체류기간연장허가)	3월이상 6월미만	30만원이상 200만원이하
		6월이상 12월미만	50만원이상 300만원이하
		1년이상 2년미만	1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2년이상	2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
11. 법 제94조 제9호	법 제28조(출국심사)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		1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
12. 법 제94조 제10호	법 제69조(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또는 법 제70조(내항자격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의 위반		1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
13. 법 제95조 제1호	법 제6조(국민의 입국)제1항의 위반		1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14. 법 제95조 제2호	법 제13조(조건부입국허가)제2항의 위반		5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15. 법 제95조 제3호	법 제15조(긴급상륙허가)제1항, 법 제16조(재난상륙허가)제1항 또는 법 제16조의2(난민임시상륙허가)제1항의 위반		2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16. 법 제95조 제4호	법 제15조(긴급상륙허가)제2항, 법 제16조(재난상륙허가)제2항 또는 법 제16조의2(난민임시상륙허가)제2항의 위반		2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17. 법 제95조 제5호	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제2항 또는 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제1항의 위반		5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18. 법 제95조 제6호의2	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제2항의 위반(이를 고용한 자를 말한다)		1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19. 법 제95조 제7호	법 제31조(외국인등록)의 위반		1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20. 법 제95조 제8호	법 제51조(보호)제1항·제3항, 법 제56조(외국인의 일시보호) 또는 법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보호 및 보호해제)제1항의 위반		5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추 86)

21. 법 제95조 제 9 호	법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보호 및 보호해제)제 2 항의 위반		5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22. 법 제95조 제10호	법 제76조의2(난민의 인정)제 1 항의 위반(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5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23. 법 제97조 제 1 호	법 제71조(출입국의 정지등)제 4 항의 위반		100만원이상 300만원이하
24. 법 제97조 제 2 호	법 제72조(승선허가)의 위반		20만원이상 300만원이하
25. 법 제97조 제 3 호	법 제73조(운수업자등의 일반적 의무)의 위반		50만원이상 300만원이하
26. 법 제97조 제 4 호	법 제74조(사전통보의 의무), 법 제75조(보고의 의무) 또는 법 제76조(송환의 의무)의 위반		50만원이상 300만원이하
27. 법 제97조 제 5 호	법 제76조의6(난민인정증명서등의 반납)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위반		50만원이상 300만원이하
28. 법 제98조 제 1 호	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제 4 항의 위반(이를 업으로 하는 자를 제외한다)		50만원이상 100만원이하
29. 법 제98조 제 1 호의2	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제 2 항의 위반(이를 업으로 하는 자를 제외한다)		50만원이상 100만원이하
30. 법 제98조 제 2 호	법 제27조(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의 위반		5만원이상 100만원이하
31. 법 제98조 제 3 호	법 제36조(체류지변경의 신고)제 1 항의 위반		10만원이상 100만원이하
32. 법 제99조	법 제94조제 1 호·제 2 호·제 2 호의2·제 9 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와 미수범, 법 제94조제 1 호·제 2 호·제 9 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		1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
	법 제95조제 1 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와 미수범, 법 제95조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		1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추 97)

〔부 록〕〈개정 99·2·27〉

출입국관리관계서식집(제83조관련)

구 분	서 식 명	근 거 조 항	비 고
별지 제1호서식	출입국신고서	영 제1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	출국심사인	영 제1조제3항	
별지 제3호서식	입국심사인	영 제1조제3항	
별지 제4호서식	출입국자명부	규칙 제3조제3항, 규칙 제19조제3항, 규칙 제39조제3항	
별지 제5호서식	승무원등록신고서	규칙 제4조제1항	
별지 제6호서식	승무원등록대장	규칙 제4조제2항	
별지 제7호서식	승무원등록증	영 제1조제4항, 규칙제4조제2항	
별지 제8호서식	출국금지요청서	영 제2조제2항	삭 제
별지 제9호서식	출국금지기간연장요청서	영 제2조제5항	삭 제
			삭 제
별지 제10호서식	출국금지해제요청서	영 제2조제6항	삭 제
별지 제11호서식	출국금지통지서	영 제3조	삭 제
별지 제12호서식	출국금지기간연장통지서	영 제3조	
별지 제13호서식	출국(입국)금지·정지자 명부	영 제5조제2항, 영 제13조제2항, 영 제36조	
별지 제14호서식	보관증	영 제6조제1항	
별지 제15호서식	보관물대장	규칙 제7조제1항, 영 제46조제5항	
별지 제16호서식	외국인입국허가서	법 제7조제4항, 영 제10조제5항	
별지 제17호서식	사증발급신청서	영 제7조제1항	
별지 제17호의2서식	단체사증발급신청서	규칙 제11조제2항	
별지 제18호서식	사증인	영 제7조제2항	
별지 제19호서식	사증발급승인요청서	규칙 제8조제2항	
별지 제20호서식	사증발급인정서	법 제9조제1항	
별지 제21호서식	사증발급인정신청서	규칙 제17조제2항	
별지 제21호의2서식	사증발급대상자명단	규칙 제17조제5항	

(추 109)

별지 제22호서식	단체사증발급대상자 명단	규칙 제11조제 2 항	
별지 제23호서식	조건부입국허가서	법 제13조제 2 항	
별지 제24호서식	조건부입국허가서발급 대장	규칙 제22조제 1 항	
별지 제24호의2서식	입국허가신청서	규칙 제14조제 4 항	
별지 제24호의3서식	외국인입국허가대장	규칙 제14조제 5 항	
별지 제25호서식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 소인	규칙 제16조제 4 항	
별지 제26호서식	보증금보관증	영 제17조제 2 항, 영 제79조 제 5 항	
별지 제27호서식	보증금국고귀속통지서	영 제17조제 5 항, 영 제80조 제 2 항	
별지 제28호서식	입국사실확인인	규칙 제20조제 2 항	
별지 제29호서식	주한미군지위협정해당 자인	규칙 제21조	
별지 제30호서식	상륙허가(기간연장)신 청서 및 상륙허가서	영 제18조 내지 제21조, 법 제14조제 2 항, 법 제15조제 2 항, 법 제16조제 2 항	
별지 제30호의2서식	복수승무원상륙허가서	영 제18조의2제 2 항	
별지 제30호의3서식	난민임시상륙허가(기 간연장)신청서	영 제20조의2제 1 항, 영 제21 조제 1 항	
별지 제30호의4서식	난민임시상륙허가서	규칙 제24조의2제 1 항	
별지 제30호의5서식	난민임시상륙허가서발 급대장	법 제16조의2제 2 항, 영 제20 조의2제 3 항	
별지 제31호서식	활동중지명령서	영 제22조	
별지 제32호서식	고용·연수외국인변동 사유발생신고서	영 제24조제 1 항	
별지 제33호서식	고용·연수외국인신고 처리대장	규칙 제28조제 2 항	

(추 86)

별지 제34호서식	체류자격부여·체류자격변경허가·체류기간연장허가·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서	영 제25조제1항, 영 제29조제1항, 영 제30조제1항, 영 제31조제1항	
별지 제35호서식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인	영 제25조제3항	
별지 제36호서식	체류자격외활동허가서	영 제25조제3항	
별지 제37호서식	근무처변경·추가허가신청서	영 제26조제1항	
별지 제38호서식	근무처변경·추가허가인	영 제26조제3항	
별지 제39호서식	활동범위등제한통지서	영 제27조	
별지 제40호서식	체류자격부여인	영 제29조제3항	
별지 제41호서식	체류자격변경허가인	영 제30조제3항	
별지 제42호서식	체류기간연장(갱신)허가인	영 제31조제3항, 영 제32조	
별지 제43호서식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	영 제33조제1항	
별지 제44호서식	출국기한유예신청서	규칙 제33조제2항	
별지 제45호서식	체류자격외활동(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대장	규칙 제35조	삭 제
별지 제46호서식	체류자격부여대장	규칙 제35조	삭 제
별지 제47호서식	체류자격변경허가대장	규칙 제35조	삭 제
별지 제48호서식	체류기간연장등허가대장	규칙 제35조	
별지 제49호서식	재입국허가대장	규칙 제35조	
별지 제50호서식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발급대장	규칙 제36조	
별지 제51호서식	출국정지요청서	영 제36조	삭 제
별지 제52호서식	출국정지기간연장요청서	영 제36조	삭 제
별지 제53호서식	출국정지해제요청서	영 제36조	삭 제
별지 제54호서식	출국정지(출국정지기간연장)통지서	영 제36조	삭 제

(추 86)

별지 제55호서식	출국예고인	규칙 제38조	
별지 제56호서식	재입국허가신청서	영 제38조제 1 항	
별지 제57호서식	재입국허가인	영 제38조제 4 항	
별지 제58호서식	재입국허가서	영 제38조제 4 항	
별지 제59호서식	재입국허가확인인	규칙 제43조제 3 항	
별지 제60호서식	재입국허가확인서	규칙 제43조제 4 항	
별지 제61호서식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서	영 제39조제 1 항	
별지 제62호서식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인	영 제39조제 3 항	
별지 제63호서식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승인요청서	규칙 제44조제 2 항	
별지 제64호서식	외국인등록신청서	영 제40조제 1 항	
별지 제65호서식	외국인등록필인	영 제40조제 2 항	
별지 제66호서식	등록외국인대장	영 제40조제 2 항	
별지 제67호서식	외국인등록증	법 제33조제 1 항	
별지 제68호서식	등록외국인기록표	법 제34조제 1 항	
별지 제69호서식	외국인등록표	법 제34조제 1 항	
별지 제70호서식	외국인등록대장	법 제34조제 2 항	
별지 제71호서식	외국인등록증발급대장	영 제41조제 1 항	
별지 제72호서식	외국인등록증(재)발급신청서	영 제41조제 3 항, 영 제42조제 2 항	
별지 제73호서식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영 제44조제 1 항	
별지 제74호서식	체류지변경신고서	영 제45조제 1 항	
별지 제75호서식	체류지변경신고필인	영 제45조제 2 항 및 제 4 항	
별지 제76호서식	체류지변경통보서	영 제45조제 4 항	
별지 제77호서식	외국인등록증보관증	영 제46조제 5 항	
별지 제78호서식	외국인지문원지	영 제47조제 1 항	
별지 제79호서식	외국인지문원지작성대장	규칙 제52조제 1 항	
별지 제80호서식	지문채취자통보서	규칙 제52조제 1 항	

(추 68)

별지 제81호서식 내지	〈삭제〉	
별지 제85호서식		
별지 제86호서식	용의사실인지보고서	영 제57조
별지 제86호의2서식	사건부	규칙 제54조의2제1항
별지 제87호서식	출석요구서	영 제58조제1항
별지 제87호의2서식	참고인출석요구서	영 제58조제1항
별지 제88호서식	출석요구서발급대장	영 제58조제1항
별지 제89호서식	용의자신문조서 (갑, 을, 병)	영 제59조제1항
별지 제90호서식	참고인진술조서 (갑, 을, 병)	영 제60조제1항
별지 제91호서식	제출물조서	영 제62조제1항
별지 제92호서식	제출물목록	영 제62조제1항
별지 제93호서식	제출물보관대장	규칙 제57조제1항
별지 제94호서식	보호명령서발부신청서	영 제63조제1항
별지 제95호서식	보호명령서	법 제51조제1항
별지 제96호서식	보호명령서발부대장	규칙 제58조제1항
별지 제97호서식	보호의뢰서	영 제64조제1항
별지 제98호서식	긴급보호소	법 제51조제3항
별지 제99호서식	긴급보호서발부대장	규칙 제58조제3항
별지 제100호서식	보호기간연장허가서	영 제65조제1항
별지 제100호의2서식	보호(일시보호)기간연장허가서발부신청서	법 제52조제1항, 법 제56조제2항, 영 제65조제1항, 영 제71조제3항
별지 제101호서식	보호기간연장통보서	영 제65조제2항
별지 제102호서식	보호해제의뢰서	영 제65조제3항, 영 제66조, 영 제70조제2항, 영 제73조, 영 제75조제3항, 영 제78조제2항, 영 제79조제4항
별지 제103호서식	보호통지서	영 제68조
별지 제104호서식	보호사항변경통지서	규칙 제60조
별지 제105호서식	보호에대한이의신청서	영 제69조제1항

(추 109)

별지 제106호서식	이의신청에대한결정서	영 제70조제1항, 영 제75조제2항	
별지 제107호서식	일시보호명령서	영 제71조제1항	
별지 제107호의2서식	일시보호기간연장허가서	영 제71조제3항	
별지 제108호서식	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	규칙 제61조	
별지 제109호서식	심사결정서	영 제72조, 영 제104조제1항	
별지 제110호서식	강제퇴거명령서	법 제59조제2항	
별지 제111호서식	강제퇴거명령에대한이의신청서	법 제60조제1항	
별지 제112호서식	강제퇴거명령서발부대장	규칙 제62조	삭 제
별지 제113호서식	특별체류허가서	영 제76조제2항	
별지 제114호서식	강제퇴거명령집행의뢰서	영 제77조제2항	
별지 제115호서식	송환지시서	영 제77조제4항	
별지 제116호서식	인수증	영 제77조제4항	
별지 제117호서식	보호해제통보서	영 제78조제2항	
별지 제118호서식	보호일시해제청구서	영 제79조제1항	
별지 제119호서식	보호일시해제결정서	영 제79조제2항	
별지 제120호서식	보호일시해제취소서	법 제66조제2항	
별지 제121호서식	출국권고서	법 제67조제2항	
별지 제122호서식	출국권고서발부대장	규칙 제64조	삭 제
별지 제123호서식	출국명령서	법 제68조제2항	
별지 제124호서식	출국명령서발부대장	규칙 제65조제2항	삭 제
별지 제125호서식	승선·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신청서	영 제84조	
별지 제126호서식	승선·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서	규칙 제66조제1항	
별지 제126호의2서식	승선·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서발급대장	규칙 제66조제2항	
별지 제126호의3서식	난민인정신청서	영 제88조의2제1항	

(추 86)

별지 제126호의4서식	난민인정증명서	법 제76조의2제3항, 영 제88조의2제6항
별지 제126호의5서식	난민인정증명서발급대장	규칙 제67조의11
별지 제126호의6서식	난민인정불허통지서	영 제88조의2제7항
별지 제126호의7서식	난민인정취소통지서	영 제88조의3
별지 제126호의8서식	이의신청서	영 제88조의4제1항
별지 제126호의9서식	이의신청에대한심사결정서	영 제88조의4제3항
별지 제126호의10서식	이의신청에대한결정통지서	영 제88조의4제4항
별지 제126호의11서식	난민여행증명서(재)발급신청서	영 제88조의5제1항, 영 제88조의6제2항
별지 제126호의12서식	난민여행증명서	법 제76조의5제1항, 영 제88조의5제2항
별지 제126호의13서식	난민여행증명서발급대장	영 제88조의5제2항
별지 제126호의14서식	난민여행증명서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서	영 제88조의7제1항
별지 제126호의15서식	난민여행증명서반납명령서	영 제88조의8
별지 제127호서식	외국인동향조사부	규칙 제23조제2항, 규칙 제69조제1항
별지 제128호서식	외국인관련단체동향기록표	규칙 제69조제4항
별지 제129호서식	신원보증서	규칙 제77조
별지 제129호의2서식	구상금납부통지서	규칙 제77조의2
별지 제129호의3서식	구상권행사사건처리부	규칙 제77조의2
별지 제130호서식	출입항예정통보서	법 제74조
별지 제131호서식	승무원명부	법 제75조제1항
별지 제132호서식	승객명부	법 제75조제1항
별지 제133호서식	출입항보고서	법 제75조제1항

별지 제134호서식	이중국적자·국적상실신고미필자기록카드	규칙 제79조제3항	
별지 제134호의2서식	국민처우자 기록카드	규칙 제79조제1항	
별지 제135호서식	출입국사범 및 강제퇴거자 조치결과 보고	규칙 제81조제1항	
별지 제136호서식	송환결과보고서	영 제88조제2항	
별지 제137호서식	사법경찰관리신분증	영 제92조제2항	
별지 제138호서식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법 제88조	
별지 제139호서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법 제88조	
별지 제140호서식	출입국사범고발서	법 제102조제3항, 법 제105조제2항	
별지 제141호서식	통고서	영 제104조제1항	
별지 제142호서식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영 제104조제3항	
별지 제143호서식	임시납부신청서·임시납부금수령증	영 제107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144호서식	범칙금임시보관대장	영 제107조제2항	
별지 제145호서식	반기별사증발급현황(국적별, 체류자격별)	규칙 제82조제1항제1호	
별지 제146호서식	월별내·외국인출국자현황(항구별)	규칙 제82조제1항제2호	
별지 제147호서식	월별내·외국인입국자현황(항구별)	규칙 제82조제1항제3호	
별지 제148호서식	월별국민출국자현황(행선국별, 직업별)	규칙 제82조제1항제4호	
별지 제149호서식	월별국민출국자현황(행선국별, 연령별)	규칙 제82조제1항제5호	
별지 제150호서식	월별국민출국자현황(행선국별, 출국목적별)	규칙 제82조제1항제6호	
별지 제151호서식	월별국민귀국자현황(행선국별, 출국목적별)	규칙 제82조제1항제7호	삭 제
별지 제152호서식	월별외국인입국자현황(국적별, 체류자격별)	규칙 제82조제1항제8호	

(추 109)

별지 제153호서식	월별외국인입국자현황(국적별, 연령별)	규칙 제82조제1항제9호	
별지 제154호서식	월별외국인입국자현황(국적별, 직업별)	규칙 제82조제1항제10호	삭 제
별지 제155호서식	월별외국인출국자현황(국적별, 체류자격별)	규칙 제82조제1항제11호	삭 제
별지 제156호서식	월별외국인출국자현황(국적별, 체류기간별)	규칙 제82조제1항제12호	
별지 제157호서식	월별상륙허가자현황(국적별)	규칙 제82조제1항제13호	
별지 제158호서식	월별출입항선박 및 선원현황(국적별)	규칙 제82조제1항제14호	
별지 제159호서식	월별출입항선박 및 선원현황(항구별)	규칙 제82조제1항제15호	
별지 제160호서식	월별출입항항공기 및 승무원현황(국적별)	규칙 제82조제1항제16호	
별지 제161호서식	월별체류외국인현황(국적별, 체류자격별)	규칙 제82조제1항제17호	
별지 제162호서식	월별등록외국인현황(국적별, 체류지역별)	규칙 제82조제1항제18호	
별지 제163호서식	월별출입국관리법위반자처리현황(국적별, 조치별)	규칙 제82조제1항제19호	
별지 제164호서식	월별이중국적자현황	규칙 제82조제1항제20호	
별지 제165호서식	〈삭제〉		
별지 제166호서식	월별사증발급인정서발급현황(국적별, 체류자격별)	규칙 제82조제1항제22호	
별지 제167호서식	과태료처분통지서	규칙 제85조제1항	
별지 제168호서식	과태료부과 및 수납대장	규칙 제85조제1항	
별지 제169호서식	〈삭제〉		
별지 제170호서식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규칙 제85조제2항	

(추 109)

〔별지 제1호서식〕〈개정 99·12·2〉

(앞 쪽)

양쪽 모두 기재 TYPE OR PRINT BOTH SIDES 兩側記載

대한민국 입국신고서/ARRIVAL CARD ①

REPUBLIC OF KOREA 入國申告書 IMMIGRATION SERVICE

뒷면 안내사항을 참조하십시오.

한글성명/Surname/姓	漢字姓名	
Given Names/名		
생년월일/Date of Birth/生年月日 년/Year/年 월/Month/月 일/Day/日	주민등록뒷번호	㉮Male/男 ㉯Female/女
국적/Nationality/國籍	여권번호/Passport No/旅券番號	
한국내주소/Address in Korea/韓國內 住所 (Tel:)		
직업·직장명/Occupation/職業	여행목적/Purpose of visit/旅行目的	
출발지(국가/도시)/出發地 Last City/Port of Boarding	입국편명·선명/入國便名·船名 Flight No./Vessel on Arrival	
공용란(公用欄) Official Use Only OZA12345678E	서명/Signature/署名	

국민구분		외국인구분		경유	행사
국민	재외	외국인	등록	입국	구분

체류자격		체류기간			참가
B1	B2	015	030	090	구분

대한민국 출국신고서/DEPARTURE CARD ②

REPUBLIC OF KOREA 出國申告書 IMMIGRATION SERVICE

REFER TO THE BACK HOW TO FILL UP

한글성명/Surname/姓	漢字姓名	
Given Names/名		
생년월일/Date of Birth/生年月日 년/Year/年 월/Month/月 일/Day/日	주민등록뒷번호	㉮Male/男 ㉯Female/女
국적/Nationality/國籍	여권번호/Passport No/旅券番號	
한국내주소/Address in Korea/韓國內 住所 (Tel:)		
직업·직장명/Occupation/職業	여행목적/Purpose of visit/旅行目的	
목적지(국가/도시)/目的地 Next City/Port of Landing	출국편명·선명/出國便名·船名 Flight No./Vessel on Departure	
공용란(公用欄) Official Use Only OZA12345678D	서명/Signature/署名	

국민구분		외국인구분		경유	사범
국민	재외	외국인	등록	출국	출국

직 업		여행목적			
외국인입국연월일(입국시 기재)					

(추 115)

(뒤 쪽)

Welcome to Korea

ARRIVAL / DEPARTURE CARD FOR VISITORS
IMMIGRATION BUREAU, REPUBLIC OF KOREA
NOTICE FOR FOREIGNERS

1. This form consists of two cards. Please complete both Arrival Card ① and Departure Card ②, inside bold line, when entering Korea.
2. Please type or print legibly with pen in ALL BLOCK LETTERS. USE ENGLISH.
   *Your Name : Write full name as it appears in your Passport, Surname(Family name)first, please.
   *Nationality : As it appears in your passport
3. This Arrival Card and Departure Card must be completed by every visitor including one for each accompanying child.
4. Please keep this card in your passport/travelling document in order to present it to the Immigration Officer on your departure.
5. If you intend to stay in Korea more than 90days, you must register with the Chief of Immigration district office or branch office with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sojourn within 90days from the date of entry.

공용란(公用欄) Official Use Only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신고서(내/외국인 공용)

안 내 사 항

1. 뒷면 굵은선안의 출/입국신고서 내용을 출국시 양쪽 모두 한글 정자로 기재하여 주십시오(재외거주국민은 입국시 양쪽 모두 기재하십시오).
2. 동반자녀도 출/입국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주십시오.
3. 입국신고서 ①은 여권속에 잘 보관하셨다가 귀국시 입국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재외거주국민은 출국신고서 ②를 출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출/입국신고서 양쪽을 절취하거나, 접지 마십시오.
   *동일번호의 출/입국신고서 양쪽은 OCR전산처리되니 분실,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5. 출/입국심사시 여권, 탑승권(출국시), 출/입국신고서를 미리 준비하여 대기선에서 차례를 기다려 주십시오.

공용란(公用欄) Official Use Only

160㎜×120㎜
(인쇄용지(OCR급) 105g/㎡)

〔별지 제2호서식〕〈개정 94·7·20〉

출 국 심 사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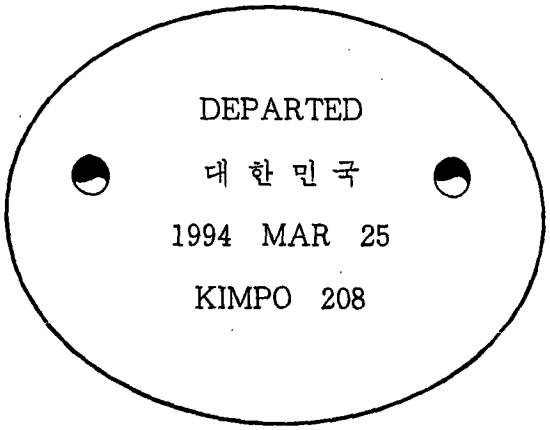

(규격 30㎜×20㎜)

〔별지 제3호서식〕〈개정 94·7·20〉

입 국 심 사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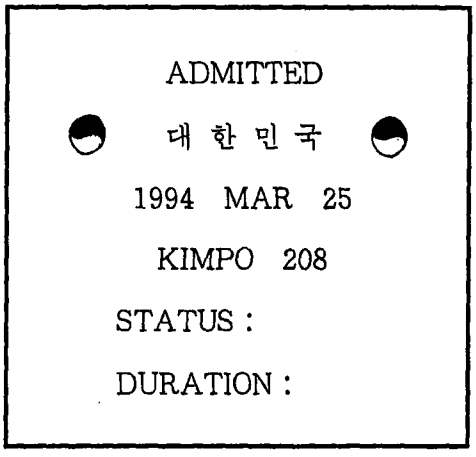

(규격 30㎜×20㎜)

〔별지 제4호서식〕

[한국인 / 외국인] 출입국자 명부 [종합분]

쪽수 :

출입국 항구	출입국 구분	일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마이크로 필름번호	출입국 항구	출입국 구분	일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마이크로 필름번호

23236-07611비
93.3.22 승인

364㎜×25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5호서식〕

승무원등록신고서

등록번호 □□-□□-□□-□□□□

사진 35㎜×45㎜	성명		한자		성별	남 M / 여 F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소속				사원번호	
	직위				입사연월일	
주소					전화번호	
여권번호		여권발급일자			여권유효기간	
등록사항 변경						

신 고 일

신고인 서명·····

○○출입국관리사무소장 귀하

(추 35)

REPORT ON REGISTRATION OF CREW

No. [ ][ ][ ]-[ ][ ][ ]-[ ][ ][ ][ ][ ]

PHOTO 35㎜×45㎜	FAMILY NAME			SEX	M / F
	GIVEN NAMES				
	DATE OF BIRTH		NATIONALITY		
	AIR LINE		POSITION		
ADDRESS IN KOREA			TELEPHONE		
PASSPORT	NO		DATE OF ISSUE		
			DATE OF EXPIRATION		
REGISTRATION CERTIFICATE	NO		PERIOD OF SOJOURN		
	DATE OF ISSUE		REENTRY PERMIT UNTIL;		
REMARKS					

DATE OF REPORT . . .

SIGNATURE OF APPLICANT .....

TO : CHIEF, ○○ IMMIGRATION OFFICE

23236-12411민
93.3.22 승인

150㎜×110㎜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6호서식〕

승무원등록대장

등록번호	국 적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소 속	등록일자	비 고

23236-12511비
93.3.22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추 35)

〔별지 제 7 호서식〕 〈개정 94·7·20〉

승무원등록증

대한민국 승무원 등록증 CREW REGISTRATION CARD

사 진 Photo 35×45㎜	성/Surname	한글이름
	명/Given names	성별/Sex
	국적/Nationality	등록번호/Registration No.
	생년월일/Date of birth	주민등록번호/Personal No.
	발급일/Date of issue	기간만료일/Date of expiry
	발행관청/Authority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

Clief : ○○ Immigration Office

23236-12611일
94. 6. 1 승인

115㎜×76㎜
(인쇄용지(특급) 60g/㎡)

〔별지 제 8 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95·12·1〉

(추 68)

〔별지 제13호서식〕

[출국/입국] 금지·정지자 명부

찍은날짜 : 쪽 :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민등록번호	국 적	조치일자	규제구분 및 요청기관

23236-00211비
93.3.22 승인

380㎜×280㎜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4호서식〕

제 호

보 관 증

성 명

여권 또는 선원수첩번호

수 량

보관사유

비 고

위 (여권/선원수첩)을 출입국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합니다.

년 월 일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

○○○ 귀하

23236-12711일
93.3.22 승인

125㎜×175㎜
(인쇄용지(2급) 60g/㎡)

(추 35)

〔별지 제15호서식〕

보 관 물 대 장

확 인	번 호	보관 일자	성 명	성 별	수 량	보관사유	환가송환 부부부 일 자	수령인

23236-12811비
93. 3. 22 승인

210㎜×297㎜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94·7·20〉

(1 면)

외국인 입국허가서
ENTRY PERMIT FOR ALIENS

사 진 Photo 35×45㎜	허가서 번호 Permit No.장관승인번호 ( )		
	성 Surname		
	명 Given Names		
성별 Sex	생년월일 Date of birth . . .	국적 Nationality	
직업 Occupation	출생지 Place of Birth(City, Country)		

(4 면)

주의사항 NOTICE

1. 이 허가서는 대한민국을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오직 편의를 주기 위하여 발급한 것이며, 소지인의 국적에는 어떠한 변경이나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This Permit is issued to an alien solely with a view to facilitating his /her journey to the Republic of Korea. It is without perjudice to and in no way affects the bearer's nationality.

(추 51)

체류자격 Status	체류기간 Period of sojourn
참고 Annotation	
발급일 Date of issue	유효기간 Date of expiration

발급기관
Authority of issue .....

2. 이 허가서는 발급일로부터 〔☐ 3 ☐ 36〕 개월 안에 대한민국에 〔☐ 한번 ☐ 여러번〕 입국할 수 있습니다.

Good For 〔☐ Single ☐ Multiple〕 journey to the Republic of Korea within 〔☐ 3 ☐ 36〕 months from the date of issue.

23236-00441일 88㎜×125㎜
94.6.1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2 면)

《공용란 FOR OFFICIAL USE ONLY》

(3 면)

《공용란 FOR OFFICIAL USE ONLY》

〔별지 제17호서식〕〈개정 95·12·1〉

查證發給申請書 APPLICATION FOR VISA

公館(申請)番號 :

寫眞 PHOTO 35×45㎜	1. 姓 SURNAME 漢字姓名			
	2. 名 GIVEN NAMES			
	3. 生年月日 DATE OF BIRTH year年 month月 day日	4. 性別 SEX	5. 國 籍 NATIONALITY	6. 出生地 PLACE OF BIRTH
7. 旅券 PASSPORT 種類 CLASSIFICATION 番號 NUMBER 發給日 DATE OF ISSUE 滿了日 DATE OF EXPIRY 發給處 ISSUED BY 外交. 官用. 一般. 其他 DP OF OR				
8. 配偶者 姓名 및 國籍 SPOUSE'S NAME & NATIONALITY				
9. 職場 및 職位 OCCUPATION & TITLE 電話番號 PHONE NO.				
10. 入國 目的 PURPOSE OF ENTRY(EXPLAIN FULLY)				
11. 住所 PRESENT ADDRESS 電話番號 PHONE NO.				
12. 國內 滯留地 ADDRESS IN KOREA 電話番號 PHONE NO.				
13. 國內 連絡處 REFERENCES IN KOREA 電話番號 PHONE NO.				
14. 滯留 豫定期間 DESIRED LENGTH OF STAY				
15. 訪韓事實 PREVIOUS VISIT IF ANY				
16. 最近 5年間 旅行國家 COUNTRIES WHERE YOU HAVE LIVED OR TRAVELLED DURING THE PAST 5YEARS				
17. 同伴家族 ACCOMPANIED FAMILY	國 籍 NATIONALITY	姓 名 NAME	性 別 SEX	生年月日 DATE OF BIRTH

(추 109)

18. 國內滯留家族 FAMILY STAYING IN KOREA				

I declare that the statements made in this application are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and that I will observe the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at I will not engage in any activities irrelevant to the purpose of entry stated herein. Besides, I admit that any false or misleading statement may result in the refusal of a visa, and that possession of a visa does not entitle the bearer to enter the Republic of Korea upon arrival at the port of entry if he/she is found inadmissible.

申請日 DATE OF APPLICATION 申請人 署名 SIGNATURE OF APPLICANT

공 용 란 FOR OFFICIAL USE ONLY

접 수 번 호	
승 인 번 호	
사 증 종 류	복수·단수
체 류 자 격	
체 류 기 간	
고 지 사 항	

접수일시				
처 리 과		결 재		
담 당 자				

23236-00611민
95. 10. 5 승인

210㎜×297㎜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7호의2서식〕〈신설 99·2·27〉

團體査證發給申請書 Application for Group Visa Issuance

(公館 申請番號 :)

代表者 Represen-tative	英字 姓名:surname givenname		漢字 姓名:	
	生年月日 : Date of birth	性別 Sex	國 籍 Nationality	旅券番號 Passport No.
	職場·職位·電話番號 Place of work/post/phone No.		職場 住所 Address of working place	

韓國內 主要觀光 日 程 Tour itinerary in Korea	日 時 Date & Time	觀光計劃 Tour Schedule		

指定旅行社 Travel agent	中 國 China		韓 國 Korea	

團 體 (名 單) Group (lists)	國 籍 Nationality	英字姓名(漢字名) English Names(Chinese Names)	性 別 Sex	生年月日 Date of birth	旅券番號 Passport No.	備 考 Remarks
		( )				
		( )				
		( )				

※ 단체인원이 많을 때에는 별지사용 가능
Seperate papers will be available if there are many group members

申請日字 : 19 . . .
Date of application

旅行社代表人 署名 : _____ 印
Signature by representative of travel agent

23236-17111민
99. 1. 22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

(추 109)

〔별지 제18호서식〕

사 증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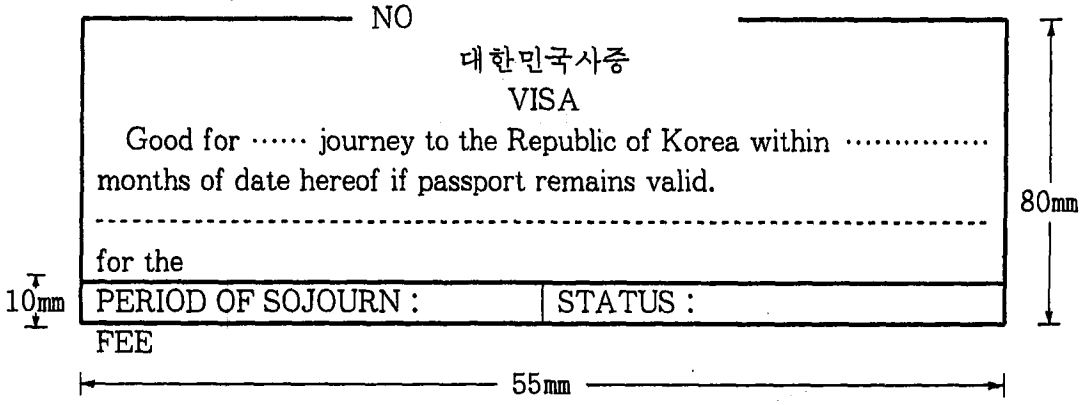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94·7·20〉

사증발급승인요청서

문서번호 수 신 장관(법무부장관, 외무부장관) 발 신 참 조 국장(출입국관리국장, 재외국민영사국장) 제 목 사증발급승인 요청 아래 외국인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오니 심사결정후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SURNAME) 2. 명(GIVEN NAMES) 3. 생년월일 4. 성 별 5. 국 적 6. 출생지(국가명에서 번지까지) 7. 여권의 종류 및 번호 8. 배우자 성명 및 국적 9. 직장 및 직위 10. 입국목적 11. 주소(국가명에서 번지까지) 12. 국내체류지(국가명에서 번지까지) 13. 국내연락처(보증인 또는 거래선의 성명·주소·전화번호) 14. 체류예정기간 15. 과거 방한사실 16. 동반가족(여권상 동반자) 17. 국내 체류가족 18. 공관장 의견 19. 기 타	

23236-00711일
94. 6. 1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추 51)

〔별지 제20호서식〕〈개정 94·7·20〉

법 무 부

MINISTRY OF JUSTICE, THE REPUBLIC OF KOREA

인정번호(CERTIFICATE NO.) : 제 [ ] 호

사 증 발 급 인 정 서
CERTIFICATE FOR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 피초청자(INVITEE)

성 명 NAME IN FULL				한자성명 漢字姓名	
성별 SEX		생년월일 DATE OF BIRTH		국 적 NATIONALITY	
직장 및 직위 PLACE & POSITION OF EMPLOYMENT					

○ 초청자(INVITER)

성 명 NAME IN FULL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성별 SEX		국 적 NATIONALITY		직장 및 직위 OCCUPATION	
주 소 ADDRESS			전화번호 TEL.		

○ 사증발급 인정사항(ITEMS OF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체 류 자 격 STATUS OF SOJOURN		체 류 기 간 PERIOD OF SOJOURN		사증종류 VISA	
근 무 처 WORK AT.				비 고 REMARKS	

출입국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초청자에 대한 사증발급을 인정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invitee is confirmed to be issued a visa, pursuant to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9 of the Immigration Law.

발 급 일 DATE OF ISSUE 19 . . .

법 무 부 장 관 인

MINISTER OF JUSTICE

주의(NOTICE)

1. 이 인정서는 발급일부터 3월내에 사증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This certificate will be invalid if the invitee fails to apply for a visa within 3 months from the date of issue.
2. 이 인정서는 사증발급을 신청할 때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This Certificate should be submitted to the Korean overseas mission in case of application for a visa.

23236-12911일
94. 6. 1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추 51)

〔별지 제21호서식〕〈개정 94·7·20〉

사증발급인정신청서

APPLICATION FOR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신청번호(APPLICATION NO.) : 제 호 (앞 면)

○ 피초청자(INVITEE)

성 명 NAME IN FULL		한자성명 漢字姓名	
성별 SEX	생년월일 DATE OF BIRTH	국 적 NATIONALITY	
직장 및 직위 PLACE & POSITION OF EMPLOYMENT			
주 소 ADDRESS		전화번호 TEL.	

○ 초청자(INVITER)

성 명 NAME IN FULL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성별 SEX	국 적 NATIONALITY	주민등록(외국인등록)번호 REGISTRATION NO.	
직장 및 직위 PLACE & POSITION OF EMPLOYMENT			
주 소 ADDRESS		전화번호 TEL.	

○ 초청사유(REASONS FOR INVITATION) :

○ 초청기간(DESIRED PERIOD OF INVITATION) :

○ 예정 근무처(WORK AT)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pursuant to paragraph 2, article 17 of the provisions for enforcement of the Immigration Law.

신청일 : 19 . . . 신청인 서명(SIGNATURE)

(DATE OF APPLICATION)

공 용 란 FOR OFFICIAL USE ONLY

인 정 사 항	
인 정 번 호	
사 증 종 류	단수·복수
체 류 자 격	
체 류 기 간	
참 고 사 항	

접수번호		결재		
접수일시				
담 당 자				

23236-13011민

94. 6. 1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초청자의 협조사항 (뒷 면)

초청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주소지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피초청자가 불법취업을 하거나 기타 체류자격외 활동을 한 것을 안 때
2. 피초청자의 대한민국내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게 된 때
3. 신원보증서에 명기된 책임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때
4. 기타 피초청자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

(추 51)

〔별지 제21호의2서식〕〈신설 95·12·1〉

사증발급 대상자 명단(LIST TO BE ISSUED VISAS)

(쪽중 쪽)

연 번 Serial No.	신 청 번 호 Application No.	성 명 Name		성 별 Sex
	인 정 번 호 Recognition No.	생 년 월 일 Date of birth	국 적 Nationality	비 고 Remarks

23236-15011일
95. 10. 5 승인

210㎜×297㎜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22호서식〕〈개정 94·7·20〉

단체사증발급대상자 명단(GROUP LIST)

국 적 NATIONALITY	성명 NAME IN FULL	성별 SEX	생년월일 DATE OF BIRTH	직 업 OCCUPATION	여권번호 PASSPORT NO.	비 고 REMARKS (인정서번호)

23236-13111일
94. 6. 1 승인

210㎜×297㎜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23호서식〕

허가번호 No.

법 무 부
MINISTRY OF JUSTICE
조건부입국허가서
THE CONDITIONAL ENTRY PERMIT

출입국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조건부입국을 허가합니다.
You are hereby granted conditional entry permission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pursuant to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13 of the Immigration Law.

○○출입국관리사무소장 ㊞
Chief ○○ Immigration office

1. 성 명 Name in Full		2. 성별 Sex	
3. 생년월일 Date of Birth		4. 국 적 Nationality	
5. 여권번호 Passport No.		6. 선박명 Vessel Name	

(추 68)

7. 조건, 제한 Restrictions or Conditions	허 가 기 간 Period of permit	
	행 동 범 위 Area of movement	
	기 타 Others	

1.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When you are requested to appear, You should appear in designated date and place.
2. 조건부입국허가 기간중에는 입국수속에 필요한 행동이외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You should not do any activities other than those necessary for the procedure of entry during the conditioned period.
3. 조건에 위반할 때에는 이 허가를 취소하고, 예치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Failure to observe any of the above conditions shall cause for immediate rescission of the permit, for confiscation to the national revenue in whole(in part) of bond deposited and be punished pursuant to the Immigration Law.

23236-13211일
93. 3. 22 승인

210㎜×297㎜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24호서식〕

조건부입국허가서발급대장

허가일	허가번호	국적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입국일자 및 탑승선박명	사유	조건부입국허가사항				조치결과	비고
							허가기간	주거제한	보증금예치여부	기타조건		

23236-13311비
93. 3. 22 승인

420㎜×297㎜
(인쇄용지(특급) 70g/㎡)

(추 68)

〔별지 제24호의2서식〕〈신설 94·7·20〉

입국허가신청서(APPLICATION FOR ENTRY PERMIT)

성 Surname				漢字姓名
명 Given Names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성별 Sex	국적 Nationality	출생지 Place of Birth	
여권사항 Passport	번호 No.	발급일 Issued date	만료일 Expiration date	발급지 Place of issue
주소 Address			전화 Tel :	
국내체류지 Address in Korea			전화 Tel :	
직장·직위 Occupation & Title			전화 Tel :	
입국목적 Purpose of Entry		체류예정기간 Desired length of stay		
사증없이 도착한 사유 Reason for arriving without a visa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신청인 Applicant	서 명 Signature		

붙임 : 입증서류

허가사항 For official use only

허가번호		결 재		수입인지 붙일곳
		소장		
허 가 일 자		국장		
체 류 자 격		과장		
체 류 기 간		담당		

23236-12411인
94. 6. 1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24호의3서식〕〈신설 94·7·20〉

외국인입국허가대장

허가일	허가번호	체류자격 / 체류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사증없이 도착한사유	보증인 등 직명·성명	법무부장관 사전승인시 (허가번호)	비고

23236-12511비
94. 6. 1 승인

354㎜×257㎜
(인쇄용지(특급) 70g/㎡)

(추 68)

〔별지 제25호서식〕

출입국관리사무소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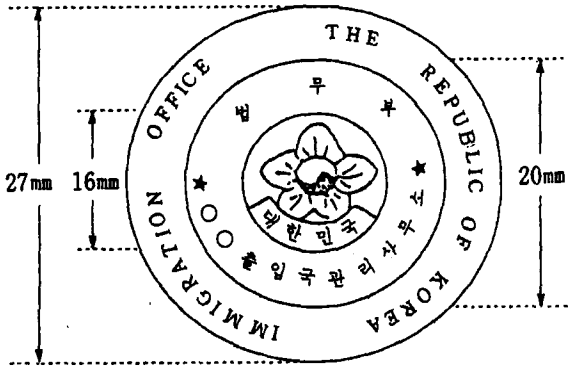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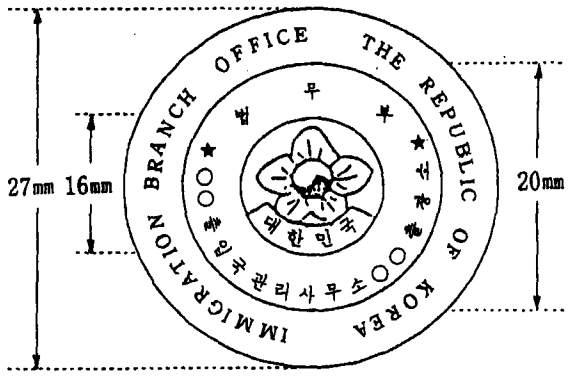

(주 51)

〔별지 제26호서식〕

보 증 금 보 관 증 RECEIPT					
일 금 : Amount			원 Won		
납부자 Depositor	1. 성 명 Name in Full			2. 성별 Sex	
	3. 생 년 월 일 Date of Birth		4. 국 적 Nationality		
	5. 대한민국내주소 Address in Korea				
_____보증금조로 납부한 위의 금액을 정히 보관합니다. It is acknowledged that the above-mentioned amount of bond for _____ has been received. 년 월 일 Date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 Chief, ○○Immigration Office 성 명 : ○○○ ㊞ Official					

23236-04011일
93.3.22 승인

210㎜×148㎜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27호서식〕

번호 No.

년 월 일
Date

보증금국고귀속통지서
NOTICE OF CONFISCATION OF BOND

보증금 납부자 _____ 귀하
To : The Payer of Bond, _____

아래 사람은 ( )의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므로 출입국관리법 제($\frac{13}{66}$)조 제($\frac{3}{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의 ($\frac{\text{전액}}{\text{일부}}$)금 ____원을 국고귀속 처분합니다.

It is hereby notified the bond deposited by the under-mentioned person in the amount of Won has been confiscated to the national revenues ($\frac{\text{in whole}}{\text{in part}}$) pursuant to paragraph ($\frac{3}{2}$), Article ($\frac{13}{66}$) of the Immigration Law by the reason of his/her failure to observe the conditions attached to the ( ).

1. 성 명 Name in Full		2. 성별 Sex	
3. 생 년 월 일 Date of Birth			
4. 국 적 Nationality			
5. 대한민국내주소 Address in Korea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
CHIEF, ○○IMMIGRATION OFFICE

23236-04111일
93.3.22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추 35)

〔별지 제28호서식〕

입국사실확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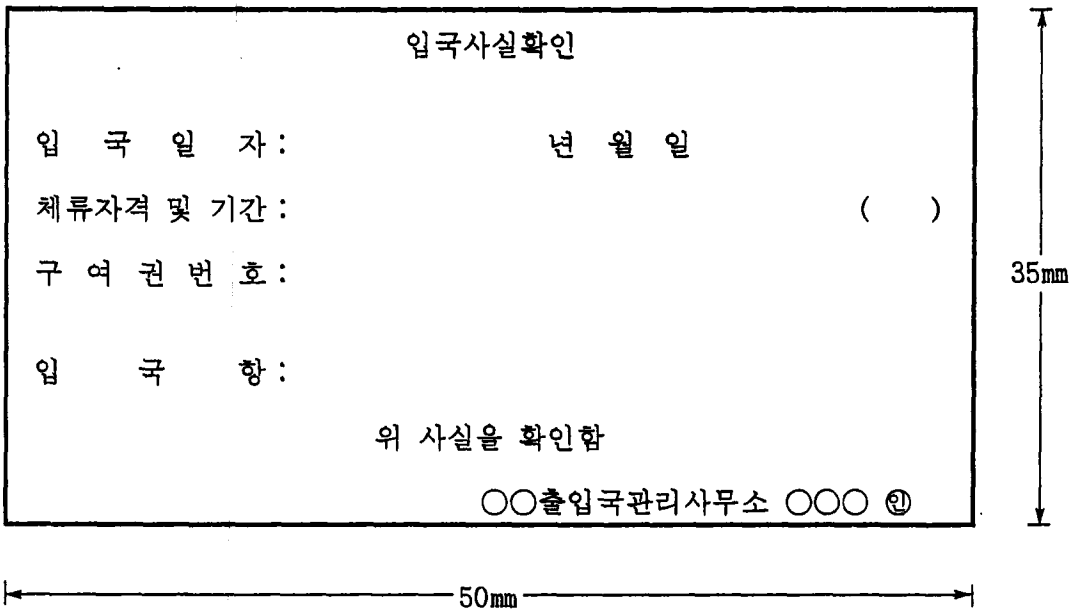

〔별지 제29호서식〕

주한미군지위협정해당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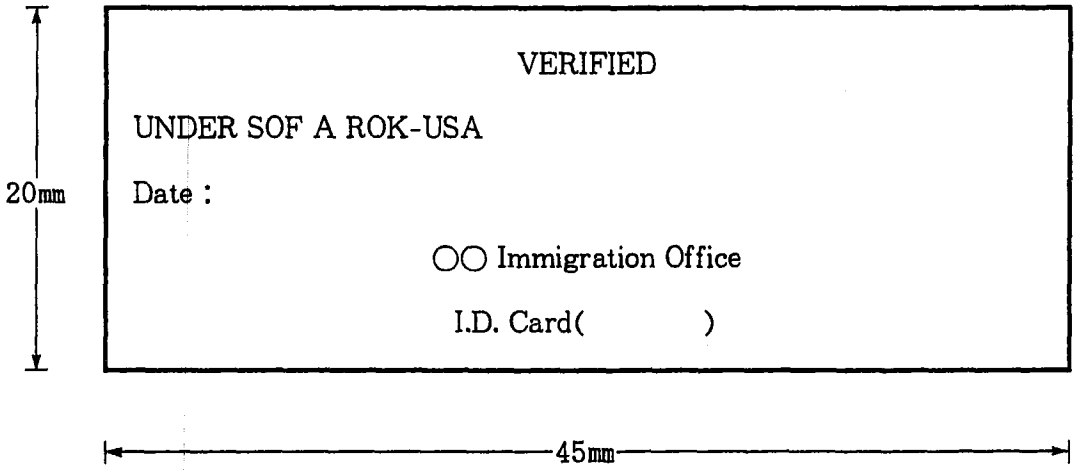

※ ( )안에는 신분증명서의 유효일자를 기재한다.

(추 35)

〔별지 제30호서식〕〈개정 95·12·1〉 (앞 쪽)

上陸許可申請書 APPLICATION FOR ☐CREW(SINGLE, MULTIPLE) ☐EMERGENCY ☐DISASTER LANDING PERMIT		
SURNAME	漢字姓名	
GIVEN NAMES		男 MALE 女 FEMALE
生年月日 DATE OF BIRTH 年 YEAR | 月 MONTH | 日 DAY	國籍 NATIONALITY	
旅券番號 PASSPORT NO.	職業 및 職場名 OCCUPATION	
上陸理由 REASON FOR LANDING	上陸申請期間 PERIOD OF LANDING	
入港便名 FLIGHT NO./ DISEMBARKATION	出港便名 FLIGHT NO./ EMBARKATION	
前寄港地 PORT ARRIVED FROM	次港地 NEXT PORT OF CALL	
I declare that I will faithfully observe the IMMIGRATION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notify to all crew members and passengers that they must observe the LAW, and assume whole responsibility for all the charges which might be occurred by them.		
署名 SIGNATURE OF APPLICANT(AGENT/MASTER)		
公 用 欄 OFFICIAL USE ONLY		
行動範圍 AREA OF MOVEMENT	許可期間 PERIOD OF PERMIT	
制限·條件 RESTRICTIONS OR CONDITIONS		

23236-01521민
95. 10. 5 승인

84㎜×124㎜
(인쇄용지(NCR) 75g/㎡)

(뒷쪽, 앞쪽)

上陸許可書 ☐CREW(SINGLE, MULTIPLE) ☐EMERGENCY ☐DISASTER LANDING PERMIT		
SURNAME	漢字姓名	
GIVEN NAMES		男 MALE 女 FEMALE
生年月日 DATE OF BIRTH 年 YEAR | 月 MONTH | 日 DAY	國籍 NATIONALITY	
旅券番號 PASSPORT NO.	職業 및 職場名 OCCUPATION	
上陸理由 REASON FOR LANDING	上陸申請期間 PERIOD OF LANDING	
入港便名 FLIGHT NO./ DISEMBARKATION	出港便名 FLIGHT NO./ EMBARKATION	
前寄港地 PORT ARRIVED FROM	次港地 NEXT PORT OF CALL	
입국심사인	출국심사인	
行動範圍 AREA OF MOVEMENT	許可期間 PERIOD OF PERMIT	
制限·條件 RESTRICTIONS OR CONDITIONS		

84㎜×124㎜
(인쇄용지 75g/㎡)

(뒷 쪽)

주의사항 NOTICE

1. 이 상륙허가서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발급하였습니다.
   This LANDING PERMIT has been issued pursuant to the IMMIGRATION LAW.

2. 이 상륙허가서는 여권 또는 선원수첩과 함께 항시 휴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다른 권한있는 공무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시하여야 합니다.
   This LANDING PERMIT must be carried with passport or seaman's book at all times and presented to the immigration officer or other authorized official upon request.

3. 이 상륙허가서 소지자는 상륙허가기간 만료전 또는 상륙허가기간 만료전이라도 승무하고 있는 선박등이 출항하기 전에는 승선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이 허가서를 반환해야 합니다.
   The bearer of this LANDING PERMIT must go on board not later than the date of expiration of the permit or before the vessel, etc, which he/she is on board departs from a port although the period of the validity of the permit has not been expired. In this case, the PERMIT must be returned to the KOREAN IMMIGRATION OFFICER.

4. 위 또는 전면에 기재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Failure to observe any of the above or front conditions must be punished pursuant to the IMMIGRATION LAW.

연장허가 EXTENSION OF THE PERIOD

허 가 번 호 PERMIT NO.	만 료 일 EXPIRES ON	허 가 일 PERMITTED ON	확 인 인

(추 68)

〔별지 제30호의2서식〕〈신설 94·7·20〉 (1 면) (4 면)

복수승무원상륙허가서
CREW LANDING PERMIT(MULTIPLE)

사 진 Photo 35×45㎜	허가서 번호 Permit No.	
	성 Surname	
	명 Given Names	
성별 Sex	생년월일 Date of birth . . .	국적 Nationality
직위 Position	여권번호 Passport No.	
승무선박명 Vessel Name	소속회사명 Company Name	
상륙기간 Period of landing 15days(every times)	행동지역 Area of movement	
발급일 Date of issue	유효기간 Validity of permit	

발급기관
Authority of issue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주의사항 NOTICE

1. 이 허가서는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다른 권한있는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시하여야 합니다.

   This LANDING PERMIT shall be carried at all times and presented to the IMMIGRATION OFFICER of other authorized official upon request.

2. 이 허가서로 상륙한 자는 상륙허가기간(15일)이내에 승선하여야 합니다.

   The bearer of this LANDING PERMIT shall go on board not later than 15days from the date of landing.

3. 위 또는 앞면의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처벌받습니다.

   Failure to observe any of the above of front conditions shall be punished pursuant to the IMMIGRATION LAW.

23236-12611일
94. 6. 1 승인

88㎜×120㎜
(인쇄용지(1급) 12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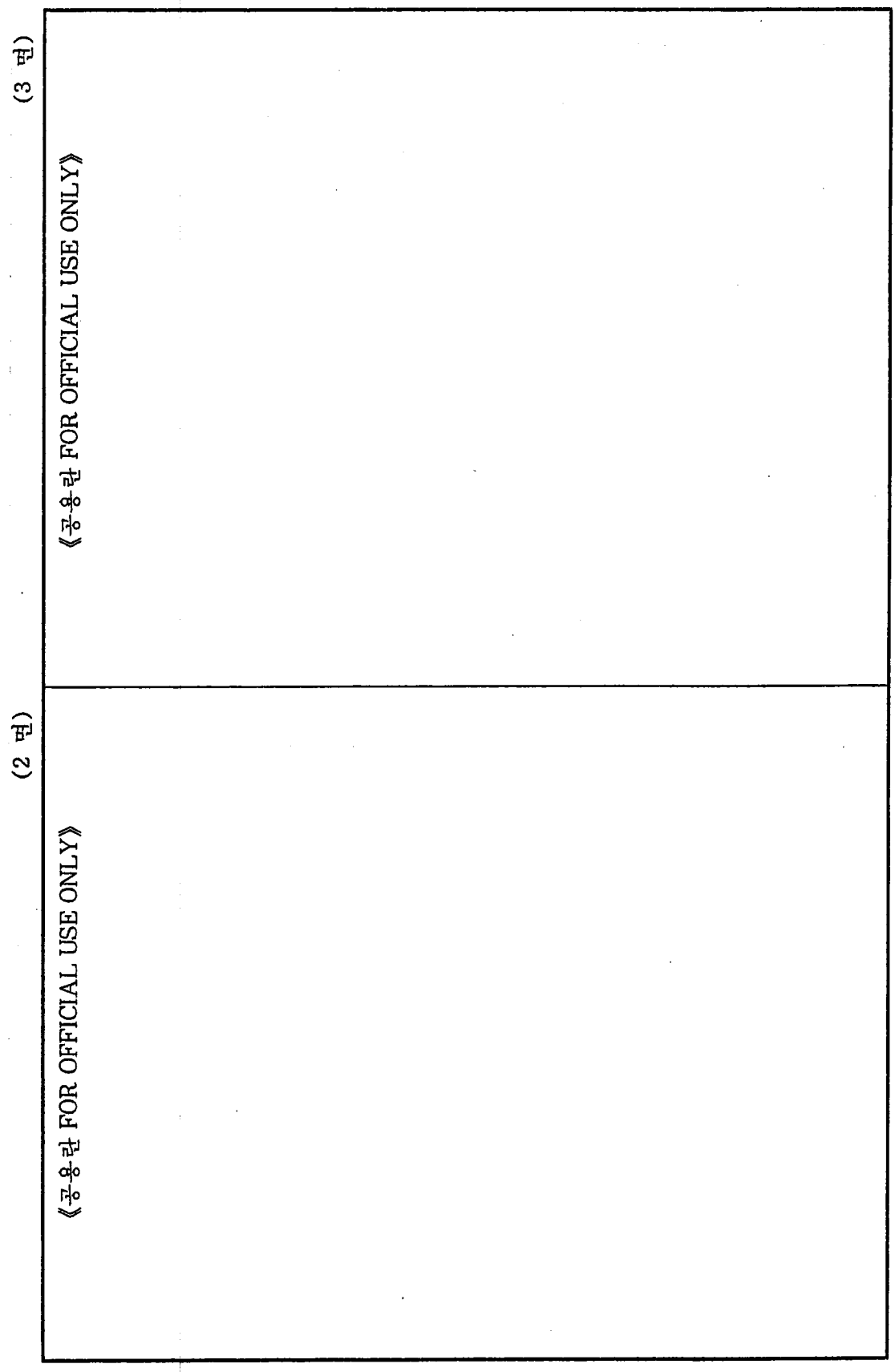

(추 51)

〔별지 제30호의3서식〕 〈신설 94·7·20〉

難民臨時上陸許可(延長)申請書 APPLICATION FOR (EXTENSION) TEMPORARY REFUGE LANDING PERMIT					
姓 FAMILY NAME			漢字姓名		
名 GIVEN NAMES				男 MALE 女 FEMALE	
生年月日 DATE OF BIRTH 年 YEAR	月 MONTH	日 DAY	國籍 NATIONALITY		
旅券番號 PASSPORT NO.			職業 및 職場名 OCCUPATION		
上陸(延長)理由 REASON FOR LANDING (EXTENSION)					
上陸(延長)申請期間 PERIOD OF LANDING(EXTENSION)			入港便名 FLIGHT NO./ DISEMBARKATION		
I hereby apply for temporary refuge landing permit, pursuant to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16-2 of the immigration law.					
申請日 DATE OF APPLICATION			申請人 署名 SIGNATURE OF APPLICANT		
공 용 란 OFFICIAL USE ONLY					
許可期間 PERIOD OF PERMIT			居住 DESIGNATED PLACE OF STAY		
行動範圍 AREA OF MOVEMENT			其他 OTHERS		

23236-12711민
94. 6. 1 승인

182㎜×257㎜
(인쇄용지(2급) 60g/㎡)

(주 51)

〔별지 제30호의4서식〕 〈신설 94·7·20〉

법 무 부
MINISTRY OF JUSTICE

허가번호 NO

사 진 PHOTO 35×45㎜	난민임시상륙허가서 LANDING PERMIT FOR TEMPORARY REFUGE

아래 사람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임시상륙을 허가합니다.

The under mentioned person is hereby granted landing for temporary refuge to enter in the Republic of Korea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pursuant to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16-2 of the Immigration Law.

년 월 일
Date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
Chief, ○○Immigration Office

성 명 Name in Full		성별 Sex	
생 년 월 일 Date of Birth		국 적 Nationality	
여 권 번 호 Passport No.		선 박 명 Vessel Name	

조 건, 제 한 Restriction or Conditions	허 가 기 간 Period of permit	
	거 소 Designated Place of Stay	
	행 동 범 위 Area of Movement	
	기 타 Others	

연장허가 EXTENSION OF THE PERIOD

허 가 번 호 Permit No.	만 료 일 Expires On	허 가 일 Permitted On	확 인 인 Authority

위의 조건에 위반할 때에는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Failure to observe any of the above conditions shall be the cause for immediate rescission of the permit.

23236-12811일
94. 6. 1 승인

182㎜×257㎜
(인쇄용지(2급) 60g/m²)

(추 51)

〔별지 제30호의5서식〕〈신설 94·7·20〉

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

허가일자	허가번호	국 적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직 업	상륙일 선박명	사유	허가기간	거소

23236-12911비
94. 6. 1 승인

364㎜×257㎜
(인쇄용지(2급) 60g/㎡)

(추 51)

〔별지 제31호서식〕

법 무 부

MINISTRY OF JUSTICE

활동중지명령서

SUSPENSION ORDER OF ACTIVITIES

1. 성 명 2. 성 별

Name in Full _____ Sex _____

3. 생년월일 4. 국 적

Date of Birth _____ Nationality _____

5. 직 업 6. 입국일자

Occupation _____ Date of Entry _____

7. 체류자격 8. 체류기간

Status of Sojourn _____ Period of Sojourn _____

9. 주소 및 근무처

Address in Korea

(Place of Employment) _____

중 지 명 령

Suspension Order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활동의 중지를 명합니다. 이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때에는 강제퇴거등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I, Minister of Justice, hereby order immediate suspension of the following activities pursuant to Paragraph 3, Article 17 of the Immigration Law. If the person fail to observe this ORDER, the person is to be punished pursuant to the Law, containing deportation.

활동내용 :

Activities

년 월 일

Date

집행일시

Date of Execution

법무부장관 인

집행관 서명 ㊞

Minister of Justice

Executing Officer

23236-07111일
93. 3. 22 승인

210㎜×297㎜
(인쇄용지(2급) 70g/m²)

(추 51)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97·7·1〉

법 무 부
MINISTRY OF JUSTICE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
○○출입국관리사무소장 귀하

1. 신고대상 외국인 인적사항

연번	국 적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또는생년월일	여권번호	입국일자	체류자격 (체류기간)

2. 신고사항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19 . . .

근무처
직 위
주 소
성 명 ㊞

3. 공용란

비 고	결 재			
	접수일자		소 장	
	접수번호			
	과 장			
	담 당 자			

23236-13411민
97.5.28 승인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97·7·1〉

고용·연수외국인신고처리대장

접수 일자	접수 번호	신고대상외국인 인적사항						신고인 및 근무처	신고 사항	처리 사항	비고
		국적	성 명	외국인등록 번호또는 생년월일	여권 번호	입국 일자	체류자격 (체류기간)				

23236-13511
97.5.28 승인

420㎜×297㎜
(보존용지(1종) 70g/㎡)

(추 86)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97·7·1〉

법 무 부

MINISTRY OF JUSTICE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 청 서 APPLICATION FORM	○GRANTING STATUS OF SOJOURN ○CHANGE OF STATUS OF SOJOURN ○EXTENSION OF SOJOURN PERIOD ○ENGAGE IN ACTIVITIES NOT COVERED BY THE STATUS OF SOJOURN

성 Surname 명 Given names	漢字	국적 Nationality	성별 Sex	남 M 여 F
생년월일 Date of Birth	년 월 일 Year Month Day	직 장 명 Place of Employment	직 위 Position	
본국주소 Home Address		전화번호 Tel. No.		
대한민국내 주소 Address in Korea		전화번호 Tel. No.		
입국일자 Date of Entry		여권번호 Passport No.		외국인등록번호 Alien Registration No.
입국장소 Port of Entry		여권유효기간 Passport Validity		
신청기간 Intended period of Sojourn		신청사유 Reason for Application		

동반자 Dependent in Korea										
성 명 Name in Full										
생년월일 Date of Birth	. . .	성별 Sex	남 M 여 F	. . .	성별 Sex	남 M 여 F	. . .	성별 Sex	남 M 여 F	
관 계 Relation										
비 고 Remarks										

신 청 일 Date of Application	신청인서명 Signature

공 용 란 For official use only

사 증 번 호		허 가 사 항		결 재			
사증발급일자	. . .	번 호		접수일자	. . .	소 장	
사증발급공관		일 자	. . .	접수번호		가 부	
체 류 자 격		자 격		과 장			
체 류 기 간		기 간		담 당 자			

23236-09111민
97.5.28 승인

210㎜×297㎜
(보존용지(2종) 70g/㎡)

(추 86)

〔별지 제35호서식〕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인

체류자격외활동허가
PERMISSION FOR ENGAGING IN ACTIVITIES NOT COVERED BY THE STATUS OF SOJOURN
허가번호
No. :
허가내용
The facts of permit :
허가기간
Valid until :

허가일
Date of permit :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Chief, ○○ Immigration Office

50㎜×50㎜

〔별지 제36호서식〕

체류자격외활동허가서 PERMIT TO ENGAGE IN ACTIVITIES NOT COVERED BY THE STATUS OF SOJOURN		허가번호	No.
		허가일자	DATE
성	Family name	성별 Sex.	생년월일 Date of Birth
명	Given names	남여 MF	. . .
국적 Nationality			
직장명 Place of Employment			
허가내용 The facts of permit		허가기간 Valid until	. . . . .
발급일자 Date of Issue ○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 Chief, ○○ Immigration Office			

23236-07811일
93.3.22 승인

84㎜×120㎜
(인쇄용지(특급) 120g/㎡)

(추 35)

〔별지 제37호서식〕

법 무 부
MINISTRY OF JUSTICE

근무처변경·추가허가신청서
APPLICATION FOR ALTERATION OR ADDITION OF EMPLOYMENT PLACE

성	FAMILY NAME		漢字	성별	남 M
명	GIVEN NAMES			Sex	여 F

생년월일 Date of Birth	년 월 일 Year Month Day	국적 Nationality	
신청사항 Items of Application	신청사유 Reason for Application		
	원근무처 Former Employment Place		
	변경·추가 근무처 Employment Place for Alteration or Addition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신청인서명 Signature

공용란
For Official Use Only

사증번호				결재			
사증발급 일자		허가사항		접수 일자		소장	
사증발급 공관		허가 일자		접수 번호		가부	
체류자격		허가 번호		과장			
체류기간		비고		담당자			

23236-13611승인
93.3.22 승인

210㎜×297㎜
(인쇄용지(2급) 60g/㎡)

(추 35)

〔별지 제38호서식〕

근무처변경·추가허가인

근무처변경·추가허가
PERMISSION FOR ALTERATION OR
ADDITION OF EMPLOYMENT PLACE

허가번호
No. :
허가내용
The facts of permit :

허가일
Date of permit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Chief, ○○ Immigration Office

50㎜×50㎜

〔별지 제39호서식〕

법 무 부
MINISTRY OF JUSTICE

년 월 일
Date

활동범위등제한통지서
RESTRICTION ORDER ON THE
SCOPE OF ACTIVITIES

1. 성 명 Name in Full	2. 성 별 Sex
3. 생년월일 Date of Birth	4. 국 적 Nationality
5. 직 업 Occupation	6. 입국일자 Date of Entry
7. 체류자격 Status of Sojourn	8. 체류기간 Period of Sojourn
9. 주소 및 근무처 Address in Korea(Place of Employment)	

제 한 사 항 및 이 유
Item and Reason of Restriction

1. 주거제한
Restriction of Residence
2. 기타 제한
Other Restrictions
3. 제한이유
Reason for Restriction

년 월 일
Date

집행일시
Date of Execution
법무부장관 인
Minister of Justice
집행관성명
Executing Official
○ ○ ○ ㊞

23236-07211일
93.3.22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추 35)

〔별지 제40호서식〕

체류자격부여인

체류자격부여 GRANT FOR STATUS OF SOJOURN
NO. : The bearer of this passport has been granted the status of sojourn as _____ Date of Issue : Chief, ○○ Immigration Office
Period of Sojourn :

50㎜×50㎜

〔별지 제41호서식〕

체류자격변경허가인

체류자격변경허가 PERMISSION FOR CHANGE OF STATUS OF SOJOURN
NO. : Status of sojourn of the bearer of this passport is amended as _____ Date of Issue : Chief, ○○ Immigration Office
Period of Sojourn :

50㎜×50㎜

(추 35)

〔별지 제42호서식〕

체류기간 연장(갱신)허가인

체류기간 연장허가

PREMISSION FOR EXTENSION
OF SOJOURN PERIOD

NO. :

The period of sojourn is extended

Until _____

Date of Issue :

Chief, ○○ Immigration Office

50㎜×50㎜

〔별지 제43호서식〕

법 무 부

MINISTRY OF JUSTICE

번호 No. 년 월 일 Date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
DISAPPROVAL NOTICE ON THE
EXTENSION OF SOJOURN PERIOD, etc.

성 명 Name in Full		성 별 Sex	
생년월일 Date of Birth		국 적 Nationality	
직 업 Occupation		여권번호 Passport No.	
대한민국내주소 Address in Korea			
출국기한 Deadline for Exit			
비 고 Remarks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신청한 체류기간연장 등에 대하여는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지정된 출국기한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합니다.

You are not permitted to the application for the extension of sojourn period, etc. and requested to leave the Republic of Korea until _____ pursuant to Article 33 of the provisions of the presidential Decree for enforcement of the Immigration Law.

년 월 일
Date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
CHIEF, ○○ IMMIGRATION OFFICE

23236-13711일
93.3.22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추 35)

〔별지 제44호서식〕

법 무 부
MINISTRY OF JUSTICE

출 국 기 한 유 예 신 청 서
APPLICATION FOR POSTPONEMENT OF THE TERMINATION OF DEPARTURE

성 명	Family Name Given Names	漢字	국 적 Nationality	성별 Sex	M F
생 년 월 일 Date of Birth		근 무 처 Place of Employment		직 위 Position	
본 국 주 소 Home Address					
대한민국내주소 Address in Korea				Tel.	
출국예정일 Approximate Date of Departure		출국예정항 Approximate Port of Departure			
신 청 사 유 Reason for Application					

동반자 Dependent												
성 명 Name in Full				성 명 Name in Full				성 명 Name in Full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성별 Sex	M F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성별 Sex	M F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성별 Sex	M F	
관 계 Relation				관 계 Relation				관 계 Relation				
비 고 Remarks				비 고 Remarks				비 고 Remarks				

위와 같이 출국기한 유예를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postponement of the termination of departure.

신 청 일
Date of Application . . .

신청인 서명
Signature _____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귀하
To Chief, ○○ Immigration office

23236-13811민
93.3.22 승인

210㎜×297㎜
(인쇄용지(2급) 60g/㎡)

(추 35)

[별지 제45호서식] 내지 [별지 제47호서식] 삭제 〈97·7·1〉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97·7·1〉

체류기간연장등허가대장

○○출입국관리사무소

연번	외국인 등록번호	성 명	국적	허가일	허가번호	허가구분	허가내용	비고

23236-08211비
97.5.28 승인

390㎜×262㎜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49호서식]

재입국허가대장

허가일	허가 번호	성명	성별	생년 월일	국적	체류 자격	직장명	직위	단수 복수	허가 기간	사유

23236-08311비
93.3.22 승인

420㎜×29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50호서식]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발급대장

발급 번호	발급 일자	성명	성별	생년 월일	국적	불허 사항	출국 기한	출국항 및일자	비고

23236-13911비
93.3.22 승인

420㎜×29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51호서식] 내지 [별지 제54호서식] 삭제 〈95·12·1〉

(추 86)

〔별지 제55호서식〕

출 국 예 고 인

연장불가(FINAL EXTENSION)
You are requested to leave Korea not later than _____.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
Chief, ○○ Immigration Office

70㎜×25㎜

〔별지 제56호서식〕

법 무 부
MINISTRY OF JUSTICE

재 입 국 허 가 신 청 서 APPLICATION FOR PERMISSION FOR REENTRY												□단 수 SINGLE □복 수 MULTIPLE
성 명	Family name Given names			漢字		국 적	Nationality		성별 Sex		남 M 여 F	
생 년 월 일 Date of Birth	. . . Year Month Day			직 장 명 Place of Employment				직 위 Position				
대한민국내주소 Address in Korea												
여 권 번 호 Passport No.		출발예정일 Approximate Date of Departure			. . .		입국예정일 Approximate Date of Entry				. . .	
여 권 유 효 기 간 Passport Validity		출발예정항 Approximate Port of Departure					입국예정항 Approximate Port of Entry					
목 적 지 Destination												
신 청 기 간 Intended Period of Re-entry				신 청 사 유 Reason for Application								
동반자 De pendent	성 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성별 Sex	남 M 여 F		성별 Sex	남 M 여 F		성별 Sex	남 M 여 F		
	관 계 Relation											
	비 고 Remarks											

(추 68)

신 청 일 Date of Application				신청인서명 Signature			
공 용 란 For official use only							
체 류 사 항		허 가 사 항		결 재			
체 류 자 격		번 호		접수일자		소 장	
체 류 기 간		일 자		접수번호		가 부	
외국인등록번호		구 분		과 장			
참 고 사 항		기 간		담 당 자			

23236-02411민
93.3.22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57호서식〕

재 입 국 허 가 인

재 입 국 허 가

REENTRY PERMIT

NO.: Status:

Good for _____ reentry into the Republic of Korea

Until _____,

if passport remains valid.

Date of Issue

Chief, ○ ○ Immigration Office

50㎜×50㎜

(주 68)

〔별지 제58호서식〕 〈개정 95·12·1〉

앞표지(바깥쪽)

재 입 국 허 가 서

PERMIT TO REENTER

THE REPUBLIC OF KOREA

대 한 민 국 법 무 부

MINISTRY OF JUSTICE

THE REPUBLIC OF KOREA

23236-085101일
95. 10. 5 승인

88㎜×125㎜
(인쇄용지(특급) 120g/㎡)

뒷표지(안쪽)

(9 쪽)

재 입 국 허 가 서

REENTRY PERMIT

1. 이 허가서는 소지인에게 여권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게 할 목적으로만 교부되며, 소지인의 국적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This Permit is issued solely with a view to providing the holder with a travel document which can serve in lieu of a passport. It is without prejudice to and in no way affects the holder's nationality.

2. 소지인이 이 허가서를 발급한 국가이외의 국가에 거주를 정한 뒤에 다시 여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거주국의 주무관청에 신청하여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Should the holder take up residence in a country other than that which issued the present document, he/she must, if he/she wishes to travel again, apply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his/her country of residence for a new document.

3. 단수재입국허가서는 1회 입국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복수재입국허가서는 유효기간동안 여러번 입국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집니다.
Single Permit is valid for ONE ENTRY ONLY, meanwhile Multiple Permit is good for MULTIPLE ENTRIES during the period of validity.

— 9 —

23236-085109일
95. 10. 5 승인

88㎜×125㎜
(인쇄용지(특급) 120g/㎡)

(수 68)

(추 68)

앞표지(안쪽)

(2 쪽)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종류/Type

☐ 단수 Single

☐ 복수 Multiple

허가번호/Permit NO.

성/Surname

명/Given name(s)

사 진 PHOTO 35㎜×45㎜

생년월일/Date of birth 성별/Sex 등록번호/Registration No.

국적/Nationality 출생지/Place of birth

발급일/Date of issue 유효기간/Period of Validity

대한민국내 주소/Address in Korea

발급기관/Authority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

Chief, ○○ Immigration Office

23236-085102일
95. 10. 5 승인

125㎜×88㎜
(인쇄용지(특급) 70g/㎡)

(3 쪽)

동 반 자 녀 (CHILDREN)

성 명 Name in Full	성 별 Sex	생년월일 Date of birth

23236-085103일
95. 10. 5 승인

125㎜×88㎜
(인쇄용지(특급) 70g/㎡)

(4~5쪽)

재입국허가기간 연장

EXTENSION OF REENTRY PERMIT

— 4 —

23236-085104일 125㎜×88㎜
95. 10. 5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6~8쪽)

사 증

VISAS

— 6 —

23236-085106일 125㎜×88㎜
95. 10. 5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10 쪽)

This permit contains 10 pages, inclusive of cover.

— 10 —

23236-0851010일 125㎜×88㎜
95. 10. 5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59호서식〕

재입국허가확인인

법무부회신 번호 년 월 일
일자

재입국허가확인
VERIFICATION OF REENTRY PERMIT

체류자격
Status of Sojourn
재입국허가일
Date of Approval
재입국허가만료일
Valid Until
여권 재발급으로 인하여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공관인)
(영사서명)

35mm
50mm

〔별지 제60호서식〕

법무부회신 번호
일자

재 입 국 허 가 확 인 서
VERIFICATION OF REENTRY PERMIT

성 Family name				성별 SEX	남 M 여 F
명 Given names					
생 년 월 일 Date of Birth		국 적 Nationality			
체 류 가 격 Status of Sojourn		재입국허가일 Date of Approval		재입국허가 만 료 일 Valid Until	
대한민국내주소 Address in Korea					
사 유 Reasons					
동 반 자 Dependent	성 명 Name in Full				
	성 별 Sex				
	생 년 월 일 Date of Birth				
	관 계 Relation				

위 사항을 확인합니다.
I hereby verify the above-mentioned facts.
Date . . .
(공관인)
(영사서명)

23236-14011일
93.3.22 승인

210㎜×297㎜
(인쇄용지(2급) 60g/㎡)

(추 68)

〔별지 제61호서식〕

법 무 부
MINISTRY OF JUSTICE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서 APPLICATION FOR PERMISSION FOR EXTENDING OF REENTRY PERMIT						☐단 수 SINGLE ☐복 수 MULTIPLE
성 명	Family name Given names	漢字	국 적	Nationality	성별 Sex	남 M 여 F
생년월일 Date of Birth	. . . Year Month Day	직장명 Place of Employment		직위 Position		
대한민국내주소 Address in Korea						
체재지 Present Address						
여권번호 Passport No.		여권유효기간 Passport Validity				
재입국허가번호 Reentry Permit No.		허가일 Date of Permit		유효기간 Date of Expiration		
연장신청기간 Intended Period of Extension		연장신청사유 Reason for Application				

동반자 Dependent									
	성명 Name in Full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성별 Sex	남 M 여 F		성별 Sex	남 M 여 F		성별 Sex	남 M 여 F
	관계 Relation								
	비고 Remarks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신청인서명 Signature

공 용 란 For official use only

체류사항		허가사항		결재			
체류자격		번호		접수일자			
체류기간		일자		접수번호		가부	
외국인등록번호		구분					
참고사항		기간		담당자			

23236-14111민
93.3.22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추 35)

〔별지 제62호서식〕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인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PERMISSION FOR EXTENDING OF
REENTRY PERMIT

No. Status :
( ) reentry permit extended
until _____,
if passport remains valid.

년 월 일
(공관인) (영사서명)

35㎜

50㎜

〔별지 제63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19 . . .
수 신: 법무부장관
참 조: 체류심사과장
경 유: 외무부장관 발 신: 인
제 목: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 승인요청

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 승인을 요청합니다.

성			한 자	국 적	성별	남	
명						여	
생년월일		직장명		직위			
대한민국내주소							
체재지							
여권번호			여권유효기간				
재입국허가번호		허가일		유효기간			
연장신청기한		연장신청사유					
동반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남여		남여
	관계						
	비고						
붙임서류							

23236-14211일
93.3.22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추 35)

[별지 제64호서식] 〈개정 97·7·1〉

외 국 인 등 록 신 청 서

APPLICATION FOR ALIEN REGISTRATION

○○출입국관리사무소장
TO : Chief, ○○Immigration Office

성명 및 성별 Name in full and Sex	(姓 Surname) (名 Given names) □남 M □여 F 漢字名( ) Official Use			PHOTO 35㎜×45㎜
국적 Nationality	생년월일 Date of Birth . . . Year Month Day	출생지 Place of Birth	직업 Occupation	
여권사항 Passport	번호 Number	발급일자 Issuing Date . . .	유효기간 Expiration Date . . .	

사증 사항 Visa	번호 Number	발급일자 Issuing Date . . . Year Month Day	발급공관 Issuing Authority	체류자격 : Status of Sojourn 체류기간 : Period of Sojourn	입국일자 : Date of Entry 입국장소 : Port of Entry

근무처사항 Place of Occupation	명 칭 Name	직위 및 담당업무 Position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
본 국 의 주 소 Address in Home Country				☎
대한민국내체류지 Address in Korea	특별(광역)시 구 동 번지 도 시, 군 구, 군, 읍, 면 동, 리 번지			☎
세 대 주 명 Name of Householder		세대주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Householder		

동반자 Dependent in Korea	성 명 Name in Full	성 별 Sex	생 년 월 일 Date of Birth	관 계 Relation	비 고 Remarks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등록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registration as above-mentioned in accordance to the Article 31 of the Immigration Law.

신 청 일 Date of Application　　신 청 인 Applicant　　서 명 Signature

공 용 란(For official use only)

접수일자		특이사항		외국인등록번호	등록증발급	지문채취	기록표작성	등록표송부
접수번호				. . . . . -				
담 당				. . . . .				

23236-08811비
97.5.28 승인

210㎜×297㎜
(보존용지(2종) 70g/㎡)

(추 86)

〔별지 제65호서식〕

외국인등록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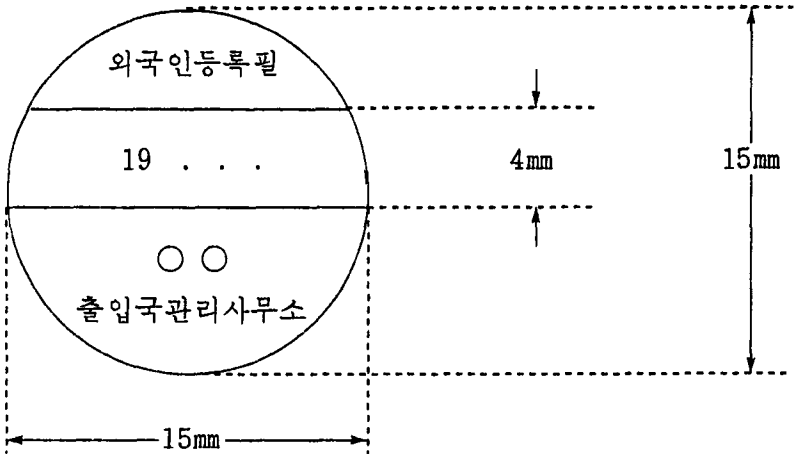

〔별지 제66호서식〕

등 록 외 국 인 대 장

○○출입국관리사무소

번호	등록연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비 고

23236-14411비
93.3.22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추 35)

[별지 제67호서식] 〈개정 97·7·1〉 (앞 쪽)

사 진 PHOTO 20㎜×28㎜	외 국 인 등 록 증 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 등록번호 Reg. NO. 성 명 Name _____ 국 적 Nationality _____

입국일자 Date of Entry _____ 체류자격 Status _____ 체류기간 Period of Stay _____

여권번호 Pass. NO. _____ 직 업 Occupation _____

체류지 Address _____

19 . .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
CHIEF, ○○IMMIGRATION OFFICE

23236-14511비
97.5.28 승인

86㎜×54㎜
(PVC 0.76㎜T)

(뒷 쪽)

등록사항변경·추가란

일 자	구 분	내 용	허가기관	확인자

기 간 연 장	1	2	3	4	5	6

(추 86)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97·7·1〉

등록외국인기록표

①외국인등록번호				
②영자성명(대만인 한글표기)				한자성명
③성 별 남 : M 여 : F	④생년월일		⑤국 적	⑥지문채취번호
⑦여권사항 번호	발급일	만료일	⑧직 업	⑨전화번호
⑩출생국명			⑪특이사항	⑫마이크로필름번호
⑬대한민국내체류지 도 시, 군 구, 군, 읍, 면 동, 리 번지	특별(광역)시 구 동 번지		등록일(체류지변경일)	

⑭대한민국내체류 가족사항(관계란 : 배우자 : 1, 부모 : 2, 자녀 : 3, 기타 : 9)

관 계	성 명	성 별	외국인등록번호
			– –

⑮체류자격사항구분란(구분란 : 사증발급 또는 자격부여 : 1, 자격변경 : 2, 체류기간연장 : 3, 갱신 : 4, 출국기한연장 : 5, 기타 : 9)

구분	체류자격	만료일	허가일	허가번호	구분	체류자격	만료일	허가일	허가번호
				– –					– –

⑯근무처사항(구분란 : 근무처지정 : 1, 변경 : 2, 근무처추가 : 3, 자격외활동 : 4, 기타 : 9) ※ 근무처지정시는 허가번호 없음

구분	근무처명칭	직위또는담당업무	만료일	허가일	허 가 번 호
					– –

⑰재입국허가사항(구분란 : 단수 : S, 복수 : M, 재입국기간연장 : E)

구분	만 료 일	허 가 일	허 가 번 호	구분	만 료 일	허 가 일	허 가 번 호
			– –				– –

⑱주요활동 및 신분변동사항(구분란 : 출생 : 1, 입국 : 2, 등록자격변경 : 3, 외국국적취득 : 4, 등록면제 : 5, 출국 : 6, 사망 : 7, 한국국적취득 : 8, 국민처우 : 9, 기타 : 0)

구분	일 자	구분	일 자	구분	일 자	구분	일 자	구분	일 자	구분	일 자

⑲범법사항(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 위반사항)

범법 내용	처벌 구분	처벌 일자	조치 구분	조치 일자	조치 근거	범법 내용	처벌 구분	처벌 일자	조치 구분	조치 일자	조치 근거

⑳활동범위제한, 출입국규제, 체류기간연장제한등 행정제재, 국적정리관계, 사업자등록번호, 기타 참고사항

23236-14611비
97.5.28 승인

210㎜×297㎜
(보존용지(1종) 120g/㎡)

(추 86)

[별지 제69호서식] 〈개정 97·7·1〉

외 국 인 등 록 표

외국인등록번호						사 진 35㎜×45㎜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국 적		여권번호		
입국일자		체류자격		체류기간		
직 업			전화번호			
세대주명				세대주와의 관계		
등록일자		등록체류지				
작성기관						㊞

등 록 사 항 변 경 기 재

변경일자	변경내역			통보기관	확인인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체 류 지 변 경 사 항

등록표대장번호	주 소 (통/반)	전화번호	전 입	변동사유
	(/)			
	(/)			
	(/)			

경유기관	1	2	3	4	5	6	7

비 고

23236-03011비
97.5.28 승인

210㎜×297㎜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70호서식]

외국인등록대장

○○○시·군·구

번 호	등록일자	외국인등록번호	국 적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체류자격 체류기간	비 고

23236-02911비
93.3.22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71호서식] 〈개정 97·7·1〉

외국인등록증발급대장

○○출입국관리사무소

번 호	발급일자	외국인등록번호	국 적	성 명	체류자격 체류기간	비 고

23236-14711비
97.5.28 승인

210㎜×297㎜
(보존용지(1종) 70g/㎡)

(추 86)

〔별지 제72호서식〕

법 무 부
MINISTRY OF JUSTICE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신청서
APPLICATION FOR ISSUANCE(REISSUANCE) OF REGISTRATION CERTIFICATE

성명	FAMILY NAME GIVEN NAMES	漢字		성별 Sex	남 M 여 F
생년월일 Date of Birth	. . . Year Month Day		국적 Nationality		
본국주소 Home Address			직위 Position		
대한민국내주소 Address in Korea					
입국일자 Date of Entry	. . .		여권번호 Passport No.		
입국장소 Port of Entry			여권유효기간 Passport Validity		
신청사유 Reason for issuance of Registration Certificate					

동반자 Dependent	성명 Name in Full									
	생년월일 Date of Birth	. . .	성별 Sex	남 M 여 F	. . .	성별 Sex	남 M 여 F	. . .	성별 Sex	남 M 여 F
	관계 Relation									
	비고 Remarks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 . . 신청인서명 Signature

공 용 란 For official use only

사증번호		등록번호		결 재			
사증발급일자		등록일자		접수일자	. . .	소 장	
사증발급공관	. . .	비 고		접수번호		가 부	
체류자격				과 장			
체류기간				담당자			

23236-14811민
93. 3. 22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추 35)

〔별지 제73호서식〕〈개정 99·2·27〉

법 무 부
MINISTRY OF JUSTICE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REPORT ON ALTERATION IN MATTERS OF ALIEN'S REGISTRATION

성 Surname 명 Given names	漢字		성별 Sex	남 M 여 F
생년월일 Date of Birth	Year.Month.Day	국적 Nationality		
변경사항 Items of Alteration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 . .		신청인서명 Signature		

공 용 란 For official use only

사증번호		등록번호		접수일자		결재		
사증발급일자		등록일자		접수번호				
사증발급공관		비 고		처리과				
체류자격				담당자				
체류기간								

23236-14911민
99.1.22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추 109)

[별지 제74호서식] 〈개정 97·7·1〉

체 류 지 변 경 신 고 서
REPORT ON ALTERATION OF RESIDENCE

성	Surname	漢字		성 별	남 M
명	Given names			Sex	여 F
생 년 월 일 Date of Birth			국 적 Nationality		
전 체 류 지 Former Address					
신 체 류 지 New Address			전화번호 Tel		
외국인등록번호 Registration No.			등 록 일 자 Date of Registration		
동반자 Dependents in Korea	성 명 Name in Full				
	생 년 월 일 Date of Birth				
	성 별 Sex				
	관 계 Relation				
	등 록 번 호 Registration No.				
	비 고 Remarks				

신 고 일
Date of Report . . .

신고자 성명
Signature of applicant

위와 같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report on alteration of residence has made as above.

년 월 일
Date

○○(시·구청·읍·면)장 ㊞
Issuing Authority

23236-15011민
97.5.28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추 86)

〔별지 제75호서식〕〈개정 95·12·1〉

체류지변경신고필인

신 고 필

(규격 8㎜×5㎜)

〔별지 제76호서식〕〈개정 94·7·20〉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년 월 일 수 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발 신 인 제 목 체류지 변경통보					
성 FAMILY NAME		漢 字 姓 名			
명 GIVEN NAMES			성 별	남·여	
생 년 월 일		국 적			
등 록 번 호		등 록 일 자	. . .		
체 류 지 변 경 신 고 번 호		체 류 지 변 경 일 자	. . .		
전 체 류 지					
신 체 류 지					

동 반 자										
성 명										
생 년 월 일	. . .	성별	남 여	. . .	성별	남 여	. . .	성별	남 여	
관 계										
등 록 번 호										
비 고										

23236-15111일
94.6.1 승인

210㎜×297㎜
(인쇄용지(2급) 60g/㎡)

(주 68)

(규 35)

〔별지 제77호서식〕

번 호 일자 . . . 외국인등록증보관증 ○○○ 귀하 귀하의 외국인등록증을 정히 보관합니다. (체류기간 만료일: . . .) ○○출입국관리사무소 직 급: 성 명: ㊞	No. Date . . . RECEIPT To : It is hereby acknowledged that the Registration Certificate has been kept in the custody of the office. (Valid until :) (Signatur of officer in charges) ○○ Immigration office
주의 : 입국일부터 14일이내에 외국인등록증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NOTICE : You shall get the Registration Certificate back from the immigration officer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of your entry.

23236-15211일
93.3.22 승인

250㎜×175㎜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78호서식〕

외국인지문원지

國籍 Nationality									
姓名 Name in full							男① 女② Male Female		
生年月日 Date of Birth									
本籍 Home address									
大韓民國內住所 Address in Korea									

분류						
분류	좌					
	우					

寫眞

PHOTO

35㎜×45㎜

좌수회전인상									
시지		중지		환지		소지		무지	
우수회전인상									
시지		중지		환지		소지		무지	
좌수평면인상				우수평면인상					
무지				무지					

23236-01611비
93.3.22 승인

210㎜×210㎜
(인쇄용지(특급) 260g/㎡)

지문수배	국서명	수배번호	수배연월일	죄명	발견통보연월일	신장	m Cm	특징	
						체격	비대,보통,야윔		
						혈액형			
						머리색			

수형사항							
선고를 받은성명	선고 연월일	선고관서	죄명	형명형기	집행관서	출소 연월일	비고

검찰 및 사법경찰처분사항					
처분을 받은성명	죄명(건명)	처분별	처분관서	처분 연월일	비고

대조경력		작성					참조번호	제 호		
년 월 일 서 대조			작성연월일	서기 년 월 일				접수 년 월 일		
년 월 일 서 대조			작성관서					접수 년 월 일		
년 월 일 서 대조			작성번호	제 호			접수	접수자인	분류자인	검사자인
년 월 일 서 대조			작성사유							
년 월 일 서 대조			작성자인	책임자인	관서인					

(추 35)

〔별지 제79호서식〕

외국인지문원지작성대장

작 성 연월일	국 적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권번호	작성사유	비 고

23236-01911비
93.3.22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80호서식〕

법무부 ○ ○ 출입국관리사무소
(전화번호)

년 월 일

문서번호 :
수 신 : 경찰청장
참 조 : 감식과장
제 목 : 지문채취자 통보

발신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

작성번호 작성연월일	국 적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체류자격 작성자명	지문번호	비 고
						....	
						....	
						....	
						....	
						....	
						....	
						....	

붙임 : 외국인 지문원지 매

23236-02211일
93.3.22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추 35)

〔별지 제81호서식〕 내지 〔별지 제85호서식〕 삭제 〈99·2·27〉

〔별지 제86호서식〕

용의사실인지보고서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국 적

대한민국내주소

용의사실

○○출입국관리사무소	주 무	과 장	소 장
제 호			
년 월 일 접수	담당자		

23236-03211일
93.3.22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86호의2서식〕 〈개정 97·7·1〉

사 건 부

사건 제 호			
접 수		년 월 일	
구 분		인지 또는 로부터 인수	
담 당		직 급	성 명
용 의 자		국 적 성 명 생년월일 주거(소)	체류자격 (남, 여) 직 업 (전화 :)
죄 명		출입국관리법 제 조 항 위반	
	보 호	명 령 서 발 부: 년 월 일	보 호 기 간: 년 월 일까지
		보 호 장 소:	보 호 기 간 연 장: 년 월 일까지
		보 호 통 지: 년 월 일	강제퇴거를위한보호: 년 월 일
		보호에대한이의신청: 년 월 일	보 호 해 제: 년 월 일

(추 109)

처분	강제퇴거	명령서발부: 년 월 일	이의신청: 년 월 일
		집행: 년 월 일	송환국:
	출국명령	명령서발부: 년 월 일	출국기한: 년 월 일까지
		출국일자: 년 월 일	출국항:
	출국권고	권고서발부: 년 월 일	출국권고기한: 년 월 일까지
		출국일자: 년 월 일	출국항:
	통고처분	통고서발부: 년 월 일	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통고금액: 만원	납부일자: 년 월 일
	처분후조치	자격외 활동, 근무처변경(추가), 자격부여, 자격변경, 기간연장, 외국인등록, 체류지변경, 기타	
	과태료	통지서발부: 년 월 일	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부과금액: 만원	납부일자: 년 월 일
	고발	일자: 년 월 일	사유:직고발, 불이행
		송치관서:검찰청(지청)	결과:
	타관이송	년 월 일 사무소(출장소), 외국인보호소	
	기타	년 월 일 통고처분면제, 무혐의, 소재불명으로 사건종결	
제출물		제출물:	제출일자: 년 월 일
		환부물:	환부일자: 년 월 일
행정제재		입국금지(사증규제) : 년	: 년 월 일
비고		○입국일자: 년 월 일 ○불법체류기간: 년 월 일 ○동반가족: 명 ○출국선박등: 편	

23236-15211일
97.5.28 승인

210㎜×297㎜
(보존용지(1종) 70g/㎡)

(추 109)

〔별지 제87호서식〕〈개정 95·12·1〉

제 호

귀하 법 무 부 년 월 일

To: MINISTRY OF JUSTICE Date of Issue

출 석 요 구

SUMMONS

귀하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사건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년 월 일 시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 및 도장(여권, 외국인등록증) 그리고 아래 증거자료와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You are hereby requested to appear at ○○ immigration office by the ___th of ___. ___, in connection with a suspected case of violation of the Immigration Law.

Besides, you are requested to carry such documents as the summons, passport, alien registration certificate, corroborative facts, and other necessary evidence including the following ones when appearing at this office.

1.

2.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전화)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call ○○immigration office at - for further information.

담당공무원 ○○○

Officer in charge

○○출입국관리사무소장 ㊞

Chief, ○○Immigration Office

23236-03311일
95. 10. 5 승인

95㎜×150㎜
(인쇄용지(2급) 60g/㎡)

(추 109)

〔별지 제87호의2서식〕 〈신설 95·12·1〉

제 호

법 무 부

귀하 MINISTRY OF JUSTICE 년 월 일

To. Date of Issue

참고인 출석요구

SUMMONS FOR REFERENCE

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사건에 관하여 참고인으로 문의할 일이 있으니 년 월 일 시까지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 및 도장(여권, 외국인등록증) 그리고 아래 증거자료와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You are hereby requested to appear as a reference at ○○ immigration office by the ___th of _____, _____, in connection with a case of violation of the Immigration Law.

Besides, you are requested to carry such documents as the summons, passport, alien registration certificate, corroborative facts, and other necessary evidence including the following ones when appearing at this office.

1.

2.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 출입국관리사무소(전화)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call ○○ immigration office at — for further information.

담 당 공 무 원 ○○○

Officer in charge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

Chief, ○○ Immigration Office

23236-15311일
95. 10. 5 승인

95㎜×150㎜
(인쇄용지(2급) 60g/㎡)

(추 68)

〔별지 제88호서식〕

출석요구서발급대장

발급번호	발급일자	성 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대한민국내 주 소	발급사유	출석일시	발급자	확인	비고

23236-03411비
93.3.22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89호서식〕〈개정 95·12·1〉 (갑)

용 의 자 신 문 조 서	
용의자	
위 사람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용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보호소)에서 사법경찰관 은 사법경찰	
리 를 참여하게 하고 용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하다.	
문	용의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본적, 주소, 직업등을 말하시오.
답	성명은 성별은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은
	본적은
	대한민국내 주소는 (통 반)
	직업은 (전화)
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신문에 대하여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	
는 권리가 있음을 알린 즉 신문에 따라 진술하겠다고 대답하다.	
문 용의자는 조사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23236-03531일
95.10.5 승인

210㎜×297㎜
(인쇄용지(2급) 60g/㎡)

(추 68)

용의자신문조서

(을)

용의자신문조서

(병)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읽어 드린 바
진술한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날인(지장)하게 하다.
진 술 자
통역한 자
년 월 일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주사 ○○○㊞
출입국관리서기 ○○○㊞

(추 35)

〔별지 제90호서식〕〈개정 95·12·1〉 (갑)

참 고 인 진 술 조 서			
성 명		성 별	
생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국 적		직 업	(전화)
대한민국내주소			(통 반)
용의자 에 대한 용의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보호소)에서 임의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23236-03631일
95.10.5 승인

210㎜×297㎜
(인쇄용지(2급) 60g/㎡)

참 고 인 진 술 조 서

(을)

(추 68)

참 고 인 진 술 조 서

(별)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 읽어 드린 바 진술한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날인(지장)하게 하다.
진 술 자
통역한 자
년 월 일
○○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주사 ○ ○ ○ ㊞
출입국관리서기 ○ ○ ○ ㊞

〔별지 제91호서식〕

제 출 물 조 서
.....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용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출입국관리주사 ○○○은 출입국관리서기 ○○○를 참여하게 하고 별지목록의 물건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게 하다.
제 출 경 위
년 월 일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주사 ○ ○ ○ ㊞ 출입국관리서기 ○ ○ ○ ㊞

23236-03711일
93.3.22 승인

210㎜×297㎜
(인쇄용지(2급) 60g/㎡)

(추 35)

〔별지 제92호서식〕

제 출 물 목 록						
물건 번호	품 목	수 량	특 징	소지자 또는 제출자의 주소와 성명	소 유 자 의 주소와 성명	비 고

23236-03811일
93.3.22 승인

210㎜×297㎜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93호서식〕

제출물보관대장

보관 번호	제출 일자	제 출 자				품명	수량	특징	제출 사유	반환 일자	수령인 서명	비고
		성명	생년 월일	국적	대한민국 내 주 소							

23236-03911비
93.3.22 승인

420㎜×29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94호서식〕 〈개정 99·2·27〉

보호명령서발부신청서

1. 용의자 인적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국 적		직 업	
대한민국내주소			

2. 신청내용

보 호 장 소	
보 호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보 호 사 유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명령서의 발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년 월 일

○○출입국관리사무소장 귀하 출입국관리공무원 ㊞

(출장소)

비 고	보호명령서발부번호 :	결재	가 · 부	
			담당자	
붙허사유				

23236-15311일
99.1.22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추 109)

〔별지 제95호서식〕〈개정 99·2·27〉

번호 No.

법 무 부

MINISTRY OF JUSTICE

년 월 일
Date

보 호 명 령 서
DETENTION ORDER

1. 성 명 Name in Full _____ 성 별 Sex _____

2. 생년월일 Date of Birth _____

3. 국 적 Nationality _____ 4. 직 업 Occupation _____

5. 대한민국내주소 Address in Korea _____

위 사람을 출입국관리법 제51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호할 것을 명합니다. 보호된 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은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Pursuant to Article 51, Article 63 of the Immigration Law, the above mentioned person is hereby ordered to be detained as mentioned hereinafter. An objection can be filed against the detention with the Minister of Justice pursuant to Article 55 of the Immigration Law.

1. 보호의 사유 Reason for Detention		
2. 보호장소 Place of Detention		
3. 보호기간 Period of Detention	부터 from	까지 to
비 고 Remarks		

○○출입국관리사무소장 ㊞
(출장소)
CHIEF, ○○IMMIGRATION OFFICE
집행자 ㊞
Executive officer:

23236-15411일
99.1.22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추 109)

[별지 제96호서식] 〈개정 97·7·1〉

보 호 명 령 서 발 부 대 장

발부 번호	발부 일자	성 명	생년 월일	국적	보호 사유	보호 기간	피 통 지 자				비고
							성 명	생년 월일	국적	대한민국내 주 소	

23236-15511비
97.5.28 승인

420㎜×297㎜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97호서식]

번 호	

법 무 부
보 호 의 뢰 서

성 명		성 별	
생 년 월 일			
국 적		직 업	
대한민국내주소			

위 사람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호를 의뢰합니다.

다 음

1. 보호의뢰사유	
2. 보 호 장 소	
3. 보 호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

○○○ 귀하

23236-15611일
93.3.22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98호서식〕

번호 No.

법 무 부
MINISTRY OF JUSTICE
긴 급 보 호 서
URGENT DETENTION ORDER

성 명 Name in Full		성 별 Sex	
생 년 월 일 Date of Birth			
국 적 Nationality		직 업 Occupation	
대한민국내주소 Address in Korea			

위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긴급보호할 것을 명합니다.
The above-mentioned person is ordered to be detained urgently as mentioned hereinafter, pursuant to the paragraph 3 of Article 51 of the Immigration Law.

다 음
Note

1. 긴급보호사유 Reason for urgent detention	
2. 긴급보호 장소 Place of urgent detention	
3. 긴급보호기간 Period of urgent detention	From 부터 년 월 일 시 To 까지 년 월 일 시

년 월 일
Date

출입국관리공무원 ㊞
Immigration Officer

23236-15711일
93.3.22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99호서식〕

긴급보호서 발부대장

발부번호	발부일자	국적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대한민국 내주소	긴급보호일시및장소	긴급보호사유	보호명령서 발부일또는 보호해제일	비고

23236-15811비
93.3.22 승인

420㎜×297㎜
(인쇄용지(특급) 70g/㎡)

(추 35)

〔별지 제100호서식〕〈개정 99·2·27〉

보호기간연장허가서
EXTENSION FOR PERIOD OF DETENTION

성 명 Name in Full		성 별 Sex	
생 년 월 일 Date of Birth			
국 적 Nationality			
보 호 장 소 Place of Detention			
보 호 기 간 Period of Detention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The period of detention is extended as mentioned hereinafter, pursuant to Article 52 ① of the Immigration Law.

연 장 기 간 Period of Extension	부터 From	까지 To

년 월 일
Date

○○출입국관리사무소장 ㊞
(출장소)
CHIEF, ○○IMMIGRATION OFFICE

23236-15911일
99.1.22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추 109)

〔별지 제100호의2서식〕 〈신설 99·2·27〉

보호(일시보호)기간연장허가서발부신청서

1. 피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국 적		직 업	
대한민국내 주소			
보 호 일 시			
보 호 기 간			
보 호 장 소			

2. 신청내용

연 장 기 간	부터	까지
연 장 사 유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1항, 제5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제1항,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일시보호)기간연장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년 월 일

출입국관리공무원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귀하

(출장소)

비 고	결재	가·부	
불허사유			

23236-17311카
99.1.22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120g/㎡)

(추 109)

〔별지 제101호서식〕

보호기간연장통보서

성 명		성 별	
생 년 월 일			
국 적			
주 소			
보 호 장 소			
보 호 기 간			
위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호기간이 연장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연 장 기 간	부터 까지		
년 월 일 ○○출입국관리사무소장 ㊞			

23236-16011일
93.3.22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02호서식〕

보호해제의뢰서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보호해제 의뢰

피보호자	1. 성 명		성 별	
	2. 생 년 월 일			
	3. 국 적		4. 직 업	
	5. 대한민국내주소			

년 월 일 보호의뢰한 위 사람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해제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출입국관리사무소장 ㊞

23236-16111일
93.3.22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추 109)

〔별지 제103호서식〕

번호 No.

법 무 부

MINISTRY OF JUSTICE

귀하 년 월 일

To. Date

보 호 통 지 서

DETENTION NOTICE

1. 성 명 성 별
Name in Full Sex

2. 생년월일 3. 국 적
Date of Birth Nationality

4. 직 업 5. 대한민국내주소
Occupation Address in Korea

위 사람은 년 월 일 출입국관리법 (제51조 /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It is hereby notified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is detained on pursuant to Article(51 / 63) of the Immigration Law as mentioned hereinafter.

보 호 기 간 Period of detention	부터 From	까지 To(일간)
보 호 장 소 Place of detention		
보 호 사 유 Reason of detention		

추 기 : 보호된 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은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marks : The person detained, his lawyer, legal proxy, spouse, lineal relative, brother, sister or other family member may file an objection against the detention with the Minister of Justice.

○○출입국관리사무소장 ㊞

chief, ○○immigration Office

23236-16211일
93.3.22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추 109)

[별지 제104호서식] 〈개정 97·7·1〉

번호 No.

법 무 부
MINISTRY OF JUSTICE

○○○ 귀하 년 월 일
TO: Date

보 호 사 항 변 경 통 지 서
NOTICE ON ALTERATION OF THE PLACE OR THE PERIOD OF DETENTION

성	Surname		성 별	남 M
명	Given names		Sex	여 F
생 년 월 일 Date of Birth	. . . Year Month Day	국 적 Nationality		
직 업 Occupation		대 한 민 국 내 주 소 Address in Korea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람에 대한 보호장소 또는 보호기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통지합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60 of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for enforcement of the Immigration Law, it is hereby notified that the place or the period of detention of the above mentioned person has been changed as follows.

보 호 기 간 Period of detention	부터 From	까지 To
보 호 장 소 Place of detention	에서 From	으로 To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
Chief, ○○ Immigration Office

23236-16311일
97.5.28 승인

210㎜×297㎜
(보존용지(2종) 70g/㎡)

(추 86)

[별지 제105호서식]

법 무 부
MINISTRY OF JUSTICE

년 월 일
Date

보 호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WRITTEN OBJECTION AGAINST DETENTION

법무부장관 귀하
To : Minister of Justice

나는 년 월 일자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보호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출입국관리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덧붙여 이의신청합니다.

Since I have an objection against the detention order to the under mentioned person as of…made by the Chief of Immigration Office, I hereby file an objection together with the written statement of reason for the objection pursuant to Article 55 of the Immigration Law.

1. 성 명 성 별
   Name in Full Sex
2. 생년월일
   Date of Birth
3. 국 적
   Nationality
4. 대한민국내주소
   Address in Korea

신청인서명
Signature of Applicant

23236-16411민
93. 3. 22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추 86)

[별지 제106호서식]

법 무 부

년 월 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용의자	성명 생년월일 국적 직업 대한민국내주소	성 별 :

위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제 (55 / 60) 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자로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우리부에서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 음

주 문	
사실및이유	
적용법조	

법무부장관 인

23236-16511일
93.3.22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07호서식]

번호
No.

법 무 부
MINISTRY OF JUSTICE

년 월 일
Date

일 시 보 호 명 령 서
TEMPORARY DETENTION ORDER

1. 성 명 성 별
Name in Full _____ Sex _____

2. 생년월일
Date of Birth _____

3. 국 적 4. 직 업
Nationality _____ Occupation _____

5. 대한민국내주소
Address in Korea _____

위의 사람을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일시보호할 것을 명합니다.

The above-mentioned person is ordered to be detained temporarity as mentioned hereinafter, pursuant to Article 56 of the Immigration Law.

(추 86)

다 음 Note

1. 일시보호사유 Reason for temporary Detention :	
2. 보 호 장 소 Place of Detention :	
3. 보 호 기 간 Period of Detention :	From부터 년 월 일 시 To 까지 년 월 일 시
비 고 Remarks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
Chief, ○○ Immigration Office
집 행 자 ○ ○ ○ ㊞
Executive officer :

23236-16611일
93.3.22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07호의2서식〕〈개정 99·2·27〉

일 시 보 호 기 간 연 장 허 가 서
EXTENSION FOR PERIOD OF TEMPORARY DETENTION

성 명 Name in Full		성 별 Sex	
생 년 월 일 Date of Birth			
국 적 Nationality			
보 호 장 소 Place of Detention			
보 호 기 간 Period of Detention			

출입국관리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보호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The period of temporary detention is extended as mentioned hereinafter, pursuant to Article 56 ② of the Immigration Law.

연 장 기 간 Period of Extension	부터 From	까지 To

년 월 일
Date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
(출장소)
CHIEF, ○○ IMMIGRATION OFFICE

23236-06011일
99.1.22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추 109)

〔별지 제108호서식〕

일시보호명령서 발부대장

발부 번호	발부 일시	성 명	생년월일	국 적	일시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보호 시간	비 고

23236-16711비
93.3.22 승인

420㎜×29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09호서식〕〈개정 99·2·27〉

법 무 부 심 사 결 정 서		년 월 일
용의자	성 명 생 년 월 일 국 적 직 업 대한민국내주소	성 별:
위 사람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 음		
주 문		
사실 및 이유		
적 용 법 조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 (출장소)		

23236-05111일
99.1.22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추 109)

〔별지 제110호서식〕

번호 No.

법 무 부
MINISTRY OF JUSTICE

년 월 일
Date

강제퇴거명령서
DEPORTATION ORDER

1. 성 명 / Name in Full _____ 성 별 / Sex _____
2. 생년월일 / Date of Birth _____
3. 국 적 / Nationality _____
4. 직 업 / Occupation _____
5. 대한민국내주소 / Address in Korea _____

위 사람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합니다. 이 명령에 대하여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Pursuant to Article 46 of the Immigration Law, the above mentioned person is hereby ordered to leave the Republic of Korea as mentioned hereinafter. An objection can be filed against this Order within 7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1. 강제퇴거이유 / Reason for Deportation _____
2. 집행방법 / Mode of Execution _____
3. 송환국 / Country of Repatriation _____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
CHIEF, ○○ IMMIGRATION OFFICE

집 행 결 과 Result of Execution	집 행 자 Executing Official	㊞ Seal

23236-05911일
93.3.22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추 35)

〔별지 제111호서식〕

법 무 부

MINISTRY OF JUSTICE

년 월 일

Date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WRITTEN OBJECTION AGAINST

DEPORTATION ORDER

법무부장관 귀하

To : Minister of Justice

나는 년 월 일자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출입국관리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덧붙여 이의신청합니다.

Since I have an objection against the Deportation Order as of...made by the Chief of Immigration Office, I hereby file an objection together with the written statement of reason for the objection pursuant to Article 60 of the Immigration Law.

1. 성 명 성 별
   Name in Full Sex
2. 생년월일
   Date of Birth
3. 국 적
   Nationality
4. 대한민국내주소
   Address in Korea

신청인서명

Signature of Applicant

23236-16811민
93.3.22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추 35)

[별지 제112호서식] 삭제 〈97·7·1〉

[별지 제113호서식]

번호
No.

법 무 부
MINISTRY OF JUSTICE

년 월 일
Date

특 별 체 류 허 가 서
SPECIAL PERMIT FOR SOJOURN

아래 사람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조건으로 체류를 특별허가합니다. 다만, 조건을 지키지 아니한 때에는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The under mentioned person is hereby granted special permission to reside in the Republic of Korea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pursuant to the provision of Article 61 of the Immigration Law. However failure to fulfil such conditions shall be the cause for immediate rescission of the permit.

1. 성 명 Name in Full _____ 성 별 Sex _____
2. 생년월일 Date of Birth _____
3. 국 적 Nationality _____ 4. 직 업 Occupation _____
5. 대한민국내주소 Address in Korea _____
6. 특별허가조건 Conditions for Special Permission _____
   (1)
   (2)
   (3)

법 무 부 장 관 ㊞
MINISTER OF JUSTICE

주 의 : 이 허가서는 항상 휴대하여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이 제시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Remarks : This permit shall be carried at all times and presented to the Immigration officer or any of the authorized Government officer upon request.

23236-06111일
93.3.22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추 86)

〔별지 제114호서식〕

법 무 부

문서번호: 년 월 일

수 신:

강제퇴거명령집행의뢰서

출입국관리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사람에 대하여 발부된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합니다.

1. 성 명 성 별
2. 생년월일
3. 국 적
4. 강제퇴거명령서번호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

23236-06211일
93.3.22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15호서식〕

번호
No.

법 무 부
MINISTRY OF JUSTICE

년 월 일
Date

송 환 지 시 서
REPATRIATION ORDER

○○○ 귀하
To:

귀하는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사람을 귀하의 부담으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하여야 함을 지시합니다.

It is notified that you have to repatriate the under mentioned person at your expense to the exterior of the Republic of Korea pursuant to Article 76 of the Immigration Law.

1. 성 명 Name in Full _____ 성 별 Sex _____
2. 생년월일 Date of Birth _____
3. 국 적 Nationality _____ 4. 직 업 Occupation _____
5. 대한민국내주소 Address in Korea _____
6. 송환사유 Reason for Repatriation: _____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
CHIEF, ○○ IMMIGRATION OFFICE

23236-16911일
93.3.22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추 35)

〔별지 제116호서식〕

인 수 증
RECEIPT

1. 성 명 / Name in Full _____ 성 별 / Sex _____
2. 생년월일 / Date of Birth _____
3. 국 적 / Nationality _____

위 사람 및 그에 대한 송환지시서를 틀림없이 수령하였습니다.
It is hereby acknowledged that I have taken over the above mentioned person and received the Repatriation order for him/her.

년 월 일
수령자서명
Signature of Recipient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귀하
To : Chief, ○○ Immigration Office

23236-06411일
93.3.22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17호서식〕

번호
No.

법 무 부
MINISTRY OF JUSTICE

○○○ 귀하
To :

년 월 일
Date

보 호 해 제 통 보 서
NOTIFICATION FOR RELEASE

귀하에 대하여 아래 조건으로 보호를 해제함을 통보합니다.
It is hereby notified that you are released on the following conditions.

보 호 해 제 조 건
Conditions of Release

1. 해제기간중 거주지
Place of Residence during Release _____
2. 기 타
The Others _____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
Chief, ○○ Immigration Office

23236-17011일
93.3.22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추 35)

〔별지 제118호서식〕〈개정 99·2·27〉

보호일시해제청구서
APPLICATION FOR PERMISSION OF TEMPORARY RELEASE

피보호자 Detainee	1. 성 명 Name in Full		성 별 Sex	
	2. 생 년 월 일 Date of Birth		3. 국 적 Nationality	
	4. 대한민국내주소 Address in Korea			
	5. 직 업 Occupation			
보호명령서 Detention Order	명령서발부일자 Date of Issue		명령서번호 No. of the Order	
청 구 사 유 Reason for Application				
붙 임 서 류 Documents Attached				

위 사람에 대한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hereby apply for permission of temporary release of the above-mentioned person.

신 청 인 Applicant
국 적 Nationality
성 명 Name in Full
생년월일 Date of birth
주 소 Address in Korea
관 계 Relationship

년 월 일
Date :

신청인서명
Signature of applicant

○○출입국관리사무소장 귀하
출장소
To : Chief, ○○ Immigration Office

공용란 For official

비 고 Remarks	접수일자		결재	가·부	
	접수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23236-17111일
99.1.22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추 109)

〔별지 제119호서식〕〈개정 99·2·27〉

법 무 부

보호일시해제청구에 대한 결정서

년 월 일

피보호자	성 명		성 별	
	생 년 월 일			
	국 적			
	대한민국내 주소			

위 사람에 대한 보호일시해제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 음

주 문	
이 유	
적 용 법 조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
(출장소)
CHIEF, ○○ IMMIGRATION OFFICE
담당 출입국관리공무원 ㊞
IMMIGRATION OFFICER IN CHARGE

보호일시해제조건
Conditions on Temporary Release

(1) 보호일시해제기간 :
Period of Temporary Release

(2) 보증금의 액수·납부일시 및 장소 :
The amount of bond, The date and place of payment

(3) 해제기간중 거주지 :
Residence During Release

(4) 기 타 :
The Others

주 의 Remarks

1. 위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보호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In case the above-mentioned conditions are not observed, this permit may be cancelled and may vest the bond to the National Treasury.
2. 이 결정서는 항상 휴대하여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있는 공무원이 제시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This permit for Temporary Release shall be carried at all times and presented to the Immigration officer or any of the authorized government officer upon request.

23236-17211일
99.1.22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추 109)

〔별지 제120호서식〕

보호일시해제취소서

CANCELLATION OF TEMPORARY RELEASE

용의자 The Suspect	1. 성 명 Name in Full	성 별 Sex
	2. 생년월일 Date of Birth	3. 국 적 Nationality
	4. 대한민국내주소 Address in Korea	
	5. 직 업 Occupation	

보호일시해제허가서 Permit for Temporary Release	발 부 일 자 Date of Issue		번 호 No.of the permit	

출입국관리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람에 대하여 허가한 보호일시해제를 다음 사유로 취소합니다.

Pursuant to Paragraph 1, Article 66 of the Immigration Law, the Permit for Temporary Release to the above-mentioned person has been cancelled for reason understated.

취소사유 및 보호장소 Reason for Cancellation and Place of Detention	1. 취소사유 Reason for Cancellation 2. 보호장소 Place of Detention

년 월 일

Date :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

Chief, ○○ Immigration Office

○○○ 귀하

To :

23236-17311일
93.3.22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추 35)

[별지 제121호서식]

번호 No.

법 무 부
MINISTRY OF JUSTICE

년 월 일
Date

출 국 권 고 서
WRITTEN ADVICE TO EXIT

1. 성 명 성 별
   Name in Full _____ Sex _____
2. 생년월일
   Date of Birth _____
3. 국 적 4. 직 업
   Nationality _____ Occupation _____
5. 대한민국내주소
   Address in Korea _____
6. 출국기한
   Deadline of Departure _____

출입국관리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람에 대한 출국을 권고합니다.

Pursuant to Paragraph 2, Article 67 of the Immigration Law, the above-mentioned person is advised to leave the Republic of Korea.

○○출입국관리사무소장 ㊞
Chief, ○○ Immigration Office

23236-09311일
93.3.22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22호서식] 삭제 〈97·7·1〉

(추 86)

[별지 제123호서식]

번호
No.

법 무 부
MINISTRY OF JUSTICE

년 월 일
Date

출 국 명 령 서
EXIT ORDER

1. 성 명 성 별
Name in Full _____ Sex _____
2. 생년월일
Date of Birth _____
3. 국 적 4. 직 업
Nationality _____ Occupation _____
5. 한국내주소
Address in Korea _____
6. 출국기한
Deadline of Departure _____
7. 행동범위 8. 출두의무
Area of Movement _____ Duty of Appearance _____
9. 기 타
The Others _____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람의 출국을 명합니다.
Pursuant to Paragraph 1, Article 68 of the Immigration Law, the above-mentioned person is ordered to leave the Republic of Korea.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
Chief, ○○ Immigration Office

23236-17511일
93.3.22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24호서식] 삭제 〈97·7·1〉

〔별지 제125호서식〕〈개정 94·7·20〉

결재	담당					처리기간
						즉 시

□ 승 선
□ 출입국심사장출입 허가신청서

선박등명		승선(출입)자 소속회사명	
승선(출입) 이 유			
승선(출입) 기 간			

승 선 자(출 입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 소

출입국관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출입국관리사무소장 귀하 신청인 서명 ○ ○ ○

출장소

구비서류 : 승선(출입)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수수료
	없 음

23236-17711일
94. 6. 1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126호서식〕〈개정 94·7·20〉

허가번호	

□ 승 선
□ 출입국심사장출입 허가서

선박등명		승선(출입)자 소속회사명	
승선(출입) 이 유			
승선(출입) 기 간		승선구간 (출입장소)	

승 선 자(출 입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 소

출입국관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

출장소

23236-09211일
94. 6. 1 승인

210㎜×297㎜
(인쇄용지(2급) 60g/㎡)

(추 51)

〔별지 제126호의2서식〕 〈신설 94·7 20〉

승선·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서 발급대장

발급 일자	발급 번호	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소 속 회사명	허가 기간	사유	비고

23236-13011비
94. 6. 1 승인

364㎜×257㎜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26호의3서식〕 〈신설 94·7·20〉

법 무 부
MINISTRY OF JUSTICE

년 월 일
Date

난 민 인 정 신 청 서
APPLICATION FOR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성 명 Name in Full				성별 Sex	
생 년 월 일 Date of Birth		직 업 Occupation			
국 적(상 주 국 가 명) Nationality(Country of Habitual Residence)		출 생 지 Place of Birth			
대한민국내주소 Address in Korea			전화번호(Tel)		
입 국 일 자 Date of Entry		여 권 번 호 Passport No.		외국인등록번호 Alien Registration No.	
입 국 장 소 Port of Entry		여권유효기간 Passport Validity			
체 류 자 격 Status of Sojourn		체 류 기 간 Period of Sojourn			

과 거 거 주 사 항 Residence details	과 거 거 주 지 Address in the Past	거 주 기 간 Period of Stay	여 권 발 급 국 가 명 Nationality on Passport

학 력 Educational Background		경 력 Career	

가 족 사 항 Family Members	성 명 Name in Full	관 계 Relation	국적(상주국가명) Nationality (Country of Habitual Residence)	주 소 Present Address

23236-131민
94. 6. 1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추 51)

1. 만약 귀하가 본국에 돌아가면 박해를 받는 이유는 다음중 어느 것입니까?
If you return to your home country, for what specific reasons do you believe you will be persecuted?

☐ 인종 Race ☐ 종교 Religion ☐ 국적 Nationality ☐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신분 Membership in a particular social group

☐ 정치적 의견 Political opinion ☐ 기타 Other

2.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이 위와 같은 이유로 체포, 억류, 구금 기타 신체적 구속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Have you(or your family members) ever been detained, arrested, convicted or imprisoned because of the above?

☐ 예 Yes ☐ 아니오 No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If "Yes", give details.

위 이외의 이유로 체포된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ever been arrested for any other reasons?

☐ 예 Yes ☐ 아니오 No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If "Yes", give details.

3. 위 1의 박해를 받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Please explain the reasons why the actions cited in item 1 above will be taken against you?

4. 귀하는 본국정부를 적대하는 조직에 소속된 적이 있습니까?
Did you belong to any organization(s) which were considered hostile to the interests of your home country?

☐ 예 Yes ☐ 아니오 No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If "Yes", give details.

5. 귀하는 본국정부에 적대하는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거나, 행동을 취한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ever expressed political opinions or acted in a manner opposed to the interests of your home country?

☐ 예 Yes ☐ 아니오 No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If "Yes", give details.

6. 귀하가 본국에 돌아가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까? 구체적인 내용 및 이유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What do you think would happen to you if you return? Why?

7. 귀하는 다른 나라에 비호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ever applied for asylum in any other country?

☐ 예 Yes ☐ 아니오 No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If "Yes", please explain what happened.

8. 귀하가 박해를 받을 염려가 있던 나라에서 탈출한 날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까지의 경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Please explain when you left the country of persecution and how you arrived in Korea from that country.

(추 51)

9. 귀하가 불법입국하였거나 불법체류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경위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If you have been guilty of illegal entry, illegal landing, or illegal staying, please explain why and how.
10. 귀하는 위에서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Can you provide any documentation or evidence in support of your application? ☐ 예 Yes ☐ 아니오 No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If "Yes", give details.
11. 그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Other special situations, if any.
신청자 서명 SIGNATURE OF APPLICANT

〔별지 제126호의4서식〕〈신설 94·7·20〉 (앞 면)

대 한 민 국

THE REPUBLIC OF KOREA

제 호

No.

난 민 인 정 증 명 서

CERTIFICATE OF REFUGEE STATUS

1. 성 명 _____ 성별 _____
   Name in Full Sex
2. 생년월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Date of Birth Year Month Day
3. 국 적 _____
   Nationality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난민임을 인정합니다.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76-2 of the immigration law, the holder of this certificate is recognized as a refugee.

년 월 일

Date

법 무 부 장 관 인

MINISTER OF JUSTICE

23236-13211일
94. 6. 1 승인

88㎜×125㎜
(인쇄용지(특급) 120g/㎡)

(추 51)

(뒷 면)

사 진
PHOTO
35×45㎜

주 의
NOTICE

난민인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이 증명서를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When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is withdrawn, this certificate should be surrendered as soon as possible.

〔별지 제126호의5서식〕 〈신설 94·7·20〉

난민인정증명서 발급대장

발급 일자	발급 번호	국 적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직 업	체류자격 체류기간	비고

23236-13311비
94. 6. 1 승인

364㎜×257㎜
(인쇄용지(2급) 60g/m²)

(추 51)

〔별지 제126호의6서식〕 〈신설 94·7·20〉

법 무 부

MINISTRY OF JUSTICE

번호 년 월 일

No. Date

난민인정불허통지서

REFUSAL NOTICE ON THE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To : 귀하

1. 성 명 _____ 성별 _____

Name in Full Sex

2. 생년월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Date of Birth Year Month Day

3. 국 적 _____

Nationality

4. 대한민국내주소 _____

Present Address in Korea

귀하의 년 월 일자 난민인정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난민인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Regarding your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dated , you are not recognized as a refugee because of the following reasons.

사 유

REASONS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If you do not agree to the above decision, you may file an appeal to the Minister of Justice within 7days from the date you receive this notice.

법 무 부 장 관 인

MINISTER OF JUSTICE

23236-13411일
94. 6. 1 승인

210㎜×297㎜
(인쇄용지(2급) 60g/㎡)

(추 51)

〔별지 제126호의7서식〕 〈신설 94·7·20〉

법 무 부

MINISTRY OF JUSTICE

번호 년 월 일

No. Date

난민인정취소통지서

NOTICE ON THE CANCELLATION OF REFUGEE STATUS

To : 귀하

1. 성 명 _____ 성별 _____

Name in Full Sex

2. 생년월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Date of Birth Year Month Day

3. 국 적 _____

Nationality

4. 대한민국내주소 _____

Present Address in Korea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년 월 일자 귀하에 대한 난민인정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하가 소지하고 있는 난민인정증명서 및 난민여행증명서를 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76-3 of the immigration law, refugee status accorded you on has been cancelled because of the following reasons. You are requested to promptly surrender your certificate of refugee status and refugee travel document.

사 유

REASONS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If you do not agree to the above decision, you may file an appeal to the Minister of Justice within 7days from the date you receive this notice.

법 무 부 장 관 인

MINISTER OF JUSTICE

23236-13511일
94. 6. 1 승인

210㎜×297㎜
(인쇄용지(2급) 60g/m²)

(추 51)

〔별지 제126호의8서식〕〈신설 94·7·20〉

법 무 부
MINISTRY OF JUSTICE

년 월 일
Date

이 의 신 청 서
APPLICATION FOR APPEAL

법무부장관 귀하
To : Minister of Justice

년 월 일자[난민인정 불허처분 / 난민인정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4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Since I do not agree to the decision, date , on [therefusal of the / cancellation of refugee status / refugee status], I hereby file an appeal to the minister of justice, pursuant to the provisons of article 76-4 of the immigration law.

1. 성 명 _____ 성별 _____
   Name in Full Sex
2. 생년월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Date of Birth Year Month Day
3. 국 적 _____
   Nationality
4. 대한민국내주소 _____
   Present Address in Korea

이 의 신 청 사 유
REASONS OF APPEAL

_____

신청인 서명
SIGNATURE OF APPELLANT

23236-13611일
94. 6. 1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126호의9서식〕〈신설 94·7·20〉

법 무 부

년 월 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서

신청자	성 명 생 년 월 일 국 적 직 업 대한민국내주소	성별 :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람이 제출한 년 월 일자 이의신청에 대하여 우리부에서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 음

주 문	
사실 및 이유	
적 용 법 조	

법무부장관 인

23236-13711일
94. 6. 1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m²)

(추 51)

〔별지 제126호의10서식〕〈신설 94·7·20〉

법 무 부

MINISTRY OF JUSTICE

번호 년 월 일

No. Date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DISAPPROVAL NOTICE ON APPEAL

To : 귀하

1. 성 명 _____ 성별 _____

Name in Full Sex

2. 생년월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_____

Date of Birth Year Month Day

3. 국 적 _____

Nationality

4. 대한민국내주소 _____

Present Address in Korea

년 월 일자 귀하가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이유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garding your appeal dated , you are hereby notified that your appeal is denied for the following reasons.

이 유

REASONS

법 무 부 장 관 인

MINISTER OF JUSTICE

23236-13811일
94. 6. 1 승인

210㎜×297㎜
(인쇄용지(2급) 60g/㎡)

(추 68)

〔별지 제126호의11서식〕〈신설 94·7·20〉

법 무 부
MINISTRY OF JUSTICE

난민여행증명서(재)발급신청서
APPLICATION FOR ISSUANCE(REISSUANCE) OF REFUGEE TRAVEL DOCUMENT

성 명 Name in Full				성 별 SEX	남 Male 여 Female
국 적 Nationality		생 년 월 일 Date of Birth			
한 국 내 주 소 Address in Korea		전화번호 Tel.		직 업 Occupation	
난민여행증명서번호 Refugee Travel Document No.		발 급 일 Date of Issue		유 효 기 간 Date of Expiration	
입 국 일 자 Date of Entry		입 국 항 Port of Entry			
여 행 국 가 명 Destination		여 행 목 적 Purpose of Travel			
여 행 예 정 기 간 Duration of Travel	FROM . . UNTIL . .	재 발 급 사 유 Reasons for Reissuance	☐ 분실 Lost ☐ 훼손 Worn ☐ 기타 Other		

동 반 자 Dependent

성 명 Name in Full	생 년 월 일 Date of Birth	성별 Sex	관 계 Relation	비 고 Remarks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신청인 서명 Signature of Applicant

공 용 란 For official use only

체 류 사 항		허 가 사 항		결 재			
체류자격		번 호		접수일자			
체류기간		일 자		접수번호		가 부	
인정번호		기 간					
등록번호		비 고		담 당 자			

23236-13911인
94. 6. 1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추 68)

〔별지 제126호의12서식〕 (개정 95·12·1)

앞표지(바깥쪽)

난민여행증명서
REFUGEE TRAVEL DOCUMENT
(CONVENTION OF 28 JULY 1951)

대한민국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THE REPUBLIC OF KOREA

23236-140341일
95. 10. 5 승인

88㎜×125㎜
(인쇄용지(특급) 120g/㎡)

뒷표지(안쪽)

난민여행증명서
REFUGEE TRAVEL DOCUMENT
(Convention of 28 July 1951)

1. 이 증명서는 명의인에게 여권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된 여행증명서로서, 명의인의 국적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This document is issued solely with a view to providing the holder with a travel document which can serve in lieu of a national passport. It is without prejudice to and in no way affects the holder's nationality.

2. 명의인은 이 증명서 유효기간내에는 대한민국에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The holder is authorized to return to KOREA within the period of the validity of this document.

3. 명의인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 거주를 정한 뒤에 다시 여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거주국의 주무관청에 신청하여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Should the holder take up residence in a country other than the republic of KOREA
he/she must, if he/she wishes to travel again, apply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his/her country of residence for a new document.
※ The old travel document shall be withdrawn by the authority issuing the new document and returned to the authority which issued it.

23236-140343일
95. 10. 5 승인

88㎜×125㎜
(인쇄용지(특급) 120g/㎡)

(규 68)

앞표지(안쪽)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난 민 여 행 증 명 서	종류/TYPE	발행국/Country code	여행증명서번호/Document No.
REFUGEE TRAVEL DOCUMENT	PZ	KOR	

사 진
PHOTO
35㎜×45㎜

성/Surname
명/Given names
생년월일/Date of birth　　성별/Sex　　등록번호/Registration No.
국적/Nationality　　출생지/Place of birth
발급일/Date of issue　　발행관청/Authority
만료일/Date of expiry　　MINISTRY OF JUSTICE

23236-140342일
95. 10. 5 승인

88㎜×125㎜
(인쇄용지(특급) 70g/m²)

(추 68)

(제 1 쪽)

명의인 서명

signature of bearer .....

1. 이 증명서는 다음 국가에 대하여 유효합니다.

This Document is valid for the following countries. .....

2. 이 증명서의 발급 근거 문서

Document(s) on the basis of which the present documents is issued. .....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MINISTER OF JUSTICE

REPUBLIC OF KOREA

23236-140343일
95. 10. 5 승인

88㎜×125㎜
(인쇄용지(특급) 70g/㎡)

(제 2 쪽)

동 반 자 녀(CHILDREN)

성명/Name	성별/Sex	생년월일/Date of birth

1. 2. 3.

사 진

PHOTO

25㎜×35㎜

23236-140344일
95. 10. 5 승인

88㎜×125㎜
(인쇄용지(특급) 70g/㎡)

(추 68)

(제 3 쪽)

유효기간 연장 갱신

EXTENTION or RENEWAL of VALIDITY

1. 허가일 Date of permit

만료일 Date of expiry

허가기관 Authority _____

2. 허가일 Date of permit

만료일 Date of expiry

허가기관 Authority _____

3. 허가일 Date of permit

만료일 Date of expiry

허가기관 Authority _____

THIS DOCUMENT CONTAINS 32 PAGES.

23236-140345일
95. 10. 5 승인

88㎜×125㎜
(인쇄용지(특급) 70g/㎡)

(제 4 ~32쪽)

사 증

VISAS

1951. 7. 28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f 28 July 1951.

23236-140346일
95. 10. 5 승인

88㎜×125㎜
(인쇄용지(특급) 70g/㎡)

(추 68)

〔별지 제126호의13서식〕〈신설 94·7·20〉

난민여행증명서발급대장

발급 일자	발급 번호	국 적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유효기간	여행국가	비고

23236-14111비
94.6.1 승인

364㎜×257㎜
(인쇄용지(2급) 60g/m²)

(추 68)

〔별지 제126호의14서식〕 〈신설 94·7·20〉

법 무 부
MINISTRY OF JUSTICE

난민여행증명서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서
APPLICATION FOR EXTENSION OF THE VALIDITY OF REFUGEE TRAVEL DOCUMENT

성 명 Name in Full				성 별 SEX	남 Male 여 Female
국 적 Nationality		생 년 월 일 Date of Birth			
한 국 내 주 소 Address in Korea		전화번호 Tel.		직 업 Occupation	
체 재 지 Present address					
난민여행증명서번호 Refugee Travel Document No.		발 급 일 Date of Issue		유 효 기 간 Date of Expiration	
출 국 일 자 Date of Exit from Korea		출 국 항 Port of Exit from Korea			
연 장 신 청 기 간 Intended period of extension		연 장 신 청 사 유 Reasons for application			

동 반 자 Dependent

성 명 Name in Full	생 년 월 일 Date of Birth	성별 Sex	관 계 Relation	비 고 Remarks

신 청 일 Date of Application	신청인 서명 Signature of Applicant

공 용 란 For official use only

체 류 사 항		허 가 사 항		결 재			
체류자격		번 호		접수일자			
체류기간		일 자		접수번호		가 부	
인정번호		기 간					
등록번호		비 고		담 당 자			

23236-14211인
94. 6. 1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m²)

(추 51)

〔별지 제126호의15서식〕〈신설 94·7·20〉

대한민국법무부

MINISTER OF JUSTICE, THE REPUBLIC OF KOREA

번호 년 월 일

No. Date

난민여행증명서반납명령서

ORDER ON THE RETURN OF REFUGEE TRAVEL DOCUMENT

To : 귀하

1. 성 명 _____ 성별 _____
   Name in Full Sex
2. 생년월일 _____ 년 월 일
   Date of Birth Year Month Day
3. 국 적 _____
   Nationality
4. 대한민국내주소 _____
   Present Address in Korea
5. 난민여행증명서번호 _____
   Refugee travel Document No.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6의 규정에 따라 귀하가 소지하고 있는 난민여행증명서를 년 월 일까지 반납할 것을 명령합니다.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76-6, the immigration law, you are ordered to return your refugee travel document by.

반 납 명 령 이 유

REASONS FOR THIS ORDER

법 무 부 장 관 인

MINISTER OF JUSTICE

23236-14311인
94. 6. 1 승인

210㎜×297㎜
(인쇄용지(2급) 60g/㎡)

(추 51)

〔별지 제127호서식〕

외국인동향조사부

인적사항	성		남 여	생년월일	···	국적		
	명							
	직업			근무처명칭	(전화)			
	직위			소 재 지				
	본국주소							
	대한민국내주소				(전화)			
여권번호		체류자격		입국일자	···	체류기간		
범죄사실	죄명			신원보증인	성명			
	형량				주소			
연월일	조 사 내 용				비 고			

23236-17811비
93.3.22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100g/㎡)

〔별지 제128호서식〕

외국인관련단체 동향기록표

일련번호

단 체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등록 및 허가사항					등 록 일	
단체성격					본사소재지 국 명	
대표자	국 적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체류자격	특이사항
단체규모	종 업 원	외국인: 명, 내국인: 명				
	사업실적					
동 향 조 사						
일 자	내 용					

23236-17911비
93.3.22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100g/㎡)

(추 35)

〔별지 제129호서식〕〈개정 99·2·27〉

신 원 보 증 서

1. 피보증외국인

성	Surname			漢字		성별	남
명	Given names						여
생 년 월 일	. . .	국적		여권번호			
대한민국내주소				전화번호			
체 류 목 적							

2. 신원보증인

가. 인적사항

성 명		漢字		성별	남
					여
여권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국 적			
		전화번호			
주 소					
근 무 처					
피보증외국인과관계		직 위			
근 무 처		비 고			

나. 보증기간

○ . . .부터 . . .까지

※ 보증기간의 최장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 보증내용

(1) 체류중 제반법규를 준수하도록 한다.

(2) 출국여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한다.

(3) 체류 또는 보호중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한다.

위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함에 있어서 그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 사항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신원보증인 (서명 또는 인)

23236-08721일
99.1.22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

(추 109)

〔별지 제129호서식(영문)〕 〈개정 97·7·1〉

To : MINISTER OF JUSTICE
REPUBLIC OF KOREA Date : _____

This is to certify that I, the undersigned, hereby guarantee as a sponsor that :

I. The following person shall observe all the pertine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while he is in Korea.

II. I will assume, without reservation, whole responsibility for :

a. Full maintenance and logistic support including defrayment of all living expenses incurred by him during his stay in Korea.

b. Transportation fees upon departure from Korea.

c. Payment of all charges including fines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incurred by his violation or illegal acts of the Immigration Law.

(Applicant)

Name in full			
Date of Birth		Sex	
Nationality		Passport No.	
Name of Organization			
Address in Korea		Tel. No.	
Purpose of Sojourn			

Period of guarantee : From _____ to _____

An available period of this guarantee is no more than 4 years from the date of guarantee.

(To be notarized)

Name in Full & Signature : _____

Date of Birth & Sex : _____

Name of Organization & Title : _____

Nationality _____ Passport No. _____

Address in Korea : _____ Tel. No. _____

Relation : _____

23236-08722일
97.5.28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

(추 86)

〔별지 제129호의2서식〕 〈신설 97·7·1〉

구 상 금 납 부 통 지 서

제 호

성 명		생년월일		국 적	
주 소				직 업	
구 상 금 액					
구 상 금 액 산 출 근 거					

출입국관리법 제90조의2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 의 출국에 소요된 비용 원중 국고로 부담한 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으니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구상금납입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

23236-07911일
97.5.28 승인

210㎜×297㎜
(보존용지(2종) 70g/㎡)

(추 86)

〔별지 제129호의3서식〕 〈신설 97·7·1〉

구 상 권 행 사 사 건 처 리 부

일련번호	번호	피구상자	구상금액	구상권 행사여부 결정일자	제소상황			구상금액회수상황		완결일자	비고
					제소일자	신소사건부번호	소송결과	회수일자	회수금액		

23236-08011비
97.5.28 승인

380㎜×268㎜
(보존용지(1급) 70g/㎡)

(추 86)

〔별지 제130호서식〕

311	출입항예정통보서	처리기간 즉 시

1. 호출부호/선박번호 □□□□□□□□	2. 선명	3. 국적	4. 연도-입항회수 □□-□□□
5. 총톤수 □□□,□□□	6. 국제총톤수 □□□,□□□		7. 선박길이 m 너비 m 깊이 m
8. 선박종류 □□	9. 입항시 흘수[선수 □□.□m] [선미 □□.□m] 만재시 흘수[선수 □□.□m] [선미 □□.□m]		
10. 적재화물 □□ 화물명	적재톤수 M/T 양하톤수 M/T		11. 위험물 적재 □ 유 □ 무
12. 선주명 □□-□-□□□□	13. 대리점 □□-□-□□□□		14. 사업구역 □ 외항 □ 내항
15. 입항목적 □ 양적하 □ 양하 □ 적하 □ 선박수리 □ 해난 □ 기타	16. 입항예정일시 □□년 □□월 □□일 □□시 □□분		
17. 출항지 □□-□□□ 항 명	18. 전출항지 및 일시 □□-□□□ 항명 □□년 □□월 □□일 □□시		19. 계선장소 □□□-□□
20. 출항예정일시 □□년 □□월 □□일 □□시	21. 차항지 □□-□□□ 항 명		22. 목적지 □□-□□□ 항 명
23. 선원수 승객수 ┌ 해기사 명 ┌ 한국인 명 └ 보통선원 명 └ 외국인 명	24. 사회주의국가(북한포함)기항지 및 출항일자 □□-□□□ 항명 □□년 □□월 □□일		
25. 검역종류 □ 일반 □ 무전 □ 특별 □ 면제	26. 검역대상 전염병 환자, 사망자 □ 유 □ 무		
27. 도선여부 □ 도 선 □ 면제(□□년 □□월 □□일)	28. 예선신청 □ 유 □ 무 입항[마력 척] 출항[마력 척]		
29. 항만시설사용료(선박입항료, 화물입항료, 접안료, 정박료) 면제 □ [1전액, 2일부]			
30. 선장성명/해기사 번호	31. 총기보유 □ 유 □ 무		

위와 같이 출입항예정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TEL.]

귀하

23236-01011일
93.3.22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추 35)

〔별지 제131호서식〕〈개정 99·2·27〉

승무원 명부 Crew List ☐ 입항 Arrival ☐ 출항 Departure	☐ 최초 Notice ☐ 변경 Change ☐ 최종 Final ☐ 취소 Cancel	◎제출번호(적하목록 No:MRN) ☐☐-☐☐☐☐-☐☐☐☐☐

1. 선박명 Name of Vessel	2. 호출부호·선박번호 또는 IMO번호 Call sign·Official No or IMO No.	3. 당해연도 입항횟수 Number of entries made this year ☐☐☐

4. 번호 No.	5. 성명 Name of Crew	6. 국적 Nationality	7. 선원수첩(여권)번호 Seaman's book No(Pass-port No)	8. 승·하선구분 Embarked/To be disembarked at this port
9. 직명 Rank	10.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Birth Date(yy/mm/dd)/ID No	11. 성별 Sex	12. 승선지/승선일 Port & Date of embarkation	13. 신고 물품 소지 유무 Any items to declare? (Yes/No)

14. 보고일자 및 보고자(선·기장 또는 선박대리점) 서명
Date and signature by the Master or authorized agent
보고일자 : ☐☐☐☐/☐☐/☐☐
Date ccyy/mm/dd
서명 Signature :

To 귀하

※ "5번 항목"의 성명은 성과 이름순으로 기재(Please write down family's name first in column 5.)

23236-01211일 210㎜×297㎜
99.1.22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132호서식〕〈개정 99·2·27〉

승객 명부 Passenger List ☐ 입항 Arrival ☐ 출항 Departure	☐ 최초 Notice ☐ 변경 Change ☐ 최종 Final ☐ 취소 Cancel	◎제출번호(적하목록 No:MRN) ☐☐-☐☐☐☐-☐☐☐☐☐

1. 선박명 Name of Vessel	2. 호출부호·선박번호 또는 IMO번호 Call sign·Official No or IMO No.	3. 당해연도 입항횟수 Number of entries made this year ☐☐☐

4. 번호 No.	5. 성명 Name of Passenger	6. 국적 Nationality	7. 여권번호 Passport No	8. 승·하선구분 Embarked/To be disembarked at this port
	9.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Birth Date(yy/mm/dd)/ID No	10. 성별 Sex	11. 승선지/승선일 Port & Date of embarkation	12. 신고 물품 소지 유무 Any items to declare? (Yes/No)

13. 보고일자 및 보고자(선·기장 또는 선박대리점) 서명
Date and signature by the Master or authorized agent
보고일자 : ☐☐☐☐/☐☐/☐☐
Date ccyy/mm/dd
서명 Signature :

To 귀하

※ "5번 항목"의 성명은 성과 이름순으로 기재(Please write down family's name first in column 5.)

23236-01311일 210㎜×297㎜
99.1.22 승인 (일반용지 60g/㎡)

(추 109)

〔별지 제133호서식〕〈개정 99·2·27〉 (앞 쪽)

외항선 □입항 Arrival □출항 Departure General Declaration 보고서	□최초 Notice □변경 Change □최종 Final □취소 Cancel	처리기간	즉 시
		◎제출번호(적하목록 No:MRN) □□-□□□□-□□□□□	

1. 선박제원 Ship's Particulars 선박명 Name of Ship : 선박국적 Flag : 호출부호·선박번호 또는 IMO번호 : Call sign·Official No or IMO No 국제총톤수 International Gross Tonnage : 선박종류 Type of Ship :	2. 입항/출항일시 Time & Date of Arrival/Departure 년 월 일 시 분 ccyy/mm/dd/hh/mm	3. 입항목적 Purpose of Arrival □□	4. 항해구분 Classification of Voyage □□
		5. 검역구분 Type of Quarantine □	6. 당해연도 입항횟수 Number of arrivals made this year □□□

7. 선사 또는 대리점 명칭, 부호, 주소 Name·Code and Address of Owner(Operator) or Agent of Ship	8. C.I.Q 수속장소 및 일시 Date/Place of C.I.Q Processing □
9. 항해기록 Brief Particulars of Voyage 최초출항지/최종목적지 : □□-□□□ Port of Provenance/Final Port of Destination 전출항지 및 출항일시 : □□-□□□/ 년 월 일 시 Time, Date of Departure from last Port ccyy/mm/dd/hh/mm 경유지 Stopovers : - / - / - / - / - / 경유지 출항일자:- - / - - / - - / - - / - - / Date of Departure from Stopovers ccyy/mm/dd 출항예정일시: 년 월 일 시 ccyy/mm/dd Estimated Date and Time of Departure 차항지 Next port of Call : □□-□□□	10. 선박계선장소(선석·장소) Position of the ship (Berth of Station) 11. 항만시설사용료 할인율 및 사유 Rate & Basis for port charge D.C 할인율 Rate:□ 사유 Basis: □ 12. 예선 및 도선 사용신청 여부 Any request of Tug Boat & Pilot 1. 예선 Tug Boat □(Yes/No) 2. 도선 Pilot □(Yes/No)

13. 화물명세 Brief description of cargo 화물명 Name of Cargo : (Unit : Ton) 적재톤수 Total Cargo: 양적하톤수 Load/Unload Cargo : 위험물톤수 Dangerous Cargo: 환적톤수 Transhipment Cargo:	14. 승무원수 Number of crew 전 체Total: 명 한국인Korean: 명 외국인Foreigner: 명	15. 승객수 Number of passenger 전 체 Total: 명 한국인 Korean: 명 외국인 Foreigner: 명 ※국내항간 편승/상륙: / 명 Coastal Travellers/Foreigner permitted landing while the ship is in Korea

(추 109)

16. 승무원 및 승객의 변동 유무 □(Yes/No) Any Change in Passengers or Crew?	17. 비고 remark ○사회안전위해물품 소지 여부(Yes/No) • 마약류 Illicit drugs □ • 총기 및 도검류 Arms □ ○승무원면세품 소지 유무 □ (Yes/No) Any crew having duty free items? ○면세 선용품 적재 유무 □ (Yes/No) Any duty free supplies for ship? ○외지선용품 구입/외지수리 여부 □ (Yes/No) Any ship's supplies purchased or repair from outside of Korea? ○승무원 복수항상륙허가자 또는 복수승무원상륙허가자 승선 유무 □ (Yes/No) Any crew members with landing permit during ship's staying in Korea or with multiple landing permit? ○검역전염병등 환자/사망자 발생유무 □ (Yes/No) Any infectious diseases of deaths on board?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 여부 □ (Yes/No) ○선박 안전경영증서 소지 유무 □ (Yes/No) Safty management certificate issued? • 유효기간 if yes, valid until? / / / ○부선 호출부호 Any towed ship/Barge with no power?
○한국승무원의 외지변동사항 Change of Korean crew in foreign ports 승선 Embarked : 명 전선 Transference: 명 하선 Disembarked: 명 낙오 Quit or missed ship : 명 ○당항 승·하선 승무원/승객 Number of Crew or Passenger Embarked/Disembarked at this port • 승무원 Crew 승선출국: 명, 하선입국: 명 Embarked Disembarked 전 입 : 명, 전 선: 명 Embarkation for Transference Disembarkation for Transference • 승객 Passenger 승선 Embarked: 명 하선 Disembarked: 명	
18. 보고일자 및 보고자(선장 또는 선박대리점)서명 Date and signature by the Master or authorized agent 보고일자 : □□□□/□□/□□ Date ccyy/mm/dd 서명 Signature:	19. 첨부서류 Supplementary Documents • 승무원명부 Crew List • 승객명부 Passenger List • 선용품목록 Ship's Stores List • 승무원휴대품목록 Crew's Effects List
To	귀하

23236-01111일
99.1.22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

(추 109)

(뒷 쪽)

주의 (Notes) :

1. 입출항 24시간전에는 "최초"를, 입출항 확정시는 "최종"을, 변경·취소시에는 "변경"·"취소"를 각각 선택 기재
2. 3번 입항목적 Code
   01. 양적하 02. 양 하 03. 적 하 04. 선박수리 05. 해 난 06. 승무원교대
   07. 여객상륙 08. 급 유 09. 선용품적재 99. 기 타
3. 4번 항해구분 Code(해당하는 선박만 기재)
   01. 외국적내항선 02. 일시외항 03. 내외항자격변경 04. 나포선박 05. 개인항해 06. 신조선 07. 수출선박 08. 선명변경 09. 폐선예정 10. 남북한 출입 11. 실습선 또는 관공선 12. 원양조업선
4. 5번 검역구분 Code
   1. 승선검역 2. 무전검역 3. 특별검역 4. 검역면제 5. 검역완료
5. 8번 수속장소는 입출항 전 C·I·Q 기관의 수속을 받고자 하는 예정장소 및 일시를 기재
   1. 항구명 2. 내 항 3. 외 항
6. 9번 경유지 및 출항일자는 모든 경유지를 대상으로 최초 출항지로부터 경유되는 역순으로 기재
7. 10번 입항목적을 위한 선박의 접안 또는 계선장소를 기재
8. 11번 항만시설 할인율 및 사유 Code
   • 할인 : 1. 10% 2. 15% 3. 50% 4. 80% 5. 100%
   • 사유 : 1. 군 함 2. 관공선 3. 수 리 4. 해 난 5. 투자비보전 9. 기 타
9. 13번 화물명 코드란에는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에 의한 통일체계 품목분류표(HS code)중 대표화물 2자리 code 기재
10. 15번 ※는 국내항간의 승선 허가자와 동승한 출항예정 외국인의 입국허가자수를 기재
11. 16번 당항 승·하선승무원/승객수는 입항시는 승·하선예정 사항을, 출항시는 승·하선 사항을 각각 기재
12. 19번 첨부서류중 승무원휴대품 목록 및 선용품 목록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출두하여 징구
13. 서면 제출시 입출항시마다 다음 표에 의한 부수를 제출
    Copies of submit(every time of arrival or departure respectively)

제 출 서 류	지방해양수산청 Maritime & port Administration	세 관 Customs	출입국관리사무소 Immigration Office	검 역 소 Quarantine Office
입출항보고서 General Declaration	1	1	1	1
승무원명부 Crew List	1	1	1	1
승객명부 Passenger List		1	1	1
선용품목록 Ship's Stores List		1		
승무원휴대품목록 Crew's Effects List		1		

(추 109)

〔별지 제134호서식〕〈개정 99·2·27〉

이중국적자 기록카드								File No
성 Surname 명 Given names			한글 및 한자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외국국적					
직업								
국내주소			전화번호					
국외주소								
입국일자		체류자격		체류기간		외국국적취득경위		
가족사항								
국적	성명	생년월일	직업	관계	주소			
국내연고자(양육자)								
국적	성명	생년월일	직업	관계	주소			
특기사항								
작성일자		작성자	㊞					

23236-09011비
99.1.22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134호의2서식〕〈신설 99·2·27〉

국민처우자 기록카드								
성 Surname 명 Given names			한글 및 한자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외국국적					
직업								
국내주소			전화번호					
국외주소								
입국일자		외국국적취득경위		국민처우일자				
가족사항								
국적	성명	생년월일	직업	관계	주소			
국내연고자(양육자)								
국적	성명	생년월일	직업	관계	주소			
특기사항								
작성일자		작성자	㊞					

23236-17211일
99.1.22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60g/㎡)

(추 109)

〔별지 제135호서식〕〈개정 94·7·20〉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전화번호)

문서번호: 년 월 일

수 신: 법무부장관 발 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

참 조: 체류심사과장

제 목: 출입국사범 및 강제퇴거자 조치결과 보고

성 FAMILY NAME		漢字姓名	
명 GIVEN NAMES			
성 별 남 M 여 F		생년월일 . . .	국 적
범법구분 ( )		처벌구분 ( )	처벌일자 . .
조치구분 ( )		조치일자 . . .	조치근거 - -
여권번호		체류자격	입 국 일
출 국 일 . . .		출 국 항	송 환 국
참고사항:			
붙임 1. 심사결정서 사본 1부(통고처분) 2. 관계서류 사본 1부(고발)			

※ □속에는 해당코드를 기입한다.

23236-18011보
94.6.1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136호서식〕

년 월 일
송 환 결 과 보 고 서 DATE:

○○출입국관리사무소장 귀하
TO: CHIEF, ○○IMMIGRATION OFFICE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사람의 송환을 마치고 이를 보고합니다.

I hereby report that in accordance with Article 76 of the Immigration Law the Repatriation of the under-mentioned person has been completed as follow.

1. 성 명
   NAME IN FULL
2. 생년월일
   DATE OF BIRTH
3. 국 적
   NATIONALITY
4. 송환일시
   DATE OF REPATRIATION
5. 송 환 국
   COUNTRY OF REPATRIATION
6. 송환방법
   MEANS OF REPATRIATION
7. 송환근거 년 월 일자 송환 제 호
   GROUND OF REPATRIATION REPATRIATION ORDER NO. AS OF . . .

송환자 서명
SIGNATURE OF THE CAPTAIN OR THE FORWARDER

23236-07311보
93.3.22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추 51)

〔별지 제137호서식〕 (전 면)

사법경찰관(리)신분증 IMMIGRATION ID. CARD
사 진 5cm×4cm
(발행번호) 홍 길 동
법 무 부

23236-00911일
93.3.22 승인

55㎜×80㎜
(인쇄용지(특급) 120g/㎡)

(후 면)

소 속:
직 명: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출입국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 제1144호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임을 증명함

This is certify that the bearer _____ is an Immigration Officer under the provision of the Law No. 1144.

년 월 일

법무부장관

MINISTER OF JUSTICE

(추 35)

〔별지 제138호서식〕〈개정 95·12·1〉

발행번호 NO.		모두	쪽중	째쪽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CERTIFICATE OF THE FACTS CONCERNING THE ENTRY & EXIT	처리기간 즉 시

출입국자성명 NAME			
성별 SEX		생년월일 DATE OF BIRTH	
국적 NATIONALITY		여권번호 PASSPORT NO.	

출입국일자 DATES OF DEPARTURE AND ARRIVAL IN KOREA

출국 DEPARTURE	입국 ARRIVAL	출국 DEPARTURE	입국 ARRIVAL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I certify to the above facts in writing pursuant to Article 88 of the Immigration Law.

발급일 Date of Issue

기록대조자 확인	
기록대조 부터 까지	㊞

인

구비서류 : 없 음 ※ 향토예비군 훈련면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 FEE	1,000원

23236-00811일 95. 10. 5 승인

증명발급 :
안내및문의 :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39호서식〕〈개정 95·12·1〉

발행번호 NO.		처리기간 즉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CERTIFICATE OF THE FACTS OF ALIEN REGISTRATION
외국인등록번호 ALIEN REGISTRATION NO.	
성명 NAME	

성별 SEX		생년월일 DATE OF BIRTH		국적 NATIONALITY	
직업 OCCUPATION		체류자격 STATUS OF SOJOURN		체류기간 PERIOD OF SOJOURN	
등록일자 DATE OF REGISTRATION		등록체류지 ADDRESS			

(추 68)

체 류 지 변 경 사 항		
변 경 일 자 DATE OF ALTERATION	주 소 ADDRESS	비 고 REMARKS

가 족 사 항			
관 계 RELATIONS	성 명 NAME	성별 SEX	생년월일 DATE OF BIRTH
		외국인등록번호 Reg. No.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I certify to the above facts in writing pursuant to Article 88 of the Immigration Law.

발급일 DATE OF ISSUE 19 . . .

출입국관리사무소 인

Chief, Immigration Office

구비서류 : 없 음 ※ 가족사항은 외국인등록시 동반가족으로 등록한 자입니다.	수수료 : 1,000원 FEE ₩

23236-18111일
95.10.5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40호서식〕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전화번호)

문서번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청장)

제 목 출입국사범 고발

출입국관리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건을 고발합니다.

성 명		성 별	남 여
생 년 월 일		직 업	
국 적		여 권 번 호	
한 국 내 주 소			
죄 명	출입국관리법 위반		
적 용 법 조			
증 거 품	있음 없음		

붙임서류 1. 의견서
2.
3.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

23236-05611일
93.3.22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추 68)

〔별지 제141호서식〕〈개정 95·12·1〉

법 무 부
MINISTRY OF JUSTICE

귀하 년 월 일
To : Date of Issue

통 고 서
WRITTEN NOTIFICATION

용의자 The suspect	성 명 Name in Full			
	생 년 월 일 Date of Birth		성 별 SEX	
	국 적 Nationality		직 업 Occupation	
	대한민국내주소 Address in Korea			

위 사람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용의사건을 조사한 바, 용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및 목록등을 종합하면 용의자는 출입국관리법 제 조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동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적은 금액을 이 통지서를 받는 날부터 7일이내에 국고수납기관에 납부할 것을 통고합니다.

On the basis of through investigation of alleged charges of violation of the Immigration Law with evidence which is hereby brought forth, the above mentioned person is found to be guilty of violation of the provision of Article ____ of the Law. The said person is hereby requested to pay the following amount of fine to national revenue agencies within 7 days after receipt of the notification pursuant to Article 102 of the Law.

벌금에 상당한 금액 : _____
Amount of Fine

위 기간내에 위 통고의 요지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검찰청에 고발합니다.

If the fine is not paid by specified date in accordance with this notification, the said person shall be accused to the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according to the provision of Article 102 of the Immigration Law.

____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
CHIEF, ____ IMMIGRATION OFFICE

23236-06911일
95. 10. 5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추 68)

〔별지 제142호서식〕〈개정 99·2·27〉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용의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및 성별	( )
국 적		직 업	
대한민국내주소			

2. 용의사실

위반법조	출입국관리법 제 조제 항	위반기간	부터 까지 ( )	책임정도	□고의, □경과실 □중과실
체류자격		입국일자		입국목적	
용의사실 시인여부	□시인, □부인	통고처분 이행의사	□이행, □불이행, □불능		
참고사항					

위의 내용을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읽어드린 바) 오기나 증감 또는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서명(날인)하게 하다.

진술자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주사 ㊞
(출장소) 출입국관리서기 ㊞

3. 처분사항

주 문							
이 유							
적 용 법 조							
통 고 처 분 액		납부장소		납부기한		통고처분번호	

위와 같이 범칙금 납부통고를 받았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사건번호		결 재		
	접수일자				
	담 당 자				

23236-18211일
99.1.22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120g/㎡)

(추 109)

〔별지 제143호서식〕

제 호
No.

임 시 납 부 신 청 서
APPLICATION FOR DEPOSIT

DATE . . .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귀하
TO : CHIEF, ○○ IMMIGRATION OFFICE

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용의사건으로 조사중인 바, 아래 금액을 본인에 대한 범칙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임시 납부합니다.

I hereby submit the following amount of deposit toward the fine which will be levied to who is being examined for the alleged violation of the Immgration Law.

임 시 납 부 금 액 Amount					
성 명 및 성 별 Name in Full and Sex	( )				
생 년 월 일 Date of Birth		국 적 Nationality		직 업 Occupation	
주 소 Address in Korea					

신청인서명
Signature of Applicant

제 호 임시납부금수령증(RECEIPT)
No.

일 금 Amount : ₩ 원(Won)정
보관사유 Reason of Deposit

위 금액을 임시납부금으로 수령합니다.

It is acknowledged that the above-mentioned amount of deposit for the fine has been received.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
CHIEF, ○○ IMMIGRATION OFFICE
○○ 출입국관리사무소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 귀하 영수인서명
TO : Signature of Recipient

23236-18311일
93. 3. 22 승인

.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44호서식〕

범칙금임시보관대장

번호	일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위반법조	금액	통고처분액	환부	환부일자	비고

23236-18411비
93. 3. 22 승인

42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

(추 68)

〔별지 제145호서식〕 〈개정 98·4·1〉

○ 반기 사증발급현황(국적별·체류자격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공관명 :

국적별	체류자격별 / 합계		외교	공무	협정	일시취재	단기상용	단기종합	단기취업	문화예술	유학	산업연수	일반연수	취재	종교	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흥행	특정활동	연수취업	방문동거	거주	동반	재외동포	기타	관광취업
	계																														
	단수																														
	복수																														
	단수																														
	복수																														
	단수																														
	복수																														

23236-18511일
98.2.5 승인

728㎜×257㎜
(일반용지 60g/㎡)

〔별지 제146호서식〕 〈개정 95·12·1〉

○○ 월분 내·외국인출국자현황(항구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국적별	합계 / 항구별		김포	김해	부산	인천	제주	대구	광주	마산	동해	오산	울산	포항	대산	목포	여수	광양	통영	사천	거제	군산	성남	관문점
		계																						
		남																						
		여																						
한국인		남																						
		여																						

(추 97)

외국인		남																						
		여																						
		남																						
		여																						

23236-15411일
95.10.5 승인

728㎜×257㎜
(인쇄용지(2급) 60g/㎡)

(추 86)

[별지 제147호서식] 〈개정 95·12·1〉

○○월분 내·외국인입국자현황(항구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국적별	합계		김포	김해	부산	인천	제주	대구	광주	마산	동해	오산	울산	포항	대산	목포	여수	광양	통영	사천	거제	군산	성남	판문점
		계																						
		남																						
		여																						
한국인		남																						
		여																						
외국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3236-15511일
95.10.5 승인

728㎜×257㎜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48호서식〕〈개정 95·12·1〉

○○월분 국민출국자현황(행선국별·직업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행선국	합계		공무원	교육인	학생	문화운동오락	언론출판업	종교인	건설건축업	광업제조업	금융보험업	상업유통업	운송창고통신업	보건복지사업	서비스업	농업임업수산업	회사원	무직	기타	재외국민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3236-15611일
95.10.5 승인

728㎜×257㎜
(인쇄용지(2급) 60g/㎡)

(추 68)

(추 35)

〔별지 제149호서식〕

○○월분 국민출국자현황(행선국별·연령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행선국 \ 연령별	합계		0-5세	6-10	11-15	16-20	21-25	26-30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세이상	미상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23-22-01
76.7.29 승인

728㎜×257㎜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50호서식〕〈개정 95·12·1〉

○○월분 국민출국자현황(행선국별·출국목적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행선국	합계		출국 목적별	공무 수행	강의·연구	유학	연수	운동·예술	취재	종교·복지	취업	관광·시찰	회의 참석	상용	방문	동거	이민	미상	기타	재외 국민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3236-15711일
95. 10. 5 승인

728㎜×257㎜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51호서식〕 삭제 〈94·7·20〉

〔별지 제152호서식〕 〈개정 98·4·1〉

○○월분 외국인입국자현황(국적별·체류자격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국적별	합계	체류자격별	외교	공무	협정	사증면제	관광통과	일시취재	단기상용	단기종합	단기취업	문화예술	유학	산업연수	일반연수	취재	종교	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흥행	특정활동	연수취업	방문동거	거주	동반	재외동포	기타	관광취업	군인	긴급상륙	재난상륙	난민상륙
		계																																			
		남																																			
		여																																			
		남																																			
		여																																			
		남																																			
		여																																			

23236-14511일
98.2.5 승인

728㎜×257㎜
(일반용지 60g/㎡)

〔별지 제153호서식〕

○○월분 외국인입국자현황(국적별·연령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국적별	합계	연령별	0~5세	6~10	11~15	16~20	20~25	26~30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세 이상	미상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23-22-01
76.7.29 승인

728㎜×257㎜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54호서식〕 및 〔별지 제155호서식〕 삭제 〈94·7·20〉

〔별지 제156호서식〕

○○월분 외국인출국자현황(국적별·체류기간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국적별 \ 체류기간별	합계		1일	2일	3일	4일	5일	10일 이내	20일 이내	30일 이내	60일 이내	3개월 이 내	6개월 이 내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	10년 이내	10년 이상	재입국 허가자	군인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23-22-01
76.7.29 승인

728㎜×257㎜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57호서식〕〈개정 94·7·20〉

○○월분 상륙허가자현황(국적별)

사무소명 :

구분 / 국적별	소 계	승무원 상륙	긴급상륙	재난상륙	난민상륙	상륙허가자 출국

23236-14611일
94.6.1 승인

210㎜×297㎜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58호서식〕

○○월분 출입항선박및선원현황(국적별)

사무소명 :

구분 / 국적별	입항 선박수	입항시 선원수	출항 선박수	출항시 선원수	비 고
합 계					

※ 항공기 및 승무원통계는 별도로 할 것

122-22-03
75.7.29 승인

210㎜×297㎜
(인쇄용지(2급) 60g/㎡)

〔추 51〕

〔별지 제159호서식〕〈개정 95·12·1〉

○○월분 출입항선박및선원현황(항구별)

사무소명 :

구분 / 항구별	입항 선박수	입항시 선원수	출항 선박수	출항시 선원수	비고
부산					
인천					
제주					
동해					
마산					
울산					
포항					
대산					
목포					
여수					
광양					
통영					
사천					
거제					
군산					
합계					

23236-15811일
95.10.5 승인

210㎜×297㎜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60호서식〕

○○월분 출입항항공기및승무원현황(국적별)

사무소명 :

구분 / 국적별	입항 항공기수	입항시 승무원수	출항 항공기수	출항시 승무원수	비고
합계					

123-22-03
75.7.29 승인

210㎜×297㎜
(인쇄용지(2급) 60g/㎡)

(추 68)

(주 97)

〔별지 제161호서식〕 〈개정 98·4·1〉

○○월분 체류외국인현황(국적별·체류자격별)

19 . . . 현재

국적별	합계		체류자격별	외교	공무	협정	사증면제	관광통과	일시취재	단기상용	단기종합	단기취업	문화예술	유학	산업연수	일반연수	취재	종교	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흥행	특정활동	연수취업	방문동거	거주	동반	재외동포	기타	관광취업	군인	긴급상륙	재난상륙	난민상륙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3236-14711일
98.2.5 승인

728㎜×257㎜
(일반용지 60g/㎡)

〔별지 제162호서식〕

○○월분 등록외국인현황(국적별·체류지역별)

19 . . . 현재

체류지역별	합계	국적별	대만	미국	일본	필리핀	중국	기타
		계						
		거주						
		기타						
		거주						
		기타						
		거주						
		기타						
~~	~~~	~~~	~~~	~~~	~~~	~~~	~~~	~~~
		거주						
		기타						

123-22-10
76.12.20 승인

210㎜×297㎜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63호서식〕 〈개정 97·7·1〉

○○월분 출입국관리법위반자처리현황(국적별·조치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조치별 / 합계 / 국적별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통고처분					처분면제				과태료					고발	기타
				소계	체류	출국	기타	금액	소계	체류	출국	기타	소계	체류	출국	기타	금액		
~~	~~~	~~~	~~~	~~~	~~~	~~~	~~~	~~~	~~~	~~~	~~~	~~~	~~~	~~~	~~~	~~~	~~~	~~~	~~~

23236-08111일
97.5.28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164호서식〕 〈개정 99·2·27〉

○○월분 이중국적자현황

19 . . . 현재

구분 / 국적별	이중국적자			국적정리자				기타(사망, 완전출국등)
	소계	국민처우자	국민으로 처우되지 아니한 자	소계	국적이탈자	국적자동상실자	외국국적이탈자	
~~	~~~	~~~	~~~	~~~	~~~	~~~	~~~	~~~

23236-17011일
99.1.22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60g/㎡)

〔별지 제165호서식〕 삭제 〈99·2·27〉

(추 109)

〔별지 제166호서식〕〈개정 98·4·1〉

○○월분 사증발급인정서발급현황(국적별·체류자격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국적별	체류자격별 / 합계		외교	공무	협정	일시취재	단기상용	단기종합	단기취업	문화예술	유학	산업연수	일반연수	취재	종교	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흥행	특정활동	연수취업	방문동거	거주	동반	재외동포	기타	관광취업
	합계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3236-18611일
98.2.5 승인

728㎜×257㎜
(일반용지 60g/㎡)

(추 109)

〔별지 제167호서식〕

과태료처분통지서

제 호

성 명		생년월일		국 적	
주 소					
위반사항	위반법조항				
	위반내용				
과태료 금액					

1. 이 과태료 납입고지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02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납입고지가 없는 한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과태료 납입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과태료재판을 위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납입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과태료재판을 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과태료납입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출입국관리사무소장 ㊞

23236-18711일
93.3.22 승인

210㎜×297㎜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68호서식〕

과태료부과 및 수납대장

① 일련번호	② 통지서번호	③ 통지연월일	④ 납부기한 / ⑤ 납부연월일	⑥ 징수결정액 / ⑦ 수납액	⑧ 미수납액	납부의무자 ⑨ 성명	납부의무자 ⑩ 주소	⑪ 위반사항	⑫ 기록자인

23236-18811비
93.3.22 승인

420㎜×297㎜
(인쇄용지(특급) 70g/㎡)

(추 109)

〔별지 제169호서식〕 삭제 〈99·2·27〉

〔별지 제170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국 적	
	주 소					
처분내용	과태료 금액		처분통지서 번호			
	위반 내용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류를 덧붙여 이의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귀하

23236-19011일
93.3.22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추 109)

XVI. 산업재해보상보험법

●産業災害補償保險法

소관부처 : 노동부

全文改正 1994·12·22 法律第4826號
改正 1997· 8·28 法律第5398號
1997·12·13 法律第5454號(政府部處名稱등의변경에따른建築法등의整備에관한法律)
1998· 1·13 法律第5505號(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制定등에따른公認會計士法등의整備에관한法律)
1999· 2· 8 法律第5881號
1999·12·31 法律第6073號(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효율적처리및韓國資産管理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
1999·12·31 法律第6100號
2001·12·31 法律第6590號(基金管理基本法)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産業災害補償保險事業(이하 "保險事業"이라 한다)을 행하여 勤勞者의 業務상의 災害를 신속하고 公正하게 補償하고, 災害勤勞者의 再活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保險施設을 設置·운영하며 災害豫防 기타 勤勞者의 福祉增進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勤勞者 보호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9·12·31 法6100〉

第2條 (保險의 管掌과 保險年度) ①이 法에 의한 保險事業은 勞動部長官이 이를 管掌한다.

②이 法에 의한 保險事業의 保險年度는 政府會計年度에 따른다.

第3條 (國庫의 負擔 및 지원) ①國家는 每 會計年度 豫算의 범위안에서 保險事業의 事務執行에 소요되는 費用을 一般會計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每 會計年度 豫算의 범위안에서 保險事業에 소요되는 費用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第4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9·12·31 法6100〉

1. "業務상의 災害"라 함은 業務상의 사유에 의한 勤勞者의 負傷·疾病·身體障害 또는 死亡을 말한다. 이 경우 業務상의 災害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2. "勤勞者"·"賃金"·"平均賃金"·"通常賃金"이라 함은 각각 勤勞基準法에 의한 "勤勞者"·"賃金"·"平均賃金"·"通常賃金"을 말한다. 다만, 勤勞基準法에 의하여 "賃金" 또는 "平均賃金"을 決定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勞動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하는 금액을 당해 "賃金" 또는 "平均賃金"으로 한다.
3. "遺族"이라 함은 死亡한 者의 配偶者(사실상 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子女·父母·孫·祖父母 또는 兄弟姉妹를 말한다.

(추 139)

第4條의2 (基準賃金) ①사업 또는 事業場(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廢業·倒産등으로 賃金을 算定·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勞動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하는 金額(이하 "基準賃金"이라 한다)을 賃金으로 한다.

②基準賃金은 事業의 규모, 勤勞形態, 賃金水準등을 고려하여 時間·日·月 단위로 정하되 事業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決定할 수 있다.

〔本條新設 99·12·31 法6100〕

第5條 (적용범위) 이 法은 勤勞者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危險率·규모 및 事業場所등을 참작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12·31 法6100〉

第6條 (産業災害補償保險審議委員會) ①保險事業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勞動部에 産業災害補償保險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委員會는 勤勞者를 代表하는 者, 使用者를 代表하는 者 및 公益을 代表하는 者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同數로 한다.

③委員會는 그 審議事項을 검토·조정하고 委員會의 審議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專門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④委員會 및 專門委員會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條의2 (保險事業관련 調査·硏究) ①勞動部長官은 保險事業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調査·硏究事業등을 할 수 있다.

②勞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本條新設 99·12·31 法6100〕

第2章 保險加入者 및 保險關係

第7條 (保險加入者) ①이 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事業主는 당연히 産業災害補償保險(이하 "保險"이라 한다)의 保險加入者가 된다. 다만, 第5條 但書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事業主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12·31 法6100〉

②第5條 但書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事業主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勤勞福祉公團의 승인을 얻어 保險에 加入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에 加入한 事業主가 保險契約을 解止하고자 할 때에는 勤勞福祉公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의 解止는 그 保險關係가 成立한 保險年度가 종료한 때에 한한다. 〈改正 99·12·31 法6100〉

④勤勞福祉公團은 계속해서 保險關係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保險關係를 消滅시킬 수 있다.

第8條 (保險의 擬制加入) ①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保險의 當然

(추 119)

加入者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第5條 但書의 規定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事業主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에 加入한 것으로 본다.

②第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가 당해 사업의 운영중에 勤勞者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날부터 1年의 범위내에서 勤勞者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에도 保險에 加入한 것으로 본다. 〈新設 99·12·31 法6100〉

③第7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事業主에 의한 保險契約의 解止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9條 (都給 및 同種事業의 一括適用) ①사업이 數次의 都給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元受給人을 이 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事業主로 본다. 다만, 元受給人이 書面契約으로 下受給人에게 保險料의 納付를 引受하게 하는 경우에 元受給人의 申請에 의하여 勤勞福祉公團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下受給人을 이 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事業主로 본다.

②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의 當然加入者인 事業主의 각각의 사업이 다음 各號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전부를 이 法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事業主가 同一人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일 것
3. 각각의 사업은 第63條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事業種類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에 속할 것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一括適用을 받는 事業主외의 事業主가 同項第1號 및 第3號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勤勞福祉公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一括適用關係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解止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事業主는 그 保險年度 이후의 保險年度에도 계속하여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一括適用을 받는 것으로 본다. 〈改正 99·12·31 法6100〉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一括適用을 받고 있는 事業主가 그 一括適用關係를 解止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勤勞福祉公團에 申請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의 一括適用關係의 解止는 다음 保險年度의 保險關係부터 적용한다.

第10條 (保險關係의 成立日) 保險關係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날에 成立한다. 〈改正 99·12·31 法6100〉

1.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事業主가 保險의 當然加入者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開始된 날(第5條 但書의 規定에 의한 사업이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保險의 當然加入者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

(추 119)

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2.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에 가입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事業主가 勤勞福祉公團에 그 승인申請書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

第11條 (保險關係의 消滅日) 保險關係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날에 消滅한다. 〈改正 99·12·31 法6100〉

1. 사업이 廢止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
2.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의 경우에는 勤勞者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年이 되는 날의 다음날
3. 第7條第3項(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保險契約을 解止하는 경우에는 그 解止에 관하여 勤勞福祉公團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
4. 第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福祉公團이 保險關係의 消滅을 決定·통지한 날의 다음날

第12條 (保險關係의 申告) ①事業主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의 加入者가 되거나 사업의 廢止·종료로 인하여 保險關係가 消滅한 때에는 각각 事業開始日 또는 保險關係 消滅日부터 14日이내에 이를 勤勞福祉公團에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9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一括適用事業의 事業主는 그 각각의 사업(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된 사업을 제외한다)의 開始日부터 14日이내에 이를 勤勞福祉公團에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保險年度 初日부터 30日이내에 開始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一括適用의 申告 또는 申請과 동시에 해당사업의 事業開始申告를 할 수 있다. 〈改正 97·8·28〉

第3章 勤勞福祉公團

第13條 (勤勞福祉公團의 設立) 勞動部長官의 委託을 받아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勤勞福祉公團(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第14條 (公團의 사업) 公團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수행한다.

1. 保險加入者 및 受給權者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2.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의 徵收
3. 保險給與의 決定 및 지급
4. 保險給與에 관한 審査請求의 審理·決定
5. 雇傭保險料의 徵收와 관련하여 勞動部長官이 委託하는 업무
6. 産業災害補償保險施設의 設置·운영
7. 勤勞者의 福祉增進을 위한 사업
8. 기타 政府로부터 委託받은 사업
9. 第6號 내지 第8號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추 119)

第15條 (法人格) 公團은 法人으로 한다.

第16條 (事務所) ①公團의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정한다.

②公團은 필요한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第17條 (定款) ①公團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目 的
2. 명 칭
3. 주된 事務所와 分事務所에 관한 사항
4.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5. 理事會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豫算 및 決算에 관한 사항
8. 資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9.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內部規程의 制定·改正 및 廢止에 관한 사항
11. 公告에 관한 사항

②公團의 定款은 勞動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18條 (設立登記) 公團은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第19條 (任員) ①公團의 任員은 理事長 1人과 常任理事 3人을 포함한 15人이내의 理事와 監事 1人으로 한다. 〈改正 99·2·8〉

②理事長은 勞動部長官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命하고, 理事와 監事는 理事長의 提請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이 任命한다. 다만, 當然職理事를 제외한다.

③非常任理事에 대하여는 報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第20條 (任員의 任期)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각각 連任할 수 있다. 다만, 當然職理事의 任期는 그 在任期間으로 한다. 〈改正 99·12·31 法6100〉

第21條 (任員의 職務) ①理事長은 公團을 代表하고 公團의 業務를 統轄한다.

②常任理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團의 業務를 分掌하고, 理事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順位에 따라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監事는 公團의 業務 및 會計를 監査한다.

第22條 (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團의 任員이 될 수 없다.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2.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第23條 (任員의 當然退任·解任) ①任員이 第22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任員은 당연히 退任한다.

(추 119)

②任命權者는 任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任員을 解任할 수 있다.

1. 身體 또는 精神상의 障碍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職務상의 義務를 위반한 때
3.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公團에 損失을 발생하게 한 때

第24條 (任職員의 兼職制限) 公團의 常任任員 및 職員은 그 業務외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종사하지 못하며, 常任任員은 勞動部長官의, 職員은 理事長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職務를 겸할 수 없다.

第25條 (理事會) ①公團에는 그 業務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理事會를 둔다.

②理事會는 理事長 및 理事로 구성한다.

③理事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④理事會는 在籍構成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構成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⑤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理事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第26條 (職員의 任免 및 代理人의 選任) ①理事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團의 職員을 任免한다.

②理事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職員중에서 業務에 관한 裁判상 또는 裁判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第27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公團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28條 (業務의 指導·監督) ①公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 會計年度의 事業運營計劃과 豫算에 관하여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公團은 每 會計年度 종료후 2月이내에 事業實績과 決算을 勞動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勞動部長官은 公團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財産狀況을 檢査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定款의 변경을 명하는 등 監督상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第29條 (公團의 會計) ①公團의 會計年度는 政府會計年度에 따른다.

②公團은 保險事業에 관한 會計를 公團의 다른 會計와 구분하여 計理하여야 한다.

③公團은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會計規程을 정하여야 한다.

第30條 (資金의 借入등) ①公團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資金을 借入(國際機構·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으로부터의 借入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公團은 每 會計年度 保險事業과 관련하여 支出이 收入을 초과하게 될 때에는 第84條의 規定에 의한 責任準備金의 범위안에서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産業

(추 139)

災害補償保險및豫防基金에서 移入하여 충당할 수 있다. 〈改正 2001·12·31〉

第31條 (剩餘金의 처리) 公團은 每 會計年度末에 決算상 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公團의 會計規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會計別로 구분하여 損失金을 補塡하고 나머지는 이를 積立하여야 한다.

第32條 (業務의 委託) ①公團은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의 收納과 保險給與의 지급 기타 그 業務의 일부를 遞信官署 또는 金融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團이 委託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3條 (手數料등의 徵收) 公團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에 관하여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公團施設의 이용료·業務委託手數料등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受益者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第34條 (資料提供의 요청) ①公團은 保險料徵收등 業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國稅廳, 地方自治團體등 關係行政機關이나 保險事業과 관련되는 機關·團體등에 대하여 필요한 資料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9·12·31 法610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의 제공을 요청받은 關係行政機關이나 관련 機關·團體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新設 97·8·28〉

第35條 (出資등) ①公團은 公團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第14條第6號 내지 第8號의 사업에 出資하거나 出捐할 수 있다.

②公團은 醫療事業 및 再活事業등을 수행하는 産業災害補償保險施設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勞動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管理機構를 設立할 수 있다. 이 경우 管理機構는 法人으로 하여야 한다. 〈新設 99·12·31 法6100〉

③公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管理機構의 業務에 관하여 指導·監督한다. 〈改正 99·12·31 法6100〉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資·出捐 또는 管理機構의 設立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12·31 法6100〉

第36條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公團이 아닌 者는 勤勞福祉公團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第37條 (民法의 準用) 公團 및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機構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9·12·31 法6100〉

第4章 保險給與

第38條 (保險給與의 종류와 算定基準등) ①保險給與의 종류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9·12·31 法6100〉

1. 療養給與
2. 休業給與
3. 障害給與

(추 139)

3의2. 看病給與

4. 遺族給與

5. 傷病補償年金

6. 葬儀費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給與는 第40條·第41條·第42條·第42條의3·第43條·第44條 및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給與를 받을 수 있는 者(이하 "受給權者"라 한다)의 請求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改正 99·12·31 法6100〉

③保險給與의 算定에 있어서 그 勤勞者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職種의 勤勞者에게 지급되는 通常賃金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廢止·休業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平均賃金을 增減할 수 있다.

④保險給與의 算定에 있어서 당해 勤勞者의 勤勞形態가 特異하여 平均賃金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算定方法에 따라 算定한 금액을 平均賃金으로 한다. 〈改正 99·12·31 法6100〉

⑤保險給與의 算定에 있어서 塵肺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職業病으로 인하여 保險給與를 받게 되는 勤勞者에게 그 平均賃金을 적용하는 것이 勤勞者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算定方法에 따라 算定한 금액을 당해 勤勞者의 平均賃金으로 한다. 〈改正 99·12·31 法6100〉

⑥保險給與(葬儀費를 제외한다)의 算定에 있어서 당해 勤勞者의 平均賃金 또는 第3項 내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給與의 算定基準이 되는 平均賃金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勞動部長官이 告示하는 最高補償基準金額을 초과하거나 最低補償基準金額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最高補償基準金額 또는 最低補償基準金額을 각각 당해 勤勞者의 平均賃金으로 한다. 다만, 最低補償基準金額을 적용함에 있어서 休業給與 및 傷病補償年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12·31 法6100〉

第39條 (死亡의 推定) ①事故가 발생한 船舶 또는 航空機에 있던 勤勞者의 生死가 不明하거나 航行중의 船舶 또는 航空機에 있던 勤勞者의 行方不明 기타의 사유로 그 生死가 不明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死亡으로 推定하고, 遺族給與 및 葬儀費에 관한 規定을 적용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死亡의 推定으로 保險給與를 받은 후 그 勤勞者의 生存이 확인된 때에는 그 給與를 받은 者가 善意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惡意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2倍에 해당하는 금액을 返還하여야 한다.

第40條 (療養給與) ①療養給與는 勤勞者가 業務상의 사유에 의하여 負傷을 당하거나 疾病에 걸린 경우에 당해 勤勞者에게 지급한다. 〈新設 99·12·31 法6100〉

②療養給與는 療養費의 全額으로 하되, 公團이 設置한 保險施設 또는 公團이 지정한 醫療機關에서 療養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療養에 갈음하여

(추 119)

療養費를 지급할 수 있다.

③第1項의 경우에 負傷 또는 疾病이 3日이내의 療養으로 治癒될 수 있는 때에는 療養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第1項의 療養給與의 범위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9·12·31 法6100〉

1. 診 察
2. 藥劑 또는 診療材料와 義肢 기타 補綴具의 지급
3. 處置·手術 기타의 治療
4. 醫療施設에의 收容
5. 看 病
6. 移 送
7. 기타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항

⑤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療養給與의 범위·費用등 療養給與의 算定基準은 勞動部令으로 정하여 告示한다. 〈改正 99·12·31 法6100〉

⑥公團은 勤勞者가 療養하고 있는 保險施設 또는 醫療機關의 所在地·人力 또는 施設등이 그 勤勞者의 療養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保險施設 또는 醫療機關을 지정하여 그 保險施設 또는 醫療機關에서 療養하게 할 수 있다.

第40條의2 (再療養) ①第40條의 規定에 의한 療養給與를 받은 者가 治癒후 療養의 대상이 되었던 業務상의 負傷 또는 疾病이 재발하거나 治癒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治癒하기 위한 적극적인 治療가 필요하다는 醫學的 所見이 있는 경우에는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療養(이하 "再療養"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第4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障害補償年金을 先給받은 者가 그 先給期間중에 再療養을 받는 경우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休業給與 및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傷病補償年金은 그 先給期間중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障害補償年金의 受給權者가 再療養을 받는 경우에는 再療養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再療養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障害補償年金의 지급을 정지한다.

④再療養의 요건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9·12·31 法6100〕

第41條 (休業給與) ①休業給與는 業務상 사유에 의하여 負傷을 당하거나 疾病에 걸린 勤勞者에게 療養으로 인하여 就業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日당 支給額은 平均賃金의 100分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就業하지 못한 기간이 3日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改正 99·12·31 法6100〉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勤勞者가 一定年齡에 도달한 이후에는 勞動能力등을 고려하여 休業給與를 減額하여 지급하되, 그 年齡 및 지급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 一定年齡이후에 就業중인 者가 業務상의 災害로 인하여 療養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休業給與

(추 119)

를 減額하지 아니한다. 〈新設 99·12·31 法6100〉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한 休業給與가 最低賃金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最低賃金額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最低賃金額을 당해 勤勞者의 1日당 休業給與 지급액으로 한다. 〈新設 99·12·31 法6100〉

第42條 (障害給與) ①障害給與는 勤勞者가 業務상의 사유에 의하여 負傷을 당하거나 疾病에 걸려 治癒후 身體등에 障害가 있는 경우에 당해 勤勞者에게 지급한다. 〈新設 99·12·31 法6100〉

②障害給與는 障害等級에 따라 別表 1에 의한 障害補償年金 또는 障害補償一時金으로 하되, 그 障害等級의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障害補償年金 또는 障害補償一時金은 受給權者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勞動力을 완전히 상실한 障害等級의 勤勞者에 대하여는 障害補償年金을 지급한다. 〈改正 99·12·31 法6100〉

④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障害給與를 年金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障害補償一時金을 지급한다. 〈新設 99·12·31 法6100〉

⑤障害補償年金은 受給權者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그 年金의 最初의 1年分 또는 2年分을 先給할 수 있다. 다만, 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에게는 그 年金의 最初의 1年分 내지 4年分을 先給할 수 있다. 〈改正 99·12·31 法6100〉

⑥障害補償年金受給權者가 第42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受給權이 消滅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年金額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平均賃金으로 나눈 日數의 합계가 別表 1에 의한 障害補償一時金의 日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日數에 受給權 消滅당시의 平均賃金을 곱하여 算定한 금액을 遺族 또는 당해 勤勞者에게 一時金으로 지급한다. 〈改正 99·12·31 法6100〉

第42條의2 (障害補償年金 受給權의 消滅) 障害補償年金의 受給權者가 死亡하거나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受給權이 消滅한다.

〔本條新設 99·12·31 法6100〕

第42條의3 (看病給與) ①看病給與는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療養給與를 받은 者가 治癒후 醫學的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看病이 필요하여 실제로 看病을 받는 者에게 지급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看病給與의 지급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9·12·31 法6100〕

第43條 (遺族給與) ①遺族給與는 勤勞者가 業務상의 사유에 의하여 死亡한 경우에 遺族에게 지급한다. 〈改正 99·12·31 法6100〉

②遺族給與는 別表 2에 의한 遺族補償年金 또는 遺族補償一時金으로 하되, 遺族補償一時金은 遺族給與를 年金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改正 99·12·31 法6100〉

(추 126)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遺族補償年金의 受給權者가 원하는 경우에는 別表 2의 遺族補償一時金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一時金으로 지급하고 遺族補償年金은 100分의 50을 減額하여 지급한다. 〈改正 99·12·31 法6100〉

④遺族補償年金을 받던 者가 그 受給資格을 잃은 경우 다른 受給資格者가 없고 이미 지급한 年金額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平均賃金으로 나눈 日數의 合計가 1,300日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日數에 受給資格喪失당시의 平均賃金을 곱하여 算定한 금액을 遺族補償年金受給資格者가 아닌 다른 遺族에게 一時金으로 지급한다.

⑤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遺族補償年金의 지급기준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9·12·31 法6100〉

第43條의2 (遺族補償年金受給資格者의 범위) ①遺族補償年金을 받을 수 있는 資格이 있는 者(이하 "遺族補償年金受給資格者"라 한다)는 遺族으로서 勤勞者의 死亡당시 그에 의하여 扶養되고 있던 者중 妻(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 한다.

1. 남편(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父母 또는 祖父母로서 60歲이상인 者
2. 子女 또는 孫으로서 18歲미만인 者
3. 兄弟姉妹로서 18歲미만이거나 60歲이상인 者
4. 第1號 내지 第3號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子女·父母·孫·祖父母 또는 兄弟姉妹로서 第4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障害等級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等級이상에 해당하는 身體障害가 있는 者

②勤勞者의 死亡당시 胎兒이었던 子女가 출생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勤勞者의 死亡당시 그에 의하여 扶養되고 있던 者로 본다.

③遺族補償年金受給資格者가 遺族補償年金을 받을 權利의 順位는 配偶者·子女·父母·孫·祖父母 및 兄弟姉妹의 순서로 한다.

〔本條新設 99·12·31 法6100〕

第43條의3 (遺族補償年金受給資格者의 失格 및 지급정지등) ①遺族補償年金受給資格者인 遺族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資格을 잃는다.

1. 死亡한 때
2. 再婚한 때(死亡勤勞者의 配偶者에 한하며, 사실상 婚姻關係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死亡勤勞者와의 親族關係가 종료한 때
4. 子女·孫 또는 兄弟姉妹가 18歲에 달한 때
5. 第43條의2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身體障害가 있었던 者로서 그 상태가 해소된 때

②遺族補償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遺族補償年金受給資格者(이하 "遺族補償年

(추 119)

金受給權者"라 한다)가 그 資格을 잃은 경우에 遺族補償年金을 받을 權利는 같은 順位者가 있는 때에는 같은 順位者에게, 같은 順位者가 없는 때에는 다음 順位者에게 移轉된다.

③遺族補償年金受給權者가 1年이상 行方不明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年金의 지급을 정지하고 다음 順位者에게 이를 지급한다.

〔本條新設 99·12·31 法6100〕

第43條의4 (受給權者인 遺族의 順位) ①第42條第6項·第43條第2項(遺族補償一時金에 한한다)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遺族間의 受給權의 順位는 다음 各號의 순서로 하되, 各號의 者間에 있어서는 각각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이 경우 같은 順位의 受給權者가 2人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遺族에게 等分하여 지급한다.

1. 勤勞者의 死亡당시 그에 의하여 扶養되고 있던 配偶者·子女·父母·孫 및 祖父母
2. 勤勞者의 死亡당시 그에 의하여 扶養되고 있지 아니하던 配偶者·子女·父母·孫 및 祖父母 또는 勤勞者의 死亡당시 그에 의하여 扶養되고 있던 兄弟姉妹
3. 兄弟姉妹

②第1項의 경우 父母에 있어서는 養父母를 先順位로, 實父母를 後順位로 하고, 祖父母에 있어서는 養父母의 父母를 先順位로, 實父母의 父母를 後順位로, 父母의 養父母를 先順位로, 父母의 實父母를 後順位로 한다.

③受給權者인 遺族이 死亡한 경우 그 保險給與는 같은 順位者가 있는 때에는 같은 順位者에게, 같은 順位者가 없는 때에는 다음 順位者에게 지급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勤勞者가 특히 遺言으로써 保險給與를 받을 遺族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른다.

〔本條新設 99·12·31 法6100〕

第44條 (傷病補償年金) ①療養給與를 받는 勤勞者가 療養開始후 2年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다음 各號의 要件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休業給與 대신 傷病補償年金을 당해 勤勞者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第42條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障害補償年金을 받고 있던 者가 再療養하고 있는 경우에는 療養開始후 2年이 경과된 것으로 본다. 〈改正 99·12·31 法6100〉

1. 당해 負傷 또는 疾病이 治癒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을 것
2. 그 負傷 또는 疾病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할 것

②傷病補償年金은 別表 3에 의한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改正 99·12·31 法6100〉

③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勤勞者가 一定年齡에 도달한 이후에는 勞動能力등을 고려하여 傷病補償年金을 減額하여 지급하되, 그 年齡 및 지급기준등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 一定年齡 이후에 就業중인 者가 業務상

(추 126)

의 災害로 인하여 療養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傷病補償年金을 減額하지 아니한다. 〈改正 99·12·31 法6100〉

第45條 (葬儀費) ①葬儀費는 勤勞者가 業務상의 사유에 의하여 死亡한 경우에 지급하되, 平均賃金의 120日分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葬祭를 행하는 者에게 지급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葬儀費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勞動部長官이 告示하는 最高金額을 초과하거나 最低金額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最高金額 또는 最低金額을 각각 葬儀費로 한다.

〔全文改正 99·12·31 法6100〕

第45條의2 (後遺症狀의 診療) 公團은 第40條의2의 規定에 의한 再療養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業務상의 負傷 또는 疾病의 특성상 治癒된 후에 後遺症狀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者에 대하여는 第4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醫療機關에서 필요한 措置를 받도록 할 수 있다.

〔本條新設 99·12·31 法6100〕

第46條 (障害特別給與) ①保險加入者의 故意 또는 過失로 발생한 業務상 災害로 인하여 勤勞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障害等級에 해당하는 障害를 입은 경우에 受給權者가 民法에 의한 損害賠償請求에 갈음하여 障害特別給與를 請求한 때에는 第42條의 障害給與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障害特別給與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勤勞者와 保險加入者 사이에 障害特別給與에 관하여 合意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②受給權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障害特別給與를 받은 때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保險加入者에게 民法 기타 法令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없다.

③公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障害特別給與를 지급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給與額의 全額을 保險加入者로부터 徵收한다.

第47條 (遺族特別給與) ①保險加入者의 故意 또는 過失로 발생한 業務상 災害로 인하여 勤勞者가 死亡한 경우에 受給權者가 民法에 의한 損害賠償請求에 갈음하여 遺族特別給與를 請求한 때에는 第43條의 遺族給與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遺族特別給與를 지급할 수 있다.

②第46條第1項 但書·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遺族特別給與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障害特別給與"는 "遺族特別給與"로 본다.

第48條 (다른 補償 또는 賠償과의 관계) ①受給權者가 이 法에 의하여 保險給與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保險加入者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勤勞基準法에 의한 災害補償責任이 免除된다.

②受給權者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法에 의한 保險給與를 받은 경우에는 保險加入者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民法 기타 法令에 의한 損害賠償의 責任이 免除된다. 이 경우 障害補償年金 또는 遺族補償年金을 받고 있는 者는 障害補償一時金 또는 遺族補償一時金을 받은 것으로 본다.

(추 126)

③受給權者가 동일한 사유로 民法 기타 法令에 의하여 이 法의 保險給與에 상당한 金品을 받은 때에는 公團은 그 받은 金品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換算한 금액의 한도안에서 이 法에 의한 保險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第2項 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受給權者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障害補償一時金 또는 遺族補償一時金에 해당하는 年金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療養給與를 받는 勤勞者가 療養을 개시한 후 3年이 경과된 날이후에 傷病補償年金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勤勞基準法 第30條第2項 但書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使用者는 그 3年이 경과된 날이후에는 同法 第87條에 規定된 一時補償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改正 97·12·13〉

第49條 削除 〈99·12·31 法6100〉

第50條 (未支給의 保險給與) ①保險給與의 受給權者가 死亡한 경우에 그 受給權者에게 지급하여야 할 保險給與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保險給與가 있는 때에는 당해 受給權者의 遺族(遺族給與의 경우에는 그 遺族給與를 받을 수 있는 다른 遺族)의 請求에 의하여 그 保險給與를 지급한다.

②第1項의 경우에 그 受給權者가 死亡전에 保險給與를 請求하지 아니한 때에는 同項의 規定에 의한 遺族의 請求에 의하여 그 保險給與를 지급한다.

第51條 (保險給與의 지급) 保險給與는 支給決定日부터 14日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第52條 (保險給與支給의 制限) ①公團은 勤勞者가 정당한 이유없이 療養에 관한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負傷·疾病 또는 身體障害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治癒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保險給與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公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決定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계保險加入者와 勤勞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53條 (不當利得의 徵收) ①公團은 保險給與를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給與額에 해당하는 금액을 徵收하여야 한다. 다만, 第1號의 경우에는 그 給與額의 2倍에 해당하는 금액을 徵收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保險給與를 받은 경우
2. 受給權者 또는 受給權이 있었던 者가 第99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保險給與를 지급받은 경우
3. 기타 過誤給된 保險給與가 있는 경우

②第1項第1號의 경우 保險給與의 지급이 保險加入者의 허위의 申告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保險加入者도 連帶하여 責任을 진다.

〔全文改正 99·12·31 法6100〕

第53條의2 (保險給與의 충당) 公團은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不當利得을 받은 者에 대하여 지급할 保險給與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第53條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추 119)

〔全文改正 99·12·31 法6100〕

第54條 (第3者에 대한 求償權) ①公團은 第3者의 행위에 의한 災害로 인하여 保險給與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給與額의 한도안에서 給與를 받은 者의 第3者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權을 代位한다. 다만, 保險加入者인 2이상의 事業主가 같은 場所에서 하나의 사업을 分割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중 事業主를 달리하는 勤勞者의 행위로 災害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경우에 受給權者가 第3者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 法의 保險給與에 상당하는 損害賠償을 받은 경우에는 公團은 그 賠償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換算한 금액의 한도안에서 이 法에 의한 保險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受給權者 및 保險加入者는 第3者의 행위로 인한 災害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公團에 申告하여야 한다.

第55條 (受給權의 보호) ①勤勞者의 保險給與를 받을 權利는 그 退職으로 인하여 消滅되지 아니한다.

②保險給與를 받을 權利는 讓渡 또는 押留할 수 없다. 〈改正 99·12·31 法6100〉

第55條의2 (受給權의 代位) 保險加入者가 소속勤勞者의 業務상의 災害에 대하여 이 法에 의한 保險給與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民法 기타 法令에 의하여 保險給與에 상당하는 金品을 受給權者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金品이 保險給與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保險加入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受給權者의 保險給與를 받을 權利를 代位한다.

〔本條新設 99·12·31 法6100〕

第56條 (公課金의 免除) 保險給與로서 지급된 金品에 대하여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公課金을 賦課하지 아니한다.

第5章 保險料

第57條 (保險料의 徵收) 公團은 保險事業에 소요되는 費用에 충당하기 위하여 保險加入者로부터 保險料를 徵收한다.

第58條 (産業災害補償保險事務組合) ①事業主등을 構成員으로 하는 團體로서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團體 또는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設立된 法人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團體(이하 "事業主團體등"이라 한다)는 保險加入者의 委託을 받아 保險加入者가 납부하여야 할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의 납부와 기타 保險에 관한 사무(이하 "保險事務"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保險事務를 委託할 수 있는 保險加入者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12·31 法6100〉

②事業主團體등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事務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認可받은 사항(勞動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추 119)

99·12·31 法6100〉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를 받은 事業主團體등(이하 "保險事務組合"이라 한다)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廢止하거나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公團에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9·12·31 法6100〉

④公團은 保險事務組合이 保險事務를 違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懈怠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取消할 수 있다.

⑤公團은 保險事務組合이 保險事務를 처리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徵收費用을 교부할 수 있다.

第59條 (保險事務組合에 대한 통지등) 公團은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의 납입등의 통지 또는 返還金의 返還을 保險加入者가 保險事務를 委託한 保險事務組合에 대하여 행함으로써 당해 保險加入者에 대한 통지 또는 返還에 갈음할 수 있다.

第60條 (保險事務組合의 納付義務등) ①保險事務組合은 保險事務를 委託한 保險加入者로부터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을 수령하여 納付期日내에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公團이 第70條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 第71條의 規定에 의한 延滯金 및 第72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保險給與額을 徵收하는 경우에 그 徵收事由가 保險事務組合의 歸責事由로 인한 때에는 그 한도안에서 그 保險事務組合이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第61條 (保險事務組合의 帳簿備置등) 保險事務組合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險事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帳簿 및 기타 書類를 事務所에 비치하여야 한다.

第62條 (保險料의 算定) ①保險料는 保險加入者가 경영하는 사업의 賃金總額에 同種의 사업에 적용되는 保險料率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第65條第1項 및 第6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賃金總額의 推定額 또는 賃金總額을 決定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勞動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하는 勞務比率에 의하여 賃金總額의 推定額 또는 賃金總額을 決定한다.

第63條 (保險料率의 결정) ①保險料率은 매년 9月 30日 현재 과거 3年간의 賃金總額에 대한 保險給與總額의 比率을 기초로 하고 이 法에 의한 年金등 保險給與에 소요되는 금액, 災害豫防 및 災害勤勞者의 福祉增進등에 소요되는 費用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決定한다. 이 경우 賃金 1원을 保險料率의 算出單位로 한다.

②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保險關係가 成立하여 3年이 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保險料率은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사업종류별로 따로 이를 정한다.

第64條 (保險料率決定의 特例) 公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月 30

(추 119)

日 현재 保險關係가 成立하여 3年을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 당해年度 9月 30日 현재 과거 3年간의 保險料의 금액에 대한 保險給與의 금액의 比率이 100分의 85를 넘거나 100分의 75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保險料率을 100分의 50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引上 또는 引下한 率을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保險年度의 保險料率로 할 수 있다. 〈改正 97·8·28〉

第65條 (概算保險料의 申告와 납부) ①保險加入者는 每 保險年度마다 그 1年간(保險年度중에 保險關係가 成立한 경우에는 그 成立日부터 그 保險年度의 末日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모든 勤勞者에게 지급할 賃金總額의 推定額(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前年度에 사용한 모든 勤勞者에게 지급한 賃金總額)에 保險料率을 곱하여 算定한 금액(이하 "概算保險料"라 한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險年度의 初日(保險年度중에 保險關係가 成立한 경우에는 그 保險關係의 成立日)부터 70日이내에 公團에 申告·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建設工事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日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終了日 전일까지 申告·납부하여야 한다.

②保險加入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概算保險料를 납부한 후 賃金總額의 推定額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末日까지 증가후의 賃金總額의 推定額에 따라 算定한 概算保險料額과 이미 납부한 概算保險料額과의 差額을 公團에 申告·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가 작은 事業主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改正 99·12·31 法6100〉

③公團은 保險加入者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申告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調査하여 概算保險料를 算定하여 徵收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差額을 徵收한다.

④保險加入者는 第1項 및 第2項의 概算保險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分割納付할 수 있다.

⑤保險加入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分割納付할 수 있는 概算保險料를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納付期限내에 全額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概算保險料의 금액에서 100分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第66條 (保險料率의 引上 또는 引下등에 따른 措置) ①公團은 保險料率이 引上 또는 引下된 때에는 概算保險料를 追加徵收 또는 減額調整한다.

②公團은 保險加入者가 保險年度중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이미 申告한 概算保險料總額이 실제의 概算保險料總額보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保險加入者의 申請에 의하여 그 超過額을 減額할 수 있다.

第67條 (確定保險料의 申告·납부와 精算) ①保險加入者는 每 保險年度의 末日 또는 保險關係가 消滅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모든 勤勞者에게 지급한 賃金總額(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保險料率을 곱하여 算定한 금액(이하

(추 119)

"確定保險料"라 한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保險年度의 初日부터 70日(保險年度중에 保險關係가 消滅한 사업에 있어서는 保險關係가 消滅한 날의 다음날부터 30日)이내에 公團에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9·12·31 法6100〉

②第65條 및 第6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 또는 追加徵收한 概算保險料의 금액이 第1項의 確定保險料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公團은 그 超過額을 保險加入者에게 返還하여야 하며, 부족되는 경우에는 保險加入者는 그 不足額을 다음 保險年度의 初日부터 70日(保險年度중에 保險關係가 消滅한 사업에 있어서는 消滅한 날의 다음날부터 30日)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公團은 保險加入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申告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調査하여 確定保險料의 금액을 算定하여야 한다.

④公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確定保險料의 금액을 算定한 경우에 保險加入者가 概算保險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確定保險料의 全額을 徵收하고, 概算保險料를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금액이 確定保險料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超過額을 保險加入者에게 返還하며, 납부한 概算保險料의 金額이 確定保險料의 금액에 부족되는 때에는 그 不足額을 徵收한다.

第67條의2 (保險料徵收의 特例) 公團은 第65條第3項 및 第6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料를 徵收함에 있어 決算書등 保險料算定을 위한 기초資料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등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保險加入者의 적용사업과 규모·賃金水準 및 賣出額등이 유사한 同種業種의 事業을 기준으로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事業의 保險料를 算定·賦課하여 徵收할 수 있다.

〔本條新設 99·12·31 法6100〕

第68條 (確定保險料의 申告·납부 및 精算의 特例) ①公團은 第6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建設工事등에 있어서 確定保險料의 금액에 대한 保險給與의 금액의 比率이 100分의 85를 넘거나 100分의 75이하인 경우에는 確定保險料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00分의 50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率만큼 引上하거나 引下하여 얻은 금액을 保險加入者가 그 사업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保險料의 금액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每 保險年度의 末日 또는 保險關係가 消滅한 날이후에도 지급하여야 할 保險給與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保險給與의 금액의 算定方法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7·8·28〉

②第65條 또는 第6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 또는 追加徵收한 概算保險料의 금액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한 保險料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公團은 그 超過額을 保險加入者에게 返還하여야 하며, 부족되는 경우에는 保險加入者는 그 不足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公團은 保險加入者가 第6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추 119)

申告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調査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確定保險料의 금액을 算定하여야 한다.

④公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確定保險料의 금액을 算定한 경우에 保險加入者가 概算保險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確定保險料의 全額을 徵收하고, 概算保險料를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금액이 確定保險料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超過額을 保險加入者에게 返還하며, 납부한 概算保險料의 금액이 確定保險料의 금액에 부족되는 때에는 그 不足額을 徵收한다.

第69條 (保險料등 過納額의 충당과 返還) ①公團은 保險加入者가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과 滯納處分費로서 납부한 금액중 過誤納付한 금액 또는 第66條, 第67條第2項·第4項 또는 第68條第2項·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超過納付한 금액을 返還하고자 하는 때 또는 第55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加入者에게 保險給與를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順位에 따라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에 우선 충당하고 그 殘額을 당해 保險加入者에게 返還하여야 한다. 〈改正 99·12·31 法6100〉

②公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誤納付한 금액 또는 超過納付한 금액을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에 충당하거나 返還하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1에 規定된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 또는 返還하기로 결정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利子率에 따라 計算한 금액을 그 過誤納付한 금액 또는 超過納付한 금액에 加算하여야 한다.

1. 錯誤納付, 二重納付, 납부후 그 賦課의 取消 또는 更正決定으로 인한 超過額에 있어서는 그 納付日
2. 第6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減額申請에 의하여 保險料를 減額한 경우의 超過額에 있어서는 概算保險料減額申請書 接受日부터 7日
3. 第67條第2項·第4項 또는 第68條第2項·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返還하는 경우에는 確定保險料申告書 接受日부터 7日

第70條 (加算金의 徵收) 公團은 第67條第4項 또는 第6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料를 徵收할 때에는 그 徵收하여야 할 保險料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加算金으로 徵收한다. 다만, 加算金의 금액이 少額이거나 기타 그 徵收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12·31 法6100〉

第71條 (延滯金의 徵收) 公團은 保險加入者가 第65條 내지 第68條의 規定에 의한 납부기간까지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延滯期間에 대하여 60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銀行의 延滯利子率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月 單位로 延滯金을 徵收한다. 다만, 延滯金의 금액이 少額이거나 기타 그 徵收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 119)

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改正 97·8·28, 99·12·31 法6100〉

第72條 (保險加入者로부터의 保險給與額의 徵收) ①公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災害에 대하여 保險給與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給與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保險加入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改正 99·12·31 法6100〉

1. 事業主가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加入申告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災害
2. 保險加入者가 保險料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災害

②公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給與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徵收하기로 決定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保險加入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73條 (徵收金의 독촉) ①公團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을 徵收하는 경우에 미리 納付義務者에게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新設 99·12·31 法6100〉

②公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徵收金의 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期限을 정하여 그 納付義務者에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改正 99·12·31 法6100〉

③公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納付期限은 10日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99·12·31 法6100〉

第74條 (徵收金의 滯納處分) ①公團은 第73條의 規定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者가 그 期限내에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②公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押留한 財産의 公賣에 專門知識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公賣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효율적처리및韓國資産管理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資産管理公社(이하 "韓國資産管理公社"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代行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公賣는 公團이 한 것으로 본다. 〈新設 97·8·28, 99·12·31 法6073·法6100〉

③公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資産管理公社가 公賣를 代行하는 경우에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지급할 수 있다. 〈新設 97·8·28, 99·12·31 法6073〉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資産管理公社가 公賣를 代行하는 경우에 成業公社의 任·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新設 97·8·28, 99·12·31 法6073〉

第75條 (徵收金의 缺損處分) ①公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을 缺損處分할 수 있다.

(추 119)

1. 滯納處分이 終結되고 滯納額에 충당될 配分金額이 그 滯納額에 부족되는 경우
2. 당해 權利에 대한 消滅時效가 완성된 경우
3. 徵收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②公團은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缺損處分을 한 후 다른 押留할 수 있는 財産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取消하고, 滯納處分을 하여야 한다.

第76條 (保險料徵收의 優先順位)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의 徵收優先順位는 國稅 및 地方稅의 다음으로 한다.

第77條 (書類의 送達) 國稅基本法 第8條 내지 第12條의 規定은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에 관한 書類의 송달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77條의2 (保險料 및 負擔金徵收에 관한 特例) ①公團은 이 法에 의한 保險料·기타 徵收金과 賃金債權保障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同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기타 徵收金을 통합하여 徵收하여야 한다.

②事業主는 이 法에 의한 保險料와 賃金債權保障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이하 "保險料등"이라 한다)을 통합하여 申告·납부하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保險料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총액중에서 당해 事業主가 납부하여야 할 保險料와 負擔金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保險料와 負擔金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④第3項의 規定은 保險料등의 延滯金·加算金에도 準用한다.

⑤公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 또는 납부된 保險料등을(延滯金·加算金을 포함한다) 保險料 또는 負擔金으로 납부된 금액만큼(延滯金·加算金을 포함한다) 第80條의 規定에 의하여 설치된 基金과 賃金債權保障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설치된 基金에 각각 納入하여야 한다. 이 경우 精算基準과 精算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9·12·31 法6100〕

第6章 勤勞福祉事業

第78條 (勤勞福祉事業) ①勞動部長官은 勤勞者의 福祉增進을 위한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1. 業務상의 災害를 입은 勤勞者의 원활한 社會復歸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各目의 保險施設의 設置·운영
   가. 療養 또는 外科後 處置에 관한 施設
   나. 醫療再活 또는 職業再活에 관한 施設
2. 奬學事業등 災害勤勞者와 그 遺族의 福祉增進을 위한 사업
3. 기타 勤勞者의 福祉增進을 위한 施設의 設置·운영사업

②勞動部長官은 公團 또는 災害勤勞者의 福祉增進을 위하여 設立된 法人중 勞動部長官의 지정을 받은 法人(이하 "指定法人"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행하게 하거나 同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保險施設의 운영을 委託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法人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

(추 139)

으로 정한다.

④勞動部長官은 豫算의 범위안에서 指定法人의 사업에 필요한 費用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第79條 (身體障害者의 雇傭促進) 勞動部長官은 障害給與를 받은 者의 障害程度를 참작하여 保險加入者가 災害勤勞者를 그 적성에 맞는 업무에 雇傭하도록 勸告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第7章 産業災害補償保險및豫防基金

第80條 (基金의 設置 및 造成) ①勞動部長官은 보험사업, 산업재해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保險給與에 충당하기 위하여 産業災害補償保險및豫防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改正 2001·12·31〉

②基金은 保險料·基金運用收益金·積立金·基金의 決算상 剩餘金·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借入金 기타 收入金을 財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 〈改正 2001·12·31〉

③정부는 산업재해예방사업의 수행을 위해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범위안에서 제2항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第81條 (基金의 用途) ①基金은 다음 各號의 用途에 사용한다. 〈改正 2001·12·31〉

1. 保險給與의 지급 및 返還金의 返還
2. 借入金 및 그 利子의 償還
3. 公團에의 出捐
4. 産業安全保健法 제6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용도
5. 災害勤勞者의 福祉增進
6. 韓國産業安全公團法에 의한 韓國産業安全公團에의 출연금
7. 기타 保險事業 및 基金의 관리·運用

②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5이상을 제1항제4호에 의한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第82條 (基金의 관리·運用) ①基金은 勞動部長官이 관리·運用한다.

②勞動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방법에 의하여 基金을 관리·運用하여야 한다.

1. 金融機關 또는 遞信官署에의 預入 및 金錢信託
2. 財政資金에의 預託
3. 投資信託등의 收益證券 買入
4.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金融機關이 직접 발행하거나 債務履行을 보증하는 有價證券의 買入
5. 기타 基金增殖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③勞動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金을 관리·運用함에 있어서는 그 收益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수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勞動部長官은 企業會計의 原則에 따라 基金을 計理하여야 한다.

⑤勞動部長官은 基金의 관리·運用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公團에 委託할 수 있다.

第83條 (基金의 運用計劃) ①勞動部長官은 每 會計年度마다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추 139)

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한 때에는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84條 (責任準備金의 積立) ①勞動部長官은 保險給與에 충당하기 위하여 責任準備金을 積立하여야 한다.

②勞動部長官은 每 會計年度마다 責任準備金을 算定하여 積立金保有額이 責任準備金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超過額을 장래의 保險給與支給財源으로 사용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不足額을 保險料收入에서 積立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責任準備金의 算定基準 및 積立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5條 (剩餘金과 損失金의 처리) ①基金의 決算상 剩餘金이 생긴 때에는 이를 積立金으로 積立하여야 한다.

②基金의 決算상 損失金이 생긴 때에는 積立金을 사용할 수 있다.

第86條 (借入金) ①基金에 속하는 經費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基金의 負擔으로 借入할 수 있다.

②基金에 있어서 支給상 現金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基金의 負擔으로 一時借入을 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一時借入金은 당해 會計年度안에 償還하여야 한다.

第87條 (基金의 出納등) 기금의 관리·運用에 있어서의 出納節次등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章 審査請求 및 再審査請求

第88條 (審査請求의 제기) ①保險給與에 관한 決定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者는 公團에 審査請求를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請求는 당해 保險給與에 관한 決定을 행한 公團의 所屬機關을 거쳐 公團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請求는 保險給與에 관한 決定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日이내에 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請求書를 받은 公團의 所屬機關은 5日이내에 意見書를 첨부하여 이를 公團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保險給與에 관한 決定에 대하여는 行政審判法에 의한 行政審判을 제기할 수 없다.

第89條 (審査請求에 대한 審理·決定) ①公團은 第8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請求書를 송부받은 날부터 50日이내에 審査請求에 대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決定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次에 한하여 10日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추 119)

②公團은 審査請求의 審理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請求人의 申請 또는 職權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할 수 있다. 〈改正 99·12·31 法6100〉

1. 請求人 또는 關係人을 指定場所에 출석하게 하여 質問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請求人 또는 關係人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文書 기타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專門的인 知識이나 經驗을 가진 第3者로 하여금 鑑定하게 하는 것
4. 所屬職員으로 하여금 事件에 관계가 있는 事業場 기타 場所에 출입하여 事業主·勤勞者 기타 관계인에게 質問하게 하거나, 文書 기타 물건을 檢査하게 하는 것
5. 審査請求와 관계가 있는 勤勞者에 대하여 公團이 지정하는 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이하 "醫師등"이라 한다)의 診斷을 받게 하는 것

③第2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質問이나 檢査를 행하는 所屬職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90條 (再審査請求의 제기) ①第8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請求에 대한 決定에 불복이 있는 者는 第91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災害補償保險審査委員會에 再審査請求를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審査請求는 당해 保險給與에 관한 決定을 행한 公團의 所屬機關을 거쳐 産業災害補償保險審査委員會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審査請求는 審査請求에 대한 決定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日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④第88條第4項의 規定은 再審査請求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審査請求書"는 "再審査請求書"로, "公團"은 "産業災害補償保險審査委員會"로 본다.

第91條 (産業災害補償保險審査委員會) ①第90條의 規定에 의한 再審査請求를 審理·裁決하게 하기 위하여 勞動部에 産業災害補償保險審査委員會(이하 "審査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審査委員會는 委員長을 포함한 30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중 2人은 常任委員으로, 1人은 當然職委員으로 한다. 〈改正 99·12·31 法6100〉

③審査委員會의 委員중 3分의 1에 해당하는 委員은 第4項第6號에 規定된 者로 구성한다. 이 경우 勤勞者團體 및 使用者團體가 추천한 者는 同數로 하여야 한다. 〈改正 99·12·31 法6100〉

④審査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에서 勞動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다만, 當然職委員은 勞動部長官이 소속 2級 또는 3級의 一般職公務員중에서 지명하는 者로 한다. 〈改正 99·12·31 法6100〉

1. 3級이상의 公務員으로 在職하고 있거나 있었던 者
2. 判事·檢事·辯護士 또는 公認勞務士로서 10년이상의 經歷이 있는 者

(추 119)

3. 高等敎育法에 의한 大學에서 副敎授이상으로 在職하고 있거나 있었던 者
4. 勞動關係業務에 15年이상 종사한 者로서 審査委員會의 委員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者
5. 社會保險 또는 産業醫學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있는 者로서 審査委員會의 委員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者
6. 第2號 내지 第5號에 해당하는 者중에서 勤勞者團體 및 使用者團體가 각각 추천하는 者

⑤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委員에 任命될 수 없다.

1. 禁治産·限定治産 또는 破産의 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2.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3. 心神喪失者·心神薄弱者

⑥委員(當然職委員을 제외한다)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다만, 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⑦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免職되지 아니한다.

1.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경우
2. 長期의 心神衰弱으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⑧審査委員會에 事務局을 둔다.

⑨審査委員會 및 事務局의 組織·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92條 (再審査請求에 대한 審理·裁決) ①第89條의 規定은 再審査請求에 대한 審理·裁決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公團"은 "審査委員會"로, "審査請求"는 "再審査請求"로, "決定"은 "裁決"로, "所屬職員"은 "審査委員會의 委員"으로 본다.

②審査委員會의 裁決은 公團을 羈束한다.

第93條 (審査 및 再審査請求人의 地位承繼) 審査請求人 또는 再審査請求人이 死亡한 경우 그 請求人이 保險給與의 受給權者인 때에는 第43條第1項 또는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遺族이, 그외의 者인 때에는 相續人 또는 審査請求나 再審査請求의 대상인 保險給與에 관련된 權利·利益을 承繼한 者가 각각 請求人의 地位를 承繼한다. 〈改正 99·12·31 法6100〉

第94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第88條 및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請求 및 再審査請求의 제기는 時效中斷에 관하여 民法 第168條의 規定에 의한 裁判상의 請求로 본다.

②第90條의 規定에 의한 再審査請求에 대한 裁決은 行政訴訟法 第18條를 적용함에 있어 이를 行政審判에 대한 裁決로 본다.

(추 119)

③第88條 및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請求 및 再審査請求에 관하여 이 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行政審判法의 規定에 의한다.

第9章 補 則

第95條 (통지) 公團은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을 徵收하고자 할 때에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險加入者에게 그 금액과 納付期限을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第96條 (時效) ①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을 徵收하거나 그 返還을 받을 權利 및 保險給與를 받을 權利는 3年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消滅時效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의 規定에 의한다.

第97條 (時效의 중단) ①第96條의 規定에 의한 消滅時效는 다음 各號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한다.

1. 第38條第2項 또는 第6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
2. 第73條의 規定에 의한 독촉 또는 第95條의 規定에 의한 통지
3. 第74條의 規定에 의한 滯納處分節次에 따라 행하는 交付請求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중단된 消滅時效는 다음 各號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2. 第95條의 規定에 의하여 통지한 납부기간
3. 交付請求중의 기간

第98條 (確定保險料의 消滅時效) 第67條의 規定에 의한 確定保險料의 消滅時效는 다음 保險年度의 初日(保險年度중에 保險關係가 消滅한 사업에 있어서는 保險關係가 消滅한 날의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第99條 (보고등) ①公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事業主 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勤勞者 및 保險事務組合에게 保險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關係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障害補償年金 또는 遺族補償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는 保險給與支給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公團에 申告하여야 한다.

③受給權者 및 受給權이 있었던 者는 受給權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公團에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99·12·31 法6100〉

④受給權者가 死亡한 때에는 戶籍法 第88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義務者는 1月이내에 그 死亡事實을 公團에 申告하여야 한다. 〈新設 97·8·28〉

第100條 (事業主의 助力) ①保險給與를 받을 者가 사고로 인하여 保險給與의 請求등의 節次를 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事業主는 이에 助力하여야 한다.

(추 119)

②事業主는 保險給與를 받을 者가 保險給與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③事業主의 行方不明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第101條 (檢査) ①公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所屬職員으로 하여금 이 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事務所 또는 事業場과 保險事務組合의 事務所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質問을 하게 하거나 關係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경우에 公團職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102條 (보고와 檢査) ①公團은 保險給與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險給與를 받는 勤勞者의 診療를 담당한 醫師등에게 당해 勤勞者의 診療에 관한 보고 또는 그 診療에 관한 書類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所屬職員으로 하여금 당해 醫師등에게 質問을 하게 하거나 關係書類나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12·31 法6100〉

②第101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檢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103條 (診察要求) 公團은 保險給與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險給與를 받은 者 또는 이를 받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公團이 지정하는 醫療機關에서 診察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第104條 (保險給與의 일시중지) 公團은 保險給與를 받고자 하는 者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法에 의한 보고등의 義務 또는 公團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保險給與의 지급을 일시중지할 수 있다.

第105條 (國外의 사업에 대한 特例) ①國外勤務期間중 발생한 勤勞者의 災害를 補償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當事國이 된 社會保障에 관한 條約이나 協定(이하 "社會保障關聯條約"이라 한다)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家나 地域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勞動部長官이 金融監督委員會와 協議하여 지정하는 者(이하 "保險會社"라 한다)로 하여금 이 法에 의한 保險事業을 自己의 計算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8·1·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會社는 保險業法의 規定에 의한 사업방법에 따라 保險事業을 영위한다. 이 경우 保險會社가 지급하는 保險給與는 이 法에 의한 保險給與보다 勤勞者에게 불이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事業을 영위하는 保險會社는 이 法과 勤勞者를 위한 社會保障關聯條約에서 政府가 부담하는 모든 責任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外의 사업과 이를 대상으로 하는 保險事業에 대하여는 第2條, 第3條第1項, 第5條 但書, 第6條, 第51條, 第63條, 第64條와 第7章 및 第8章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保險會社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事業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이 法에 의

(추 119)

한 公團의 權限을 행사할 수 있다.

第105條의2 (海外派遣者에 대한 特例) ①第7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加入者가 大韓民國 밖의 地域(勞動部令이 정하는 地域을 제외한다)에서 행하는 사업에 勤勞시키기 위하여 派遣하는 者(이하 "海外派遣者"라 한다)에 대하여 公團에 保險加入申請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海外派遣者를 당해 加入者의 大韓民國領域안의 사업(2개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勤勞者로 보아 이 法을 적용할 수 있다.

②海外派遣者의 保險料算定 및 保險給與지급의 기초가 되는 賃金額은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同一職種 勤勞者의 賃金額 및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保險料率은 海外派遣者의 災害率 및 災害補償에 소요되는 금액등을 고려하여 勞動部長官이 정한다.

③海外派遣者에 대한 保險加入者의 保險加入申請 및 승인, 保險料의 申告 및 납부, 保險給與의 지급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④第7條第3項·第4項, 第10條第2號 및 第11條의 規定은 海外派遣者에 대한 保險契約의 解止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9·12·31 法6100〉

〔本條新設 97·8·28〕

第105條의3 (現場實習生에 대한 特例) ①이 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現場實習을 하고 있는 學生 및 職業訓練生(이하 "現場實習生"이라 한다)중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現場實習生은 第4條第2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勤勞者로 본다.

②現場實習生이 實習과 관련하여 입은 災害는 業務상의 災害를 입은 것으로 보아 第38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保險給與를 지급한다. 〈改正 99·12·31 法6100〉

③現場實習生의 保險料算定 및 保險給與지급의 기초가 되는 賃金額은 現場實習生이 지급받는 訓練手當등 모든 金品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現場實習生의 災害補償에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保險料의 算定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④現場實習生의 保險料의 申告 및 납부와 保險給與의 지급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7·8·28〕

第105條의4 (中·小企業事業主에 대한 特例) ①保險加入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事業主는 公團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遺族을 保險給與를 받을 수 있는 者로 하여 保險에 加入할 수 있다. 이 경우 第4條第2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事業主는 이 法을 적용함에 있어서 勤勞者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事業主에 대한 保險給與의 지급사유인 業務상의 災害의 인정범위는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事業主에 대한 保險料 및 保險給與의 算定基

(추 119)

準이 되는 賃金額 및 平均賃金은 勞動部長官이 告示하는 금액으로 하고 保險料率은 당해 사업이 적용받는 保險料率로 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상의 災害가 保險料의 滯納期間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災害에 대한 保險給與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中·小企業事業主가 保險에 加入하고자 하는 경우의 保險加入의 申請 및 승인, 保險料의 申告 및 납부, 保險給與의 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⑥第7條第3項·第4項, 第8條第2項, 第10條第2號 및 第11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事業主에 대한 保險關係의 成立 및 消滅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99·12·31 法6100〕

第10章 罰 則

第106條 (過怠料) ①第3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者 또는 第12條第2項 및 第65條第1項·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12·31 法6100〉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帳簿나 기타 書類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記載를 한 者
2. 第89條第2項(第92條第1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質問에 答辯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答辯을 하거나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3. 第99條第1項 또는 第102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4. 第99條第1項 또는 第102條의 規定에 의한 書類나 물건의 提出命令에 응하지 아니한 者
5. 第101條 또는 第102條의 規定에 의한 公團의 所屬職員의 質問에 答辯을 거부하거나,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勞動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勞動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

(주 119)

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 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5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3條·第4條 및 第8條의 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다음 各號의 法律은 이를 각각 廢止한다.

1. 勤勞福祉公社法
2. 産業災害補償保險特別會計法
3. 産業災害補償保險業務및審査에관한法律

第3條 (設立準備) ①勞動部長官은 公團의 設立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法 公布日부터 30日이내에 7人이내의 設立委員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設立委員은 公團의 定款을 작성하여 勞動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設立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아 이 法의 施行日에 連名으로 公團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④設立委員은 公團의 設立登記를 마친 후 지체없이 公團의 理事長에게 사무를 引繼하여야 한다.

⑤設立委員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第4條 (設立費用) 公團의 設立費用은 이 法 施行당시의 勤勞福祉公社法에 의한 勤勞福祉公社(이하 "公社"라 한다)가 부담한다. 다만, 産業災害補償保險基金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第5條 (公社에 관한 經過措置) ①公社는 勤勞福祉公社法의 廢止日에 解散되며, 公社의 財産과 權利·義務 및 雇傭關係는 公團이 이를 包括承繼한다.

②公社의 解散당시의 政府出資金은 公社 解散日에 公團에 出捐된 것으로 본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包括承繼된 權利·義務에 관한 登記簿 기타 公簿에 표시된 公社의 名義는 公團의 名義로 본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包括承繼된 財産의 價額은 公團의 設立登記日 전일의 帳簿價額으로 한다.

第6條 (産業災害補償保險特別會計의 財産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産業災害補償保險特別會計法에 의한 産業災害補償保險特別會計의 財産과 權利·義務는 基金에 包括承繼된다.

第7條 (처분 및 審査請求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에 의하여 公團으로 委託

(주 89)

되는 業務와 관련하여 이 法 施行전에 勞動部長官이 행한 행위 또는 勞動部長官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와 公社가 행한 행위 또는 公社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각각 이 法에 의하여 公團이 행한 행위 또는 公團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②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產業災害補償保險業務및審査에관한法律에 의하여 제기된 審査請求 및 再審査請求는 각각 이 法에 의하여 제기된 審査請求 및 再審査請求로 본다.

第8條 (基金運用計劃의 수립에 관한 經過措置) 勞動部長官은 1995年 4月 30日까지 經濟企劃院長官과 協議하여 1995年度 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한 후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9條 (公務員의 派遣) ①公團은 保險事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勞動部長官에게 그 所屬公務員의 派遣을 요청할 수 있다.

②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派遣要請을 받은 때에는 公團設立日부터 3年의 범위내에서 그 所屬公務員을 派遣할 수 있다.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產業安全保健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3條第2項第1號 및 第3項중 "產業災害補償保險特別會計法에 의한 歲出豫算總額"을 각각 "產業災害補償保險法 第81條 各號에 해당하는 支出豫算總額"으로 한다.

②中小企業勤勞者福祉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중 "勤勞福祉公社法에 의한 勤勞福祉公社(이하 "公社"라 한다)"를 "產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한 勤勞福祉公團(이하 "公團"이라 한다)"으로 한다.

第12條第1項중 "公社가"를 "公團이"로 하고, 同條第2項중 "公社는"을 "公團은"으로, "公社의"를 "公團의"로 한다.

第14條第1項중 "公社는"을 각각 "公團은"으로 한다.

第15條第1項중 "公社의"를 "公團의"로 한다.

③塵肺의豫防과塵肺勤勞者의보호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7條第5項중 "產業災害補償保險法 第12條第2項"을 "產業災害補償保險法 第49條第2項"으로 한다.

第38條第2項중 "產業災害補償保險法 第3條第2項 및 第9條第6項"을 "產業災害補償保險法 第4條第2號 및 第38條第6項"으로 한다.

第39條第1號중 "產業災害補償保險法 第10條 또는 第10條의2"를 "產業災害補償保險法 第46條 또는 第47條"로 한다.

④雇傭保險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0條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產業災害補償保險法 第65條第3項 내지 第5項 및 同法 第66條의 規定은 概算保險料의 보고와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同法 第65條第3項

(추 57)

내지 第5項 및 第66條중 "公團"은 "勞動部長官"으로, "申告"는 "보고"로, "保險加入者"는 "事業主"로 본다.

第61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67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確定保險料의 보고·납부 및 精算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同法 第67條第2項 내지 第4項중 "公團"은 "勞動部長官"으로, "申告"는 "보고"로, "保險加入者"는 "事業主"로 본다.

第64條第4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58條第4項 및 第5項, 同法 第59條 내지 第61條의 規定은 雇傭保險事務組合 및 雇傭保險事務組合에 의한 保險事務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同法 第58條第4項, 第59條 및 第60條중 "公團"은 "勞動部長官"으로, "保險加入者"는 "事業主"로 본다.

第6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65條 (準用)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69條 내지 第71條, 同法 第73條 내지 第77條 및 同法 第95條의 規定은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의 납부와 徵收(失業給與의 返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同法 第69條 내지 第71條, 同法 第73條 내지 第75條 및 同法 第95條중 "公團"은 "勞動部長官"으로, 同法 第69條중 "確定保險料申告書"는 "確定保險料報告書"로, 同法 第69條·第71條 및 第95條중 "保險加入者"는 "事業主"로 본다.

第74條第1項중 "확인 또는 第5章의 규정에 의한 失業給與에 관한 處分"을 "확인 또는 第5章의 規定에 의한 失業給與에 관한 처분(이하 "原處分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同條第2項을 削除하며, 同條第3項 및 第4項을 각각 第2項 및 第3項으로 한다.

第75條第2項중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決定할 수 없을 때에는 1次에 한하여 10日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第75條第4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에 第5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④當事者는 審査官에게 審理·決定의 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審査官에 대한 忌避申請을 勞動部長官에게 할 수 있다.

⑤審査請求人이 死亡한 경우 그 審査請求人이 失業給與의 受給權者인 때에는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遺族이, 그 외의 者인 때에는 相續人 또는 審査請求의 대상인 原處分등에 관계되는 權利 또는 이익을 承繼한 者가 각각 審査請求人의 地位를 承繼한다.

第75條의2 내지 第75條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75條의2 (審査의 請求등) ①第7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의 請求는 原處分등을 행한 職業安定機關을 거쳐 당해 職業安定機關의 管轄區域을 관할하는

審査官에게 하여야 한다.

②職業安定機關은 審査請求書를 받은 날부터 5日이내에 意見書를 첨부하여 이를 管轄審査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第75條의3 (請求의 方式) 審査의 請求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書로 하여야 한다.

第75條의4 (補正 및 却下) ①審査의 請求가 第7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法令상의 方式에 위반하여 補正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審査官은 이를 決定으로 却下하여야 한다.

②審査의 請求가 法令상의 方式에 위반한 것이라도 補正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審査官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審査請求人에게 이를 補正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補正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審査官이 職權으로 이를 補正할 수 있다.

③審査官은 審査請求人이 第2項의 기간내에 그 補正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決定으로써 그 審査請求를 却下하여야 한다.

第75條의5 (移送) ①審査官은 審査의 請求가 관할위반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건을 管轄審査官에게 移送하고, 그 사실을 審査請求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移送된 사건은 처음부터 그 移送을 받은 審査官에게 請求된 것으로 본다.

第75條의6 (原處分의 執行의 정지) ①審査의 請求는 原處分등의 執行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審査官은 原處分등의 執行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職權으로 그 執行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審査官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執行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文書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職業安定機關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執行을 정지하여야 한다.

④審査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執行을 정지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審査請求人에게 文書로 통지하여야 한다.

第75條의7 (審査官의 權限) ①審査官은 審査의 請求에 대한 審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審査請求人의 申請 또는 職權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調査를 할 수 있다.

1. 審査請求人 또는 관계인을 指定場所에 출석하게 하여 質問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審査請求人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文書 기타 물건을 제출하

(추 59)

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知識이나 經驗을 가진 第3者로 하여금 鑑定하게 하는 것

4. 사건에 관계가 있는 事業場이거나 기타 場所에 出入하여 事業主·從業員이나 기타 관계인에게 質問하거나 文書 기타 물건을 檢査하는 것

②審査官은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質問과 檢査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75條의8 (實費辨償) 第75條의7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한 場所에 출석한 者와 同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鑑定을 한 鑑定人에게는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實費를 辨償한다.

第75條의9 (決定) 審査官은 審査의 請求에 대한 審理를 종결한 때에는 原處分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取消하거나 審査請求의 전부 또는 일부를 棄却한다.

第75條의10 (決定의 방법) ①第75條의 規定에 의한 決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書로 행하여야 한다.

②審査官은 決定을 한 때에는 審査請求人 및 原處分등을 행한 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각각 決定書의 正本을 송부하여야 한다.

第75條의11 (決定의 효력) ①決定은 審査請求人 및 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決定書의 正本을 송부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決定은 原處分등을 행한 職業安定機關의 長을 羈束한다.

第76條第4項 및 第5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에 第6項 내지 第8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④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委員에 任命될 수 없다.

1. 禁治産者·限定治産者 또는 破産의 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2.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⑤委員은 刑의 宣告를 받았거나 心身衰弱 또는 현저한 能力不足으로 職務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免職되지 아니한다.

⑥常任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審査委員會는 第7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審査의 請求를 받은 때에는 50日이내에 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75條第2項 但書의 規定은 裁決期間의 연장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⑧審査委員會의 구성·운영 및 事務行政組織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6條의2 내지 第76條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76條의2 (再審査의 相對方) 再審査의 請求는 原處分등을 행한 職業安定機關

(추 57)

의 長을 相對方으로 한다.

第76條의3 (審理) ①審査委員會는 再審査의 請求를 수리한 때에는 그 請求에 대한 審理期日 및 場所를 정하여 審理期日 3日전까지 當事者 및 그 事件을 審査한 審査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當事者는 審査委員會에 文書 또는 口頭로 그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③委員會의 再審査請求에 대한 審理는 公開한다. 다만, 當事者의 雙方 또는 一方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審査委員會는 審理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當事者 또는 관계인은 第4項의 審理調書의 閱覽을 申請할 수 있다.

⑥委員會는 當事者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第5項의 規定에 의한 閱覽申請이 있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⑦第75條의7 및 第75條의8은 再審査請求에 대한 審理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審査官"은 "審査委員會"로, "審査의 請求"는 "再審査의 請求"로, "審査請求人"은 "再審査請求人"으로 본다.

第76條의4 (準用規定) 第75條第4項·第5項, 第75條의3, 第75條의4, 第75條의6, 第75條의9, 第75條의10 및 第75條의11의 規定은 審査委員會 및 再審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75條第4項중 "審査官"은 "審査委員會의 委員"으로, 第75條第4項·第75條의10·第75條의11중 "決定"은 "裁決"로, 第75條의3·第75條의6·第75條의9중 "審査의 請求"는 "再審査의 請求"로, 第75條의6·第75條의9·第75條의10중 "審査官"은 "審査委員會"로, 第75條의6·第75條의10·第75條의11중 "審査請求人"은 "再審査請求人"으로 본다.

第76條의5 (告知)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原處分등을 하거나 審査官이 第75條의10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書의 正本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相對方 또는 審査請求人에게 原處分등 또는 決定에 관하여 審査 또는 再審査를 請求할 수 있는지의 여부, 請求하는 경우의 經由節次 및 請求期間을 알려야 한다.

第77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77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再審査의 請求에 대한 裁決은 行政訴訟法 第18條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行政審判에 대한 裁決로 본다.

②審査 및 再審査의 請求에 관하여 이 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行政審判法의 規定에 의한다.

第79條第4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97條의 規定은 消滅時效의 중단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11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①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産業災害補償保險法·産業災害補償保險特別會計法·産業災害補償保險業務및審査에관한法

(추 119)

律·勤勞福祉公社法 또는 그 規定을 인용한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條項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勤勞福祉公社法에 의한 勤勞福祉公社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勤勞福祉公團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 則 〈97·8·28 法5398〉

①(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延滯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65條 내지 第68條의 規定에 의한 납부기간을 경과한 保險料에 대한 延滯金은 第71條第3項의 改正規定에도 불구하고 1997年 12月 31日까지의 日數에 의하여 計算한 延滯金을 徵收한다.

附 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 則 〈98·1·13 法5505〉

①(施行日) 이 法은 1998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②(처분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機關등이 행한 認可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申告 그밖의 行政機關등에 대한 행위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등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省略

附 則 〈99·2·8 法588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이후 第19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따른 職制變更으로 廢止되는 常任理事의 職位에 있는 者에 대하여는 第20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任期가 滿了된 것으로 본다.

附 則 〈99·12·31 法607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附 則 〈99·12·31 法610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1條第2項·第44條第3項 및 第77條의2의 改正規定은 200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保險關係成立日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해서 保險加入申請書를 제출하여 이 法 施行日이후에 公團의 승인을 받은 者는 第10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保險關係가 成立된 것으로 본다.

第3條 (保險關係成立申告에 대한 特例) 이 法 施行당시 産災保險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사업이 이 法(이 法의 위임을 받은 大統領令을 포함한다) 施行으로 産災保險 적용대상이 된 경우 당해 事業主는 第1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2000年 8月

(추 119)

14日까지 保險關係成立申告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第4條 (監事의 任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任命된 公團의 監事의 任期는 第20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財團法人 産災醫療管理院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民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財團法人 産災醫療管理院은 이 法 第35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管理機構로 본다.

第6條 (勤勞形態가 특이한 勤勞者의 平均賃金算定特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日이전에 第4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業務상 災害를 입은 者는 第38條第4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 (最高補償基準金額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日이전에 第4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業務상 災害를 입은 者는 第38條第6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2002年 12月 31日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8條 (看病給與에 대한 經過措置) 第42條의3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療養중인 者부터 적용한다.

第9條 (一定年齡이상인 者에 대한 休業給與 減額支給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日이전에 第4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業務상 災害를 입은 者는 第41條第2項 및 第44條第3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②이 法 施行日이전에 第4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業務상 災害를 입은 者는 第41條第3項 및 第44條第2項 別表 3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0條 (加算金徵收등에 관한 適用例) ①이 法 施行日전에 발생한 事業開始未申告 및 確定保險料(第68條의 規定에 의한 確定保險料를 포함한다)의 未申告 또는 虛僞申告에 대하여는 第70條·第72條第1項第1號 및 第106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을 적용한다.

②第71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이후에 第65條 내지 第68條의 規定에 의한 납부기간을 경과한 保險料의 延滯金부터 적용한다.

第11條 (審査委員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구성된 審査委員會의 委員중 勤勞者團體 및 使用者團體가 추천한 者는 2000年 6月 30日에 그 任期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第1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塵肺의豫防과塵肺勤勞者의보호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8條第2項중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4條第2號 및 第38條第6項"을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4條第2號 및 第38條第5項"으로 한다.

②賃金債權保障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하고, 第14條중 "第77條"를 "第77條, 第77條의2"로

(추 119)

한다.

第3條의2 (準用)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4條의2, 第7條第2項·第3項, 第8條 및 第9條의 規定은 賃金債權保障關係에 準用한다.

부 칙 〈2001·12·31 法659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추 139)

〔別表 1〕〈改正 99·12·31 法6100〉

障害給與表(第42條第2項관련)

(平均賃金基準)

障害等級	障害補償年金	障害補償一時金
第1級	329日分	1,474日分
第2級	291日分	1,309日分
第3級	257日分	1,155日分
第4級	224日分	1,012日分
第5級	193日分	869日分
第6級	164日分	737日分
第7級	138日分	616日分
第8級		495日分
第9級		385日分
第10級		297日分
第11級		220日分
第12級		154日分
第13級		99日分
第14級		55日分

〔別表 2〕〈新設 99·12·31 法6100〉

遺族給與(第43條第2項관련)

遺族給與의 종류	遺族給與의 금액
遺族補償年金	遺族補償年金額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加算金額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본금액 給與基礎年額(平均賃金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分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2. 加算金額 遺族補償年金受給權者 및 그에 의하여 扶養되고 있는 遺族補償年金受給資格者 1人當 給與基礎年額의 100分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給與基礎年額의 100分의 20을 넘을 때에는 給與基礎年額의 100分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遺族補償一時金	平均賃金의 1,300日分

〔別表 3〕〈改正 99·12·31 法6100〉

傷病補償年金表(第44條第2項관련)

폐질등급	상병보상연금
第1級	平均賃金의 329日分
第2級	平均賃金의 291日分
第3級	平均賃金의 257日分

〈비 고〉: 第41條第3項을 적용받는 勤勞者에 대하여는 最低賃金額에 70分의 100을 곱한 금액을 平均賃金으로 한다.

(추 1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관부처 : 노동부

전문개정 1995·4·15 대통령령제14628호
개정 1997·3·27 대통령령제15318호
1997·12·31 대통령령제15581호(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1997·12·31 대통령령제15589호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8·6·24 대통령령제15816호
1999·5·24 대통령령제16326호(기획예산처직제)
2000·2·14 대통령령제16709호(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000·6·27 대통령령제16871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
2.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한다. 다만, 발주자로부터 따로 제공받은 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에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원수급인"이라 함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하수급인"이라 함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총공사실적"이라 함은 당해 보험연도 건설공사의 총기성공사금액을 말한다.

②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

(추 122)

여 산정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으로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의2 (기준임금의 적용) ①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전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3.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으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견을 들은 후 당해 보험연도에 대하여 기준임금을 적용받고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임금은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월단위 기준임금을 적용하고,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시간급근로자"라 한다), 근로일에 따라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일급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 시간단위 기준임금을 적용한다. 다만, 시간급근로자 또는 일급근로자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단위 기준임금을 적용한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보험연도말까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0·6·27〕

제3조 (법의 적용제외사업) ①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0·6·27〉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2.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3.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이하 "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사서비스업

(추 122)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6. 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수렵업중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②제1항 각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가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이상으로 된 때에는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00·6·27〉

제4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0·6·27〉

1. 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범위·비용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과 요양관리에 관한 사항

1의2.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노동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0·6·27〉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5인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5인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목의 자 5인

가. 노동부차관

나. 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공무원 1인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와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3인

제6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노동부차관인 위원과 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추 122)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노동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전문위원회)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②전문위원은 사회보험 또는 산업의학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0·6·27〉

③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간사) ①위원회에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노동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11조 (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노동부차관 및 노동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대리인) ①사업의 사업주(이하 "사업주"라 한다)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업주가 법과 이 영에 의하여 행할 사항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추 122)

②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이를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업무의 대행) 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의 일부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기관 선정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과 관련된 연구인력 및 실적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6·27〕

제2장 보험가입자

제14조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승인신청) 원수급인이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납부인수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①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97·12·31 대령15581·대령15589, 2000·6·27〉

1. 사업주가 건설업자, 주택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일 것
2.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30억원이상일 것
3. 당해 보험연도 초일 현재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1이상 시행중에 있을 것

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험연도 개시 7일전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보험연도중의 모든 일괄적용 대상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추 126)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전까지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대령15589〉

⑤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며,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97·12·31 대령15589〉

제16조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의 신고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을 신고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각각 성립일 또는 소멸일부터 14일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또는 보험관계소멸신고(또는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14일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종료일 전일까지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14일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종료일 전일까지 사업개시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6·27〉

③근로복지공단은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각각 당해 사업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근로복지공단

제17조 (공단의 비상임이사)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99·5·24〉

1. 기획예산처의 공단예산을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공무원
2. 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공무원

②공단의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가 될 수 있는 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사회보험 또는 근로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이 경우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는 그 수를 동수로 한다.

(추 122)

제18조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①공단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대령15589〉

1. 다음 연도의 사업운영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기타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 (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수지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당해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3.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및 공단의 감사의 의견서
4. 기타 결산서의 내용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20조 (공단규정의 승인)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0·6·27〉

1. 공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인사·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 공단의 회계 및 재산·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단운영·보험사업 및 근로복지사업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제21조 (자금차입등의 승인신청) ①공단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차입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의 사유
2. 차입처
3. 차입금액
4. 차입의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추 122)

6. 기타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공단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으로부터의 이입충당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이입충당사유 및 금액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업무의 위탁) ①공단이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공단이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험료 기타 법에 의한 징수금의 수납에 관한 사항
2.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보험료등 과납액의 반환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에 부대되는 업무

제23조 (출자등) 공단이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출연하거나 관리기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0·6·27〉

1. 출자·출연 또는 관리기구 설립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가액
3. 사업의 개요
4. 기타 출자·출연 또는 관리기구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보험급여

제24조 (보험급여의 청구, 결정통지등) ①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중 휴업급여·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법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을 포함한다)·간병급여·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을 포함한다)·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각 당해 보험급여에 대한 청구서 또는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상병보상연금을 포함한다)에는 1회의 연금지급청구로 갈음한다. 〈개정 98·6·24, 2000·6·27〉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 청구를 받은 때에는 보험급여의 지급여부·지급내용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추 122)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을 통지함에 있어서 당해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그 수급권자에게 연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 (평균임금의 증감) ①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증감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다.

②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거나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평균임금의 증감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균임금증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6·24〉

제25조의2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법 제38조제4항에서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당시 당해 사업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등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근로관계가 3월이상 계속되는 경우
   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직전 3월간 월평균 근로일수가 통상근로계수의 산정기초가 되는 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 근로조건, 근로계약형식, 구체적 고용실태등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당시 당해 사업에서 1월이상 근로한 기간이 있는 일용근로자가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신청하는 경우로서 당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등에 의하여 명확한 경우

〔본조신설 2000·6·27〕

제25조의3 (통상근로계수의 적용) 제3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전 1월간에 당해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추 122)

경우 : 당해 1월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중에 당해 근로자가 근로한 일수로 나눈 금액에 일용근로자의 1월간 실제근로일수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이하 "통상근로계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전 1월간에 당해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은 없으나 일당이 미리 정하여져 있는 경우 : 당해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금액

3.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전 1월간에 당해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이 없고 일당도 미리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 당해 사업에서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의 일당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 : 당해 지역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의 일당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금액

〔본조신설 2000·6·27〕

제26조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①법 제3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제1항에 규정된 질병을 말한다. 다만, 업무상 부상에 기인한 질병을 제외한다. 〈개정 97·12·31 대령15589, 2000·6·27〉

②법 제3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액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6·27〉

③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을 산정하되,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까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감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개정 2000·6·27〉

④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추 122)

제26조의2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①법 제38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최고보상기준금액은 과거 3년간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임금계층별 근로자 분포비 및 임금상승률등을 고려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하고,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의 전년대비 조정률등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②최고보상기준금액과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단위미만은 이를 버린다.

③최고보상기준금액과 최저보상기준금액의 적용기간은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00·6·27〕

제27조 (사망의 추정등)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97·12·31 대령15589〉

1. 선박이 침몰·전복·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멸실 또는 행방불명(이하 이 조에서 "사고"라 한다)된 경우에 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월간 불명한 때
2. 항행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행방불명된 날부터 3월간 불명한 때
3. 천재·지변, 화재, 구조물등의 붕괴 기타 각종 사고의 현장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월간 불명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그 생사가 불명하였던 자가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부터 3월이내에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그 사망시기가 불명한 경우에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보험가입자는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사망이 확인된 때(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지체없이 근로자

(추 126)

실종(또는 사망확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보험급여를 받은 자 및 보험가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근로자생존확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당해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반환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반환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8조 (의료기관의 지정) 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지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12·31 대령15589, 2000·6·27〉

1.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의원·치과병원·치과의원·한방병원 및 한의원
2.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3. 기타 공단이 정하는 의료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의 취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규정으로 정한다.

③공단은 의료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공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의2 (약제의 지급) 공단은 법 제40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제의 지급을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약국을 통하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6·27〕

제29조 (요양급여의 신청등) ①법 제4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요양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②법 제4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요양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00·6·27〉

1.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외의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등 긴급하게 요양을 받은 경우의 요양비

(추 126)

2. 법 제40조제4항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비용

3. 기타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

③법 제4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요양비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④공단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 제40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6·27〉

제30조 삭제 〈2000·6·27〉

제30조의2 (재요양기간중의 보험급여 지급) 법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요양하는 경우 그 선급기간에 대하여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및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다만, 상병보상연금은 재요양 도중 폐질등급이 상향조정된 경우(폐질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가 폐질등급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지급한다.

1. 휴업급여 = 〔{(365 × 0.7) - 기존 장해보상연금일수}/365〕 × 평균임금 × 재요양일수. 이 경우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급여를 감액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액분을 감안하여 계산한다.

2. 상병보상연금 = {(상향 조정된 상병보상연금일수 - 기존 장해보상연금일수)/365} × 평균임금 × 재요양일수. 이 경우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액분을 감안하여 계산한다.

〔본조신설 2000·6·27〕

제30조의3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①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대상연령 및 지급기준은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하되, 당해 근로자가 해당연령에 도달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법 제4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업무상재해발생일부터 2년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0·6·27〕

제31조 (장해급여의 등급기준등) ①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

(추 126)

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6·27〉

②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이상의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등급 인상
2. 제8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등급 인상
3. 제13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등급 인상

③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된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신체장해의 등급을 결정한다.

④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1의 장해등급별 일분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급여청구사유 발생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 내지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인 경우에는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추 126)

의 일수에 25분의 1을 곱한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연금지급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자의 경우에는 가중된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연금의 전액으로 한다.

⑤법 제4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이라 함은 별표 2의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등급을 말한다. 〈개정 2000·6·27〉

⑥법 제42조제4항에서 "장해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장해보상연금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을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6·27〉

1.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2. 외국인 수급권자가 국내를 떠나게 되는 경우

⑦법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 산정시 법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선급기간중 재요양한 기간에 대한 선급금은 이미 지급한 연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6·27〉

⑧법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0·6·27〉

제31조의2 (장해보상연금수급권의 소멸) 법 제42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해보상연금수급권자가 제31조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연금수급권을 포기하는 경우
2. 장해상태가 변동되어 장해보상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0·6·27〕

제31조의3 (간병급여 지급대상·기준등) ①법 제4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병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 2의2의 규정에 의한다.

②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

③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한 날부터 재요양 종료시까지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간병급여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그 신청방법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추 122)

〔본조신설 2000·6·27〕

제32조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 공단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순위에 있는 수급권자중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의 사망당시 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이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라 한다)가 없는 경우
2. 근로자의 사망당시 법 제4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이하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라 한다)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

〔전문개정 2000·6·27〕

제32조의2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범위) 법 제4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라 함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제3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0·6·27〕

제33조 (유족보상연금 청구에 관한 대표자 선임등) ①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그중의 1인을 유족보상연금의 청구와 수령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0·6·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그 선임된 대표자를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선임 또는 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 및 제35조 삭제 〈2000·6·27〉

제36조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등) ①법 제4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새로이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4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방불명된 달의 다음달분부터 그 행방불명인 기간동안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때에는 같은 순위자(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43조제2항 및 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추 122)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방불명이 된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는 법 제43조 제2항 및 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액이 적용되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는 언제든지 그 지급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6·27〕

제37조 (유족보상연금액의 개정)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분부터 유족보상연금의 금액을 개정한다. 〈개정 2000·6·27〉

1.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 태아이었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법 제4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잃은 경우
3.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4.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제38조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등)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상병보상연금청구서에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폐질등급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14일이내에 폐질상태신고서에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폐질등급이 변동된 때에는 변동된 달의 다음달분부터 새로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제39조 (상병보상연금의 등급기준등)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폐질등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제31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폐질이 2이상 있는 경우 및 새로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의 폐질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6·27〉

제39조의2 (상병보상연금의 감액지급) ①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의 감액지급대상연령 및 지급기준은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하되, 당해 근

(추 122)

로자가 해당연령에 도달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법 제4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상병보상연금 개시일부터 1년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0·6·27〕

제40조 (연금의 지급기간등) ①연금인 보험급여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의 초일부터 개시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종료된다.

②연금인 보험급여는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의 초일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연금인 보험급여는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월별로 지급하되, 당월분의 금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한다. 〈개정 2000·6·27〉

④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 소멸한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중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의2 (장의비 최고·최저금액의 산정) ①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의비의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은 전년도 장의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장의비일액의 90일분에 장의비 최고금액의 경우에는 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보상기준금액의 30일분을 합하여 산정하고, 장의비 최저금액의 경우에는 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보상기준금액의 30일분을 합하여 산정한다.

②장의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단위미만은 이를 버린다.

③장의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의 적용기간은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00·6·27〕

제41조 (장해특별급여의 지급기준등) ①법 제4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해등급"이라 함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등급을 말한다.

②법 제4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해특별급여"라 함은 평균임금의 30일분에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별 노동력상실률과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법 제42

(추 126)

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래 취업가능기간은 신체장해가 판정된 날부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취업정년까지로 한다. 이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취업정년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55세를 취업정년으로 본다.

제42조 (유족특별급여의 지급기준등) ①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라 함은 평균임금의 30일분에서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평균임금의 30일분에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생활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를 공제한 후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취업가능기간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3조 (특별급여액의 징수) ①보험가입자는 법 제46조제3항 및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특별급여액 또는 유족특별급여액의 납부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1년간에 걸쳐 4회로 등분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특별급여액 또는 유족특별급여액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의 납부액은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고, 그 이후의 납부액은 각각 그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 (손해배상을 받은 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범위) ①법 제48조제3항 본문에서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라 함은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인 경우에는 그 요양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유족보상연금 또는 휴업급여인 경우에는 각 유족보상연금급여액 또는 휴업급여액을 당해 급여액 산정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를 당해 보험급여액의 일수로 보고, 그 평균임금을 당해 보험급여의 1일분 급여액으로 본다.

제45조 삭제 〈2000·6·27〉

제46조 (미지급보험급여의 청구권자의 결정등) 법 제43조의4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보험급여의 청구권자의 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6·27〉

(추 122)

제47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공단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부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삭제 〈2000·6·27〉

제47조의2 (보험급여의 충당절차등) ①공단이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을 할 경우의 매회 충당한도액은 지급할 보험급여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을 할 경우에는 보험급여수급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충당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급여수급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6·27〕

제48조 (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 제44조의 규정은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당해 배상금을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환산함에 있어서 그 환산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9조 (수급권의 대위) ①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보험급여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권의 대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급여수급권자가 당해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보험가입자가 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수급권자에게 연금지급이 가능한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각각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0·6·27〕

제50조 (급여원부의 작성) ①공단은 보험급여를 행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근로자별 급여원부를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보험급여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급여원부를 열람시켜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다.

(추 122)

제51조 삭제 〈2000·6·27〉

제5장 보험료

제52조 (공사발주자에 의한 보험료의 대행납부) ①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그 공사금액에 보험료가 명시되어 있고 원수급인이 동의하는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원수급인의 보험료를 대행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대행 납부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험료 대행납부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2. 공사금액, 공사기간 및 공사내용
3. 기타 보험료 대행납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사항

③공단은 보험료 대행납부가 필요없게 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료 대행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52조의2 (보험사무조합 인가대상) 법 제58조제1항 전단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라 함은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0·6·27〕

제53조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험가입자의 범위) ①법 제5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험가입자의 범위는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로 한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상시 2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로 한다.

②보험사무를 위탁한 보험가입자가 사업의 확장 또는 합병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수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보험연도 중에는 계속하여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54조 (보험사무조합의 인가) ①사업주단체등이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무조합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추 122)

1.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사업주단체등의 전년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재산목록과 그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당해연도에 새로이 설립되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업주단체등과 보험가입자간의 보험사무위탁처리규약
4. 사업주단체등의 정관 또는 규약 사본
5. 보험료등의 유용방지를 위하여 사업주단체등과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간에 체결한 약정서 및 개설된 통장 사본

②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0·6·27〉

1. 정관 또는 규약등에 보험사무를 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을 것
2. 자체수입에 의하여 결손없이 운영되고 있음이 당해 사업주단체등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을 것
3. 보험사무의 위탁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30인이상 있을 것

③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인가를 받은 사업주단체등(이하 "보험사무조합"이라 한다)이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인가받은 사항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각각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제55조 (보험사무의 수탁 및 수탁해지 신고) 보험사무조합은 보험사무를 위탁받거나 보험사무의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각각 14일이내에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제56조 (보험사무조합 인가의 취소) ①공단은 보험사무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월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한 경우
3. 보험사무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연도중 보험료 납부실적이 없는 경우
4.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추 122)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보험사무조합 및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의2 (청문) 공단은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2·31 대령15598〕

제57조 (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징수비용의 교부) ①공단은 보험사무조합이 보험사무를 위탁한 보험가입자중 1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로부터 당해 보험연도의 각 반기중에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100분의 80이상을 수령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비용교부금을 각 반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보험사무조합이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중에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연도의 각 반기의 초일부터 폐지일이 속하는 분기 중간월의 15일까지 납부기한이 만료되는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수령하여 납부한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0·6·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교부금의 금액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수령·납부 실적이 100분의 80이상 100분의 95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령·납부 실적이 100분의 95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0·6·27〉

1. 상시 16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로부터 수령·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과 보험가입자 1인당 기초징수실비 3,000원을 가산한 금액
2. 상시 16인이상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로부터 수령·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과 보험가입자 1인당 기초징수실비 3,000원을 가산한 금액
3. 상시 3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로부터 수령·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③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모두 하지 아니한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탁받아 당해 사업주의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수령하여 납부한 실적이 100분의 80이상인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징수비용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0·6·27〉

④공단은 보험사무조합이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에 손실을 초래하게 한 경

(추 122)

우에는 그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교부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0·6·27〉

⑤보험사무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교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매반기가 종료된 날(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일)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공단에 징수비용교부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제58조 (보험사무조합의 보험료등의 신고등) ①보험사무조합은 보험가입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험사무조합은 보험가입자가 납부기한내에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를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9조 (보험사무조합의 장부비치등)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이 작성·비치하여야 할 장부 기타의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6·27〉

1. 보험사무의 처리를 위탁한 보험가입자의 명부
2. 보험가입자별 징수업무처리장부
3. 보험사무조합과 보험가입자의 보험사무위탁관계서류
4. 징수비용 교부금지급신청관계서류 및 수령관계서류
5. 보험가입자에게 행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입통지서류 및 영수관계서류
6. 국고수납대리점등과 체결한 약정서

제60조 (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일간신문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1조 (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개정 2000·6·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추 122)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제62조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 적용사업) 법 제6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98·6·24〉

1. 상시 30인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7천500인이상(연인원의 적용은 계절사업에 한한다)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 어업, 농업에 해당하는 사업
2. 건설업중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원이상인 사업

제63조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를 위한 보험수지율 산정) ①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험료의 금액은 그 연도(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험연도"라 한다) 9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액의 12분의 9에 상당하는 금액
2. 기준보험연도의 직전 2개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의 합계액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text{기준보험연도의 3년전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 \times \frac{3}{\text{(기준보험연도의 3년전 보험연도에 있어서 보험관계가 지속된 기간의 총월수)}}$$

②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계산에 있어서의 보험급여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의 3년전 보험연도의 10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지급결정(지출원인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급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당해 연금이 최초로 지급결정된 때에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합산액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비율에 해당하

(추 122)

는 보험급여액은 이를 합산한다. 〈신설 2000·6·27〉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에 대하여는 법원의 확정판결등이 있는 날을 당해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로 본다. 〈신설 2000·6·27〉

제64조 (특례에 의한 보험료율의 증감비율) ①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는 별표 8의 비율에 의한다.

②공단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상 또는 인하한 보험료율을 당해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5조 (개산보험료의 신고·납부) 보험가입자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에 의하여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6조 (임금총액의 추정액 및 그 증가범위) ①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130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6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100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00·6·27〉

③제65조의 규정은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차액의 신고·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6조의2 (개산보험료 신고·납부의 예외) 법 제6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당해 보험연도중에 새로이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일당시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0·6·27〕

제67조 삭제 〈2000·6·27〉

제68조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 ①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는 연 4기로 하되 각 기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기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 제2기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3기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추 122)

4. 제4기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없다. 〈개정 2000·6·27〉

1. 당해 보험연도 7월 1일이후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
2.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그 기간이 6월미만인 사업
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액의 차액(이하 "증가개산보험료"라 한다)의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사업기간 또는 당해 보험연도가 만료되는 사업

③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증가개산보험료의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개산보험료와 증가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의 최초의 기는 다음 각호의 기간으로 한다.

1. 1월 2일부터 3월 31일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증가개산보험료의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보험관계 성립일 또는 증가개산보험료의 납부사유 발생일부터 6월 30일까지
2. 4월 1일부터 6월 30일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증가개산보험료의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보험관계 성립일 또는 증가개산보험료의 납부사유 발생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기의 개산보험료는 당해연도의 개산보험료를 각 기별로 등분한 금액으로 한다.

⑤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사업주는 최초의 기분의 개산보험료를 법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 그 이후의 각 기분의 개산보험료는 각각 그 분기의 중간월의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7·3·27, 2000·6·27〉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보험가입자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97·12·31 대령15589〉

제69조 (보험료율의 변동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조정) ①공단은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에 따라 개산보험료를 추가징수 또는 감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한 날부터 20일이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의 추가납부를 통지받은 자는 그 통지를

(추 122)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0조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의 기준)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71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제65조의 규정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1조의2 (보험료징수의 특례) 법 제6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공단이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결산서등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출을 2회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현저히 신빙성을 결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0·6·27〕

제72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특례) ①법 제6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결정의 특례를 적용받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1. 총공사금액이 3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2. 임업중 벌목업으로서 벌목재적량이 1만세제곱미터이상인 사업

②법 제68조제1항의 경우에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교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액은 연도말까지 보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도초일(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연도말까지의 사이에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합산액으로 하며, 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도초일부터 다음 각호의 날까지의 사이에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급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당해 연금이 최초로 지급결정된 때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결정된 것으로 본다.

1. 사업종료일부터 3월이후에 지급해야 할 보험급여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종료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
2. 사업종료일부터 3월이후에도 지급해야 할 보험급여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종료일부터 9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

③법 제6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별표 8의 증감률

(추 122)

을 말한다.

④공단은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인하 또는 인상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하 또는 인상된 보험료를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0일을 말한다.

제73조 삭제 〈2000·6·27〉

제74조 (보험료등 과오납액의 충당·반환 및 이자) ①법 제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순위를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보험료 기타 징수금이 2이상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선순위로 한다.

1.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비
2.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
3.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4.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5.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가개산보험료 및 법 제67조제1항 및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

②보험가입자는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과오납액이 발생하거나 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다음 연도의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충당시켜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6·27〉

③공단은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등 과오납액 또는 보험급여를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거나 그 잔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④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보험료 기타 징수금 100원에 대한 1일 3전의 율을 말한다.

제75조 (가산금 징수의 예외) 법 제7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97·12·31 대령15589〉

1. 가산금의 금액이 3천원미만인 경우
2.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천재·지변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

(추 122)

유에 의한 경우

제76조 (연체금징수의 예외) ①공단은 법 제7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도과후 매 3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개정 2000·6·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부과기간이 60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월을 그 연체금의 부과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0·6·27〉

③법 제7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97·12·31 대령15589〉

1. 연체금의 금액이 3천원미만인 경우
2. 연체금·가산금,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금액 또는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3. 보험금 기타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

제77조 (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보험가입자가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0일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8조 (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 〈개정 2000·6·27〉

②법 제7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

(추 122)

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0·6·27〉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액을 징수함에 있어서 지급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최초의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결정된 것으로 본다.

④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경합된 때부터 그 경합된 기간동안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이 가장 높은 징수금만을 징수한다. 다만, 징수금의 금액이 3천원미만일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6·27〉

제79조 (체납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제74조제1항의 규정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하여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순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9조의2 (공매대행의 의뢰등) ①공단은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매대행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공매할 재산의 종류·수량·품질 및 소재지
3. 압류에 관계되는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내역과 납부기한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대행을 의뢰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 담보물 소유자, 그 재산상에 전세권·질권·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와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2·31 대령15589〕

제79조의3 (압류재산의 인도) ①공단은 제7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대

(추 122)

행을 의뢰함에 있어서 공단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당해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2·14〉

②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본조신설 97·12·31 대령15589〕

제79조의4 (공매대행의 해제요구) ①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공매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에 당해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2·14〉

②공단은 제1항의 해제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2·31 대령15589〕

제79조의5 (공매대행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공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0·2·14〉

〔본조신설 97·12·31 대령15589〕

제80조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결손처분) ①법 제7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6·27〉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인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보험료 기타 징수금보다 우선하는 국세·지방세등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4.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회사가 보험료등의 납부책임을 면하게 된 경우

②공단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세무서 기타 기관에 대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의2 (보험료 및 부담금의 정산기준등) 공단은 법 제7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또는 납부된 보험료등(연체금·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매월 정산하

(추 122)

여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기금에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6·27〕

제81조 (보험료등의 회계기관) 공단의 이사장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상임이사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세입징수관을, 그 직원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분임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제82조 (보험료 기타 징수금카드의 작성) ①공단은 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 또는 승인이 된 때에는 사업장별로 보험료 기타 징수금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험료 기타 징수금카드를 열람시켜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6장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제83조 (기금의 운용) ①법 제8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융자를 말한다.

②법 제8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융자의 이자율을 다른 사업의 수익률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6·27〉

제84조 (기금계정의 설치) 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5조 (보험료등의 기금에의 납입등) ①공단은 징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금액을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징수한 전월분의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금액, 미수납된 금액등의 징수현황을 매월말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86조 (기금운용계획)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추 126)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책임준비금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87조 (책임준비금의 산정기준) 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의 산정기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당해 보험연도의 말일까지의 사이에 지급 결정한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및 상병보상연금을 합한 금액에 6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다음 보험연도중에 지급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급여액에 12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제88조 (기금의 회계기관등) ①노동부장관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상임이사중에서 기금출납이사를,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출납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행한다.

③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이사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과 기금출납직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기금출납공무원·기금출납이사 및 기금출납직원의 임명사항을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89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①노동부장관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기금의 월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명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90조 (기금의 지출) ①기금출납명령관이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을 지

(추 60)

출하게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출납명령관의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은행,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기금출납명령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91조 (현금취급의 금지)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 또는 출납할 수 없다. 다만, 예산회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 (기금의 결산보고) 노동부장관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1. 기금결산의 개황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기금의 운용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7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93조 (심사청구의 방식) ①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결정내용
3.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4.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고지의 내용

②심사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심사청구서에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이름
2.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해당시 소속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추 122)

③심사청구가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인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외에 선정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심사청구서에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4조 (보정 및 각하) ①심사청구가 법 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거나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여 보정할 수 없을 때 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단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심사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때에는 공단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공단이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심사청구를 보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5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의 집행정지) ①심사청구는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공단은 그 집행에 의하여 발생할 중대한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정지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청구인 및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 사건명
2. 집행정지 대상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및 집행정지의 내용
3. 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4. 집행정지의 이유

제96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①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사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

(추 60)

3. 심사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아닌 때에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이름 및 주소
4. 주 문
5. 심사청구의 취지
6. 이 유
7. 결정연월일

③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청구인에게 심사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공단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거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제97조 (심리를 위한 조사) ①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한 조사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 사건명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출석을 요하는 관계인의 이름 및 주소(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4. 제출을 요하는 문서 기타 물건의 표시 및 그 소유자 또는 보관자의 이름과 주소(법 제89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
5. 감정을 요하는 사항 및 그 이유(법 제89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6. 출입할 사업장 기타 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질문할 사업주·근로자 기타 관계인의 이름과 주소, 검사할 문서 기타 물건의 표시(법 제89조제2항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
7. 진단을 받을 근로자의 이름 및 주소(법 제89조제2항제5호의 경우에 한한다)

②공단이 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조사의 일시 및 장소

(추 83)

3.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4. 조사의 결과

제98조 (실비변상)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관계인과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한다.

제99조 (재심사청구의 방식) ①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재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결정내용
3.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4. 재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재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유무 및 그 내용
6. 재심사청구의 연월일

②제9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심사청구서"는 "재심사청구서"로 본다.

제100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7·3·27〉

제101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을 말한다),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의 위원중에는 법 제91조제4항제2호의 자격이 있는 위

원과 동항제5호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 각각 1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97·3·27〉

④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법 제91조제4항제2호의 자격이 있는 위원과 동항제5호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 각각 1인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97·3·27〉

⑤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상임위원 및 당연직위원외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102조 (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등) ①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를 정하여 적어도 심리기일 5일전까지 당사자 및 공단에 각각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제103조 (심리의 공개) ①심사위원회의 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04조 (심리조서) ①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심리경과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리일시 및 장소
3. 출석한 위원의 이름
4. 출석한 당사자의 이름
5. 심리의 내용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심리조서에는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문서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105조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의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상임위원(위원장이 아닌 상

(추 83)

임위원을 말한다),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2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97·3·27〉

②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재심사청구 사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01조(제3항 및 제4항 후단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7·3·27〉

제106조 (준용규정) 제94조 내지 제98조의 규정은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공단"은 "심사위원회"로, "공단의 소속기관"은 "공단"으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로, "심사결정서"는 "재결서"로 보고, 제96조제3항중 "심사청구인"은 "공단 및 재심사청구인"으로, 동조제4항중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는 "행정소송"으로 본다.

제8장 보 칙

제107조 (변경사항의 신고) ①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자의 이름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장의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사업기간(건설공사 또는 벌목업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②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재해의 원인과 내용 및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7조의2 (수급권의 변동신고등) ①법 제9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2.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3.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내용

(추 122)

4. 기타 보험급여수급권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②법 제9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
2.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

〔본조신설 2000·6·27〕

제108조 (법령요지등의 게시) ①보험가입자는 보험관계법령중 근로자와 관계있는 규정의 요지와 보험관계 성립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을 사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②보험가입자는 그 사업에 관한 보험관계가 소멸될 때에는 그 일자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09조 (서류의 보존의무)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가입자이었던 자(보험사무조합 또는 보험사무조합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는 그 보험에 관한 서류를 그 완결의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0조 (보고·제출요구) 법 제99조 및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제출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11조 (진찰요구대상등) ①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6·24〉

1. 장기요양중인 재해근로자에 대한 계속요양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진찰
2. 장해 및 폐질등급 판정을 위한 진찰
3. 업무상 질병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찰
4. 재요양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찰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진찰비용은 이에 소요되는 실비로 지급한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진찰비용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추정할 수 있는 증상을 가진 자로서 그 증세가 위독하거나, 진찰중 이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아니할 경우 증세가 급속히 악화하여 진찰과 사후치료에 지장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른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④제110조의 규정은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진찰요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2조 (일시중지의 사유) ①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일시중지는

(추 12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1. 삭제 〈2000·6·27〉
2.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
3.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제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질문 또는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
4.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진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을 중지하기 전에 그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2회에 걸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의무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③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중지할 수 있는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에게 지급될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을 함이 곤란하거나 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모든 보험급여로 하며, 그 기간은 당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로 한다.

제113조 (금융기관의 지정)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 또는 반환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제113조의2 (현장실습생의 보험료 신고·납부등)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9조, 제30조의2 내지 제33조, 제36조 내지 제44조, 제46조 내지 제50조, 제65조 내지 제66조의2, 제68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은 법 제10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생의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와 보험급여의 지급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6·27〉

〔본조신설 97·12·31 대령15589〕

제113조의3 (중·소기업사업주의 범위) ①법 제10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사업주"라 함은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②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사업주가 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보험연도에 한하여는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본다.

〔본조신설 2000·6·27〕

제113조의4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지급의 제한) 법 제105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중에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0·6·27〕

제114조 (과태료의 부과)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추 122)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당해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보건사업등에 대한 법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부동산임대 및 서비스사업중 연구 및 개발업에 대하여는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근로복지공사법시행령
2.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3.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시행령
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규정
5. 요양급여심의위원회규정
6. 산업재해보상보험금지급규정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1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로 하고, 동항 제14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8조의2"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로 한다.

②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한 근로복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공사"를 "공단"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공사의 사장"을 각각 "공단의 이사장"으로 하며, 동조동항제1호중 "공사의 집행간부"를 "공단의 상임이사"로 한다.

(추 122)

제5조제1항 및 제3항중 "공사는"을 각각 "공단은"으로 한다.

제6조중 "공사가"를 "공단이"로 한다.

제7조중 "공사의 사장"을 "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공사는"을 "공단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사로"를 "공단으로"로 한다.

③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한 근로복지공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으로 한다.

④공인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2〕의 노동법의 비고란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을 삭제한다.

⑤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5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4항"으로 한다.

⑥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한 근로복지공사를"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을"로 한다.

⑦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및 제7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7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은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및 제69조제1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본다.

제74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은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확정보험료의 조사·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0조 및 제8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6조제2항, 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은 고용보험사무조합에 의한 보험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58조제2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제58조 및 제59조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81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4조 내지 제76조 및 제80조의 규정은 보험료의 납부와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3항, 제80조제2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제74조제2항 및 제3항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제75조제2호의 "신고"는 "보고"로, 제74조제1항제4호

(추 122)

및 제76조제2항제2호중 "법 제72조의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48조의 규정"으로, "보험급여액"은 "기본급여 또는 기본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⑧선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3제3항제5호"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3항제5호"로 한다.

제27조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로 한다.

⑨석탄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제5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의6제1항"을 "동법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⑩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3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85조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동법 제9조의6에 의한 유족급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동법 제43조에 의한 유족급여"로 한다.

⑪국민투자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한다.

⑫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8. 근로복지공단

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5호중 "근로복지공사가"를 "근로복지공단이"로 한다.

⑭범죄피해자구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

⑮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근로복지공단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시행령·근로복지공사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추 122)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97·3·27 대령153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2·31 대령1558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 칙 〈97·12·31 대령15589〉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2·31 대령15598〉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6·24 대령15816〉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5·24 대령163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2000·2·14 대령1670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0·6·27 대령168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제30조·제30조의3·제39조의2 및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요양기간중의 보험급여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재요양을 받게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징수비용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이후에 보험사무조합에 의하여 처리된 보험가입자의 보험사무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험료율결정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발생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공단규정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행중인 공단의 규정

(추 122)

중 공단의 임직원의 복무, 재산·물품관리 및 공단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0년 10월 31일까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업무상 질병이환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요양중인 업무상 질병이환자의 평균임금이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평균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이 영 시행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8조 (최고보상기준금액등의 적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6조의2제1항 및 제4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최고보상기준금액, 장의비최고금액 및 장의비최저금액의 적용기간은 제26조의2제3항 및 제4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최고보상기준금액, 장의비최고금액의 경우에는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장의비최저금액의 경우에는 2000년 7월 1일부터 2000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 (최저보상기준금액 적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최저보상기준금액은 2000년 7월 1일부터 2000년 8월 31일까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최저보상기준금액으로 본다.

제10조 (연금인 보험급여의 지급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5월·6월 및 7월분의 연금인 보험급여는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8월 10일까지 지급한다.

제11조 (보험사무조합의 장부비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조합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제59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약정서를 추가로 비치하여야 한다.

(추 122)

〔별표 1〕

평균임금의 증감(제25조제 1 항관련)

1. 평균임금의 증감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만, 보험급여중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의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증감과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할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 없거나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폐지·휴업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상임금의 변동율을 확인할 수 없는 근로자 및 퇴직한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증감은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다.

전회의 평균임금+(전회의 평균임금×전회의 평균임금산정이후의 통상임금의 변동율)

주 : 1) 이 산식은 통상임금평균액의 변동율이 5/100를 초과하거나, −5/10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통상임금평균액의 변동율이 −5/100이상, 5/100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본다.

2) 이 산식은 통상임금의 변동이 있은 달의 다음달의 평균임금의 산정부터 적용함

3) 통상임금은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인당 평균액으로 함

4) 동일한 직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세분류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세분류에 의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분류의 구분에 따를 수 있다.

2. 제 1 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업무상 재해의 발생일부터 1년간 : 업무상 재해발생일 현재의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

나. 업무상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후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text{전회의 평균임금액} \times \frac{\text{2년전 보험연도의 7월 1일부터 1년전 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의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text{3년전 보험연도의 7월 1일부터 2년전 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의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

주 : 1)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는 노동부장관이 통계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한 전산업 전근로자의 월별 정액급여의 평균액을 합하여 12로 나눈 금액으로 함

2) 전회의 평균임금은 산정하고자 하는 평균임금의 직전의 평균임금을, 2년전 보험연도 및 3년전 보험연도는 각각 산정하고자 하는 평균임금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2년전 또는 3년전 보험연도를 말함

(추 60)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평균액의 변동률 및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의 변동률 산정시 0.01%미만의 단수는 사사오입한다.
4. 제1호의 경우에 있어 한 사업장내 동일직종 근로자의 재해가 같은 달에 2건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1인의 통상임금평균액 변동률을 일괄적용할 수 있다.

〔별표 1의2〕〈신설 2000·6·27〉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감액지급기준(제30조의3 및 제39조의2관련)

감액대상연령	휴업급여 감액지급기준	상병보상연금 감액지급기준
65세이상	평균임금의 100분의 65	연금액의 100분의 93

〔별표 2〕〈개정 2000·6·27〉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제1항관련)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2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4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추 122)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리스프랑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5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6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7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추 60)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13. 양쪽 고환을 잃은 사람

제8급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제9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모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추 60)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10급

1.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3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추 60)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0. 10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12급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제13급

1.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추 60)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 발가락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4급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8.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
11. 한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참 고〉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3.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이상을 잃거나 중수지절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4.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절의 2분의 1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말관절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절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추 60)

〔별표 2의2〕 〈신설 2000·6·27〉

간병급여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제31조의3제1항관련)

구 분	지 급 대 상	지급기준
상시간병급여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2.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법 제40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간병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수시간병급여	3.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4.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 장해외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장해등급이 제1급인 경우를 제외한다. 5.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상시간병급여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비 고 :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등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출한 간병비용이 간병급여액에 미달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한다.

〔별표 3〕 삭제 〈2000·6·27〉

〔별표 4〕 〈개정 2000·6·27〉

폐질등급표(제39조제1항관련)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제1호 내지 제8호에 정한 것과 같은 정도이상의 폐질의 상태에 있는 사람

(추 122)

제 2 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 두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 제 1 호 내지 제 5 호에 정하는 것과 같은 정도이상의 폐질의 상태에 있는 사람

제 3 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6. 제 3 호 및 제 4 호에 정한 장해외의 장해로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7. 제 1 호 내지 제 6 호에 정한 것과 같은 정도이상의 폐질의 상태에 있는 사람

〈참 고〉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 1 지관절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별표 5〕

신체장해등급에 따른 노동력 상실률표(제41조제 2 항관련)

등 급	노 동 력 상 실 률
제 1 급	100%
제 2 급	100%
제 3 급	100%

〔별표 6〕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표(제42조제 1 항관련)

구 분	생 활 비 비 율
부양가족이 없는 자	40%
부양가족 1인	35%
부양가족 2인	30%
부양가족 3인이상	25%

비 고 : 부양의무자 및 부양가족의 범위는 민법에 의하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추 122)

〔별표 7〕

취업가능 기간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계수표(제41조제 2 항 및 제42조 제 1 항관련)

취업가능 월수	계 수	취업가능 월수	계 수
1	0.9958	28	26.3766
2	1.9875	29	27.2630
3	2.9751	30	28.1457
4	3.9586	31	29.0247
5	4.9381	32	29.9002
6	5.9134	33	30.7719
7	6.8847	34	31.6401
8	7.8520	35	32.5047
9	8.8153	36	33.3657
10	9.7746	37	34.2231
11	10.7298	38	35.0769
12	11.6812	39	35.9272
13	12.6286	40	36.7740
14	13.5720	41	37.6172
15	14.5115	42	38.4570
16	15.4472	43	39.2933
17	16.3789	44	40.1261
18	17.3068	45	40.9554
19	18.2309	46	41.7814
20	19.1511	47	42.6038
21	20.0674	48	43.4229
22	20.9800	49	44.2386
23	21.8888	50	45.0509
24	22.7938	51	45.8598
25	23.6951	52	46.6653
26	24.5926	53	47.4676
27	25.4865	54	48.2665

(추 60)

55	49.0620	98	80.3228
56	49.8543	99	80.9854
57	50.6433	100	81.6452
58	51.4290	101	82.3023
59	52.2115	102	82.9566
60	52.9907	103	83.6082
61	53.7666	104	84.2572
62	54.5394	105	84.9034
63	55.3089	106	85.5469
64	56.0753	107	86.1878
65	56.8385	108	86.8261
66	57.5985	109	87.4616
67	58.3553	110	88.0946
68	59.1090	111	88.7249
69	59.8596	112	89.3526
70	60.6071	113	89.9777
71	61.3514	114	90.6002
72	62.0927	115	91.2201
73	62.8309	116	91.8374
74	63.5661	117	92.4522
75	64.2982	118	93.0644
76	65.0272	119	93.6741
77	65.7532	120	94.2813
78	66.4763	121	94.8859
79	67.1963	122	95.4881
80	67.9133	123	96.0877
81	68.6274	124	96.6849
82	69.3384	125	97.2795
83	70.0466	126	97.8717
84	70.7518	127	98.4615
85	71.4541	128	99.0488
86	72.1534	129	99.6336
87	72.8499	130	100.2161
88	73.5434	131	100.7961
89	74.2341	132	101.3737
90	74.9220	133	101.9489
91	75.6069	134	102.5217
92	76.2891	135	103.0922
93	76.9684	136	103.6603
94	77.6448	137	104.2260
95	78.3185	138	104.7894
96	78.9894	139	105.3504
97	79.6575	140	105.9091

(추 60)

141	106.4655	184	128.3281
142	107.0196	185	128.7914
143	107.5714	186	129.2529
144	108.1209	187	129.7124
145	108.6681	188	130.1700
146	109.2130	189	130.6258
147	109.7557	190	131.0796
148	110.2961	191	131.5315
149	110.8343	192	131.9816
150	111.3703	193	132.4298
151	111.9040	194	132.8762
152	112.4355	195	133.3207
153	112.9649	196	133.7633
154	113.4920	197	134.2041
155	114.0169	198	134.6431
156	114.5397	199	135.0803
157	115.0602	200	135.5156
158	115.5787	201	135.9492
159	116.0949	202	136.3809
160	116.6091	203	136.8109
161	117.1211	204	137.2391
162	117.6309	205	137.6655
163	118.1387	206	138.0901
164	118.6443	207	138.5129
165	119.1479	208	138.9340
166	119.6493	209	139.3534
167	120.1487	210	139.7710
168	120.6460	211	140.1869
169	121.1413	212	140.6011
170	121.6345	213	141.0135
171	122.1256	214	141.4243
172	122.6147	215	141.8333
173	123.1018	216	142.2406
174	123.5868	217	142.6463
175	124.0699	218	143.0502
176	124.5509	219	143.4525
177	125.0300	220	143.8531
178	125.5070	221	144.2521
179	125.9821	222	144.6493
180	126.4552	223	145.0450
181	126.9263	224	145.4390
182	127.3955	225	145.8314
183	127.8628	226	146.2221

(추 60)

227	146.6112	270	161.9010
228	146.9987	271	162.2291
229	147.3846	272	162.5478
230	147.7689	273	162.8692
231	148.1516	274	163.1892
232	148.5327	275	163.5080
233	148.9123	276	163.8253
234	149.2902	277	164.1414
235	149.6666	278	164.4562
236	150.0414	279	164.7696
237	150.4147	280	165.0818
238	150.7864	281	165.3927
239	151.1566	282	165.7022
240	151.5253	283	166.0105
241	151.8924	284	166.3175
242	152.2580	285	166.6233
243	152.6220	286	166.9277
244	152.9846	287	167.2310
245	153.3457	288	167.5329
246	153.7052	289	167.8336
247	154.0633	290	168.1330
248	154.4199	291	168.4312
249	154.7750	292	168.7282
250	155.1286	293	169.0239
251	155.4808	294	169.3184
252	155.8315	295	169.6117
253	156.1807	296	169.9038
254	156.5285	297	170.1947
255	156.8749	298	170.4843
256	157.2198	299	170.7727
257	157.5633	300	171.0600
258	157.9053	301	171.3461
259	158.2460	302	171.6309
260	158.5852	303	171.9146
261	158.9230	304	172.1971
262	159.2595	305	172.4785
263	159.5945	306	172.7586
264	159.9281	307	173.0376
265	160.2604	308	173.3155
266	160.5912	309	173.5922
267	160.9207	310	173.8677
268	161.2489	311	174.1422
269	161.5756	312	174.4154

(추 60)

313	174.6876	356	185.3806
314	174.9586	357	185.6073
315	175.2284	358	185.8330
316	175.4972	359	186.0577
317	175.7649	360	186.2816
318	176.0314	361	186.5045
319	176.2968	362	186.7264
320	176.5611	363	186.9475
321	176.8244	364	187.1676
322	177.0865	365	187.3836
323	177.3476	366	187.6052
324	177.6075	367	187.8226
325	177.8664	368	188.0391
326	178.1242	369	188.2547
327	178.3810	370	188.4694
328	178.6367	371	188.6832
329	178.8913	372	188.8961
330	179.1449	373	189.1082
331	179.3974	374	189.3194
332	179.6488	375	189.5296
333	179.8992	376	189.7391
334	180.1486	377	189.9476
335	180.3970	378	190.1553
336	180.6443	379	190.3621
337	180.8906	380	190.5681
338	181.1358	381	190.7732
339	181.3001	382	190.9775
340	181.6233	383	191.1809
341	181.8656	384	191.3834
342	182.1068	385	191.5852
343	182.3470	386	191.7861
344	182.5862	387	191.9861
345	182.8245	388	192.1854
346	183.0617	389	192.3838
347	183.2980	390	192.5813
348	183.5332	391	192.7781
349	183.7675	392	192.9740
350	184.0009	393	193.1692
351	184.2332	394	193.3635
352	184.4646	395	193.5570
353	184.6951	396	193.7497
354	184.9245	397	193.9416
355	185.1531	398	194.1327

(추 60)

399	194.3230	442	201.8014
400	194.5126	443	201.9599
401	194.7013	444	202.1177
402	194.8893	445	202.2749
403	195.0765	446	202.4314
404	195.2629	447	202.5873
405	195.4485	448	202.7426
406	195.6334	449	202.8972
407	195.8174	450	203.0511
408	196.0008	451	203.2044
409	196.1833	452	203.3571
410	196.3652	453	203.5091
411	196.5462	454	203.6606
412	196.7265	455	203.8113
413	196.9061	456	203.9615
414	197.0849	457	204.1110
415	197.2630	458	204.2600
416	197.4403	459	204.4083
417	197.6169	460	204.5559
418	197.7928	461	204.7030
419	197.9679	462	204.8495
420	198.1423	463	204.9953
421	198.3160	464	205.1406
422	198.4889	465	205.2852
423	198.6612	466	205.4293
424	198.8327	467	205.5727
425	199.0035	468	205.7156
426	199.1736	469	205.8578
427	199.3430	470	205.9995
428	199.5117	471	206.1406
429	199.6798	472	206.2811
430	199.8471	473	206.4210
431	200.0137	474	206.5603
432	200.1796	475	206.6991
433	200.3448	476	206.8372
434	200.5094	477	206.9748
435	200.6732	478	207.1119
436	200.8364	479	207.2483
437	200.9989	480	207.3842
438	201.1607	481	207.5196
439	201.3219	482	207.6543
440	201.4824	483	207.7886
441	201.6422	484	207.9222

(추 60)

485	208.0553	528	213.2854
486	208.1879	529	213.3962
487	208.3199	530	213.5066
488	208.4513	531	213.6165
489	208.5822	532	213.7260
490	208.7126	533	213.8350
491	208.8424	534	213.9436
492	208.9717	535	214.0517
493	209.1005	536	214.1594
494	209.2287	537	214.2666
495	209.3563	538	214.3734
496	209.4835	539	214.4797
497	209.6101	540	214.5856
498	209.7362	541	214.6911
499	209.8618	542	214.7961
500	209.9869	543	214.9007
501	210.1114	544	215.0048
502	210.2354	545	215.1085
503	210.3589	546	215.2118
504	210.4819	547	215.3147
505	210.6044	548	215.4171
506	210.7264	549	215.5191
507	210.8478	550	215.6207
508	210.9688	551	215.7218
509	211.0893	552	215.8226
510	211.2092	553	215.9229
511	211.3287	554	216.0228
512	211.4476	555	216.1223
513	211.5661	556	216.2214
514	211.6841	557	216.3200
515	211.8016	558	216.4183
516	211.9186	559	216.5161
517	212.0351	560	216.6136
518	212.1512	561	216.7106
519	212.2667	562	216.8073
520	212.3818	563	216.9035
521	212.4964	564	216.9993
522	212.6105	565	217.0948
523	212.7242	566	217.1898
524	212.8373	567	217.2845
525	212.9500	568	217.3787
526	213.0623	569	217.4726
527	213.1741	570	217.5661

(추 60)

571	217.6591	614	221.3168
572	217.7518	615	221.3943
573	217.8442	616	221.4716
574	217.9361	617	221.5484
575	218.0276	618	221.6250
576	218.1188	619	221.7012
577	218.2096	620	221.7772
578	218.3000	621	221.8528
579	218.3901	622	221.9281
580	218.4797	623	222.0031
581	218.5690	624	222.0777
582	218.6579	625	222.1521
583	218.7465	626	222.2262
584	218.8347	627	222.2999
585	218.9225	628	222.3734
586	219.0100	629	222.4465
587	219.0971	630	222.5193
588	219.1838	631	222.5919
589	219.2702	632	222.6641
590	219.3562	633	222.7360
591	219.4419	634	222.8077
592	219.5272	635	222.8790
593	219.6121	636	222.9500
594	219.6917	637	223.0208
595	219.7809	638	223.0912
596	219.8648	639	223.1614
597	219.9484	640	223.2313
598	220.0316	641	223.3009
599	220.1144	642	223.3701
600	220.1970	643	223.4392
601	220.2791	644	223.5079
602	220.3610	645	223.5763
603	220.4425	646	223.6444
604	220.5236	647	223.7123
605	220.6044	648	223.7799
606	220.6849	649	223.8472
607	220.7650	650	223.9142
608	220.8449	651	223.9810
609	220.9243	652	224.0474
610	221.0035	653	224.1136
611	221.0823	654	224.1795
612	221.1608	655	224.2452
613	221.2390	656	224.3106

657	224.3757	662	224.6971
658	224.4405	663	224.7606
659	224.5051	664	224.8239
660	224.5694	665	224.8868
661	224.6334	666	224.9496

※ 비 고 : 1월미만은 1월로 한다.

〔별표 8〕 〈개정 98·6·24〉

보험요율증감표(제64조제1항 및 제72조제3항관련)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	보험요율에 대한 증감비율
5%까지의 것	50%를 감한다.
5%를 넘어 10%까지의 것	48%를 감한다.
10%를 넘어 20%까지의 것	42%를 감한다.
20%를 넘어 30%까지의 것	36%를 감한다.
30%를 넘어 40%까지의 것	30%를 감한다.
40%를 넘어 50%까지의 것	24%를 감한다.
50%를 넘어 60%까지의 것	18%를 감한다.
60%를 넘어 70%까지의 것	12%를 감한다.
70%를 넘어 75%까지의 것	6%를 감한다.
75%를 넘어 85%까지의 것	0
85%를 넘어 90%까지의 것	6%를 증가한다.
90%를 넘어 100%까지의 것	12%를 증가한다.
100%를 넘어 110%까지의 것	18%를 증가한다.
110%를 넘어 120%까지의 것	24%를 증가한다.
120%를 넘어 130%까지의 것	30%를 증가한다.
130%를 넘어 140%까지의 것	36%를 증가한다.
140%를 넘어 150%까지의 것	42%를 증가한다.
150%를 넘어 160%까지의 것	48%를 증가한다.
160%를 넘는 것	50%를 증가한다.

(추 9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5·4·29 노동부령제 97호
개정 1996·3·19 노동부령제107호
1997·12·31 노동부령제121호
1999·10·7 노동부령제157호
2000·7·29 노동부령제165호
2001·12·31 노동부령제180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해"라 함은 사고 또는 유해요인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사망·장해 또는 질병을 말한다.
2. "유해요인"이라 함은 물리적 인자·화학물질·분진·병원체·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방법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말한다.
3. "진폐증"이라 함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장내에 병적변화를 가져오는 질병을 말한다.
4. "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이하 "폐질"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5.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제2조의2 (기준임금의 적용신고 및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①영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임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수와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한 사실 등을 기재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기준임금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기준임금적용신고서는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이를 제출할 수 없다.

②영 제2조의2제1항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는 전년도 매월말일 현재 사용한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한다. 다만, 당해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의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한 근로자수를 상시근로자수로 한다.

(추 141)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전년도 임금총액을 전년도 건설업의 월평균임금에 조업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한다. 이 경우 건설업의 월평균임금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9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산정·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0·7·29〕

제2장 보험가입자

제3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 ①삭제 〈2000·7·29〉

②영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당해 사업개시일 이후 근로자수가 최초로 1인 이상 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 30일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 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개시일부터 사용한 연인원을 그 총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2000·7·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근로자수가 상시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법을 적용한다. 〈개정 97·12·31, 2000·7·29〉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영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0·7·29〉

제4조 삭제 〈2000·7·29〉

제5조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는 이를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삭제 〈97·12·31〉
2.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공사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보다 클 것
3.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부문의 도급금액보다 클 것
4.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제5조의2 (임의가입의 승인요건)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삭제 〈2000·7·29〉

(추 123)

2.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을 비치하고 있을 것
3. 기타 보험관계를 성실히 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본조신설 97·12·31〕

제6조 (하수급인의 보험료납부 인수승인요건)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납부 인수에 관한 승인요건은 하수급인의 사업종류별로 각각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12·31〉

1. 건설업
   가. 사업주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일 것
   나. 하도급공사의 도급공사금액이 1억원이상일 것
   다. 원수급인이 당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것
   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보험료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
   마.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보험료미납부에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각서를 제출할 것
   바. 하수급인의 사업이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
2. 제조업·수선업 기타의 사업
   가. 사업주가 부가가치세법등 관련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행한 자일 것
   나. 사업장의 인사·회계등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주일 것
   다. 원수급인의 사업장과는 별도의 자체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는 사업장일 것
   라. 제1호 다목 내지 바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제7조 (보험료납부 인수승인) ①원수급인이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 보험료납부 인수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보험료납부인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급계약서 사본
2. 보험료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3. 하수급인의 보험료미납부에 대한 연대책임각서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보험료납부인수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5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추 123)

제8조 (보험료납부 인수승인취소) ①공단은 하수급인인 보험가입자가 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하수급인의 보험료납부 인수에 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 보험료납부 인수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하수급인인 보험가입자 및 원수급인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일괄적용승인) ①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동종사업일괄적용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9〉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사업일괄적용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5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보험급여

제1절 평균임금산정의 특례

제10조 및 제11조 삭제 〈2000·7·29〉

제12조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특례의 적용기준) ①영 제26조제2항에서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라 함은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에 발급된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발급된 날을 말한다.

②영 제26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중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부터 이전 1년간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월임금의 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사한 사업 및 유사한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0·7·29〕

제13조 (특례적용여부 통지) 공단은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특례적용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요양관리등

제14조 (요양 및 요양연기결정) ①공단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로부터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신청서(요양연기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요양 또는 요

(추 123)

양연기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의 위촉·임무·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결정통지를 받은 근로자로서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요양 중인 자는 다른 보험시설 또는 지정의료기관으로 옮겨 요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요양에 따르는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개정 2000·7·29〉

제15조 (재요양) ①공단은 요양을 받은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인정하여야 한다.

1. 일반상병으로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신청한 상병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2. 내고정술에 의하여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
3. 의지장착을 위하여 절단부위의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공단은 재요양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증상경과·임상결과 등에 관하여 자문의사 또는 당해 근로자의 주치의사의 의견을 들어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재요양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요양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로 하여금 동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요양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치료종결) ①공단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치료를 종결시켜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근로자의 치료종결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9·10·7〉

②공단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 또는 그 가족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치료종결여부를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제1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로 구성된 자문의사협의회를 둔다. 〈개정 99·10·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협의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개정 99·10·7〉

(추 123)

제17조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①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의한다.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중 동 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 또는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여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비산정기준(이하 "요양비산정기준"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96·3·19, 2000·7·29, 2001·12·31〉

②공단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에서 행하는 요양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비용 등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의 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 (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근로자가 국외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에 관한 당해 외국의 공증서 또는 주재 공관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10·7〕

제19조 (국내요양통보) ①공단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가 30일 이상의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 및 당해 근로자에게 국내에서 요양을 받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요양을 위하여 30일 이상의 여유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공단은 당해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국내요양통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귀국지정일의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요양비는 동일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당해 보험연도(당해 보험연도의 지급실적이 없거나 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보험연도)에 지급된 전국의 평균진료비에 준하여 산정한다.

제20조 삭제 〈99·10·7〉

제21조 (요양비산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외국의료기관에서 행한 요양에 대한 요양비의 산정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외국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99·10·7〉

제22조 (적용환율)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비를 지급하는 경우의 적용환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0·7〉

(추 141)

1. 국내에서 외국의료기관으로 진료비를 송금한 경우에는 국내금융기관을 통하여 국외로 외환이 송출된 시점의 환율
2. 해외지점·출장소·영업소등에서 당해 외국의료기관에 직접 진료비를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외국의료기관이 진료비 수납영수증을 발부한 시점의 환율

제23조 (간병료 및 이송료) 국외요양 및 국내요양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중의 간병료 및 이송료에 관하여는 제24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7·29〉

제24조 (간병의 범위) ①법 제40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간병은 요양중인 근로자로서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다만, 중환자실 및 회복실에 있는 기간은 간병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0·7·29〉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
2. 두 눈의 실명등으로 타인의 조력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
3. 두부손상등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되어 절대안정을 요하는 자
4. 말하는 기능의 장해등으로 의사소통이 안됨으로써 치료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
5. 체표면적의 35퍼센트이상에 걸친 화상등으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자
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등을 하여 혼자서 배뇨·배변을 할 수 없는 자
7. 하반신마비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욕창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형시킬 필요가 있는 자
8. 직업병 이환자로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타인의 조력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
9. 수술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혼자힘으로 할 수 없는 자
10.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에 준하는 상태로서 요양중인 자

②삭제 〈2000·7·29〉

③철야간병은 제1항제2호·제5호·제7호 기타 이에 준하는 상태로서 타인의 조력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입원요양중인 자(사지마비의 경우에는 통원중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인정한다. 〈개정 2000·7·29〉

(추 123)

제25조 (간병인의 자격) 간병인은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다만,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병에 필요한 지식을 가진 타인으로 하여금, 타인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부모·13세이상이 되는 자녀 또는 형제로 하여금 간병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0·7, 2000·7·29〉

제26조 (간병료) ①간병료는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전년도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직종별 월급여총액을 기초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간병료의 적용기간은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96·3·19, 2000·7·29〉

②간병인이 철야로 간병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간병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2인이상을 동시에 간병할 경우에는 그 간병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그 간병인에 대한 간병료로 한다. 〈개정 2000·7·29〉

③삭제 〈96·3·19〉

제27조 (청구방법) ①간병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진료비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근로자의 가족이 간병을 담당한 경우에는 요양비청구서에 의료기관의 간병확인을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2000·7·29〉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이송의 범위) 법 제40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이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0·7·29〉

1. 재해현장에서 의료기관까지의 이송
2. 공단의 통보 또는 주치의사의 소견에 의한 의료기관까지의 이송 및 의료기관을 변경하기 위한 이송
3. 재요양을 위하여 자택등으로부터 의료기관에 수용하기 위한 이송
4. 주치의사의 소견에 의한 퇴원 및 통원의 경우로서 의료기관과 당해 근로자의 거주지(근무처를 포함한다)의 거리가 편도로 1킬로미터이상인 경우와 1킬로미터미만이더라도 상병상태로 보아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는 퇴원 및 통원이 불가능한 경우의 그 퇴원 및 통원

제29조 (이송비용) ①이송비는 당해 근로자와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②이송비중 교통비는 순로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 및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추 123)

실제로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등급의 차이가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2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당해 근로자의 상병상태로 보아 상위등급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③이송비중 숙박료 및 식대는 당해 근로자와 동행하는 간호인중 숙식이 필요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숙박료 및 식대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비 및 식비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99·10·7, 2000·7·29〉

④삭제 〈2000·7·29〉

제30조 (동행 간호인) ①당해 근로자의 상병상태로 보아 이송에 간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호인 1인이 동행할 수 있다. 다만, 주치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인까지 동행할 수 있다.

②동행 간호인의 간병료는 당해 간호인의 자격에 따라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7·29〉

제31조 (청구방법) ①의료기관이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청구서에 그 내역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②당해 근로자가 직접 이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요양비청구서에 이송비 내역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③제27조제2항의 규정은 이송비 지급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절 업무상 재해의 기본원칙

제32조 (업무상 사고)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개정 2000·7·29〉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
2.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3.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추 123)

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자

제33조 (업무상 질병) ①근로자의 질병에의 이환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개정 97·12·31〉

1.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근무기간·폭로량 및 작업환경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폭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유해요인에 폭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4.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②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의 상태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부상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간에 신체부위 및 시간적·기능적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부상의 원인·정도 및 상태등이 질병의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3.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제34조 (작업시간중 사고) ①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작 업
2. 용변등 생리적 필요행위
3. 작업준비·마무리행위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②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등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통념상 예견될 수 있는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작업시간외 사고) ①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외의 시간을 이용하

(추 123)

여 제3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동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차량·장비등을 포함한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의 시간중에 발생한 때에도 당해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관리 또는 사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태풍·홍수·지진·눈사태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작업장소(인근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의 자유로운 행동이 허용되고 있는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사적행위를 하고 있을 때
2. 근로자가 작업시간외의 시간중에 사업장내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을 때
3.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있거나 출·퇴근중에 잠시 머무르고 있을 때

④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0·7〉

1.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2.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

제35조의2 (휴게시간중 사고)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게시간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취업규칙등을 위반하거나, 고의·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

(추 123)

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0·7·29〕

제36조 (출장중 사고) ①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장도중 정상적 경로(순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2. 근로자의 사적행위·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3.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②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외의 장소로 출·퇴근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외근근로자)가 최초로 직무수행장소에 도착하여 직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직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 (행사중 사고) ①근로자가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등 각종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참가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당해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행사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7·29〉

1.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당일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3.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②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행사의 기획·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행사의 기획·운영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34조 및 제36조제1항

(추 123)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 (기타 사고) ①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

1. 재해발생경위 및 사상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것
2. 타인의 가해행위와 사상한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②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요양 중인 행위와 사고간에, 사고와 새로운 사상간에 각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제39조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①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외에 당해 근로자의 성별·연령·건강정도 및 체질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9조의2 (업무상 질병여부에 관한 자문의뢰) 공단은 업무상 질병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협의회
2.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업안전연구를 담당하는 기관
3. 그 밖에 업무상 질병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

〔본조신설 2001·12·31〕

제39조의3 (이황화탄소중독증 판정절차) ①공단은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고자 하는 자의 요양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정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정밀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지체없이 정밀진단을 한 후 그 진단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토대로 이황화탄소중독증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문의사 3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 중독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31〕

제4절 장해등급 및 폐질등급

제40조 (기본원칙) ①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추 141)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②장해부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기관을 가지고 있는 부위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내이는 좌·우를 동일한 장해부위로 본다.

1.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2. 귀는 내이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
3. 코
4. 입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6. 두부·안면·경부
7. 흉복부장기(외부생식기를 포함한다)
8. 체간은 척주와 기타의 체간골
9.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의 좌 또는 우
10.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의 좌 또는 우

③장해계열은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④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동일부위에 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조정하지 아니한다.

1. 양 안구의 시력장해·조절기능장해·운동기능장해·시야장해 상호간
2. 같은 팔의 기능장해와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
3. 같은 다리의 기능장해와 발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

⑤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의 조정을 행하지 아니하고 영 별표 2에 의한 신체장해등급표(이하 "신체장해등급표"라 한다)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1. 두 팔 및 두 다리의 결손장해로서 그 장해의 조합에 대하여 신체장해등급표에 하나의 장해등급(이하 "조합등급"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2. 하나의 장해가 신체장해등급표에 의하여 2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신체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등급인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가중함에 있어서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보상을 행한 후 당해 장해의 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장해보상을 행한 등급을 기존의 장해등급으로 본다.

⑦동일한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를 가중하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운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먼저 동일한 장해계열의 가중된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하고,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등급을 정한 후 이들 장해등급에 대한 등급조정을

(추 141)

행한다.

⑧신체장해등급표에 조합등급으로 정하여져 있는 장해부위의 한쪽에 장해가 있던 자가 다른 한쪽에 새로운 장해가 발생함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장해계열의 상이에 불구하고 새로운 장해에 대하여 별도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장해에 새로운 장해가 가중된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1. 두 팔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제1급제5호·제6호 및 제2급제3호)
2. 두 손의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제3급제5호 및 제4급제6호)
3. 두 다리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제1급제7호·제8호, 제2급제4호 및 제4급제7호)
4. 두 발의 발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제5급제6호 및 제7급제11호)
5. 두 눈의 눈꺼풀의 결손 또는 운동기능장해(제9급제4호·제11급제2호·제13급제3호)

⑨손·발가락, 안구 또는 내이의 가중된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일수)은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일수)이 새로운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의 장해급여의 금액(일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00·7·29〉

⑩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종료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한다. 다만, 요양종료시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1. 6월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행함. 다만, 6월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행한다.
2. 6월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에 대하여 행함

제41조 (운동기능장해측정) ①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3과 같다.

②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중 공단이 정하는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당해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3의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개정 99·10·7, 2000·7·29〉

제42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제43조 (폐질등급 적용시기) 영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의 적용시기는 요양이 개시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을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2년이 경과된 후 폐질상태를 진단받은 날(폐

(추 123)

질상태진단서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한다.

제44조 (폐질등급 결정기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위한 폐질등급의 결정기준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상태진단당시의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요양이 개시된 후 2년이 경과되었으나 6월이내에 폐질의 상태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어 폐질등급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과거 6월간의 폐질상태를 종합하여 해당되는 폐질등급을 인정한다.

제 5 절 진폐증

제45조 (진폐증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근로자가 분진이 비산되는 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면서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진폐증에 이환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제46조 (분진작업의 범위)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의 범위는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과 당해 작업장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명백히 진폐증에 이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으로 한다.

제47조 (요양급여의 신청등) ①진폐증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휴·폐업등으로 인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공단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재요양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7·29〉

1. 사업주의 증명에 의한 분진작업직력확인서 1부
2. 진폐판정에 사용된 가로·세로 각각 14인치이상인 엑스선 사진 1매
3. 의료기관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②진폐증으로 인한 재요양신청은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의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 한한다. 다만, 합병증 또는 고도의 심폐기능장해등으로 응급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0·7, 2000·7·29〉

제48조 (정밀진단의뢰) 공단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와 엑스선 사진을 첨부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폐정밀진단을 행하는 의료기관(이하 "진단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정밀진단 대상여부의 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9〉

제49조 (정밀진단을 위한 조치)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 대상여부의 판정을 의뢰받은 진단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정밀진단 대상여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진단예정일시를, 정밀진단이 불필요하다

(추 123)

고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9〉

제50조 (정밀진단 결정조치) ①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공단은 정밀진단 대상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진단의료기관에는 정밀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주민등록증·인장 및 증명사진 1매를 지참하여 지정된 일시에 정밀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정밀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 일정을 변경받아야 한다. 〈개정 2000·7·29〉

제51조 (정밀진단 결과통보) ①진단의료기관은 정밀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9〉

1. 진폐진단소견서
2. 재해보상에 관한 의견서
3. 엑스선 사진

②진폐진단담당의사는 국제통용기호에 의하여 진폐진단소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진폐진단담당의사는 공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진단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2조 (진폐심사협의회) ①진폐증 이환여부와 이에 따르는 요양대상여부 및 장해정도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진폐심사협의회를 둔다.

②공단은 진단의료기관으로부터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진폐증 이환여부와 이에 따르는 요양대상여부 및 장해정도를 판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심사협의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53조 (특례인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진폐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관리구분판정 및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진폐근로자는 제47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 제40조 및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관리구분판정 또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이를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판정으로 본다.

제54조 (진폐정밀진단 진료비) 제17조의 규정은 진폐정밀진단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추 123)

〔전문개정 97·12·31〕

제55조 (진단의료기관) 진폐증판정을 요하는 근로자에 대한 정밀진단은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행한다.

〔전문개정 2000·7·29〕

제56조 (진폐요양담당의료기관) 공단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폐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에 의한 병원 또는 종합병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9〉

1. 의료인은 다음 각목의 자를 갖추고 있을 것
   가. 결핵 또는 내과계전문의로서 진폐증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나. 방사선전문의로서 진폐증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다. 기흉배기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의사. 다만, 가목의 의사가 동 시술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임상병리기사
   마. 폐기능검사에 충분한 경험을 가진 의료종사자
2. 의료시설은 다음 각목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가. 결핵정밀진단에 필요한 제반검사기기(도말 또는 집균·균배양에 필요한 기기)
   나. 폐기능 검사기
   다. 엑스선 촬영기(500밀리미터이상으로 단층촬영이 가능할 것)
   라. 혈액가스 분석기
   마. 폐결핵에 합병된 진폐근로자 격리병실 또는 격리병동
   바. 기타 진폐증과 폐결핵치료에 필요한 시설

제57조 (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58조 (정밀진단) ①진폐증 판정을 요하는 근로자에 대한 정밀진단은 대상 근로자를 진단의료기관에 수용하여 실시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정밀진단에 필요한 검사항목·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단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59조 (업무협조) ①공단은 진단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진폐에 관한 연구의뢰
2. 요양의료기관에 대한 기술협력 및 지도

②공단은 진단의료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

(추 123)

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절의2 간병급여의 청구

제59조의2 (간병급여의 청구방법) 영 제3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병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간병급여 수급권자의 장해상태, 간병인에 관한 사항 및 간병시설 이용여부등을 기재한 간병급여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되, 간병급여의 수급도중에 간병급여 수급권자의 장해상태가 변동된 때에는 간병급여청구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7·29〕

제6절 보험급여지급의 제한

제60조 (요양관리) ①공단 또는 지정의료기관은 요양중인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그 부상·질병 또는 신체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그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입원중의 부득이한 사유없는 외출·외박
2. 공단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정한 주의사항의 불이행

②지정의료기관은 요양중인 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1조 (보험급여지급제한의 대상 및 금액) 공단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상·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 그 다음날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되는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지급사유발생기간이 20일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제7절 (제62조) 삭제 〈2000·7·29〉

제4장 보험료

제1절 보험료의 대행납부승인

제63조 (보험료대행납부) ①공단은 영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대행납부승인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신청인 및 원수급인에게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영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대행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험료대행납부자 및 원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보험사무조합을 통한 징수

제64조 (위탁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

(추 123)

가 보험사무조합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12·31〉

1. 개산보험료·증가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2. 연체금·가산금·급여징수금·부정이득징수금의 납부
3.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의 신고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

제65조 (보험가입자의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험가입자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수는 제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0·7·29〕

제66조 (보험사무위탁처리규약의 내용) 영 제5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위탁처리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험사무처리의 위탁 및 해지절차
2. 보험사무처리의 방법 및 절차
3. 보험사무조합의 재정보증등 책임이행방법
4. 보험사무조합의 회계처리방법 및 절차

제67조 (인가신청에 대한 통지) 공단은 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20일이내에 그 인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 (폐지신고) 보험사무조합이 영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폐지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험사무조합폐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사무조합인가서
2. 보험사무를 위탁한 보험가입자별 체납보험료 현황

제69조 (징수비용교부금의 지급기준) ①영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험가입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제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영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비용교부금의 지급기준은 보험사무를 위탁한 동조동항의 사업주 1인당 2만원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주의 보험사무위탁기간이 6월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6월이상 1년미만인 경우에는 추가징수비용교부금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0·7·29〕

제70조 삭제 〈2000·7·29〉

제71조 (징수비용교부금의 신청) 보험사무조합이 영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비용교부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징수비용교부금신청서에 사업장규모별 징수금납부내역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추 123)

7·29〉

제72조 (보험료등의 신고·납부등)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이 공단에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기타 징수금)납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료(기타 징수금)신고내역 총괄표
2. 보험가입자별 보험료(기타 징수금)신고내역서
3. 보험료(기타 징수금)납부영수증서 사본

제73조 (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공단은 보험사무조합에 대하여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기타 서류의 작성·비치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3절 보험료율의 결정·적용 및 보험료징수의 특례

제74조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결정)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은 이를 천분율로 표시하되, 그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의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이를 분류한다. 다만, 동일한 사업종류라도 사업장에 따라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이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하게 보험료율을 산정·결정함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종류를 2이상의 등급으로 구분·결정할 수 있다.

제75조 (보험료율 결정의 예외) 노동부장관은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험가입자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도별 보험료율 및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의 변동사항을 참작하여 당해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6조 삭제 〈2000·7·29〉

제77조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 적용사업장 판단기준) 영 제6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료율"이라 한다)를 적용하는 사업의 판단기준은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10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당해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눈 근로자수가 30인이상 또는 계절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기간의 연간 연인원이 7천500인이상인 사업으로 한다.

제78조 (개별실적료율 적용제외 사업) 영 제6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이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이전 3년의 기간중에 보험료율 적용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라도 기계설비·작업공정등 당해 사업의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 (개별실적료율의 결정시기) ①공단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실적

(추 123)

료율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의 고시일부터 10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료율 고시일부터 보험연도 개시일까지 10일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보험연도 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개별실적료율 결정의 착오등 기타의 사유로 개별실적료율을 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일이내에 이를 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제80조 (개별실적료율의 결정통보) 공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실적료율을 결정 및 조정·변경한 때에는 보험가입자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0조의2 (개산보험료 신고·납부의 예외) 영 제66조의2 본문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는 제2조의2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0·7·29〕

제80조의3 (보험료 징수의 특례적용) ①법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등에 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를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정·부과한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보험료의 재산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출된 관련자료등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7·29〕

제4절 확정보험료의 정산특례 및 징수금의 체납처분

제81조 (정산시기) ①공단은 법 제68조 및 영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종료일부터 3월 또는 9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확정보험료정산 착오등의 사유로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정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이내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82조 (정산결과 통보) 공단은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정산한 때에는 보험가입자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2조의2 (공매대행수수료) ①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7·29〉

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항에서 "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압류한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건별 매각금액에 1천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 체납자 또는 제3자가 당해 체납

(추 123)

액을 완납하여 공매가 중지된 경우에는 당해 납부금액에 1천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 공단이 직권으로 또는 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공매대행의 의뢰를 해제한 경우에는 당해 체납액(체납액보다 매각예정가격이 적은 경우에는 매각 예정가격)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체납자 또는 제3자가 당해 체납액을 완납함으로 인하여 공매가 중지되어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별 매각금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 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체납액 또는 매각예정가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금액·납부금액·체납액 또는 매각예정가격을 10억원으로 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0·7·29〉

〔본조신설 97·12·31〕

제5장 근로복지사업

제83조 (지정법인의 지정기준) 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법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요양·직업재활 또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2. 이사중에 노동행정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 및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각각 1인이상 있을 것

제84조 (지정법인의 지정신청) ①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 관
2. 임원의 명단
3.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보통재산 및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할 것)
4. 당해연도 수지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5. 법인등기부등본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정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제85조 (지정의 취소) 노동부장관은 지정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목적외의 사업을 한 때
2. 제83조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동 요건을 위반한 때

(추 123)

3.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제86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①지정법인은 매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정법인은 매 회계연도말 현재의 사업실적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7조 (지도감독등) 노동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상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88조 (적립금계정의 설치)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수입과 지출외에 따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계정을 설치한다.

②적립금의 출납은 노동부장관이 임명한 출납공무원이 이를 행하며 그 출납상황을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제89조 (실비변상) 영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의 지급범위 및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심사 및 재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실비변상의 지급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함
2. 감정인에게 지급할 실비변상의 지급기준은 감정당시의 가격으로 함. 다만, 감정가격이 없거나 감정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중에서 감정실시 내용과 가장 유사한 가격에 의한다.

제90조 (특별진찰의료기관) ①공단이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법 제7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 법 제103조 규정에 의하여 진찰을 요구받은 자가 특정의료기관에서 진찰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시설, 당해 재해근로자의 상병상태등을 고려하여 그가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7·29〕

제90조의2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의 신청 및 승인) ①법 제10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해외파견자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파견자의 명단

(추 123)

2. 해외파견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3. 해외파견기간
4. 해외파견자의 업무내용
5. 해외파견자의 임금지급방법 및 지급액

②법 제10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의 승인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파견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업일 것
2. 직업안정법시행령 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이 아닐 것

③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청서의 접수일부터 5일이내에 보험가입 승인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 해외파견자의 보험관계성립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7·29〉

1. 파견예정자 : 출국일
2. 파견된 자 : 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승인을 얻은 보험가입자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2·31〕

제90조의3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료 신고·납부등) ①법 제65조 내지 제67조 및 법 제69조의 규정은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료의 신고·납부·정산·충당 및 반환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영 제24조 내지 제27조, 영 제29조, 영 제30조의2 내지 제33조, 영 제36조 내지 제44조, 영 제46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은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 청구·신청 및 결정통지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7·29〉

③제14조 내지 제19조, 제21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해외파견자의 요양급여신청등 요양관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7·29〉

〔본조신설 97·12·31〕

제90조의4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가입신청 및 승인) ①법 제10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수, 사업의 내용 및 임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특수건강진단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의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을 신청한 사업주가 분진·진동·연(鉛) 및 유기용제 관련업무 종사자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의3의 규정에 의

(추 123)

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진단결과 당해 사업주의 건강상태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진료비는 공단이 부담한다.

〔본조신설 2000·7·29〕

제90조의5 (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①제32조(동조제3호 단서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본문, 동조제2호·제3호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 "중·소기업사업주"로, 동조제1호중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는 이를 "중·소기업사업주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로 본다.

②제33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 "중·소기업사업주"로 본다.

③제34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의 작업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및 시간외 근로를 행하는 시간에 한한다)중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 "중·소기업사업주"로 본다.

④제35조의2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의 휴게시간중 사고(휴게시간중 근로자와 함께 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한한다)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의 출장중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 본문중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는 이를 "중·소기업사업주가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하여"로, 동항 각호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 "중·소기업사업주"로 본다.

⑥제37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행사에 참가중이거나 그 준비연습중 또는 행사의 기획·운영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 "중·소기업사업주"로 본다.

⑦제38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가 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사상하거나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중에 요양과 관련된 행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추 123)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 "중·소기업사업주"로 본다.

⑧제39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2항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 "중·소기업사업주"로 본다.

〔본조신설 2000·7·29〕

제90조의6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료 신고·납부 등) ①중·소기업사업주가 보험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매 보험연도마다 법 제105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임금액에 당해 사업의 보험료율과 당해 보험연도의 총월수(보험연도 중에 보험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일부터 당해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총월수)를 곱한 금액을 보험연도 초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징수하거나 감액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7·29〕

제91조 (서식) ①법·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신고서·신청서·청구서·통지서 및 납부서 등의 서식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이 정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을 정함에 있어서 법·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외의 서류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출된 서식만으로는 그 서식에 기재된 사항의 사실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확인을 위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호료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5월 1일부터 동년 8월 31일까지의 개호료의 금액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제3조 (최저보상기준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 금액은 이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최저보상기준금액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여유금운용규칙
2.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3.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추 123)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0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7조"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4 및 제9조의3제3항제6호"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및 제40조제3항제6호"로 한다.

②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3조 (건강관리수첩의 용도) 수첩소지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첩을 제출함으로써 동 재해에 관한 의사의 초진소견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여유금운용규칙·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96·3·19 노동부령10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에 발생한 업무상 발병 또는 사망에 대하여,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에 치유가 종료된 신체상 부위별 장해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부 칙 〈97·12·31 노동부령121〉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10·7 노동부령1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7·29 노동부령16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단서, 제65조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매대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의뢰된 공매대행수수료부터 적용한다.

③(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32조제3호·제35조의2·제37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12·31 노동부령1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추 141)

〔별표 1〕〈개정 2000·7·29〉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제39조제1항관련)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가목(1)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한다.

다. 가목(2)에서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전 1주일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2. 물리적인 인자로 인한 질병

물리적인 인자에 노출되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전안부(前眼部)질환 또는 피부질환

나. 적외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망막화상·백내장등의 안질환 또는 피부질환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망막화상등의 안질환 또는 피부질환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백내장등의 안질환

마. 유해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급성방사선증·피부궤양등의 방사선 피부장해·백내장등의 방사선 안질환·방사선 폐렴·재생불량성빈혈등의 조혈기장해·골괴사 또는 기타의 방사선 장해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의 업무로 인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

사.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이상의 화상

아.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의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이상의 동상

3.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잠수작업·잠함실내근무·고공근무등으로 대기압보다 높거나 낮은 환경압조건에 폭로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

(추 123)

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고기압 또는 저기압조건에 노출된 후 6시간 내지 12시간이내에 나타나는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장해

(1) 폐·중이·부비동 또는 치아등에 발생한 압착증

(2) 물안경 또는 헬멧등과 같은 잠수기기에 의한 압착증

(3) 질소마취현상 또는 중추신경계 산소독성으로 속발된 건강장해

(4) 피부·근골격계·호흡기·중추신경계 또는 내이등에 발생한 감압병

(5) 뇌동맥 또는 관상동맥에 발생한 공기색전증

(6) 기흉·혈기흉·종격동·심낭 또는 피하기종

(7) 배부·복부의 통증 또는 극심한 피로감

나. 고압노출작업환경에 2개월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 업무를 떠난 후 5년 전후에 나타나는 무혈성골괴사의 만성장해. 다만, 만성알콜중독·매독·당뇨병·간경변증·간염·류마티스성관절·고지질혈증·혈소판감소증·통풍·레이노증후군·결절성 다발성동맥염·알캅톤뇨증 및 약물치료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소음성 난청

가. 인정기준

(1) 연속음으로 85dB(A)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을 것

(2) (1)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나)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閾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閾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다) 내이염·약물중독·열성질환·메니에르씨증후군·매독·두부외상·돌발성난청·유전성난청·가족성난청·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등에 의한 난청이 아닐 것

나. 난청의 측정방법

(1) 24시간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공단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공단이 정하여 고시한 인력·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500(a)·1,000(b)·2,000(c) 및 4,000(d)Hz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순음청력계기는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간의 간격으로 3회이상(음향외상성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후 30일 간격으로 3회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차(有意差)가 없는 경우 그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월후 재검사를 실시한다.

(추 114)

(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이내일 것
(나) 상승법·하강법·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이내일 것
(다)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해 낮거나 같을 것
(라) 반복검사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이내일 것
(마)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 1000, 2000Hz)에서의 주파수간 역치변동이 20dB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dB이내일 것

5.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질병
가. 작업자세 및 작업강도등에 의하여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가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질병에 이환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선천성이상·류마티스관절염·퇴행성질환·통풍등 업무상 질병에 의하지 아니한 장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육·건·골격 또는 관절의 질병
(2) 내장탈(장기 또는 조직의 일부가 자기의 위치에서 다른 부위로 이탈하는 증상)
(3) 경견완증후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질병
(가) 경추부의 신경 또는 기능장해
(나) 견갑부의 극상근증후군·건초염·활액낭염
(다) 상완 및 전완부의 상과염을 포함한 건초염·수근관증후군
(라) 수지의 압통과 부종을 동반한 운동기능장해
나. 가목(3)에서 "경견완증후군"이라 함은 상지에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하는 업무에 6월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경부·견갑부·상완부·주관절·전완부 및 그 이하에서 발생된 근골격계질환을 말한다.

6. 진동장해
착암기·병타기·동력사슬톱등의 진동공구를 취급하여 신체국부에 진동폭로를 받는 업무에 상당기간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손가락·팔목등에 저림·통증·냉감·뻐근함(뻣뻣함)등의 자각증상이 지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장해가 나타나거나 그중 어느 하나가 뚜렷이 나타나는 경우
(1) 수지·전완등의 말초순환장해
(2) 수지·전완등의 말초신경장해
(3) 수지·전완등의 골·관절·근육·건등의 이상으로 인한 운동기능장해
나. 레이노현상의 발현이 인정된 질병

7. 요 통
가.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요부의 부상(급격한 힘의 작용에 의한 배

(추 114)

부·연부조직의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요통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통상의 동작과 다른 동작에 의해 요부에 급격한 힘의 작용이 업무수행중에 돌발적으로 가하여져서 발생한 요통

(2) 요부에 작용한 힘이 요통을 발생시켰거나 요통의 기왕증 또는 기초질환을 악화시켰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요통

나.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비교적 단기간(약 3월이상)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요통 또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에 장기간(약 5년이상)에 걸쳐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만성적인 요통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방사성학적 소견상 변형성척추증·골다공증·척추분피증·척추체전방전위증 및 추체변연융기등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나목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라 함은 30kg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3이상 취급하는 업무 또는 20kg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2이상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8.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아연·구리등의 금속흄으로 인한 금속열

나. 불소수지·아크릴수지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로 인한 안점막의 염증 또는 기도점막의 염증등의 호흡기질환

다. 검댕·광물유·옻·시멘트등에 의한 봉와직염·습진·기타의 피부질환

라. 검댕·타르·피치·아스팔트·광물유·파라핀등으로 인한 원발성상피암

마. 목재분진·짐승털의 먼지·항생물질등에 의한 알레르기성비염·기관지천식등의 호흡기질환

바. 공기중의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의 산소결핍증

9. 염화비닐로 인한 증상 또는 그 속발증

가. 염화비닐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간비장증후군

(2) 지골단 용해증

(3) 경피증

(4) 레이노증후군

나. 염화비닐에 폭로되는 업무에 4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원발성간혈관육종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0. 타르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타르에 폭로되는 업무에 2개월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

(추 123)

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타르외의 원인에 의한 피부질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촉성피부염

(2) 광과민성피부염

(3) 피부색소이상

(4) 좌창성피부질환

(5) 국소모세혈관확장증

(6) 피치사마귀

나. 타르에 폭로되는 업무에 10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원발성폐암

(2) 원발성피부암(원발성상피암)

11. 망간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폭로되는 업무에 2월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뇌혈관장해·일산화탄소중독후 후유증·뇌염 또는 뇌염후 후유증·다발성경화증·윌슨병·척수소뇌변성증·뇌매독 및 원인이 명확한 말초신경염등 망간외의 원인에 의한 질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신신경증상

(2) 추체외로증상(파킨슨병)

나.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다량으로 폭로되어 나타나는 급성장해로 폐렴의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2. 연·연합금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연·연합금 또는 그 화합물(유기연을 제외한다)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연창백·연선·복부산통·상습변비·관절통·근육통·신경과민 및 말초신경장해등 연중독을 의심하게 하는 증상이 2가지이상 나타나는 경우

나. 빈혈소견이 나타나는 경우

다. 신근마비가 나타나는 경우

라. 혈중 연농도가 혈액 100밀리리터중 60μg이상 검출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혈중 연농도가 60μg미만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요중연·ZPP·δ-ALA 등의 검사결과에 의한다.

(추 61)

13.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그의 증기나 분진등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에서 떠난 후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가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전신마비·알코올중독·망간중독증등 다른 원인에 의한 정신신경질환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단백뇨등 신장질환의 경우를 제외한다.

가. 국소 또는 전신진전·보행장해·말하는 기능의 장해등 신경계증상 또는 감정의 항진·성격변화등 정신장해가 인정되는 경우

나. 궤양성구내염·과다한 타액분비·치은염·치주농양등의 구강내질환이 인정되는 경우

다. 안과용 세극등검사에서 수정체 전낭에 적회색의 침착이 일측 또는 양측성으로 확인될 경우

라. 단백뇨등 신장장해가 인정되는 경우

마. 대량 또는 농후한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의 증기나 분진등에 폭로되어 한기·고열·치조농루·설사·단백뇨등의 신증상 또는 기타의 급성중독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14.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의한 중독증 또는 그 속발증

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폭로되는 업무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흡연등 크롬 또는 그 화합물이 아닌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중격궤양 및 천공, 크롬에 의한 기관지천식등 비강 및 호흡기질환

(2) 크롬으로 인한 자극 또는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3) 결막염·결막궤양등의 안장해

(4) 구강점막장해 또는 치근막염

나. 크롬산 또는 중크롬산과 그 염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원발성 폐암

(2) 비강·부비강·후두의 원발성암

다.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다량으로 폭로되어 나타나는 급성장해로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급성 호흡기질환

(2) 신장장해·간장장해등 급성 중독

(추 61)

1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폭로되는 업무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세뇨관성 신질환

(2) 만성 폐질환

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다량으로 폭로된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화학성 폐렴

(2) 급성 위장관계질환

16. 벤젠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벤젠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를 떠난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혈액질환과 피부질환의 경우에 소화기질환·철분결핍성빈혈등 영양부족 및 만성소모성질환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빈혈·백혈구감소증·혈소판감소증

(2) 백혈병·다발성골수종·재생불량성빈혈

(3) 급성 또는 만성 피부염

나. 대량 또는 고농도의 벤젠증기를 흡입하여 두통·현기증·구역·구토·흉부압박감·흥분상태·경련·섬망·혼수상태 기타 급성중독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7. 지방족 및 방향족 화합물중 유기용제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지방족 및 방향족화합물중 유기용제(톨루엔·크실렌·스티렌·사이클로헥산·노말헥산등)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그 업무를 떠난 후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급성 또는 만성의 피부염

(2) 결막염·각막염 또는 비염등의 점막자극질환

(3) 중추신경장해. 다만, 뇌손상·간질·알코올이나 약물중독 및 동맥경화증등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4) 말초신경장해. 다만, 당뇨병·알코올·척추손상·납·비소·아크릴아미드·이황화탄소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5) 간장장해. 다만, 바이러스성간염·알코올성간염등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추 61)

(6) 신장장해. 다만, 고혈압·당뇨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나. 고농도의 유기용제를 대량 흡입하여 의식장해·경련 기타 급성중독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8.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트리클로로에틸렌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또는 그 업무를 떠난지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급성 또는 만성의 피부염(건조성·구열성등)

(2) 결막염 또는 비염등의 점막자극질환

(3) 중추신경장해. 다만, 뇌손상·간질·알코올이나 약물중독 및 동맥경화증 등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4) 말초신경장해. 다만, 당뇨병·알코올·척추손상·납·비소·아크릴아미드·이황화탄소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이 아니어야 한다.

(5) 간장장해. 다만, 바이러스성간염·알코올성간염등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6) 신장장해. 다만, 고혈압·당뇨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나. 고농도의 트리클로로에틸렌에 폭로되어 의식장해·보행장해등의 중추신경장해 또는 호흡기장해등 기타의 급성중독 또는 그 속발증을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9. 디이소시아네이트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디이소시아네이트(TDI·MDI·HDI등)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내인성천식 또는 다른 항원물질에 외인성천식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피부염 또는 알레르기 접촉피부염등 피부질환

나. 각막염 또는 결막염등 안질환

다. 기관지염 또는 과민성폐장염등 호흡기질환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특이항원(Specific 1gE)이 발견되고, 작업에 따른 최고호기 유속의 변화를 나타내며, 메타콜린 유발시험에 양성인 기관지천식

마. 원인물질에 의한 유발시험에 양성인 기관지천식

20. 이황화탄소(CS_2)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10ppm내외의 CS_2증기에 폭로되는 업무에 2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추 61)

(1) 망막의 미세혈관류·다발성뇌경색증·신장조직검사상모세관간사구체경화증중 하나가 있는 경우. 다만, 당뇨병·고혈압·혈관장해등 CS_2외의 원인에 의한 질병을 제외한다.

(2) 미세혈관류를 제외한 망막병변·다발성말초신경병변·시신경염·관상동맥성심장질환·중추신경기능장해 또는 정신장해중 2가지이상이 있는 경우. 다만, 당뇨병·고혈압·혈관장해등 CS_2외의 원인에 의한 질병을 제외한다.

(3) (2)의 장해중 1가지가 있고, 신장장해·간장장해·조혈계장해·생식계장해·감각신경성난청·고혈압증중 1가지이상이 있는 경우

나. 20ppm이상의 CS_2증기에 2주이상 폭로되고 있는 근로자에게 의식혼탁·섬망·정신분열증 및 조울증과 같은 정신이상증세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대량 또는 고농도의 CS_2증기에 폭로되어 의식장해등의 급성중독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21. 석면으로 인한 질병

석면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석면폐증

나. 원발성 폐암 또는 악성 중피종중 다음의 1에 해당되는 경우

(1) 석면폐증과 동반한 경우

(2) 늑막비후·초자성비후·판상석회화·담액증·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를 동반하거나 발견되는 경우

(3) (1) 또는 (2)의 소견은 없지만 석면에 10년이상 폭로된 경우. 다만, 폭로기간이 10년미만인 경우에도 흡연력·석면폭로력·폭로후 발병까지의 기간등을 참작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2. 세균·바이러스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

세균·바이러스등의 병원체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환자의 진료·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전염성질환

나. 동물이나 짐승의 털 기타 동물성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브루셀라증·탄저병·단독·페스트·두창

다. 옥외노동에 기인한 양충병

라. 습윤지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와일병

(추 61)

〔별표 2〕 〈개정 97·12·31〉

장해계열표(제40조제 3 항관련)

부 위		기 질 적 장 해	기 능 적 장 해	계열번호
눈	안구(眼球)【양안(兩眼)】		시력장해(視力障害) 운동장해(運動障害) 조절기능장해(調節機能障害) 시야장해(視野障害)	1 2 3 4
	눈꺼풀(眼瞼)【우 또는 좌(右 또는 左)】	결손장해(缺損障害)	운동장해(運動障害)	5
귀	내이(內耳)등【양이(兩耳)】		청력장해(聽力障害)	6
	귓바퀴(耳殼)【우 또는 좌(右 또는 左)】	결손장해(缺損障害)		7
코		결손 및 기능장해(缺損 및 機能障害)		8
입			음식물을 씹는 기능(詛嚼) 및 언어기능장해(言語機能障害)	9
		치아장해(齒牙障害)		10
두부(頭部), 안면(顔面), 경부(頸部)		흉터장해(醜狀障害)		11
신경(神經), 정신(精神)		신경장해(神經障害) 정신장해(精神障害)		12 13
흉복부장기(胸腹部臟器)【외부생식기포함(外部生殖器包含)】		흉복부장기장해(胸腹部臟器障害)		14
체간(體幹)	척주(脊柱)	기형장해(畸形障害)	운동장해(運動障害)	15
	기타의 체간골(其他의 體幹骨)	기형장해【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鎖骨, 胸骨, 肋骨, 肩胛骨 또는 骨盤骨)】		16
팔	팔(上肢)【우 또는 좌(右 또는 左)】	결손장해(缺損障害) 기형장해【상완골 또는 전완골(上腕骨 또는 前腕骨)】	기능장해(機能障害)	17 18
		흉터장해(醜狀障害)		19
	손가락(手指)【우 또는 좌(右 또는 左)】	결손장해(缺損障害)	기능장해(機能障害)	20
다리	다리(下肢)【우 또는 좌(右 또는 左)】	결손장해(缺損障害) 기형장해(畸形障害 대퇴골 또는 하퇴골 大腿骨 또는 下腿骨)	기능장해(機能障害)	21 22
		단축장해(短縮障害) 흉터장해(醜狀障害)		23 24
	발가락(足趾)【우 또는 좌(右 또는 左)】	결손장해(缺損障害)	기능장해(機能障害)	25

(추 93)

〔별표 3〕〈개정 99·10·7〉

신체의 제관절 표준각도(제41조제1항관련)

관절명 \ 구분		측정부위	표준운동각도
척추	경부(頸部)	전 굴(前屈)	45
		후 굴(後屈)	45
		좌 굴(左屈)	45
		우 굴(右屈)	45
		좌회전(左回轉)	80
		우회전(右回轉)	80
		(운동가능영역)	(340)
	흉요부(胸腰部)	전 굴	90
		후 굴	30
		좌 굴	30
		우 굴	30
		좌회전	30
		우회전	30
		(운동가능영역)	(240)
어깨관절		전상방거상(前上方擧上)	150
		측상방거상(側上方擧上)	150
		후방거상(後方擧上)	40
		내 전(內轉)	30
		내회전(內回轉)	40
		외회전(外回轉)	90
		(운동가능영역)	(500)
팔꿈치관절		신 전(伸轉)	0
		굴 곡(屈曲)	150
		내회전	80
		외회전	80
		(운동가능영역)	(310)
손목관절		배 굴(背屈)	60
		장 굴(掌屈)	70
		요사위(撓斜位)	20
		척사위(尺斜位)	30
		(운동가능영역)	(180)

중수지절관절 (中手指節關節)	엄지손가락(拇指)	신 전 굴 곡 (운동가능영역)	0 60 (60)
	둘째손가락(示指)	신 전 굴 곡 (운동가능영역)	0 90 (90)
	가운데손가락(中指)	신 전 굴 곡 (운동가능영역)	0 90 (90)
	약손가락(藥指)	신 전 굴 곡 (운동가능영역)	0 90 (90)
	새끼손가락(小指)	신 전 굴 곡 (운동가능영역)	0 90 (90)
손가락관절 (指關節)	엄지손가락	신 전 굴 곡 (운동가능영역)	0 80 (80)
제1지관절	둘째손가락	신 전 굴 곡 (운동가능영역)	0 100 (100)
	가운데손가락	신 전 굴 곡 (운동가능영역)	0 100 (100)
	약손가락	신 전 굴 곡 (운동가능영역)	0 100 (100)
	새끼손가락	신 전 굴 곡 (운동가능영역)	0 100 (100)
제2지관절	둘째손가락	신 전 굴 곡 (운동가능영역)	0 70 (70)
	가운데손가락	신 전 굴 곡 (운동가능영역)	0 70 (70)

(추 114)

	약손가락	신 전	0
		굴 곡	70
		(운동가능영역)	(70)
	새끼손가락	신 전	0
		굴 곡	70
		(운동가능영역)	(70)
고 관 절 (股關節)	신 전		30
	굴 곡		100
	내 전		20
	외 전(外轉)		40
	내회전		40
	외회전		50
	(운동가능영역)		(280)
무 릎 관 절	신 전		0
	굴 곡		150
	(운동가능영역)		(150)
발 목 관 절	배 굴		20
	척 굴(蹠屈)		40
	외 번(外飜)		20
	내 번(內飜)		30
	(운동가능영역)		(110)
중 족 지 절 관 절 (中足趾節關節)	엄지발가락	배 굴	50
		척 굴	30
		(운동가능영역)	(80)
	둘째발가락	배 굴	40
		척 굴	30
		(운동가능영역)	(70)
	가운데발가락	배 굴	30
		척 굴	20
		(운동가능영역)	(50)
	넷째발가락	배 굴	20
		척 굴	10
		(운동가능영역)	(30)
	새끼발가락	배 굴	10
		척 굴	10
		(운동가능영역)	(20)

(추 114)

지 관 절 (趾關節)	엄지발가락	신 전 굴 곡 (운동가능영역)	0 30 (30)
제 1 지 관 절	둘째발가락	신 전 굴 곡 (운동가능영역)	0 40 (40)
	가운데발가락	신 전 굴 곡 (운동가능영역)	0 40 (40)
	넷째발가락	신 전 굴 곡 (운동가능영역)	0 40 (40)
	새끼발가락	신 전 굴 곡 (운동가능영역)	0 40 (40)

〔별표 4〕〈개정 2000·7·29〉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제42조관련)

1. 눈의 장해

가. 시력의 장해

(1) 시력의 측정

(가) 시력의 측정은 국제시력표를 사용한다. 다만, 국제시력표만으로 시력의 정확한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문자도형등의 시표를 사용하는 시시력표등에 의한 시력측정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굴절이상이 있는 자에 대한 시력은 안경(콘택트렌즈를 제외한다)으로 교정한 시력으로 한다. 다만, 부등상증(不等像症)이 생겨 양안시(兩眼視)가 곤란하게 되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안(裸眼)으로 측정한 시력으로 할 수 있다.

(2) 장해의 등급

(가) 영 별표 2에서 "실명"이라 함은 안구를 망실한 경우 또는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2에서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안구의 조절력이 통상의 2분의 1이하로 감소된 자를 말한다. 다만,

(추 123)

50세이상인 자는 장해급여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영 별표 2에서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넓이가 2분의 1이하로 감소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일안시(一眼視)의 정상각도는 약 50°, 양안시의 정상각도는 약 45°를 말한다.

(라) 영 별표 2에서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8방향의 시야의 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각도의 60%이하로 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시야의 측정은 회스넬야계에 의하며, 암점은 절대암점을 채용하고 비교암점을 채용하지 아니한다.

나. 눈꺼풀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보통으로 눈을 감았을 경우 각막이 완전히 덮히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보통으로 눈을 감았을 경우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있으나 흰자위가 노출되는 자를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속눈썹 언저리의 2분의 1에 걸쳐 결손이 남은 자를 말한다.

(4) 영 별표 2에서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보통으로 눈을 떴을 경우 동공령(瞳孔領)을 완전히 덮어 버리거나 눈을 감았을 경우 동공령을 완전하게 덮을 수 없는 자를 말한다.

다. 준용등급결정

(1)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정면시(正面視)에서 복시(複視)가 발생하여 양안시함으로써 고도의 두통·현기증등이 생겨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2) 좌·우·상·하시등에서만 복시가 발생하여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나 경도의 두통·안정(眼精)피로가 있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3) 외상성산동(散瞳)

(가) 한 눈의 동공의 대광반사(對光反射)기능의 장해에 따른 수명(羞明)으로 인하여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추 114)

(나) 한 눈의 동공의 대광반사기능이 불충분하여 수명으로 인하여 노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다) 두 눈이 (가)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11급을 인정한다.

(라) 두 눈이 (나)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마) 외상성산동과 시력장해 또는 조절기능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에 의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2. 귀의 장해

가. 청력의 장해

(1) 청력의 측정

(가)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별표 1 제4호 나목에 규정된 측정방법에 의한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a+2b+2c+d/6)에 의하여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버리고 각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dB이상이거나 0dB이하이면 이를 100dB 또는 0dB로 간주한다.

(나) 및 (다) 삭제 〈99·10·7〉

(라) 급성으로 생기는 재해성 난청에 대하여는 급성 음향성 청기장해(急性音響性 聽器障害)로 하여 직업성 난청과 구분한다.

(마) 음향성 난청(재해성 난청)에 대한 장해등급은 요양종결후 30일의 간격으로 3회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하여 유의차가 없는 경우 그 검사치를 기초로 한다.

(바) 직업성난청의 치유시기는 당해 근로자가 직업성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업무를 떠났을 때로 하며, 당해 장해에 대한 등급결정도 치유시기이후에 행하여야 한다.

(2) 장해등급 판정기준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의 판정은 아래 기준에 의하되, 청력역치는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기준으로 한다.

(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dB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dB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30%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4급제3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나)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dB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

(추 114)

력손실치가 50dB이상 80dB미만이고 최고 명료도가 30%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6급제3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다)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dB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dB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6급제4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라)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dB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dB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7급제2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마)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dB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60dB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7급제3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60dB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dB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9급제7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사)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dB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dB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9급제8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아)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dB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9급제9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자)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dB이상 90dB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10급제4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차)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dB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10급제5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카)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dB이상 80dB미만인 사람 또는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dB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11급제4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11급제11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파)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이상 70dB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2

(추 114)

의 제14급제11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나. 귓바퀴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이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의 2분의 1이상 잃은 자를 말한다.

(2) 귓바퀴 연골부의 2분의 1미만의 결손으로서 외모의 단순한 흉터정도인 경우에는 남자는 제14급, 여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다. 준용등급결정

(1) 고막의 외상성천공(穿孔)과 그에 따른 이루(耳漏)는 수술적 처치후 청력장해가 남으면 당해 장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력장해가 장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항상 이루가 있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2) 난청이 있고 현저한 이명(耳鳴)이 항상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타각적 검사에 의하여 입증가능한 경우 제12급을 인정한다.

(3) 내이의 손상으로 인한 평형기능(平衡機能)장해에 대하여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에 준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4) 내이의 기능장해로 인하여 평형기능장해와 청력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의 방법에 의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3. 코의 장해

가. 영 별표 2에서 "코의 결손"이라 함은 코 연골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2에서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코로 숨쉬기가 곤란한 자 또는 후각상실자(嗅覺喪失者)를 말한다.

다. 코의 결손이 가목의 규정에 의한 정도가 아닌 단순한 외모의 흉터정도인 경우에는 남자는 제14급, 여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라. 코의 기능장해만 남은 경우에는 그 기능장해가 후각상실 또는 코로 숨쉬기가 곤란한 경우 제12급, 후각감퇴인 경우 제14급을 각각 인정한다.

4. 입의 장해

가. 말하는 기능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말하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이라 함은 구순음·치설음·구개음·후두음중 3종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자를

(추 114)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1)의 규정에 의한 4종의 어음중 2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자 또는 철음(綴音)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된 자를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말하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1)의 규정에 의한 4종의 어음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장해

(1) 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교합(咬合)과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등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영 별표 2에서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이라 함은 유동식(流動食)이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이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4) 영 별표 2에서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고형식(固形食)을 섭취할 수 있으나 이에 제한이 있어서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 불충분하게 된 자를 말한다.

다. 치아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치과보철(補綴)을 한 사람"이라 함은 망실 또는 뚜렷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보철을 한 자를 말한다.

(2) 유상의치(有床義齒) 또는 가교(架橋)의치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鉤)의 장착한 치아와 포스트·인레이만을 하게 된 치아는 보철한 치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망실된 치아가 크거나 치아와 치아사이의 간격으로 인하여 망실된 치아의 수와 의치의 치아의 수가 다른 경우에는 망실된 치아의 수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라. 준용등급결정

(1) 식도의 협착·협의 이상·인후지배신경의 마비등으로 생기는 연하(嚥下)장해에 대하여는 당해 장해의 정도에 따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2) 미각(味覺)상실

(가) 두부외상 기타 턱주위 조직의 손상과 혀의 손상으로 생긴 미각상실에 대하여는 제12급을 인정한다.

(나) 미각장해는 테스트페퍼와 각종 약물에 의한 검사결과가 전부 무반응일 경우에만 미각상실로 인정하고, 그 정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장해급여의

(추 61)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미각장해에 대하여는 요양이 종료되고 6월이 경과된 후 등급을 결정한다.

(3) 신체장해등급표에 조합등급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음식물을 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의 장해에 대하여는 각각의 장해가 해당되는 등급에 따라 조정의 방법에 의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4) 성대마비로 인한 뚜렷한 쉰목소리는 제12급을 인정한다.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한는 사람"이라 함은 중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인하여 개호없이는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정의(情意)의 황폐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감시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 함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개호를 필요로 하거나 치매·정의의 장해·환각망상·발작성의식장해의 다발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타인의 감시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함은 (2)의 규정에 의한 정도에는 미치지 아니하나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대뇌소증상·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등이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4) 영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함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아 일생동안 손쉬운 노무외의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5) 영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함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자를 말한다.

(6) 영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라 함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추 61)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로서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나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자

(나) 전간(癲癎)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자

(다) 경도의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자

(7)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추체로(錐體路)증상과 추체외로(錐體外路)증상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마비·기뇌촬영(氣腦撮影)으로 증명되는 경도의 뇌위축 및 뇌파이상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경미한 자각증상인 경우에는 이러한 이상소견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8)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현기증·피로감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나. 척수의 장해

(1)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제1급을 인정한다.

(2)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제2급을 인정한다.

(3)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는 제3급을 인정한다.

(4) 마비 기타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은 자는 제5급을 인정한다.

(5)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자는 제7급을 인정한다.

(6)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는 제9급을 인정한다.

(7) 노동능력은 있으나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척수증상이 남은 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다. 근성(根性)과 말초신경에 대한 장해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각부의 기관에서의 기능장해에 대한 등급을 준용한다.

라. 실조(失調)·현기증 및 평형기능장해

(1) 고도의 실조 또는 평형기능장해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외에는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는 제3급을 인정한다.

(2) 뚜렷한 실조 또는 평형기능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은 자는 제5급을 인정한다.

(추 61)

(3) 중등도의 실조 또는 평형기능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명백하게 일반평균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자는 제7급을 인정한다.

(4)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현기증의 자각증상이 강하거나 타각적으로 안구진탕증 기타 평형기능검사결과 명백한 이상소견이 인정된 자는 제9급을 인정한다.

(5) 노동능력은 있으나 안구진탕증 기타 평형기능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인정된 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6) 현기증의 자각증상은 있으나 타각적으로 안구진탕증 기타 평형기능검사결과에 이상소견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인성반응인 현기증이 아닌 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마. 동통등 감각이상

(1)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신경통의 경우에 손쉬운 노무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자는 제7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으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자는 제9급을 인정하며,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2) 작열통(灼熱痛, Causalgia)에 대하여는 (1)의 규정에 준하여 결정한다.

(3) 상처를 입은 부위의 동통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강한 동통이 있어 노동에 지장이 있는 자는 제12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남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외의 이상감각등이 발견되는 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바. 외상성 신경증(재해성 신경증)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다만, 외상성신경증의 경우를 제외한다.

사.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척주에 기형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아. 기타 특징적인 장해

외상성전간의 치유시기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요양으로 증상이 안정된 때로 하고, 장해등급은 발작회수·발작이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비발작시의 정신증상등을 종합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매주 1회이상 발작 또는 고도의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는 제3급을 인정한다.

(추 61)

(2)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발작의 빈도 또는 발작형의 특징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은 자 또는 전간의 특수성으로 보아 취업가능한 직종이 극도로 제한된 자는 제5급을 인정한다.

(3)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1개월에 1회이상의 의식장해가 수반되는 발작이 있거나 발작형의 특징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자 또는 전간의 특수성으로 보아 취업가능한 직종이 뚜렷하게 제한된 자는 제7급을 인정한다.

(4) 지속적인 약물복용을 하여야만 수개월에 1회정도 또는 완전하게 발작을 억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발작이 나타나지는 아니하나 뇌파상 명백하게 전간성 극파를 인정할 수 있는 자 또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취업가능한 직종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는 제9급을 인정한다.

자. 준용등급결정

신경마비가 타각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신체장해등급표에 당해 부위의 기능장해에 대한 등급이 없는 경우 제12급을 인정한다.

6. 흉터의 장해

가. 외모의 흉터

(1) 영 별표 2에서 "외모"라 함은 두부·안면부·경부등 팔과 다리이외의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외모에 뚜렷한 흉터"라 함은 두부에 있어서는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 크기이상의 상처자국(이하 "반흔"이라 한다) 또는 두개골에 손바닥 크기이상의 손상, 얼굴부위에 있어서는 계란 크기이상의 반흔 또는 길이 5센티미터이상의 선모양의 흉터(이하 "선상흔"이라 한다) 또는 10원주화 크기이상의 조직함몰, 경부에 있어서는 손바닥 크기이상의 반흔이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이상을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외모에 흉터"라 함은 두부에 있어서는 계란 크기이상의 반흔 또는 두개골에 계란 크기이상의 결손, 안면부에 있어서는 10원주화 크기이상의 반흔 또는 길이 3센티미터이상의 선상흔, 경부에 있어서는 계란 크기이상의 반흔이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이상을 말한다.

(4) 외모의 흉터중 반흔·선상흔과 조직함몰의 경우에는 눈썹·두발등으로 감추어지는 흉터는 장해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5) 안면신경마비로 인하여 나타나는 입비틀어짐은 단순한 흉터로 인정하며, 보통으로 눈을 감을 수 없는 경우에는 눈꺼풀의 장해로 인정한다.

(6) 귓바퀴와 코의 결손에 의한 흉터장해에 대하여는 귓바퀴 연골부의 2분의 1이상이 결손된 경우에는 뚜렷한 흉터로 인정하고, 그 일부가 결손된 경우에는 단순한 흉터로 인정하며, 코 연골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결손한 경우

(추 61)

에는 뚜렷한 흉터로 인정하고, 그 일부 또는 비익(鼻翼)을 결손한 경우에는 단순한 흉터로 인정한다.

(7) 2개이상의 반흔 또는 선상흔이 인접하여 있거나 모여있어 1개의 반흔 또는 선상흔과 같이 보일 경우에는 그것의 면적과 길이등을 합산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8) 화상치료후 흑갈색으로 변색되거나 또는 색소탈실로 인한 백반이 영구적으로 남게 될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나. 노출된 면의 흉터

(1) 팔 또는 다리의 "노출된 면"이라 함은 팔에 있어서는 손바닥 및 손등을 포함한 팔꿈치관절이하, 다리에 있어서는 발등을 포함한 무릎관절이하를 말한다.

(2) 2개이상의 반흔 또는 선상흔과 화상치료후의 흑갈색 변색, 색소탈실로 인한 백반등의 장해등급결정기준은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조정등급결정

제40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1의 경우에는 각각의 장해를 조정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1) 외모의 흉터장해와 노출된 면의 흉터장해

(2) 외모의 흉터장해와 노출된 면 이외의 흉터장해

(3) 팔의 노출된 면의 흉터장해와 다리의 노출된 면의 흉터장해

(4) 외상·화상등으로 인한 안구망실에 따른 안부주위와 안면의 조직함몰·반흔등이 생긴 경우에는 안구망실에 대한 등급과 반흔등의 흉터장해

라. 준용등급결정

(1) 남자의 안면전역에 걸친 반흔으로 사람에게 혐오감을 가지게 하는 정도 이상인 경우에는 제7급을 인정한다.

(2) 노출된 면 이외의 상완 또는 대퇴에 있어서는 그 전역, 흉부 또는 복부에 있어서는 각 부위의 2분의 1정도, 배부과 둔부에 있어서는 그 전면적의 4분의 1정도이상에 대하여 흉터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3) 양상완 또는 양대퇴 전역, 흉부 또는 복부에 있어서는 그 전면적의 2분의 1이상, 배부 및 둔부에 있어서는 그 전면적의 2분의 1이상인 흉터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7. 흉복부장기등의 장해

가. 흉부장기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흉부장기의 장해"라 함은 심장·심낭·폐장·늑(흉)막·횡격막등에 다각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고 그 기능에도 장해가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추 123)

(2)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제1급을 인정한다.

(3) 고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제2급을 인정한다.

(4)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는 제3급을 인정한다.

(5)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은 자는 제5급을 인정한다.

(6)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자는 제7급을 인정한다.

(7)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는 제9급을 인정한다.

(8)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는 자는 제11급을 인정한다.

나. 복부장기의 장해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신장장해

(1) 뇨로(尿路) 변경술 후 신루(腎瘻)·신우루(腎盂瘻)·뇨관피부문합·뇨관장문합(尿管臟吻合)을 남긴 채로 치유의 상태에 달한 자는 제7급을 인정한다.

(2) 명백하게 상처에 의한 만성신우증(신장염)·수신증은 제7급을 인정한다.

(3) 요양의 종결 단계에서 뇨도루(尿道瘻)·방광루공(膀胱瘻孔)과 수회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루공이 남아 일정한 기간후 다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그 상태에서 일단 치유한 자는 제11급을 인정한다.

(4) 방광괄약근(膀胱括約筋)의 변화에 의한 것이 명백한 뇨실금(尿失禁)은 제11급을 인정한다.

라. 방광장해

(1)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자는 제3급을 인정한다.

(2) 위축방광(용량 50cc이하)인 자는 제7급을 인정한다.

(3) 항상 뇨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의 배뇨통은 제11급을 인정한다.

마. 요도협착

(1) 사상(絲狀) 부지(Bougie)를 필요로 하는 자는 제11급을 인정한다.

(2) 요도협착으로 신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는 신장의 장해로 간주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추 61)

바. 생식기장해

(1) 음경의 대부분이 결손된 자, 반흔으로 인한 질구협착등으로 생식능력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성교불능인 자는 제9급을 인정한다.

(2) 양쪽 고환이 결손된 자는 제7급을 인정한다.

(3) 음위가 다른 장해에 수반되어 생기는 경우에는 당해 다른 장해의 등급을 인정한다.

(4) 가벼운 요도협착·음경의 반흔 또는 경결(硬結)등으로 인한 음위가 있는 자와 명백한 지배신경의 변화가 인정되는 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다만, 의학적으로 음위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다.

사. 준용등급결정

(1) 요도협착장해중 요도부지 프렌치 제20번(네라톤 카텔 제11호 상당)이 겨우 통과하고 때때로 확장술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2) 한쪽 고환의 결손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위축이 있는 자는 제11급을 인정한다.

8. 척주등의 장해

가. 척주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구배(龜背) 또는 20°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구배 또는 10°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정성이 확실한 자를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1개이상의 척추의 골절이 인정되거나 경미한 구배 또는 측만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4)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2개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

(5)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1개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

(6)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

(추 72)

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추체높이 30%이상 50%미만의 골절, 안정방출성골절, 챤스씨골절이 인정되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자를 말한다.

나. 추간판탈출증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등)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해등급은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신경증상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추간판제거후 척주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중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3) 요통·방사통등의 자각증세가 검사결과에 이상소견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단순한 고의나 과장이 아니라고 의학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4) 감각이상·요통·방사통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下肢直擧上)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12급으로 인정한다.

(5)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급을 인정한다.

(6)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에는 제9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7) 2개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제8급을 인정한다.

다. 기타의 체간골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그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 늑골의 변형은 그 개수·정도·부위등에 관계없이 늑골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인정한다. 늑연골의 경우도 또한 같다.

라. 준용등급결정

(1) 하중기능의 장해에 대하여는 장구(콜셋트등)를 사용하더라도 기거에 곤란을 느끼는 정도인 경우에는 제6급, 그 정도는 되지 아니하나 항상 장구를 필요로 하는 정도인 경우에는 제8급을 인정한다.

(2) 기타의 체간골의 2개이상의 골에 각각 뚜렷한 기형이 남은 경우에는 조정

의 방법에 의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가. 팔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라 함은 어깨관절에서 견갑골과 상완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 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사이에서 상완골이 절단된 자 또는 팔꿈치관절에서 상완골과 요골 및 척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를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라 함은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사이에서 절단된 자 또는 손목관절에서 요골 및 척골과 수근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를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 함은 팔의 3대관절(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상태가 되고,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자 또는 상완신경총이 완전마비된 자를 말한다.

(4) 영 별표 2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상태의 자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치환(置換)한 자를 말한다.

(5) 영 별표 2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

(6) 영 별표 2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

(7) 팔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자는 영 별표 2의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 별표 2의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8) 선천성을 제외한 습관성탈구가 있는 자는 영 별표 2의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9) 영 별표 2에서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자 또는 요골과 척골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자를 말한다.

(10) 영 별표 2에서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요골 또는 척골 중 한 쪽에 가관절이 남은 자를 말한다.

(추 72)

(11) 영 별표 2에서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상완골의 변형 또는 요골과 척골의 양쪽의 변형으로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65도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유합된 것)이상인 자를 말하며, 장관골의 골절부가 양방향에 단축없이 유착되어 있는 자를 제외한다. 다만, 요골 또는 척골중 한쪽만의 변형이라 하더라도 정도가 뚜렷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나. 손가락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라 함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근위지절간관절이상을 잃은 자로서 손가락이 중수골 또는 기절골에서 절단된 자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서 기절골과 중절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를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이라 함은 지골의 일부를 잃은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자 또는 유리골편(遊離骨片)이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손가락의 말단(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원위지절간관절 제2지관절부터 말단까지)의 2분의 1이상 잃은 자, 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으로 제한된 자를 말한다.

(4) 영 별표 2에서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이라 함은 원위지절간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생리적 운동영역이 4분의 3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에 있는 자 또는 굴신근의 손상등 원인이 명백한 것으로 인하여 자동적 굴신이 불가능한 자를 말한다.

다. 준용등급결정

(1) 같은 팔에 2이상의 기질적 장해가 남은 경우

(2) 같은 팔에 결손장해와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다만, 기능장해의 정도에 불구하고 손목관절이상을 잃은 경우에는 제5급, 팔꿈치관절이상을 잃고 관절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4급을 인정한다.

(3) 같은 팔의 3대관절에 기능장해(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는 제외)가 남은 경우. 다만, 한 팔의 3대관절 전부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8급, 한 팔의 3대관절의 전부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10급을 인정한다.

(4) 한 팔의 3대관절에 기능장해와 같은 팔의 손가락에 결손장해 또는 기능장

(추 61)

해가 남은 경우

라. 한 팔에 장해가 있던 자가 새로 다른 팔에 장해가 남은 경우 또는 같은 팔(손가락을 포함한다)의 장해정도를 가중하고 다른 팔에도 장해가 남아 다음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합등급으로 인정하여 가중의 경우에 준한다.

(1) 두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은 제1급

(2)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은 제2급

(3)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제1급

(4)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은 제3급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은 제4급

마. 상완골 또는 전완골(요골·척골)의 골절로 골절부에 가관절 또는 기형이 남고 그 부위에 제12급 상당의 동통이 있는 경우에는 그중 상위의 등급으로 결정한다.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라 함은 고관절에 있어서는 관골과 대퇴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 고관절과 무릎관절과의 사이(대퇴부)에서 절단된 자 또는 무릎관절에서 대퇴골과 하퇴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를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라 함은 무릎관절과 발목관절의 사이(하퇴부)에서 절단된 자 또는 발목관절에서 하퇴골과 거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를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라 함은 족근골(종골·거골·주상골과 3개의 계상골로 형성되어 있다)에서 절단된 자 또는 중족골과 족근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를 말한다.

(4) 영 별표 2에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못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3대관절(고관절·무릎관절·발목관절)과 발가락의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자나 3대관절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상태의 자를 말한다.

(5) 영 별표 2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자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를 말한다.

(6) 영 별표 2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

(추 61)

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

(7) 영 별표 2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

(8) 다리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자는 영 별표 2의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 별표 2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며,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아니하나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자는 영 별표 2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9) 선천성을 제외한 다리의 습관성탈구와 탄발슬(彈發膝)이 있는 자는 영 별표 2의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10) 영 별표 2에서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자 또는 경골과 비골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자를 말한다.

(11) 영 별표 2에서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경골 또는 비골 중 어느 한 쪽에 가관절이 남은 자를 말한다.

(12) 영 별표 2에서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팔에서의 경우와 같이 그 변형을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65도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유합된 것)이상으로서 대퇴골의 변형 또는 경골의 변형이 있는 자를 말하며, 장관골의 골절부위가 정상위로 유착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발가락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발가락을 잃은 사람"이라 함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자를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절골의 2분의 1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원위지절간관절(말관절)이상을 잃은 자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제1지관절,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운동가능범위의 2분의 1이상으로 제한된 자 또는 가운데발가락·네째발가락·새끼발가락에 있어서는 완전강직된 자를 말한다.

다. 준용등급결정

(추 61)

(1) 같은 다리에 2개이상의 기질적 장해가 남은 경우

(2) 같은 다리에 결손장해와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3) 같은 다리의 3대관절에 기능장해(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는 제외)가 남은 경우. 다만, 한 다리의 3대관절 전부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8급, 한 다리의 3대관절 전부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10급을 인정한다.

(4) 한 다리의 3대관절에 기능장해와 같은 다리의 발가락에 결손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5) 한 다리의 연장으로 인하여 정상의 다른 다리의 길이가 3센티미터이상 짧아진 경우에는 제10급을 인정한다.

(6) 발가락을 기부(발가락이 붙어 있는 곳)에서 잃은 자는 영 별표 2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7) 한 발의 발가락에 신체장해등급표에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결손장해가 남은 경우

(8) 한 발의 어느 발가락에 결손장해와 같은 발의 다른 발가락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라. 한 다리에 장해가 있던 자가 다시 다른 다리에 장해가 남았거나 같은 다리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하고 다른 다리에도 장해가 남아 다음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합등급으로 인정하여 가중의 경우에 준한다.

(1) 두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은 제1급

(2) 두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은 제2급

(3) 두 발을 리스프랑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은 제4급

(4)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제1급

(5)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은 제5급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은 제7급

마. 기타 다음의 1의 경우에는 그중 상위의 등급으로 결정한다.

(1) 골절제가 관절부에서 실시되어 다리의 단축과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2) 장관골의 골절부위가 부정유합된 결과 장관골의 기형 또는 가관절과 다리의 단축장해가 남은 경우

(3) 대퇴골 또는 하퇴골의 골절부에 가관절 또는 장관골의 기형이 남고 그 부위에 제12급에 해당되는 동통이 남은 경우

(추 61)

〔별표 5〕〈개정 99·10·7〉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제57조관련)

1. 병형·환기기능 및 심폐기능장해의 판정기준

가. 병형판정기준

(1) 진폐증의 이환여부와 진행도는 엑스선 사진을 판독하여 결정하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사 또는 진폐근로자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심사의의 자문을 거쳐 판정한다.

(2) 엑스선 사진판독은 국제노동기구(ILO u/c)의 진폐증 엑스선 사진 정밀분류법에 의하고, 진폐증의 병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병 형		엑스선 사진의 상(像)
의 증	0/1	소원형 또는 소불규칙음영의 밀도가 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서 특히 진폐증의 이환을 의심케 하는 경우
1 형	1/0 1/1 1/2	소원형 또는 소불규칙음영이 소수 있는 것
2 형	2/1 2/2 2/3	소원형 또는 소불규칙음영이 다수 있는 것
3 형	3/2 3/3 3/+	소원형 또는 소불규칙음영이 대단히 다수 있는 것
4 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나. 환기기능의 판정기준

%폐활량을 80%이상과 미만을 기준으로 각각 정상과 경미이상의 침습으로 구분한다.

다. 심폐기능의 장해판정기준

(1) 고도장해

환기기능이 55%이상 제한되고, 안정시 대화나 옷을 입을 정도로도 호흡곤란이 있어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70%이상인 자

(2) 중등도 장해

환기기능이 45%이상 제한되고, 50미터이상 걸으면 호흡곤란이 있어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50%이상인 자

(3) 경도장해

(추 114)

환기기능이 30%이상 제한되고, 평지에서 1키로미터이상을 건강한 사람과 같이 걸어갈 수 없는 상태의 호흡곤란이 있어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40% 이상인 자

(4) 경미장해

환기기능이 20%이상 제한되고, 건강한 사람과 같은 정도로 걸을 수 있으나 언덕이나 계단의 경우에는 연령이 같은 건강한 사람과 같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어 심폐기능장해가 20%이상인 자

2. 요양기준

가. 진폐증의 합병증 또는 속발증 〔활동성폐결핵·흉막염·기흉·기관지염·기관지확장증·폐기종(심폐기능 경도장해이상)·폐성심〕이 있어 의학적으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진폐증으로 진단된 자로서 고도의 심폐기능장해가 있어 의학적으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다.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측(側) 폐야에 2분의 1을 넘어 병발증 감염의 예방 기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라. 진폐의증(0/1)인 자로서 폐결핵이 합병되어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마.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증이환자(진폐증 병형이 제1형이상인 자에 한한다)로서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3. 폐질등급기준

폐 질 의 상 태	등 급
○혼자힘으로 식사·용변등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이 불가능한 자	제1급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고, 식사·용변 및 병동안에서의 100m이내의 보행등 단시간 병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자	제2급
○식사·용변등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항상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제3급

4. 장해등급기준

신체장해 등 급	구 분	심폐기능장해도 및 X-선 소견
1 급	고도장해 (F_3)	환기기능이 55%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70%이상인 자
3 급	중등도장해 (F_2)	환기기능이 45%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50%이상인 자

(추 114)

5 급	경도장해 (F_1)	환기기능이 30%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40%이상인 자중 진폐증 병형이 4형으로 판정된 자
7 급	경도장해 (F_1)	환기기능이 30%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40%이상인 자중 진폐증 병형이 1·2·3형으로 판정된 자
9 급	경미장해 ($F^1/_2$)	환기기능이 20%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20%이상인 자중 진폐증 병형이 3·4형으로 판정된 자
11 급	경미장해 ($F^1/_2$)	환기기능이 20%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20%이상인 자중 진폐증 병형이 1·2형으로 판정된 자 또는 심폐기능장해가 없는 자(F_0)로서 진폐증 병형이 2형이상으로 판정된 자

〔별표 6〕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제74조제 1 항관련)

1. 보험료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보험요율(100%)=〔보험급여지급율+추가증가지출율〕(85%)+부가보험료율(15%)

주 1) "보험급여지급율"이라 함은 매년 9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3년간(보험관계가 성립된 지 3년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사업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말하며, 보험급여총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과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은 이를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최초로 연금이 지급되는 연도의 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고, 여기에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의 제 6 년차 지급액분부터 보험요율산정 대상에 추가로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폐업된 사업장의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시기를 감안하여 그 보험급여액을 확정한 후 이를 전 사업종류의 임금총액중 각 사업종류의 임금총액이 차지하는 구성비율에 따라 각 사업종류별로 분할가감한다.

주 2) "추가증가지출율"이라 함은 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 추정액에 대한 이 법에 의한 연금 및 급여개선등 당해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액을 고려한 조정액의 비율을 말한다.

(추 61)

주 3) "부가보험료율"이라 함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보험료율의 15%를 말한다. 다만,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 사업종류에 균등하게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과 재해발생빈도에 따라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구분한 후 이를 사업종류별 임금총액의 구성비율과 사업종류별 보험급여지급율의 구성비율에 따라 분할가감한다.

2. 보험료율의 산정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산정함에 있어 보험급여지급율·추가증가지출율 및 부가보험료율의 산정은 이를 각각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료율은 소수점이하 네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당해사업의 보험료율로 결정한다. 다만, 결정된 당해사업의 보험료율이 0.0020이하인 경우에는 0.0020으로 한다.

(추 61)